MONO1199312603

韓國統計發展史(I)

時代別 發展史

1992

統 計 廳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기증증록
1993. 7. 0
568254

發 刊 辭



統計는 일찍이 國家의 發生과 함께 國家經營에 必要한 道具로서 발달하여 왔으며 이후 社會經濟 構造가 高度化되면서 필요한 統計情報의 領域도 계속 擴大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情報化時代에 있어서는 合理的인 意思決定을 위한 基本資料로서의 統計의 役割과 重要性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認識되고 있다할 것입니다.

무릇 모든 制度나 文化들이 나름대로의 歷史性을 가지고 發展해 왔듯이 우리나라의 統計 역시 歷史와 함께 發展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歷史文獻上에서도 古代로부터 社會集團이나 自然現象에 관한 計數的 記錄 즉 土地나 人口, 産物에 대한 統計記錄이 비록 資料의 正確性이나 多樣性 그리고 時系列上으로 만족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統計記錄은 中世나 近代를 거치면서 더욱 發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統治體制속의 한 요소로서 이러한 統計活動을 위한 組織이나 機構도 存在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桓雄이 무리 3千을 이끌고 太伯山頂에 내려 왔다는 檀君神話의 記錄을 시작으로 하여 扶餘 등 여러 聯盟王國의 戶口 및 人口數 資料에서는 그 당시의 集團規模를 엿볼수 있고, 新羅의 民政文書인 新羅帳籍(815年)은 3年마다 村落別로 戶口, 田畓 및 家畜 등의 現況과 增減을 調査한 것으로 世界的으로도 類例가 드문 記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高麗時代에는 技術官員인 算學職이 定着하게 되고, 國子監에서 敎科 科目으로 算學이 採擇되었을뿐 아니라, 計口籍民 制度를 통해 戶口調査가 한층 發展하게 되었고 朝鮮時代에 들어서는 「世宗實錄地理志」에 道別 戶口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戶口總數」, 「王朝實錄」, 「度支志」 등 많은 文獻에서 統計資料가 나타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調査하는 式年 戶口調査가 定着되는 등 制度的으로도 더욱 發展하여 상당한 水準에 到達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甲午更張 이후 開化期에는 소위 近代的 意味의 統計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各種 要覽, 政表 등의 刊行物을 통해 國勢分析 및 部門別 指標 등 硏究資料들도 상당수 발표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資料들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統計歷史가 결코 日淺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過去는 現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歷史를 통해서 統計가 어떻게 發展되어 왔는지를 糾明하여 現在 우리 統計의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統計가 나아가야할 方向을 提示함은 물론, 統計歷史硏究資料와 歷史的 史料로 활용 내지 보존토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世代를 위해서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뒤늦게나마 우리 統計歷史에 대한 대강의 輪廓을 잡아 「韓國統計發展史」를 發刊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統計發展史는 Ⅰ, Ⅱ권으로 나누어 編輯하였습니다. 제Ⅰ권에서는 統計歷史를 時代別로 整理하였고, 제Ⅱ권에서는 統計分野別로 發展過程을 整理하였습니다. 그러나 長久한 우리 統計歷史에도 불구하고 過去資料의 蒐集이나 發掘이 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웠을뿐 아니라 歷史的 硏究에 대한 非專門性 등으로 인하여 事實糾明이 未洽하게 된 점을 솔직히 是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未洽한 部分에 대해서는 讀者나 斯界專門家의 忠言과 叱正이 있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숨겨진 統計歷史 資料를 發掘 分析하여 내용을 補完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期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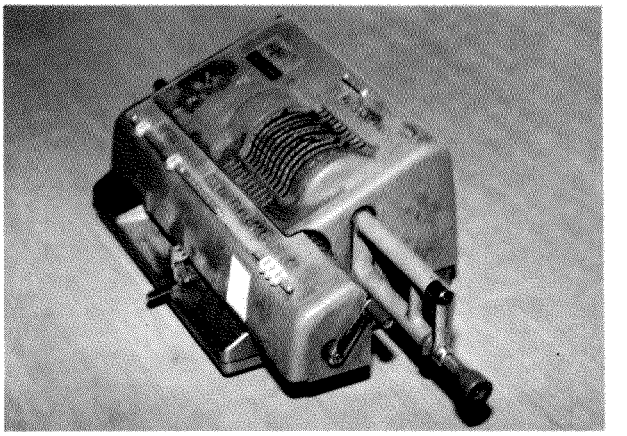
그동안 統計發展史 硏究에 物心兩面으로 協調하여 주신 關係者 여러분들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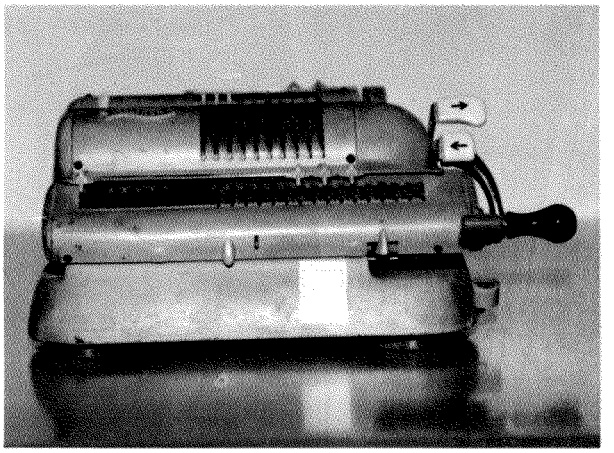
1992. 1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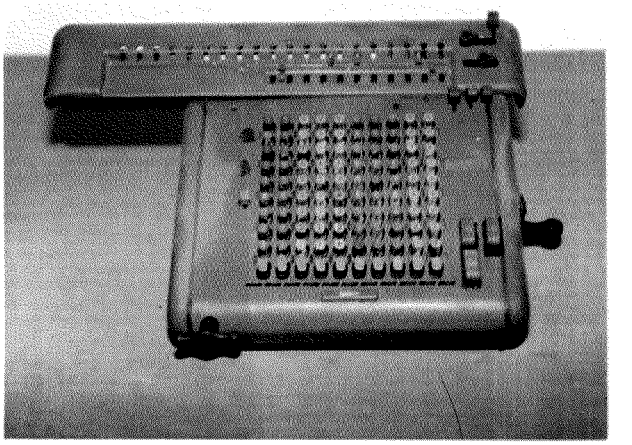
統計廳長　閔 泰 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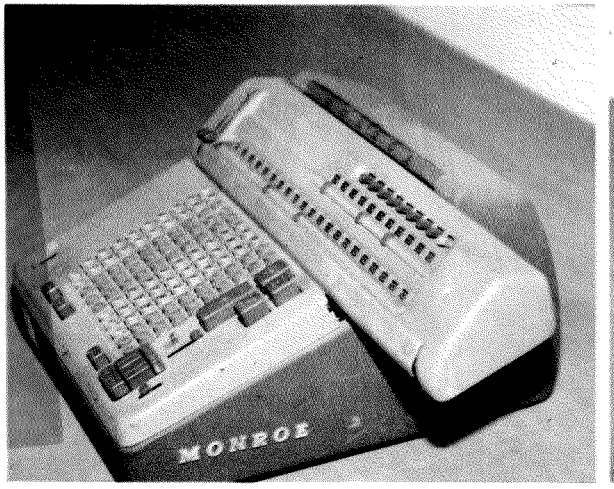
1950年代 計算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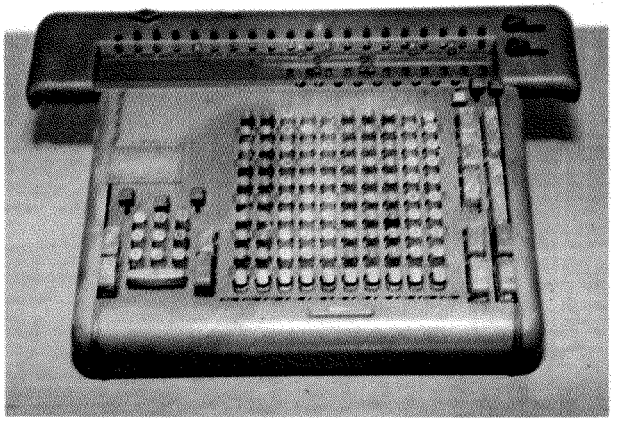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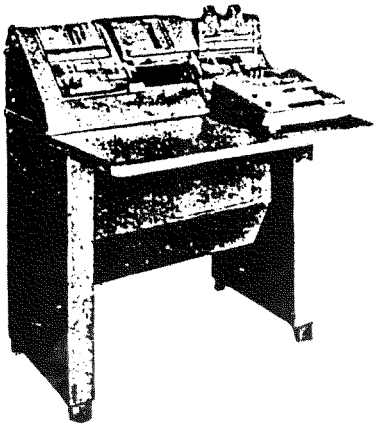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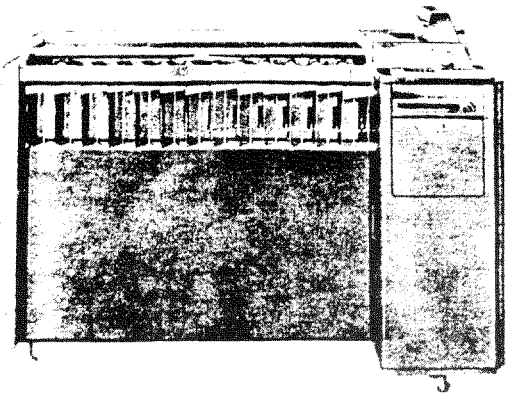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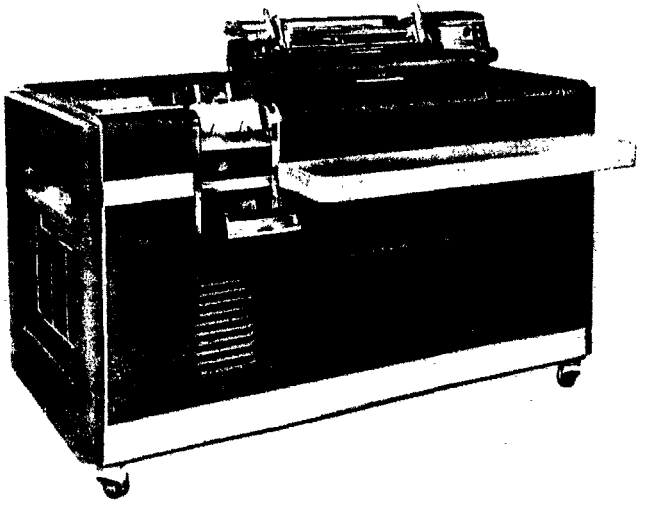
①~③ 手動式 計算機(타이거 計算機)
④~⑤ 電動式 計算機(몬로 計算機)

珠算으로 資料를 集計하던 時節에 처음 計算機로 나타난 것이 手動 卓上計算機, 일명 타이거 計算機로 손으로 돌려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電動式 計算機와 함께 펀치 카드 시스템(PCS)時代 以前까지 統計資料處理를 爲해 使用되어졌음.

컴퓨터時代以前의 各種統計器機(196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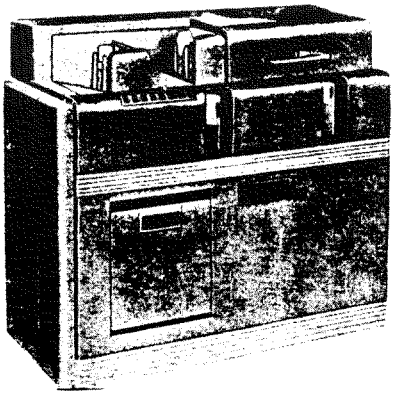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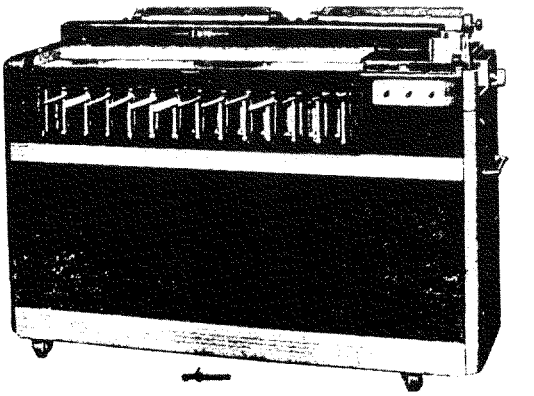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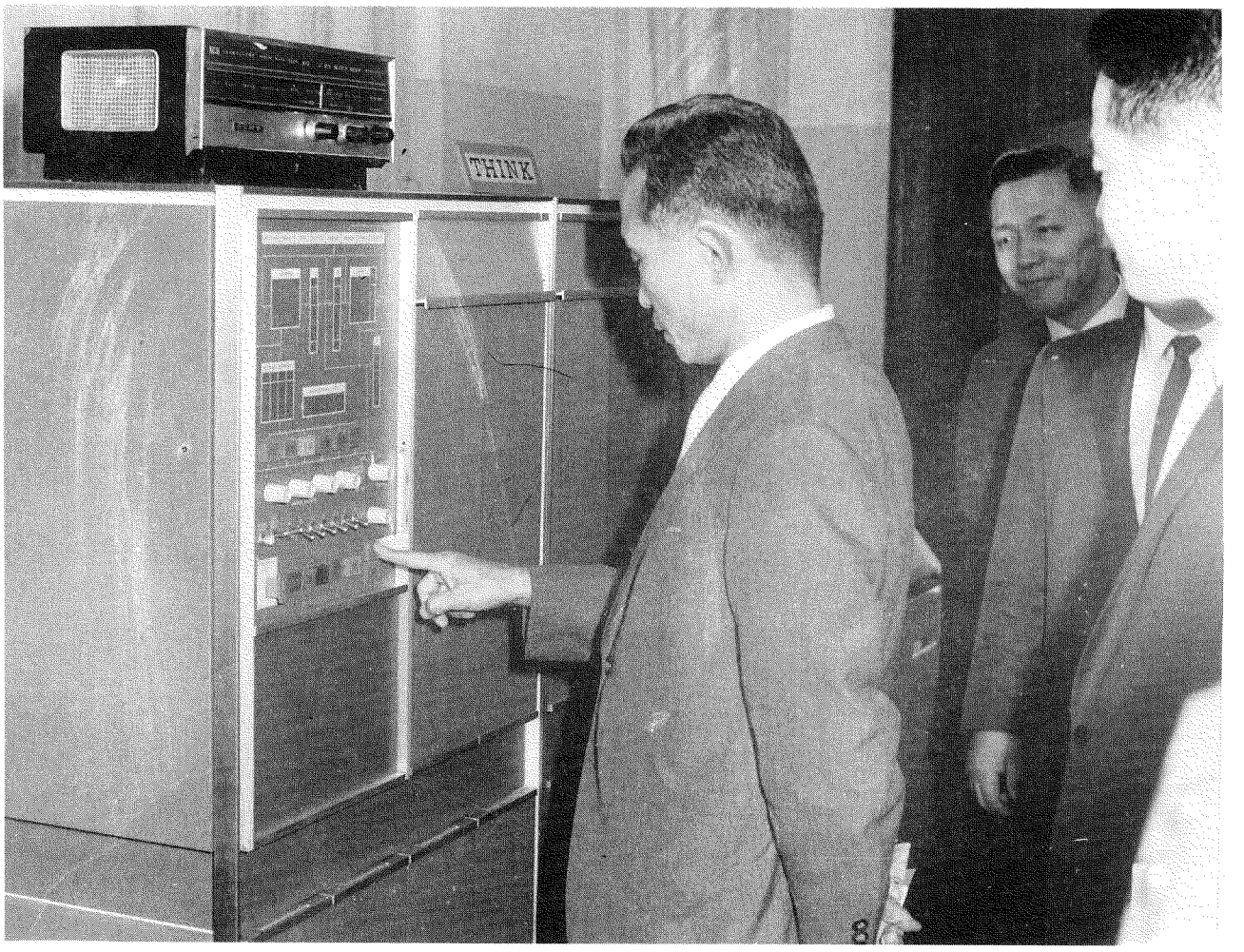
① 穿孔機 ② 分類機 ③ 會計機
④ 複寫穿孔機 ⑤ 電子統計機

內務部 統計局에서 1960年 人口住宅 國勢調査의 資料處理를 爲해 導入한 IBM펀치카드시스템器機들로써 現國立博物館建物內에 베니어板子로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設置 使用하였음. 資料處理는 調査票를 ① 穿孔機에 의해 穿孔하고 ② 分類機로 카드를 分類한 후 ④ 複寫穿孔機(또는 組合機, 飜譯機)등으로 정리한 후 ③ 會計機와 ⑤ 電子統計機로 結果表를 算出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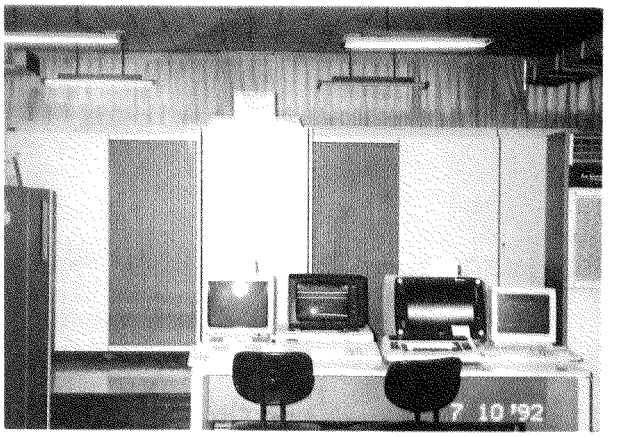
韓國最初의 컴퓨터 始動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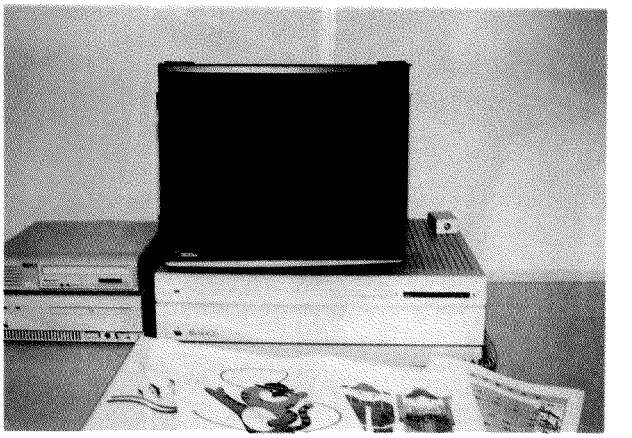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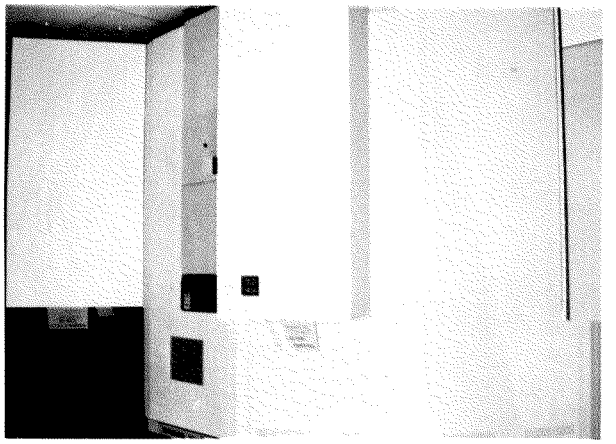
韓國最初의 컴퓨터 IBM 1401 始動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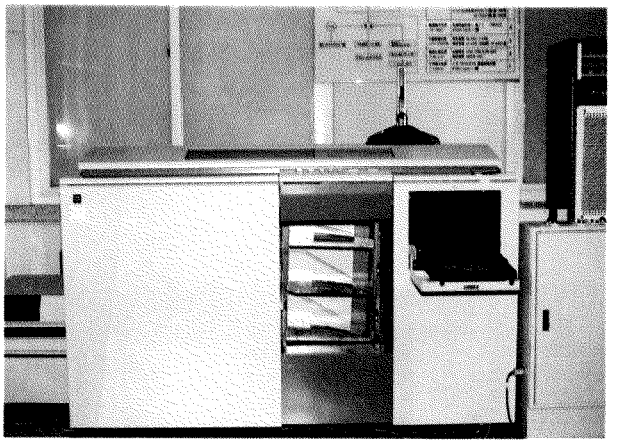
1967. 4월에 '66年 人口센서스 資料處理를 위하여 IBM 1401을 導入하였는데, 이 電子計算機는 2世代 컴퓨터로서 完全半導體化된 것으로서, 韓國에서는 最初의 컴퓨터導入인 셈임. 1967. 6월 始動式은 故 朴正熙大統領이 參席한 가운데 열렸으며, 情報歷史의 새로운 章을 기념하기 위해 6월을 「情報文化의 달」로 지정한 것을 비롯, 이 컴퓨터의 導入으로 統計業務의 革新은 물론 우리나라 電算歷史가 새로이 始作되었음.

統計廳 電算組織(現在)









①	②
③	④
	⑤



① **IBM 3090－120J(1990. 12월)**
現在 IBM 4381－PO3과 함께 統計廳 主電算機로 쓰임.

② **統計弘報圖表시스템(1992. 1월)**
16萬칼라의 多樣한 色相으로 各種 圖表를 製作할 수 있는 複合編輯 및 圖表製作시스템임.

③ **自動카트리지시스템(ACS, 1992. 5월)**
테이프 資料를 디스크 裝置처럼 신속하게 카트리지테이프 裝置에 장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自動化한 裝置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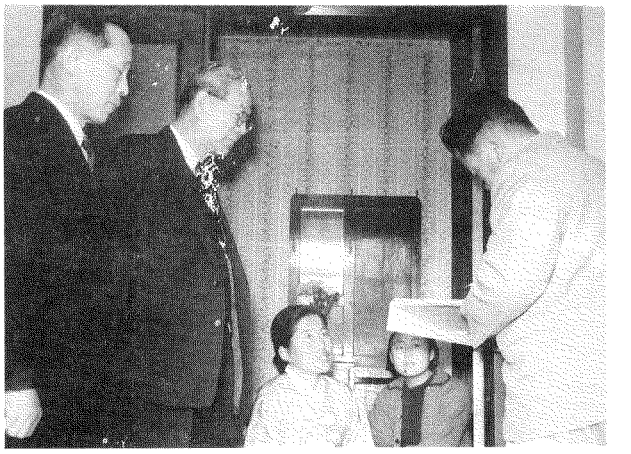
④ **光學判讀機(OMR, 1990. 6월)**
用紙에 表示된 內容을 레이저빛을 發射, 反射되는 빛을 感知하는 原理를 利用하여 判讀하는 장비로 1分에 B4용지 150枚정도를 읽을 수 있어 大量의 자료를 迅速·正確하게 入力處理함.

⑤ **行政電算網用 主電算機(TORERANT NS－32332, 1990. 12월)**
行政電算網에 의해 對外機關에 統計情報를 提供하는 KOSIS의 運營目的으로 使用됨.

統計調査 關聯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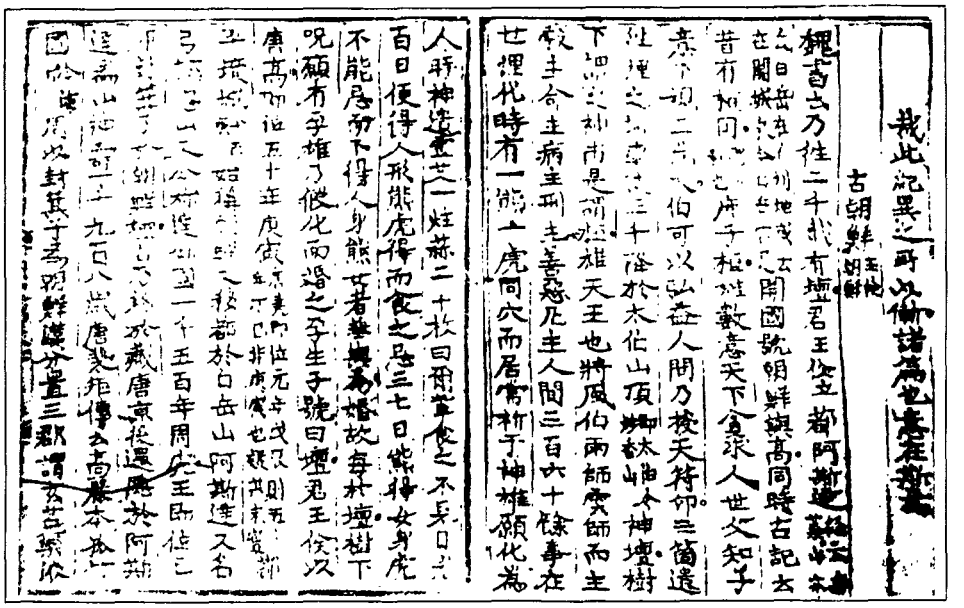
(1) 1955年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 懸垂幕(江原道廳앞)

(2) KBS라디오를 통해 1960年 人口住宅 國勢調査실시에 對한 放送을 하고 있는 상윤식 당시 人口統計課長

③ 1960年 人口住宅 國勢調査時 張勉總理(左側에서 2번째)를 訪問하여 調査하는 張炳寅統計局長(左側에서 1번째)

④ 1960年 人口住宅 國勢調査時 尹普善大統領 官邸를 訪問하여 調査하는 張炳寅統計局長(中央)과 駐韓統計顧問團(美國對外援助處協助) Dr. Rice團長(左側에서 2번째). 右側에는 大統領 令夫人이 보임.

古代統計關聯文獻



載此紀異之所以備諸篇也 古朝鮮 王儉

魏書云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 經[illegible]

古記云昔有桓因[illegible]

昔有桓因[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目　　次

序 說

머 리 말 …… 13

編纂槪要 …… 14

第 1 章　近代統計 以前史 …… 19

第 1 節　統計認識의 出發과 發展 …… 21

1．古代人의 集團意識과 版籍觀念(古朝鮮時代) …… 21

2．部族社會의 進·分化와 國勢分布(列國時代) …… 23

3．律令時代의 統治官制와 圖簿管理機構(三國時代) …… 26

4．文民統治와 定例調査의 發生(南北國時代) …… 38

第 2 節　高麗時代의 統計史的 意義 …… 47

1．國家統計機構와 算學職 定着 …… 47

2．計口籍民과 戶籍制度의 定着 …… 52

3．量田制度와 改革政治 …… 58

第 3 節　朝鮮時代의 啓報制度 發展 …… 63

1．朝鮮時代 統計의 制度的 發展 …… 63

2．戶口調査 制度의 完成과 評價 …… 72

3．量田制度 …… 87

4．社會改編과 近代的 統計需要의 發生 …… 93

第 2 章　近代統計의 導入과 試練 …… 99

第 1 節　大韓帝國 成立과 近代 統計導入 …… 101

1．開化期의 社會經濟的 變革 …… 101

2．大韓帝國의 統計機構 …… 104

3. 大韓帝國時代의 統計調査 ····· 111

第 2 節 日帝時代의 統計 槪況 ····· 117
1. 日帝植民政策과 統計需要 ····· 117
2. 日帝統計機構의 變遷과 報告例制度 ····· 131
3. 日帝의 統計調査와 統計近代化의 試鍊 ····· 144

第 3 節 美軍政時代의 統計槪要 ····· 168
1. 美軍政의 統計機能 ····· 168
2. 美軍政下의 主要統計 ····· 178

第 3 章 政府樹立과 統計發展期의 轉機 ····· 199

第 1 節 建國初期의 統計槪況 ····· 201
1. 政府樹立과 初期 統計機構의 構成 ····· 201
2. 建國初期의 統計活動 ····· 203

第 2 節 轉換期의 統計需要와 統計基盤 ····· 207
1. 動亂勃發과 社會再構成 ····· 207
2. 戰後復舊와 統計需要 ····· 208
3. 政治的 變革期의 統計機構 ····· 211
4. 主要統計 施策의 展開 ····· 217
5. 統計 活動의 擴散 ····· 229
6. 統計 顧問團의 活動 ····· 249

第 4 章 開發時代의 統計 發展 ····· 263

第 1 節 經濟開發 5個年 計劃과 統計活動 ····· 265
1. 開發의 目標와 統計機能 ····· 265
2. 統計法令의 整備 ····· 272

도서관장서

3. 統計機構 및 調査組織 ····· 278
4. 統計行政 施策 ····· 283

第 2 節 調査·加工 統計의 擴散 ····· 287
1. 調査統計의 發展 ····· 287
2. 國民計定 및 關聯 統計의 發展 ····· 291

第 3 節 開發時代의 主要 統計 ····· 296
1. 人口統計의 整備 過程 ····· 296
2. 農林水產統計의 體系化 ····· 310
3. 經濟統計의 發展 ····· 315
4. 統計資料處理 機器의 發展 ····· 331

第 5 章 經濟·社會發展期의 統計體系 整備 ····· 359

第 1 節 產業構造 改編과 統計機能 ····· 361
1. 重化學工業 推進의 時代的 背景 ····· 361
2. 統計行政體系의 整備過程 ····· 370
3. 產業構造 高度化와 統計需要 패턴의 變化 ····· 382

第 2 節 經濟社會發展 計劃과 統計指標 ····· 408
1. 經濟社會發展 目標와 政策課題의 調整 ····· 408
2. 統計發展 施策과 社會福祉 關聯 統計의 開發 ····· 421
3. 民主化, 地方化, 國際化 時代의 統計發展 ····· 439

第 3 節 情報化 時代의 統計 座標 ····· 472
1. 統計技法의 發達 ····· 472
2. 標本調査 技法의 發達과 展望 ····· 479
3. 情報化 時代의 統計 情報處理 ····· 520
4. 先進社會의 要件과 統計座標 ····· 526

＜附　錄＞

1．參考 資料目錄 …… 533
2．統計 年表 …… 565
3．主要統計指標 …… 587
4．參考圖表 …… 637

序　說

1. 머 리 말

統計에 대한 認識은 人類가 文明生活을 영위하면서 發生한 것이다. 計數觀念이 發生하고 集合力의 優劣比較와 集團勢力間의 評價基準 設定 등이 可能해진 것은 이른바 先史時代로까지 遡及한다.

人類가 原始時代에서 有史時代로 進入하는 과정에서 周圍의 自然現象에 適應해 오면서 단순한 生存的·偶發的 個體에서 「社會性」을 지닌 人間의 社會組織을 發展시켰다. 「社會」라는 의미 자체가 集團性을 나타내면서 社會組織에는 集團에 관한 情報가 수반되고, 自然現象이나 社會現象(人間의 作用) 모두를 集團要素로 認識하게 된다. 즉, 計數에 관한 槪念과 그 管理機能이 集團觀察意識으로 表出된 것이다.

韓國史에서는 이 集團觀察意識이 周邊文化에 비하여 특히 強調되어 왔다. 古代國家의 發生을 보면 반드시 集團規模와 領域에 관한 情報를 記錄으로 전하고 있으며, 統治組織 또한 이 集團情報의 管理機能을 重要視하였다.

한편 歷史的 産物로서 近代以前의 統計活動과 그 制度는 租稅·軍役 등의 古典的 意味의 統治要件이었으며 國勢·民政指標를 國家統治制度史, 統治行態史的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古代社會에서 集團의 主要指標는 領域과 人口 즉 版籍이었으며 이를 國家機構를 통한 圖簿管理와 調査·報告制度로 뒷받침하였다.

近代統計를 導入하기 이전에는 圖簿管理와 報告體系를 철저하게 추구하여 온데 비하여 實學時代에 이르면 實證主義的 學風에 따른 分析 및 硏究를 통해 統計的 接近方法 및 指標體系化 등이 동원되어 古典的 統計範疇에서 進一步하게 된다.

開化期以來는 帝國主義 列強이 殺到하면서 점차 統計도 새로운 變化를 맞이하게

되어 近代統計의 導入段階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나 日帝時代期間을 통하여 統計는 철저하게 日本의 行政統制에 依存하게 됨에 따라 客觀的인 統計目的으로 쓰이지 못하고 植民統治 정보로만 機能하게 되어 歪曲된 면도 없지 않았다.

光復後 開發時代와 經濟·社會發展期를 거치면서 統計는 급속하게 發展하였으며 또한 統計에 대한 照明도 急進展하여 政治, 經濟, 社會, 教育, 科學, 技術, 産業 등 部門別로 상당히 정비되어 왔다. 더욱이 統計部門史도 몇몇 주요한 研究論文이 出現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統計部門全般에 대한 體系的인 歷史書·文獻을 못지니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이에 統計廳에서는 다소 內容과 體制面에서 未洽함을 스스로 痛感하면서도 "韓國統計發展史"를 편집하여 뒤 늦게나마 出刊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學界와 統計人들의 批判과 矯正으로써 좀더 完璧한 韓國統計史가 出現할 수 있기를 所望한다.

끝으로 이册子가 發刊되기까지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연구원들의 노고와 협조하여주신 關係者들에게 감사드린다.

2. 編纂槪要

가. 編纂趣旨와 目的

韓國統計의 近代化過程에서 對內外的으로 激動을 겪으면서도 政府樹立以後에는 建國初期의 混亂과 開發時代의 許多한 試行錯誤를 극복하고 産業構造高度化와 經濟·社會發展基盤을 構築하여 왔다. 이를 統計面에서 先導하여 왔고 統計分野 스스로도 統計行政, 調査活動, 指標體系등 理論과 實務技法 모두 長足의 發展을 이룩하여 왔으나 光復初期의 混亂과 6.25事變등 政治的 變革에 의한 統計機構의 變遷 및 事業의 斷續 또는 資料消失 등으로 國家次元의 統計歷史 資料整備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韓國統計의 反省과 進路設定, 體制改善 등을 위한 각종 研究論文과 報告書가 있었고 특히 統計廳에서 「韓國統計調査現況」등을 發刊하여 왔으나 이들

은 主로 60年代 以後의 資料로서 短期的이고 分野別 統計現況 중심으로 紹介하는 정도로 活用上의 限界가 있었다. 이번 編纂事業은 이런 制限性을 脫皮하여 一般目的的 普遍性을 지닌 韓國統計의 位相을 定立하고자 韓國統計가 成長하여 온 歷史性과 함께 近代的統計理論과 技術이 導入된 開化期以後의 統計體制와 變遷過程에 대한 理解를 充足시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韓國統計와 관련한 歷史資料를 發掘·蒐集하는 한편 政府와 公共團體에서 實施한 각종 統計調査나 事務統計등 資料에 대한 法制的·機能的 背景을 밝힘으로써 韓國의 政治·社會·經濟發展過程에서 統計가 遂行한 役割과 寄與度를 統計發展史的인 視角에서 敍述編纂하며 이를 時代別·分野別 및 指標構成形態別로 綜合化함으로써 韓國統計에 관한 文獻的 保存機能과 今後의 統計活性化에 寄與함을 一次的인 目的으로 하였다.

나. 事前硏究經過

統計史編纂事業을 위해서 먼저 이에 必要한 統計歷史資料를 蒐集하고 이를 分類·整理 및 敍述하는 事前硏究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編制範圍와 內容은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 ○ 統計調査의 實施와 그 資料 作成當時의 時代的 背景과 調査體系의 變遷過程 및 時系列性 糾明
- ○ 統計關係法令, 制度, 施策 및 機構運營 등에 관한 歷史資料 集成
- ○ 統計關係 報告書, 記錄, 遺物·遺品의 蒐集
- ○ 主要統計歷史資料 및 主要文獻의 目錄作成

統計歷史資料를 蒐集함에 있어서는 國內에서 各級官廳과 公共機關, 團體, 主要圖書館 및 個人이 所藏하고 있는 資料와 日本(東京), 美國(워싱턴, 하와이)등 國外에 散在하여 있는 韓國統計史關聯 資料를 探索調査(參考調査 : Reference Search)方法과 書誌學的 參考情報源 追跡方法으로 接近하였다. 이 過程에서 人力·時間의 制限과 參考調査過程에 必要한 解題나 案內資料의 未備로 資料接近의 苦

衷이 수반되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資料蒐集 成果가 아직도 不充分한 實情이다.

한편 資料蒐集의 對象과 期間이 尨大함에 따라 編纂準備事業을 分野別; 時代別 段階를 區分하여 3個年次 計劃으로 수행하였다.

＜第 1 段階＞ 1989年度 準備事業

政府樹立以前의 近代統計以前史部分과 近代統計導入期의 統計組織과 機能 및 發展過程 硏究

＜第 2 段階＞ 1990年度 準備事業

政府樹立以後 開發時代(1960年代)에 이르기까지의 統計發展過程 硏究

＜第 3 段階＞ 1991年度 準備事業

統計基盤이 정착된 1970年代以後 現在까지의 統計發展 및 開發擴散過程 硏究

統計歷史資料의 蒐集과 事前準備硏究에 있어서는 社團法人 統友會(會長 咸萬準 ; 當時)에 「韓國統計發展史 編纂을 위한 硏究」로 學術用役을 委託하였고 이에 의하여 提出한 硏究報告書와 방대한 量의 附屬資料들이 이번 綜合編纂事業에 基礎로 活用되었다. 당시 統友會內에는 「韓國統計發展史 編纂委員會」를 설치하고 總括編輯, 管理 또는 調査統計, 業務統計 및 庶務 등 分科班을 分設하여 硏究業務를 수행하였고 統計廳(調査統計局)은 이를 支援, 協調하기 위하여 「行政支援委員會」를 設置하였었다.

統友會의 編纂委員과 硏究陣은 다음과 같다.

咸萬準(社團法人 統友會會長) 硏究責任者

郭昌權(統友會 硏究委員) 編輯主幹

李元相(統友會 理　　事) 統計制度分野

張胤錫(統友會 會　　員) 人口統計分野

張新奎(大韓統計協會會長) 經濟 및 社會統計分野

鄭寅煥(大韓統計協會理事) 人口統計 分野

申　潤(大韓統計協會事務局長) 農林水產統計分野

韓弼峰(大韓統計協會專門委員) 統計資料處理分野

吳景熙(韓國銀行 理事) 經濟 및 社會統計分野

金榮鎭(韓國農村經濟硏究院院長) 農業統計分野

金聖昊(韓國農村經濟硏究院首席硏究委員) 農業統計分野

金東熙(檀國大學校 敎授) 農業統計史·指標分野

桂勳邦(韓國保健社會硏究院 責任硏究員) 保社統計·調査技法分野

다. 綜合報告書編纂과 編輯委員會 構成

(1) 綜合編輯發刊 計劃

統計廳에서는 1989－91年 3個年間에 걸쳐 社團法人 統友會에 委囑하여 실시한 「韓國統計發展史編纂을 위한 硏究」의 報告書와 그 附屬資料등 事前準備硏究 草案을 基礎로 全般的 補完再編成을 거쳐 綜合編輯한후 發刊普及키로 하였다.

이로써 統計關聯 각 機關·團體와 學界는 물론 一般國民에게 韓國統計가 展開·發展해 온 時代的 背景 내지 統計文化史的 位相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키며 나아가 學問硏究와 政策立案에 基礎文獻을 提供코자 한 것이다.

綜合編輯計劃은 統計發展過程의 體系化라는 主題에 입각하고 있기때문에 이 點에서 「韓國統計發展史」는 統計認識의 定立過程이며 각 時代의 機構制度의 定着 및 統計的 活動의 展開와 그 擴散過程 등에 대한 統計分野別, 發展段階別 體系化이다.

編輯 및 敍述基調는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① 統計發展過程을 時代史的인 觀點에서 客觀的으로 構成·敍述토록 한다.

② 特定思想的 視角이나 政治·社會的 思潮에 따른 評價를 排除하고 當該時代의 國體, 文化, 社會, 經濟 및 國民生活등과의 周邊關聯性을 有機的으로 說明토록 한다.

③ 過去의 統計活動을 現代的 視覺에서 본 先後進槪念이나 國際比較上의 優劣評

價, 外國技法의 模倣性是非 등을 止揚하고 韓國統計部門史의 獨自的 位相에서 敍述하고 分類·編輯한다.

④ 文體, 綴字, 句讀, 用語選擇 등에 대한 自體校閱을 強化하고 事前準備硏究草案에서 누락된 것이나 錯誤記錄, 不備資料 등을 가능한 追加·矯正 또는 補完한다.

(2) 編輯機構

統計企劃局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韓國統計發展史 編輯委員會」를 構成하여 補完執筆 및 編輯業務를 審議한다. 編輯委員會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統計企劃局長	金 日 炫
委 員	總 務 課 長	嚴 準 鎔
委 員	企 劃 課 長	南 繁
委 員	人口統計課長	金 民 卿
委 員	資料處理課長	林 東 升
委 員	統友會編輯主幹	郭 昌 權

第1章　近代統計以前史

여 백

第1章 近代統計 以前史

第1節 統計認識의 出發과 發展

1. 古代人의 集團意識과 版籍觀念(古朝鮮時代)

가. 共同體社會의 出現과 檀君朝鮮

人知의 發達은 統計的 認識을 수반한다. 人類가 原始社會에서 有史時代로 진입한 것은 주위의 自然現象에 適應하며 그때까지의 단순한 生存的·偶發的 行動에서 「社會性을 지닌 人間」이 되어 사회조직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韓國史에서 BC7천년경에 이미 韓半島와 滿洲地域에 初期新石器人이 活動하고 있었으며, BC 4천년경부터는 빗살무늬土器의 出現으로 상징되는 後期新石器時代를 맞이하여 經濟生活이 단순한 채집·어로단계에서 牧畜과 耕作生活段階로 進入하면서 集團意識이 더욱 強化되어 原初的 共同體規範과 禁律이 發生하고 原始信仰과 儀式이 形成되면서 歷史의 原型을 갖추어간다.

이무렵에 文獻上으로 濊族 또는 東夷라는 人種·民族名稱이 出現한다. 濊라는 字義는 古代音韻論硏究에서 共同體(kwat→kala→khol ; <k>ho)란 뜻이 있다. 初期社會組織에서도 이처럼 同類 人的構成을 共同體化함으로써 集團性에 관한 情報를 축적하게 되며 自然現象, 社會現象(人間事象) 모두를 集團要素로 인식하게 된 것이 人文이다. 이에 計數에 관한 槪念과 그 管理機能이 發生한다. 특히 上古時代의 支配原理인 靈巫信仰도 計數觀念을 바탕으로 病人을 고치고 社會病理를 治愈하는 점서·巫祝을 행함으로써 統治秩序를 定着시켜 간다.

BC2500년경에는 근래, 西南滿洲(夏家店, 豊下등) 遺跡發掘에서 보듯이 靑銅器를 사용하는 先進優勢集團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三國遺事 王儉朝鮮條에 나오는

檀君의 建國記事도 이러한 時代的 背景을 지닌다.

古記에 이르기를「옛날 하느님(桓因)의 아들 桓雄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太伯山頂 神檀樹밑에 내려와 神市를 열어 風伯, 雨師, 雲師와 穀, 命, 病, 刑, 善惡 등 主(＝長官, 擔當職)를 두고 人間360餘事를 다스리다가 熊女와 結合하여 檀君을 낳으니 그가 王儉으로서, 王儉은 처음 阿斯達에 立國하였다가 平壤에 都邑하여 國號를 朝鮮이라고 하였다(三國遺事에서는 1500年間, 帝王韻紀에서는 1028年間). 그후에 다시금 唐藏京을 거쳐 阿斯達(弓忽山 ; 큰고을, 또는 今彌達 ; 고마丘陵)로 가서 山神(守護神, 祖上神)이 되었다」고 하였다.

紀元前 2333年으로 起源을 잡는 古朝鮮은 그 漢字記錄이 中國 周나라때에 나타날만큼 周邊歷史에 진작 알려져 있었다.

韓國史의 특징은 역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人口數와 거기에 부수되는 地域이름이나 地域넓이, 그리고 統治機構나 人文秩序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또 그 正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일본등 이웃나라나 西洋史의 大部分이 역사의 시작을 특정개인의 英雄談, 神靈談으로 묘사해 온 것과 비교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古代의 初期集團意識에서는 人口와 領土範圍가 主要對象이었다. 이른바 版籍觀念의 出現이다(版은 領土, 籍은 戶口). 桓雄이 무리 3천을 거느렸다(徒衆三千)는 그 3천을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고조선 시발단계에 아사달사회의 집단규모가 3천이었다는 기록은 나름대로의 意味를 지닌다.

한편 農牧經濟의 經營과 靑銅器의 出現은 社會階層의 分化를 수반하며 이에 古代國家發生의 必要條件을 갖춘다. 集團의 理念(弘益人間, 在世理化 등)이 형성되고 統治的 權威(天孫觀, 天符印 標識)와 統治機構를 必要로 한다. 風伯·雨師·雲師라는 君官과 將軍을 겸한 三公의 役割을 하며 職能別 主管者(主·加 등)들이 集團을 規制한다. 主命은 君長의 命을 받드는 出納＝承宣(旨)과 戶口·賦役擔當이고, 主穀이 物産·財政을, 主病은 복서와 厚生을, 主刑은 司法과 行刑制度, 主善惡은 禮와 敎化를 각기 담당하며 人間360餘事의 規範과 禁律을 다스렸다는 意味上의 表現을 지니고 있었다.

나. 衛滿朝鮮

衛滿은 朝鮮西方 邊境에서 燕將 秦開의 戰役을 겪은 지역의 族長이던 위만이 「遼間散亂」期에 「聚黨千餘人」의 집단을 이끌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와서 準王의 신임을 얻어 博士(地方官)職과 圭(權威儀式의 徵標)를 받아서 朝鮮西方의 守令이 되었다가 流亡民들을 基盤으로 「數萬」세력을 거느리게 되자 準王을 축출하고 왕검성에서 「朝鮮의 王」이 된다. 準王은 남쪽바닷길로 金馬에 이르러 馬韓王(目支國)이 되었다.

그뒤 衛滿朝鮮은 武力征服活動으로 周邊諸部族을 모두 복속시켜 一帶에 君臨하니 그 세력범위가 「方數千里」에 이르렀다.

衛滿朝鮮時代의 國勢는 對中國通商權을 농간하며 漢에 附和했던 土侯인 濊君 南閭의 세력이 28萬人이라 하였고 朝鮮解體後의 西方漢郡縣(낙랑, 현도)과 東北 및 南方列國의 初期戶口數로 가늠할 수가 있다.

2. 部族社會의 國勢分布(列國時代)

列國時代란 古朝鮮 末期에 割據한 諸部族의 復古化 過程을 중심으로 東北方의 領候國, 南方의 三韓 그리고 西方의 郡縣 등이 衝突하던 時期로 各種記錄을 통해 地域境界나 戶口數値를 接할 수 있다.

가. 北方·東方의 領候國들

<扶餘>는 一說에 BC1286年경에 고조선의 末王이 「本濊地」인 西遼河, 松花江 中上流一帶에서 古代國家(부족국가)를 출발시켰다가 BC59年경 天帝子 해모수가 새로히 君臨할 무렵에는(부족연맹단계) 「地方二千里」에 「8萬戶」규모로 된다. 虎加(總理格 : 後에 龍加)를 비롯한 馬加, 牛加등 6官加가 四出道를 맡고 官制에는 大使, 大使者, 使者 등이 있었다.

<高句麗>는 늦어도 衛滿時代에도 이름이 전해진 세력명이다. BC107年에 설

치했다는 현도군의 縣名稱속에 고구려현이 나타난 것도 그것을 반영한다. 그러다가 BC38年에 주몽이 「東明帝」로 출현할 부족연맹국가단계 무렵에는 遼東의 동쪽 천리되는 곳인 卒本을 중심으로 「朝鮮, 濊貊, 扶餘와 접하는 地方二千里에 三萬戶」가 되는 세력이었다. 초기에 이미 相加, 右·左輔, 太輔, 國相, 對盧, 沛者, 古鄒加등 大臣級과 主簿, 조의, 干(優)台, 大使者, 使者, 大兄, 小兄, 丞, 仙(先)人등 官等名이 있었다. 여기서 主簿가 出納, 戶口, 賦役을 관장하는 官職으로 律令國家時代에는 大主簿가 2品의 國相級으로 된다.

<東沃沮>는 고구려의 蓋馬大山 동쪽에서 「方可千里 五千戶」였다고 한다. 「東沃沮」가 아닌 「沃沮」는 본래 부여나 진번만큼 일찍부터 그 명칭이 전해져 온 세력이었으나 위만조선 말기에 내침해 온 漢武帝가 옥저성에 현도군청을 두려다가 실패했다는 고사가 있으며 나중에 낙랑에 속한 곳이다. 고구려의 개모성, 비사성, 발해의 남해부였던 지금의 요동반동 개평·해성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한무제침입과 고구려세력 확대때문에 동쪽으로 밀리면서 東沃沮라 하였다. 동옥저에는 功曹, 主簿등 관명과 地方의 三老같은 직명이 전해오고 있다.

<濊>는 고구려·沃沮의 남방, 辰韓(辰國)의 北方으로 「朝鮮의 東方(東南方)」에 해당한다. 이 濊地域은 記錄上 衛滿朝鮮과 漢武帝來侵 등 사건이 전해져 오는 中心舞臺이다. 위만조선 붕괴이후에 그 勢力이 東쪽만을 차지하게 되자 이를 「東濊」라고도 통칭한다. 영토가 동쪽 大海에 미치고 있으며 戶는 「2萬」이었다. 그들 官制에는 侯, 邑君, 三老, 統主, 下戶 등이 있었다.

나. 南方의 辰·三韓地域

<馬韓(金馬)>에는 54個國이 있고 大國은 「萬餘戶」, 小國은 「數千戶」씩 모두 「10餘萬戶」였다고 하므로 國勢面에서는 당시 古代社會에서 상당한 수준이었다.

三韓地域은 丘陵과 流域·海岸 등에 散在한 邑落國家들이 78國이나 되나 모두 馬韓 辰王(韓王)의 霸權下에 있었다.

辰王의 都邑 目支國 官制에는 魏率善, 邑君, 歸義侯, 中郎將, 都尉, 伯長 등 상당히 발달된(中國式表現)用語들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의 君長(渠師)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臣智, 險側, 樊濊(번예), 殺奚(살해), 邑借(또는 借邑)라고 불렀는 바

이들은 각 지역·부족국가의 地方官이면서도 한편 辰王의 補佐格으로 인정된 官職으로서 특히 軍事, 戶口, 貢賦 등을 담당했었다. 본래 이런 기능은 정치적·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後代에 律令發達의 계기가 된다.

<辰韓·弁韓>은 각기 12個國씩 24個國의 이름이 전하고 있다. 그중에 大國은 「4~5千戶」, 小國은 「6~7百戶」로서 總數가 「4~5萬戶」였다고 한다.

이중 弁韓지방에서는 狗邪國에서 처음 9干(간)이 100戶씩 「75,000人」을 통솔하면서 加耶諸國을 형성해 가는 중에 龜旨峰에서 首露王을 맞아 駕洛國을 세웠는데 9干은 또 一定地域의 族長, 渠師이면서도 9官으로서 「庶僚之長」 즉 중앙정부의 政事를 分掌하는 公廳의 長들이었다(三國遺事).

以上의 列國 國勢槪要는 아래와 같다.

古代列國의 國勢

	規模
扶餘	方可 2,000里, 8만戶
東沃沮	地方 1,000里, 5천戶
濊	(조선의 동쪽) 2만戶
高句麗	方可 2,000里, 3만戶
馬韓	각국 100里씩, 54國10余만호(大國 만여戶, 小國수천戶)
辰韓	각국 100里씩 12國 4~5만호(大國 4, 5천戶, 小國 6, 7백戶)
弁韓	

다. 西方의 部縣地域

漢郡縣이란 武帝의 來侵戰爭으로 인한 朝鮮國土의 荒廢化와 內部의 分裂 등으로 國家基盤이 解體된 以後에 朝鮮 西方에다 紀元前108~107年 사이에 樂浪, 眞番, 臨屯, 현도 4군을 둔 것을 말한다.

이地域의 세력은 BC128年경 濊君 南閭의 무리가 28萬人정도라고 하였는데 武帝來侵以後인 AD2年경에는 樂浪郡이 25縣(候國), 62,812戶에 406,748人이고 현도군은 3縣, 45,006戶, 221,845人이라고 했다(漢書地理志). 그러다가 後漢代

(AD111年경)에는 樂浪郡이 18城 61,429戶에 259,050人, 현도군이 6城 1,594戶, 43,163人(後漢書 郡國志)으로 줄고 또 다시금 晋代(AD276年경)에는 樂浪郡이 6縣에 3,700戶, 현도군이 3縣 3,200戶로 급감소하면서 대신 帶方郡 7縣 4,900戶가 추가되었다(晋書 地理志 : 人口數는 없음). 漢郡縣은 AD100년을 고비로 급격하게 쇠퇴한다(다만 樂浪의 戶口數는 異常値를 보임)

3. 律令時代의 統治官制와 圖簿管理機構(三國時代)

가. 高句麗

(1) 官制와 圖簿管理

고구려의 古代國家 完成은 4世紀 律令制度의 確立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高朱蒙의 建國으로 王姓이 高氏라고 하나 解氏(大武神王系)도 나오고 있어서 部族聯盟時代의 5部族間에 王位가 交代로 推戴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5部族은 계루부(王族系)와 消奴部, 絶奴部(王妃系) 등을 중심으로 한 統治中樞로 國相級도 이들이 대개 登用되었다.

官等은 9等級(通典) 또는 12等級(新唐書)이라고 하지만 史書의 記錄마다 官階의 起伏이 심하여 각 官名을 획일되게 理解하기가 어렵다. 초기의 고구려는 扶餘式 官名을 많이 답습하고 있으며 領域國家로 팽창하면서 古朝鮮代의 官名과 列國의 地方官名 성격이 混入되고 있었다.

고구려 官職중 國家의 統計機能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3品官인 主簿(일명 鬱折, 烏拙)로서 國家의 機密, 律令, 戶口徵發, 官爵授與 등을 管掌하면서 圖(版圖, 領域)·簿(帳籍, 徵簿)와 財政을 管理하며 軍國機務에 관한 群臣會議에 參與한다. 從2品에 해당하는 大主簿가 되면 國相級이다 고구려 初期에는 조의가 그 機能을 하였었다. 「圖簿」는 글자그대로 領域과 簿籍을 主管하면서 統治支配權을 상징하지만 後代에 가면 地域軍司領官의 指揮權을 지칭하게된다.

한편 地方의 大加(大人) 또는 優(干)台에서 發展했다고 보는 中畏大夫는 「內

評」이라고 하여 地方統攝의 內政을 관장하면서 역시 主簿처럼 圖簿管理와 徵發에 關與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古鄒大加는 賓客 또는 外評이라고도 하여 外治 즉 外交分野에서 고구려를 代表하였다고 한다. 以上의 內·外政區劃과 財政·圖簿管制를 基幹으로 統治機構를 整備하였다.

1品官인 對盧(大對盧, 吐倅)를 摠國知事(總理格)이고 고구려 傳來의 沛者와 같은 官等으로 보고있다. 後代에 나타나는 莫離支(大莫離支)도 一品官이면서 唐制度의 兵部尙書와 中書令을 겸한 國相級인데 對盧가 文臣的 領相이라 하면 莫離支는 兵權이 強調된 領相이라 할 것이다. 群臣會議는 以上의 圖·簿權을 掌握한 三品以上으로 構成하고 王權과 軍國機務 全般을 決定한다.

高句麗의 官位

三國志(魏志)	周　書	隋　書	新唐書	高麗記(翰苑所引)	三國史記
			古鄒大加		太大莫離支 大莫離支 莫　離　支 大　對　盧 對　　盧
1. 相加			1. 大對盧	比一品 토좀 (舊名) 大對盧	
	2.太大兄	1. 大 大 兄		比二品 太大兄 (一名)莫何何羅支	沛　　者
	3. 大　兄	2. 大　兄			
	4. 小　兄	3. 小　兄			
2. 對　盧		4. 對　盧			
3. 沛　者	5.意侯者	5. 意 候 者			
4.古鄒加					
5. 主　簿	6. 鳥　措	6. 鳥　措	2. 鬱　折	比從二品 鬱折 (華言)主簿	1. 主 簿(統一新羅 第七品 一吉飡에 編入)
6. 優　台	7.太大使者	7.太大使者	3.太大使者	比正三品 大夫使者	2. 大 相(統一新羅 第八品 沙飡에 編入)
7. 丞　者					
			4.早衣頭大兄	比從三品 조의頭大兄 (一名)中裏조의頭大兄	3. 位頭大兄 4. 從大相
			一以上은 國家機密·改法·徵發·官爵 授與 등을 맡음)		

三國志(魏志)	周　書	隋　書	新唐書	高麗記(翰苑所引)	三國史記
	8.大使者	8. 大 使 者	5. 大 使 者	比正四品 大使者 (一名)大奢	
	9.小使者	9. 小 使 者	6. 大　兄	比正五品 大兄加 (一名)織支 (通典에는「大兄」)	
	10. 褥奢	10. 褥 奢		比從五品 拔位使者 (一名)儒奢 (通典에는「收位使者」)	
			7.上位使者	比正六品 上位使者 (一名)契達奢	5.小相
8. 使 者				比從六品 使者 (一名)乙奢	6.秋相(統一新羅 第十一品 奈麻에 編入)
9. 조 의					
				比正七品 小兄 (一名)失支	7.小兄(統一新羅 第十二品 大舍에 編入)
	11. 翁 屬	11. 翁 屬	8. 諸　兄	比從七品 諸兄 (一名)翁屬·伊紹·河紹還	8.製兄(統一新羅 第十三品 舍知에 編入)
			9. 小 使 者		
			10. 過　節	比正八品 過節 (一名)失无 比從八品 不節 (一名)庶人 (通典에는「不過節」)	
10. 先 人	12. 仙 人	12. 仙 人	11. 先 人	比正九品 先人	9. 先人(統一新羅 第十四品 吉次에 編入)
	13. 褥 薩	內評褥薩 外評褥薩 五部褥薩			10. 自位(統一新羅 第十六品 鳥知에 編入)

註：韓國史大系, 三國編(三珍社), 1975.

(2) 國勢變動 및 流移民 統計

高句麗 初期에는 3萬戶에서 출발하여 말기에는 5部 176城 69萬 7千戶로 發展하였다. 그 全盛時(長壽王代)의 都城(平壤)은 201,508戶였다고 한다.

高句麗의 國勢變動은 征服活動의 浮沈으로 인한 領土의 팽창(卒本地域에서 西遼河·松花江·漢江유역까지)과 수축으로 그 內容이 不明이다. 한편 戰爭捕虜, 流移民 등의 記錄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다.

高句麗의 流移民 記錄

年	代	戶口移動內容
AD 19	大武神王2年	百濟旱民 千餘戶가 고구려로 망명해 옴
47	閔中王 4 年	南邊蜜支部落大家戴升등 萬餘家 樂浪郡으로 投漢
179	故國川王元年	王兄拔奇가 下戶三萬餘人과 함께 公孫度에게로 감
217	山上王 21 年	漢平州人 夏瑤등 千餘家가 옴에 柵域에 둠
280	西川王 11 年	肅愼人 6百餘家를 扶餘南烏川으로 옮김
302	美川王 3 年	현도군 포로 8천人을 평양으로 옮김
313	14年	樂浪포로 男女2천余人 잡아옴
319	20年	慕容應軍이 高句麗 如拏등 千餘戶를 포로로 잡아감
342	故國原王12年	모용황이 高句麗人男女5萬餘人을 포로로 잡아감
385	故國壤王2年	요동·현도군포로 1萬余人 잡아옴
391	廣開土王元年	거란인남녀 500명과 고구려인 1萬人을 데려옴
399	9年	모용성이 新城南蘇에 침범하여 5千余戶 잡아감
475	長壽王 63 年	백제漢城을 공격하여 8천余人포로 잡아옴
500	文咨明王9年	백제漢城의 旱民 200人이 고구려로 옴
513	22年	백제를 공격 남녀 포로1千餘口잡아옴
553	陽原王 9 年	돌궐에 쫓긴 거란인 萬余家가 고구려로 옴
607	嬰陽王 18 年	백제포로남녀 2천명을 잡아옴
645	寶藏王 4 年	唐太宗침입으로 遼州, 蓋州, 巖州 戶口7萬人 中國으로 옮김
666	25年	淵淨土가 從官 24人과 12城을 가지고 763戶, 3,543人이 신라로 투항
668	27年	고구려멸망시 3萬 8천3백호(20만명)를 잡아감

※ 領土의 擴張(遼東·遼西·扶餘·말갈지역·韓半島南部등)과 縮少에 따른 戶口數 增減은 除外됨(不明)
資料 : 增補文獻參考

나. 百 濟

(1) 百濟建國

百濟는 고구려, 신라와 달리 支配層이 他部族, 異質集團 지역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 백제의 지배층은 부여족임에도 낙랑지역에 있던 변한부족틈에 있다가 辰國·

馬韓地域에 와서 現地土着勢力의 諒解下에 十濟 또는 伯濟로 出發한다(BC18). 百濟史에는 王族으로 高氏, 餘氏(扶餘氏), 優氏가 있었고 그와 함께 解, 沙, 燕, 협, 眞, 骨(國), 昔(일) 및 木氏 등이 支配層으로 나타난다.

(2) 律令官制와 點口部

百濟가 본격적인 征服國家로 轉換한 시기는 2세기 肖古王(166~214)때부터 주변공격을 격화하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馬韓王·辰王으로서의 覇權을 確保하고 그 직후인 3세기부터는 곧 律令國家規模(體制)를 갖춘다. 이때의 主人公이 고이왕(234~286)으로 그는 對內·對外的으로 古代國家基盤을 確立하는데 16品官等과 官等服色을 정하고(260) 群臣會議, 「南堂」政事를 실시하였으며(261) 엄격한 禁律을 규정하였다(262).

三國史記 百濟本紀에서 初期官名을 보면 백제의 官制는 16品官等을 定立시킴으로써 不文律로 전해오던 高句麗의 官等에 비하여 훨씬 整然하였다.

百濟의 官位

1. 佐 平 (左 平)	(紫服·銀花冠飾) ┬ 內臣佐平(王命의 出納을 掌함 首相格) ├ 內頭佐平(庫藏을 掌함) ├ 內法佐平(儀禮를 掌함) ├ 衛士佐平(宿衛兵을 掌함) ├ 朝廷佐平(刑獄을 掌함) └ 兵官佐平(外方의 兵馬事를 掌함)
2. 達 率 (大 率)	(紫服·銀花冠飾)
3. 恩 率	(紫服·銀花冠飾)
4. 德 率	(紫服·銀花冠飾)
5. 杆 率	(紫服·銀花冠飾)
6. 奈 率	(紫服·銀花冠飾)
7. 將 德	(緋服·紫帶)
8. 施 德	(緋服·조帶)
9. 周 德	(緋服·赤帶)
10. 季 德	(緋服·靑帶)
11. 對 德	(緋服·黃帶)

12. 文　　督	(靑服·黃帶)
13. 武　　督	(靑服·白帶)
14. 佐　　軍	(靑服·白帶)
15. 振　　武	(靑服·白帶)
16. 剋 處 (克 處)	(靑服·白帶)

註：韓國史大系 三國編(三珍社), 1975.

16品官等중 1品에 해당하는 6佐平은 6尙書 또는 議政大臣격이다. 內臣佐平이 侍中(首相을 겸한 宮內大臣)格으로 王命宣納, 軍國庶政을 統轄하고 內頭佐平은 財務·國庫, 內法佐平은 敎化, 儀禮를, 衛士佐平은 宿衛(親衛軍), 朝廷佐平은 刑獄, 그리고 兵官佐平은 兵馬事를 맡았다. 左將, 左輔·右輔, 上佐平을 國相級으로 存置했다.

特記할 것은 이무렵에 벌써 官等과 官職을 區分한 것인데 上記 16品官等 以外에 22個 官府를 內官(宮內官府)과 外官(政務官府)으로 두었다.

<內官>

①前內部 ②穀部 ③肉部 ④內京部 ⑤外京部 ⑥馬部 ⑦刃部 ⑧功德部 ⑨藥部 ⑩木部 ⑪法部 ⑫後宮部

<外官>

①司軍部 ②司徒部(土地=租稅·貢物 및 文敎) ③司空部(營繕, 土木) ④司寇部(刑律法) ⑤點口部(戶口帳籍, 徵發) ⑥外舍部(外戚關係) ⑦客部(外交) ⑧綢部(財務) ⑨日官部(天文, 복서) ⑩都市部(市場, 商業)

이들 各部가 관장하는 직무는 近代國家運營에 必要한 統治機構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 특히 點口部는 司徒部와 함께 後日(고려, 조선)의 版圖司, 版籍司, 戶曹의 기능으로 發展하였는데 戶口 즉 人口調査專擔機構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司空(工·土木) 司徒(土田, 敎化), 都市(商業) 및 綢部는 産業·財政政策的 機能을 수행했었다.

國初부터의 敎化機能職은 後代에 「博士」로 特化하는데 기록상으로는 聖王(523~554)부터 出現하는 五經博士와 曆博士, 易博士, 醫博士 등이 위의 官制를 數理的 統計的으로 뒷받침하였음은 물론 新羅의 算學博士와 함께 統一以後에 戶口, 田

籍調査의 慣例化에 기틀이 되었다. 백제시대의 職能別 分化는 多樣한 博士의 직책 명칭에서 알 수 있다. 즉 上記以外에도 採(葉)博士, 互博士, 鏽盤博士 등이 전해 오고 있다. 五經博士를 비롯한 이들 學者, 機能人들은 대개 馬韓王族이던 王氏家門이 主導했던것 같다.

(3) 國勢變動 및 流移民統計

百濟의 國勢는 三韓時代의 馬韓 54國중 하나로 출발(萬余戶의 臣智國)한 이래 末期 義慈王때에는 5部, 37郡, 200城에 76萬戶로 되었다고 하며 全盛期의 都城은 152,300戶였다. 百濟가 660年에 망한 후에는 처음 唐이 이곳에다 熊津, 馬韓, 東明, 金蓮, 德安등 5都督府와 州·縣을 두어 다스렸다고 하나 곧 신라의 9州속에 포함되어 百濟故地에 熊州, 全州, 武州로 된다. 義慈王의 왕족, 장령 등 88인과 백성 12,807명은 당으로 압송했다가 의자왕은 그곳에서 病死하고 唐은 676년경에 王子 隆을 熊津都督府 帶方郡王을 삼아 本國에 入國시키려다가 신라의 統一定着과 4年間을 持續한 豊王子와 福信의 復興運動이 失敗로 돌아갔다.

百濟의 國勢는 領土의 變更에 따라 戶口數 變動은 알 수 없으나 流移民이 出入狀況은 아래와 같다.

百濟의 流移民 記錄

年	代	戶 口 移 動 內 容
AD 19	溫祚王37年	漢水東北大旱으로 部落民亡人 1,000余人이 고구려로 감.
25	〃 43年	南沃沮 仇頗解등 20余家가 부양에 오므로 漢山에 살게함.
499	東城王21年	大旱으로 漢山餓民 2천余家가 高句麗로감.
521	武寧王21年	大洪水로 9百餘家가 新羅로 감
627	武王 28 年	신라 서쪽을 공격하여 남녀포로 300余人을 잡아옴
642	義慈王2年	將軍允忠이 신라 大耶城을 함락하고 千余人을 나라 서쪽 州縣에 살게함
660	〃 20年	백제멸망시 將士88人과 百姓12,807인을 당으로 잡아감

※ 領土變動에 따른 戶口數 不明
資料 : 增補文獻備考

다. 新　羅

(1) 新羅建國

韓半島地域은 古朝鮮後期의 勢力再編成과 위만조선 초기의 領域國家 출현과정에서 北方으로부터의 부족이동과 文明史的 衝擊으로 BC3세기부터 馬韓, 弁辰(辰韓, 弁韓)등이 구체화하는 이른바 三韓時代를 맞는다. 文獻上으로는 중국 戰國時代末期의 混亂과 朝·燕戰, 그리고 秦役때문에 弁辰人들이 東南方의 辰(韓)社會로 移動하였고 準王一行이 바닷길로 南下(南走入海)하여 馬韓國을 세우며 韓王 또는 辰王이 되어 辰·韓社會의 霸權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古渠王때는 歷谿卿등 2천여호가 辰國으로 갔고 고구려초기(유리왕때)에 大輔 陜文一行이 남쪽 韓으로 갔다고 하는 것들이 당시의 부족이동과 辰國社會에 미친 衝擊을 나타내고 있다.

신라는 그중에서 조선의 유민들이 몰려있던 辰韓社會에서 12國중 하나로 出發한다. 그런데 朴赫居世의 建國史話를 비롯한 初期新羅의 支配勢力은 聯盟體로서 斯盧 6村이란 것이 있었고 始祖도 白馬를 타고 온 天孫族(移住民)과 楊山蘿井의 土着民(辰人)間의 結合을 象徵하고, 朴氏王系와 金氏王妃系와의 聯合王權임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朴氏가 王系였으나 昔脫解의 出現을 계기로 알지를 始祖神으로 하는 金氏系도 王位에 오른다(미추왕). 한편 昔氏는 後續 移住民으로서 駕洛國을 거쳐 온 것을 보면 본래 弁辰系의 一部로 南下하였다가 主力部族이 加耶聯盟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脫解系가 兄山江流域으로 東進한 것으로 본다. 弁辰系의 또한 갈래는 海洋으로 뻗쳐 倭(九州面北端)로 植民活動을 하다가 沸流百濟勢力의 南下와 함께 耶馬台說話의 天孫族을 構成한다.

脫解勢力이 冶金(鍛匠)人이라는 것은 弁辰人의 優秀한 鐵器文明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脫解가 先着勢力인 金氏, 朴氏와 다시금 聯合王權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에 國號도 斯盧(또는 徐羅伐)에서 鷄林이라고 고친다. 그러다가 王權이 土着勢力으로 넘어가서 17代 奈勿王(356~402)부터 金氏의 世襲王權이 定着하는데 이때는 朴氏系가 王妃族으로 또 朴, 金, 昔氏가 聖骨(純粹王族血統) 또는 眞骨(非王族混血系包含)로 이 骨品身分이 世襲된다. 19代 눌지왕부터는 君長의 稱號

를 麻林干이라 한다. 新羅라는 國號는 22代 智證王(500－514)때부터이고 23代 法興王부터 王號를 쓰고 있다.

新羅의 領土擴張과정을 보면 대개 西紀 1世紀까지는 兄山江流域의 慶州를 中心으로 북쪽은 삼척부근에서 남쪽의 東萊근처에 이르는 東海岸邊을 따라 洛東江 동쪽지역에서 남북으로 길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초기신라(辰韓)는 馬韓·弁辰系의 압력때문에 낙동강 동쪽으로 밀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후의 영토확장 코스를 보면 의외로 北쪽에서 남쪽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2세기에는 충북과 낙동강 상류일대를, 3세기에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병합한다. 이를 두고 초기 진한부족이 애당초 경기도지방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경주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코스를 밟은 부족활동이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4세기는 백제의 近肖古王을 전후로한 3代王들(比流, 近肖古, 枕流등 6王)의 정복활동기이고 5세기는 고구려 광개토·장수왕의 남진정책시기로서 신라의 영토확장이 주춤하던 시기이다. 그러다가 6세기초(法興王代)에는 낙동강 하류 금관가야 일대를 거쳐 6세기후반(眞興王代)에 낙동강 西쪽 유역을 병합하고 그 연장선에서 한강유역으로 진출한다. 따라서, 신라는 초기통합과정에서 자신의 同類部族인 辰韓社會를 먼저 합치고 다음 단계로 변한·가야지방을 합병하고나서 마한·백제지역과 고구려지역으로 정복활동(통합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즉 주변집단화·통합화를 거쳐서 반도통일을 이룩하게된다.

(2) 骨品制度

신라는 朴, 昔, 金 3氏族의 王權定着過程에서 骨品制가 형성되었다. 신라의 身分制는 聖骨·眞骨과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의 貴族階級 및 3～1頭品의 平民(以上 8骨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賤民과 部曲民이 있다. 身分의 差異는 統治勢力間의 親疏關係때문에 發生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原三韓時代 以來의 部族移動, 再編成의 産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는 건국초기부터 國家統治機構의 內容도 이 骨品制를 중심으로 한 族長·族閥을 重要視하였을 뿐 아니라 통치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族的性分의 重要性이 더욱 強調되어 統治原理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部族性分 保有意識이 고구려, 백제보다 強力하였다고 할 수 있다.

統一以後에도 都邑을 옮기지 않은 것도 그런 性分保存意識이었다고 본다. 그때문에 이런 骨品身分에 따른 官制·官位를 麗·濟보다 훨씬 일찍이 定立한 것처럼 歷史에 傳해온다. 官名用語는 辰韓時代의 氏·部族的 傳統과 함께 특히 馬韓과 扶餘·高句麗系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初期의 君長稱號에서 居世(西)干 尼師(叱)今, 麻立干등에서 보는 干(한)이나 智(支)에 대응하는 尺이 합쳐서 官等名에 「尺干」(찬)을 붙인 것 今, 儉, 蓋馬, 貊, 加등이 서로 對應하는 것등이 그런 영향이라는 것이다. 新羅의 17官等設定이 3代 儒理王 9年(AD32)이라는 早期記錄이 신라의 獨特한 骨品族性 保有意識의 背景이라 할 수 있다.

脫解王 3年(249)부터 나오는 南堂(君臣會議)政事制는 三韓時代以來의 氏族共同體 和白制度를 古代國家發展段階에서 統治行態속에 定着시킨 것이며 法興王 9年(522)에는 百濟服飾을 따라 百官의 公服을 紫(眞骨), 緋(六頭品), 靑(五頭品) 및 黃(四頭品)등 服色으로 정하였고 同18年(531)에는 17官等위에 上大等(上臣 : 族長會議 議長格)을 둔다. 그밖에 國相級으로 大輔가 있었으며 17品等 중 1品인 이벌찬은 角干 또는 舒發翰(舒弗감)이라고도 하였던 바 角干 金庾信은 나중에 大角干(660), 太大角干(留守를 겸함 : 668)으로 오른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出現하는 統一以前의 官名出現年代와 17官等은 아래와 같다.

新羅의 官位

骨品	京官			外官	公服
	三國史記		金石文·中國史料·日本史料 등에 보이는 其他 別稱		
↑	太大角干 大角干 上大等	(初期에는 大輔등)			
	1. 伊伐찬	伊罰한·干伐찬·角干·角찬·舒發翰·舒弗郡	一伐干·伊伐干		紫
	2. 伊尺찬	伊찬	一尺干·伊干·伊尺干 翁찬·壹早支		衣

骨品		京官			外官	公服
		三國史記		金石文·中國史料·日本史料 등에 보이는 其他 別稱		
		3. 通 찬	通判·蘇判	通干·迎干·齊旱支		
		4. 波 珍 찬	海干·破彌干	破彌干·破이干		
		5. 大 阿 찬		大阿干·大阿尺干·韓阿찬		
(眞骨)		6. 阿 찬	阿尺干·阿粲 重阿찬－四重阿찬	阿干·謁旱支		
		7. 一 吉 찬	乙吉干	一吉干·乙吉干·壹吉支	嶽 干	
		8. 沙 찬	薩찬·沙咄干	沙尺干·沙干	述 干	
		9. 級 伐 찬	級찬·及伐干	及尺干·及干·及伏干·及伐干·級伐干·及찬·汲찬·壽見旱支	高 干	緋衣
	六頭品	10. 大 奈 麻	大奈末 重大奈麻－九重大奈麻	大奈摩干·大那末·韓那末	選 干	青
	五頭品	11. 奈 麻	奈末 重奈麻－七重奈麻	乃末·奈摩·奈麻體	上 干	衣
	四頭品	12. 大 舍	韓舍		干·次干	
		13. 小 舍	舍知			黃
		14. 吉 上	稽知·吉次·幢	吉之	一 伐	
		15. 大 鳥	大鳥知		一 尺	
		16. 小 鳥	小鳥知		彼 日	衣
		17. 造 位	先 沮 知		阿 尺	

註：韓國史大系 三國編(三珍社) 1975.

(3) 律令制定과 官制改革

전통적인 骨品制에서 시작한 新羅의 官制는 法興王 7年(520)의 律令을 制定할 무렵에 官職과 官府를 갖춘다.

官府中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法興王 4年(517)의 兵部(外兵馬事)이며 그 官職은 令이었다. 그리고 王18年(531)에 上大等을 두었는데 國史摠知(總理)이다. 眞興王이 즉위하자 異斯夫를 兵部令으로 삼아 征服法動을 強化하였다. 兵部令은

찬官位가 맡았다. 武官職名에는 將軍以外에 大官大監, 諸大監(阿찬級)이 생기고(549) 軍團(部隊)長을 幢主라 하였다. 漢江流域을 차지하고는 「新州(慶州)」에 金武力(金庾信의 祖父)을 軍主로 삼고(553) 地方의 小京에는 「仕臣」을 두었다.

眞德王時에는 官制를 더욱 發展시키는데 먼저 王5年(651)에 건국초부터 있던 稟主를 변경하여 執事部를 두고 파진찬 竹旨로 執事中侍(侍中 : 領相級)를 任命하였다. 稟主란 본래 國家의 物庫·穀倉을 관리하던 倉主의 뜻이며 軍國政體가 본격화하자 王政의 中樞인 機密을 담당토록 하였으나 執事部에 中侍를 설치함으로써 그 役割을 承繼시켜서 國家의 機密, 出納=承宣과 庶政을 管掌하는 政務最高機關이 되었다. 族長會議 議長格으로 貴族을 代表하여 王權을 補佐하면서 古代社會의 國政을 總理하던 上大等의 기능을 흡수하고 上大等은 貴族元老의 名譽職이 되었다. 집사부의 설치는 王權의 強化인 것이다.

이해에는 또 左理方府(法制, 檢·糾案 ; 令은 王6年에 임명)를 두었고 稟主에서 執事部 中侍職을 分離 新設함에 따라 倉部(財務)를 독립시키고 그밖에 工匠部(工藝, 建設) 및 彩典을 두었다.

新羅의 統治機構는 6세기부터 征服國家로 躍進하면서 軍國政體를 確立해가는데 특히 兵部, 位和部, 禮部에 重点을 두고 租稅, 國庫에 관한 機構(調部, 倉部, 工匠部)의 정비와 國內資源의 機動化機構(乘部, 船府署, 市典등)에 優先을 두었다. 아울러 엄격하고 공정한 律法社會의 유지를 위해 左理方府나 賞賜署를 統一以前에 이미 마련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것을 모두 上大等(南堂, 和白會議)을 대신해서 中侍(執事省)에게로 승계시켜 여기서 軍國의 機密, 法令, 賦役, 徵發 등에 관한 政事를 總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骨品政治의 틀을 벗어나 貴族的 官僚層을 형성할 基盤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官制整備에도 불구하고 統一以前의 統治機構속에는아직 國家總力을 統合하는 實務部署, 특히 圖·簿를 管掌하는 高句麗의 主簿나 百濟의 點口部같은 版籍管理體制가 未備되었다고 할 것이다. 前代의 稟主機能이 아직 分化가 不完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駕洛國記(三國遺事)에 보면 駕洛의 官制에서는 9干의 명칭을 고치면서 新羅의 「職儀(職制)」를 따라 馬干, 阿此干, 級干 등을 두었다고 하고(下級官僚=官職名은

中國式官制를 混用) 그밖에도 王妃의 父君 官職名에서 보는 宋正監, 司農卿, 沙干, 水爾 등이 있었다. 司農卿이란 본래 版籍(土地와 戶籍)을 擔當하는 官名이다. 이로써 신라에도 통일이전에 版籍을 담당하는 官職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국통일 이후의 관제와 인문사회적 기구를 더욱 발전시켜 戶口帳籍, 量田(土地調査) 및 地方報告制度 등이 정착해 가는 중에 나타난다.

新羅도 國初부터 王이 직접 巡撫하거나 救恤을 장려하고(赫居世17:BC41, 農桑勸奬. 南海15:AD18, 가뭄, 倉穀救援, 儒理9:AD32 길쌈장려등) 特使(御史)를 파견하여 州·郡을 監理(AD90)하는 慣行을 정착시켰다. 統一以前에 25件의 記錄이 있다. 이 廉察(巡撫, 督察)慣行이 後日에 御史制度와 地方報告制度發展에 기틀이 되었다.

(4) 國勢變動 및 流移民 統計

辰韓의 斯盧 6村에서 출발한 이래 영토와 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기의 국세규모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다만 新羅全盛時의 경주民戶가 178,946戶였다고 하는데 이는 통일이후 9세기 초의 정황이다.

統一以前에 신라의 流移民移動狀況으로 중요한 것은 儒理王 14年(AD37)에 樂浪人 5千名과 帶方人이 투항해 오니 6部에 살게 하였고 소지왕 13年(AD491)에 百濟의 기아민 6백余家가 新羅로 망명해 온 것, 그리고 文武王 6年(666)에 고구려 貴臣 淵浮土가 從官 24人과 함께 12城 763戶, 3,543人을 거느리고 신라로 투항해 오니 이들을 中外에 살게 하였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4. 文民統治와 定例調査의 發生(南北國時代)

가. 渤海

(1) 渤海建國

高句麗는 都城이 함락된 후 한 때 延武나 安勝·劍牟岑등의 復興運動에도 불구하

고 大高句麗의 榮華는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멸망은 평양성과 주변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羅·唐軍의 직접지배에서 벗어나 각기 「고구려」를 칭하고 있었다. 특히 압록강이 북의 당에 항복하지 않은 域이 北扶餘城, 新城州, 遼東城州, 安市城(安寸忽=丸都城)등 11個이었고 이들이 渤海建國의 基盤이 되었다.

고구려 遺將 大祚榮은 營州(朝陽부근)에서 일어나 天門嶺(東遼河支流:輝發河上流 山城子)決戰에서 승리한 餘勢를 몰아 계루故地 東牟山(吉林敦化縣 西古城子)을 근거로 처음에 震國을 세워 年號(天統)를 채택하였다(「渤海」國號는 天統15年=713부터사용). 그리고 渤海의 規模는 처음 地方 2千里에 十余萬戶라고 한다.

渤海의 最盛期는 第10代 宣王(818~830)때로서, 이때 영토가 「부여·옥저·변한 조선의 海北諸國이 모두」였다. 北은 흑룡강 北岸, 東은 東海, 西는 遼河 그리고 南은 淸州江(德源)과 元山灣(신라의 泉井郡)線에서 신라와 접경한다. 이때의 戶口數는 不明이나 地方이 5千里라고 한다. 宣王은 또 官制를 整備(唐制化)하고 지방행정제도를 확립하여 5京, 15府(都督 또는 節度使), 62州(刺史)에 300余個郡(郡丞)·縣(縣丞)에 이르는 데다, 文物制度를 完備함으로써 이른바 「海東盛國」이라고 하였다.

(2) 官制

渤海의 官制에는 8品階級(秩)이 되었다고 하며 服飾色만이 아니라 牌札로서도 구분하였다. 中央官制에는 政堂省의 大內相을 首相으로 하고 宣詔省(左相), 中臺省(右相)의 三省制를 택하고 그중 庶政은 政堂省(中國의 常書省, 新羅의 南堂→執事省해당)에 속하되 그 構造도 左司政과 右司政으로 나누며 左·右司政(次官級은 左·右允)이 각기 6部씩 맡고 있었다. 이로써 보면 左·右相이나 左·右司政같은 左·右의 구분은 官階의 差等이라기보다는 단순한 分野別 分掌인 것같다. 다만 각 司政밑의 6個部는 다시 本司(本廳)인 3個部(長은 卿)와 支司 3個部(長은 郎中)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밖에 附屬官府로서 中正台(監察)와 10個의 寺·院등이 있다. 그런데 9世紀中葉에 唐使가 와서 複寫(繪寫)하여갔다는 渤海官制에는 10衛 120司가 있었다고 하므로 발해의 官制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있다. 이들이 中央 3省 6部와 11司寺를 중심으로 비교적 정연하게 系統化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唐에서는 발해의 官制를 그들 官制와 對應시켜 說明하고 있다(官制表에서 괄호안에 唐의 官名表示). 그러나 用語表現에서는 唐의 표현관제와 많이 차이가 있는데 大內相이나 左·右司政같은 것과 本司에 속하는 각 部의 명칭도 忠, 仁, 義, 智,禮, 信 등의 用例와 각 部에 直屬支司6部를 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 本司6部의 기능은 支司部 名稱과의 관련에서 그 기능을 알 수 있게 되어있다.

즉 左司政 밑의 仁部가 戶部(戶口, 民政)와 倉部(財政)업무를 管掌하고 右司政의 禮部가 刑律과 함께 審計業務와 관련에 있으며 한편 實務官司로서 司藏寺(租稅, 貢賦)와 大農寺(版籍, 圖簿)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점에서 발해도 역시 版·籍과 圖簿管理機構는 있으나 광활하고 넓은 국토에 복잡한 多民族構成의 領域國家를 統治하면서도 고구려같은 軍國體制나 新羅의 內的統合助成같은 統治機構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盛唐文物의 도입과 渤海史 全期間을 통하여 지속된 平和時代를 지나며 文民統治를 지향하다가 原蒙右系인 거란에게 歷史를 넘겨주고 만다.

나. 統一新羅

(1) 文民統治傳統의 形成

韓滿地域에 있던 高句麗·百濟를 멸망시킨 후, 新羅는 麗·濟殘存勢力의 復興運動과 唐의 強壓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비록 高句麗領土중 大同江以南만을 확보하였지만 半島內의 統一를 完成하였다.

여하튼 신라가 大同江以南이나마 半島안을 통일하자 새로 확장된 지역을 포함한 全國의 統治組織을 재편성할 수밖에 없어 종전과 같은 骨品制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백제·고구려유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支配層을 흡수하면서 이들에게도 적당한 身分的 地位를 부여해야 하고 확장된 영토·인구만큼이나 多樣해진 통치조직의 직능화로 官僚層의 確保가 불가피하였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氏族을 基盤으로 하는 地方世族도 지방행정관 등으로 흡수하는 體制定着이 시급하였다. 이 점에서

新羅統一期는 地方世族의 分權化를 억제하고 철저한 中央集權的 統治制度를 추구하며 그 통치주역으로서의 貴族的 官僚制度 形成期라 할 수 있다.

統一과 中央集權的 文民文化의 定着過程에서 中央과 地方間의 통치情報確保의 必要性때문에 地域情勢把握을 위한 調査記錄의 定例化와 確認·報告制度가 이무렵에 發生한다. 이는 地方世族 官僚의 跋豪를 막고 中央集權的 統治機能을 극대화하기 위한 廉察(御史派遣)이 制度로서 정착하는 배경이 되었다.

(2) 統一新羅의 官制

신라는 國初以來의 骨品制에서 出發하여 三國爭霸期에 律令과 官制를 정비하였으나 통일후에는 統治體制를 더욱 整備하여 三國史記 職官志에 보면 中央의 官府만해도 거의 200余를 헤아리게 된다.

우선 骨品制와 17官等을 유지하면서도 王權의 專制를 위한 職官制를 構築하고 執事部(興德王 以後는 執事省)가 行政의 中樞로서 國家機密事務를 총괄한 것이다. 執事部의 長인 中侍(景德王以後 侍中)가 庶政을 統攝하자 貴族代表인 上大等으로 하여금 國政의 中心에서 後退하게 하였다. 그리고 執事部보다 먼저 設置되어 軍國全般을 맡았던 兵部로부터는 독립된 기능을 지님으로써 軍과 政이 분리케 되었다. 무엇보다 調部(貢租)와 倉部(財務)도 兵部와 同格의 官位(太大角干~대아찬級)가 임명될 만큼 重視하였다. 이 점에서 신라의 兵部令 大角干은 兵部尙書와 中書令을 겸하고 있었다는 고구려의 大莫離支와 달랐다. 이들이 最高官府로서 王命承宣, 軍國機密, 租稅財政貢賦와 戶口徵發 및 圖簿管掌의 機構였다.

이렇게 통일을 전후하여 各種官府와 附屬官署를 보완하며 8세기 후반에는 약 200余個를 헤아리게 되는바 상대적으로 從來의 軍國體制를 文政體制로 轉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官署의 長들 중 文官職에는 대아찬級(5等官位:眞骨系)以上으로 任命하였으나 武官職과 地方官職은 眞骨에 해당하는 것이 將軍, 都督 및 仕臣등 몇몇뿐이고 大監, 幢主, 太守長史, 縣令 등은 모두 아찬(6頭品) 또는 大奈麻(5頭品)以下로 보직토록 함으로써 中央의 官僚層이 專門職化하고 이들에 의한 文民優位로 官制를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神文王 2年(682)에 설치한 「國學」은 景德王代에 「大學監」으로 改名하면서 卿, 司

僕, 博士, 助教등 教授職과 大舍·主簿, 史 등의 事務職 직제를 강화하여 이를 官制上 禮部에 所屬시킴으로써 儒教的 教化·統治理念을 실현하고 教學을 信仰生活(佛教, 神教)과 分離함으로써 禮制에 의한 德治主義를 지향하였다. 이는 후에 元聖王4年(788)에 經史中心의 科擧制度 原型인 讀書出身科의 설치로 人才登用의 文民優位를 더욱 공고화 하였다.

(3) 律令制度의 完成과 算學職

太宗王 元年(654)에 律令을 深層研究하고 理方府格 60餘條를 整理한 以來 景德王代에는 州郡縣을 改編하면서 同王 17年(758)에 律令博士 2名을 추가하여 特別官府인 律令典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職員令」(同王 18年, 759)의 制定으로 官制를 뒷받침한데 이어 「公式令」(哀莊王 6年, 805年: 公式20余條頒布)을 비롯하여 각종 「令」을 제정반포하였다(興德王代 까지). 즉 官位令, 職員令, 祠令, 戶令, 學令, 選擧令, 軍防令, 衣服令, 儀制令, 樂令, 公式令, 賦役令, 器用令, 屋舍令, 車騎令 등이 그것이다.

律令格式을 完備한 新羅의 統治體制는 完成期를 맞으며 國家의 版籍·圖簿管理機構와 統治情報도 律令體系內에 定着한다. 上記 「令」들 중에 「公式令」과 함께 「戶令」, 「田令」, 「賦役令」 등이 新羅의 統計·報告에 관한 基本的 法令事項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內容들을 알 수가 없다. 다만 現存하는 이 시대의 統治史料 속에 그 片鱗이 보일 뿐이다. 統計·報告關係業務는 帳簿管理, 租稅, 賦貢, 戶口, 徵發을 主管하는 執事省과 倉部, 調部를 비롯하여 각 部署(府部典署)들에게도 그 기능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特別官府로서 租典, 物藏典, 給帳典, 市典, 廩典 등과 左·右司祿館 등이 그것들이다.

景德王代에 官制를 改編하면서 官職名을 漢字式表現로 고쳤는데 그 중에 大舍를 「主簿」 또는 「主書」라고 하였고 그 밑의 舍知는 官廳屬性에 따라 司庫, 司倉, 司例 등 「司」의 官員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新羅官位의 11等官位以下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最下位 官職인 「史」와 함께 實務官吏였다. 이들 主簿와 司職들이 각 官府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版籍·圖簿의 業務를 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보아 新羅統一期의 圖簿業務는 고구려나 百濟보다 實務를 重視한 中堅管理職의 所管이었던 것

같다.

그보다 앞서 聖德王 16年(717)에 算學博士를 두었는데 이제 算學은 匠博士 天文博士(司天博士) 등과 함께 實務上의 算學職으로 定着하였다.

(4) 定例化하는 戶口調査와 量田制度

以上과 같이 統一期新羅는 中央集權的 文民統治의 勵行과 中央및 地方官制·土地制度의 整備, 律令格式의 完成, 圖簿職과 算學職 및 地方檢察·按撫使 派遣制度 등의 定着으로 調査·報告體制도 相當한 水準으로 發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戶口와 土地産物의 調査도 定例化하는 趨勢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官制가 確立된 景德王代(742－765) 資料중에 3年마다 村落單位로 人口, 耕作地, 動植物, 家畜 등을 조사해서 軍丁, 賦役, 租稅에 충당하는 統計支援의 制度化를 보게 된 것이다.

가령 이무렵 西原京(淸州地) 및 그 부근 4個部落을 調査한 民政文書인 戶口帳籍(日本 政倉院 所藏)을 보면 孔烟이라 부르는 일반 戶를 丁의 數規模에 따라 9等級으로 區分하고, 人口는 男女別, 年令階層別 및 身分別로 6等級으로 區分하여 調査하였다. 또한 土地는 所有(所管)別, 田畓(耕作形態)別로 土地의 結數와 部落의 크기를 나타내고 아울러 家畜, 果樹를 種別로 調査하고 있다. 이 조사자료는 또 3年간의 計數變動도 나타내어 3年週期調査임을 알게 하여 주고 있다.

孔烟(戶)等級 :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

人口等級 : 丁男(丁女), 助子(助女子), 追子(追女子), 小子(少女子), 除公(除母), 老公(老母)

耕地區分 : 官謀田, 麻田(以上 國有地), 內視令畓, 村主位畓(以上 地方官 職田), 烟烏有畓(民有地)등.

産物種類 : 米穀, 牛·馬, 뽕, 자작·가나무 등

3년마다하는 이 調査慣行은 그 뒤 高麗와 朝鮮代의 戶口調査로 이어져 근세조선 말까지 지속되었다. 土地와 産物調査는 後代에는 20年週期로 된다.

戶口에 대한 記錄은 上古때부터 있었다고 하나 戶口帳籍(戶籍登記)制가 定型化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一族의 生活根據地(本鄕, 本貫, 本籍地)를 위주로 한 戶長·

戶主制가 發展한다.

이 西原京 戶口帳籍은 그 지역의 戶口를 조사해서 집계한, 말하자면 調査結果의 總括表와 같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高麗時代의 戶口單子와 같은 戶口調査樣式(戶籍票)을 사전에 準備해야 하므로 이 戶籍票 作成의 起源은 훨씬 오래전으로(律令이 갖추어지는 시기) 소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5세기무렵의 戶籍으로 判讀되는 것이 있었다고 하나 六典體制가 完備된 것은 唐代(618~907)以後로 보고 있으므로 新羅가 統一以後에 盛唐文物과 교류하면서 곧 律令格式에 따른 戶籍作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西原京 戶口帳簿 이외에도 新羅末期의 五鵲岬柱貼(三國遺事 券 4 寶壤梨木條)와 塋(돌)白寺柱貼(同卷5, 明郎神印條)등에서 柱貼(帳籍)이란 用語와 人名, 職役, 年令등 戶籍簿記載上의 內容이 있음을 注目된다.

戶口帳籍의 作成는 國家의 賦稅制度에 基礎가 되므로 量田制(土地調査)와 대개 관련해서 실시한다. 그로써 量案(土地台帳)을 만든다. 西原京 戶口帳籍도 內容을 보면 量田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土地面積, 產物등). 또 金石文으로서 周仙寺石燈記에 보이는 「田券」에 新羅統一期(891)의 土地所有關係, 位置, 東西南北의 四標, 渚畓과 奧畓의 面積(結)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一定한 節次의 量田과 量案에 의한 것이다. 이때의 量田體制가 高麗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라는 영토와 인구가 계속 늘어나 流動的이었고 麗·濟地域에 대한 統合體制整備도 서둘어야 했는데 그 末期에는 지방호족의 발호와 後三國時代(892~936)突入 및 後代에 수차례의 戰亂으로 全國規模의 戶口調査나 量田關係의 資料가 전해진 것이 없다. 다만, 都城規模는 全盛期(憲康王代 875~885)에 1,360坊, 55里에 178,936戶였었다. 이무렵의 신라영토는 淸川江 流域으로까지 回復하였다.

다. 後三國時代

신라의 오랜 泰平安逸은 51代 眞聖女王(887~897)代를 고비로 급격히 혼란에 빠지면서 將軍과 城州들의 割據로 王都周圍나 겨우 유지할 정도였다.

地方勢力 중에서 梁吉(原州地方), 箕萱(竹山), 甄萱(全州→武州=光州地方)과 梁

吉의 基盤에서 일어난 新羅王族인 弓裔(松都→鐵圓地方), 그리고 弓裔의 將相出身인 王建(開城地方)이 主人公들이었다.

궁예는 곧 강원도 일대를 차지하고 將軍을 자칭하면서(894)부터는 스스로 「開國君」이라 하고 王建을 鐵圓郡太守로 삼는등 內外官職을 두었고(895) 그뒤 王建을 侍中에 任命하였다.(913)

泰封의 中央官制

總府	廣評省(匡治奈=侍中, 徐事=侍郎, 外書=員外郎등)
(中央官府)	兵部(軍事)
	大龍部(財政:高麗의 倉部)
	壽春部(禮部)
	奉賓部(禮賓, 外交)
	義刑台(刑部)
	納貸部(租稅·貢賦:高麗의 大部寺)
	調位部(高麗의 三司:錢穀出納會計, 民戶와 版籍·圖簿·徵發담당
	內奉省(都省, 宮內府)
	禁書省(秘書省)
(特需官府)	南廂壇(廟堂管掌:高麗의 將作監, 結工監에 해당)
	水壇(水部)
	元鳳省(翰林院)
	飛龍省(車馬擔當, 太僕寺)
	物藏省(小府監)
	史 臺(諸譯書를 掌習함)
	植貸府(果樹栽植:農作담당)
	障繕府(城隍堂담당 修理)
	珠淘省(器物製作담당)

※ 高麗의 三司는 司度, 金部, 倉部로 후에 版圖司, 戶部, 戶曹로 된다.

平安道, 黃海道, 京畿道와 忠淸道(北部)일대를 석권한 궁예는 國號를 처음의 高麗에서 904年에는 摩震으로 고치고 年號(武泰)와 함께 官制를 정비하였고 905年에는 都城을 鐵圓으로 옮기면서 911年(孝恭王 15年)에는 國號를 泰封이라고 하였다가 918年에 諸臣·諸將의 추대를 받은 高麗太祖 王建에게 王位를 빼앗겼다(919年에 開京으로 定都). 이무렵 後百濟는 全羅道와 忠淸(南部) 및 慶尙(西部) 一帶를 支配

하였다.

泰封의 官制에는 品職으로 王匡, 元輔, 大相, 元尹, 佐尹, 正朝, 甫尹, 軍尹, 中尹등 9官이 전해오나(三國史記 弓裔列傳) 高麗史(職官志)에서는 이를 大宰相 重副 , 台司訓, 甫佐相, 注書令, 光祿丞, 奉朝判, 奉進位 및 佐眞使로 記錄하고 있다.

官職으로서는 중앙에 白官을 총괄하는 廣評省이 있는데 이는 渤海의 政堂省, 新羅의 執事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侍中格으로 「匡治奈」가 있고 그 밑에 侍郎格인 「徐事」와 員外郎格인 「外書」가 있었다.

泰封의 官制는 처음에 新羅官制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후에 정비한 것으로, 官制 중 중요한 것은 大龍部(財政總括:高麗의 倉部에 해당), 納貸部(租稅, 貢賦담당:高麗의 大府寺)와 함께 調位部인데 이는 高麗의 三司와 民官에 해당한다. 調位部는 國家의 錢穀, 出納, 會計를 관장하며 이에 必要한 戶口 및 版籍, 圖簿와 함께 徵發業務를 총괄하였다.

실제로 高麗의 三司는 司度(度支), 金部, 倉部의 총괄의정관부이며 民官이 戶曹로 발전한다. 戶曹는 고려一代를 통하여 版圖司, 民部, 戶部 등의 名稱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版圖가 版籍과 圖簿를 일컸는다.

第2節 高麗時代의 統計史的 意義

1. 國家統治機構와 算學職定着

가. 高麗建國

新羅末期에서 高麗로 移行하는 時期는 古典的 文物制度의 完熟과 社會構造變動에 따른 變革期였다. 古典時代를 지탱해 온 眞骨王族이 分裂·解體되고 그대신 儒敎的 人文統治觀과 貴族官僚層의 形成으로 新進士類(특히 六頭品出身)들이 社會의 主導者役을 담당하게 되었다. 地方에서는 大土地兼倂과 田莊擴大로 祿邑·田制가 붕괴함으로써 地方의 世族들이 實勢로 登場하여 城主와 將軍들이 自立하고 軍鎭勢力化했다. 한편 統一以後의 신라는 海上發展活動으로 山東半島에서 折江省에 이르는 中國東海岸 곳곳에는 新羅人의 集團居住地(新羅坊)와 商館·領事館(新羅館), 寺院(赤山院등 新羅院), 公館(摠管)등 區域이 설정되어 이들과 國內支配層間의 關係도 密接하였다. 장보고(?~846)의 活動도 이무렵이다. 거기에 韓半島地理를 基本으로 한 風水思想이 풍미하고 지금까지 王室과 貴族中心의 傳統的「敎宗」佛敎를 대신하여「禪宗」佛敎가 民衆的 基盤을 확산하고 있었다. 이들 新進指導層에 이끌린 民衆蜂起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거기에 발해의 멸망으로 고구려계인들이 대거 流入하였다.

나. 統治機構

고려는 건국초기에 영토의 확장과 內的統合, 民生安定에 主力하고 통치제도면에서는 泰封과 新羅의 例를 답습하면서 紀綱再建의 改革主義를 택하였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中央集權的 統治를 지속하되 地方世族에게 해당지역에서 마치 중앙정부 직제와 유사한 行政組織을 그대로 지니게 하는 準封建制的 性格을 維持하고 있었다. 國初까지도 堂大等(戶長), 大等(副戶長)이니 戶部, 兵部, 創部등의 鄕職과 鄕吏

를 인정하였다. 이 3개의 地方官部는 戶口, 賦貢, 徵發 兵役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지방의 世族을 事審官으로 삼아 出身州의 鄕吏를 다스리게 하고 이들 鄕吏의 子弟를 人質로서 中央에 들이게 하는 「其人」制度를 썼다. 이때의 鄕職의 職階는 泰封때의 職名과 거의 유사한 大匡, 正匡, 大丞, 大相, 甫尹 등이라 했다.

高麗의 官制가 틀을 잡은 成宗(981~997)때까지 州府郡縣에 中央에서 官吏를 직접 파견하지 않고 地方自治에 위임한 채 徵視督勵官이라 할 「今有」나 「祖藏」를 보내는 정도이고 이 전통은 高麗一代를 통하여 지속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外職에 三京의 留守官이나 牧使官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監察使(御使)의 職名이 많다. 이들이 韓國的 御史制度와 地方踏險(實査)의 기틀이 되었다.

成宗은 卽位元年(982)에 中央官制를 改革하며 同2年에 地方를 12州(牧)로 나누고 州府郡縣의 官吏職을 戶長, 副戶長가 司戶(戶部), 戶正, 司兵(兵部), 兵正, 司倉(倉部), 倉正 등으로 고쳤다. 그리고 諸村의 大監, 弟監을 村長, 村正이라고 하며(987) 同王 14年(995)에는 全國을 三京, 四都護府, 十道로 나누었다(顯宗때인 1018年에 四都護·八牧制로 됨)

다. 三司와 戶部

한편 中央官制도 9品中正法(18品階)에 의한 官位를 설정하되 統治機構面에서는 國初(太祖때)까지는 廣評省(御史都省:尙書省:侍中), 內奉省(尙書都省), 內議省(內史門下省), 三司(度支, 金部, 倉部)와 六部에 해당하는 選官(吏部), 兵部, 民官(戶部), 義刑臺(刑部), 禮官(禮部), 工官(工部)등 대부분 泰封때의 職制를 답습하고 그 밖의 官署는 統一新羅의 官制를 導入하였었다. 따라서 이무렵의 三司는 「中外의 錢穀, 出納=承宣, 會計」등 국가財政을 총괄하는 기구로 廣評, 內奉, 內議省 등과 함께 國政의 中心이었다. 이 三司는 民官이 尙書戶部로 될때(成宗 14年), 일시 尙書官支, 尙書金部, 尙書倉部로 하였다. 이 三司가 版籍, 圖簿의 本部라 할 것이다.

고려의 中央官制는 점차 정비되어 光宗(949~975), 景宗(975~981)代에 貴族세력을 억제하며 廣評省과 內議省 기능을 약화시켜 內史省(中書省)과 門下省으로 바꾸

고(실제로는 中書門下省임) 兵權을 兵部로 압축해 간다. 그러다가 成宗代에는 內外官職의 大改革으로 中央集權的 統治體制를 確立하여 三省(실제는 2省), 六部, 9寺制의 틀을 갖추어 文宗代(1046~1083)에는 高麗前期의 官制가 定着한다.

三省은 國政을 總括하여 그중 首相格인 門下省 侍中을 비롯한 5人의 「宰臣」들이 實權을 지니고 있었고 尙書省 소속의 六部는 尙書都省과 吏, 兵, 戶, 刑, 禮, 工의 6尙書로서 國務의 政策的 官府이다. 9寺는 庶務(實務)分掌官衙이다.

그밖에 中書門下省의 宰府(宰臣)를 견제하기 위하여 둔 中樞院은 「出納·承宣과 宿衛 및 軍機의 政事」를 관장하는데 그중 判院事등 7人의 樞府(樞密:樞臣)가 中書門下省의 宰府와 같은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宰臣과 樞臣을 宰樞라하며 이들의 合座協議機關을 都兵馬使라 하여 國政全般을 滿場一致的으로 審議하였다.

官職의 位階는 王→宰樞→尙書(6部)의 順이지만 王權의 強化시기에는 王↔尙書間의 「直奏」관계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실상 尙書의 官位는 正三品官이지만 尙書중에는 樞密(樞臣)이 겸직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判事制」라고 해서 가령 判吏部事는 首相이, 判兵部事는 亞相(副首相), 判戶部事는 三宰(第3相:즉 第2副首相)가 겸직하였다. 그만큼 吏部(공무원 임면), 兵部(軍權) 戶部(戶口 및 圖簿)사항을 重視하고 있는 것이다.

라. 算學職의 分布

高麗의 統治機構에서 統計機能, 算學職의 役割과 地位를 보면 官制의 分化·進化過程과 함께 人材養成·人材選拔 行態와 관련이 있다.

먼저 人才養成機關으로 成宗11年(992)에 설치한 經學中心의 國子監을 두고 이것이 고려말에 成均館이 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보다 전에는 고려태조때에 이미 京學을 두었던 만큼 국초부터 人材敎育을 重視하였고 光宗 9年(958)에 시작한 科擧制度로서 이들 人材를 選拔하였었다.

國子監에는 지금의 單科大學에 해당하는 國子學(3品以上 子女), 太學(5品以上), 四門學(7品以上)등 經學中心의 貴族子弟를 敎育하는 區分이 있었고 律學, 書學과 算學에서는 8品以下의 子女와 庶人을 가르쳤다. 이중 算學敎育에 算學博士를 두었

다.

한편 地方敎育에도 注力하여 成宗때 全國12牧에 經學博士와 醫學博士 1人씩 (24名)을 파견하여 地方人材를 교육하였는데 그와 함께 鄕校(成宗11年)를 설치하여 鄕學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鄕校制度는 이미 신라통일시기에 淸州등에 「學院」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였고 太祖13年에 다시 西京에 學院을 둔 바가 있었는데 成宗때의 地方「學校」를 거쳐 仁宗때부터 鄕校라는 말이 정착한다(晋州鄕校, 江華鄕校, 富平鄕校등). 中央에도 東西學堂(元宗時)등 5部學堂이 있었으나 이무렵에는 九齋學堂(崔冲文憲公徒)등 私立學校가 번성하여서 都城인 開京에만도 12徒가 있었다. 이들 鄕校와 私學에서는 成宗때의 12牧派遣博士의 職能과 관련하여 經書와 함께 醫學을 가르치고 나아가 國子監의 敎科課程이나 科擧試驗 科目인 律法, 書學, 算學, 地理學, 醫學, 呪噤(卜시)등 技術職, 雜業도 가르쳤다.

그것이 고려시대에 算學 내지 統計職이 定着하는 制度史的 意義를 지닌다.

高麗의 算學職(高麗史 百官志)

官府名	計士	算士	官府名	計士	算士
尙書都省		1	將作監		1
三司	2	4	司宰寺		2
尙書考功		1	軍器監		2
尙書戶部	1	1	尙倉局		1
尙書刑部		1	尙樂局		2
尙書都官	1	1	中尙署		1
尙書工部	1		大官署		1
御史臺	1	1	掌冶署		1
國子監		從9品 算學博士 2人	內園署		1
殿中省		1	전구서		1
禮賓省		1	大倉署		2
大府寺		1	大盈署		1
小府監		1	合計	6	32

參照 : 東國史大系 4卷 高麗編(三珍社 1975)

따라서 中央官制에서도 國家의 統計機能, 즉 版籍·圖簿業務는 위로는 都兵馬使(都堂:重臣會議)의 결정으로부터 밑으로는 各官府와 地方鄕職속의 計士·算士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특히 「三司」가 國家財政을 총괄하던 體制를 지니고 尙書戶部 등이 이의 政策管掌機構로서 戶口, 班田, 貢賦, 饑糧을 統轄하였다. 그리고 그 實務部署로서 三司에는 給田都監(田制, 土地分給), 大倉署(饑糧管理) 등 10個의 官署가, 尙書戶部에는 司農寺(祭祀用 糧穀·田籍管掌), 大府寺(財貨와 宮中用品), 司宰府(川澤및 水路·水產物), 都鹽院(소금專賣廳)이 있었다.

戶部는 新羅의 調部·倉部와 泰封의 調位部, 高麗初의 民官등을 거쳐 발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三司의 政策機能중 司度·金曺·倉曺를, 成宗때(995)의 尙書戶部와 함께 一時 尙書度支, 尙書金部, 尙書倉部로 分置했던 것을 戶部로 吸收統合하였다. 度支등을 分置한 以後의 三司는 稅貢과 祿俸 및 出納會計만 관장하였다.

이 戶部는 忠烈王 以後에는 版圖司, 民曹, 民部라고도 하는등 몇번의 명칭이 바뀌어서 恭讓王때에 戶曹로 개칭하여 朝鮮王朝로 넘어 오고 版籍業務는 版籍司에서 실무담당하게 된다.

戶部의 實務官吏(吏屬)로서 顯宗時(1009~1031)에는 主事·令事(각1人)와 記官(25人), 計士(2人) 및 算士(4人)등이, 文宗時(1046~1083)에는 主事(6人), 令史(6人), 書令史(10人), 記官(25人), 計士(1人), 算士(1人)으로 그 인원이 대폭 늘어나며 職名이 上向되고 있다. 이제 吏屬의 經歷者중에는 計士, 算士出身이 充當되어 있을 만큼 고려시대의 算學職이 정착하였다.

이무렵에 國子監의 算學博士가 書學博士와 함께 從9品 官位이던 것을 보면 算學職의 官階는 별로 높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博士職중 가장 官位가 높은 것이 國學博士(正7品)이고 그다음이 太學博士(從7品), 四門博士(正8品), 律學博士(從8品)임을 보면 博士는 職能官吏로서 대개 7品官以下였다고 할 것이다. 列國과 고려 시대이래 圖簿를 管掌하며 國相級에 있던 「主簿」직책이 고려에 와서는 대개 從7品~正8品官位에 배치되어 있다(司農寺의 主簿는 從6品). 각 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職能官員의 종류로서는 대개 主事, 令史, 書令史, 監史, 史, 計史(計士) 記官, 算士, 承旨, 都衙, 雜路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高麗時代의 算學職 公務員은 각 官廳에 고루 널리 배치되어 있고 中央의 官職만해도 40名수준을 헤아려, 승급·승진, 보직변경, 散職(臨時職)이나 退職者를 포함하면 算學職 經歷者는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년마다 보는 科擧試驗에 進

士·諸科 算學應試者가 100余人이고 그중 10~20명이 合格하였다고 한다(宗史). 以上의 算學職에는 지방의 司戶, 司倉 등에 분포되어 있는 吏屬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2. 計口籍民과 戶籍制度의 定着

가. 戶口調査制度와 節次

高麗의 戶口調査는 新羅의 民籍調査를 한층 制度化한 것으로 軍·賦役과 密接하게 관련하고 있었다. 그 內容은 高麗史 食貨志에 따르면 「國制에 年齡이 16歲부터 國役에 복무하고 60歲에 免役한다. 州郡에서 매년 人口를 조사해서 民籍에 올려 <計口籍民> 戶部에 제출하면 그 戶籍에 따라 徵兵, 調役을 시킨다」고 하였으며 이때 人丁의 多寡에 따라 9等級으로 編戶하여 賦役을 정했다고 한다(刑法志). 이무렵의 技藝, 白丁, 賤奴, 鄕所, 部曲人은 賦貢義務가 없고 戶口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國制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 而免役, 州郡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高麗史 食貨志 2. 戶口 序)

※「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高麗史 刑法志 1. 戶婚)

따라서 戶口調査나 戶籍作成은 良民以上의 身分에 한하되 人丁(靑壯年)의 多寡에 따라 9等級으로 나누어 각 戶別로 賦役을 分定하는 計丁籍民法이었다. 그러나 高麗末에 오면 실제로는 3等級으로 나누어 가령 大戶는 3丁, 中戶는 2丁, 下戶는 1丁씩으로 구분하였다.

良民이란 高麗의 社會階層을 貴族, 庶人, 賤民의 3階級으로 나눌 때 庶人階級에 속하는 身分으로 넓은 意味에서는 南班(靑吏), 雜技(技術系 屬吏), 雜職(技能職)과 함께 포괄되는 階層이지만 狹意의 의미로는 軍丁, 驛丁, 白丁 등과 農民, 商人, 手工業者 등으로 이루어지는 基層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國民皆兵制下에서의 軍

役, 요역(勞務) 및 貢役(서비스 役) 등의 必要로 해마다 戶口調査한다.

한편 貴族, 兩班(東·西班)에 대해서는 3年마다 戶口單子 즉 戶籍簿를 2部씩 작성케 해서 1部는 官衙에 보내어 戶部에서 聚合綜合하고 또 1部는 자기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즉 國法의 制度는 「兩班의 戶口는 반드시 3年만에 한번씩 戶籍을 만들어 1件은 官에 바치고 1件은 집에 보관」하는데 각 戶籍內에는 戶主의 世系와 함께 同居子女와 兄弟, 姪·婿의 族派 및 奴婢들에 대해서, 宗派와 姓名, 生年, 年齡, 奴妻, 婢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갖추어 기록함으로써 쉽게 考閱할 수 있게 하였다(食貨志 2 戶口條).

高麗史 食貨志 戶口條의 槪觀

年　代	區　分	內容의 要約	動　機(추정)
仁　宗 13년 2월 (1135)	判　文	京人으로 京外의 戶籍에 올리는 者의 禁止	西京의 遷都運動을 制止하려고 動員한 軍士의 避役禁止.
忠烈王　5년 (1279)	敎(?)	諸道에 計點使를 보내어 戶口를 파악	蒙古의 抗戰기간에 문란해진 戶籍整備.
〃　18년 (1292)	敎	諸道의 戶口와 田土를 計定	戶口의 파악과 함께 量田이 주목됨.
忠肅王　12년 (1325)	〃	開城의 僞造戶籍을 조사하여 身分確定·諸權勢家의 農莊을 조사하여 良戶를 늘림	身分制의 安定과 良民의 보호.
恭愍王　20년 (1371)	〃	式年戶口法의 嚴守·東西兩界의 新附人戶의 生計를 보장	紅巾賊의 침입후에 문란된 戶口法의 철저한 시행.
禑　王　4년 (1378)	施　行	各道에 外官을 파견하여 戶籍作成	호적의 정리와 民衆의 生計를 보장.
〃　14년 (1388)	上　疏	戶口法의 紊亂을 是正.	改革派 趙浚의 上疏.
恭讓王　2년 (1390)	都 堂 啓	戶籍 施行의 法則을 建議	國寶戶籍의 둘째 폭 내용과 거의 같음.

註 : 許興植, 高麗社會史硏究,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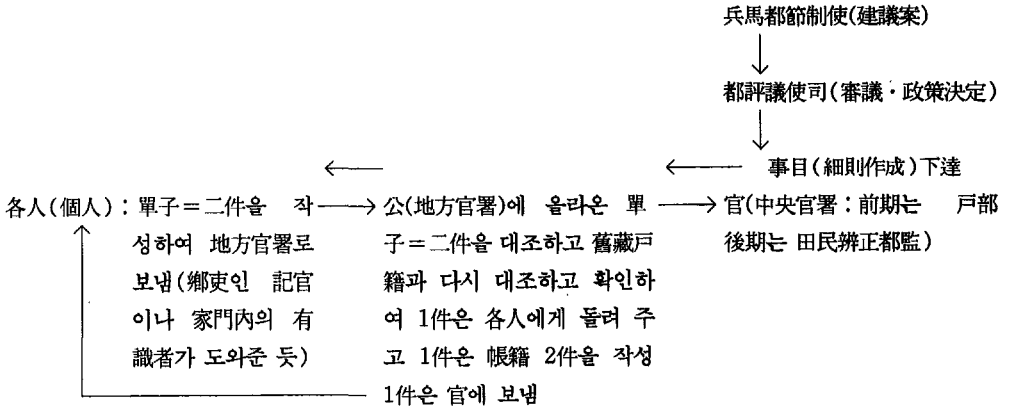
이때 世系의 範圍는 相避制(族內近親婚防止) 班常賤間의 禁婚 등과 관련하여 4祖戶口式에서는 父, 祖, 曾祖와 母, 外祖, 配偶者의 父를, 또 8祖戶口式에서는 여기에 다시 祖父母, 曾祖父母, 妻父母의 각기 4祖와 母를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서 「戶口式」이란 戶籍作成의 形式이며 戶口單子를 말한다. 4祖戶口式, 8祖戶口式을

따질만큼 戶籍制度가 이미 定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族譜가 발달한 것은 고려의 이런 戶籍調査慣行이 뒷받침한 것이다.

古代에는 集團人口數만 나타내다가(古朝鮮) 다음단계로 戶口數(列國과 三國時代)와 戶口帳籍(統一新羅)등의 資料가 현재 전하고 있으나 高麗時代에 오면 戶口單子가 구체적으로 출현한다. 물론 前述한 바와 같이 新羅時代에도 戶口單子를 작성했던 資料가 없지 않으나 高麗時代가 되면 더욱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戶口라면 家戶와 人口의 合成語이지만 戶口와 戶籍의 구분은 調査上의 法制的 要因이 개입한다. 즉「戶口法」의 施行을 前提로 해서 戶口를 파악하고 이를 一定한 樣式의 表章을 지님으로써 戶籍이 된다. 그럴때 戶口와 戶籍은 같이 쓰기도 한다. 이때 戶口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써 戶口單子(戶口票, 戶籍簿)를 작성해서 官廳에 제출하면 戶口帳籍(戶籍臺帳)을 만든다. 따라서 帳籍은 戶口調査의 總括表(要計表) 기능도 있는데 신라의 西原京文書가 그런 總括表에 해당한다. 한편 평시에 3年間隔 調査가 순탄하게 되면 먼저 만든 戶口帳籍에 의해서 戶口單子를 보완하는 逆順過程도 있으나 動亂·戰役이나 政治改革등의 시기에는 戶口調査를 強化하여 戶口單子와 戶口帳籍을 새로이 만든다.

高麗史食貨志 戶口條에서 보면 高麗後期의 戶口法紊亂 對處에서 당시의 戶口調査慣行과 戶籍作成의 節次를 엿볼 수 있다.

戶籍作成의 節次



註 : 許興植, 國寶戶籍으로 본 高麗末의 社會構造(韓國史硏究 第16卷 1977).

以上의 「高麗史」 記錄이외에도 前述한 三國遺事에 보이는 太祖 26年(943)의 淸道郡司籍(淸道郡 都田帳傳), 定宗元年(946)의 康州界 任道大監杜貼이나 地方文書로 전해오는 成宗 5年(986)의 慶州府 尹先生案의 「內外戶口施行」등 高麗初期부터 戶口調査·帳籍에 관한 記錄이 있고 또 대개는 戶口調査가 量田(土地調査)과 同時에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後述하는 量田記事에 비추어도 戶籍作成이 國初부터 全國的으로 3年마다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戶口帳籍이 一般目的的 基本戶籍이라하면, 身分과 職役에 따른 特殊戶籍이 있었다. 즉 政籍(政案 : 官吏用), 吏籍, 蔭籍, 內侍籍, 功臣牒(錄券), 宗籍, 軍籍, 士籍(士版), 僧籍(經籍), 百工案牘, 賤籍, 姿女案, 妓籍(樂籍) 등이 그것이며 杜貼도 寺. 院등에서 흔히 쓰고 있다. 여기서 「籍」을 案, 券, 牒, 貼 등으로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高麗의 戶籍制度와 戶口法 强化

高麗時代의 代表的인 戶籍으로 되어 있는 朝鮮太祖(李成桂)戶籍原本의 例를 보면 당시의 戶口調査制度뿐만 아니라 가족제도까지 잘 나타내고 있다. 이 資料는 현재 國寶(第131號)로 지정되어 있고 作成年代는 恭讓王3年(1391) 前後로 밝혀졌으며(李成桂, 李芳遠의 實名이 적히는등) 전부 8쪽(대략 50cm 저지)으로 되어 있다. 첫째쪽은 受給받은 奴婢의 內容이고 둘째쪽이 戶籍作成의 經緯(作成動機)와 그 指針 그리고 時期, 節次, 細部的인 注意事項 등이 적혀 있어 戶口調査制度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쪽은 「戶籍」 자체는 아니나 여기에는 吏頭用語가 많고 당시의 公文書處理과정을 알수 있다. 앞에서 든 戶籍作成의 節次도 이 둘째쪽의 戶口成籍順序에 따른 것이다.

셋째쪽은 모두 奴婢戶籍으로 첫째쪽의 奴婢가 功臣으로서 下賜받은 즉 所有主가 없는 公奴婢라면 셋째쪽은 私奴婢로 보고 있다(許興植). 넷째쪽 以下(8쪽까지)는 모두 庶人以上 兩班에 대한 戶籍이다(셋째쪽以下에는 李太祖 家門以外의 戶籍들로서 고려말기 가족제도의 개략을 알 수 있다).

高麗의 戶籍制度는 현재 전해 오고 있는 앞의 國寶第131號(「李太祖戶籍原本」)나 몇몇 世家(驪州李氏, 光山金氏, 密陽朴氏등)의 戶口單子에서 보듯이 男子戶主

制의 根幹과 一夫一妻制下에서 대체적으로 家族數가 별로 많지 않고 女子戶主가 나오는가 하면 子婦와 女婿의 家族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가족제도에서 女子의 지위가 男子와 同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上位일 때도 있다. 심지어 財産相續에서도 「子」와 「女」의 均分相續制 또는 分割相續制였었다.

이러한 高麗 家族制度의 基盤에도 불구하고 後代로 가면 一夫多妻 또는 多妾 論議가 나타나고 戶籍의 變改 등을 통한 身分의 混亂도 나타난다. 高麗中期에는 賤人과 良人중에서 양반 또는 貴族으로 編入되는 事例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거란, 몽고와의 戰亂, 홍건적의 亂動 등으로 戶籍이 모두 불타버리는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하였다. 奴婢出身 萬積의 亂(1198 : 神宗元年)도 그런 배경이고 이때 이를 고해바친 順貞(韓忠愈의 家奴)은 良民이 되었다.

高麗時代의 家族構成 例

① 驪州李氏族譜 所載
癸酉籍(1333년)

戶主 樂浪郡夫人崔氏
長男 允培(32세)
二男 允成(28세)
三男 允芳(24세)
四男 惠根(19세)

② 國寶 131호 戶籍
(高麗末)

戶主 李天祿(34세)
母 召史(66세)
戶主妻 永月(23세)
妻父 李元桂(47세)
一女 ? (11세)
姉 召史(49세)

③ 國寶 131호 戶籍
(高麗末)

戶主 朴松(61세)
戶妻 召史(58세)
一女 召史(37세)
夫 黃文(40세)
一男 朴成(30세)
妻 加叱仇之(?)
二男仇叱達(29세)
妻 之旦(24세)

註 : 朴龍雲, 高麗時代史, 1991.(合刷本)

이런 功績과 상관없이 身分을 사고팔거나 僞籍을 만드는 事例가 늘자 忠肅王 12年(1325)의 敎書에서 「開城 5部와 外方州縣의 백성으로서 兩班이 되거나 兩班이 賤人, 良人으로 되는 등 戶口를 위조한 자를 법에 의해 斷罪하라」든가 恭愍王 20年(1371)의 下敎에서 「本國의 戶口法이 모두 옛것을 잃어버렸으니 壬子年부터 시작해서 舊制에 依據하여 良民, 賤民, 生口를 分諫해서 戶籍을 만들고 「式年」을 따라 民部(戶部)에 보내어 備考」토록 했다. 또 恭讓王 2年(1390)에는 都堂에서 「舊制대로 시행하되 戶籍이 없는 者는 告身에 따라 官職에 못나가게 하고 戶籍에

없는 奴婢는 모두 公屬(관청소속)으로 하도록」上啓하고 있다.

다. 高麗의 戶口數

이처럼 高麗時代의 戶口調査는 여러가지 試鍊과 變動이 있었지만 州, 郡, 縣의 部落單位로 조사하는 한편 三國時代以來 全國의 民生實態와 田畓作況을 확인독려하기 위해서 地方鄕吏에 의한 戶口, 賦貢調査以外에도 中央에서 計檢使, 點檢使, 計檢使, 按撫使 등을 파견하거나 踏險(實査)하게하는 慣例가 지속되어 土地産物과 租稅, 賦役을 調整하거나 免除하여 주기도 하였다.

高麗末에는 戶口成籍이나 戶口調査報告가 不實化해지기 때문에 道와 州郡縣의 戶口實數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거기에 良民의 고초가 심해지자 이의 改革論議가 활발해지면서 각도에 計點使를 보내어 戶口를 점검토록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高麗一代를 통하여 전국의 調査計數가 발굴되어있지 않는바 이는 北方政策을 추진하면서 국토를 넓혀갔으며 또한 발해, 거란, 여진족 등의 歸附者가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遼와의 4차례 戰役, 金과의 국경전투, 元과의 7차례 戰役, 麗末의 紅巾賊·倭寇등 亂動으로 人民의 數가 항상 流動的인데다 六朝實錄등 記錄文書와 戶籍資料를 모두 消失(공양왕때)한 때문이다. 다만 高麗戶口數를 전하고 있는 중국의 宋史 高麗列傳에 의하면 高麗中期(12세기경 : 1171地方制改編以前?)의 國土가 東西 2천리, 南北 천 5백리이고(東西, 南北이 바뀐듯) 3京, 4府, 8牧, 118郡, 390縣鎭, 3,700洲島에 男女의 人口數를 210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高麗朝庭에서도 全國의 戶口數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高麗의 人口指標로서 참고가 되는 것은 軍役動員과 都城規模로서 이는 國勢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定宗 2年(947)에 光軍司를 설치하고 光軍 30萬으로써 거란에 對備하였다던가 顯宗元年(1010)에도 거란군 2次 來侵時에 行營都統使 康兆가 거느린 軍事力 역시 30萬이라 하였다. 또 거란의 4次 侵入을 격퇴하고 난 뒤 顯宗20年(1029)에는 開京의 皇城밖에 羅城(周圍 29,700步, 高 27尺)을 축조할 때 304,400명을 동원하였다. 당시의 都城은 5部 35坊, 344里였다고 한다.

한편 高麗末의 國都에는 城內의 戶口가 13萬이었다고 하며 朝鮮建國以後에 京都가 漢城으로 옮기고 난 뒤에는 8천余戶였다는 훗날의 記錄이 있다(李晬光).

3. 量田制度와 改革政治

가. 高麗의 土地制度

太祖代에 前·現職 公職者의 役割品級에 따라 土地를 分給하는 「役分田制」에서 출발하여 이를 발전시켜 第5代 景宗元年(976)에 田柴科를 제정하였다.

田柴科 制度

科	田	柴	職　　品 (例)
1	100結	50結	中書令·尙書令·門下侍中
2	90	45	門下侍郞·中書侍郞
3	85	40	參知政事·左右僕射·上將軍
4	80	35	六尙書·御史大夫·大將軍
5	75	30	七寺卿·國子祭酒·將軍
6	70	27	吏部諸曺侍郞·軍器監·中郞將
7	65	24	七寺少卿·中書舍人·國子司業
8	60	21	郞中·國子博士·郞將
9	55	18	秘書丞·殿中丞·閤門副使
10	50	15	員外郞·起居郞·大學博士
11	45	12	通事舍人·國子助敎·別將
12	40	10	監察御史·左右拾遺·四門博士
13	35	8	尙書都事·大學助敎·校慰
14	30	5	六衛錄事·四門助敎·隊正
15	25	—	律學助敎·將仕郞·仁馬軍
16	22	—	書吏·主事·役步軍
17	20	—	史·通引·監門軍
18	17	—	閑人·雜類

註：韓國史大系 高麗編(三珍社), 1975.

土地의 所有權은 國有를 原則으로 하고 身分等級을 18科로 나누어 給田하는 이 제도는 科田(全公務員), 功蔭田(有功者), 공해전(公共需要用)등 각종 公的 目的

에 의한 公田과 그 이외의 私田으로 區分하는데 이 公田과 私田의 區分은 토지에 대한 所有權보다는 收租權의 所在에 다른 것이다. 이 田柴科制는 穆宗代(997～1009)에 定着하고 文宗代(1046～1083)에 全面的 改編으로 完成되었다.

나. 量田制度

土地制度는 租稅制度의 基盤이었다. 고려의 賦稅制度는 ①租稅(土地) ②貢物(戶口) ③요역(勞動力) ④雜稅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租稅는 農民이 負擔하는 「田租(地代)」와 私田所有者가 부담하는 「田稅(地稅)」인데 이때 地稅의 中心은 科田이었다. 이런 租稅體系에서 土地의 所有·所出狀態가 租稅를 결정하기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定期的인 量田事業(土地調査)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고려는 三國時代以來의 전통적인 田品制를 國初부터 택하고 있었으나(통일신라는 9品制) 文宗때에 이를 개편하여 「不易田(每年耕作)」을 上等田, 「一易田(隔年作)」을 中等田, 「再易田(三年作)」을 下等田으로 구분하고 上等田 1結은 中等田 2結, 下等田 3結과 對等한 것으로 하였다.

量田에서는 新羅時代 以來로 常用하던 産出量標準에 의한 評價方法인 「結負法」을 답습하였는바 여기서는 米穀産出을 기준으로 1結＝100負(짐), 1負＝10束(다발), 1束＝10把(줌)로 하는 것이다. 이는 單純한 面積標準인 頃畝步制와 對稱한다.

그러나 新羅와 高麗初까지의 結負法은 産出標準이라기보다 실제로는 面積標準(頃畝制와 一致)에 準據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文宗時부터는 「量田步數」를 擇하면서 單一量田尺으로서 1步＝6尺, 1尺＝10分, 1分＝6寸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로써 1結이 1,089坪方步(方 33步＝[33步]^2)가 된다. 이는 신라와 고려초의 結負法用例를 量田步數로 面積單位化해서 定立시킨 것이고 이를 土地面積計算의 근거로 하였다. 이런 量田尺, 量田步數에 의하여 土地를 調査하고 量案(土地臺帳)을 만들게 함으로써 租稅를 計量하였다.

高麗時代의 量田事業은 戶口調査施行時期에 병행하던 慣例대로 실시하되 後世에 土地制度의 붕괴와 世族의 土地兼倂 農莊의 횡포등 으로 問題가 되면 지역별로 隨時實施를 하고 있었다. 다음은 高麗史등에 나타나는 量田事業記錄이나 이것은 量

田한 年度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高麗의 量田年度 記錄

太　祖	26年	943	三國遺事(崔南善本), p.185
光　宗	7年	956	若木郡淨兜寺石塔形止記
成　宗	10年	991	三國遺事, p.116
顯　宗	13年	1022	高麗史(影印本) 中, p.705
靖　宗	7年	1041	高麗史 中, p.706, 高麗史節要(影印本) p.114
文　宗	13年	1059	高麗史 中, p.706, 高麗史節要 p.139
文　宗	18年	1064	高麗史 中, p.706, 高麗史節要 p.143
明　宗	22年경	1192	高麗史 上, p.416, 朝鮮金石總覽 上, p.439
高　宗	41・43年	1254・56	高麗史 中, p.706, 高麗史節要 p.442, 448
忠烈王	18年	1292	高麗史 中, p.732
忠肅王	元年	1314	高麗史 中, p.730
忠穆王	3年	1347	高麗史節要 p.658
恭愍王	23年	1374	高麗史 中, p.728
禑　王	14年	1388	高麗史 中, p.707
恭讓王	3年	1391	高麗史節要, p.883

註：金容燮, 高麗時代의 量田制, 1975.

量田을 실시할 때는 중앙에서 파견한 量田使가 算士를 帶同하여 현지에 가서 그곳 地方官이 事前基礎調査한 內容을 再確認하거나 實地測量하거나 하였다. 이때에는 量田節次 全般에 대한 原則과 量案作成의 事目(項目 形式)에 準據하여 實施한다. 이런 準據와 規程을 國初부터 마련하고 있어서 가령 土地의 所有主(同寺位, 能召), 土地의 形態(長…, 方…) 田品(代下田), 量田의 進行方向과 四標(北能召田, 南東渠, 西葛頸寺田), 量田尺單位(長27步, 方20步), 總尺數(承孔 540積), 結數(結得 49負, 負4束) 등을 田畓의 筆地別로 정연하게 조사한다(顯宗22年 AD1031의 「若木郡淨兜寺石塔造成記」 ( )안은 表示事例：金容燮). 이를 臺帳에다 記表하기도 하고 量案(量田帳簿, 量田都帳, 田籍, 導行帳)을 作成한다. 여기서의 量田尺單位는 「步」로서 方33步＝1結의 原則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文宗 23年(1069)에 制定했다는 「量田步數」도 사실은 國初부터 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때만해도 量田尺은 田品과 상관없는 「單一量尺制」였으므로 고려초기에는 結과 頃의 面積이 同一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고려전기의 結負法이었

던 것이다.

그러나 高麗後期에 가면 結과 頃이 分離되어 單一量尺制에서 土地田品에 따라 다른 量尺을 사용하는 「隨等異尺制」로 변환하여 朝鮮時代 結負法制로 移行하였다.

다. 田制紊亂과 改革過程

武臣幕府政權 이후의 混亂과 蒙古侵略의 壓力過程에서 支配層間의 세력재편성에 土地制度 자체에 대한 변혁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元宗代(1260～1274)에는 田品 및 稅制改革과 함께 祿科田制실시로 田柴科制를 보완하고 高麗末에는 科田法으로 代替하게 된다. 이는 土地分給制度의 變遷이며 收租權의 改革運動이다.

高麗後期에는 이처럼 政治的 變革事件이 빈발할 만큼 國內·國際的 環境이 緊迫하였던 바 量田의 철저와 田制, 稅制改革을 주장하고 추진하였다. 對蒙抗爭期에서 末期까지 40余件의 大小改革施策이 나타나며 그 내용도 대개 兼倂土地의 調査·還收·再分配와 農事技法에 따른 稅制調整 등이다. 그때마다 敎定都監 등 각종 改革機構와 함께 田民推刷都監, 田民辨正司, 田民辨田都監 등이 必要에 따라 設置되어 戶籍과 量田事業을 실시하였다.

한편 몽고와의 戰役을 거치고 난 후 13世紀末 14世紀初의 고려사회는 權門世家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能文能吏」인 新進官僚群(新進士類)이 出現하고 있었다. 忠穆王代에는 李齊賢의 改革案에 따라 整治都監을 두고 整治官(按撫使兼任)을 中央과 諸道에 파견하면서 農莊과 收租, 奴婢, 避役問題를 처결하고 恭愍王代(1352～74)에는 新進士類의 成長에 힘입어 田民辨整都監을 두어 改革을 주도케 하며 反元政策과 王權強化 및 社會的 혁파를 추진하였다.

高麗末에 李成桂將軍의 威化島回軍으로 實權을 잡은 신진사류에게는 田柴科를 보완한 祿科田制로서도 자신들이 받을 祿科田이 限定되어 있는 상태에서 私田改革을 단행하였다. 먼저 私田의 폐단을 교정하면서 전국의 土地를 國家收租地化하였다. 1388～1389年間에는 6道에 量田을 실시하며 3年間은 公私田租를 국가가 직접 걷어들이는 公收方針을 밀고 나갔다.

이때의 量田이 「己巳量田」이다. 이로써 고려의 私田制는 완전히 무너지고 恭讓

王3年(1391)에 科田法을 公布하여 高麗의 田制를 마감하였다. 즉 이때의 私田改革으로 京外의 官田 60餘萬結, 荒遠田 17萬餘結등 80萬餘結에 대하여 田地改量事業을 完了하고는 그때까지의 公私田籍을 全部 燒却해 버림에 따라 許多한 帳籍·田籍등 歷史記錄이 사라져 버렸다.

第 3 節　朝鮮時代의 啓報制度發展

1. 朝鮮時代 統計의 制度的 根據

가. 文治國家의 完成

朝鮮의 建國은 高麗末의 改新儒教(性理學)勃興, 排元意識 및 田制改革이라는 時代的 要請에 의한 것이다.

새王朝는 처음에 國號도 高麗를 그대로 채택하였고 統治官制도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을 承繼하였다.

朝鮮이란 국호의 채택은 太祖 2년(1393)이고 國都를 漢陽으로 옮긴 것은 太祖 3년(1394)이다. 그리고 太祖4年에 「朝鮮經國典」, 同6年에 「經濟六典」등을 撰修함으로써 統治理念과 基本法制를 마련함과 아울러 國王과 民官의 統治正義를 위한 言官制度(司諫, 司憲)를 발전시켜 人本(儒教)的 文治主義 理想國家를 完成하였다.

나. 統治機構

建國初期 統治組織의 主要改編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太祖代(高麗制度踏襲) : 都評議使司, 門下府, 中樞府, 三司 등을 그대로 둠
- 定宗代(部分改革) :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改編, 三省合議制에서 中樞府參考를 除外→中樞府폐지, 中樞府機能 중, 軍事權을 三軍府에 합치고 三軍府는 議政府職을 兼職못함(政·軍分離)
- 太宗代(最高統治機構 改編) : 門下省폐지→庶政機能은 議政府와 六曹에 吸收하고 諫諍機能은 司諫院新設(百官糾察은 司憲府), 三司(財政總括)는 司平府로

개편하였다가 戶曹로 併合. 三軍府폐지→承樞府로, 다시금 그중 軍機事項만 三軍(五衛)都摠府로 보내고 兵權은 兵曹에 吸收, 六曹의 權限強化, 朝政에 參與, 中央의 大部分職官衙를 六曹에 分屬衙內化함. 藝文館, 春秋館을 分離新設

朝鮮의 國相級 最高 合座機關인 議政府는 文班의 最高機構이며 三政丞은 모두 正1品이다. 그중 領議政은 首相이고, 左議政은 吏曹, 禮曹, 兵曹를 담당하고 右議政은 戶曹, 刑曹, 工曹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三政丞밑에는 左·右贊成(從1品)과 左·右參贊(正2品) 등이 있다.

六曹의 長(判書)은 正2品이며 各 曹別 區分과 機能은 高麗시대와 大同小異하나 다만 六曹의 권한이 급격히 강화되어 중앙의 모든 附屬官衙를 이에 分屬시켰다. 判書밑의 官員으로서는 參判(從2品), 參議(正3品)가 있다.

결국 조선의 中央統治制度는 議政府와 六曹, 承政院, 司憲府, 司諫院, 弘文館(以上 三司), 經筵 등을 중심으로 하고 特殊機關으로서 中樞府, 都摠府, 義禁府, 漢城府 및 開城府와 그밖에 宗親府, 忠勳府, 儀賓府, 敦寧府, 奉朝賀 등을 갖추고 있다. 數百個의 大小官衙는 모두 이들에게 分屬하였다. 中期以後에는 中央官制에 耆老所, 備邊司, 奎章閣, 讀書堂, 訓練都監 등 官署를 設置하였다.

한편 地方은 8道로 나누고 그 밑에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縣을 두어 이에는 中央에서 官吏를 파견하지만 面(社·坊), 里(洞·村)에는 中央에서 外官을 파견치 않고 自治的 運營에 맡겼다.

특히 觀察使는 巡察使를 兼하며 隷下 守令을 監察할 뿐 아니라 兵使, 水使를 兼하거나 이들을 管領하였다. 府·牧·郡·縣등 地方守令의 官衙에도 中央政府 六曹에 상응하는 六房을 두어 實務者는 鄕吏(衙前 : 高麗때의 鄕職)에서 充當하였다. 그중 戶房의 「戶長」은 守令不在中에 職務代理도 하였다.

地方自治로서는 現地士族을 「鄕任」으로 임용하여 守令을 보좌하고 鄕吏의 폐단을 방지하였다. 이를 「鄕所」(「鄕廳」)의 制度라 해서 高麗初의 事審官制, 高麗末의 留鄕所制에서 발달한 것으로 朝鮮中期以後에 鄕約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심지어 契(洞契등)까지 발전함으로써 朝鮮의 傳統的 地方自治制度로 정착하였다. 鄕廳에도 六房과 座首·別監을 두어 座首는 吏·兵房을, 左別監이 戶·禮房, 右別監이 刑

·工房을 맡았다. 最後末端組織인 面(面長 : 里正長), 里·洞(里正 : 洞長)아래 下部組織인 5家作統制(後期에는 十家作統)를 두어 隣保의 自治組織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의 完成으로 中央과 地方間의 「啓報」(또는 啓告)制度가 발전하고 定例的인 戶口調査나 量田實施에 基盤이 되었다.

다. 土地制度

朝鮮의 土地制度는 高麗末의 田制改革으로 實施한 科田法이 그 根幹이었다. 土地國有化와 私田의 再分配, 收租率의 大幅輕減(1/10租)과 租稅率의 公正化가 그것이다. 科田法은 官吏身分의 18等級別로 「科田」을 分給하되(京畿地域中心 — 後에는 三南과 黃海地域까지 包含) 踏驗操實法(實査法)과 隨等異尺에 의한 量田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科田以外에도 功臣田, 別賜田과 王室田, 宮司田, 陵寢田 등이 同時에 支給되었던 바 이들이 또 私田化하는 不作用要素가 되었다. 世宗代에는 貢法詳定所, 田制詳定所등 硏究機關을 설치하여 田制를 硏究케 하여서 그 결과 「貢法」을 실시키로 하고 土地를 田品에 따른 「田分六等」과 作況에 따른 「年分九等」으로 區分하였다. 貢法施行을 위하여서는 踏驗操實(現地實査)을 더욱 철저히 하며 世宗30年(1448)부터는 20年周期의 量田을 制度化하였다. 世祖11年(1465)에 現職官人에게만 土地를 分給하는 「職田制」를 택하였었고 明宗代(1557)에는 다시금 國家가 直接 租稅를 걷어들여 公職者에게 俸祿을 支給하는 「職田稅制」를 導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官收官給法」으로의 轉換이다. 그러다가 壬辰·丙子의 兩大戰亂으로 田制와 賦稅制度가 붕괴되자 仁祖代에는 年分法을 폐지하고 定額制 대신에 踏驗操實法에 의한 定率法을 채택하였다.

라. 經國大典의 成立

朝鮮의 統治規範인 經國大典體系는 넓은 意味에서 太祖때의 鄭道傳이 著述한 「朝鮮經國典」에서 統治原理를 밝힌데 이어 趙浚·河崙 등이 受命撰修한 「經濟六典」에서 시작하여 朝鮮末期 高宗代의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모든 王命統治規

範體系를 말하나 狹意로는 經濟六典(太祖6年 1397 : 吏讀併用)→續六典(太宗13年, 世宗11年등)의 六典體制를 始發로 해서 이 六典을 集大成한 統合大法典으로서 世祖4年(1458)에 착수하여 成宗16年(1485)에 「經國大典」(崔恒, 盧思愼, 徐居正등 9人)의 이름으로 撰修完成한 것을 말한다. 이를 당시에는 「萬世經國之具」라 하였다. 즉 永世不變의 萬歲成文法이라는 것이었다.

경국대전은 朝鮮 500년간, 불변의 大典이었으나 후대에 이르면서 制度의 多岐化와 行政의 發展에 따라 조금씩 계속된 증보가 이루어 졌다.

成宗23年(1492)의 「大典續錄」, 英祖22年(1746)의 「續大典」, 正祖9年(1785)의 「大典通編」, 高宗2年(1865)의 「大典會通」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보완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골격은 經國大典이었다. 經國大典은 六曹의 官制에 따라 吏典, 戶典, 禮典, 刑典, 兵典, 工典 등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統計의 제도적 근거는 戶典, 禮典, 工典 등에 분산되여 있다. 經國大典을 중심으로 각시대의 大典을 참고하면 朝鮮時代 度量衡과 統計擔當機構 및 算學職의 身分, 統計對象과 方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經國大典은 朝鮮의 統治制度, 統治秩序에서 統治樣式에 이르기까지 모두 網羅하고 있는 慣習法的 成文體制이다. 이는 上述한 바와 같이 六典禮에 따라 配列함으로써 基本官府인 六曹와 對應시키고 또 각 典別로 所屬官衙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吏典 京官職 六曹條에 각조의 所管業務와 所屬堂下官(曹의 構成)을 규정하고 있다. 曹를 現代職制의 「部」라면 司는 「室 또는 局」에 該當한다.

各曹의 構成

吏曹 : 文選司, 考勳司, 考功司
戶曹 : 版籍司, 會計司, 經費司
禮曹 : 稽制司, 典享司, 典客司
兵曹 : 武選司, 乘輿司, 武備司
刑調 : 詳覆司, 考律司, 掌禁司, 掌隷司
工曹 : 營造司, 攻冶司, 山澤司

마. 統計報告制度의 基盤

大典에 의한 이들 官府의 機能과 統計業務와의 主要關聯項目을 추출한다면 吏典에서는 「取才」(人物選拔) 「告身」(申告制度), 「政案」(官吏人事記錄簿), 「祿牌」(身分證), 「鄕吏」등이 있고 兵典에서는 「告身」, 「名簿」, 「成籍」, 「復戶」, 刑典의 「用律」, 「僞造」, 그리고 工典의 「營繕」, 「度量衡」, 「栽植」, 「京役吏」, 「工匠」 등을 들 수 있는 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統計擔當, 統計節次, 樣式에 관한 것은 戶典과 禮典에 있다.

統計擔當의 主要部署는 戶曹 版籍司와 漢城府이고 戶典에서는 「戶籍」, 「量田」, 「籍田」, 「祿科」, 「諸田」등 調査分野와 「收稅」, 「稅貢」, 「雜稅」, 「요역」등 財政·貢賦事項 및 「經費」, 「會計」(審計)業務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戶曹는 戶口·貢賦·田籍·食貨分野를 擔當하되 그 戶曹의 版籍司가 戶口·土田租稅·賦役·貢獻 등을 分掌한다.

또 戶曹所管의 財政·經濟全般에 걸친 法令·條例 등을 모아 收錄한 「度支志」(正祖12年 : 1778刊)에 의하면 戶曹의 補助部署에는 3個司(局級)와 14個 房(課級)을 나누되 그 중 版籍司(司農)에는 「雜物」·「金銀」·「鑄錢」·「收稅」·「司贍(사섬 : 製紙와 貢布管理)」등 5個房이 속했다. 이때 版籍司는 田制, 均稅, 免稅, 復戶(戶役免除), 年分, 俵災(凶作時 租稅減免), 奴貢, 巫稅, 匠稅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計士가 6名 있었다고 한다. 全國에서 고치거나 만든 戶籍을 3年마다 本曹(戶曹, 漢城府 및 本邑(해당고을))에서 각기 보관하고 또 每年 「覆審事目」((實査指針)을 裁可받아 頒布施行한다고 하였다.

한편 經國大典의 禮典에서는 啓報(報告)制度와 관련한 각종 格式·樣式을 규정하고 있다. 「用文字式」이하 「戶口式」·「準戶口式」까지 26個項이 羅列되어 있으나 實際로는 經國大典 자체가 報告樣式의 結集體라 할만큼 「啓報制度」는 철저했다. 흔히 朝鮮의 戶口調査를 戶口式 또는 式年戶口라고 하는 것도 이 禮典의 「戶口式」條에 의하여 實施하였기 때문이다.

禮典의 報告樣式 規定

① 用文字式
② 文武官四品以上 告身式
③ 文武官五品以下 告身式
④ 堂上官妻 告身式
⑤ 三品以下妻 告身式
⑥ 紅牌式
⑦ 白牌式
⑧ 雜科 白牌式
⑨ 祿牌式
⑩ 追贈式
⑪ 鄕吏免役賜牌式
⑫ 奴婢土田賜牌式
⑬ 啓本式
⑭ 啓目式
⑮ 平關式
⑯ 牒呈式
⑰ 帖　式
⑱ 立法出依牒式
⑲ 起復出依牒式
⑳ 解由移關式
㉑ 解由牒呈式
㉒ 度牒式
㉓ 立案式
㉔ 勘合式
㉕ 戶口式
㉖ 準戶口式

바. 朝鮮의 度量衡과 量田尺

統計의 基礎가 되는 것은 計量單位인 度量衡이다. 高麗以後 京市署(혹은 平市署)나 戶曹에서 度量衡을 管理해 왔으나 世宗13年(1431)에 田制詳定所에서 度量衡을 정리하여 工曹에서 管掌케 하였다. 이때, 古來로 不一定하게 써오던 周尺을 黃鍾尺 6寸6리(曲尺 6寸6分≒20cm)에 準據케하여 경국대전에서 규격화하였던 바 이에 의하면

黃鍾尺 1尺 = 0.606 周尺
= 0.899 營造尺
= 0.823 造禮器尺
= 1.348 布帛尺

처럼 用度別로 度器를 만들었었다. 그후 다른 度器는 모두 紛失하고 英祖때 布帛尺이 發見됨으로써 이를 基準으로 度量衡을 改定하고 度器를 새로 制定하였었다. 衡制에서는 容水의 重量이 88分을 基準으로 한 黃鍾管을 衡器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工典 度量衡條에는 길이, 부피, 무게의 계량단위를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다.

길이(度)의 기초단위는 리로서 10리가 1分, 10분이 1寸, 10寸이 1尺, 10尺이 1丈등 10進法을 쓰고 있으나 부피(量)는 1勺을 기초로 10勺이 1合, 10合이 1升,

10升이 1斗, 15斗가 小곡(平石, 보통한섬), 20斗가 大곡(全石, 온전한 한섬)등으로 곡에 있어서는 10進法을 꼭 쓰고 있지 않다.

무게(衡)의 단위는 10리가 1分, 10分이 1錢, 10錢이 1兩, 16兩이 1斤으로 斤에 있어서도 섬(곡 또는 石)과 마찬가지로 兩이상에서는 10進法을 쓰고 있지 않다. 저울의 규격은 큰저울(大稱)일 경우 100斤, 中稱이 30斤 혹은 7斤, 小稱이 3斤 혹은 1斤 등 여러 규격이 있었다.

이와 같은 度量衡의 제작은 工曹소속의 攻冶司가 표준규격품을 제작하였다.

※ 工曹攻冶司 掌百工制作, 金銀珠玉, 銅鑞鐵冶鑄, 陶瓦, 權衡等事

공조의 공야사는 표준규격품(見本)을 제작하여 중앙의 각기관과 각군에 보내되 각군에 보내는 것은 해당 道의 관찰사에게 一括하여 보냈었다. 각도 관찰사는 이를 平校하여 檢印을 찍되 불로 짖은 烙印을 찍어 규격품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諸司諸邑度量衡本曹制造(諸邑量則各送 1件于諸道, 令觀察使依制平校烙印)

사사로히 제작한 度量衡은 매년 가을 秋分日(9월 20일 전후)에 서울에서는 平市署에서, 地方에서는 地方官(巨鎭)의 平校를 거쳐 烙印을 받도록 한다.

度量衡을 工曹에서 담당한 것은 표준규격유지와 制作과정 때문으로 풀이 되며 이와 같은 度量衡을 기초로 실제 人口와 農地의 統計를 담당한 것은 戶曹소속의 版籍司였다.

※ 戶曹版籍司 掌戶口 土田 租稅 賦役 貢獻 勘課農桑 考驗豊凶

조선조 통계의 주대상이며 度量衡과 관련되는 量田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선조는 고려조와 같이 農地를 等級化하였으나 면적만은 등급에 따라 달랐다. 고려시대에는 文宗8年(1054)에 農地의 作付와 休閑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었다. 田畓이나 作目에 관계없이 매년 한번만 作物을 재배한 連作農地(不易田)는 上等田, 1년 재

배하고 1년 休閑하는 農地(一易田)는 中等田, 1年 재배하고 2年 休閑하는 農地(兩易田)는 下等田등 上中下의 3등급이었다. 그러나 그사이 재배법 개선이나 地力增進術이 발달되어 休閑農法이 사라지고 農地生産力이 오르면서 朝鮮朝는 초기에 農地를 生産力에 따라 6등급으로 多樣化한 것이다. 이와 같은 등급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收量에 따른 課稅의 公平을 기하자는 것으로 戶典의 量田條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等田尺의 길이는 周尺으로 4尺7寸7分5리를 적용하고 2등전은 5尺1寸7分9리, 3등전은 5尺7寸3리, 4등전은 6尺4寸3分4리, 5등전은 7尺5寸5分, 6등전은 9尺5寸5分등 등급에 따라「적용하는 尺數가 다른」이른바 隨等異尺制를 채택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地積尺에서는 實績1尺을 1把라하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위의 등급별 실면적은 1等田1結이 38畝(묘), 2등전이 44畝7分, 3등전이 54畝2分, 4등전이 69畝, 5등전이 95畝, 6등전이 152畝 등으로 6등전의 면적은 1등전의 4배나 넓게 되는 量田制度였다.

이를 고려조의 양전제와 비교하여 보면 고려조는 등급에 관계 없이 1結의 면적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生産力(休閑여부)에 따라 토지를 등급화한 반면 조선조는 생산량(과세액)을 고정시키고 이 생산량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비옥도에 따라 얼마의 실면적이 필요한가로 계산한 등급이기 때문에 조선조의 量田制는 고려조때의 面積基準에 비하여 所出基準이었다. 토지는 不可變的인 것이고 收量은 비배관리나 豊凶에 따라 可變的인 것인데 可變的인 收量을 고정시키고 불가변적인 農地의 면적을 可變化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量田制度는 양전 그 자체뿐 아니라 양전을 기초로한 조세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 統計機構와 算學職의 身分

조선의 통계는 戶曹 版籍司의 郎官들이 실무 책임자였다. 經國大典의 기구에 따라 戶曹에는 版籍司, 會計司, 經費司의 三司가 있고 戶曹의 定員으로서는 正一品

判書 1명, 從二品 參判1명, 正三品參議 1명인데 正五品 正郞3명, 正六品 佐郞 3명등 3명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各司마다 正郞 1명과 佐郞 1명이 업무를 주관하였을 것이고 戶口, 土田, 租稅, 賦役 등을 담당한 版籍司에도 正郞과 佐郞이 1명씩 배속되었다.

또 이들 郞官이외에 정규직으로 戶曹에는 從6品官인 算學敎授1명과 別提(從六品) 2명등 郞官級과 從七品의 算士1명, 從八品 計士2名, 正九品의 算學訓導1명, 從九品의 會士2명등 算學職이 오늘날의 統計業務와 가까운 일을 전문적으로 다룬 것이다. 다만 戶曹以外의 다른 曹에는 郞官級인 主簿와 別提(從六品)가 있고 直長(從7品), 奉事(從8品), 副奉事(正9品), 參事(從9品) 등이 充當하고 있다.

하부조직인 각 道와 각 郡縣에는 吏典의 정원표에 品官들의 定員이 없는 것으로 보아 六房官屬인 衙前들이 통계업무를 담당한 것 같다. 地方誌인 충남 扶餘의 鴻山縣誌를 보면 官職條에 홍산현의 定員表가 있다. 현감은 六品官인 文科及第者 또는 문벌로 보임된 六品의 蔭官 소속하에 座首1명, 監官 1명, 別監1명, 軍官30명, 衙前30명, 知印(通印) 20명, 使令 20명, 官奴15명, 官婢13명등 모두 132명이었다. 이들은 奴婢를 제외하고 모두 中人계급으로 세습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직책을 보면 座首는 현청의 우두머리로 六房中 吏房과 兵房을 맡아 보았으며 監官은 돈이나 곡식을 보관 출납하는 직책을 맡았으니 戶房(戶曹)의 직무를 담당한 것이다. 곧 監官이 衙前과 知印등 50명중 일부를 지휘하며 統計에 관한 일반 통상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믿어진다.

戶曹의 算學職들에 대한 任用은 取才條에 楷書, 諺文, 行算 등의 시험과목을 치러 합격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다. 그중 行算은 禮典 取才條에 算學의 경우 詳明, 啓蒙, 揚輝 등의 세 과목이 포함되는데 詳明은 중국 明太祖6년(1373)에 저술한 「詳明算法」으로서 이를 世宗代에 우리나라에서 복간한 敎材이다. 啓蒙은 중국 元代 成宗3年(1299)에 朱世傑이 편찬한 「算學啓蒙」으로 아라비아 數學의 영향을 받은것이고 揚輝는 南宋 恭宗元年(1274)에 揚輝가 저술한 「揚輝數法」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王命으로 辛引孫이 世宗15年(1433)에 慶州板刊으로 복간한 敎材이다.

응시자격은 20세이상의 남자로 功臣이나 六品職이상인 고관의 추천에 의해서

응시할 수 있으며 任用계급은 律學 등과 같이 才操에 따라 敍用토록 하고 있다.(算學, 律學隨才敍用)

그러나 算學에 대한 專門敎育은 오늘날의 敎育行政을 겸했던 禮曹소관이었다. 禮典「生徒」定員表를 보면 算學의 경우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算學實務敎育은 戶曹의 敎授, 訓導 등이 전기 3과목의 算學을 교육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算學職들에 대한 처우는 일반 文武官과 같이 品階에 따라 정해진 祿俸을 現物로 받고 있는데 현물은 中米, 조미, 田米, 黃豆, 小麥, 紬, 正布, 저화등 식량과 옷감 그리고 用紙 등이었으며 그밖에 品階에 해당하는 職田을 받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算學職의 敎育 및 考試등 과정은 의학, 법학, 통역 등과 같이 雜科에 규정된 과정을 밟고, 일단 任用이되면 正規文官의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급의 上限은 算學職의 品階가 從6品까지인 것으로 보아 從6品인 算學敎授가 최고 직위인 것 같다.

2. 戶口調査制度의 完成과 評價

가. 戶籍 및 式年戶口調査制度

全國 戶口數의 파악은 朝鮮代에 구체적 記錄으로 남아 있는 바 이는 高麗末에 改革主導勢力(이들이 朝鮮을 건국한다)들이 戶口 量田, 稅制 등의 弊害를 改革코자 하는 중에 공민왕 때부터 실시하던 戶牌法(처음에는 水陸軍에만 실시)을 朝鮮建國以後 一般人에게도 시행하면서 더욱 促進되었다. 朝鮮의 戶牌法은 記錄上 太宗, 世祖, 光海, 仁祖 및 肅宗때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모두 庶政改革을 강력히 추진하던 王代이다. 그러다가 舊韓末이 되면 戶牌로 쓰던 骨牌, 木牌가 紙牌로 變形되고 나중에는 門牌달기를 制度하였다.

朝鮮의 戶口調査制度도 역시 新羅以後의 高麗末 戶口調査制度를 답습하여 太宗, 世宗, 成宗때에 整備된 것이다.(經國大典)

戶籍은 古典的 意味에서 각종 國役義務者와 貢賦부담의 人的資源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불가피하게 실시한 統計제도였다. 經國大典 戶典의 戶籍條를 보면 每3年마다 호적을 정리하여 戶曹와 漢城府 및 각 道 그리고 각 郡縣에 臺帳을 비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高麗以來의 「式年」調査에 의한 것이며 이 式年에는 科擧도 시행하였다.

現在 奎章閣圖書로 남아있는 戶口帳籍중 壬亂以前分은 宣祖18年(1585 乙酉)의 蔚山戶籍臺帳이 전해올뿐 그밖에는 宣祖39年(1606)의 慶尙道 山陰帳과 光海元年(1609) 蔚山戶籍臺帳 以後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戶口帳籍作成은 朝鮮末期인 光武8年(1904)까지도 계속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奎章閣 所藏 戶籍資料

○ 蔚山戶籍臺帳 宣祖18年(1585) 및 光海君 元年(1609)～光武8年(1904)
○ 慶尙道 山陰帳籍 宣祖39年(1606)～仁祖8年(1630)
○ 北部(漢城)帳籍 顯宗4年(1663)
○ 尙州帳籍 肅宗7年(1681)
○ 大邱帳籍 肅宗7年(1681)～高宗13年(1876) 188冊
○ 八道甲午條結戶都案 高宗31年(1894)
○ 各府乙未條戶都案 高宗32年(1895)
○ 十三道乙未條結戶都案 高宗32年(1895)
○ 十三道丁酉條結戶都案 光武元年(1897)
○ 京畿管下各府郡結戶總錄 光武5年(1901)
○ 邊界戶籍案 光武6年(1902)
○ 咸鏡道各府郡辛丑度戶案 光武6～8年(1902～4)
○ 邊界戶籍 成州 光武7年(1903)
○ 慶尙道 鎭海郡 家戶案 光武8年(1904)
(昌原郡, 咸安郡, 咸陽郡, 金海郡, 機張郡, 丹城郡, 東萊郡, 三嘉郡, 鎭南郡, 晋州郡등 家戶案도 있음)
資料：서울大學校(東西文化硏究所),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1980.

이로써 조선의 戶籍制度는 다른 歷史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정착하였다. 戶口調査를 每式年(子, 午, 卯, 酉年)別로 실시하되 그 臺帳을 그때마다 改編하여 이를 戶曹, 漢城府, 本道·本邑 등에 備置케 하였다. 調査體系는 각 戶의 戶長이 戶口單子(호적등본類)에 居地, 職役, 姓名 등을 附記해서 邑, 道, 漢城府를 통하여 申告하면 漢城府는 이를 上啓(報告)하고 史官에게 넘긴다.

朝鮮 中央官署의 하나인 戶曹는 戶口, 貢物, 賦役, 田糧, 食糧 등을 管掌하였는

바 그에 所屬된 官署로 版籍司, 會計司, 經費司를 두었다.

- 版籍司 : 戶口, 田地, 租稅, 賦役, 貢納, 農事, 蠶業 및 豊凶調査와 진대(救恤)등 事業을 담당
- 會計司 : 京·外의 金錢, 食糧에 관한 收支計算 등을 담당
- 經費司 : 京都와 宮庭 및 外事關係의 經費支出 담당

朝鮮의 戶口와 田制 및 租稅를 담당하는 部署로서는 戶曹以外에 兵曹, 工曹가 一部 機能을 하고 承政院(國王 秘書室) 6房의 하나인 戶典을 관장하는 戶房도 있는 바 이는 左承旨所管이다. 承政院制度는 멀리 百濟의 內臣佐平, 新羅의 執事部에서 비롯되어 高麗時 中樞院을 거쳐 世宗때에 承政院으로 된 것이다.

또 地方에서도 6房官屬의 하나로 戶房을 두어 戶典, 戶籍 田量에 관한 鄕里의 일을 맡아 보았다.

戶口는 戶數와 人口數를 통칭하는 것으로 調査要領(戶口單子作成要領)을 禮典의 「戶口式」에서 보면 戶主의 住所, 職名, 姓名, 年齡(年甲), 本貫, 四祖, 妻某의 年甲 및 本貫, 妻의 4祖까지의 姓名, 率居子女의 이름과 年甲, 女壻가 있을 경우는 그 本貫과 성명 및 年甲, 奴婢·雇工某某의 年甲 등을 조사한다. 따라서 이 戶口式대로 한다면 男女, 老少, 良賤의 구별없이 조사당년의 현재人口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는 실제 많은 調査人力이 필요하게 되므로 式年調査때에는 해당고을의 士大夫들을 차출(擇差)하여 委任한 委官으로 충당토록 續大典에 규정하고 있다. 式年조사에 入籍된 자는 戶口를 成給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와 다른 점은 本·妻家의 四祖까지를 밝히는 것이고, 庶人의 경우 이를 모두 밝힐 수 없을 때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하였다. 조사된 戶籍은 담당관의 확인(押)을 거쳐 다음해 봄까지 戶曹의 版籍司가 總括하여 全國의 戶口統計를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사된 것을 기초로 每五戶마다 統을 구성하고 每統에 統主를, 每五統으로 里를 구성하여 里正을 두고 또 매面마다 勸農官을 두되 地廣戶多의 경우에는 統數나 里數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해 오는 朝鮮의 戶口調査系列은 다음과 같다.

朝鮮建國初期 戶口統計

道 別	戶口	戶口總數[1]		王朝實錄			戶口總數	世宗實錄地理志[2]
		太祖4年 (1395)	太祖6年 (1397)	太宗4年 (1404)	太宗6年 (1406)	世宗5年 (1423)	世宗10年 (1428)	世宗8年 (1426)
서 울	戶					11,056	16,921	(서울) (開城) 18,794 5,663
開 城	口						103,328	(–) (10,393)
京畿左道	戶		10,739		10,739	戶	八道統計없음	戶
	口		19,319		19,319	23,098		20,882
京畿右道	戶		9,990		9,990	口		口
	口		18,819		18,819	없 음		(50,352)
忠 淸 道	戶	19,561	19,560	19,561	19,560	23,098		24,170
	口	44,476	44,476	44,476	44,476			(100,790)
慶 尙 道	戶	48,991	48,993	48,992	48,993	43,284		42,227
	口	98,915	98,915	98,915	98,915			(173,759)
全 羅 道	戶	15,703	15,714	15,703	15,714	15,923		24,073
	口	39,151	39,167	39,151	39,167			(94,248)
黃 海 道	戶	14,170	14,170	14,170	14,170	17,701		23,511
	口	29,401	29,441	29,401	29,441			(71,897)
江 原 道	戶	15,879	15,879	15,879	15,879	15,290		11,084
	口	29,238	29,224	29,238	29,224			(29,000)
咸 鏡 道	戶	11,311	11,311	11,311	11,311	16,387		14,739
	口	28,693	28,683	28,693	28,683			(66,978)
平 安 道	戶	27,788	33,890	27,788	33,890	34,609		41,167
	口	52,872	62,321	52,872	62,321			(105,444)
計	戶	153,403	180,246	153,404	180,246	196,975		226,310
	口	322,746	370,365	322,786	370,365			(817,626)[3]
戶 當 人 口 數		2.1人	2.1人	2.1人	2.1人	?	6.1人	(3.6人)
備 考		7道戶口 (京5部除外)	8道戶口 (京5部除外)	7道戶口 (京5部除外)	8道戶口 (京5部除外)	京8道戶數	京5部戶口	

註：1)「戶口總數」(正祖13年, 1789),「서울大學校古典叢書」, 서울大學校出版部, 1971.
合計는 增補文獻 備考의 本文.
2) 端宗2年(1454) 撰.
3) 推定値

現在까지 朝鮮時代에 관한 戶口統計 時系列은「王朝實錄」,「度支志」,「戶口總數」를 비롯한 地志등 각종 文獻에 있는 것을 정리한 硏究論文들이 各樣하여 利用에 混線이 많았다. 특히 日帝時代 以後에는 이들 文獻間의 不一致, 收奪政治와 兩

班社會의 不條理, 調査結果의 全人口把握率(完成度), 심지어 近代的 意味의 特定假定을 前提로 한 資料檢索과 資料信憑性 등에 중점을 두어 朝鮮戶口統計를 批判的 視角에서만 검토하였었다. 다행히 70年代後半에 들면서 人口學的, 民俗學的 分析이 試圖되기 시작하였다. 硏究史的 意味에서 20세기에 들어 와서 발간된 重要한 것을 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 增補文獻備考 戶口考, 1908, 朴容大, 金澤榮등(大韓帝國 撰集廳)
- 朝鮮의 人口現象, 1927, 善生永助(朝鮮總督府官房 文書課)
- 統計要綱, 1954, 姜益秀
- 韓國統計小史, 1960, 鄭準植(內務部「통계월보」2月號)
- 李朝時代以前 韓國의 人口統計, 1961, 趙弼濟(內務部「통계정보」6·7月號)
- 朝鮮前期戶口總數에 대하여, 1977, 韓永愚(서울大學校「인구와 생활환경」)
- 朝鮮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1977, 權泰煥, 愼鏞廈(서울大學校「東亞文化」第14輯)
- 朝鮮社會經濟史硏究, 1987, 鄭德基

本硏究에서는 朝鮮時代의 戶口統計가 一代를 통하여「式年」調査를 徹底化하여 왔다는 것을 重視하고 時系列의 각 時點을 式年(子, 卯, 午, 酉年)에 맞추고 또 朝鮮戶口統計의 時系列을 맨 처음 提示한「戶口總數」(1639～1789間)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王朝實錄과 度支志 등 其他 資料도 함께 수록하여 朝鮮後期의 戶口統計 時系列을 앞 表와 같이 정리하였다.

朝鮮前期 戶口調査 資料

年度	王朝	干支	戶　數	口　數	備　　考
1393	太祖 2	癸酉		301,300	兩界漏落
1404	太宗 4	甲申	153,404	322,786	漢城府 京畿道 漏落
1406	〃 6	丙戌	180,246	370,365	漢城府 漏落
1423	世宗 5	癸卯	196,975	—	
1426	〃 8	丙午	16,921	103,328	八道調査缺(戶口總數는 1428年)
1440	〃 22	庚申	201,853	692,475	漢城 開城 漏落
1445	〃 27	乙丑	217,000	—	漢城戶口漏落
1519	中宗 14	己卯	754,146	3,745,481	
1531	〃 26	辛卯		3,965,253	
1543	〃 38	癸卯	836,669	4,162,021	

資料：權泰煥, 愼鏞廈『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관한 一試論』, 1977.

朝鮮後期의 戶口數 時系列(式年式)

＜戶口總數＞

年 代	干支	西紀	戶 數	人 口 數			備 考
				計	男	女	
仁祖17年	己卯	1639	441,827	1,521,165			
20年	壬午	1642	481,660	1,649,012			
23年	乙酉	1645	505,911	1,738,888			
26年	戊子	1648	533,720	1,793,701			度支志에는(戶 441,321 口 1,531,365)
孝宗 2年	辛卯	1651	580,539	1,860,484			
5年	甲子	1654	628,603	2,047,261			
8年	丁酉	1657	668,737	2,201,098			度支志에는(戶 658,771 口 2,290,083)
顯宗元年	庚子	1660	758,417	2,479,658			
4年	癸卯	1663	809,365	2,851,192			
7年	丙午	1666	1,108,351	4,107,156			
10年	己酉	1669	1,313,652	5,018,744			度支志에는(戶1,313,453 口5,018,644)
13年	壬子	1672	1,205,866	4,720,815			王朝實錄에는(戶1,342,074 口5,164,524)
肅宗元年	乙卯	1675	1,250,298	4,725,704			
4年	戊午	1678	1,332,446	5,872,217			度支志에는(戶1,342,428 口5,246,900)
7年	辛酉	1681	1,376,842	6,218,342			
10年	甲子	1684	1,444,377	6,573,107			
13年	丁卯	1687	1,468,537	6,769,733			
16年	庚午	1690	1,514,000	6,952,907			
19年	癸酉	1693	1,547,237	7,045,115			
22年	丙子	1696	(1,200,145)	(5,208,500)			京中6道(平・咸 除外)
25年	己卯	1699	1,333,330	5,774,739			
28年	壬午	1702	1,342,486	5,922,510			
31年	乙酉	1705	1,370,313	6,062,952			
34年	戊子	1708	1,406,610	6,206,554			
37年	辛卯	1711	1,466,245	6,394,028			
40年	甲午	1714	1,504,483	6,662,175			
43年	丁酉	1717	1,560,734	6,788,789			王朝實錄에는(戶1,557,709 口6,839,771)
46年	庚子	1720	1,559,488	6,799,097			原本에는 47年이나 庚子年은 46年임.
景宗 3年	癸卯	1723	1,575,966	6,865,404			度支志에는(戶1,574,066口6,865,286)
英祖 2年	丙午	1726	1,614,598	(6,995,400)	(3,372,219)	(3,623,181)	( )은 王朝實錄
5年	乙酉	1729	1,663,245	(7,131,553)	(3,489,137)	(3,642,416)	〃
8年	壬子	1732	1,713,849	(7,273,446)	(3,595,328)	(3,678,118)	〃
11年	己卯	1735		(6,979,798)	(3,471,342)	(3,508,456)	〃
			1,618,172	6,882,042			

年　代	干支	西紀	戶　數	人　口　數			備　　考
				計	男	女	
英祖14年	戊午	1738	(1,662,219)	(7,040,480)	(3,419,148)	(3,621,332)	( )안은 王朝實錄의 英祖15年末임.
			1,692,184	7,096,565			
17年	辛酉	1741	(1,574,955)	(6,673,333)	(3,300,130)	(3,373,203)	( )안은 王朝實錄 英祖17年숫자임.
			1,685,884	7,192,848			
20年	甲子	1744	1,749,612	7,209,213			
23年	丁卯	1747	1,759,692	7,340,318			
26年	庚午	1750	1,783,044	7,328,867			
29年	癸酉	1753		(7,288,627)	(3,583,865)	(3,704,762)	( )안은 王朝實錄 資料임.
			1,772,749	7,298,735			
32年	丙子	1756	1,771,349	7,318,359			
35年	己卯	1759	1,690,715	6,968,856			
38年	壬午	1762	1,691,040	6,981,598			
41年	乙酉	1765	1,675,267	6,974,642			戶口總數資料이나 實錄42年末에도 같은値였음.
44年	戊子	1768	1,679,865	7,006,248			
47年	辛卯	1771	(1,689,046)	(7,016,379)	(3,384,204)	(3,632,175)	( )안은 王朝實錄 資料임.
			1,689,046	7,016,370			
50年	甲午	1774	1,703,030	7,098,441			度支志에는(戶1,692,607 口7,039,068), 戶口總數와 실록도 同値임.
正祖元年	丁酉	1777	1,715,371	7,238,523	3,537,786	3,700,737	戶口總數에 男女別 區分함.
4年	庚子	1780	1,714,550	7,228,076	3,498,036	3,730,040	
7年	癸卯	1783	1,733,757	7,316,924	3,563,685	3,753,239	
10年	丙午	1786	1,740,592	7,330,965	3,576,514	3,754,451	
13年	己酉	1789	1,752,837	7,403,606	3,607,376	3,796,230	<「戶口總數」刊行年임>

<王朝實錄>

年　代	干支	西紀	戶　數	人　口　數			備　　考
				計	男	女	
正祖16年	壬子	1792	1,689,596	7,438,185			
22年	戊午	1798	1,741,184	7,412,682			
純祖元年	辛酉	1801	1,757,973	7,513,792			
7年	丁卯	1807	1,764,801	7,561,403			
10年	庚午	1810	1,761,887	7,583,046			實祿11年末値 <前年度分後記>
13年	癸酉	1813	1,637,108	7,903,167			〃 14年末値 < 〃 >
16年	丙子	1816	1,555,998	6,595,368	3,261,696	3,333,672	
19年	己卯	1819	1,533,515	6,512,349	3,234,748	3,277,601	實錄20年末値 < 〃 >
22年	壬午	1822	1,534,238	6,470,570	3,224,711	3,245,859	〃 23年末値 < 〃 >
25年	乙酉	1825	1,549,653	6,558,784	3,270,862	3,287,922	〃 26年末値 < 〃 >

年　代	干支	西紀	戶　數	人　口　數			備　　考
				計	男	女	
純祖28年	戊子	1828	1,563,216	6,644,482			實錄29年値　<前年度分後記>
31年	辛卯	1831	1,565,060	6,610,878			〃 32年値　<　〃　>
34年	甲午	1834	1,578,823	6,755,280			實錄憲宗卽位年　<　〃　>
憲宗元年	乙未	1835	1,572,454	6,615,407			
3年正月	丁酉	1837	1,575,411	6,613,327			濟州包含. 同年12月에 (戶 1,551,951 口 6,708,572)
5年正月	乙亥	1839	1,577,806	6,684,191			濟州除外. 同年12月에 (戶 1,577,824 口 6,693,006)
6年	庚子	1840	1,560,774	6,617,997			
8年正月	壬寅	1842	1,568,176	6,625,953	3,315,925	3,310,028	同年初에(戶1,570,473 口6,701,629)
9年正月	癸卯	1843	1,566,892	6,630,491			同年12月(戶1,582,313 口6,703,684)
10年	甲辰	1844	1,582,673	6,719,648			<前年度分後記>
11年	乙巳	1845	1,572,656	6,656,440			<　〃　>
12年	丙午	1846	1,581,594	6,743,862			<　〃　>
13年	丁未	1847	1,587,181	6,751,656	3,377,902	3,373,754	<　〃　>
14年	戊申	1848	1,118,911	12,643,442	6,028,688	6,614,754	戶, 口, 男女別 數가 異常値이다.
(哲宗卽位年)	己酉	1849	1,529,356	6,470,730	3,241,987	3,228,743	實錄哲宗元年記載値
15年							
哲宗 3年	壬子	1852	1,588,875	6,810,206	3,422,741	3,387,465	
6年	乙卯	1855	1,597,343	6,828,907	3,433,535	3,395,372	實錄 7年値(前年度分後記), 濟州包含.
9年	戊午	1858	1,600,434	6,869,102	3,460,405	3,408,697	實錄10年値(　〃　), 濟州包含.
12年	辛酉	1861	1,589,038	6,748,138	3,393,934	3,354,204	

<其　他>

年　代	干支	西紀	戶　數	人　口　數			備　　考
				計	男	女	
高宗元年	甲子	1864	1,703,450	6,828,521			甲子式京外戶口表
26年	己丑	1889	1,569,642	6,510,995			漢城府 發表
光武 4年	庚子	1900	1,397,630	5,603,151			韓國戶口表(財務顧問府편집)
8年	甲辰	1904	1,419,899	5,928,802			〃 (〃)
10年	丙午	1906	(2,765,878)	(13,023,029)			內部調査, ( )안은 朝鮮總督府統
			1,384,493	5,793,976			計年報
純宗	丁未	1907	(2,772,503)	(13,040,701)			韓國戶口表(警務顧問部)
隆熙元年			2,333,087	9,781,671			( )안은 統計年報
2年	戊申	1908	2,781,696	13,071,177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3年	己酉	1909	2,787,891	13,090,856			〃
4年	庚戌	1910	2,804,103	13,313,017	7,057,458	6,255,559	〃

나. 戶口調査資料의 評價

오늘날의 人口調査와 같은 重要性을 지닌 戶口統計는 그것이 이루어진 時代的 背景과 效率性面에서 評價할 必要가 있다. 例컨데 1876年(丙子=式年)에 작성된 扶餘 鴻山縣誌를 보면 總戶數는 3,893戶에, 人口는 16,437人으로 男女 각각 8,214 및 8,243人이다. 可視的인 戶數는 統計의 屬性上, 비교적 정확하였을 것이며 男女性比에도 무리가 없으나 戶當 平均人口가 4.2人으로 나타나있다. 이런 경향은 앞의 時代的 資料에서 보다시피 朝鮮一代를 통하여 全國的인 戶口統計 趨勢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는 一時的, 地域的인 攪亂要因, 不規則要素의 作用이었다고만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制度的, 現實的 根據(調査母集團, 調査方法, 調査實務慣行등)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그것을 추적평가하고자 한다.

鴻山縣誌의 數値는 現代(1987年)에도 靑壯年이 떠난 農家戶當 4.15人과 비슷하다. 비단 鴻山縣誌뿐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계파악이 가능한 仁祖17年(1639)부터 純宗4年(1910)까지의 270年間 전국의 호당평균人口도 4.0이었다(단 1848년의 호당 11.2人 除外).

이와 같이 戶當平均人口가 過少하게 집계된 원인은 課稅나 國役자원확보를 위해 廢戶를 實在한 것으로 잡았거나 아니면 통계대상인구의 년령을 제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나 이점에 대해서 16歲이상 60歲이하의 民丁(男女丁)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度支志에서는 「丁數」라고 한 바있다.

따라서 조사당년의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戶籍을 작성토록한 經國大典 戶典條의 규정은 戶籍 成籍이 가능한 良民以上계층의 人口, 특히 壯丁이 중심이였다고 할 수 있다.

上記 戶口總數만으로는 아무렴의 戶口가 너무 적게 잡히거나 家口當人員이 4명 내외로 나타나 당시의 國力이나 大家族制 그리고 附庸寄居人力 등 民俗學的인 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는 한편 朝鮮의 戶口統計推移에서 당시의 戶口槪念과 現代의 戶口槪念을 同一視할 수 없다는 것을 留意해야할 것이다. 國役(軍丁, 賦役)과 貢租 및 稅結을 重視하며 階級社會意識이 지배했던 당시는 國民(臣民)으

로서의 權利義務가 없는 賤民層, 流浪人, 火田民, 部曲人(이들도 조선시대에 특수기능 집단화 했음) 및 노비(外居奴婢) 등이 당연히 戶口統計에서 제외되고 15歲未滿, 60歲以上의 幼老와 女子의 數도 필요에 따라서는 제외되기도 하였다고 보기때문이다. 또 때로는 國役의 基本인 都城과 京畿地域만 조사하는가 하면 地方에서도 전지역을 단계적으로 구획실시하거나 주민들도 구분하여 貢租를 重視할 때도 있다.

戶口數가 過小評價된 또 하나의 重要한 要因으로는 「戶口式」이 申告統計였다는 것이다. 近代統計學에서의 一般母集團이 아니라 戶口成籍者가 이를 啓告함으로써 이루어진 申告集團이다. 거기에 戶口數에 관한 申告統計는 下向偏倚를 屬性으로 한다. 朝鮮의 成籍申告는 또한 高麗末以來시행해온 戶牌制度와 관계가 밀접하다. 太祖(太宗)~世宗代에 人口數가 30~70万이란 것을 成籍者중에서도 戶牌發給者로 限定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戶口式統計를 평가할 때는 社會階層 男女老少같은 身分的 要件과 調査時期, 調査地域의 分布와 地域別 特性등 調査慣行 및 戶口成籍啓告(申告), 戶牌發給같은 制度的 背景이나 戰亂등 要因分析을 兼行해야한다. 이에 대한 硏究가 今後의 한 課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世宗時代(1416~50)에 조사한 자료에 입각하여 撰修한 「世宗實錄地理志」(端宗2年撰)와 또 當代의 地域別(道別)地理志 중에서 현재 전해져 오는 「慶尙道地理志」(世宗7年撰)資料를 利用하여 朝鮮一代의 戶口總數 性格과 完全性을 추구하여 보고자 한다. 이 兩志를 비교할 때 「같은 慶尙道」의 戶數는 비슷하게 나타나 있으나 人數는 「慶尙道地理志」가 약 2배나 많아서 여기에는 女子와 奴婢, 賤民 등도 상당히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慶尙道地理志는 道內의 각 府郡縣別로 戶數와 男女別 人口數 및 地方的 特性까지 상세하게 조사한 것으로서 戶當人員이 15명을 넘는 지방도 있고 전체 인구수면에서도 당시의 公式戶口統計(式年調査)와는 현격한 差異가 있다. 먼저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각 道別 戶口數는 다음 表와 같다.

다만 여기서는 京都 漢城府의 戶數가 나와 있으나 人口數가 누락되어 있는 데 이는 戶口式年調査에 있는 世宗10年 資料(前記表參照;年次는 差異가 있으나 대개 비슷한 時期)에 地方 8道分을 제외한 漢城만의 戶口數가 나타나 있어 이를 사용키

로 한다. 여기서 地方 8道分을 제외하였다는 것이 漢城만을 조사한 것인지 前代都城인 開城府도 특별취급해서 여기에 包括시킬 수도 있는지는 不明이나 당시 開城의 戶口規模가 별로 크지 아니하여 世宗10年 式年資料가 漢城만의 戶口數라 해도 推算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이다.

世宗實錄地理志의 道別戶口數[1]

	戶數	人口數	戶當人口
京都漢城府	18,794	(114,765)	6.11
開城	5,663	10,393	1.84
京畿	20,882	50,352	2.41
忠淸	24,170	100,790	4.17
全羅	24,073	94,248	3.92
慶尙	42,227	173,759	4.11
黃海	23,511	71,897	3.06
平安	41,167	105,444	2.56
江原	11,084	29,000	2.62
咸鏡	14,739	66,978	4.54
合計	226,310	817,626	3.61

註1) 世宗朝의 調査資料로 端宗2年 1454年 撰修된 것임.
資料:朝鮮의 人口現象,善先生永助 1927.

이 世宗 10年의 戶口資料를 世宗實錄地理志의 戶數와 단순비례로 환산하면 漢城의 人口數 114,765名을 推定한다. 이로써 世宗實錄地理志의 各道 戶口數를 全國 合算하면 817,626名으로 戶當人口는 3.61名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世宗6~7年間 道管內 66個 府郡縣의 行政區域別 戶口數資料를 보면 38,978戶에 331,820名으로 戶數는 實錄値(42,227戶)와 근사하나 人口數는 거의 2倍나 된다. 다만, 여기서는 사당패, 초라니 등 이른바 遊浪演藝人과 僧侶, 火田民 등이 다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慶尙道人口數(「世宗實錄地理志」와 「慶尙道地理志」比較)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戶數	42,227	38,978
人口數	173,759	331,820

戶當人口의 多寡를 결정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있을 것이나 一定한 경향을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慶尙道地理地 자료에서 보면 地域別로 戶當 15人 이상을 보인 聞慶, 榮州(榮川)같이 土壤이나 泉井, 深度, 氣溫 및 風俗이 모두 逆境克服型인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대개는 비록 淺井일지라도 땅이 肥沃하고 氣候가 溫暖한 것과 함께 儉素한 氣風이 있는 樂土검속형地方의 戶當人口數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都護府인 善山, 金海는 우물물도 깊고 好學의 風이 있다고 하였고 특히 善山은 華麗하다고도 하였다. 縣地域 중에는 昌寧의 好學과 東萊의 深井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물물의 경우 2, 3處를 제외하고는 대개 淺井地域의 戶當人員數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慶尙道地理志上 戶當人口가 많은 地方

地 域[1]	戶數	人 口 數					備 考[3]
		計	人/戶	男	女	姓比[2]	
聞慶○	161	2,564	15.9	1,065	1,499	71.0	척 淺 寒 儉
榮州(郡)	377	5,902	15.7	3,087	2,815	101.7	척 淺 寒 儉 蠶
善山(都)	809	9,136	12.3	4,218	4,918	85.8	肥 深 暖 好學 華
河陽○	177	2,156	12.2	1,087	1,069	101.7	肥半 淺 暖 儉
昌寧○	825	8,925	10.8	4,352	4,573	95.2	肥半 淺 暖 儉 好學
金海(都)	1,290	13,871	10.8	6,642	7,230	91.9	肥 深 暖 農 好學
固城○	531	5,718	10.8	2,885	2,833	101.8	肥半 淺 暖 儉
淸道(郡)	640	6,718	10.5	3,361	3,357	102.1	肥半 淺 暖 儉 蠶
예천(郡)	781	8,191	10.5	3,800	4,391	86.5	— — — —
玄風○	477	4,939	10.4	1,871	3,068	61.0	肥半 淺 暖 儉
東萊○	290	2,416	8.3	1,151	1,265	91.0	肥 深 暖 儉

註1) (都):都護府, (郡):郡地, ○:縣地
2) 女子 100에 대한 男子比率임.
3) 土壤狀態(척肥), 井水깊이(深, 淺), 氣候(寒, 暖) 및 風俗(儉素, 好學, 華치)을 나타냄.
資料:「朝鮮의 人口 現象」에서 抽出

〈參考〉 **慶尙道의 行政區域(世宗年代)**

留守府　1 慶州
大都護府　1 安東
牧　3 尙州, 晋州, 星州

都護府　6 金海, 寧海, 順興, 昌原, 密陽, 善山

都　15 梁山, 陜川, 울산, 예천, 榮川(榮州), 永川, 淸道, 咸安, 草溪, 興海, 咸陽, 金山, 大邱, 昆南, 靑松

縣　40 義城, 盈德, 慶山, 東萊, 固城, 巨濟, 高靈, 開寧, 昌寧, 彦陽, 咸昌, 龍宮, 泗川, 居昌, 禮安, 河陽, 河東, 機張, 靈山, 珍城, 基川, 仁同, 玄風, 奉化, 義興, 新寧, 迎日, 聞慶, 漆原, 軍威, 山陰, 安陰, 知禮, 淸河, 三嘉, 宜寧, 鎭海, 眞寶, 比安

女子보다 男子가 많은 지역은 모두 儉素하고 淺井이고, 好學과 深井地域은 대개 여자보다 남자가 적었다. 玄風과 聞慶은 性比가 극히 낮아 여기는 地味, 井狀, 風俗이 儉薄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地理的인 人口分布與件을 全國的으로 확산해 볼 수 있는가는 여기서 速斷할 필요가 없다. 다만 世界에서도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3백년간에 걸친 式年戶口統計資料를 보유하고 있는 韓國統計의 遺産을 더욱 效果的으로 간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檢討해 본 것이다.

한편 위 戶口統計표에서는 1864年(甲子)以來 1900年(庚子)까지 36年間의 計數空白이 나타나고 있으나 1888年과 1889年에도 漢城府에서 공식으로 全國戶口數를 발표하였으므로 실제의 空白期는 1864~1884年間 20年인 셈이다.

1880年代의 戶口數

	戶數	人口數			備考
		計	男	女	
1883(癸未)	2,355,499	10,518,937	5,322,633	5,196,304	Japan Daily Herald
1885(乙酉)	—	28,007,401	15,004,492	13,003,109	萬國政表
1888(戊子)	?	6,567,038	?	?	漢城府發表
1889(乙丑)	1,569,642	6,510,995	?	?	〃
1897(丁酉)	1,332,501	5,198,248	2,967,687	2,328,481	內部 調査

資料:「韓國誌」러시아 財務部編(韓國精神文化硏究院 譯編)
「韓國史大系年表」千寬宇編

1864年은 高宗이 즉위한 해이며 그뒤 大院君의 攝政과 下野(1873) 雲揚號事件(1875) 統理機務衙門 設置(1880)에 이어 對外修交(1882), 甲申政變(1884) 등이 잇

따르며 본격적인 開化期에 전입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런 경황에 戶口調査報告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이나 한편 1888, 89年에도 公式統計가 발표된 것을 보면 그 사이에도 報告가 없던 것이 아니라 다만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무렵은 개회격동기일 뿐 아니라 중심문헌인 실록 등의 편찬불실로 기록확인의 困難이 수반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朝鮮王朝實錄은 哲宗때까지이고 高宗, 純宗實錄은 後代의 追錄이다).

가령 위표에서 1883年의 戶口統計는 日本의 Janpan Daily Herald紙가 한국의 공식집계라고 한 것이며 이는 1885年에 韓國政府主導로 編述된 萬國政表(金允植의 발문)의 統計와 함께 종전의 계수에 비하여 엄청나게 뛰고 있어 조사나 집계방법의 變革이 시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

1897年의 內(務)部 調査分은 그해에 國號를 大韓帝國, 年號를 光武로 하였고 그 전해(1896)에 칙령으로 戶口調査規則이 公布된 이후의 計數이다. 이처럼 1888, 89, 97年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戶口統計가 종전과 같은 패턴인데 비하여 1883, 85년의 계수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財務部에서 編刊한 「韓國誌」(韓國精神文化硏究院 譯刊)에서는 조사방법의 차이, 신빙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그 무렵의 識者들과 심지어 政府高位官吏들까지도 한국의 실제상 인구는 대개 1,500만~1,600만명으로 보고있었다고 한다.

外國人의 韓國人口 推定

추 정 자	추 정 인 구	해 당 년 도
① 달레	7,500,000人(1,720,000戶)	1844
② 다빌리	7,342,361	1863
③ 베엠	8,500,000	1875
④ 日本政府(「한국지식」)	16,227,885(3,480,911戶)	1881
⑤ 그리피스	12,000,000	1882
⑥ 고세트	12,000,000	1884
⑦ 오페르트	15,000,000~16,000,000	1885
⑧ 알렌 등	16,000,000	1889
⑨ 비숍	12,000,000	1897
⑩ 러시아政府[1]	10,000,000~13,000,000	(1897)

註1) 「韓國誌」 同上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을 관찰하던 외국인들의 推定을 보면 1870年代까지는 750~850만명 정도 였으나 1880年代에는 1,200만~1,600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式年戶口가 申告(啓告)統計의 屬性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大韓帝國 末期에 成戶籍을 強化하고 戶籍에 있어서의 身分階層이 崩壞·撤廢되면서 공식 人口統計가 1,300만명 수준에 이른다. 光武年間(특히 光武10年)에는 일종의 過渡期로서 式年人口(5,928천명)와 實査人口(13,023천명)統計가 共存한 때라 할 것이다. 그리고 隆熙年間(1907~1910)에는 1,300만명이란 人口가 정착한다(이무렵의 完成度는 70% 水準으로 推測).

이상으로 보아서도 式年戶口統計는 戶口成籍者(申告 統計)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戶籍이 없는 無籍者(無申告者)는 자연히 제외되었던 것이다. 太宗(또는 太祖)代의 人口가 30萬名수준이거나 世宗代의 70萬名수준도 그런 戶籍申告者와 戶牌發給者 統計에 의한 것이다. 그러다가 壬亂·丙亂이후 成戶籍申告를 강화하였던 바 仁祖 17年(1639)에 150만명線에서 顯宗10年(1669)에 500만명선으로 불과 30年만에 人口가 3.3倍나 급증한 것도 그 무렵의 실제인구(500만명)를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戶口成籍 申告의 成果를 높인 것이다. 따라서 戶籍者만 다루는 式年統計와 無籍者를 包含한 實際人口統計(推定)間의 乖離는 大韓帝國 末期에 상당수 해소했다고 할 것이나 이때는 日帝의 強制動員과 收奪등 強壓統治의 手段으로서 民戶를 파악코자 하는 政策目的이 作用한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이를 人口學ㅁ的 理論에 근거하여 戶口調査資料를 評價하고 戶當家口數, 人口增加率 및 서울등 特定地域을 基準으로 한 補整등 完成度分析으로서 조선시대의 實際人口數를 推定試算한 바에 의하면 建國初期(太祖元年 1392:壬申)에 555萬名水準에서 中期인 1510年(中宗 6年)에 1,010萬名水準, 그리고 壬亂直前 1592年(宣祖 25年:壬辰)에는 1,374萬名水準으로 늘었으나 戰亂·戰後에는 人口減少를 반영하여 1639年(仁祖 17年:己卯)에 1,067만명으로 줄었다가 1807年(純祖 7年:丁卯) 1,862萬名을 정점으로 다시 下向하여 1823年(純祖 23年 癸未) 1,622萬名에서 다시 上向하다가 1910年 韓日合邦時에는 1,743萬名이었다고 한다. 이들 推定曲線에 의하여서도 政變戰亂, 慌作, 大洪水, 疾病慢延 등의 시기에는 戶口式 申告가 10%에도 못미치고 安定期에는 全戶口成籍을 커버하는(完成度 40~60%)水準으로 정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量田制度(土地·物產調査)

가. 量田의 實施

조선조의 量田은 農地統計를 뜻한다. 量田의 목적은 종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結稅(租)確保, 職田 및 賜田給與, 諸田設置(籍田, 官屯田, 馬田, 院田, 律夫田, 氷夫田, 守陸軍田, 國行水陸田, 司菜田, 內需司田, 惠民署種藥田, 寺田, 衙祿田, 公須田, 渡田, 崇義殿田, 水夫田, 長田, 副長田, 急走田) 등을 위하여 필요하였다.

조선조의 量田은 世宗26年(1444)에 설치한 田制詳定所(貢法詳定所의 後身)의 田制改正에 따라 고려조 이래의 土地等級(三等級)을 비척에 따라 六等級으로 나누었다. 그 면적은 같은 一結이라도 等級에 따라 隨等異尺을 적용함으로써 넓이와 크기가 다르다고 함은 前記 度量衡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이 등급은 지속된 것은 아니다. 戶典 量田條에는 계속 耕作되고 있는 종지를 正田, 耕作과 休耕(陳荒)이 반복되는 땅을 續田이라 규정하고, 正田이라도 地力이 척박하여 곡식이 잘 여물지 않는 農地, 續田이라도 土性이 기름져 소출이 倍多한 農地 등을 守令은 置簿해 두었다가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每式年(3年)마다 改正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때 농지의 등급조정은 매3년마다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농지통계의 기초는 田畓量案에서 비롯되는데 量案은 농지대장을 뜻하며 일명 田籍이라고도 한다. 量案은 농민 개개인의 경작면적이라든가 課稅를 위한 소득관계 추정자료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오늘날의 登記簿구실도 하는 것이다.

朝鮮時代의 傳統的인 結負法 土地制度下에서는 量田이 田政의 基礎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만큼 歷代政權은 量田의 徹底를 圖謀하였고 經國大典에서는 20年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막대한 國庫과 人力 및 時間이

소요되기때문에 不規則施行이 不可避하였지만 田政의 問題가 表出하거나 農民抗爭이 발생하면 수시로 일정지역에 대하여 量田을 실시하였다.

壬亂~光武年間의 量田地域

量田 施行年度	量田地域	量田 施行年度	量田地域
1603·04년 (宣祖 36·37)	8道(5道?)(癸卯量田)	1746년(英祖 22)	黃海道 信川
		1748년(英祖 24)	咸鏡道 會寧·茂山
1613년(光海君 5)	三南	1749년(英祖 25)	黃海道 金川
1634년(仁祖 12)	三南(甲戌量田)	1750년(英祖 26)	慶尙道 慶州·長 ·延日·興海 (4邑)
1663년(顯宗 4)	京畿道		
1665년(顯宗 6)	咸鏡道	1756년(英祖 32)	黃海道 黃州·載寧
1669년(顯宗 10)	忠淸道 公州·淸州·尼城·天安·洪州·溫陽·木川·堤川·扶餘·保寧·林川·庇仁·靑陽·淸安·延豐·恩津·結城·全義·平澤·定山 (20邑)	1759년(英祖 35)	黃海道 松禾
			京畿道 水原·長湍
			忠淸道 永同·沃川
		1761년(英祖 37)	江原道 楊口
		1762년(英祖 38)	京畿道 振威·富平
		1767년(英祖 43)	咸鏡道 會寧
	黃海道 黃州·海州·安岳·平山 (4郡)	1777년(正祖 1)	慶尙道 咸安
		1791년(正祖 15)	慶尙道 昌原
1701년(肅宗 27)	黃海道 강익·옹진·殷栗(3邑)		忠淸道 結成·懷仁
1709년(肅宗 35)	江原道 通川·襄陽·蔚珍·旌善·杆城·固城·寧越·平昌·飮谷·平海·江陵·三陟·原州·洪川·春川·橫城 (16邑)	1793년(正祖 17)	黃海道 安岳(중단)
		1831년(純祖 31)	慶尙道 興海
		1843년(憲宗 9)	慶尙道 漆原
		1846년(憲宗 12)	慶尙道 昌原·金山·鎭海·聞慶 咸昌
1719·20년 (肅宗 45·46)	三南(己亥·庚子量田)	1856년(哲宗 7)	慶尙道 眞寬
		1866년(高宗 6)	慶尙道 靈山
1727년(英祖 3)	慶尙道 開寧	1871년(高宗 8)	慶尙道 彦陽·東萊
1729년(英祖 5)	慶尙道 蔚山	1872년(高宗 9)	黃海道 平山
1736년(英祖 12)	江原道 旌善	1879년(高宗 16)	忠淸道 溫陽
1737년(英祖 13)	京畿道 楊根 등 6邑(8邑?)	1898년(光武 3)~	量地衙門(1898~1902)量田 124郡
1745년(英祖 21)	全羅道 陳田改量	1904년(光武 8)	地契衙門(1901~1904)量田 94郡

資料 : 奎章閣 韓國本圖書解題 서울大學校圖書館 1982

壬辰倭亂以後에 실시한 量田地域등 各種 年代記와 度支志, 增補文獻備考등 文獻

資料에서 추출하여 보면 倭亂以後에 실시한 量田事業중 대표적인 것은 宣祖 36, 37年(1603,4)의 癸卯量田, 光海君5年(1613)의 三南量田, 仁祖12年(1634)의 三南甲戌量田, 顯宗代의 京畿道量田(王14年, 1678), 咸鏡道量田(王6年, 1680), 忠淸·黃海道量田(王10年, 1684), 肅宗代의 黃海道量田(王27年, 1701), 江原道量田(王35年, 1709), 三南乙亥·庚子量田(王45,46年, 1719,20) 등이다.

量田의 결과로 작성하는 量案에는 田畓의 所在地, 넓이, 土地所有者나 作人을 기재하고 이에는 蘆田, 저전, 竹田, 松田, 蒙田, 果田 심지어 家庭에 딸린 垈地까지 菜田으로 計算되어 포함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土地所有關係는 물론 耕作面績과 産物 나아가 農家所得관계도 추정할 수 있는 資料이다(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量案」).

法典上 20年마다 量田을 실시하여 작성한 量案은 3部씩 만들어 戶當, 該當道, 該當邑 등에 각기 보관하게 하였다. 量案에는 이렇게 地域(郡縣)別로 작성하는 一般量案과 특수한 所有主, 所在地를 중심으로 만드는 宮房田量案, 營門·衙門主田量案 및 個人 量案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量案資料들은 역시 戰亂등으로 대부분 消失하고 현재 전하여 오는 量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顯宗10年(1669) 懷仁縣 量案이다. 奎章閣 總目錄으로서는 肅宗43年(1717)에 실시한 慶尙·全羅地域의 一般量案들이 있다.

나. 量案의 作成要領

이제 몇가지 量案資料에 의해서 量案 作成의 要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土地의 위치를 표시하는 ① 郡面里의 표시가 나오고 ② 같은 마을이라도 구역을 표시하는 字號를 기록하며 ③ 자호 및에 地番을 기록한다. 이어서 ④ 田畓의 方向을 동서남북으로 표시한 다음 ⑤ 田畓의 등급과 ⑥ 전답별의 모양 ⑦ 면적의 표시(길이, 넓이) 등이 있다. 이 경우 양안에 따라서는 吏讀式으로 몇다랭이(夜味 즉 논배미)의 표시가 병기되기도 한다. ⑧ 실면적을 결부법으로 표시하고 ⑨ 소유관계변동 및 소유자(경작자) 등이 기록된다.

이제 太常菜園菁根田 量案(1789)과 連川郡 東面芝沙洞田畓을 比較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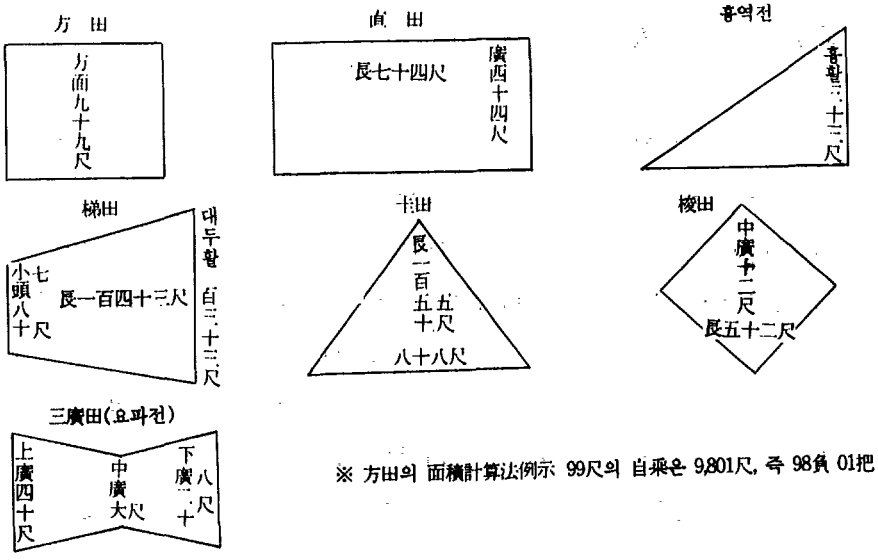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菁根田量案	馬場	在	第陸	西犯	等	梯田	長陸拾參尺 廣拾九尺	參負玖束 崔卜只田西	作 鄭興道
芝沙洞量案	芝沙	尺	第壹	南犯	伍等	梯畓	東西長陸拾尺 西大頭陸拾別 尺	貳拾參夜味 拾柒負壹束 東西同人畓 方集	?

경우에 따라서 소유이동 관계도 ⑨번에 기록되는데 舊金初試 今 孫益暉등의 기록이 있다. 기록이 매우 복잡하지만 현재와 같은 地籍圖가 없던 당시에는 最善이었던 것이다.

지적도와 유사한 것으로는 조선조에서도 魚鱗圖가 있었다. 1884년에 편찬한 三政圖說을 보면 田畓人戶魚鱗總圖가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의 大小, 土地等級에 따른 肥 , 田結數 등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그림이 물고기 비늘 같다해서 魚鱗圖라 이름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鳥瞰圖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別圖參照).

다음 地積測量에 있어서는 田畓의 모양이 고르지 않아 일정한 기준이 없이는 면적산출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1644년(孝宗4年) 戶曹에서 發行한 田制詳定所遵守條畫를 보면 地積測量의 要領이 例示規程되어 있으며 이 예시에 따라 量案을 作成토록 하고 있다. 各田의 모식도와 이에 따른 地積換算은 다음과 같다.



※ 方田의 面積計算法例示 99尺의 自乘은 9,801尺, 즉 98負 01把

그러나 土地台帳이나 統計는 예나 이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經國大典 戶典條의 量田條를 보면 농지통계는 매20년마다 改量成籍하여 戶曹와 本道, 本郡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 法典의 규정대로 전국각지에서 量田이 실시되었다면 量案의 數字는 莫大한 수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量田年度에서 보다시피 每20年 成籍의 原則은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數十年내지는 그이상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改量田한 것도 있다. 그것도 全國的인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따라서 일부분씩 改量하여 왔다.

이와 같은 量田 및 농지통계는 비록 일부지방의 것이라도 업무의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戶口통계와 같이 일선기관에서 임시적으로 위촉한 委官의 협조를 받아 통계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量田廳을 두고 均田使, 敬差官, 從事官 등을 파견하여 업무를 감독시켜 왔다. 고려 恭讓王3年(1391)에는 敬差官 金九德등 60餘人을 경기 豊海(黃海), 江原등지에 分遣하여 量田의 不正이나 오류를 시정시킨 사실이 있고 世宗10年(1428)에도 算法에 능숙한 敬差官 40餘人을 江原, 全羅道에 分遣한 사실이 있다.

또 세종30年(1448)에는 吏曹判書 鄭麟趾와 從事官, 敬差官 80여인을 전라도에 파견하여 10縣의 量田을 실시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戶口통계와는 달리 量田통계는 비록 일부지역의 순차적 改量이라 하더라도 中央이 직접 관장지휘한 것으로 믿어진다.

다. 作況 및 其他統計

농지통계는 歲收의 기초가 되나 해에 따른 豊凶 또한 歲收와 관련되므로 作況통계도 의당 시행되어 왔다. 大典 收稅條에는 매년 勸農官이 陰8月15日전에 作付여

結　　數

1391年 量田結數

	實　田	荒遠田	計(結)
京畿	131,755	8,387	140,142
六道	491,342	166,643	657,985
計	623,097	175,030	798,127

1448年頃 總田結數

道名	田結數	道名	田結數
京畿道	207,119結	黃海道	104,772結
忠淸道	236,300	江原道	65,916
慶尙道	301,147	平安道	308,751
全羅道	277,588	咸鏡道	130,413
合計	1,632,006		

資料『世宗實錄』

壬辰亂前後의 田結數

	宣祖壬辰(1592)前	光海君3年(1611)
京畿	150,000餘結	39,000餘結
忠淸	260,000	110,000
全羅	440,000	110,000
慶尙	430,000	70,000
黃海	110,000	60,000
江原	28,000	11,000
平安	170,000	94,000
咸鏡	110,000	47,000
計	1,698,000	541,000

資料「萬機要覽」財用篇2, 田結

1807年(純祖 7)田結統計表

道名	元帳付田畓結數	時起結	實結
京畿道	112,090結	52,322結	52,107結
忠淸道	256,528	126,333	120,833
全羅道	340,103	216,600	204,760
慶尙道	337,128	205,304	201,553
黃海道	132,211	73,548	68,548
江原道	41,151	11,712	11,569
平安道	119,635	85,190	84,910
咸鏡道	117,746	—	66,539
合計	1,456,592結	771,009結	810,819結

자료『萬機要覽』財用篇2, 田結

부, 災害등을 親審하여 守令에게 보고하며 이어서 매년 9月15日(음력)전에 각고을의 守令들이 그해의 作況을 面別로 調査토록 되어있다. 이 조사는 아마도 達觀調査

가 아닌가 한다. 이 결과는 觀察使가 更審하여 戶曹에 보고하고 議政府와 六曹가 同議하여 그해의 作況統計가 완결되고 이에 따라 收稅額이 확정되는 바 六曹의 作況기준은 9等分으로 되어 있다.

作況 및 收稅基準(經國大典)

作 況 (分)	年 分	1結當課稅(斗)
10	上上年	20斗
9	上中	18
8	上下	16
7	中上	14
6	中中	12
5	中下	10
4	下上	8
3	下中	6
2	下下	4
1	—	免 稅

經國大典의 其他統計 규정은 각도의 魚箭(어장), 鹽盆(염전) 등도 대장을 成籍하여 戶曹, 本道 및 해당군에 비치, 이를 기준으로 收稅토록 하고 있으며 牧子도 徵布한 것들을 보면 이들에 대한 統計도 어떤 형태로든 시행되어 왔을 것으로 믿어진다.

4. 社會改編과 近代的 統計需要의 發生

가. 商業經濟發達과 社會階層再編成

朝鮮後期에는 統治階層內部의 矛盾이 露出되고 知識人과 平民層의 近代指向的 批判意識이 高潮되었다. 거기에 朝鮮社會를 지탱하던 性理學의 學校思想體系도 傳統社會의 矛盾化 過程을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實學」의 成立·展開로 變換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특히 倭亂·胡亂 등으로 國家經濟基盤이 崩壞되고 國庫收入과 農民生活의 困境이

극도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田制·賦稅制를 改編하였던 바 宣祖41年(1608)에 모든 稅收를 米·布·錢으로 代行케 하는 大同法이 실시되어 國末까지 지속하였다. 또 仁祖5年(1627)에 實施한 三南地方에 대한 量田 結果를 근거로 永田法(年分法폐지, 固定稅額制=4斗/結)을 制定(1635)한 以後 英祖26年(1750)의 均役法 및 同36年의 比摠法 등으로 良役人口의 賦視負擔을 半減시키고 그대신 結米, 海稅, 軍官布등 新稅源으로 國家財政構造를 充實化·單統化하고자 하였다.

時代別·階層別 戶數構成比 變動(蔚山)

(단위 : %)

	兩　班		常　民		奴　婢[1]	
	戶	人　口	戶	人　口	戶	人　口
1729	26.29	19.39	59.78	49.57	13.93	31.03
1765	40.98	32.11	57.01	50.83	2.00	12.07
1804	53.47	43.67	45.61	33.88	0.92	22.99
1867	65.48	67.07	33.96	18.27	0.56	14.66

註 1) 奴婢의 人口比率은 外居奴婢와 率居奴婢의 合計
資料 : 鄭奭鍾「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1983.

그러나 이무렵의 重農施策과 農業技術開發(移秧法－12毛作, 水利施設 普及－貯水地, 提堰事業) 및 開墾地 擴大 등으로 中小地主層이 發生하여 士大夫의 位相이 변질되고 한편으로는 農民中 無田農民化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이것이 農村社會를 分解하는 作用을 하였다. 또 大同法實施는 商品貨幣經濟 및 商業資本의 發達과 연관하고 하여 從前의 中人·庶民身分이 兩班化하는 등 身分階層이 上向擴大되고 貢人(手工業者)·商人集團 이 形成됨으로써 身分體制의 解體, 再編成이 급격히 진행한 것이다.

이무렵 蔚山帳籍을 硏究한 資料에 의하면 社會階層은 英祖5年(1729)에 兩班人口가 19,39%, 常民人口가 49.57%, 奴婢가 31.03%였으나 그것이 高宗4年(1867)에는 각기 67.07%, 18.27%, 14.66%로 양반은 급격히 늘어나고 반대로 常民·奴婢는 급격히 줄었다.

조선의 總戶數에 대한 身分比率(%)

	양　　반	상　　민	노　　비
숙종16　(1690)	9.2	53.7	37.1
영조 5~ 8(1729~1732)	18.7	54.6	26.7
정조 7~13(1783~1789)	37.5	57.5	5.0
철종 9　(1858)	70.3	28.2	1.5

資料：四方 博「李朝人口에 關한 身分階層別的觀察」梨大社會學科 譯 1962.

시기적으로 좀더 소급하여 肅宗代와 비교하면 양반은 17세기의 10%수준, 18세기초만해도 20%수준이던 것이 19세기 중반에는 70%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常民과 奴婢는 줄어 드는데 특히 奴婢의 경우 主人과 떨어져 사는 集團身分으로서의 「戶」를 거느린 家口(外居奴婢)는 거의 없어져버렸다. 이런 경향은 蔚山地域만이 아니라 全國的인 現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무렵 社會變革期를 반영한 大同法은 米·布·錢으로 賦稅를 代行케한 것이므로 中央에서의 土產品·手工業品등 貢物에 대한 수요는 特定貢人을 통한 購買에 의존하게 하였고 이는 각종 產物의 商品化生產體制와 商品貨幣經濟로의 移行을 촉진시키고 產物의 業種別·地域別 商圈을 확대시켜 나아갔다. 서울의 시전, 地方市場의 客主, 旅閣 등은 貢人들의 購買市場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각 商派들 즉 漢江沿岸의 京江商人인 「江商」, 開城의「松商」, 義州地方의 「灣商」등 商人階層은 國內市場뿐 아니라 國境地方의 私貿易商으로까지 진출할만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더욱이 肅宗4年(1678)에 常平通寶가 流通되고 大同法에 의해서 米·布등으로도 收納하던 賦稅를 貨幣만으로도 充當할 수 있게 하자 貨幣流通量이 급증하여 商業資本家를 發生시켜 貢人, 官吏중에서도 貸金業者가 생기고 兩班巨商도 출현하였다. 이런 商業者, 手工業者, 職能人, 貢人, 官吏 등이 商業資本家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각성과 함께 外來思想, 外來文物과의 접촉기회도 많아 선구적인 입장에서 의식이 확대되고 특히 失權兩班勢力들이 加勢함으로써 兩班社會의 자체기강을 반성, 비판하는 등 傳統社會의 解體와 社會各層의 欲求多樣化를 촉진하였다. 이들의 認識基盤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 반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致用(實用), 務實(實踐), 實事(實證)主義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實證資料에 대한 수요 즉 현상에 대한 統計

的 需要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統計的 接近方法 導入의 先驅者들

學士兩班層이 務實과 經世致用을 내세우며 이른바 實學이 등장하였다. 이들 實學者의 關心은 統治制度에서부터 學內硏究 및 歷史·地志編纂에 이르기까지 戶口, 軍丁, 田法, 租稅, 貢物, 場布, 요역등 社會的 問題와 科學技術, 地球科學, 天文, 曆法, 算學 및 國根(國勢)指標 등에 집중하였다.

芝峰類說, 東國地理志, 磻經, 東國文獻備考와 秋官志, 度支志, 戶口統數, 萬機要覽, 萬國政表, 朝鮮政鑑 등이 그것이고 算學正義, 同文算指같은 數學書籍이 出現한다. 磻經은 農村博物書이고 芝峰類說과 東國文獻備考는 近代化初期의 百科辭典으로서 啓蒙時代를 상징한다. 「戶口總數」는 戶口統計의 時系列을 整備한 世界 最初의 資料이며 萬國政表는 朝鮮과 世界各國의 國勢指標를 모은 것이다.

또한 實學은 實證的 分析, 硏究로써 社會的 要求를 충족코자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社會經濟的 主題設定(假定)과 그 接近方法 및 技法의 硏究, 指標體系化 등이 동원되었다. 지금까지 法典上 啓報體制나 節目(細目要領規定)등으로 표현하던 古典的 統計範疇에서 進一步한 것이다. 朝鮮後期 社會에서 統計에 대한 社會的 수요를 喚起하였다는 점에서 統計史的 意義가 있다고 할것이다. 朝鮮後期 특히 英·正祖 以後의 學者는 거의 大部分이 實學者였다고 할 만큼 이 당시의 學風은 實學이 2세기 이상 풍미하였고 이들에 의하여 敎育과 政治, 經濟, 軍事, 法律, 哲學, 宗敎數學, 力學, 醫學, 天文, 地理, 歷史 심지어 文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學門的 業績을 남기었다. 이들이 統計史的으로 統治制度, 社會改革, 國勢分析, 部門別指標化등 硏究로 統計的接近方法學을 도입한 先驅者들이었다. 이들을 더욱 연구, 체계화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아직 初步段階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무렵 統計를 지칭하는 用語로서는 總數, 總計, 政表 등이 출현하고 그 刊行物은 要覽, 政表, 政鑑 등으로 표시하였다. 「統計」라는 字義는 옛부터 본래는 合計, 總計의 뜻으로 쓰였으나 甲午更張(1894)以後 현재의 Statistics란 意味로 정착하였다.

主要實學業績(統計史的關聯)

實學者(生沒年)	著　　書　　등
韓百謙(1550~1615)	東國地理誌, 箕田苦
이수광(1563~1628)	芝峰類說(최초의 근대적 百科辭典)
金　堉(1580~1658)	救慌撮要辟方(엄밀하게는 實學者는 아니나 大同法, 時憲歷, 水車, 用車, 錢貨使用등 業績)
柳馨遠(1762~1673)	磻溪隨錄
朴世堂(1629~1703)	山林經濟, 穡經(農村博物志)
鄭尙驥(1678~752)	農圃門答, 東國地圖
李　瀷(1681~1763)	星湖사說, 藫憂錄
李重煥(1690~1763)	擇里志, 四民總論(社會經濟的硏究)
신후담(1702~1761)	〈算學硏究專門家〉
安鼎福(1712~1791)	東史綱目, 天學考등
洪大容(1731~1783)	林下經濟〈北學創始者, 獨創的인 地動說主唱〉
李肯翊(1736~1806)	燃黎室記述〈近代史硏究의 선구자〉
朴趾源(1737~1805)	熱河日記
朴齊家(1750~1815)	北學儀, 度支志
丁若鏞(1762~1836)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我邦疆域考
서유거(1764~1845)	林園十六志(林園經濟志)
柳　僖(1773~1837)	該文志
金正喜(1786~1856)	〈實事求是說의 泰斗〉
崔漢綺(1803~1879)	地球典要, 氣測體義(唯氣論完成)
金正浩(1880~1864)	大東與地圖
南秉哲(1817~1863)	南秉吉(?)推步捷例
南相吉(　?　)	算學正義(1867)
吳慶錫(1831~1879)	三韓金全石論〈開化派임〉
兪吉濬(1856~1916)	西遊見聞〈近代資本主義精神紹介〉

註：實學者로 著名한 愼懋, 申景濬, 李德懋, 柳得恭, 韓致奫, 李圭景등도 있음.

여 백

第2章 近代統計의 導入과 試練

여 백

第2章 近代統計의 導入과 試練

第1節 大韓帝國과 近代統計導入

1. 開化期의 社會經濟的 變革

가. 改革과 門戶開放

栗谷과 磻溪에 의해서 發展한 近世實學思想이 星湖와 茶山에 이르러 完成을 본 후 그것이 19世紀初에 金正喜와 李尙迪 등의 開化思想과 東國敎學(東學)意識으로 이어지면서 大院君의 統治時代를 계기로 朝鮮王朝는 급격히 탈바꿈한다 그리고 19世紀末에 大韓帝國時代를 맞이한다. 이때(19세기 後半)를 통념상 開化期라 한다.

이미 實學時代 以來의 近代化 潮流는 國家와 社會制度의 경영에 있어 지금까지의 戶口, 賦役, 貢納, 租稅制度, 敎學制度 등 한정된 주제에서 벗이나 市場經濟, 開港, 對外貿易, 交通·通信, 科學·技術 등 革新要求와 西歐的 異質文明과의 부딪침 같은 여러 요건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時期이다.

이처럼 開化의 물결이 풍미할 때 19세기 後半에 高宗이 卽位하고(1863) 大院君의 改革政治가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南進과 美·英·佛등 異樣船 出沒 및 神父파견 같은 列強과의 對決이 불가피하였다. 이 당시 大院君은 三政紊亂등 弊政을 改革하고 軍政을 獨立시켜 國防力을 強化하며 王政秩序를 回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王權의 強化와 傳統的 法治體制 整備의 一環으로 景福宮重建을 착수하고(1868年 6月完工) 最後의 大典編纂(「大典會通」1865 및 「大典條例」1867)을 完成하면서 特殊官府이던 備邊司를 議政府에 統合시킨 後續措置로 三軍府를 再設置(1868)

하였다.

그러나 그의 失脚(1873) 以後에는 淸, 日, 露, 美, 英, 佛등 列強이 더욱 거세게 쇄도하여 결국 1876年에 日本과 1882年에 美國, 英國, 獨逸, 1884年의 러시아, 1886年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잇단 修好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런 修好條約은 대개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列國과 友好를 통한 國際交流라는 時代的 要請과 外國文物을 吸收하여 自強을 圖謀해야 한다는 政策的 趣旨와 國民的 共感帶가 作用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 일련의 과정에서 丙寅·辛未 洋擾와 巨文島事件, 雲揚號事件과 壬午軍亂, 甲申政變등 對內外의 激動을 거치면서 門戶開放이 촉진되었고 이제 開化運動은 本格化하였다.

統治制度面에서는 近代化의 첫 試圖로 軍國機務와 一般政治를 統轄하는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다. 이때의 長을 總理大臣이라 하고 그 밑에 ①事大司, ②交隣司(이 둘은 1882年에 同文司로 統合) ③軍務司 ④邊政司 ⑤通商司 ⑥機械司 ⑦船艦司 ⑧軍物司 ⑨幾沿司 ⑩語學司 ⑪典選司 ⑫理用司 등 12個司(廳, 局級)를 두어 堂上官과 郎官을 配置하였었다.

1882年(11月 17日)에는 統理機務衙門을 다시 內·外政으로 分離하여 (1)「統理衙門」(12月 4日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改稱; 外務擔當)과 (2)「統理內務衙門」(12月 4日에 「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改稱; 內務擔當)으로 改編하였다. 그리고 三軍府와 軍國機務處를 內務衙門에 統合시켰다. 兩 衙門의 組職은 다음과 같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①정각사, ②掌交司(同文司) ③富敎司 ④郵程司

－「統理軍國事務衙門」; ①理用司 ②軍務司, 監工司 ③典選司 ④農桑司 ⑤掌內司 ⑥農商(工商)司

이들 機構는 1884年 甲申政變 以後에 廢止하고 이들을 다시금 議政府로 吸收하였지만 그중에 「統理軍國事務衙門을 1885年 4月에 內務府로 改設해서 그 所屬機構로서 ①修文局 ②職制局 ③軍務局 ④司憲局 ⑤地理局 ⑥農務局 및 ⑦工作局을 두어 지속하다가 甲午改革時 「內務衙門」(1894) 또는 「內部」(1895)로 이어 진다. 이때 「內部」에 統務, 版籍, 州縣, 衛生, 地理, 寺祠, 會計의 7個局을 둔다(後述).

이들 1880年代初의 統理機務衙門 職制와 각종 改革機構를 살펴보면 당시 社會

經濟的 變革期의 統治需要를 반영한 각종 近代的 施設을 設置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83年에는 機卷局(單器製造), 典圜局(貨幣製造)과 1884年에 郵政局, 蠶桑公司, 廣惠院 등도 설치하였다.

文化面에서는 1883年의 漢城旬報 발간에 이어 1885年에 이를 漢城週報로 바꾸었으며 이해에는 朝鮮政鑑, 萬國政表등도 나왔다.

나. 甲午更張과 光武改革

1890年代의 國政은 위정자의 改革努力에도 불구하고 守舊과 開化, 閥閱과 선비, 西學과 東學, 商工人과 農民등 國論의 分裂과 外勢갈등이 더욱 顯在化함으로써 이미 점진적인 改革이나 施行錯誤的 便法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기였다. 과감한 개혁에 대한 內外壓力이 噴出하는 중에 이윽고 東學敎徒中心의 農民運動 형식으로 革命이 폭발하였다. 이를 수습하느라고 對處했던 政府當局과 여기에 관여한 淸·日軍은 對決과정에서 改革方向을 서둘러 잡아가고 있었다. 淸·日 各國은 나름대로 정부에 간섭하며 內政改革案(例컨데 日人 大島圭介의 5個案등)을 제시하였지만 政府는 또 그 나름대로의 改革計劃을 추진하였다. 高宗은 傳旨를 내려 外國의 改革案을 뿌리치고 「校正廳」을 설치(1894年 6月 2日)하여 獨自的인 內政改革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이 淸日戰爭에 승리함으로써 改革主動勢力은 자연히 新進開化派(金弘集등)가 主導하게 되었다.

1894年(高宗) 6月 25日에 改革推進機構로서 軍國機務處를 議政府 直屬機構로 설치하면서 同年 6月 28日 官制改革立法으로 具體化하였다. 그리고 그해 말(12月)에 洪範14個條 誓告와 함께 歐美式 政府組織인 內閣制를 실시하였다.

政府組職은 우선 宮內府와 議政府로 區分하여 王室行政과 國政機能을 분리하고 議政府를 다시 軍國機務處, 中樞院, 記錄局등 直屬特殊官府(處, 院, 局) 와 8個衙門(部) 즉 內務, 外務, 度支(舊戶曹), 軍務, 法務, 學務, 工務 및 農商務로 이루어진 內閣을 구성하였다. 이때 議政府 記錄局이 統計統括部署이고 같은 議政府의 官報局에서는 이들 통계를 판보에 편찬·게재하였다. 또 각 衙門에도 總務局 또는 記錄局에 報告課를 두어 「統計案件」을 담당케 하였다. 그밖에 版籍局은 內務에 또

山林局은 農商務에 두어 戶口, 山林, 土地에 관한 事項을 分掌시켰다.

이상이 이른바 甲午更張機構인데 이렇게 改革機構와 改革政策을 急進化시켰으나 애당초 이런 急激한 改革은 여러가지 저항에 부딪쳤다.

여하튼 1895年에는 第2次 內政改革 推進, 1896年에는 年號를 建陽으로 改元하고 太陽曆 採擇과 近代法典인 「法規類編」을 發刊하였다. 이해에 「戶口調査規則」을 制定하여 그 이후 戶口調査를 每年 實施함으로써 傳統的인 式年戶口調査를 이른바 年度別 常住人口調査로 轉換하는 始元이 되게 하였다. 1897年에는 國號를 大韓帝國으로, 年號를 光武로 고쳐 帝國 國制를 頒布하는 등 독자적인 改革을 促進하였다. 甲午更張以後의 一連의 改革施策을 光武改革이라 한다. 이는 西歐式制度의 본격적 도입이며 여기에 日本과 淸國의 改革制度가 參考되었다.

이 기간중 1894年부터 國初以來의 朝報를 「官報」로 改編發行(1895年부터 國漢文混用과 近代官報體制)하고 1895年에 敎育詔書와 함께 小學校令등 一連의 學校官制를 頒布(中學校, 醫學校, 商工學校官制 등은 1899年)하고 1896年의 獨立新聞發行과 新式貨幣條例(金本位;100錢=1圓) 및 度量衡規則을 반포하였다.

國家統計機構의 近代化도 이런 改革過程속에서 적극적으로 受容 導入되엇다. 1894年 6月 28日字 改革立法으로 制定된 「各府·衙門 通行規則」(政府機構職制通則에 해당)에서 議政府와 各府·衙門에 「記錄局」 또는 總務局을 두어 그속의 각 「報告課」에서 「統計案件」 業務를 管掌케 하였고 이는 隆熙年間에 「統計課」로 發展한다. 또한 1896年의 內部令에 의한 戶口調査規則과 同 細則公表以後 1908年에는 農商工部 訓令으로 「農業統計에 관한 件」이 公布되는 등 近代統計가 制度面에서 定着하게 된 것이다.

2. 大韓諸國의 統計機構

가. 記錄局, 報告課와 官報統計

東學革命에서 비롯된 甲午更張(1894, 高宗31年, 開國 503年)以後, 舊法典體制下의 六曹를 府·部, 衙門 등 內閣制로 개편하였다. 또 官吏任用試驗에 算術을 필

수과목으로 치르도록 制度化함으로써 從來에 算學職에만 국한시킨 算術이 비로소 모든 官吏의 任員에 공통필수과목이 된 것이다. 甲午更張은 太陽曆의 採用, 新式度量衡의 施行, 戶口調査規則의 制定과 戶牌制度 改正, 稅收의 度地部 統一과 9個 管稅司 및 220個 徵稅署 設置, 物納制인 租稅를 金納制로 轉換하는 등 統計制度 改善의 社會的 雰圍氣를 성숙시켰다.

統計面에서 朝鮮末 開化期의 制度的 結實은 政府機構內에 近代的 統計專擔部署가 定着한 것이다. 이른바 記錄局, 記錄課, 報告課등 名稱을 거쳐 文書課, 庶務課(文書係)가 統計主務部署로 定着한 것이다.

1894年 6月 28日字 議政府直屬으로 記錄局, 官報局 등을 두었는데 同年 7月 5日字 官報로 頒布한 「各府·各衙門通行規則」중 記錄局이 中央政府의 行政 및 統計事務를 統合收錄하여 당안(統計帳簿)을 作成·保存하는 機構로서 參議1名과 主事4名을 두었다.

※ 記錄局掌收錄行政底稿及 統計事務, 參議一員, 主事四員

이 記錄局은 1895年의 內閣制導入時, 內閣記錄局으로 改編하면서 官報局을 吸收하여 局長 1人, 參事官 2人, 秘書官 1人(以上 奏任官)과 主事 8人(判任官)을 두고 編錄課, 官報課, 史籍課로 구성하였다. 이중에서 史籍課가 國史編纂과 함께 統計資料를 蒐集하고 諸般統計를 편찬한다. 여기서는 統計資料를 귀중한 記錄文獻 또는 史籍으로 다루어 傳來의 「帳籍意識」이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대신 內閣參事官室에 文書課, 調査課 및 會計課를 두어 文書·法令을 統制하고 있다.

한편 上記 通行規則에서는 各府·衙門에 總務局을 두고 그 속에 ①文書課 ②往復課 ③報告課 ④記錄課를 두었는 바 그 중에 報告課가 部(府)內 각 局課의 「統計案件」을 「採輯」해서 「表本」을 만들어 이를 大臣에게 「查閱」(決裁)을 받을 뿐 아니라 官報局(後에 內閣 記錄局 官報課)에 보내어 官報에 揭載케 하였다.

※ 報告課 採輯各局課統計案件, 作爲表本以 供大臣查閱, 兼送官報局, 揭載官報(「各府, 各衙門通行規則」 第32條)

初期의 8個衙門에는 모두 總務局과 會計局을 두었으며 外務와 度支衙門에는 별도로 記錄局을 두어 往復文書, 帳表 등을 취급하게 하고 內務에는 版籍局을 두어 戶口와 土地臺帳을 管掌케 하고 그밖에 內務의 州縣局(현재의 地方局), 工務의 鑛山局과 鐵道·電信·驛遞局, 農商務의 農桑 山林局 등이 傳統的 帳籍統計와 관련이 있다.

1895年에는 各衙門을 「部」로 고치며 度支部, 學部, 軍部, 內部 등의 管制가 公表되고 管稅司(國稅廳), 徵稅署(稅務署) 등의 官制와 地方官制 및 裁判所構成法 등이 制定 公布되었다.

이때 각 部의 總務局內에 있던 四課體制도 바뀌어 報告課를 文書課에 統合시켰다. 그 뒤 統計業務는 文書課 所管이 되었으나 官制에서 庶務 또는 總務擔當의 機能이 定着되면서 統計業務 部署도 部別로 文書課, 庶務課 또는 總務課라 하게 된다. 때로는 報告課를 習用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統計業務가 각 部處의 統括, 總務業務로 重要視되었다고 할 것이다.

帝國 末期에 이르면 議政府制를 內閣官制로 改稱한다(光武 11年 6月 14日 : 1907－1894年의 內閣制는 1896年 9月에 議政府制로 환원된 바 있었다).

이때의 「內閣所屬職員官制」(1907年 6月 15日字)에 의하여 內閣 直轄部署로 書記官長과 法制局長 및 外事局長 등을 두었던 바 그 중 法制局에서 「諸般統計表調製」業務도 취급하며 또 官報를 發刊한다. 다시말하면 統計의 總括業務가 官報와 함께 記錄局 史籍所管에서 法制局의 規範資料所管으로 統合되고 實際의 統計業務는 各部處의 固有業務로 分散되어 있는 傳統的 報告統計의 經路에 一任한 것이다. 따라서 各部에는 大臣官房을 두고 議政府職制時의 總務課, 文書課, 報告課 등으로 하여금 統計業務를 分掌시켰음은 물론이다. 이는 乙巳條約(1905)以後 日帝의 作用에 의한 것으로 傳統的인 分散型 報告統計 經路를 살리되 中央의 統計統合機能을 弱化시키고 그 대신 統監府의 規制를 容易케하자는 趣旨였다고 할 수 있다.

光武11年(1907) 6月 19日字 勅令第41號 頒布로 施行한 「各部官制通則」에서 「各部에 大臣官房을 두고 左(다음)의 業務를 (管)掌함」이라하여

1) 機密에 관한 事項

2) 官吏進退身分에 관한 事項

3) 部印 및 大臣官章管守에 관한 事項

4) 公文書類 및 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관한 事項

5) 統計報告調製에 관한 事項

6) 公文書類 編纂保存에 관한 事項

7) 其他 각 管制에 의하여 特別히 大臣官房 所管(所掌)에 속하게 할 事項

등으로 規定하였다.

1895年의 各部 分課規程중 統計機能

- 4月 13日　內閣所屬 職員分課規程
  - 內閣參事官室에 三個課(第2條)
    - 文書課　公文書受發, 法令발표, 官印취급
    - 調査課　法令公文의 調査 査閱
    - 會計課
  - 記錄局에 三個課(第6條)
    - 編錄課
    - 官報課
    - 史籍課　국사편찬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제반통계표 편찬
- 4月 14日　外部分課規程
  - 大臣官房에 文書課
  - 「條約비준, 공문서수발 및 統計報告의 調査」
- 4月 14日　度支部 分課規程
  - 度務局에 國債課, 文書課
  - 文書課「統計報告의 調査」
- 4月 17日　內部分課規程
  - ○ 大臣官房에 祕書課 및 度務課
    - 度務課 : 統計報告의 調査
  - ○ 版籍局에 戶籍課, 地籍課
- 4月 22日　農商工部 分課規程
  - 大臣官房에 祕書課, 文書課
  - 文書課「統計報告의 調査」

이 「各部官制通則」은 그해 末 즉 隆熙元年(1907) 12月 13日字 勅令第36號로 改正됐지만 骨格은 비슷하였다.

그해는 海牙密使事件으로 光武帝가 退位하고 隆熙(純宗)元年이 되는 바 이무렵

에는 종전의 戶曹所管 중 戶口와 租稅가 分離되어 「戶口와 民籍」에 관한 것은 內部에, 그리고 司稅(租稅), 司計(豫算, 會計) 및 理財(國庫, 財政)는 度支部의 소관이 되었다.

이 度支部內에 1908年(隆熙 2年) 分課規程에 의하여 統計란 名稱이 붙은 部署를 두었다. 즉 度支部官房에 祕書課, 會計課와 「統計課」를 둔 것이다. 이때의 「統計課」 分掌業務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本部所管 統計事務統一에 관한 事項

2) 本部事務統計 編成에 관한 事項

3) 週報, 年報, 기타 報告書發刊에 관한 事項

이 度支部 統計課에서 종전부터 報告編制하던 度支部 統計年報와 각 港口別 「關稅統計」를 비롯한 韓國貿易 年表나 月表는 물론 稅務, 財政關係 統計를 내놓았다. 日本側 資料로 나오는 統監府名儀의 韓國施政年報(1906), 韓國事情要覽(1906), 韓國財務經過報告(1908), 度支部稅務統計(1910) 및 統計要覽(1910) 등도 이무렵의 度支部 統計課에서 調査管掌하던 資料가 중심이었다.

帝國政府 部處別分課規程에 「統計課」가 設置된 것은 그때까지 각 部의 官制가 文書課나 庶務課로 하여금 「統計 및 報告」事項을 다루게 하던 것에서 보면 進一步한 것이다. 1910年(隆熙4年)초 3月1日字 農商工部 分課規程에서도 여전히 文書課에 統計 및 報告業務를 分掌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大韓帝國時代의 部署內에 統計課가 獨立 分化되어 가는 중에 韓日合邦으로 그것이 中斷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隆熙年間(1907～1910)은 이른바 그 過渡期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合邦以後에는 統計課가 總督府內의 모든 行政機構에서 사라지고 다시금 總務課, 文書課, 庶務課등 總務行政의 一部로 後退하게 된다. 1918年에 監時國勢 調査課와 함께 잠시 統計課를 두었으나 그것도 1922年以後에는 없어진다.

以上에서 보다시피 帝國時代의 統計는 官報統計가 중심이었고 光武年間에 독립된 통계간행물이 빈번하여졌지만 모두 官報를 통해 이루어진 統計를 취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官報課가 統計刊行物 發刊部署로서 重要性을 지니고 있었다.

1884年 6月 21日字부터 發行하기 시작한 官報는 初期에는 過去의 「朝報」形式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가 점차 勅令, 閣令, 敍任, 彙報 등이 추가되면서 開國

504年(1895)부터 近代的인 官報體制를 갖추었다. 그 以後의 官報揭載 內容은 時期에 따라 약간의 變形은 있었으나 대개

① 詔勅, 法律, 勅令, 閣令, 部令 및 布達(宮內府令) 訓令과 府·道令 및 告示 등

② 豫　算

③ 敍任, 辭令, 宮廷錄事

④ 彙報(官廳, 警察, 軍事, 學事, 產業, 褒賞, 司法, 雜事, 氣象, 事故 등)

⑤ 外報(對外關係)

⑥ 廣告(官廳公告, 役事, 學生募集, 公賃料 등)

등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그 중 ④項 彙報欄에 統計關係資料가 주로 다루어지고 統計와 관련한 각종 법령은 ①項의 法律과 諸令, 規則, 告示로 發表한다.

光武5年(1901) 2月 15日字 官報에 실린 勅令 第4號인 「貨幣條例」와 隆熙 3年(1909) 2月 17日字 官報에서의 「外國貿易 槪況」(隆熙2年) 統計를 보면 별첨의 影印寫本과 같다.

統計를 官報化한 것도 記錄局 文書課가 統計部署였던 것처럼 傳來의 「實錄」 意識의 保存이었다고 할 것이다.

나. 度量衡의 改定

舊韓末의 度量衡은 甲午更張때 日本의 제도를 본따 새로이 시도하다가 甲午改革 자체가 좌절되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후 1902년(光武 6年)에 法律第1號로 제정·공포한 것이 度量衡法이었다. 비록 본격적 시행段階에서 다시금 새로운 度量衡法이 1909년(隆熙 3年) 9月 21日에 法律제26號로 제정되었으나 이처럼 度量衡에 관한 法이 제정 되었던 것을 보면 度量衡이 計量的 思考를 통한 近代化와 나라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 가를 인식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 開國503年(1894, 高宗31年 甲午) ; 改正 度量衡(本年十月一日爲始)
內務衙門頒發 新式 丈, 尺, 곡, 秤衡務歸劃一

• 光武6年(1902) ; 設平式院 掌度量衡製造·檢定等, 7年罷

屬農商工部(미터法 1m≒3.3尺, 里＝1.386尺, 1a＝負, 100a＝結,
1ℓ l≒5.5合, 1 g ≒2.67分)
隆熙3年(1909) 法律第26號 度量衡法(省略;本文參照)

法律26號로 제정된 새 度量衡法은 전문13條의 法과 전문11條의 施行規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骨子는 度量衡의 名稱, 命位, 度量衡器의 제작 등에 관해 규정한 것이었다. 길이(度)는 尺을, 量을 斤을, 무게(衡)는 貫을 기준으로 하는 尺貫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度(길이)

毛　尺의 1萬分의 1
리　尺의 1千分의 1
分　尺의 1百分의 1
寸　尺의 10分의 1
尺
丈　10尺
間　6尺
정　360尺(60間)
里　12,960尺(36정)

地積

勺　步의 100分의 1
合　步의 10分의 1
步　또는 坪 6尺平方
畝　30步(坪)
段　300步
정　3,000步

量

勺　斤의 百分之1
合　斤의 十分之1
斤
斗　十斤
石　百斤

衡(무게)

毛　貫의 百萬分의 1
리　貫의 十萬分의 1
分　貫의 1萬分의 1
匁　貫의 1千分의 1(≒3.75 g)
貫
斤　貫의 一千分의 160(百六十匁)

이상의 度量衡은 日本의 度量衡과 같은 것이다. 이 법이 정한 기타 사항으로 度量衡器제작은 官만이 할 수 있고「官」字의 표시가 있거나 수리하였을 경우 檢印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 최초로 度量衡器의 公

差를 규정한 것이 있으며 1905년 舊法에 의해 제작된 度量衡器는 布帛尺을 제외하고는 비록 官制品이라도 모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새 度量衡이 朝鮮朝의 것과 다른 점은 길이의 단위에 間, 정, 里가 추가되고 부피의 단위에 石의 기준이 10斗(100斤)로 단일화 되었으며 무게의 단위에 錢과 兩의 命位가 夂(문)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또 地積의 表示가 坪을 기준으로 비척이나 等級에 관계없이 3,000坪을 1정步로 단일화하였다. 이점이 조선조의 隨等異尺制와 크게 다른점이라 볼 수 있다. 度量衡의 주관부서는 조선조의 工曹소관과 유사하게 農商工部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度量衡제도는 合邦直前에 改定된 것이므로 사실상 朝鮮朝 및 大韓帝國時代에는 經國大典에서 定한 度量衡이 그대로 통용되었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3. 大韓帝國時代의 統計調査

가. 戶籍 및 戶口統計의 改編

조선조의 戶籍 및 戶口統計는 經國大典의 戶口式에서 비롯되어 1625年(仁祖3年)의 「號牌事目」, 1714年(肅宗40年)의 「戶籍事目」을 거쳐 1896년의 戶口調査規則에 이르게 된다. 勅令 第61號로 頒布된 이 規則의 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戶口調査規則(勅令第61號 建陽元年＜1896＞9月 1日)

第一條　全國內 戶數와 人口를 詳細히 編籍하여 人民으로 하여금 國家에 保護하는 利益을 균점케 함.

第二條　戶口를 聯合하여 一統을 作하고 該統內에 文算이 有하고 行爲端正한 人으로 統首를 定하여 一統內人民을 領率함

第三條　戶籍과 統表는 漢城五署와 各府牧郡에서는 每年一月內로 수취수정하여 二月內로 漢城府와 各該道觀察府에 送致하면 漢城府는 三月內로 內部에 呈納하고

各道觀察府에서는 四月內로 內部에 呈納하면 內部에서 五月內로 戶籍과 統表를 編集하여 上奏케 함.

第四條　人民中에 原戶를 隱匿하야 漏籍하거나 原籍內에 人口를 故意漏脫하는 者는 人民의 權利를 許有치 아니할 뿐 아니라 法律에 照하야 懲罰함.

第五條　本規則을 故違하거나 期限을 違越하는 時는 人民은 該長官이 處罰하고 主務官吏는 漢城判尹과 該當觀察使가 內部에 轉報하여 懲罰하고 漢城判尹과 各觀察使는 內部大臣이 輕重을 隨하여 懲戒함

第六條　戶籍統表戶牌式樣을 執行하는 細則은 內部大臣이 隨時하여 部令으로 함

第七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함.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內部大臣　　朴定陽

이 規則 第6條에 의한 細則규정에 따라 이때부터 오늘날의 門牌와 같은 戶牌(地名, 統, 號, 戶主姓名)제도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經國大典의 戶口式과 本規則 및 細則과 다른 점을 들어 보면

① 오늘날의 統內人口計表와 같은 統表와 門牌제도가 새로 시작되었으며 ②5戶作統이 10戶作統으로 바뀌고 ③각급기관별 보고기일의 明示 ④經國大典에 없는 戶主의 外祖가 추가된 反面, 妻의 4代祖까지의 기록의 削除 ⑤前居地와 移居日字, 家宅상황과 추가 ⑥原戶隱匿, 人口漏脫, 보고기일위반시의 벌칙 ⑦出生, 死亡의 隨時申告制 등이다.

여기서 이 규칙에 의한 戶口調査가 갖는 결함은 戶主이외의 戶 구성원에 대한 年甲표시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親族, 寄食人口, 雇傭人口 모두를 포함하여 男女別 인원수는 把握할 수 있으나 年齡別 통계자료로는 效用이 없는 戶籍이 되고 말았다. 이 점에서 볼때 朝鮮前期의 統計制度보다 오히려 退步한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出生, 死亡 등의 隨時把握이 가능하고 戶口移動을 把握할 수 있도록 된 것은 크게 改善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韓末統計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甲

午改革때 마련된 이 제도가 改革자체가 좌절된 이후에는 힘있게 추진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 의한 각종 樣式을 보면 별첨표와 같다.

戶口調査規則은 1909(隆熙 3年)3月에 法律第8號로 공포된 民籍法이 제정되면서 폐기되었다. 全文 8條로된 民籍法(별첨표 참조)은 出生, 死亡등 15개항에 걸친 戶口변동상황을 변동발생일로부터 10日이내에 申告토록 하고 각항에 따른 申告義務者와 罰則들이 주요 骨子이며 같은 시기에 공포된 內部訓令 第39號「民籍法執行心得」은 각급 警察官署가 民籍담당관서가 되며 民籍記載要領, 養子 등과 除籍등 기재상 애매한 점을 분명하게 예시한 것들이다. 이 民籍法이 戶口調査規則과 현저히 다른 점은 戶主의 4代祖까지와 外祖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生年月日을 모든 사람에게 기록토록한 것이다. 결국 民籍法의 규정은 최근의 호적부와 대차가 없다.

이에 이르러 우리나라 戶籍이 현재와 같은 체제의 기틀은 잡혔으나 이들의 戶口調査規則이나 民籍法이 韓末의 戶口統計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1900年(光武4年)에 皇帝가 下敎하기를「帳簿의 每年修正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계속 태만하여 독려하지 않음으로써 종종 누락이 있을 뿐 아니라 戶口數를 전연 제출치 않으니 戶口增加를 觀察할 수 없고 자세한 戶口를 판별할 수 없어 弊害가 극심한 바 이는 진실로 적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 京內外 戶籍을 昭詳하게 수록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韓國統計小史, 鄭洋植). 따라서 이러한 戶口制度나 戶籍制度는 制度面의 개정만 있었을 뿐 실천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韓末의 인구총조사 같은 戶口조사는 1837年(憲宗3年), 1852年(哲宗 3年), 1864年(高宗元年), 1904年(光武8年), 그리고 民籍法이 제정된 직후인 1910年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시의 人口統計는 전기 朝鮮王朝 後期戶口統計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만 統計 및 戶口의 報告體系는 1896년에 統首→里尊位→面執綱→府牧郡→觀察使→內部大臣의 순으로 이루어져 종래 統主→里正→面勸農官→府牧郡→觀察使→戶曹의 순에 비해 戶曹가 內部로, 面勸農官이 面執綱으로 里正이 里尊位로 바뀐 것 뿐이다. 그리고 1909년의 民籍法은 面執綱이 面長으로 바뀌고 民籍簿는 치안을 담당하는 警察官署에 비치토록 하여 사실상 警察官署가 民籍을 담당한 것이다. 따라서 民籍은 치안적 次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韓末까지 都

農人口, 職業別·年齡別 人口統計 등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 土地調査事業의 制度整備

農業統計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農地統計이며 農地統計의 기초는 農地의 測量 곧 量地에 있다. 1898년(光武2年)에 이르러 土地測量의 전담기구인 農地衙門이 설치되었으나 土地測量 뿐 아니라 소유권을 뜻하는 地券發給까지를 兼했던 地契衙門이 1902年(光武6年)에 설치되면서 이에 병합되고 말았다. 1904年(光武8年)에는 度支部內에 量地局이 설치되면서 地契衙門의 업무를 승계하였는바 量地局에서는 日人技術者를 고용하여 土地를 측량하여 土地와 家屋의 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文書를 발급하는등 量地의 종합업무를 관장한 바 있다.

1907년에는 公有·國有未墾地利用法이 제정공포되고 1908년에는 勅令 47號로 土地建物所有權證明規則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이 법 시행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法에 의한 소유권의 증명을 郡守 및 府尹에게 申請하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소유권의 법적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그 바탕은 같은 해 法律10號로 제정된 「地稅에 관한 件」에서 정한 바에 따른 地稅납부의무자를 법적으로 확정하자는 데 있었다.

1910년(隆熙4年)에는 法律7號로 「土地調査法」이 제정공포 되었다. 그 骨子는 모든 土地는 이 法의 정하는 바에 따라 測量하고 區域마다 地番을 부여하되 道路, 河川, 溝渠, 堤防, 城域, 鐵道線路, 水道線路만 例外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田畓은 물론 垈地, 池沼, 林野 雜種地, 社寺地, 墳墓地, 公園地, 鐵道用地, 水路用地 등까지 제도적으로 地積확정과 地番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에 高等土地調査委員會, 지방에 地方土地調査委員會를 두어 토지경계 및 소유권에 대한 분규를 조정하며 실무집행기관으로 度支部 외청인 土地調査局(長은 總裁)을 두어 업무를 주관케 하였다. 日帝초기 8년간에 걸친 土地調査事業의 법적근거가 이 法이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法施行規則에서 土地測量의 기초단위를 1909년에 제정한 度量衡法에 의거 坪으로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土地調査法은 1918年에 완성된 土地調査事業의 기초를 정비한 것으로

日帝에 의한 國權侵奪에 이은 經濟侵略의 기초가 된 法律이었다. 따라서 大韓帝國 末期는 土地調査의 制度整備기간이라 볼 수 있다.

다. 農業統計調査

1908年에 발간된 韓國中央農會報(2卷6號)에 따르면 종래 韓國에는 稅關의 輸出入統計를 제외하면 근거를 밝힐만한 何等의 統計가 없어 農商工部는 당시부터 간단한 農業統計를 잡도록 漢城府尹과 각도 觀察使에게 訓令으로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 訓令이 1908년 6月 15日(隆熙2年)에 제정공포된 農商工部訓令 第129號이며 訓令權者는 農商工部大臣 趙重應이다.

訓令 제목은「農業統計에 관한 件」으로 농업통계란 용어 자체도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내용은 漢城府尹 및 觀察使는 別定양식에 의거 每年度 관할내의 농업통계를 조사보고 하되 風, 雨, 水, 旱, 霜, 雹, 虫, 病의 被害가 있을 때에는 隨時報告토록 訓令하고 있다.

報告內容은 農家戶數와 農業人口, 米, 麥, 大豆등 3작물의 實耕地面績과 收穫量, 牛馬數, 養蠶戶數 및 桑園面積 등의 통계를 매년말기준으로 작성하여 農家 및 人口數, 米, 大豆 등은 익년 1月末, 麥類는 당년 9月末, 牛馬數는 익년 2月末, 養蠶戶數 및 재상면적은 당년 11月末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農業統計에 관한 訓令은 미처 施行도 되기전에 일년후인 1909년(隆熙3年)10月23日에 農商工部訓令甲 第13號에 의거 改正되게 된다.

訓令의 제목은「農業統計樣式改正의 件」인바, 改正하게된 이유는 改正이전의 調査項目이 지나치게 單純하고 조잡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計量基準인 度量衡은 1909년(隆熙3년) 9월 法律第26號 度量衡法에 규정한 도량형으로 計量集計하되 휴반등에 재배한 작물로 그 面積을 실측하기 어려운 것은 假量(추정치)으로 計上하며 각종 災害로 인하여 수확이 全無한 것이라도 作付反別에 計上토록 하고 있다. 坪단위 이하는 四捨五入하되 訓令 129호와 다른 점은 統計項目에 特用作物, 雜穀, 려, 돈고, 鷄와 家畜市場(牛馬豚 고<산양>의 出場

및 賣買類頭와 가격). 農村勞賃과 農畜産物(수산물 제외)의 品質別(上中下), 石別, 頭別, 物價와 田畓反別 등급별 가격을 익년 2월말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처음으로 作物의 郡當 平均反收를 내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統計制度의 定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大韓帝國末까지는 정확한 농업통계산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農商工部에서 발표한 韓末田畓面積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韓末耕地面積統計(정)

年　度	畓	田	合　計
1 9 0 9	781,097.1	1,521,177.3	2,302,274.4
1 9 1 0	840,988.3	1,558,853.7	2,399,842.0
1 9 1 1	1,003,814.2	1,714,297.8	2,718,212.0
1 9 1 2	1,024,356.8	1,823,168.3	2,847,525.1

위와 같이 每年 耕地가 계속 늘고 있음은 그사이 開墾干拓등으로 절대면적이 확장되었다기 보다는 大韓帝國末期의 耕地統計가 紊亂하여 소위 隱結이던 것이 현실화된 것과 종래 隨等異尺制의 田結규정이 새 度量衡法의 시행에 따라 등급에 관계없이 절대면적을 기준으로 統計를 잡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조선조의 토지등급은 6등급으로 實測面積은 1등전이 6등전의 4배나 차가 있었다. 따라서 實測面積을 기준으로 할때 조선조의 농지통계가 下位등급이 많을수록 實測面積統計는 늘어 날 소지가 커지기 마련이다.

한편 韓末의 土地등급은 甲午改革때 종래의 6등급을 23등급으로 바꾸었으며 1900년(光武4年), 1902년(光武6年), 1905년(光武9年)등 수차례의 改正을 거쳐 35등급으로 하고 地稅가 現金納으로 바뀌면서 당시의 돈으로 1等田 結當12圓에서 35等田 40錢50리를 부과한 바 있다. 참고로 農業統計시행이후 1912년의 각도별 田畓面積통계를 보면 별첨참고도표와 같다.

第2節　日帝時代의 統計概況

1. 日帝의 植民政策과 統計需要

가. 時代的 背景

韓日合邦 전인 1905年(光武 9年)에 乙巳條約이 締結되어 韓國皇帝밑에 統監(外臣)을 두고 韓國의 外國關係事務를 日本外務部(省)가 統監指揮하되(同條約 第1條) 國內 각 開港場은 물론 일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理事官을 두어 日本人 領事業務에 관한 일체의 職權을 행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政治·外交分野에서만 아니라 經濟面에서만 아니라 經濟面에서도 그 뒤에 植民統治를 위한 組織的, 計劃的 체계화의 기반을 다져 나아갔던 것이다.

1906年(光武 10年) 2月, 서울에 統監府가 정식으로 설치되고 臨時統監代理인 長谷川好道에 이어 伊藤博文이 初代統監으로 부임하자 곧 착수한 것이 6月의 鑛業法公布와 10月의 鴨綠·豆滿江森林協定約款으로 日本人이 鑛業權, 森林權을 獨占하였다. 이처럼 日本의 한국내 경제독점과 統監事務強化를 위하여 鎭海, 永興(元山)灣을 軍港으로 租借하여 軍力을 確保하는가 하면 從前의 警衛院을 廢止(7月)하고 宮門에 日本警察을 배치한데 이어 한국주차군사령부 設置(8月)로 日本憲兵으로 하여금 경찰권을 장악케하여 國內의 自強運動(張志淵등)이나 義兵活動(崔益鉉, 閔宗植등)을 彈壓하였고 한편 各級學校令의 制定公布(8月)로 學制를 改革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傳統文敎 단절과 親日人士養成을 목적으로 舊學制(成均館, 鄕學, 書堂등)와 私學(民族學校, 宗敎學堂) 등에 對應하는 公立學校制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海牙密使事件(1907. 6月 ; 純宗 隆熙元年)에 이은 高宗退位를 계기로 合邦作業이 急進되면서 保安法, 新聞法 公布(7月)에 이어 同 8月에는 韓國軍隊를 解散하였다. 그 以後 合邦까지의 主要事件은 다음과 같다.

1907年　7月, 丁未條約(內政도 統監의 承認要)

8月, 宮內府以下 各部에 日人次官 任用
12月, 裁判所構成法 公布
1908年 1月, 淸津開港
7月, 紅蔘專賣法 公布
11月, 漁業法 公布
12月, 東洋拓殖株式會社 設立
1909年 2月, 각종 稅法(家屋稅, 酒稅, 煙草稅) 및 出版法 公布
3月, 民籍法 公布
7月, 司法權移讓(己酉覺書), 軍部廢止
10月, 法部 廢止, 韓國銀行 設立
1910年 3月, 土地調査事業 實施(不在地主土地沒收, 驛屯地등 處分, 日人大量取得便宜 등)
6月, 警察權 移讓
8月, 全新聞廢止(~9月, 每日新報와 京城日報만 殘留)
8月 29日, 韓日合邦條約 發表, 大韓帝國을 朝鮮이라 改稱

그동안 統監은 伊藤博文에서 曾彌荒助, 寺內正毅(1910.6~10月)로 바뀌고 合邦條約 이후 總督府가 설치된 다음에는 寺內가 정식 總督으로 任命(1910. 10. 1~1916, 10. 9) 됨으로써 日帝의 植民統治는 本格化하였다.

總督은 韓國內의 法, 司, 行政의 三權과 軍統帥權을 專橫하며 駐韓憲兵司令官을 警務總長, 각 道憲兵隊長을 警務部長으로 任命하여 한국인의 정치적 언동뿐 아니라 社會, 文化, 經濟活動을 검색(取締), 검거, 징발하였다.

日帝의 韓國統治는 許多한 政治的 事件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經濟的 植民地化에서부터 出發하였다. 즉 日帝初創期의 施策은 일본인의 경제적 利益을 우선한 수탈을 近代化된 制度로 合目的化한 것이다. 가령 초기에는 開港과 日本人의 商圈確保에서 출발하여 鑛業法, 專賣法, 漁業令, 그리고 東拓設立에 의한 日本資本主義 基盤鞏固化로 표출되었고 合邦과 동시에는 朝鮮土地調査事業, 驛屯地調査事業, 山林所有權整理事業 등을 거의 10年에 걸쳐 철저하게 진행하였다. 上記의 法

令과 事業들은 韓國의 傳統經濟 運營方式을 근본적으로 破壞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傳統的 慣習과 社會·經濟的 現實은 허무하게 日常植民政策에 희생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 時代의 社會經濟的 性格에 대하여는 대개 ①初期近代化進行說 ②自生的 資本主義開化說 ③日帝에 의한 被動的 資本主義 내지 植民地的 半封建說 등 3個 視覺으로 보는 各說이 있으나 실제는 이들 세가지 모두 混合된 近代化過渡期的(傳統解體期) 性格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이 시대에 日本帝國主義는 한국경제와 사회발전을 그들 獨占資本에 의한 식민지로 再編하려했던 時期일 뿐이며 오히려 資本主義的 近代化를 沮止하였다는데로 集約된다. 그들의 모든 식민정책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적 사회體制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면은 있지만 한국사회의 封建的 諸要素 및 經濟의 二重構造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이다. 즉 近代化에 필수적 요체인 王朝社會의 權威主義 解體過程이 순수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歪曲된 모습으로 한층 강화되었던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그 手段도 헌병, 경찰기구 강화, 官吏의 武官服裝·佩劍(1912)같은 말초적 위압, 계층분열, 支配者原理社會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日帝中期(1920年代)에는 식량, 원료, 자원의 確保와 수탈등 植民地統治를 더욱 效率化하기 위하여 朝鮮産米增産計劃과 南棉·北洋, 産金政策, 農工併進政策을 강화하였다. 그러다가 後期(1930, 40年代)에는 戰時物資統制를 위한 資源調査法, 國家總動員令으로 죄이면서 이때에 나온 支配口號가 內鮮一體, 皇國臣民化運動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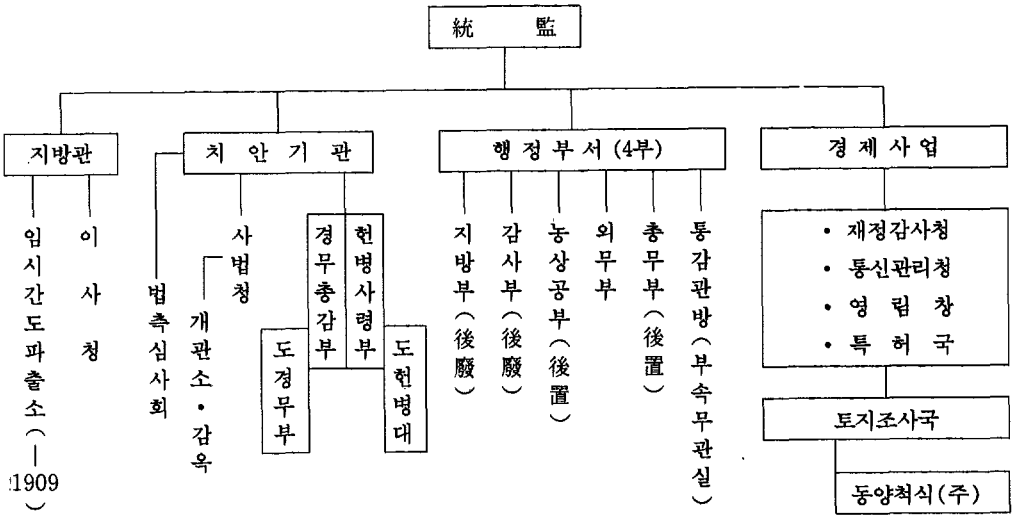
나. 日帝의 統治構造와 統計需要

武斷統治로 韓國의 社會와 經濟를 恣意로 처리할 수 있었던 日帝는 植民地管理體制로 改編하였다. 初代總督 寺內正毅가 물러나던 1916年 당시, 韓國社會의 階層別分布는 2.5%의 地主와 20.1%의 自作農을 제외하고는 77.4%가 小作農으로 轉落되었다. 그 결과 전체 농민의 과반수가 赤字家計로 허덕이고(1924年 : 49.6%) 이 貧益貧現象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음에도 米穀生産의 53.4%를 輸出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무렵 전국토의 40%는 總督府의 所有地化 하였다(1930年)

鑛山은 거의 日本人의 손에 의하여 運營되어 3.1運動勃發直前인 1918年의 鑛產額중 日本人 몫은 이미 80.0%나 되었고 工業資本은 이보다 더하여 中日戰爭 발발 당시인 1938年에 日本人會社의 比重은 納入資本金의 87.7%가 되었다. 이 기간중 인구는 1910年의 13,313千名(韓國人 13,229千名)에서, 1939年에 22,801千名(韓國人 22,098千名)으로 71.3%(韓國人 67.0%)나 증가되었다. 이상은 日帝時代의 國民生活과 經濟가 얼마나 日人爲主로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이 一般史에서 日帝時代를 分析한 槪要이다. 결국 光復後에 남은 것은 疲行經濟의 殘在와 草根木皮, 端境期 絶糧農家들이다. 이 희생을 바탕으로 統計需要가 형성되어 졌다.

韓國統監府構成(1910. 8. 31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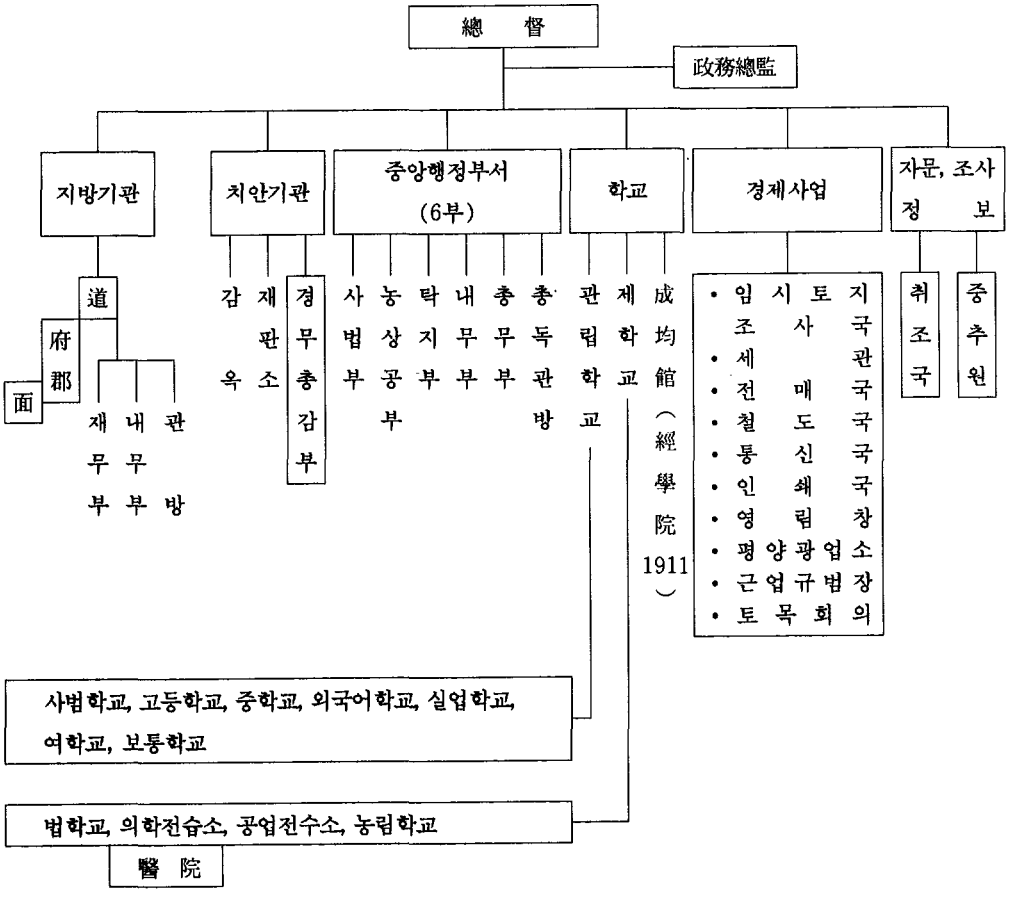
統計需要面에서 統制行態를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 당시의 統治機構라고 할 것이다. 舊韓末 隆熙時代의 統監府組織에서 보는 合邦指向的 事前機構는 外交와 武威的 效果를 극대화시켜가면서 이미 여기서도 人的·物的資源의 確保方案의 하나로 經濟事業의 比重이 加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財政, 通信, 營林 등에 主力하였고 1908年의 東拓設立에 이어 土地調査局을 두어, 合邦直前 1910年 3月부터

본격적으로 土地調査를 착수하였고 또 1909年에 새로운 民籍法公布로 戶口調査를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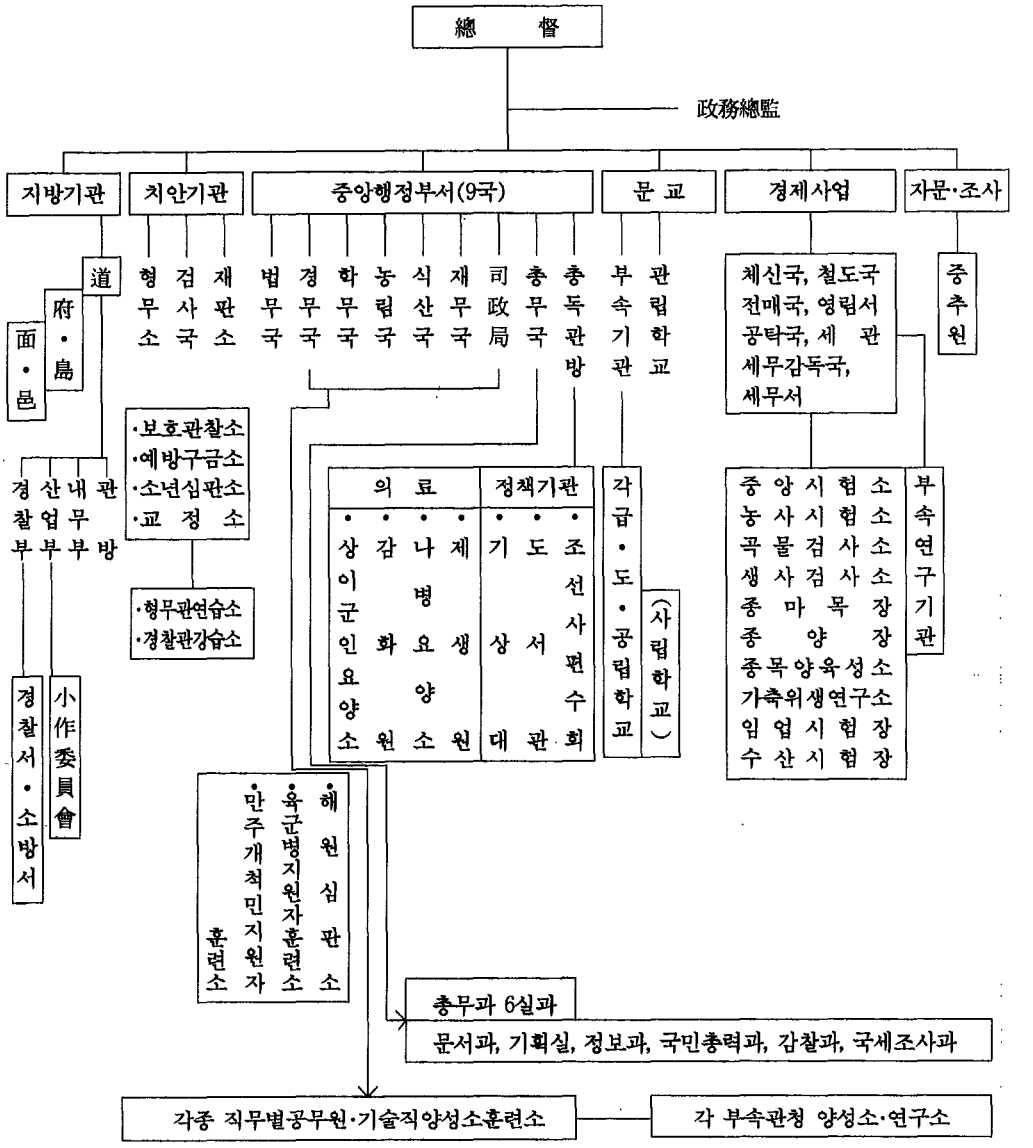
合邦發表 月餘에 總督府職制를 完備(1910. 10. 1)하고는 이 경향이 더욱 현저해져, 中央行政部署도 總督官房과 5個部 以外에 臨時土地調査局을 비롯하여 關稅, 稅務, 專賣, 鐵道, 通信, 營林, 土木등 經濟要部를 담당할 「附屬官署」를 두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強壓統治를 위한 法制와 地方機構를 確立하여 各種申告制度를 강화하였다. 여기에 取調局, 中樞院등 社會文化調査事業을 하는 補助機關과 學制를 追加하였다.

朝鮮總督府 構成

(가) 初期(1911. 3. 31現在)



(나) 末期(1943. 9. 18現在)



日常 30餘年間의 統治는 時日이 지나면서 이런 行政的 統制를 더욱 擴充시키되 그때마다 統制效果를 위한 各級機關을 新設·改設 또는 附設하였다. 그리고 中央을 비롯한 모든 部署에 文書課, 庶務課 또는 庶務係를 두고 그 속에 統計擔當(統計主任)을 두고 分野別 統計情報의 需要를 開發해 나아갔다. 여기서 각종 官廳申

告, 調査, 編纂·集計 및 그 報告書들을 發刊한 것이다. 즉 官廳報告統計였고 이는 다른 모든 分野에서 그러했듯이 韓國統計의 原初期에 官廳的 需要와 統計分析의 官學的 패턴을 遺傳하는 基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日本通産部(省)傘下 아세아經濟研究所에서 發刊(1975年)한 日帝 總督府關係機關 資料目錄을 보면 總 2,362件이 收錄되어 있다.

이 資料는 個人研究報告書등 一般公私機關發刊物이 포함되지 않고 또 그중에서 現在 日本內 各部處등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 官廳의 保有資料는 包含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國家的 次元에서 행한 韓國關係資料로 日帝의 韓國統治關心事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日帝時 主要機關의 發刊資料

	總督府및附屬官署	道·府(市)	特殊金融機關	合　計
1. 單行本類	815	75	193	1,083
2. 叢書類(總括)	85	1	14	100
3. 叢書類(主題別)	527	3	187	717
4. 年報類	272	110	20	402
5. 雜誌類	42	4	14	60
合　計	1,741 (73.7%)	193 (8.2%)	428 (18.1%)	2,362 (100.0%)

資料:「舊植民地關係機關 刊行物 總目錄－朝鮮編－」アジア經濟研究所, 1982.(第3版, 初版은 1975)

여기서도 總督府(그 附屬官署 包含)의 役割이 전체 收錄件 중 73.7%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單行本類와 叢書類(總括)의 總督府 및 그 附屬官署分만을 추려 部署別, 分野別, 刊行件數를 집계하면 全體 810件(重複, 同一主題別 分冊 등은 1件으로 하고 年報揭載分을 除外하여 上記表의 815+85=900件과는 차이가 있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殖産部門(233件, 28.8%)을 비롯한 經濟分野로 統監府, 總督府一般 및 각 部局의 것까지 합하면 423件 (52.2%)이며 그 다음이 社會·文敎의 197件(24.3%)이다. 즉 日帝는 韓國의 植民地經濟와 植民地文化統制에 主力을 두었던 것이다.

1919, 1931, 1941年은 각기 3.1運動과 大韓民國臨政樹立, 滿洲事變, 그리고 眞

朝鮮總督府 및 그 附屬官署 刊行物[1]

		(舊韓末期) 1905~9	(前 期) 1910~19	(中 期) 1920~31	(後 期) 1932~40	(末 期) 1941~45	合 計
總計		(1.4) 11	(13.1) 106	(36.0) 292	(42.5) 344	(7.0) 57	(100.0) 810[3]
통감부	정치·법제	5	3				8(1.0)
	경제	4					4(0.5)
	사회·문화	1	4				5(0.6)
	합계	10	7	—	—	—	17(2.1)
총독부 합계		1	99	292	344	57	793(97.9)
일반 (종합적)	정치·법제		8	8	11	6	33(4.1)
	경제		15	24	29	1	69(8.5)
	사회·문화		23	35	26	6	90(11.1)
	(소계)		46	67	66	13	192(23.7)
총독관방	총무·문서·도서·외사		1	13	15	1	30(3.7)
	조사·정보[2]		11	16	33	8	68(8.4)
	(소계)		12	29	48	9	98(12.1)
치안·법제	경무		2	5	5	3	15(1.9)
	법무			4	6	1	11(1.4)
	내무		2	17	5	1	25(3.1)
	(소계)		4	26	16	5	51(6.3)
사회·문화	문교			27	48	12	87(10.7)
	토목		2	6	4		12(1.5)
	후생·의료					3	3(0.4)
	(소계)		2	33	52	15	102(12.6)
경제	식산		14	92	122	5	233(28.8)
	재무·세무		5	18	5	5	33(4.1)
	교통·통신	1	16	25	30	2	74(9.1)
	전매			2	5	3	10(1.2)
	(소계)	1	35	137	162	15	350(43.2)

註 1) 총독부 및 그 附屬官署發刊物중 日本國內 도서관, 연구소, 대학등의 所藏分임.
2) 총독관방의 調査·情報에는 官房調査課와 기타 기관의 調査部署資料를 合算함.
3) 主題別 叢書, 統計年報, 雜誌(月報등)類는 포함치 아니하였음.
資料 : 前揭書

珠灣爆擊(第2次戰參戰) 등이 있던 해이며 이들 時點을 경계로 日帝統治패턴도 武斷政治(前期), 懷柔政策(中期), 兵站基地政策(後期)에서 總動員強制施策(末期)으로 轉變되었고 이에 對應하여 韓國人들로서는 獨立抗爭, 文化啓蒙抗爭, 社會改革運動, 테러·地下鬪爭 등이 時間的 配列을 잡을 수 없을 만큼 噴出하였던 것이다.

上記 時期區分에 따라 資料分量面에서 보면 前期에는 總督府의 일반적, 종합적 資料가 中心이었으나 中期以後에는 官房機能위주의 자료로 後期에 가면 특히 殖產部門資料와 文敎資料가 현저히 늘어난다.

말기에는 그나마 資料發刊實績이 停止되는데 당시의 사정상 조사나 집계편집은 하였으나 公表치 않은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있다.

統計需要充足의 一次的 責任은 總督府의 각 擔當(部)局이지만 總督官房 國勢調査課, 總務部 文書課, 取調局, 土地調査局, 中樞院 등의 調査機能을 통해서 體系的으로 遂行되었다. 그렇게해서 刊行된 調査·情報資料가 68件(8.4%)으로 나타나 있다.

日帝는 1910年 韓日合邦과 동시에 그해 10月 1日字로 總督府事務分掌規程을 制定하여 總督揮下에 副總督格인 政務總監과 總督官房, 總務部, 內務部, 度支部, 農商工部 및 司法部를 두고 總務部에는 文書課를, 其他部에는 庶務課를 두고 統計를 담당케 하였었다. 당초에 總督官房에는 祕書課(機密取扱)와 武官室(軍事, 諜報 및 警護業務)만 있었으나 1912年 改正에서 총독관방에 總務, 外事, 土木의 3局을 두고 總務部에 있던 文書課를 官房總務局으로 옮겼다. 즉 이때만해도 그들의 植民統治는 機密, 軍事, 警護業務와 法安(內務, 法務), 財政(度支) 및 殖產(農商工) 정도였고 거기에 對外關係와 移住民對策(日人來韓과 韓人亡命)을 위한 外事局, 土地收用, 道路·河川·港灣 및 水面埋築을 위하여 土木局을 官房에 集約시키는 정도였던 것이다. 이들 分野가 初期의 統計需要에 해당하는 것이며 統計는 철저하게 行政統制에 依存하는 것이었다.

合邦으로 事務分掌規程이 마련되고나서, 그 이듬해인 1911年 2月 22日字 總督府訓令(第16號)「統計事務取扱方法」에 의하여 각 部·局 및 所屬官署에 統計主任을 配置하여 이들은 官房文書課長의 指揮下에 所屬官署 所管事項을 統計로 作成해서 제출하면 文書課에서는 이의 臺帳을 마련해 두고 정리편찬하여 官報나 年報

에 실리게 하였다(統計機構의 변천은 次節說明).

이런 統計業務體系는 그 뒤에 총독부직제가 朝令暮改식으로 수없이 변동되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日帝時代를 통하여 일관되었었다. 그러다보니 統計가 客觀的인 統計目的으로 쓰이지 못하고 植民統治 정보로만 機能하는데 주안점을 두게되니 人口, 土地, 生産, 氣候등 일반적인 사항은 官報나 統計年報에 발표되고 그 중에서 취사선택된 것은 分析資料로 公刊되기도 하였으나 韓國人이 알 必要가 없거나 알아서는 안될 것, 社會的 關心의 대상이 되어 政策懸案이 될만한 것은 極祕로 조사하여 內部資料로만 利用되던 것이 많다. 특히 總督府의 附屬官署, 예컨대 取調局 土地調査局의 調査나 日帝 後期·末期의 國民總動員令, 資源調査法 등에 의한 臨時國勢調査, 産業經營調査, 勞動技術調査같은 資料는 報告書를 발간하지 않거나 發刊하더라도 「極祕」 表示를 하고 保安을 철저히 하였었다. 그러다가 그들의 敗亡後 철수시에는 황망히 廢棄處分하는 등 지금까지 그 실상을 모르는 것이 많다. 今後의 統計史補完作業은 이들을 發掘하는 것도 한 課題일 것이다.

統計需要를 이처럼 은밀히, 극비리에 充當하고 活用하려다보니 總督府官制의 「附屬官署」라는 것 중에서 이런 特殊資料를 蒐集·分析하는 것이 많이 있다.

가령 初期에는 上記 取調局, 臨時土地調査局, 警務總監部 외에 鐵道局, 通信局, 印刷局 등이나(이들은 各 部署 나름의 統計年報에 결과를 記載하기도 하였다) 末期의 企劃室, 情報課, 國民總力課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日帝時代를 통하여 統計學問, 學術硏究는 물론 技法改善 등이 前進的으로 다루어진 것은 국세조사, 가계조사등 몇몇 分野를 除外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植民地 韓國만이 아니라 그들 日本國內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 데 當時의 統計가 軍國的 行政統制下의 業務統計로서 閉鎖, 硬直性을 지녔기 때문이다.

總督府 附屬機關 중에 中樞院의 位置를 言及하여 둘 必要가 있다. 日帝下에서 비록 親日人士들만일지라도 韓國人의 參政機會를 주기 위한 諮問機關이라고 하던 곳인데 그 비슷한 例는 朝鮮史編修會도 있었으나 統計로서는 舊時代의 統計計數索引 정도였으므로 論外로 하더라도 中樞院은 그 곳에서 일부 調査事業을 함으로써 韓國社會文化硏究에 動員되었었다.

中樞院은 본래 高麗때부터 있던 최고정책기관으로 그 뒤에도 朝鮮과 大韓帝國 및 日帝時代를 통하여 지속된 官廳名이다. 朝鮮王朝에서는 出納(承旨), 兵機, 軍政, 宿衛, 警備, 部處間 事務調整 등을 보면서 때로는 三軍府(高麗때는 樞密院, 密直司)라고도 하였었다. 그것이 日帝때에는 政務總監을 議長으로 하는 總督府의 諮問機關이 되면서 政治的 機能은 거의 한 바 없이 주로 韓國의 傳統文物制度(大典會通, 經國大典등)와 古法俗의 硏究(朝鮮風俗資料集說, 朝鮮親族法調査草稿등) 및 典籍發刊(東國與地勝覽索引등)과 함께 社會調査硏究事業에도 一翼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가령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 朝鮮姓名氏族硏究調査, 小作에 관한 慣習調査, 朝鮮田制考 같은 것이다. 이처럼 總督府는 그 職制에 각 부서마다 統治用 統計擔當을 두고도 40～50개나 되는 이른바 「附屬官署」로 하여금 또 그 나름의 조사업무를 하게하고 그중에 하나인 中樞院에도 이 機能을 맡겼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植民地的 統計需要 基盤構築에 中樞院의 役割이 컸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때 中樞院에서 발간한 30餘個의 報告書類, 刊行物 및 年·月刊紙 등에 실린 수많은 論文들이 國學硏究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다. 日帝時代의 統計需要分野 區分

日帝의 統治機構와 附屬支援部署에서는 統計需要를 추적하고 中樞院, 取調局, 각종 硏究所 등은 統計調査의 方向을 調整함으로써 統制機能을 효율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1911年부터 실시한 「報告例」(次節參照)에 의한 철저한 行政報告統計였던 것이다.

報告例에 의한 모든 報告資料는 窮極的으로 總督官房 文書課(總務課)로 收斂되어 官報나 統計年報에 記載하거나 주요분야는 연구소 또는 대학 등에 分配하여 分析報告書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公表치 않고 官廳內部資料로만 이용하였다.

官報는 朝鮮初부터 있었던 「朝報」를 舊韓末 議政府에 官報局을 두면서 「官報」(1894. 6. 20)라고 하여 發刊한 것인데 그뒤에 「官報」는 內閣記錄局, 議政府 總務局, 參書官室, 內閣法制局등의 官報課에서 發刊하여 오다가 日帝總督府가 설치

되면서 文書課에 그 業務가 移管되었다. 따라서 初期에는 大韓帝國時代의 官報體制가 總督府의 官報에도 이어져 이를 文書課에서 편찬하여 印刷局에서 發刊하였다. 이들 官報에 나타난 統計編目은 그뒤 갈수록 擴大되어 統治를 위한 統計需要分野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 日帝下의 統計年報는 隆熙元年 즉 1907年版(1906年度 計數)인 「第1次統監府統計年報」부터 비롯된다. 여기에는 당시 國內 日本人關係 資料가 중심이었으나 韓國政府에서 調査한 것도 대부분 수록하고 있는 바 이 1次年度版에는 土地, 戶口, 敎育, 警察, 産業등 13個部門을 「科目」으로 다루었고 이들 科目은 해마다 增編되어 1909年版(第3次)에는 20個部門으로 되고 1913年版(이른바 그들의 明治末年, 大正元年版:1912年計數)에는 26個部門으로 急激히 增編되었다.

20世紀初인 이 무렵만 해도 지금과 같은 統計目的에 의한 分類가 아니라 日帝의 植民政策 重要度에 따른 配列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統計年報編目이 5年사이에 이처럼 急變한 것은 바로 그들의 統治性向 및 深度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감부 때(隆熙年間) 만해도 敎育과 警察, 司法 등 治安機能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로 되었었다. 合邦後에는 經濟部門 機能이 細分化되고 있는데 그 內譯에서 보듯이 日本人의 進出과 利權中心, 식민지경제운영의 政策效果, 稅政確立 그리고 각종 民刑事上의 圍束 등이 主調를 이루었다. 따라서 國民生活, 住居環境, 文化施設(科學, 技術 포함)같은 分野는 아주 貧弱하게 取扱되고 있다.

調査統計 資料는 거의 없는 바 이는 애당초 총독부 機構 출발시에 조사통계 部署가 없었고, 후에 한 때 統計課라는 것이 생겼으나 곧 總務行政에 吸收되었고 그뒤에 조사통계는 國勢調査(課)만 存置하는 등 日帝의 統治行政에서 統計部門(局·課)이 독립되어 있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는 1882年版 日本帝國統計年鑑을 第1回로 치고 있으나 그보다 10年前인 1872年(明治5年)에 「政表」라고 해서 年報를 내었다. 이것을 처음에는 「辛未政表」(1872). 「壬申政表」(1873)니 해서 當年干支를 부치다가 1874年부터 「明治7年 日本政表」와 같이 그들의 年號를 썼었고 1882年부터 統計年鑑 名稱이 定着되었다. 政表는 말하자면 Political Statistics의 漢字譯인데 이는 東洋三國에서

동원할 수 있는 語句라 할 수 있는 바 韓國에서도 진작부터 備考(東國文獻備考 : 1770), 總數(戶口總數 : 1789), 要覽(萬機要覽 : 1808), 政鑑(朝鮮政鑑 : 1886), 政表(萬國政表 : 1886) 등이 있었다. 萬國政表에서의 統計는 總計의 뜻으로 쓰고

合邦前後의 統計年報編目

1907年版(1906年分)	1909年版(1908年分)	1913年版(1912年分:總督府)
1. 土地(氣象포함)	1. 土地及建物(日本人所有分)	1. 土地(행정구역, 土地證明件등)
2. 戶口(日本人중심, 韓國은 2個表)	2. 氣象	2. 氣象
3. 教育(日本, 韓國系官學 2表)	3. 戶口(日本, 外國人 중심)	3. 戶口(日本人數動態와 韓國人分)
4. 慈善團體(日本赤十字會員등)	4. 教育(日本人學校)	4. 農業(東拓經營現況 포함)
5. 警察及監獄(事故, 新聞, 死亡 포함)	5. 社寺及教會(日本人分)	5. 林業 附狩獵(所有別 중심)
6. 民刑事及裁判(등기 포함)	6. 警察(도난, 화재, 자살건등)	6. 水產業
7. 銀行及金融	7. 監獄(罪名別등)	7. 鑛業(鑛權 중심)
8. 產業(日人商議, 主要物產등)	8. 裁判(민사, 형사분류)	8. 商業 및 工業(日人進出, 度量衡, 印刷所 포함)
9. 貿易	9. 農業(日本利權, 특산물 중심)	9. 財政(稅務, 恩賜, 公共團體, 通貨등 포함)
10. 鐵道(통감부 철도관리등)	10. 水產(日本의 연안출어 중심)	10. 紅蔘專賣
11. 通信(韓國國庫관계 포함)	11. 商業及工業(日人利權 중심)	11. 金融(銀行計定 중심)
12. 財政(통감부 한국정부 재정)	12. 銀行及金融	12. 物價及勞銀(賃)(米價, 物價, 勞賃)
13. 議員(통감부직원만)	13. 貿易(外國, 內國, 日韓구분)	13. 貿易
	14. 鐵道	14. 鐵道
	15. 水運(沿岸現況, 日人利用度등)	15. 水運
	16. 通信(한국국고관계 포함)	16. 通信(우편, 저금 포함)
	17. 衛生(전염병사항중심)	17. 土地調査(土地調査節次 중심)
	18. 教育及思想(日赤十字, 行旅등)	18. 土木及築港
	19. 財政(日本機關分 韓國政府分등)	19. 警察(도난, 사기, 화재, 자살, 기아, 총기등)
	20. 官吏(통감부 직원수, 급여등 한국정부분 포함)	20. 衛生(전염병관계)
		21. 裁判(民·刑事 區分)
		22. 監獄(30表나 되는 分量임)
		23. 教育(日本人, 韓人教育, 圖書, 新聞, 雜誌등)
		24. 社寺及教會(日系 중심)
		25. 慈惠及教濟(行旅病, 日赤十字社員등)
		26. 官吏及恩賞
		附錄:農產物現況 및 社會·工場 現況

있다. 初創期 日本의 政表類나 第1回 統計年鑑(1882)을 보면 序文(統計院 幹事)과 本文이 모두 純漢文 縱書體制였으며 記載內容도 무척 단조롭다(1911年 30回부터 橫書體) 이들 統計年鑑은 日本 內閣統計局에서 편찬하고 統計協會에서 보급을 담당하였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10年 總督府設置 당시에는 總務部 文書課가, 1912年 總督府官制改革時에는 官房總務局 總務課가 「統計 및 報告, 印刷」를 總括하면서 그곳에서 官報와 함께 統計年報 그리고 수많은 行政統計를 綜合 編纂하였다. 報告統計와 年報 編纂業務의 文書課·總務課담당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日帝時代를 통하여 지속되었다. 統監府年報(3回)에 이은 「朝鮮總督府 統計年報」는 1910年(제1회)에 출발하여 最終刊行은 1943年版(1941年 計數) 版이다.

總督府는 文書課·總務課에서 편찬하는 統計年報以外에도 각 부서별로 統計에 관한 각종 조사보고서나 年報, 月報를 내어 놓았다. 그 중 초기의 것으로 중요한 것은 大韓帝國政府의 關稅局에서 編刊하던 「韓國外國貿易年表」와 「韓國外國貿易月表」를 合邦後 朝鮮貿易年表와 同 月表로 改題하여 發刊하였고, 度支部 統計年報, 度支部 稅務統計, 通信年報, 施政年報등도 隆熙年間부터 發刊하던 것이다.

日帝中後期에 가면 總督府內 거의 모든 局(종전의 部), 室·課와 附屬官署(地方道府郡 포함)가 定期刊行物로 年報, 半年報, 季報, 月報를 낸다.

「總督府 月報」는 1911年 6月에 創刊하였다가 1915年 3月부터는 「朝鮮彙報」, 1920年부터는 단순히 「朝鮮」이라고 改題하였다.

總督府以外의 主要機關으로는 舊韓國銀行을 이은 朝鮮銀行이 종전의 「韓國銀行營業報告書」를 1910年부터 「朝鮮銀行 營業報告書」(半年刊)로 發刊하고 月報로는 「韓國銀行 月報」가 通卷 14號(2卷6號)를 끝으로 「朝鮮銀行 月報」(1910. 9月:2卷7號부터)로 되었다.

日帝時代를 통하여 보면 殖產銀行,東洋拓殖(株), 朝鮮金融組合協會(聯合會)와 각종 職種別團體가 年月報를 활발히 出刊하였고, 商工會議所에서도 「市場規則」, 「朝鮮物價調査規則」 등에 의한 調査와 業界 現況資料를 出刊하였다.

2. 日帝統計機構의 變遷과 報告例制度

가. 日帝統計行政의 特徵

日帝의 統計行政에서 特徵的인 것은 첫째 總督府官制에 統計專擔部署가 獨立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는 바 1910年 10月에 勅令과 總督府訓令에 의한 官制와 事務分掌規程으로 「總務」部內에 文書課를 두고 여기서 文書受發, 官報編纂, 官印管理 등과 함께 「統計 및 報告」 業務를 分掌하게 하였다. 이는 大韓帝國官制의 統計機能을 停滯的으로 답습한 것이다.

朝鮮의 高宗親政(大院君下野)과 近代化 出發期인 1870年代 80年代初에 太政官制 實施와 統計院을 설치하고 內閣制가 될때도 「統計」란 用語를 부친 部署(統計局)를 두고 各部(省)와 地方政府도 그에 準하였음에도(課), 그보다 30年이 지나 朝鮮總督府를 둘 때에는 그 機構에 統計部署를 獨立시키지 않고 總務部 文書課(후에 官房總務課, 庶務部 文書課등)에서 總務行政의 一環으로 다루게 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舊韓國官制에 있던 統計課도 없애버렸다.

韓國은 近代以前에도 비록 戶口·田制中心일망정 行政報告制度를 갖추고 있었고 開化期(1880年以後)에는 統計行政의 分化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다. 가령 舊時代의 戶口調査制度의 完備, 甲申改政(1884) 당시의 稅制統一(戶曹)論과 甲午更張初의 議政府·內閣등 職制에서의 統計機能 定着 등이 전진적 分化趨勢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日帝強迫이 加速化되던 隆熙初年부터는 더 進展되지 못한 채 위축되어 中央政府 각 部處의 官房(文書課, 庶務課)에서 統計를 다루게 하다가 總督府職制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도 그때는 統計資料를 議政府 또는 內閣의 總務局, 記錄局등 官報課로 보내어져 發表하였으나 總督府下에서는 統制되지 않고서는 發表할 수 없었다. 日帝는 그 뒤에 한때 統計課나 臨時國勢調査課를 설치하였었으나 이들도 日帝의 行政便宜에 따라 改稱, 消滅, 再生 또는 庶務部署에 統合되는 등 浮沈하다가 끝내는 企劃課로 되었다가 總督府와 함께 사라졌다.

둘째로 日帝의 「報告例」體制가 그들 統計行政의 特徵이었다. 日本의 경우는 1186年以來 거의 800年間의 幕府時代 地方分權的 武家統治에서 文民的 報告行政

機能이 발달되지 못하던 차에 朝鮮에서 勢道政治後退와 高宗代의 王權確立過程(1863)을 보고난 뒤 그들도 王政復故(1867)를 하면서 西歐化를 指向하였다. 이때에야 비로소 全國에 걸친 報告統制技法을 막 導入한 狀態(日本의 「報告例」制度는 1886年 內務省 報告例 制定부터)이기 때문에 朝鮮總督府職制를 둘 때에도 한국의 報告行政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의 전통적 정부조직과 기능을 그들의 「報告例」統計行政 樣態를 기준으로 統制一邊倒로만 強化함으로써 開化期以來의 統計意識 進展을 단절시키면서 獨立된 統計部署를 두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는 報告行政이 團束(取締)爲主로 植民地統治의 效率化와 總督 1人의 專權으로 集中시켰다. 文書課, 總務課가 바로 그 集中作業을 하는 곳이다.

나. 日帝前期의 統計機能 <文書課, 總務課>

總督府 初期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調査統計機能이 없었고 다만 行政統計中心이었으며 그것을 官制上으로는 總務部에 文書課를 두고 각 部局에서 보내오는 統計報告를 綜合編輯하였었다. 文書課의 分掌事務는 다음과 같다.

① 文書接受·發送, 編纂 및 保存
② 總督, 政務總監의 官印, 府印管理
③ 官報
④ 統計 및 報告
⑤ 他部課에 속하지 않는 事項

이중에서 ③官報와 ④統計 및 報告에 관한 管掌이 이른바 日帝官制統計의 核이라 할 수 있다.

總務部 이외의 部에는 共通的으로 「庶務課」를 두고 여기서는 總務部의 文書課에 該當하는 業務를 分掌시켰다. 즉

- 該當 部의 文書接受 및 發送
- 統計 및 報告資(材)料 蒐(聚)集
- 部內 他課主管이 없는 事項

등이 內務, 度支, 農商工 및 司法部 4個部의 庶務課 共通分掌 事項이다(다만 司

法部 庶務課만은 별도로 監獄, 裁判所, 辯護士관계 추가).

「統計 및 報告資料 蒐集」이란 각기 해당 부서의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文書課로 보내는 것이다. 이들 자료는 자체부서의 行政資料로 利用하는 것은 물론이다. 가령, 農商工部라면 殖産局(農務, 山林, 水産課), 商工局 등의 實物經濟관계나 度支部의 稅務, 財政, 金融관계, 內務部의 文敎, 土木관계 등도 統計資料는 모두 文書課에 보내고 또한 자체행정업무에도 활용하게 된다. 현재로 보자면 엉뚱하다할 소관업무가 당시 5個部에 分掌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行政未分化 狀態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戶籍·人口에 관한 것은 中央 6個部署(官房과 5個部) 分掌業務로서는 확실치 않으나 地方局을 맡은 內務部나 査察과 登記를 맡은 司法部에 그 기능의 一部가 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舊韓國의 分掌例). 人口統計業務가 확실한 것은 總督府 附屬官署중 憲兵業務를 兼行하던 警務總監部長의 所管事項에 「部」內 5課(庶務課, 高等警察課, 警務課, 保安課, 衛生課) 중 警務課에 民籍係를 두고 「戶口와 民籍」에 관한 事項을 分掌시키고 있다. 즉 日帝初期의 人口統計는 바로 警務總監部의 所管이었던 것이다. 이점 舊韓國時代 警務總監이 戶口調査에서 補助機能만 하던 것과 比較된다.

總督府는 中央6個部署 이외에도 모든 「부속관서」에 庶務課 또는 庶務係를 두고 統計報告와 資料蒐集을 하게 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극히 예외적(稅關의 稅務課, 庶務課)인 경우가 아닌 한 초기 總督府의 모든 部署는 庶務課(係, 掛)로 하여금 통계보고와 통계자료 수집을 하도록 골격이 되어있다.

總督府 附屬官署 統計分掌(1910. 10. 1)

- 警務總監部 : 庶務課, 文書係(統計와 官報)
- 鐵　道　局 : 庶務課(統計報告의 資料蒐集 : 以下同)
- 通　信　局 : 庶務課
- 郵　便　局 : 庶務係(掛) : 서울, 평양, 부산, 원산
- 專　賣　局 : 庶務課
- 印　刷　局 : 庶務課

- 營　林　廠：庶務課
- 各　　道：道長官 官房 庶務係
- 稅　　關：庶務課(貿易 및 經濟狀況 調査)
  稅務課(統計報告, 資料蒐集)
- 臨時土地調査局：庶務課(統計報告, 資料蒐集)
  調査課(調査事務의 計劃, 實行, 監督)

中央의 文書課와 함께 警務總監部에도 「文書」係가 있듯이 初期總督府制下에서 「文書」가 붙은 部署는 特殊한 위치에 있다. 특히 總督府 부속관서 중 警務總監部는 中央6個部 소관은 물론 國民生活 全般에 걸친 廣範圍한 關與權이 부여되어 있었고 통계도 그 例外가 아니다.

總督府 事務分掌規程이 시행된지 4個月餘를 지나 1911年 2月 22日에 統計에 관한 業務節次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른바 總督府 「訓令第16號」로 나온 「統計事務取扱方法」이다. 여기서 總務部 文書課長의 位置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알 수 있다.

1) 文書課長은 총독부소관 사항에 따라 統計를 臺帳에 記入整理 編纂한다.

2) 각 部局은 所屬官署에 統計主任(奏任官 또는 判任官級)을 반드시 두고 그들을 任命할 때는 文書課長에게 通知해야 하고

3) 統計事務에 관하여 文書課長은 이들 統計主任을 직접치휘(直接交涉)할 수 있으며

4) 각 部局長은 統計事項을 「外部와 往復하는 경우에는 文書課長에게 請求」해야 할 뿐 아니라

5) 각 部局과 所屬官署에서 總督과 政務總監에게 제출하는 「統計書類는 文書課長을 經由」해야 한다.

즉 총독부의 통계는 각 부서가 분산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되 통계보고와 대외공표의 최종결정은 文書課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統計主任은 地方의 道와 市(府)郡 말단조직까지 배치하였으므로 전국의 통계가 이렇게 통제된 체제하에 수집되고 편찬·활용되었었다.

총독부 관제는 1910年以來 수없이 변경되었고 때로는 1년안팎이 멀다하고 개편 수정되었다. 그럼에도 보고통계의 이 속성은 日帝時代를 통하여 줄 곧 이어져 온

것이다.

처음 總督府制 實施초기에 總務部에 속했던 文書課는 17개월만인 1912年 3月 30日에 官房 總務局內의 總務課로 된다. 그리고 그 分掌事務는,

①文書接受發送, 査閱, 編纂 및 保存, ②官印管理, ③官報 및 印刷物, ④統計 및 報告, ⑤圖書에 관한 事項과 ⑥他部課에 主務分掌이 아닌 것 등으로 된다. 이때 官房에는 초기의 祕書課, 武官室 외에 參事官室이 추가되고 總務局, 外事局, 土

日帝初期 總督府官制 變更(文書課, 總務課 時期)

根　據	府本部의 部署	備　考
1910年 10.1(府訓令 2)	總務官房 = 祕書課, 武官室 總務部 = 文書課, 外事局, 人事局, 會計局 內務部 = 庶務課, 地方局, 學務局 度支部 = 庶務課, 稅關工事課, 司稅局, 司計局 農商工部 = 庶務課, 殖產局, 商工局 司法部 = 庶務課, 民事課, 刑事課	(總督官房 5部) 文書課:文書受發, 官印管理, 統計 및 報告 庶務課:部內文書受發統計及報告資料蒐集
1912年 3.28(勅令 22) 3.30(府訓令 27)	官房 — 祕書課, 武官室, 參事官室, 總務局, 外事局, 土木局 總務課, 人事課, 會計課, 印刷課 內務部 — 地方局, 學務局 度支部 — 司稅局, 司計局 農商工部 — 農林局, 殖產局 司法部 — 民事課, 刑事課 ※ 舊殖產局이 農林局이되고 舊商工局이 殖產局이 됨	(1官房 4部) ※ 總務部를 官房總務局으로 土木局 신설, 人事局, 會計局을 課로(總務局), 各部의 庶務課없앰(殖產局을 農林局, 商工局을 殖產局으로)
1915年 5.1(勅令 60) 5.1(府訓令 26)	總督官房 = 祕書課, 武官室, 參事官室, 外事課, 總務局, 土木局 土木課, 營繕課 總務課, 人事課, 會計課, 印刷所 內務部 = 第1課, 第1課, 學務課 學務課, 印刷課 度支部 = 稅務課, 關稅課, 司計課, 理財課, 專賣課 農商工部 = 農務課, 山林課, 水產課, 商工課, 鑛務課 司法部 = 法務課, 監獄課	(1總督官房 4部) ※ 部內 局制없앰(단 總督官房의 總務局 土木局과 內務部의 學務局만殘留)

木局을 두었는 바 總務局內에는 總務課와 함께 人事課(舊人事局), 會計課(舊會計局)와 印刷所를 두었었다. 즉 總督官房은 종래의 총무부 업무와 내무부 지방국에 있던 土木課를 吸收(局昇格)하고 文書課를 總務課로 改稱하면서 印刷·圖書關係를 強化하였다.

1915年이 되면 官房을 總督官房이라 改稱하면서 外事業務의 比重을 축소시켜 外事課로 格下하고 각 部에 있던 局을 모두 廢止하나, 總務局과 土木局, 學務局만은 殘留시켰다. 이때에도 統計業務는 종전과 같이 總務官房 總務局의 總務課에서 다루게 하였다.

한편 地方官制에서 道의 分掌事務를 보면 1910年 당시에 각 道마다 道長官 官房과 內務部, 財務部를 두고 長官官房에 庶務係와 會計係를 두었고 그중 庶務係에서 地方統計業務를 擔當케 하였다.

道職制도 1915年 5月에 改正되었는 바(府訓令 27), 종전의 內務部, 財務部를 第1部와 第2部로 나누고 第1部의 所管業務係를 좀더 細分하였다.

道事務分掌規程(初期)

1910. 10. 1 (府訓令 3號)	長官官房 ‖ 庶務係 會計係	內務部 ‖ 地方係 勤業係 勞務係	財務部 ‖ 稅務係 理財係
1912. 5. 1 (府訓令 27號)	長官官房 ‖ 庶務係 會計係	第 1 部 ‖ 庶務係, 地方係 勤業係, 勞務係 土木係 會計係, 審査係	第2部 ‖ 稅務係 理財係

다. 日帝中期의 統計機構 <統計課, 國勢調査課>

總督府 中央官制에 「統計課」가 들어가기는 1918年(5月)부터이다. 이때 總務課

에 있던 「統計 및 報告」業務 중 「統計」부분을 떼어 總務課에는 「報告」事項만 남기고 統計課와 臨時國勢調査課를 總務局內에 새로 둔 것이다. 아울러 이때 度支部 司稅局에 臨時關稅調査課도 두었다.

- 統計課 ; 統計에 관한 사항
- 臨時國勢調査課 ; 國勢調査에 관한 사항
- 臨時關稅調査課 ; ┌ 關稅制度調査에 관한 사항
  　　　　　　　　└ 關稅定率의 調査에 관한 사항

이는 당시 日本全領土에서 실시하려던 1920年度 第1回 人口總調査(國勢調査) 作業의 一環이었다. 日帝는 그보다 전인 1916年에 內閣訓令(第1號)으로 統計의 重要性과 官廳統計의 徹底性을 「歐美諸強國의 狀態」에 비추어 강조한 일종의 統計訓令을 내린 바 있었다.

여하튼 總督府에 統計課와 臨時國勢調査課를 두고 國勢調査評議會(1918. 6. 22)를 비롯한 각종 實務規則들을 마련하는 등 第1回 國勢調査를 위한 準備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1919년(己未年) 3.1獨立宣言과 示威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결국 한국에서는 1920年의 人口總調査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3.1獨立示威는 여타의 모든 部門과 마찬가지로 日帝의 國勢調査業務進行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日帝는 부득이 總調査대신 每年末 實施하던 戶口調査를 10月1日로 앞당기는 「臨時戶口調査」로 대신했다.

그결과 1920年에 臨時國勢調査課를 廢止하고 統計課만 남게 되었으나 그것도 1922年에는 調査課로 名稱이 바뀌면서 그 이후 統計課는 아주 消滅해 버렸다. 따라서 「統計課」 名稱은 1918年 5月에서 1922年 10月까지 4年5個月間 존속하였던 셈이며 「調査課」도 1925年부터는 다시금 文書課, 總務課(1928年 3月)로 吸收된다. 1930年의 總調査를 앞두고 1929年에 臨時國勢調査課를 두었으나, 이때에 붙었던 「臨時」는 1937年에 가서야 떨어져 國勢調査課가 常設化되었다.

그동안 國勢調査課의 名稱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統計課에 吸收)
臨時國勢調査課(1918. 5)→廢　止(1920. 4)→臨時國勢調査課(1929. 6)→國勢調査課(1937)→<以下는 日帝末期>調査課(1943. 9)→企劃課로 吸收(1945. 4)

결국 이무렵의 「統計課」는 調査課와 文書課를 거쳐 總務課에 吸收되는 것으로 마쳤고 「國勢調査課」는 臨時國勢調査課로 出發한 이후 한때는 統計課나 文書課에 吸收되었다가 末期에 調査課를 거쳐 企劃課로 吸收되면서 一室(統計官室)과 8個係(庶務, 教養, 符號, 集計, 編纂, 人口動態, 勞動力 및 家計)를 特設하였다.(직원 1200여명)

日帝中期 統計機構變遷(統計課, 國勢調査課時期)

統 計 機 構·部 署	備　　考
1918. 5. 27(府訓令 28);統計課, 臨時國勢調査課官房總務局에 「統計課, 臨時國勢調査課」 추가 財務局에 臨時關稅調査課추가(關稅制度 關稅定率調査)	※ 總務課는 官報, 印刷物, 報告擔當 • 國勢調査評議規程 제정 (1918. 6. 22) • 統計課에 臺帳備置, 年報편찬 (1918. 9. 4府訓令47)
1920. 4. 1(府訓令 19);統計課 「臨時國勢調査課」 廢止	(日本 第1回센서스實施) • 國勢調査評議會規程, 同事務 取扱規程 國勢調査規則等 廢止 (1920. 8. 23府訓令32號等)
1922. 10. 13(府訓令 50);調査課 「統計課」를 「調査課」로 고침(통계조사감독, 내외사정조사·소개, 각종보고 및 인쇄물담당)	• 人口動態調査令(1922. 11月 勅令 478)
1924. 12. 25(府訓令 34);文書課 官房에 祕書課, 審議室, 外事課, 文書課及會計課를 둠 (文書課;문서수발, 편찬, 보전, 관인, 관보, 도서, 통계조사 및 감독 내외사정조사, 각종보고, 인쇄물)	(韓國簡易센서스實施準備)
1928. 3. 30(府訓令 6);總務課 官房에 總務課, 審議室 및 會計課를 둠 (總務課;문서수발, 관보, 보고, 도서, 인쇄물, 통계 및 내외사정조사 등)	※ 審議室은 法令審議, 立案, 특명 등
1929. 6. 24(府訓令 27);總務課, 臨時國勢調査課 官房에 總務課, 審議室, 會計課及臨時國勢調査課를 둠(臨時國勢調査課;國勢調査業務)	(韓國第2回센서스準備) • 資源調査法(1929. 4月) 同施行令(1929. 11月)
1937. 6. 14(府訓令 38);總務課, 國勢調査課 臨時國勢調査課→國勢調査課 (國勢調査課;國勢調査, 人口動態調査) (總務課;자원조사, 총동원령관계업무 추가)	• 朝鮮人口動態調査規則(1937. 10. 27 府訓令 161)

라. 日帝末期의 統計機能 <文書, 調査, 企劃課>

太平洋戰爭(第二次世界大戰)에 突入하면서 統計機能은 日帝의 總動員體制에 영향을 받아 統計課는 사라져 다시금 文書課에 통합되고 그나마 있던 國勢調査課도

日帝末期 統計機能 變遷(企劃室時期)

統計機構·機能	備　　考
1942. 11. 1(府訓令 54);文書課, 企劃室, 國勢調査課, 勞務課 (司政局) 總務局에 文書課, 企劃室, 情報課, 國民總力課, 監察課 및 國勢調査課를 둠(第3條) 司政局에 地方課, 外務課, 社會課, 勞務課, 土木課 및 地方官吏養成所를 둠(第5條) 文書課:문서수발, 관보, 보고, 도서, 통계 企劃室:중요정책심의조정, 총동원계획, 국토계획, 자원조사 勞務課:국민직업능력의 등록 및 국민징용 國勢調査課:국세조사, 인구동태조사	• 臨時國勢調査實施(昭 14. 8. 1) • 國民職業能力申告令實施(昭 14. 6. 1) • 統計事務取扱方法 改正(1941. 7. 18 府訓令 82) 1條:「별도규정」이외에는 이 令에 의한 統計事務 2條:定期統計는 報告例에 의할 것 3條:官房文書課長은 통계연보 판찬 ※ 1941. 12. 8日本 太平洋戰爭 突入
1943. 9. 30(府訓令 71);文書課, 企劃室, 調査課, 國勢調査課를 調査課로 (調査課;각종통계정리, 보고례사항, 국세조사, 인구동태조사, 노동·기술통계조사, 가계조사, 기타 他局室課不屬 사항)	
1944. 11. 22(府訓令 96);總務課, 企劃室, 調査課, 文書課를 總務課로 고침	※ 資源調査法에 의한 人口調査(同規則制定)
1945. 4. 17(府訓令 18);總務課, 企劃課 官房에 祕書官室, 總務課, 企劃課, 人事課, 情報課, 地方課, 會計課 및 地方官吏養成所를 둠 (企劃課;민정조사, 통계조사 등) 企劃課內에 統計官室과 8係를 둠 鑛工局에 動員課, 勤勞課를 둠	※ 1945. 8. 15 日本敗亡 ※ 總務課;관보, 도서, 인쇄물, 문서수발 등 情報課;보도, 선전, 국민총력 운동 등 動員課;국가총동원계획, 자원조사, 군수용기초물자 등 관계 勤勞課;국민동원, 기술자동원, 근로자등록 등

終戰直前인 1945年 4月에 企劃課에 그 殘務가 넘겨졌다. 이에 비하여 1942年 11月에 설치된 企劃室에서는 이미 重要政策의 立案推進과 함께 總動員計劃 國土計劃 業務와 資源調査業務를 分掌하였다. 그밖에도 司政局 勞務課나 鑛工局 動員課 및 勤勞課에서는 國民職業能力의 登錄業務나 資源調査, 技術系勤勞者 登錄등 事業을 처리케 하고 있었다.

1941年 7月에 改正된 統計事務取扱方法(令)에서 「報告例」 統計를 강화하고 이로써 文書課는 從前의 統計行政 중 주요부분인 官報, 年報등 편찬사업을 하였지만 戰時情報 통제에 의하여 發表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한편 國勢調査課를 1943年 9月에 調査課로 改稱하면서는 이곳에서 國勢調査와 人口動態調査는 물론 勞動·技術統計調査, 家計調査 등의 調査統計 이외에 「報告例」를 비롯한 각종 統計를 정리·편찬하게 하였던 것은 특기할 일이다.

1945年 4月에는 調査課業務를 企劃課를 統合시켜 統計를 企劃業務化하였다. 이에 따라 年報나 月報도 1944, 45年間에 대부분의 發刊이 중단되었고 「報告例」에 의한 통계보고도 종전의 2/3水準으로 大幅 縮小되었다.

主要定期刊行物의 終刊時期

統計年報(總督府)	; 1943年版	
(朝鮮)統計月報(總督府)	; 1944年	11·12月合併號
貿易月報(總督府, 財務局)	; 1944年	4月號
統計月報(朝鮮銀行)	; 1945年	2月號
殖銀調査月報(朝鮮殖產銀行)	; 1945年	2月號
金融과 經濟(朝鮮金融組合聯合會)	; 1944年	8月號

國勢調査資料도 1940年分은 발표가 지연되다가 개략숫자만 발표되었고 1945年分은 戰雲때문에 實施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資源調査法에 의하여 戰時統制 및 徵用資源 充員計劃의 活用을 목적으로 별도의 「人口調査規則」을 마련하여 1944年度 人口調査를 실시하였다.

마. 報告例制度

日帝의 總督府統治에서 「報告例」는 重要한 位置를 점한다. 總督府 運營計劃과 法令實施評價의 基本資料일 뿐 아니라 諸般業務의 指針으로서 그 利用이 廣範圍하게 걸쳐있다. 內容은 記述報告事項도 있지만 주로 統計報告事項이기 때문에 行政統計中心인 總督府 統計業務의 根幹이 되고 있다.

報告例制度는 合邦이듬해인 1911年 1月 9日字로 警務總長이 公布한 警務總監部訓令 甲第1號 「普通警務報告例」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報告事項은

① 卽報(當日報告事項 : 保安등 各種團束과 災害關係등 14個表)
② 日報(國內日本人變動, 巡檢, 災害, 變死件등 24個表)
③ 半年報(國內日本人動態, 韓國人戶口數變動, 犯罪團束등 20個表)
④ 年報(警察職務, 韓·日·其他 外國人의 數, 集會·言論의 團束現況등 32個表)

로 區分하되 당시만 해도 비록 民情·警察團束 중심일 망정 그 內容과 報告項目 構成이 무척 상세하게 되어 있었다.

總督府 報告例는 이 警務報告例를 一般庶政統制로 확대시켜 1911年 6月 15日字 總督府訓令 第55號로 發令한 것이다. 전체 15個條와 別冊甲·乙號로 구성된 이 규정은 그 第1條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朝鮮總督府 所屬關署는 別冊에 정하는 事項을 그 順序와 樣式에 따라 總督에게 報告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만 機密에 속하는 報告는 이를 따로이 정한다고 해서 역시 日帝의 統治機能上 祕密事項을 별도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도 報告內容을 統計報告와 記述報告로 大別할 수 있으나 統計報告가 중심

報告例資料를 利用한 主要發刊物
(年刊資料例示)

朝鮮事情 ; 1934~44 (最近朝鮮事情要覽 1911~22, 朝鮮要覽 1923~33의 續刊임)	
朝鮮經濟事情	1911~40
朝鮮의 人口統計	1935(33)~39(37)
農業統計表	1922~42
朝鮮의 農業	1921~42

朝鮮의 産業	1921～35
朝鮮의 林産	1921～40
林野統計	1929～42
朝鮮의 水産業	1921～42
朝鮮水産統計	1921～43
工産統計	1926～41
醫院年報	1911～31
朝鮮貿易年表	1911～43(朝鮮貿易年報도刊行 ; 1914～37)
朝鮮貿易要覽	1910～33
施政年報	1908(06)～44(42)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 1908～22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 : 1922～38	
統計要覽	1911(10)～43(41)
統計便覽	1921～25
統計年報	1907(06)～42(40)

※「調査資料」(叢書類 47種 : 報告例資料와 特殊調査研究의 併行 : 1924～41)
「朝鮮法令輯覽」(1914～15 ; 1～4年 간격의 不定期的 續刊物임)

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報告時期를 卽報, 日報, 月報, 半年報, 年報 및 特報의 6種으로 區分하고 각 報告時期別로 다시 所屬官署를 配列하고 있다.

「報告例」의 別冊區分은 甲號와 乙號로 되어 있는 바 甲號는 本府와 道를 비롯한 地方官署의 業務屬性에 따라 報告할 事項이고 乙號는 이른바 總督府의 「附屬官署」別 官廳單位屬性에 따라 報告할 事項으로 되어있다.

각 報告書는 報告例 表番號와 表題, 內容 및 記載上 注意 등으로 構成하고 있는 바, 초기에 甲號가 약 250種, 乙號가 약 130種이었으나 後代에는 각 100種 내외씩이 늘어나 전체가 약 500種으로 되었었다. 人口統計도 報告例에 따라 보고케 하였던 바(1915年) 그 內容을 보면 별첨과 같다.

報告例에 의한 報告는 원칙적으로 第1次 所屬官署에 報告業務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下級官廳에 직접 示達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表에 記載上 注意事項이나 凡例가 상세히 提示되어 있고 實務者로 하여금 각 表의 理解나 作成上 問題點 解消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報告書는 각 所屬部署의 「統計主任」을 거쳐 최종적으로 總督府 文書課(總務課, 調査課, 企劃課 등)에 보내어져 각종 年

報나 報告書로 發表되는 것이다.

報告例制度는 1911年에 施行된 以來 報告의 內容이 總督府의 施策에 따라 또 機構改編, 所管事項變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報告例의 一貫性이 그만큼 可變的이고 그때마다 수없이 바뀔 수 밖에 없어, 때로는 總督府訓令, 政務總監通牒, 庶務部長 通牒으로 變更·改正되었었다.

總督府時代에는 이 報告例에 의한 統計業務가 主流가 되어 一貫되고 있었다. 報告例의 大幅的 改編은 1933年(府訓令 41)과 1937(府訓令 77, 실제는 1938부터 적용)을 들 수 있는 바 이 무렵에는 그간의 廢棄된 것, 새로 추가된 것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表順一連番號도 새로 매기거나 編纂方法을 修正하거나 한 것이다.

1937年 改正에서는 報告例의 形式과 內容을 大幅 변동하였다. 이때 報告事項의 分類·編纂方法을 보면 從前에는 報告期別 중심으로 所屬官署 報告事項의 「形式的 關係」를 重視하던 것을 下級官廳 實務報告의 「內容的 關係」중심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그로써 改正된 別冊 構成은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日帝末期가 되면서 調査統計는 물론 「報告例」에 의한 行政統計도 戰時保安의 一環으로 1945年 6月에 政務總監 通牒으로 報告事項을 大幅 줄였는 바 甲號에서 115件, 乙號에서 66件이 報告停止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敗戰으로 退脚할 시는 상당부분을 廢棄하거나 紛失된 상태로 되었다.

報告例의 別冊構成(1937年 12月改編)

別冊甲號
- 第一編 內務
  - 第二章 土木及交通
  - 第三章 教育及宗教
  - 第四章 社會事業
  - 第五章 財政及金融
  - 第六章 官公吏
  - 第七章 雜
- 第二編 產業
  - 第一章 農業
  - 第二章 林業
  - 第三章 水產業
  - 第四章 商工業
- 第三編 警察
  - 第一章 警察
  - 第二章 衛生

別冊乙號
- 第一章 各官署
- 第二章 遞信局 附·海員審判所
- 第三章 鐵道局
- 第四章 專賣局
- 第五章 稅關
- 第六章 稅務官署
- 第七章 裁判所 附·供託局
- 第八章 監獄
- 第九章 營林署
- 第十章 學校
- 第十一章 其他/官署

上記한 바와 같이 日帝時代의 統計는 報告例 統計가 중심이었으므로 그나마 남아있을 이 時期의 報告資料를 發掘하면 그 당시의 統計事情뿐 아니라 社會相과 日帝統治 實情을 상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日帝의 統計調査와 統計近代化의 試鍊

가. 戶口統計

(1) 日帝時 戶口統計의 背景

日帝의 戶口調査는 朝鮮王政과 大韓帝國時代의 戶口調査 패턴을 延長한 것이다. 前章 開化期以前의 統計事情에서 본 바와 같이 前代에는 每式年(3年間隔)마다 定期的으로 戶口調査하는 制度가 확립되어 있었다. 비록 현대적인 槪念과 用途 및 技法에서 보자면 그 시행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더라도 當代에 이만큼 制度化되고 時系列的으로 安定된 戶口調査 資料는 세계에서도 獨步的이었다고 할만한 것이다.

前代의 式年戶口調査는 甲年更張(1894)이후 建陽元年(1896)에 戶口調査規則(9月 1日字) 및 同 細則(9月 3日字)에 의하여 每年末 현재로 「戶籍」과 「統表」를 內(務)部에서 編輯케 하였던 바 이는 진작부터 定期的인 戶口調査慣例가 있었기 때문에 開化知識으로 近代的 人口靜態統計 槪念이 도입되자 甲年更張制度의 施行 즉시 年例調査로 轉換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日帝 總督府 戶口調査의 과정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日本의 實情을 參照할 필요가 있다. 日本에서는 7世紀後半부터 戶籍·戶口調査토록 했다는 記錄이 전하고 있으나 이것도 渡來人(百濟人)에 의해서 실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日本은 古代以來로 統一國家를 이루어 본 적이 없고 또한 8백년간이나 지속된 武家幕府와 分藩時代에는 全國的인 戶口統計資料란 期待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江戶中期인 1721年(辛丑)에 1726年(丙午)부터 6年마다(子·午年) 全國各地의 戶口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기록도 거의 없다. 19세기에 들면서는 幕府의 統制力도 弱化되어 실제상으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어 그

들 日本 자신도 몇번 시행했는지 不明이라고 한다(그만큼 記錄의 未備). 만약 明治年代直前의 子·午該當年인 1864(丙子)年까지라면 「전부 25回는 했을 것이다. 대부분 調査結果는 紛失 또는 散逸」되었고 그나마 「7回(1750, 1756, 1786, 1804, 1834, 1846 및 1852年分)의 근거는 남아있다」고 한다(高橋楚仙 「日本人口史之研究」).

그러나 實上 7回分이 남아 있다고 하는 記錄의 典據도 애매하거니와 各回次分도 극히 일부지역만이 들어있는 不完全한 것이다. 요컨데 韓國에서 하는 3年마다의 式年調査를 日本실정에 맞추어 6年마다 하려고 모방은 했으나 실제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明治維新을 宣言(1868年 5個條 誓文 : 朝鮮의 高宗5年 景福宮重建, 1次 書院철폐)한 후에 戶籍法施行에 의한 全國 一齊人員檢査를 하였다든가(1872), 1873年(明治6年)에 內務省을 처음 설치하고 1886年에 內務省報告例制가 시행되면서 警視廳을 동원해서 단편적인 戶口調査資料를 편집하였으나 不實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뒤 1898年의 內閣訓令(第1號)에 의한 「人口統計材料統計小票記入方式」을 마련하면서 전국 규모의 人口統計가 그런대로 格式化될 수 있었고 1908年 內務省에서 警察戶口調査를 利用한 人口靜態調査부터 常住人口의 調査가 定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朝鮮의 傳來 戶口調査制度가 參考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 朝鮮은 새 戶口調査規則으로 轉換할 때이고 日本에서는 西洋諸列強의 例에 따라 民勢調査 또는 國勢調査를 實施하자는 論議가 분분하던 때로서 日本의 人口調査定例化는 그들의 近代化 過程에서 이른바 人口靜態統計導入의 産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의 경우는 戶籍, 戶口, 人口 등의 統計傳統은 없었으나 1900年을 전후해서는 오히려 近代的 統計理論을 導入하여 調査技術面에서 비로소 韓國의 傳統的 報告統計를 능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日本의 戶籍事務는 1872年에 실시되어 1898年에 그 所管을 內務省에서 司法省으로 移管시킴으로써 戶籍을 떠난 순수한 人口統計調査로 發展시킬 수 있었다).

日帝는 合邦이 되자 그 새로운 人口靜態調査技法을 한국의 戶口調査에도 적용시키면서 특히 그들의 前例에 따라 警察力, 憲兵力을 동원하여 戶口와 人口調査의 實效를 올리고자 하였다.

朝鮮時代에는 아직 意識과 制度속에 戶籍에 오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區分이 嚴存하고 있던 때이고 人口數에서 女子의 위치는 「現代」와 같을 수가 없다. 즉 母集團槪念 자체가 달랐으며 또 당시로서는 中央과 地方간의 거리, 通信手段, 地域間 屬性差 介在 및 申告統計의 屬性 등 때문에 생기는 誤差와 여기에 地方官의 橫暴 역시 國力의 硬直, 退勢期일수록 극심했던 것도 不可避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런 時代, 그런 곤란에도 불구하고 朝鮮王朝社會는 戶口調査를 一貫되게 시행해 온 것이다. 이는 당시의 外國과 비교해 보면 자랑스러운 遺産인 것이다.

前代에는 官制가 兵制의 延長이고 賦軍役과 租稅는 물론 戶口와 土地도 그런 官制로 다스려 온것이 一般的이다. 다만 朝鮮에서는 文治主義때문에 軍役意識이 해이해 지면서, 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후대에 갈수록 커졌고 이 틈을 官僚들이 惡用하려던 것이 歐美나 日本의 尙武秩序에 입각한 帝國主義 視覺에서는 文弱의 병폐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帝國主義者들은 將軍으로서 이 나라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이 調査한 統計가 종전과 달랐음은 당연한 것이다. 合邦을 전후하여 人口統計의 斷層과 時系列不調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2) 日帝戶口調査의 制度的 根據

日帝下의 戶口統計에 관한 法制的 實務的 背景은 報告例 樣式에 의한 것과 舊韓國時代의 戶口調査規則을 承繼한 戶口調査規程임을 알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建陽元年(1896)의 戶口調査規則에 의하여 十戶 一統制실시와 함께 「戶籍」과 「統表」를 각 府牧郡에서 觀察府(道)와 漢城府를 통하여 內部에 呈納(提出)하였었다. 이때에도 調査의 虛僞事實에 대한 벌칙이 엄격해서 刑法같은데서 그 罰則을 規定하였던 바, 가령 戶口의 成籍(戶籍作成)이나 調査時에 戶主의 詐冒不實行爲나 人口調査 누락이 있으면 100~20笞의 笞刑을 課하도록 하였다(刑法 367~370條 : 光武 9年).

이 경우 警察은 司法警察로서 戶口調査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警視總監은 內務大臣의 指揮를 받고, 기타사항도 각 主務大臣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制度는 舊韓末에 警察權이 日帝로 넘어가면서 戶口調査도 점차 警察主管으로 轉換되어 隆熙3年(1909)에 나온 「民籍法執行心得」에서 民籍에 관한 사항은 警察署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 앞의 戶口統計表에서 보면 舊韓國때의 戶口調

査規則 및 同 細則에 의한 調査가 內部調査資料이며 1907年의 「韓國戶口表」를 마지막으로 한다면 民籍法執行心得에 의한 것이 1910年의 「民籍統計表」인 셈인데 이때부터 戶口調査에 警察이 主務가 된 것이다.

이런 실정은 戶口調査만이 아니라 모든 統計가 警察主管化되어 1910年 合邦과 동시에 總督府官制가 실시될 때에는 警務總監府의 調査分野가 방대하게 설정된다.

1922年에 나온 戶口調査規程(府訓令 第33號)은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第1條 警察署長은…….」하고 시작되는 이 規程은 外勤巡査가 調査하는 擔當(受持)區域制와 請願巡査가 조사하는 請願區域制를 並行하여 派出所나 駐在所의 巡査들이 3, 6, 9, 12月末 현재의 戶口調査表를 만들어 警察署長(翌月 10日까지)과 道知事(翌月末까지)에게 提出, 報告케 하였다. 이때의 「戶口調査簿」에는

①本籍, 住所, 身分, 職業, 位勳功爵, 姓名(氏名) 및 生年月日

②住居年月日과 種痘·痘瘡 및 기타 警察上 必要한 事項

을 記載하고 그 表紙의 뒷장에는 該當 區域內의 番地號를 記入한 略圖와 家口員總數(男女 國·民籍別)表를 첨부한다. 각 戶口의 戶口員別 牌札(카드)을 만들어 위 戶口調査簿에 끼어 넣도록 한다.

이때에는 韓國人, 日本人, 其他外國人別 및 男女別로 작성하되 한편 각 관할담당 구역 派出所, 駐在所別로 戶口調査實施簿와 戶口索引簿를 만들었고 戶口別 動態狀況도 包含한 現住戶口의 日計, 月計 및 累計를 기록해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報告例制度에 의한 統計報告體系는 1911年 1月의 普通警務報告例에 이어 同年 6月부터 실시한 總監府報告例가 定着되면서 그중에 특히 人口統計는 1915年의 政務總監 官通牒(173호)으로 그 範圍와 樣式이 制定되었음을 前述하였는 바 戶口調査規程에서는 3個月마다 하게 되어 있음에도 報告例에 의한 報告는 年報事項으로서 매년 2月에 각 道知事가 前年末의 戶口數를 總督官房 文書課長에게 報告케 하였다. 이때의 報告事項은 ① 現住所戶口府郡島別表 ② 3千名以上 居住地 및 市街地 現在戶口表, ③ 職業別表 ④ 出產月別表 ⑤ 結婚年齡別表 등이며 이때에는 반드시 民族別, 性別 區分을 나타내도록 하며 거기에 在韓 日本人의 本籍地別 및 結婚年齡別表도 별도로 보고를 받았다(1922年 報告例別冊 甲號).

이 무렵(1920年代)부터 戶數를 住居와 家口(世帶)로 區分하였고 軍營, 艦上의

士兵과 受監者 學校寄宿生은 現住人口에 合算치 않았다.

또 病院, 下宿집, 製造場 등의 集合住居者들이 主人과 家計를 달리할 경우에는 一所一家口로 다룬다.

職業은 7種으로 區分하였다.

1) 農林牧畜業(蠶業包含)
2) 漁業 및 製鹽業
3) 工業(土木建築業 包含)
4) 商業 및 交通業(保險, 賃貸業, 斡旋, 宿泊, 遊戲場業등 包含)
5) 公務 및 自由業(軍·國團體, 聖職者, 醫師, 土木·建築, 機械의 技術者, 言論人, 文筆人, 娛樂從事者 등 包含)
6) 其他 有業者
7) 無職 및 職業申告 없는 者

現代에 비하면 建設業, 金融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등이 未分化 되어 있으나 出生(出産)은 月別로 보고하고 있다.

以上의 戶口調査와 報告例에 의한 人口統計를 實務的으로 좀 더 效率化하기 위해서 1930年代에는 이른바 統計小票規程이 나가고(1932年 7月 政務總監 訓令文第55號), 이에 따라 각 道知事는 또 管內 府郡에 示達하였다.

이 統計小票의 利用方式은 日本에서 初期人口靜態調査에 쓰이던 것인데 黃海道등에서 1931年부터 시도되다가 政務總監 訓令으로 地方統計報告로 一般化된 것이다. 이 報告例制度에 의하여 府尹(市長)이나 邑面長은 다음에 든 報告資料를 別紙樣式의 統計小票를 具備하여 管內의 現住者로서 住居나 家口(世帶)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調査해야 한다」(京畿道 訓令 1932). 報告事項은 道別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 ① 現住人口 ② 現住戶口職業別 ③ 結婚·離婚 配偶者數 ④ 日語解得者數 ⑤ 日本人의 本籍 및 外國人의 國籍別 ⑥ 出生 ⑦ 農業者數 ⑧ 水産業 戶口數등이며, 10月～12月初에 豫備調査를 거쳐 12月末 現在人口數를 算出하라고 한다.

이때의 調査는 地方行政單位別로 管內를 分割하여 調査區를 설정하고 담당조사원을 指定하되 이 調査員은 府邑面職員으로 充當하도록 하였었다. 물론 종전의 경찰서 중심의 戶口調査는 계속되고 있다.

1938年에는 韓國에서도 「人口動態調査規則」이 施行(1937. 10. 27制定)케 되었

現在 戶口府郡島別表

報告例第六七號　　大正　年十二月末日現在　　官署名

府郡島名	日本人					朝鮮人					中國人					其他外國人					合計				
	戶數		人口			戶數		人口			戶數		人口			戶數		人口			戶數		人口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總計																									
備考																									

三千人以上의 居住地 또는 著名市街地 現住戶口表

報告例第六八號　　大正　年十二月末日現在　　官署名

地名	日本人					朝鮮人					中國人					其他外國人					合計				
	戶數		人口			戶數		人口			戶數		人口			戶數		人口			戶數		人口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何府																									
何郡(島)何地																									
總計																									
備考																									

現在戶口職業別表

報告例第六九號　　大正　年十二月末日現在　　官署名

種別	(一) 農林牧畜業簿										(七)無職業 및 職業을 申告치 않은것					(八)合計				
	戶數		人口								戶數		人口			戶數		人口		
			主業者				無業者		計											
	住居	世帶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住居	世帶	男	女	計	住居	世帶	男	女	計
日本人																				
朝鮮人																				
外國人																				
總計																				
備考																				

死產月別表

報告例第七一號　　大正　年　　官署名

種別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合計
日本人													
朝鮮人													
外國人													
總計													
備考													

資料：朝鮮總督府報告例 別冊 甲號, 1922年

는 바 다시금 人口統計調査規則 準則(1938.9.23日字 政務總監訓令文 第86號)을 내며 報告例 樣式(別冊 甲號)을 일부 개정하였다. 대부분은 종전의 報告例樣式이나 小票規程과 같으나 職業分類에서 鑛業과 交通業을 獨立시키고 結婚 및 婚姻年齡別表와 韓·日人配偶表를 除外시켰으며 人口統計小票를 「人口調査表」라고 고치고 여전히 韓國人用(朝鮮人用), 日本人用(內國人用) 및 外國人用別로 區分하였다.

끝으로 1944年 5月 1日에 실시한 日帝의 最終人口調査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調査는 당초 1945年度 簡易國勢調査를 準備하는 과정에서 戰時對策의 일환으로 1943年에 이를 앞당겨 해 보자는 着想에서 出發하였다. 이에 豫算, 行政的 檢討와 함께 同年 10月 1日 또는 12月 1日을 調査時點으로 하는 諸案이 검토되다가 시일을 보내면서 同年末에 國家總動員計劃 樹立에 必要한 資料로서 人口調査를 다음해 1944年에 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5月에 실시한 것이다. 이와같은 일은 1944年 調査가 끝난 직후에 1945年에도 人口調査를 같은 해의 國勢調査와 동시에 하려고 進行하다가 中止되었다. 결국 1945年 조사는 敗戰後에 그들 日本의 自國領土內에서만 간단한 人口調査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韓國에서는 上記 1944年 5月 1日 現在의 人口調査가 政府樹立以前의 마지막 公式資料가 된 셈이다.

이 調査의 法的根據인 「1944年(昭和19年)人口調査規則」(府令 第56號 1944.2.19)은 20條 附則으로 되어 있다.

「資源調査法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1944年 5月 1日 零時에 朝鮮에 現在있는 者에 대하여 人口調査를 한다」(第1條)고 하면서 ① 住居 및 本籍, ② 姓名, ③ 男女別, ④ 出生年月日, ⑤ 配偶者有無, ⑥ 所屬 産·職業 및 特殊機能, ⑦ 從事上居住, ⑧ 兵役, ⑨ 民籍 또는 國籍, ⑩ 學歷 등을 道→府郡島→邑面洞의 地方行政區域別 調査區에서 家口(世帶)單位로 調査한다.

이를 위하여 地方에는 道에 臨時人口調査委員會와 臨時人口調査部를 두어 그 部長은 道內務部長을, 副部長(2人)은 內務課長과 道官房主事가 맡게 하였다(人口調査地方事務取扱規程). 府邑面에서는 그 職員인 人口調査事務 從事者 중에서 主務를 指名하고 調査員을 모집하고 敎育시켜 調査하게 하였다. 이때 王公殿邸와 外國軍艦, 監獄, 拘禁所를 特別地域으로 調査하였다. 별첨은 이때에 사용된 손바닥만한 크기의 人口調査申告書(調査案)이다.

(3) 總督府時代의 戶口統計 推移

表에서 보면 光武 10年(1906)까지 內部에서 조사한 戶口는 140萬 內外의 戶數에 579萬정도의 人口數로 나타나 있으나 그 다음 해 光武 11年(즉 隆熙元年 ; 1907)의 같은 內部의 警務局에서 日本警察이 主動員되어 疏外·隱蔽戶口를 발굴하여 밝혀진 數値는 2백33만3천호에 9백78만명으로 人口數에서 68.8%나 增加되었다. 뿐만 아니라 合邦하던 해 隆熙 4年(1910)에 民籍法을 督勵하며 실시한 戶口調査에서는 2백74만2천호에 1천2백95만명으로 집계되어 3년전보다 다시 3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合邦當時의 人口가 대략 1천3백만명으로 잡히고 있으나 이는 새삼스러운 결과라기보다 이미 韓末情勢를 논하던 識者들 사이에 朝鮮의 人口가 奴婢, 賤民, 女子 등을 제대로 계산하면 1천 3백만명 이상 1천 5백만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開化初期 甲申政變의 이듬해(1885)에 나온 萬國政表에서는 당시 朝鮮의 人口를 2천8백만명으로까지 보았던 것이다(前章參照). 乙巳條約때 自決한 閔泳煥은 「2천만 동포에게 告함」이라는 遺言을 남겼다. 그런데도 光武10年 資料에서 6백만명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단순히 탐관오리와 賦役逃避 壯丁들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오차나 錯誤등 未備, 脫漏 때문만이 아니라 애당초 戶口調査對象이 달랐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정이 合邦以後의 年末戶口調査 數値趨移에서도 볼 수 있는 바 合邦하던 해, 1910年末에 2백80만가구 1천3백31만 3천명에서 출발하여 1911~12년간에 人口數가 年間 5.5%씩 증가해 왔고 그 餘勢는 1917년까지 지속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인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戶當人口數에서도 나타난다. 1907年까지 戶當 4.2명도 못되던 것이 1910, 11年에 4.75, 4.88명을 거쳐 1917年에 5.29명이 될 때까지 해마다 호당 인원수가 늘고 있다. 즉 한국의 가족제도가 1900年代까지 4인정도의 小家族制에서 점차 大家族制로 移行했다는 歷史性에 반대되는 矛盾이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실은 호적, 호구대상이 아닌 노비, 同居人 등이 추가계상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아야한다.

日帝前半期 戶口調査[1]趨移(第1回 簡易國勢調査以前)

		戶 數	人口數					戶當人口
			總 計	증가율[4] (%)	男	女	性比[5]	
光武8	1904	1,419,899	5,923,803	—	— —	— —	— —	4.17
10	1906	1,384,493	5,793,576	△2.20	— —	— —	— —	4.18
11 (5月20日)	1907	2,333,087	9,781,671	68.84	5,174,531	4,407,850	117.4	4.19
隆熙4 (5月10日)	1910	2,742,263	12,935,282	32.24	6,863,650	6,071,632	113.4	4.75
	1910	2,804,103	13,313,017	—	7,057,458	6,255,559	112.8	4.75
	1911	2,879,870	14,055,869	5.58	7,397,994	6,657,875	111.1	4.88
	1912	2,959,968	14,827,101	5.49	7,732,404	7,094,697	109.0	5.01
	1913	3,045,586	15,458,863	4.26	8,032,982	7,425,881	108.2	5.08
	1914	3,121,781	15,929,962	3.05	8,259,063	7,670,899	107.7	5.10
	1915	3,117,962	16,278,389	2.19	8,370,940	7,907,449	105.9	5.22
	1916	3,167,362	16,648,129	2.27	8,575,165	8,072,964	106.2	5.26
	1917	3,205,767	16,968,997	1.93	8,746,915	8,222,082	106.4	5.29
	1918	3,237,961	17,057,032	0.52	8,790,285	8,266,747	106.3	5.27
	1919	3,255,551	17,149,909	0.54	8,835,717	8,314,192	106.3	5.27
(10/1현재 임	1920	3,292,979	17,288,989	0.81	8,909,123	8,379,866	106.3	5.25
시호구조사)	1920[2]	(3,297,126)	(17,264,119)	(—)	(8,903,000)	(8,361,119)	(106.5)	5.24
	1921	3,308,614	17,452,918	0.95	8,997,584	8,455,334	106.4	5.27
	1922	3,359,552	17,626,761	1.00	9,088,684	8,538,077	106.4	5.25
	1923	3,404,181	17,884,963	1.46	9,214,319	8,670,044	106.3	5.25
	1924	3,433,080	18,068,116	1.02	9,293,922	8,774,194	105.9	5.26
(10/1현재 간	1925	3,609,624	19,015,526	5.24	9,729,304	9,286,222	104.8	5.27
이국세조사)	1925[3]	(3,720,773)	(19,522,945)	(—)	(10,020,943)	(9,502,002)	105.5	5.25

註 1) 각 年末現在 戶口數임
2) 總人口調査(센서스)대신 실시한 臨時戶口調査임
3)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簡易國勢調査)
4) 人口數 增加率에서 1906年은 1904年 대비(2年間), 1907年은 1906年 12月末과 1907年 5月까지(5個月間), 1910年은 1907年5月～1910年5月(3年間) 비교이며 1911年 이후는 1910年 以後 각 年末對比
5) 性比는 女子 100에 대한 男子 比率

資料1) 韓國戶口表(光武11, 財政顧問部)와 民籍統計表(隆熙4, 內部 警務局)
2) 總督府 官報 各年度(특히 1927年12月8日字官報 ; 綜合)
3) 朝鮮의 人口現象(1927. 善生永助,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4) 統計要綱, 1954. 姜益秀

1918年 이후에는 戶當人員數가 5.25～5.27명에서 안정되고 있다. 특히 여자가 호적조사에 계속 추가되고 있는 현상은 人口構成의 男女別性比(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비율)가 1910년대의 117.4, 113.0 등 110수준 이상에서 1920년대에는 105수준으로 낮아짐으로써 여성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 105～106수준은 인구통계학에서 幼兒出生 性比水準에 비근하여서 전체인구의 성비는 대개 100내외라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여성의 상당부분이 누락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 여성만 누락되었다기보다 그 비율에 해당하는 特定部類의 男子와 그에 상응하는 戶口까지 당시 日帝警察力으로서도 아직 덜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1920년(임시호구조사의 해)과 1925년(간이국세조사 : 第1回)의 常住人口 戶當人口數가 그 前後年보다 약간씩 줄고 반대로 性比는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등 단층을 보이는 것은 日帝壓迫이 심화되면서 만주등지로의 流離民現象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合邦을 전후한 地域別(道別)人口動向을 보면 1907年에서 1910年간에 전국 평균 인구수가 32.2% 增加調査되었음에도 忠北(8.3%), 慶南(7.5%), 黃海(6.4%)와 咸北(11.6%)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全羅南北道(76.4, 58.7%), 平北(61.1%)을 비롯하여 慶北(44.0%), 咸南(41.8%) 등은 全國平均을 훨씬 웃돌고 있는 바 이는 조사포착에서 前者(낮은 증가율)는 1907年의 조사가 비교적 실세에 가까워서 1910년 호적 조사시에는 追加捕捉分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이 지역의 주민중 집중적인 流民으로 그 고장을 떠난 戶口가 많았었거나 일 것이다. 性比構成에서 보면 이들중 忠北, 黃海, 慶南 등에서 性比가 특히 낮아 流浪民의 一次的 部分인 男性들 중에서 그 고장을 떠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後者(人口增加率이 큰 道)는 1910년에 추가조사분이 많거나 南方의 流浪民이 北方으로 가는 중에 머물렀던 戶口가 一時的으로 늘어난 현상(平北, 慶北, 咸南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咸北같은 경우는 增加率은 낮아서 人口數變動面에서는 前者에 속하나 性比는 높아서 一時的 流浪民男子가 몰려있던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이 경향은 咸南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比하여 全北, 江原 및 忠南에서 性比가 높은 것은 下層民의 男子戶口(마름, 火田民, 賤民등)를 대대적으로 발견해서 就籍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道別人口數比較(1907～1910年間)

	總　計	男	女	1907～10 年間 증가율 (%)	性 比 (1907)
京　　畿	860,020 (1,104,803)	470,950	398,064	27.1	118.3
忠　　北	491,717 (532,362)	263,037	228,680	8.3	115.0
忠　　南	649,756 (874,631)	353,336	296,420	34.6	119.2
慶　　北	1,062,991 (1,530,564)	574,330	488,661	44.0	117.5
慶　　南	1,270,214 (1,365,079)	677,097	593,117	7.5	114.2
全　　北	597,393 (948,282)	330,821	266,572	58.7	124.1
全　　南	850,635 (1,500,609)	459,040	391,595	76.4	117.2
黃　　海	901,099 (958,852)	477,520	423,579	6.4	112.7
平　　南	689,017 (884,363)	368,368	320,649	28.4	114.9
平　　北	600,119 (966,742)	323,468	276,651	61.1	116.9
咸　　南	582,463 (825,815)	320,297	262,166	41.8	122.2
咸　　北	390,045 (435,143)	213,274	176,771	11.6	120.6
江　　原	627,833 (774,447)	342,943	284,890	23.3	102.4
合　　計	9,781,671 (12,935,282)	5,174,531	4,407,815	32.2	117.4

註：• 總計의 (　)안은 1910年 5月 10日 調査分
• 1907年은 光武末(11年) 및 隆熙初(元年)임.
• 1910年은 隆熙末年(4年)
• 增加率은 1907～10年 3年間, 性比는 1907年分임.

資料：1907年(5月20日)分은 財政顧問本部(丸山警務顧問調査)
1910年分은 內部 警務局編纂(民籍法實施調査)

合邦後의 人口調査는 「報告例」에 의한 報告樣式으로 行政官廳을 통하여 申告하게 하였음은 前章 報告例制度에서 설명한 바이나 日帝下의 民籍調査나 戶口調査는 合邦直前年인 隆熙3年(1909) 3月 20日字 內部訓令 第39號 「民籍令執行心得」규정에서 그 골격을 이미 구성하였다. 그 第1條에는 「民籍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기 위하여 警察署, 警察分署 및 巡査駐(在)所에 民籍簿를 備置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로써 日帝는 合邦作業의 하나로 民籍調査를 警察을 통하여 철저화하기로 하였던 것이다(이무렵 警察權은 日本에게 移讓되고 그들 憲兵에서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棄兒發見時에도 一家創立으로 處理(위의 第4條)토록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韓國은 그보다 전인 1896年(9月1日) 勅令에 의한 戶口調査規則에서 國內 戶數·人口의 戶籍과 統表는 府牧郡에서 觀察府와 內部로 보내도록(第3條)되어 있었고 이 경우 경찰은 보조기능만 하였었다. 그런데 合邦하고나서는 日本의 例에 따라 경찰자체가 戶口調査의 主體가 되어 就籍事業은 더욱 強化되었을 뿐 아니라(民籍法도 日本法을 적용하게 됨) 뒤에 새로운 「戶口調査規程」(1922年 府訓令第33條)이 나오면서는 그것을 明文化하였다.

즉 戶口調査는 外勤巡査와 請願巡査가 「戶口를 찾아다니며」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戶口調査擔當 巡査는 每年 3月, 6月, 9月 및 12月末 現在로 담당구역의 戶口調査表를 作製하여 翌月 10日까지 警察署長에게 提出」하고 「警察署長은 이 戶口調査를 集計하여 그달 末日까지 道知事에게 報告」한다(同規程 第12條). 그것들이 최종적으로는 憲兵司令官을 兼한 統督府 警務總監府(나중의 警務局)에서 최종취합하도록 統督府 事務分掌이 規程하고 있다.

日帝初期의 人口調査는 이렇게해서 지속되면서 戶籍과 民間査察을 強化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常住人口調査의 統計的 有意性을 심화시키고 信賴度를 低下시켜 統計不信의 源泉이 된 것이다.

日帝는 1922年에 새로이 戶口調査規程을 제정하고 人口動態調査令을 公布하였으며 그 이후 1929年의 資源調査法制定 施行, 1937年의 朝鮮人口動態調査規則, 1939年의 臨時國勢調査 實施 및 4回에 걸친 國勢調査 등이 人口統計의 起伏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日帝時代의 後期에 해당되는 戶口統計 時系列인

日帝後期 戶口推移(簡易國勢調査以後)

	戶　數	人　口　數					戶當人口
		總　計	%	男	女	性比	
1925	3,609,624	19,015,526	5.2	9,729,304	9,286,222	104.8	5.27
(10/1국세조사)	(3,720,773)	(19,522,945)	(－)	(10,020,943)	(9,502,002)	(105.5)	(5.25)
1926	3,614,505	19,103,900	0.46	9,780,003	9,323,897	104.9	5.29
27	3,618,089	19,137,698	0.18	9,792,714	9,344,984	104.8	5.29
28	3,626,889	19,189,699	0.27	9,809,195	9,380,504	104.6	5.29
29	3,661,118	19,331,061	1.01	9,871,432	9,459,629	104.4	5.28
30	3,821,564	20,256,563	4.79	10,320,067	9,936,496	103.9	5.30
(10/1국세조사)	(3,985,953)	(21,058,305)	(－)	(10,763,679)	(10,294,626)	(104.6)	(5.28)
1931	3,831,179	20,262,958	0.03	10,321,427	9,941,531	103.8	5.29
32	3,912,121	20,559,876	1.47	10,482,841	10,117,035	103.6	5.26
33	3,952,049	20,791,321	1.13	10,581,541	10,209,780	103.6	5.26
34	4,010,606	21,125,828	1.61	10,744,439	10,381,389	103.5	5.27
35	4,142,976	21,891,180	3.62	11,116,144	10,775,036	103.2	5.28
(10/1국세조사)	(4,083,353)	(22,899,038)	(－)	(11,662,657)	(11,236,381)	(103.8)	(5.61)
1936	4,178,929	22,047,836	0.72	11,205,940	10,841,896	103.4	5.28
37	4,227,117	22,355,485	1.40	11,352,056	11,003,429	103.2	5.29
38	4,271,308	22,633,751	1.24	11,489,113	11,144,638	103.1	5.30
39	4,296,524	22,800,647	0.74	11,541,052	11,259,595	102.5	5.31
40	4,409,950	23,709,057	3.98	11,975,828	11,733,229	102.1	5.38
(10/1국세조사)	(4,586,565)	(24,326,327)	(－)	(12,266,230)	(12,060,097)	(101.7)	(5.30)
1941	4,558,617	24,703,897	4.20	12,454,169	12,249,728	101.7	5.42
42	4,782,969	26,361,401	6.71	13,248,588	13,112,813	101.0	5.51
43	4,878,901	26,662,150	1.14	13,323,703	13,338,447	99.2	5.46
5/1현재 인구 44[1] 조사)	4,920,203	25,917,881	△2.78	12,892,250	13,025,631	99.0	5.27

註　：1) 資源調査法에 의한 1944年 5/1현재 人口調査 道別 集計 槪數

資料：• 朝鮮總督府官報 各年分

• 南朝鮮過渡政府 朝鮮統計年鑑 1948年 3月(庶務處調査硏究署統計課)

• 統計要綱 1954. 姜益秀

바 人口統計面에서 後期라 할 때 여기서는 1925年 第1回 簡易國勢調査以後의 戶口動向을 말한다.

表에서 보다시피 1920年代 後半에 들어 公式統計人口가 비로소 2천만명을 헤아

리게 되었고, 그때의 人口增加率은 0.4～0.17%에 불과하다가 1930年代에는 1% 內外로 다시 上向되면서 安定되고 있다. 특히 1925, 30, 35 및 40年의 國勢調査 實施해에는 戶口數 增加率이 다른 해의 1%정도와 달리 4～5%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戶口調査가 國勢調査에 의하여 補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次大戰이 급박해지면서는 「戶口數 잡아내기」가 더한층 격렬해져 1941年과 42年에 人口가 각 4.20%와 6.71%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2年에 걸친 이런 무리한 調査는 다음 2年間인 1943年(1.14%)과 44年(△2.78%)의 변동률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과장보고되었던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日本敗戰末期에는 戶口調査도 제대로 안되었다. 따라서 戰時資源은 必要했기 때문에 1944年에 資源調査法을 동원한 人口調査規則을 새로 마련하여 5月1日 현재의 人口調査를 실시함으로써 급한대로 그 槪數만이라도 발표하였는데 이 해의 調査結果는 492만호에 2천5백92만명으로 前年(1943)보다 戶數는 4만여호가 늘었으나 人口數는 74만여명정도가 오히려 줄었다. 또 集計結果도 道別, 年令別統計가 다르다. 위 표에서는 道別戶口數를 계산했다. 이 調査가 日帝時代의 마지막 戶口數이다.

1944年의 人口調査 集計結果

	總計			韓國人	日本人	外地人	外國人
	男子	女子	合計				
道別合計	12,892,250	13,025,631	25,917,881	25,133,352	712,583	373	71,573
年齡別合計	12,912,321	12,987,821	25,900,142	25,120,176	708,454	120	71,392

日帝全期間을 통한 각 年別 戶口動向을 國勢調査實施를 기준으로 본 5年間隔의 변동양태를 보면 1925年 以後에는 5年間에 호수가 9%내외, 人口數는 10～17%씩 증가하여 그 증가폭의 급격함과 戶數와 人口數간의 不均衡이 돋보이다가 1930年代에는 年末戶口調査나 國勢調査가 모두 5년간에 6～8%로 安定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조사에서 戶數가 30～35年간에 2.44%, 35～40年간에는 12.32%라는 異常値를 보이고 있다. 1940年以後에는 國勢調査資料가 없으나 戶口調査에서는 40～43年間에 10～20% 늘었고, 上述한 資源調査法에 의한 人口調査資料는 1940(國勢調査)～44年(人口調査)사이에 7%내외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日帝末에는

人口數面에서 公式統計가 2천6백만 수준이 됨으로써 1910年 合邦當時 1천3백만 명의 꼭 2倍가 된 셈이며 한편, 日帝末의 家口數는 5백만호 수준이 되었다.

年末戶口調査와 國勢調査의 比較

				1910	1920	1925	1930	1935	1940	1944
朝鮮總督府資料[4]	官報	年末戶口調査	戶數	2,804,103	3,292,979	3,609,624	3,821,564	4,142,976	4,409,950	(1943年) 4,878,901
			男	7,057,458	8,909,123	9,729,304	10,320,067	11,116,144	11,975,828	13,323,703
			女	6,255,559	8,379,866	9,286,222	9,936,496	10,775,036	11,733,329	13,338,447
			計	13,313,317	17,288,989	19,015,526	20,256,563	21,891,180	23,709,057	26,662,150
			人/戶	4.75	5.25	5.27	5.30	5.28	5.38	5.46
	報告書類	國勢調査等	戶數	2,742,263	3,297,126	3,720,773	3,985,953	4,083,353	4,586,565	(1944年) 4,920,203
			男	6,863,650	8,903,000	10,020,945	10,763,679	11,662,657	12,266,230	12,892,250
			女	6,071,632	8,361,119	9,502,000	10,294,626	11,236,381	12,060,097	13,025,631
			計	12,935,282	17,264,119	19,522,945	21,058,305	22,899,038	24,326,327	25,917,881
			人/戶	4.72	5.24	5.25	5.28	5.61	5.30	5.27
		備考		民籍戶口調査[1] (5.10현재)	臨時戶口調査[2] (10.1현재)	第 1 回 簡易國勢調査	第 2 回 國勢調査	第 3 回 國勢調査	第 4 回 國勢調査	자원조사법[3] 상주인구조사
5個年間增加率(%)	年末戶口調査		戶數	—	(10년간 증가율) 17.43	9.62	5.87	8.41	6.44	(1943년) 10.63
			男	—	26.24	9.21	6.07	7.71	7.73	11.25
			女	—	33.96	10.82	7.00	8.44	8.89	13.68
			計	—	29.86	9.99	6.53	8.07	8.30	12.46
	國勢調査等		戶數	—	20.23	12.85	7.13	2.44	12.32	(1944년) 7.27
			男	—	29.71	12.56	7.41	8.35	5.17	5.10
			女	—	37.71	13.65	8.34	9.15	7.33	8.01
			計	—	33.47	13.08	7.86	8.74	6.23	6.54

註　：1) 警務局의 民籍簿作成用 戶口調査
2) 國勢調査 대신 國勢調査基準日 10月1日 현재로 실시한 戶口調査로 年末戶口調査와 같다.
3) 資源調査法에 의하여 임시로 실시한 5月1日 현재의 인구조사로 速報概數만 발표함.
4) 總督府 資料外에 다음과 같은 文獻이 있다.
• 朝鮮의 人口現象 1927 善生永助

資料：앞표와 같음

以上에서 본 日帝下의 人口統計概況은 단순히 그 計數的 意味만이 아니라 당시의 法制的 實務的 背景과 함께 時代史的인 흐름과 日帝統治體制의 特性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나. 農業統計體系와 土地調査事業

(1) 農林水產業統計調査

朝鮮總督府의 농업관련 통계는 隆熙年間의 施行 慣行을 계승하면서 추가해 왔다. 隆熙時代는 통감부를 통하여 朝鮮을 강점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한다면 總督府 時代에는 본격적인 식민지 經濟體制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본국(日本)의 計劃經濟를 위한 통계 시책이 상당수 그대로 移入되었다. 또한 본국에 대한 植民地 經濟의 再編 과정에서 각종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통계의 조사방법이나 집계 형식이 바뀌어진 것도 많다. 이러한 統計의 정비는 식민 통치를 위하여 總督府 자체가 創案하고 수행한 것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본국정부의 농상무부(성) 농무국에 의한 본국의 통계 체계를 그대로 옮겨 온 것이 대부분이다. 日本의 農業統計는 1883년에 「農商務通信規則」을 制定하여 194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유사한 調査組織, 調査機關, 調査方法 등의 體系가 定立되었으며, 이러한 施行 錯誤는 總督府의 農業統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統監府統計年報」에 어어 「朝鮮總督府統計年報」는 1909년도분부터 1942년도분까지 원칙적으로 1년도분 1권으로 매년 간행되었으나 조사체계나 統計表의 編制는 수차의 변경을 거치고 있다. 특히 통감부는 본국으로부터의 이주와 관련하여 일본인과 그 관청에 관한 사항을 重點的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韓國 政府의 調査資料를 統合하는 이원적 조사 체계를 가졌으나, 總督府 때는 日本人과 朝鮮人에 대한 구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출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사체계에서도 報告例 制度에 의한 行政報告統計가 중심이 되어 각 府郡의 調査 計數가 도에서 집계되고, 각 도의 報告에 의하여 總督府가 綜合 集計하는 體系를 갖추게 된다.

朝鮮總督府 時代의 農業統計는 報告統計의 屬性과 編制目的上 대부분 農業政策과 밀접한 相互 聯關性을 가지고 이용되었다. 물론 각 시대의 統計가 그 시대의 政治·經濟·社會的 背景下에서 작성되는 것이지만, 總督府 때에는 본국의 農業政策에 직접 이용하기 위한 統計 調査가 다수 등장하였다. 더욱이 미곡을 중심으로 한 곡물, 면화, 잠견 등 3대 農産物에 대한 증산 政策 및 受給 政策은 이와 관련된 生産 統計 또는 輸出入 統計에 대한 公表를 制限하는 등의 統制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總督府 시대의 農業關聯 統計는 크게 나누면 行政統計와 政策統計로 양분된다. 이 두 계통의 統計資料는 어느 경우든지 정책자료로서 이용되는 것이지만, 前者는 특정한 목적 때문에 작성되기 보다는 행정 대상의 總體的 파악이다. 따라서 行政統計는 원칙적으로 行政機關에 의한 全數調査가 기본으로 된다. 이에 반하여 政策統計는 특정한 정책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통계로서 이 경우에는 全數調査 보다는 標本調査가 주가 된다. 이렇게 분류하면 행정통계에는 基本調査가 株價된다. 따라서 行政統計에는 基本統計(農家戶數, 農業人口, 農地面積 등), 作物統計, 家畜統計, 林業統計, 漁業統計, 農林水産物 輸出入統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標本調査에 입각한 政策統計에는 食糧統計(식량수급관계), 生産費調査, 農家經濟調査 등을 包含할 수 있다.

(2) 土地調査事業

일제는 합방직적인 1910년 4월부터 土地調査事業을 實施하였으며, 土地調査事業이 終了될 무렵인 1918년부터는 다시 林野調査事業을 實施하게 된다. 그러나 土地調査事業은 일제에 의해서 비로소 計劃된 것은 아니다. 韓末에 이미 우리 정부도 近代的 測量法에 의한 量田事業을 계획하였고, 一部地域에는 그 計劃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시도한 量田事業은 고종 31년(1894년)의 驛屯土 整理와 光武2年(1898年)의 양전사업 실시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양전사업은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해짐으로써 결국은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통감부의 출현과 더불어 朝鮮土地調査事業으로 이어졌다.

土地調査事業의 경위를 要約하면, 1910년 3월에 韓國政府內에 土地調査局설치와 「土地調査實施計劃」으로 調査事業의 단서를 마련하였고 8월에 「土地調査法」을 제정하였으며, 동년 8월에 韓日合邦이 되자 土地調査局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으로 改稱하여 事業을 承繼하는 한편 한국정부때 제정된 土地調査法 및 同施行規則을 1912년 8月에 「土地調査令」으로 개정 공포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①調査對象으로는 宅地와 耕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調査地 사이에 들어있는 기타 地目(林野 등)은 調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田, 垈地, 池沼, 林野, 雜耕地는 물론 寺刹地, 墳墓地, 公園地, 鐵道用地, 水道用地 등의 특정 용지와 道路, 河川, 구거, 堤防, 鐵道路線, 水稻路線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②調査面積은 韓國의 總面績을 약 14,170萬里, 즉 2,204만 3천정보로 推算하여 그중의 8분의 1인 275만 5천 정보를 調査地域으로 看做하였다.

③調査에 소요되는 總經費는 1,412만 9천원으로 計上하여 7년 8개월의 繼續事業으로 하였다.

④調査事業의 體系는 總裁官房, 調査 및 測量의 3부로 나누어 총재관방은 庶務 및 會計 擔當, 調査部는 土地의 境界, 所有主, 地目 및 토지등급을 調査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地券을 교부하는 동시에 토지에 관한 관습 및 土地制度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도록 하였다. 測量部는 대삼각측량, 소삼각측량, 원근측량 및 필지별 測量을 實施하여 面積을 算定하고 地籍圖를 製作하도록 하였다.

⑤또한 作業의 便益과 經費 節減을 目的으로 調査事業의 計劃 및 指導監督에 從事하는 幹部 이외에는 韓國人도 參與시켰다.

土地調査事業의 內容은 土地所有權 調査, 土地價格 調査, 地形 및 地貌調査 등으로 분류하였다(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①土地所有權調査는 土地의 所在, 地目, 地法, 地籍 및 所有者를 調査하여 각 地籍圖에 각 필지의 位置, 形狀 및 境界를 表示하였으며, 특히 土地所有權에 대해서

는 一定한 期間內에 地主가 申告토록 하였다.

②土地價格調査는 市價 또는 賃貸價格, 기타 土地의 收益을 사정하고 地稅의 부과표준을 算定하도록 하였다.

③地形 地貌조사는 地形 測量에 의하여 地形圖를 製作하고 그 高低 및 分布關係를 表示하도록 하였다.

위의 土地調査事業 內容 가운데 日帝가 가장 重點을 두고 實施한 것은 土地所有權 調査였으며, 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사정이 만료된 所有者는 187만여명이고 그 土地面績은 487만여 정보, 耕地面積으로는 433만여 정보였다. 이렇게 土地臺帳이 정비됨으로써 1919년경부터는 耕地面積의 총량적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土地臺帳의 정비는 기존 耕地面積 統計의 커다란 轉換을 가져왔다. 그 하나는 面積 單位의 統一이고 다른 하나는 調査項目의 追加, 補完으로 나타난다. 面積의 單位로 從來에는 通常 畓에서는 斗落, 田에서는 日耕이 사용되었으며, 이것을 統計表에 集計할 때는 각기 지역별로 환산기준을 정하여 정보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1914년부터는 土地臺帳에 登錄된 耕地面積을 調査項目別로 區分하여 集計하는 方式이 導入된다.

調査項目의 變化 過程을 보면, 畓田의 合計는 통감부 때부터 파악되었으나 1910년부터 畓, 田이 구분되고 특히 1918년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火田調査가 실시되어 총경지 면적이 畓, 田, 火田(이전에는 田에 포함)으로 구분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1914년부터는 土地臺帳에 登錄된 畓에 대해서 1毛作, 2毛作 區分調査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畓 및 田에 대한 自作地와 小作地 狀況이 調査되어 耕地 面積을 集計한후 「農業統計表」에 公表하였다. 1919년부터는 土地臺帳 未登錄耕地面積의 推定調査가 畓, 田, 火田으로 區分 實施되어 耕地面積이 總體的으로 把握되었다.

이로써 日製의 朝鮮土地制度는 틀을 갖추었으나 한편 朝鮮土地에 대한 수탈체제의 완성이기도 하였다.

土地調査事業은 上述한 바와같이 土地所有者로 하여금 一定期限과 所定節次에 따라 所在土地를 臨時土地調査局에 申告케 하였던 바 여기서 정한 住所, 所有者名

(氏名, 機關名), 所有地의 地目, 字番號 四標(境界), 等級, 地積(面積), 結數 및 事故(備考등)를 기재케 하였으나 이들 내용을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사협조를 거부까지 하는 실정이었다. 日帝初期의 改編行政區域名稱과 改定度量衡은 물론 地目, 四標, 等級 등을 스스로 가려 記載하는데 混同이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까다로운 申告節次와 土地調査事業에 대한 意圖的인 弘報消極性, 그리고 住民의 排日感情에 의한 申告忌避 등까지 작용하여 사실상 상당부분의 農民私有土地를 國有化 또는 東拓所有化하거나 日本人에게 헐값으로 轉賣하는 등으로 韓國人의 土地經濟基盤이 급격히 붕괴되었다.

土地調査事業의 完了期인 1917年末 現在 國有地化한 것은 128,526정보나 되고 民有地 2,028,071정보중 상당부분이 日本人所有로 되었음은 물론 그것은 時日이 지나면서 더욱 進行되어 1930年경에는 全國土의 40%가 日帝에 의해 착취당한 狀態였다(韓國史大系).

그 결과 韓國農民의 生存基盤이 무너지면서 土地小作農化가 급격히 진행되어 自作農比率이 1910年代의 60.6%에서 1930年代에는 44.8%로 줄고 小作農은 39.4%에서 55.2%로 轉倒되었다. 이미 농민의 過半數가 小作農化하였고 이것도 名目上 계수로서 그 실상은 훨씬 비참하여 自作農中에 小作을 겸하는 농가가 25.6%이므로 전농민의 80.8%가 小作을 하는 셈이며 自·小作農들도 거의 零細農民으로 轉落하였다.

그간의 사정은 火田民이 되거나 만주, 간도 등지로의 移住 또는 1920年代와 30年代에 지속된 小作爭議(例; 1924年에 164件 6,929名 1930年에 93件 10,037名)사실로도 가늠할 수 있다.

土地調査事業實績(1917年末현재)

一 國 有 地

種別	筆數	面積
田	59,142	35,734.76
畓	19,920	14,138.90
垈	23,005	2,015.14
池沼	687	902.37
雜種地	1,395	4,236.80
林野	61,335	63,782.84
社寺地·其他	751	1,655.35
計	166,835	128,526.16

一 私 有 地

田	3,731,818	1,542,129.94
畓	1,340,723	361,119.28
垈	833,879	41,662.02
池 沼	4,365	1,331.05
雜 種 地	22,908	15,135.47
林 野	122,049	59,877.49
社 寺 地·其 他	53,110	6,816.59
計	6,114,852	2,028,071.84

資料：韓國總督府統計年報 1917年版 및 韓國史大系.

農民의 小作農化狀況

年度	自作農		自作 兼 小作農		小作農	
	戶數	%	戶數	%	戶數	%
1913～17	555,000	21.8	991,000	38.8	1,008,000	39.4
1918～22	529,000	20.4	1,015,000	39.0	1,098,000	40.6
1923～27	529,000	20.2	920,000	35.1	1,172,000	44.7
1928～32	497,000	18.4	853,000	31.4	1,360,000	50.2
1933～37	547,000	19.2	732,000	25.6	1,577,000	55.2

資料：韓國史大系

다. 統計近代化 試鍊期의 各種統計

日帝는 統計의 近代化 過程에서 西歐列強의 例에 따라 각종 統計調査를 導入 實施하였으며 朝鮮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統治手段과 兵站基地化의 推進 등을 목적으로 하는 統計調査와 각종 資料를 수집하였다. 특히 行政系統을 통한 「報告例 統計」를 중심으로 하고 國勢調査(總人口調査), 人口動態調査, 農村調査, 物價調査등 몇가지 原初的인 調査統計와 金融, 貿易, 公務員관계등 業務統計를 실질적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官廳主導로 이루어졌다.

1925年 臨時國勢調査時에는 朝鮮統計研究會를, 또 1935年 國勢調査時에는 朝鮮統計協會를 設立하여 그들 施策을 弘報케 하였던 바 이들 기관도 總督府 附屬施設이었다.

또 1935年 國勢調査時에는 이해에 總督府官房 文書課長을 會長으로 하는 朝鮮統計協會를 設立하였는데 이때는 府·島·邑·面의 統計職員과 實務官吏를 중심으

로 一般人들도 약간 포함시켰다. 한때는 會員數가 6천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年間 4回 發刊하는 機關紙「朝鮮統計時報」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이 주요지역을 다니며 國勢調査에 대한 弘報등 總督政治의 尖兵役割을 하다가 이것도 數年뒤에 흐지부지 되었다. 통계협회도 韓國人의 自發的 參與나 民間人의 主導를 허락치 아니하였다.

무엇보다 日帝時 統計는 순수한 統計目的에서 벗어나 官權的 強壓과 資料의 恣意的 選擇, 歪曲된 活用 등으로 한국통계의 近代化 發展을 屈折시켜 統計를 統治目的 爲主로 하던 前近代的 行態에서 脫皮치못하고 踏步, 停滯한 채 退化가 불가피하였다.

日帝時 統計의 大宗을 이루는 報告例統計가 철저하게「統制된 狀態」이기 때문에 韓國民의 文化的 自我를 刺戟하거나 總督府의 不條理 露出 내지 統治秩序 摩擦 등 염려가 있으면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해서 그대신 韓國社會의 否定的 側面과 後進性, 停滯性 文化의 규명 또는 總督統治業績의 宣揚爲主로 수집, 편제, 분석, 발표, 홍보하여 왔다. 韓國에서 官廳統計에 대한 不信風潮는 이때부터 시발되었고 심지어 이것이 타성화 되었다고까지 反省하기도 한다.

日帝는 이런 報告例資料를 더욱 철저화하면서 總督政治의 反抗人士와 抵抗情報를 색출하기 위한 憲兵, 警察의 強制力을 너무도 무자비하게 동원하였기 때문에 官廳統計는「政治統計」,「民情査察」과 同意語로 認識되었다.

이런 現象은 統計調査 慣行에서만이 아니라 統計調査의 企劃·設計에서부터 分類, 表章樣態, 分析技法, 假定設定과 檢證, 論證에 이르기까지 全面的 實狀이었다. 더구나 日帝가 退敗할 時에는「報告例」原資料를 전부 폐기시켰기 때문에 당시 日帝統計資料의 構造的 有意性이나 時系列斷層 등에 대한 要因分析과 檢證, 復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日帝時代에 이처럼 誤導·歪曲된 統計的 試練을 矯正하는데는 光復以後 거의 20年의 세월이 所要되었고 그 被害의 殘影은 아직도 도처에 남아있어 이를 完治하고 韓國統計가 스스로 位相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時日이 必要하리라고 보고 있다.

그중에서 1929年에 制定·施行한「資源調査法」은 日本軍國主義가 戰時總動員體制로 치닫는 과정에서 報告例統計를 가장 오염시킨 極致라고 할 것인바 이때의

調査對象인 「資源」은 報告例規程을 강화한 人的資源(勞動力, 職能技術者 등)과 工場, 鑛山 등 生産資源, 都·小賣業, 運輸業 등 物動資源들로서 이들을 最大限 發掘動員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總督府 末期의 統計部署였던 企劃課에서 統計調査와 함께 民情調査를 兼行하였다.

總督府에서 發行한 統計報告書 年報·月報등 각종 統計刊行物에 나타난 日帝時代의 統計需要는 바로 總督府의 統治需要라고 할 수 있다. 人口·勞動力關係를 비롯한 각종 社會·經濟統計를 利用할 때 이 점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以下에서 日帝時代에 실시한 主要統計調査를 略記하고 그 內容은 分野別發展史編에서 詳述하고자 한다.

＜人口 및 勞動力統計＞

- 國勢調査 : 1925～1940年 5年週期實施
- 人口動態統計 : 1937年부터 실시. 다만 1911～37年間은 報告例統計에 의함.
-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 : 1941年 總督府令에 의한 施行規則으로 年次調査
- 朝鮮勤勞統計調査 : 1945年 6月 實施
- 國民職業能力申告 : 國家總動員法 第21條에 의한 申告調査(1939年부터)
- 失業調査 : 1930年부터 報告例統計

＜農林水産業統計＞

- 農林漁業統計 : 報告例統計
- 土地調査事業 : (1910～1918)
- 食糧統計 : 報告例統計
- 生産費調査 : 1933年부터 실시(公表치 않음)
- 農家經濟調査 : 合邦前 「韓國農會報」에도 發表된바 있음. 임의표본지역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실시
- 地主·小作關聯調査 : 舊韓國時代以來 지역별로 간헐적으로 調査하던것, 1937年에 「朝鮮小作年報」 第1輯 發刊以後 1940年까지 持續

＜産業經濟統計＞

- 資源調査 : 總動員體制下의 人的調査와 生産, 物動施設調査

- 臨時國勢調査：1939年：國民消費生活에 관한 物動實態를 조사한 것
- 其他：(朝鮮市場統計, 工產額 및 家內工業統計, 會社統計 등－報告例統計)

＜家計 및 物價, 賃金統計＞

- 生計調査：1943年에 처음 試圖
- 物價：都賣物價指數－1910年(舊韓國末)以後
  小賣物價指數－1936年以後
  商品別·地域別物價：1909年 以後
- 賃金統計：1911年 以後의 報告例統計

＜業務統計＞：(대개는 舊韓國 光武時代로부터의 연장임)

- 金融關聯統計：1910年以後(銀行, 保險, 信託, 無盡 등 分化)
- 財政統計：1910年부터 中央과 地方財政을 分離하고 租稅, 官業, 專賣, 國公債分野를 취급
- 對外去來：貿易去來, 輸出入統計 등

第3節　美軍政時代의 統計概要

1. 美軍政의 統計機能

가. 軍政初期의 統治機構

1945年 8月15日 日王 裕仁이 降伏放送을 하면서 日帝의 韓國統治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으나 韓國人들이 3.8線을 경계로 남북이 分斷되는 것을 알게 된것은 그해 9月2日 聯合國最高司令部(매카서)의 地域分擔發表때이다. 이날은 미주리艦上에서 日本이 降伏調印하던 날이다.

南韓에 軍政을 실시키로 한 美國은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日帝官學의 왜곡된 정보와 宣教師들이 전해주는 정도였다.

美國은 南韓 統治機關인 軍政의 責任者로 軍政長官을 任命하였다. 少將級인 윌리엄 H. 아놀드(1945. 9. 2～), 아더. B. 러치(1946.11.16～) 및 윌리암 F. 딘(1947.10.30～)이 거쳐갔다.

아놀드의 軍政은 처음에 日帝의 朝鮮總督府 機構와 人員을 그대로 存置했었다.

다만, 總督(Governor General)이 軍政長官(Military Governor)으로 바뀌고 政務總監(Vice Governor General)을 軍政副長官(Deputy Military Governor)및의 民政長官(Civil Administrator)으로 하였을 뿐이다. 1945年 9月 17日字로 發表(9.29發令)한 것을 보면 財務, 鑛工, 農商, 法務, 交通, 遞信, 學務 및 警務(11月14日 發令)등 8個 局長은 물론, 官房構成(後述)도 日帝末期 總督府官制를 그대로 따른것이며 職級은 民正長官(해리스)만이 准將이고 기타는 大領(鑛工局長 : 언더우드)에서 大尉(學務局長 : 락카드)에 이르기까지 領官·尉官級에서 充當하였다.

그해 9月에는 衛生局이 생기고 12月부터 각 局長級에 美軍과 韓人을 並任하는 兩局長制를 택하였다가 1946年 3月 29日 法令第64號로 局을 部로 改稱하였다.

軍政時代의 機構整備過程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45. 9.24. 衛生局 新設

10. 1. 官房 外務課, 財產管理課 新設

10.27. 衛生局→保健厚生局 改稱

11.23. 軍務局 新設

11.30. 官房情報課→公報課로 改稱

1946. 3.13. 公報課→公報局으로 昇格

農商局→農務局, 鑛工局→商務局 改稱

3.29. 各局→各部로

4. 2. 會計處→庶務處

4.20. 人事行政處 新設

7.23. 勞動部 新設

8. 7. 土木部 新設

8.24. 朝鮮過渡立法議院 創設키로 발표

9.11. 行政權 移讓에 관한 軍政長官 特別發表

12.12.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開院

1947. 2.10. 安在鴻 民政長官 任命

6. 3. 「南朝鮮過渡政府」名稱使用

終戰直後 10月 15日字 機構에서는 日帝總督府官制의 官房(Secretariat) 6個課중 地方課를 없애는 대신 外務課, 軍事行政課와 管理課를 두어 8個課로 늘리고 本部 8個局은 衛生局이 추가되어 9個局으로 되는 정도였다. 地方은 道別軍政팀이 獨立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5年末 機構에서는 다시금 官房에 地方課가 생기면서 會計課가 없어져 그대로 8課이나 局은 9個局중 衛生局(Public Health)을 保健厚生局(Public Health & Welfare)으로, 警務局(Public Safety)을 警察局(Police)으로 고치면서 새로 軍務局(Armed Forces)을 둠으로써 10個局이 되었다. 警察局(警務局)과 軍

務局을 地方軍事政府와 함께 國防司令部(Director of National Defense)에서 統轄하게 한 것으로 機構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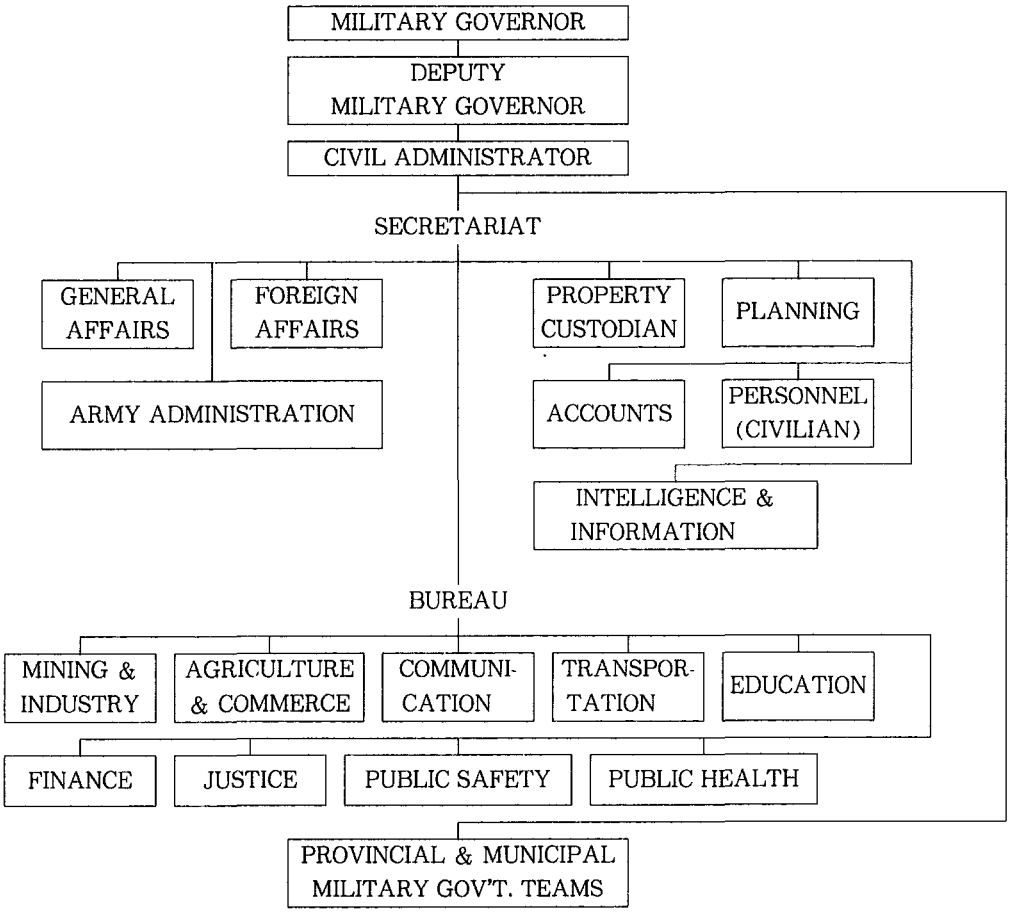
機構面에서 軍政의 틀이 定着된 것은 1946年에 들어서 局制를 部制로 고치고 官房制度도 處廳制로 하면서부터이다. 이때는 上部機構인 軍政長官과 副長官밑에 駐韓美軍의 純粹한 軍事參謀部 기구를 분리하고 民政長官을 독립시켰다. 이 民政長官밑에 11個部(Department)와 4個處 및 기타 必要한 部署를 두도록 하였고 별도로 國家經濟院, 食糧行政處, 物資調達處등 기구를 두었다.

이 機構는 점차 확대되어 公報課는 公報局에서 公報部로 되고 軍務局은 國防部와 뒤의 統衛部로 된다. 또 土木部, 勞動部가 생기고 農商局은 農務部로 고치면서 그속의 商業部門을 鑛工局에 吸收시켜 商務部를 두었다. 商工部門이 行政機構上 農林部門에서 떨어져 獨立된 産業政策對象으로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한편 기타의 여러 局도 部로 되면서 名稱도 바뀌었다. 學務局→文敎部, 法務局→司法部, 交通局→運輸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經濟政策 當面課題인 食糧需給과 物價問題에 대처하기 위하여 食料行政處, 物價行政處가 생기고 敵産, 國家財産 管理를 위한 管財處가 생긴다. 아직 對外關係業務의 獨自性이 確保되지 않는 狀態에서 外務를 處로 機構化하였고 그밖에 總務, 會計, 企劃, 統計, 報告등 業務는 庶務處로 統合되었다. 이 새로운 法令에 의한 機構名稱은 各部(Department)에 局(Bureau)과 課(Section)로 되고 課는 다시 室 또는 擔當官室(Sub-section)과 係 또는 班(Branch)으로 나누었다. 또 處廳(Office)은 局水準의 署(Division)를 두고 署에 課(Section), 室 또는 擔當官室(Sub-section)로 分掌系統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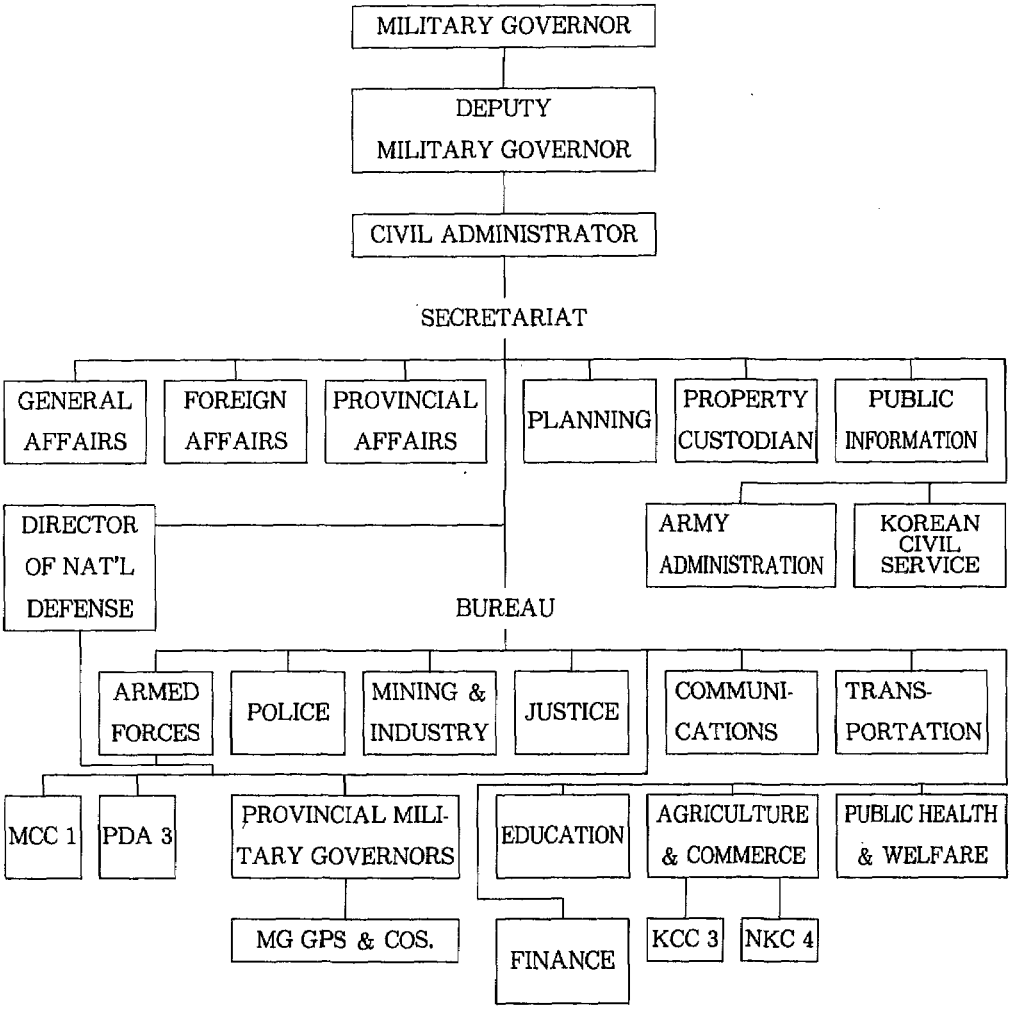
ORGANIZATIONAL DIAGRAM

15 Oct. 1945



資料：駐韓美軍史 Part 3, p. 75.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GOVERNMENT OF KOREA(31 DECEMBER 1945)



資料：駐韓美軍史 Part 3, p. 77.

나. 美軍政下의 統計機能

(1) 中央統計機構

軍政初期의 統治機構가 日帝 總督府의 官制를 그대로 수용하였듯이 統計擔當 部署도 總督官房의 總務課(文書課後身)와 企劃課(調査課後身)에서 延長되었다. 이

들은 본래 舊韓國時代 以來 大臣官房과 日帝 總督官房에 속했었으나 1942年에 일시 總務局에 속했다가 1945年 4月 다시 總督官房에 소속되었던 것이다. 그중에 總務課는 그 以前의 文書課를 1944年 11月에 흡수하여 설치한 것으로 日帝「報告例」중심의 行政統計業務와 統計年·月報 및 官報를 발간하고 있었다.

또 企劃課는 1929年의 臨時國勢調査課에서 1937年의 國勢調査課 및 1943年의 調査課를 거쳐 1945年 4月에 企劃室과 합쳐 企劃課가 되면서 각종 統計調査와 함께 民情調査를 수행하며 主要政策企劃業務를 擔當하는 중추부서였다(以上 日帝 總督府 統計機構 參照).

日帝末期에 이들 機構가 戰時總動員體制로 운영되었던 것은 前述한 바이다. 이중에 總務課의 行政統計業務機能이 調査研究署로 變遷 과정을 거쳤고 企劃課의 調査統計業務機能이 統計署로 變遷 과정을 거친것이 美軍政時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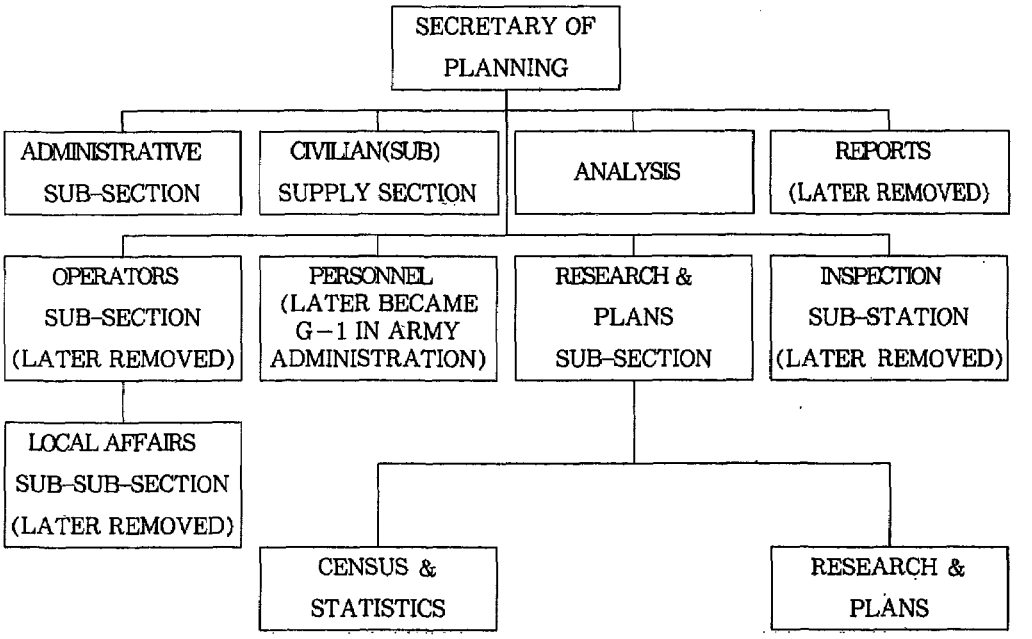
光復直後 美軍政에서도 企劃課(Planning Section)는 官房企劃課로서 軍政廳官房(Secritariat)에 속해서 統計調査業務와 함께 軍政全般 統治機能의 綜合的 性格을 지니고 8個 擔當官室(Sub-Section)이 있었다. 즉, 行政, 民間供給(官需), 分析, 調査企劃등 擔當官室과 뒤에 떨어져 나간 人事, 監察, 報告, 運營 및 地方등 擔當官室이 그것이다. 이중 調査企劃擔當官室(Research & Plans Sub-section)에 센서스統計官(Census & Statistics)과 調査企劃官(Research & Plans)을 두어, 統計官은 調査統計業務를, 調査官은 報告統計業務를 分掌하였다. 이때가 이른바「軍政廳官房企劃課 統計 時代」이다. 그리고 統計官室內에 日帝때의 8係를 그대로 답습하게 하였다.

이처럼 總督府末期와 美軍政機構에 官房＝8室課, 企劃課＝8擔當官室, 統計官室＝8係등「8」個機能 때문에 後世에 한때 企劃課와 統計官房을 混同하고 統計官室의 8係를 8課로 誤認하기도 하였다.

美軍政下의 企劃課는 政府政策樹立과 當面政策의 調整機能을 하며 한편으로는 檢察總長의 機能範圍內에서 軍政廳 각 局課 및 地方廳에 대한 監督도 함으로써 政策의 圓滑化를 期하게 하고 政策混亂을 極小化시키는 役割을 한다. 分析·報告·勸告와 美24軍團 參謀本部와의 連絡도 소관업무의 하나였다(駐韓美軍史).

이 企劃課의 課長(Chief)은 대개 大領(May)과 中領(G. F. Kahler, C. V. Hill, S. Wiard 등)級이 맡아서 초기의 軍政官職 水準에서 보면 상당히 高位階級으로 임명함으로써 重要한 職責과 役割을 수행하였음으로 알 수 있다.

ORGANIZATIONAL DIAGRAM
PLANNING SECTION
(Feb. 1946)



資料 : 駐韓美軍史 Part 3, p.85.

이 企劃課는 後日 1946年 3月에 軍政機構가 部處制로 되면서 官房機構를 庶務處로 統合한다. 따라서 官房內의 企劃課에 있던 각 Sub-section은 庶務處內의 局水準이 되어 Research & Plans Sub-section(調査企劃擔當官室)은 센서스統計官室(Census & Statistics)을 중심으로한 統計署와 調査企劃官室(Research & Plans)을 중심으로 한 調査研究署가 된다. 그 統計署 안에 統計官室과 庶務, 人口靜態, 家計, 勞動力 및 人口動態 등 5個課를 두어 직원이 800명 규모였다. 이때부터가「庶務處 統計署」時代이다.

한편 1946年이 되면 韓國의 政治指導者들 특히 民族陣營에서 모스크바 3相會議 5個年信託統治案에 대한 反對運動을 展開하며 共產黨의 替託으로의 轉換을 계기로 非常國民會議를 開催하고 여기서 選出한 最高政務委員(28名)들로 美軍政에 干涉하는 諮問機關하고, 「南朝鮮大韓民國代表 民主議院」(議長 李承晩, 副議長 金奎植, 總理 金九)을 결성하였다(2月 14日 ; 그 다음날 共產黨－人民黨은 民族主義民主戰線 結成). 이때 각 實務局長을 外部人으로 맞으면서 尹致暎(秘書), 高義東(庶務), 咸尙勳(公報)등과 함께 企劃에 崔益, 統計에 趙完九를 任命한 바가 있다. 이미 統計가 韓國政治人들 사이에서도 認識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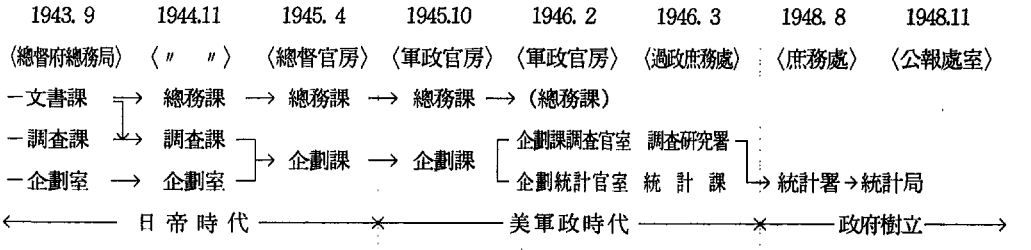
그해 9月에 韓國人에게 行政權移讓計劃을 발표한데 이어 12月에는 法令 第118號에 의하여 좀더 中道的 人物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을 發足開院시켰다. 1947年 2月에는 安在鴻을 民政長官에 任命함으로써 行政, 立法, 司法(大法院長 金用茂는 이미 1945年 10月에 任命)의 三府는 갖춘 셈이 되었다. 따라서 그해 6月 3日부터는 공식으로 「南朝鮮過渡政府」란 名稱을 부치게 하였다(1947. 5. 17字 法令 第141號). 이때에 "美軍政廳庶務處 總計署"가 "南朝鮮過渡政府 庶務處 統計署"로 된다. 이때의 統計署長은 鄭喆燮였다. 그 統計署에는 1室(統計官室)과 4個課(庶務, 管理, 人口靜態 및 家計調査課)를 두고 직원은 500명 수준이었다. 人口動態調査는 保健厚生部로 移管시키고 또 勞動力調査는 勞動部로 移管하였다.

政府樹立(1948. 8. 15)후에도 統計署로 延長되어 1948年 11月 4日까지 지속되다가 公報處 統計局이 되었다.

한편 總督官房 文書課의 行政報告統計業務를 承繼한 總務課도 軍政初期에 그대로 延長(General Affairs) 되었다가 1946年 3月, 部處制 發足時에 總務課에는 순수 行政業務만을 남긴 채 그안에 있던 行政報告統計業務(統計係)는 企劃課의 報告, 分析 및 運營室(Sub-section) 등에 있던 보고통계업무와 함께 調査企劃官室로 統合해서 「統計署」와 同格인 「調査硏究署」가 되어 그 안에 統計課를 두고 統計年鑑등 統計刊行物을 發刊케 하였다. 이 무렵 人口動態調査는 保健厚生部로 勞動力調査는 勞動部로 移管시켰는데 이 調査硏究署는 1947年 6月 南朝鮮過渡行政時에

도 存續하였다가 1948年 政府樹立直前에 統計署에 吸收統合시켰다. 以上 軍政廳 統計部署의 變遷過程을 다음과 같이 要約圖示한다.

한편 軍政廳內 他部署의 統計調査業務分野를 보면 農林水產統計는 1947年 6月에 軍政廳法令 第143號를 公布하여 農林統計 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農林部內에 調査統計課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예하 各級 行政機關에는 統計員 1,928名을 배치까지 하였으나 그 機能은 政府가 樹立되면서 地方機能만 남긴채 中央政府機構로서는 폐지되었다. 한편 外務課(官房)내의 外事室(Foreign Sub-section)에 記錄(Records)擔當이 있고 會計室에 統計, 監査, 豫算 및 財務(Budget & Finance)와 海外財產(Properties abroad)擔當이 있었으며 公報課(官房)에는 輿論室(Office of Public Opinion)에 調査(Research), 對民關係(Civilian Contact), 政治敎育(Political Education) 및 輿論調査(Opinion Sampling)담당과 별도의 報告系統을 지니고 있었다. 行政統計業務를 企劃課로 보낸 總務課에는 法制室(Legal Sub-section)에 法律調査擔當이 설치되고, 地方道에는 地域軍政長官의 道官房에 統計調査 및 報告業務擔當者를 두었었다.



(2) 美軍政時代의 主要資料

이 時代를 다룬 文獻은 後代에 여러 硏究資料가 나왔으나 基本的인 것은 軍政主體인 駐韓美軍當局의 당시 記錄들로서 그 代表的인 것이 「駐韓美陸軍司令部 情報參謀部 美軍政情報報告書」(이른바 G－2 報告書)이다. 이는 美24軍團이 南韓에 進駐한 以來 韓半島統治와 관련해서 신문, 잡지, 인터뷰, 輿論調査, 書信·通信檢索 등으로 포착한 各樣한 情報를 日日報告 및 週間報告로 本國에 보고한 것으로

그동안 機密文書로 되어있던 것을 1975年 情報自由法에 의해 一般에 公開된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日軍動向, 北韓에 진주한 蘇聯軍 動向, 北韓의 軍備情勢는 물론 南韓內 人口流出入, 民心動向, 政治·社會著名人士와 政黨活動, 集會와 소요사태, 物價, 物資需給, 農作物作況과 經濟活動 그리고 傳染病등 다방면에 걸쳐 斷片的이나마 持續的으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事件日誌(1945. 8. 15～48. 9. 29)가 갖추어져 있다. 전체 15권중 1～6卷은 司令部 G－2 日日報告書이며 7～8卷과 9～10卷은 제6 및 제7步兵師團의 G－2 日日報告書이며 11～15卷은 司令部 G－2에서 이들을 종합하여 週間單位로 報告(Weekly Report)한 것이다.

위의 日日 및 週間報告書 資料를 기초로 해서 駐韓美軍 情報參謀部의 首席軍史官으로 있던 Dr. Harold Larson의 責任編輯下에 G－2所屬 軍史官들이 分擔執筆한 「駐韓美軍史」(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USAFIK)도 美軍政의 始末을 집약한 重要資料라 할 수 있다. 非刊行物이지만 美國會圖書館의 Micro film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말하자면 舊韓國時代나 日帝의 官報, 實錄, 統治史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資料의 精密分析으로 당시 韓國統計發展史의 裏面을 밝히는 것도 今後의 課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美軍政時代研究資料로서 美國務省의 對外關係文書集(Foreign Relation of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年度別資料에 依存한 바가 많았고 때로는 당시 人士들의 傳記類(李承晩, 金九, 宋鎭禹, 呂運亨, 趙炳玉등)나 政黨史類 및 각 新聞의 拔萃文들이 學者에 따라 引用되어 왔다. 그중에 韓國日報에서 1955年 8月 15日부터 12月 1日까지 光復 10年을 맞아 重要한 事件의 資料를 連載한 「史料로 본 解放十年略史」(千寬宇)도 이 時代研究의 貴重한 資料이다.

統計公認刊行物로서는 過渡政府의 「南朝鮮統計年鑑」(1948)과 朝鮮銀行의 朝鮮經濟年鑑(1948) 등이 있다. 그중에 「南朝鮮統計年鑑」은 檀紀4281(1948)年 3月에 發刊하였으나 4276年 資料中心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南朝鮮過渡政府編纂으로 된 唯一한 綜合統計年報로서 그 編纂部署는 庶務處 調査研究署 統計課이다. 編纂統計項目은 다음과 같이 區分되어 있다.

i)土地　ii)戶口　iii)農業　iv)林業　v)水產業　vi)鑛業　vii)商業·金融
viii)土木水運　ix)遞信　x)鐵道　xi)專賣　xii)敎育　xiii)宗敎·社會事業

xiv)警察　xv)衛生　xvi)裁判·登記·供託　xvii)監獄　xviii)財政
xix)官公史, 恩給

2. 美軍政下의 主要統計

가. 主要基礎統計指標

(1) 主要指標推移

다음의 表는 美軍政 3年間의 戶口와 經濟動向을 나타내는 主要統計指標의 推移이다. 光復當年(1945)과 政府樹立 다음 해(1949)까지 포괄해서 그간의 변동양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人口總數면에서 1944年(5月) 당시의 南北韓總人口 25,120,174名중 南韓分에 해당하는 15,879,110명에서 보자면 1946年에는 19,369,270명으로 2년간에 3,490,160명이 늘어난 2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946年 이후의 이들 숫자는 軍政廳에서 國民登錄과 人口動態申告에 의하여 추정 발표한 것이나 그중에 대부분은 1945年에서 1946年 사이에 以北同胞 및 海外同胞의 流入과 日人 등의 退去, 이른바 社會增加가 급격해진 결과이다. 1946年 以後의 人口動態率에서 보다시피 해마다 1~2%씩 밖에는 늘고 있지 않는데서도 1944~46間의 22%增加는 自然增加보다 社會增加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光復과 함께 人口移動은 다음의 美軍情報部 報告書에서 보다시피(1946年 10月 19日字) 日本人의 退去는 北韓, 滿洲등지에서 온 者(268,367명)를 포함한 民間人 676,296名과 軍人 179,277명으로 도합 855,573명이다.

즉 순수하게 남한에만 있던 日本(民間)人의 退去者는 407,929명인 셈이다. 반면에 海外同胞의 入國은 日本으로부터 908,264명, 北韓人口의 越南 692,470명을 포함하여 1,871,608명이다. 解放十年略史에서는 1947年末 現在로 日本人(軍人, 外來民間人 包含) 883,624명과 中國人등 2,317명이 出國하고 海外同胞는 日本에서 1,111,104명과 北韓越南人 803,434명, 滿洲, 中國에서 116,597명 기타 太平洋

沿岸諸國에서 37,129명등 2,067,964명이 입국하여 줄잡아 160여만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美軍政時代의 主要統計指標

		1945	1946	1947	1948	1949
		(25,120,174)				
人口總數[1]	名	15,879,110	19,369,270	19,886,234	20,027,393	20,166,756
出生(出生率)	(%)	–	234,570(1.21)	438,032(2.20)	373,226(1.86)	–
死亡(死亡率)	(%)	–	173,453(0.90)	178,506(0.90)	186,794(0.93)	–
婚姻(婚姻率)	(%)	–	16,854(0.09)	43,274(0.22)	34,405(0.17)	–
離婚(離婚率)	(%)	–	1,280(0.01)	1,819(0.01)	1,223(0.01)	–
農家戶數	戶	–	–	–	–	2,473,833
人口數	名	–	–	–	–	14,416,365
耕地面積	町	–	–	–	–	2,070,577
米穀生產	石	12,835,827	12,050,388	13,850,000	15,485,716	14,733,726
米·麥·雜·豆·著計	石	18,234,901	18,812,539	20,039,075	22,245,943	23,358,845
水產戶數	戶	–	157,907	183,625	170,557	196,435
人口數	명	–	408,369	502,231	521,252	616,366
水產生產高(漁獲,養殖,製造)	M/T	281,178	363,348	361,118	351,369	396,187
서울都賣物價	1947=100	12	55	100	163	223
年末通貨量	백만원	114	249	495	696	1,221
貨幣發行量	〃	88	177	344	434	751
重石生產	Kg	–	376	1,199	1,340	1,450
黑鉛生產	Kg	–	204	4,200	15,958	45,309
無煙炭生產	M/T	–	253,866	430,224	714,584	980,897
綿紡原絲生產	千근	524	7,954	11,166	10,457	23,051
發電量(이북수전포함)	千Kwh	711,327	676,124	828,760	693,999	654,969
輸出	千弗	–	3,541	26,804	22,260	13,804
輸入	〃	–	60,721	232,615	208,003	132,775
(援助收入)	(〃)	(4,943)	(49,496)	(199,899)	(179,592)	(116,399)
對美公定換率	圓	15(10月)	15	50(7月)	450(10月)	900(6月)

註:1) 1945年 (　)안은 1944.5.1현재 임시호구조사 全國人口이고 총 인구수는 南韓人口分임.
1946~48年間은 국민등록수, 인구동태신고에 의한 美軍政 추정수치.
1949年分은 同年 5月 1日 현재 총 인구조사 결과임.

人口構造面에서 大量流入 人口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男女性比(女子를 100으로 봄)는 日帝末의 100未滿에서 1946年부터는 100을 넘어 여자보다 오히려 남자가 많아졌다. 즉 海外에 나가있다가 귀국한 사람의 성별구성에서는 남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며 또한편 男子家族의 申告(國民登錄)를 기피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男女別 總人口數 構成

	計	男	女	性　比
1944. 5	15,879,110	7,484,242	8,031,868	93.2
1946. 8	19,369,270	9,791,707	9,577,563	102.2
1947. 5	19,886,234	10,053,752	9,832,482	102.3
1948. 5	20,027,393	—	—	—
1949. 5 KRB	20,166,756	10,188,238	9,978,518	102.1

人口數面에서 1944～46年間에 22%가 늘어난데 비하여 米穀生產은 그렇게 人爲的으로 늘릴 수 없었다. 1945年의 1천2백80만석은 1946年에 오히려 1천2백5만석으로 줄었다. 1946年의 人口 1人當 年間 米穀消費量은 0.622石 즉 1個月에 1斗정도밖에 안된 것이다. 그런대로 정부수립을 전후한 1948～49年에는 1천5백만석 규모로 增產되기는 하였지만 食糧의 절대량은 절대부족한 형편이었다.

鑛產物生產은 無煙炭以外에 약간의 重石과 黑鉛이 생산되어 원광상태로 해외에 수출하여 光復以後 初期 對外貿易에서 主要外貨所得源의 하나로 역할을 시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國民生活과 工業生產에 절대적 요소인 電力供給力의 취약성은 모든 產業活動에 파급되었다. 北韓으로부터의 送電은 1948年 5月부터 中斷되었다.

이 기간중의 식량을 비롯한 경제물량 절대부족분은 美國의 GARIO援助등으로 메웠으나 國民生活의 궁핍은 극에 달한 상태였다. 日帝는 물러가면서 모든 工場을 古鐵化하였으며 그나마 주요시설은 모두 軍需用品製造를 위하여 供出하여 갔다. 山林資源과 광산자원을 황폐화시키고 漁業動力船은 거의 징발된 상태였다. 무엇보다 敗亡前後해서 난발한 貨幣는 악성인플레까지 이땅에 남겨놓고 갔다. 먼저 貨幣發行高는 日帝 敗亡直前인 7月만해도 6月보다 10.1% 늘어난 것은 月間變動幅으

로서는 당시로서 파격적인 것인데 8月에는 6月보다 46.8% 9月에는 107.0%나 增發한 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물가상승으로 나타나 8月의 物價가 불과 2個月 사이에 6.3倍나 되었고 12月에는 15倍나 뛰었다. 이처럼 1945년에 貨幣經濟와 市場價格構造가 破壞된 상태에서 그 뒤 계속되는 1946年 以後의 국내경제는 物量供給力의 절대부족과 통화적 요인의 相乘作用으로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성화되어 간 것이다.

光復前後의 貨幣發行과 物價

	1945. 6月	7月	8月	9月	12月
貨幣發行高(백만원)	4,101	4,516	6,020	8,488	8,620
(指數 1945.6=100)	100.0	100.1	146.8	207.0	210.2
(物價指數 1936=100)	276 (100.0)	—	1,752 (634.8)	2,042 (739.9)	4,359 (1,579.3)

資料：朝鮮經濟年鑑 1948.

(2) 人口動態調査

光復以後의 人口動態에 관한 調査는 政府樹立 후 1949年 5月의 總人口調査時까지 없었다. 다만 美軍政은 國民保健에 관심을 두어 軍政部署를 정한 직후 곧 9月 24日에 軍政廳法令 第1號로 衛生局을 신설하였고 10月 25日에는 衛生局을 保健厚生局으로 變更하였다(軍政法令 第18號). 뿐만 아니라 11月 7月에는 地方 각 道廳에도 保健厚生部를 設置하였다.(同 第25號). 여기에 人口動態統計(Vital Statistics)를 담당하는 保健課 人口統計係를 두고 軍政廳 保健厚生局의 規定과 樣式에 따라 出生, 死亡, 死産, 婚姻 및 離婚에 관한 登錄과 集計作表를 하였다.

1946年 3月에 軍政廳의 局制가 部制로 될 때에는 保健厚生局이 保健厚生部가 되면서 그안에 衛生統計局을 두었다가 同年 5月에 生政局으로 改稱하는 한편 각 道에 中央에서 派遣한 地方特派員 出張所(Field Agent)制에 의한 調査指導體制를 갖추었다. 이때 道廳에는 生政課를 두어 道別로 登錄資料 蒐集 및 製表를 하고 그 結果를 中央에서 綜合하였다.

1946年 4月 1日字부터 施行한 「衛生統計調査規則」에 의하여 1946年(4～12

月)分과 1947年分 人口動態統計를 집계하였고 1947年 11月에 保健厚生部의 生政局이 豫防醫藥局이 되면서 그 안에 統計課를 두어 人口動態統計를 담당하게 하며

出生·死亡·死產·婚姻·離婚 總覽表

	出生兒數			死亡者數			
	總數	男	女	總數	男	女	其中一年未滿兒
南朝鮮	234,570	125,655	108,915	173,453	93,456	79,997	18,187
서울市	24,957	12,803	12,154	9,544	4,904	4,640	2,436
京畿道	43,911	23,283	20,628	26,642	13,952	12,690	4,217
忠淸北道	10,318	5,640	4,678	9,053	4,942	4,111	790
忠淸南道	20,254	11,258	8,906	16,397	8,790	7,607	1,400
全羅北道	12,792	7,051	5,741	11,085	6,143	4,942	688
全羅南道	14,369	8,050	6,819	11,285	6,408	4,877	462
慶尙北道	37,324	20,471	17,353	13,411	17,037	14,374	1,999
慶尙南道	53,713	28,448	25,265	45,247	24,314	20,933	4,861
江原道	15,405	8,374	7,031	11,698	6,334	5,364	1,318
濟州道	527	277	250	1,091	632	459	16

	人口自然增加數	死產數	婚姻件數	離婚件數	出生率		
					人口千人에對하야	女百人對男	人口千人에對하야
南朝鮮	61,117	1,241	16,854	1,285	16.1	115.4	11.9
서울市	15,413	705	640	56	29.0	105.3	11.1
京畿道	17,269	234	2,982	194	23.4	112.9	14.2
忠淸北道	1,265	11	1,556	58	12.3	120.6	10.8
忠淸南道	3,857	25	2,205	124	14.1	125.1	11.4
全羅北道	1,707	8	1,549	73	8.4	122.8	7.3
全羅南道	3,584	18	1,414	135	6.7	118.1	5.1
慶尙北道	6,413	42	2,595	165	15.8	118.0	13.1
慶尙南道	8,466	184	2,210	365	22.4	112.6	18.9
江原道	3,707	14	1,536	68	18.3	119.1	13.9
濟州道	564	—	167	47	2.5	110.8	5.2

	死亡率				人口自然增加率	死産率	婚姻率	離婚率
	男千男人人死口對亡	女千女人人死口對亡	女百男死人死亡對亡	出對男生一兒千年死人未亡	人에口對千하人야	人에口對千하人야	人에口對千하人야	人에口對千하人야
南朝鮮	12.7	11.1	116.8	77.5	4.19	0.09	1.15	0.09
서울市	11.3	10.9	105.7	97.6	17.92	0.82	0.74	0.07
京畿道	14.6	13.8	109.9	96.0	9.22	0.12	1.59	0.10
忠淸北道	11.6	10.0	120.2	76.8	1.51	0.01	1.86	0.07
忠淸南道	12.1	10.7	115.6	69.1	2.68	0.02	1.53	0.09
全羅北道	8.0	6.6	124.3	53.8	1.12	0.01	1.02	0.05
全羅南道	5.7	4.4	131.4	31.1	1.62	0.01	0.64	0.06
慶尙北道	14.1	12.1	118.5	52.9	2.68	0.02	1.08	0.07
慶尙南道	20.1	17.6	118.2	93.5	3.63	0.09	0.92	0.05
江原道	14.7	13.1	118.1	85.6	4.41	0.02	1.83	0.07
濟州道	6.5	4.2	137.7	30.4	△2.71	—	0.80	0.25

資料：南朝鮮人口動態統計(1946年 4月～12月), 保健厚生部, 1947. 10. 1刊

同 12月 1日字「人口動態調査規則」을 새로 制定하여 申告書様式도 改編하였다. 또 그때까지의 道別分散集計를 1948年分부터는 中央集計하였다.

이때의 調査體系가 日帝時의 動態調査보다 改善된 점은 從來에 朝鮮民事令과 戶籍令에 의하여 戶籍官吏가 戶籍屆出書에 의하여 人口動態調査票를 作成提出하던 本籍地主義를 脫皮하여 事件發生地主義로 轉換하고 또 人口動態申告書가 戶籍屆出書로 兼用케 되어 法務部 戶籍關係와 保厚部 人口統計關係를 同時에 充足하는 登錄(申告)制로 하였던 것이다. 申告書는 當事者가 戶籍令에 따라 市(府)邑面長에게 登錄하되 出生, 死亡, 死産은 保健官吏나 醫師·産婆가 作成한다. 그리고 調査內容도 상당히 具體的이다.

「衛生統計調査規則」이나 「人口動態調査規則」이나 各稱은 다르지만 內容은 人口動態調査만 규정한 것이고 다만 전자는 事件發生確認에 主眼點을 두어 調査票様式도 「申告書」라 하였고, 후자는 人口動態의 槪念과 提出節次에 主眼을 두어 文案을 좀더 세련화시켰다. 조사양식은 「證明書」라 하였다.

이 衛生統計調査規則은 全文 (附則 包含) 12條로 1946年 4月 1日부터 實施한

다고 하였다. 申告書様式중 出生과 婚姻申告書만 提示하는 바 모든 様式에는 記入要領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놓았다.

이 人口動態調査規則은 本文11條와 附則2個條 總 13個條로 1948年 1月1日부터 施行하여 調査票(證明書)様式에는 記入方法을 간단히 적어놓고 있으며 切線에 의하여 接受證을 떼어주도록 하고 있다.

衛生統計調査規則에 의하여 戶籍届出義務者가 戶籍届出書로 제출한 調査票類를 集計한 1946年 4月 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의 南韓의 人口動態統計를 綜合한 것을 보면 出生率은 1.61%, 死亡率 1.19%이고 婚姻率 0.115% 離婚率은 0.009%이다.

嬰兒死亡率의 比較表(出生 100名當)

	韓　　國	獨　　逸	英　　國
1911	4.53	19.2	13.0
1920	5.15	13.7	8.0
1925	6.09	10.0	7.5
1930	5.92	8.5	6.0
1935	8.22	6.9	5.7
1940	10.69	—	—
1945	7.75	—	—

資料：1949 經濟年鑑(韓國銀行)
1955 韓國產業經濟10年史(韓國產業銀行)

그중에 生殘條件의 指標인 嬰兒死亡率(出生 1年未滿兒 死亡)은 7.75%로 100名중 8명 정도가 죽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韓日合邦以來 계속 높아지던 嬰兒死亡率이 1945～46年間에 잠시 주춤해진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다음의 표에서 보다시피 韓國人의 嬰兒死亡率은 韓日合邦 초기인 1911年의 4.53%에서 1920年 5.15%, 1930年 5.92% 및 1940年 10.69%로 계속 上昇한 반면, 이 기간중 西歐의 獨逸, 英國人의 嬰兒死亡率은 1911年의 19.2%, 13.0%에서 1935年의 6.9%, 5.9%로 계속 줄어들었었다. 이는 日帝下의 生殘與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 있다.

(3) 國民登錄人口

美軍政期間중 人口靜態統計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당시 美軍政의 施策등의 必要로 당시의 統計署에 의하여 實施한 國民登錄資料가 있는 바 이는 조사시점의 不統一, 調査對象의 限定(15歲以上). 그리고 애당초 調査票樣式도 統計目的으로 設計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統計的 效用性에 問題가 있으나 解放政局의 混亂에도 불구하고 南韓의 人的構成을 大略 가늠할 수 있는 唯一한 資料가 되고있다.

이 國民登錄은 1947年에 國民의 衣食生活必需品 確保와 配給計劃遂行 및 選擧나 國民의 身分確認·保障 등 諸般施政計劃樹立을 目的으로 人口의 分布와 移動을 觀察하기 위하여 15歲以上者에게 國民登錄票를 作成하게 하였다. 調査의 範圍는 南朝鮮全域에 居住하는 韓國人과 軍人·軍屬을 제외한 全外國人으로 하고 登錄期間은 1947年중 각 道知事가 決定하여 施行하게 하였는 바, 실제로 2月(京畿), 3月(서울)에서 10月(濟州), 11月(忠南)에 걸치는 10個月間이었다.

登錄의 方法은 15歲以上의 男女가 一定한 書式(第1號書式 : 別添)을 각기 2통씩 작성하여 하나는 中央登錄本部(統計署)에 제출하고 또 한통은 市邑面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그 조사결과의 당초 잠정집계자료는 全國의 登錄者數가 17,800,187(男 9,279,427, 女 8,520,760)명으로 발표되었었다. 그뒤 政府樹立 以後에 발표한 槪略數는 그보다 316,100명 많은 18,116,287명이다.

여기서 당초의 잠정집계 資料(총등록인구 17,800,187명)에 의하면 15歲以上의 人口가 10,800,888명으로 집계되었는 바 그중 不就學者가 8,331,684명(77.1%)이나 되었고, 專門學校가 62,426명으로 0.6%, 中學校는 474,297명으로서 4.4% 水準으로 나타났다.

職業別로는 農業·水產業이 4,995,051명(46.2%), 家政婦 2,517,068명(23.3%) 및 無職과 不詳이 971,483명(9.0%)이나 되었고 이른바 노동자계급에 해당하는 人員은 鑛工業·土木에 日傭者를 합쳐도 677,659명(6.3%;전체인구의 3.8%) 밖에 안된다.

이 國民登錄調査는 본래 調査에 관한 諸般計劃을 美軍이 樹立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비록 統計署가 登錄本部로 활동하였다고 해도) 조사체계의 粗雜함은 물론 당시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南韓人口概數

檀紀 4280年(1947)

市道別	總數	男	女	調査施行期日
서울市	1,178,951	612,559	566,392	3 月
※京畿道	2,529,734	1,285,643	1,244,091	2 月
忠淸北道	1,051,313	550,136	501,177	5 月
忠淸南道	1,838,146	969,212	868,934	11 月
全羅北道	1,851,712	970,755	800,957	8 月
※全羅南道	2,172,907	1,095,193	1,077,714	9 月
※慶尙北道	3,245,116	1,651,649	1,593,467	5 月
※慶尙南道	3,006,062	1,520,133	1,485,929	5 月
江原道	1,008,901	530,983	477,918	3 月
濟州道	233,445	112,703	120,742	10 月
總計	18,116,287	9,298,966	8,817,321	

註：※表가 表示된 地域은 集計未完了로 送致目錄에 의한 概數임.

또 전술한 바와 같이 調査時點도 一定치 못한데다 調査에 指導訓練같은 것도 없이 記入方式에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人口靜態의 본래 목적에는 미흡한 것이다. 더욱이 調査나 登錄業務에 필연적으로 지방의 협조가 따르게 됨에도 補助金이 전연 計上·令達되지 아니하여 末端調査機關의 不誠實性은 물론 一部에서는 登錄과 調査業務를 拒否 또는 방해까지 하였다.

登錄票書式 第1號(別添)에서 보다시피 兄弟등 傍系家族이 있을 경우에도 같은 戶口의 登錄對象에 해당시켜 家族의 構成과 家口數를 알 수 없고 子女의 記載가 重複되거나 누락된 事例가 많았다. 또 年令의 標準이 正確치 못하고 住宅關係의 파악은 거의 不可能한 실정이었다.

본래는 이 登錄事業을 지속시켜 人口의 移動狀況을 계속 조사하기로 하고 出發하였으나 豫算등 문제로 1차조사만 하고 중단하였다. 1次調査資料만은 統計署에서 集計하였다.

學齡別 人口分布

(단위 : 명, %)

	總　數	男　子	女　子	備　考
計	17,800,187 (100.00)	9,279,427 (52.13)	8,520,760 (47.87)	
0～6	3,021,627 (16.98)	1,604,694 (9.02)	1,416,933 (7.96)	<未就學分>
7～12	2,814,826 (15.81)	1,535,656 (8.63)	1,279,170 (7.19)	<國民學校年齡>
13～14	1,162,846 (6.53)	645,719 (3.63)	517,127 (2.90)	
(13～18)	(2,536,827) (14.25)	(1,372,039) (7.71)	(1,164,788) (6.54)	<中·高校年齡>
15～19	1,722,650 (9.68)	901,148 (5.06)	821,502 (4.62)	15歲以上人口 (10,800,888)
20以上	9,078,238 (51.00)	4,592,210 (25.80)	4,486,028 (25.20)	

註 : 4280(1947) 2～11月間 國民登錄人口
資料 :「檀紀 4280年 國民登錄結果表」(公報處 統計局) 및 統計月報(內務部), 1955, 3月 創刊號

教育程度別 人口(15歲以上)

(단위 : 명, %)

	總　數	男　子	女　子
計	10,800,888 (100.00)	5,493,358 (50.86)	5,307,530 (49.14)
不 就 學	8,331,684 (77.14)	3,718,452 (34.43)	4,613,232 (42.71)
小　學	1,932,481 (17.89)	1,348,686 (12.49)	583,795 (5.41)
中　學	474,297 (4.39)	371,454 (3.44)	102,843 (0.95)
專　門	62,426 (0.58)	54,766 (0.51)	7,660 (0.07)
都 市 部	1,788,061 (16.55)	918,470 (8.49)	869,591 (8.05)
郡　部	9,012,827 (83.45)	4,574,888 (42.36)	4,437,939 (41.09)

註 : 4280(1947) 2～11月間 國民登錄人口
資料 :「檀紀 4280年 國民登錄結果表」(公報處 統計局) 및 統計月報(內務部) 1955年 3月 創刊號

15歲以上 職業別人口

	人　數	%		人　數	%
農　業 (그 중 남 자)	4,931,585 (3,329,592)	45.7 (60.6)	奉　仕 (개 인 서 비 스)	78,732	0.7
水 產 業 (그 중 남 자)	63,466 (51,674)	0.6 (0.9)	日　傭 (小 史, 使 喚 등)	434,671	4.0
鑛　農	9,653	0.09	家 事 使 用 人	15,259	0.1
工　業	195,303	1.8	家　庭　婦	2,517,068	23.3
土　木	38,032	0.4	學 生 · 兒 童	194,207	1.8
商　業	251,194	2.3	收 入 에 의 한 者	3,329	0.03
交 通 · 通 信	76,781	0.7	在　監　者	12,977	0.12
官　吏	149,477	1.4	無　職	79,233	7.4
事　務　員	92,457	0.9	不　詳	892,250	8.3
專 門 的 職 業	46,274	0.4	總　數	10,800,888 (남자5,493,358)	100.0

註 : 農業, 水產業의 남자는 남자총수에 대한 구성비(%)임.
資料 : 檀紀 4280年 國民登錄結果表(同上)

그 뒤에는 15歲에 도달하거나 새로이 南韓에 移住한 者를 포함한 追加登錄을 계속하지 않도록 군정장관 명의의 통첩으로 끝맺었다.

나. 金融·財政

(1) 金融制度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金融은 政治的, 經濟的 여건 變化로 말미암아 組織과 機能이 마비되고 金融市場이 위축되는 等 金融環境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混亂期에 無盡 및 信託會社가 普通銀行으로 승격되고, 그들 은행점포의 整理 및 外換, 貿易業務를 擔當한 朝鮮換金銀行의 設立等 部分的인 金融制度의 개편이 단행되었다. 무진, 信託會社 및 貯蓄銀行의 一般銀行業務 取扱으로 인하여 은행 점포가 경제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되자 1947년 7월 자체 점포의 약 25%에 달하는 107개 점포를 閉鎖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개편이 이루어진 후인 1947年말 現在의 金融機關 體系를 보면 조선은행이 中央銀行으로서의 機能을 일

부 수행하면서 일반은행업무도 兼營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政策金融機關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은행으로는 조선상업은행, 조흥은행, 조선상호은행, 조선신탁은행 및 조선저축은행으로 5個 銀行이 있었다.

한편 미군정청 직할기관으로 外國換業務를 전담하던 조선환금은행이 政府樹立以後 1950年에 韓國銀行에 吸收되었다. 其他 金融機關으로 保險을 보면 解放前까지만 해도 日本界 保險會社가 大部分을 차지하였다. 解放以後 日本界 보험회사가 철수하면서 미군정하에서는 1946년 대한생명보험회사가 업무를 개시한 이래 한인계의 3개 생명보험회사가 設立되어 營業活動을 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金融制度는 해방전과 比較하여 質的인 變化는 두드러졌지만 兩的인 面에서 큰 變化는 볼 수 없었다. 따라서 金融關聯統計의 內容도 큰 진전없이 다만 해방 이전의 統計體制를 그대로 답습하여 왔으며 당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약간 보완하는 程度에 그쳤다.

이 당시 統計資料로 새로 보완표시된 것을 보면 朝鮮銀行券發行經路, 銀行別 業態分析, 預金貸出都市 集中率, 業種別 融資承認額 및 預金通貨流通速度등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새로 보완된 5가지 種類의 內容中 朝鮮銀行卷 發行經路表는 조선은행권의 발행요인과 회수요인별로 나누어 月別貨幣의 발행 및 회수경로를 파악한 통계로서 오늘날 本源通貨供給經路와 비교될 수 있다.

조선은행권은 發行要因으로는 國家財政(政府貸出金增加, 國庫預金減少)等 貸付金增加와 預金減少, 현금과 地金은 매입예치금감소와 계절자금 등이 있고, 回收要因으로는 국가재정(국고예금) 貸付金減少, 預金增加, 現金減少, 지금은매출, 예치금증가, 계절자금 등이 있다.

각 銀行別 業態分析表는 銀行의 經營狀態 評價 資料로 利用되는데 매 반기별로 은행별 要約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를 수록하고 있으며 外部資金對 수입자금비율, 총수익대 순이익비율, 자금수익율, 예대마진등 銀行收益의 關聯指標외에도 1구좌당 예금액 및 예금평균회전율, 1구좌당 할인대부액 및 할인대부회전율등 예대관련 금융통계도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오늘과 銀行業績分析資料와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預金貸出都市集中率表는 서울, 釜山, 大邱(1945年 12月 以前은 平壤) 等 3大都

市의 預金 및 貸出金이 國內 全銀行의 總預金 및 總貸出金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나타낸 것으로서 1945年 12月부터는 남한의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統計를 作成하였다. 業種別 融資承認額表는 工業, 鑛業, 農業, 專賣品, 운수출판교육, 토목, 의약품, 무역, 金融機關등 차주의 업종별로 융자승인건수와 金額을 調査한 것으로 財務部 이재국에서 統計를 作成하였다.

한편 預金通貨流通速度表는 서울, 부산, 대구(1945년 12월 이전에는 평양)등 3대도시와 全國의 預金通貨流通速度를 나타낸 것으로 流通速度算出은 어음交換額을 當座預金殘額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2) 財政 및 租稅制度

해방후 미군정하에서의 재정제도는 일본정부의 전쟁수행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의 사후수습에 주력함으로서 財政制度의 큰 변동은 없었다. 또한 稅制面에서도 약간의 稅率調整이나 稅目의 통폐합 등은 있었으나 대체로 해방전 일정시대의 조세체계 즉 직접세, 간접세 및 유통세로 대분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재정통계면에서도 朝鮮總督府의 해체 등으로 인한 朝鮮總督府特別會計 歲入·歲出統計의 작성중단등 당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할 경우 재정통계의 체계나 골격은 대체로 해방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다. 物價

(1) 都賣物價指數

해방전 1차례 都賣物價 編制方式이 개편되어 온 이래 해방이후 1949年 4月에 두번째로 都賣物價指數 編制方式이 바뀌었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品目數 : 45個品目

② 分　類 : 調査對象品目을 穀物, 肉卵魚類, 織物原料, 織物, 建築材料, 肥料, 燃料, 雜品의 8個로 分類

③ 산　식 : 가중총화법

④ 算出期間 : 1947年 1月부터 1961年 4月까지(但, 1955年 1月 以後의 指數는 공식계열로 利用되지 않았음)

⑤ 調査週期 : 未詳

동 지수는 비록 1949年 4月에 완성 發表되었지만 解放後 처음으로 改編되었고 基準년도를 1947년으로 하였다는 點에서 美軍政下의 物價統計改編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品目別 分類內容

分　類	品目數	加重値	分　類	品目數	加重値
곡　물	7	39	비　료	3	2
肉卵魚類	3	6	연　료	4	7
직물원료	3	10	잡　품	11	25
건축재료	8	3	직　물	6	8
			총 지 수	45	100

대상품목은 價格資料가 수집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수집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또한 가중치 결정자료가 부여된 범위내라는 2가지 제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조사대상품목으로 결정하였다.

品目의 分類는 從來의 都賣物價指數가 穀物, 食料品, 織物原料, 建築資材, 金屬類, 燃料, 肥料, 工業材料, 雜品의 10個 種目으로써 商品의 用途를 주로하고 産業別分布를 다소 가미한 分類方法을 使用하여 왔으나 改編指數에 있어서도 이와 同一한 方法으로 分類하되 가중치 정도나 去來比重 等을 勘案하여 약간의 調整을 하였다.

가격자료로서 自由市場價格資料는 서울시내의 信用이 確實하며 調査事業에 認識이 깊은 中間都賣商을 對象으로 매주 토요일 혹은 수시로 訪問調査하여 月平均 價格을 산출하였다.

한편 가격의 標準去來量은 國內 生産量에서 生産者가 消費量으로 제하고 수입량을 더하여 산출한 推算 去來量을 使用하였다. 代表品目의 가중치 合計가 반드시 類別의 相對的 重要度에 比例치 않는 點을 고려하여 類別加重値로 部分指數를 綜

合하여 總指數를 算出하는 方式을 택하고 있다.

物價指數 算出方式은 一般의 이해 및 지수산출업무의 簡素化立場에서 加重總和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基準은 가중치 基準年度인 1947年 平均을 취하고 있다.

(2) 小賣物價指數

小賣物價는 1945年 8月下旬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등 3개 도시에서 실시한 것을 시초로 대구, 목포, 군산등 3개도시가 1946년 1월부터 인천, 광주는 1947년 1월부터, 여수는 1947년 8월부터 각각 조사를 착수하였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는 解放直後와의 比較便宜上 1945年 8月 下旬을 基準으로 하여 單純算術平均法에 의한 지수를 暫定的으로 算出한 바 있었다.

1948년 부터는 單純幾何平均法으로 개선하였고 指數와 基準을 1936년과 1945년 8月下旬으로 하여 1945年 8月까지의 過去 시계열을 정비하였다. 기타도시는 1946年 1月을 基準으로 單純算術平均法에 의한 지수를 發表하였다.

① 1945年 8月下旬 基準指數

解放前의 小賣物價는 京城商工會議所에서 調査하였으며 1936年부터 解放前까지 朝鮮銀行에서는 이를 다만 參考로만 活用하여 왔다. 1945年 8月下旬부터 朝鮮銀行에서는 小賣物價指數 編制調査에 착수하여 朝鮮銀行 調査月報 第1號(1947年 5月號)에 서울小賣物價指數가 算出發表된 것이 시초이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기준 : 1945年 8月下旬基準

○ 분류 : 調査對象品目들을 食料品 및 醫療品等 6個로 分類

1945년 8월 기준지수 분류

分　類	品 目 別	分　類	品 目 別
總 指 數	52개	연　료	5개
곡　물	7개	직　물	11개
식 료 품	20개	잡　품	7개
의 료 품	11개		

○ 산식 : 단순산술평균법

○ 산출기간 : 1945년 8월～1948년 7월

1948년부터 前述한 分類에 의하여 單純幾何平均法을 使用하여 1936年과 1945年 8月下旬의 2가지 基準으로 1945年 8月까지 時系列을 소급 整備하였다.

② 1947年 基準指數

1949年 4月에 完成發表하게된 것으로 從前까지는 單純平均法에 의하여 算出한데 비하여 加重値를 策定하여 算出된 점이 개선된 編制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品目數는 가중치자료의 미비로 줄어들었으나 個別商品의 重要度를 참작한 점과 全國指數를 종합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改編內容은 아래와 같다.

○ 基準 : 1947年 年平均基準

○ 分類 : 調査對象品目을 식료품, 의료품, 연료 및 잡품 4개類로 분류

1947년 基準指數 品目別 分類內容

分　類	品目數	加重値	分　類	品目數	加重値
음식품	21	62.7	연　료	5	18.1
의료품	14	12.9	잡　품	3	6.3
			總指數	43	100.0

○ 산식 : 加重總和法

○ 산출기간 : 1947년부터 1957년까지

이외에 主要都市의 小賣物價의 地域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地差指數를 1947년부터 산출발표하였는데 이는 서울을 기준(100)으로 하여 지역별 물가수준을 算出한 지수였다.

라. 國民所得 推計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國民所得推計는 南韓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처, 재무부 및 조선은행 3個 機關이 분담추계하여 왔다. 즉 企劃處에서는 食糧生産統計를 이용하여 生産國民所得을 산출하였고 財務部 司稅局에서는 稅務資料를 理容하여 分

配國民所得을 추계하였으며 朝鮮銀行 調査部에서는 1949年에 消費와 投資面에서 본 支出國民所得을 各各 推計하였다.

國民所得推計(南韓)

(單位 : 백만圓)

	生産(企劃處)	分配(財務部)	支出(朝鮮銀行)
1947	—	91,251	455,423
1948	670,683	129,000	692,428

이는 國民所得이 生産, 分配, 支出過程을 거쳐 循環되는 原理에 立脚하여 國民所得推計를 시도하였다는 點에서 推計方法上 큰 進展이 이루어졌다고 評價할만 하나 각 機關마다 산출한 推計金額 不一致로 말미암아 美軍政하에서 우리나라의 國民所得推計는 推計技法, 基礎資料 未備 등 諸般與件上의 제약으로 事實上 限界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당시 朝鮮銀行에서 算出한 1947, 1948年度 支出國民所得 推計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南韓의 國民所得構成

南韓의 國民所得 構成

(單位 : 백만圓)

	1947	1948
(Ⅰ) 民間消費支出	446,214	657,387
(Ⅱ) 政府消費支出	15,435	30,490
(Ⅲ) 國 內 投 資	-5,249	6,077
(Ⅳ) 海 外 投 資	- 977	-1,256
(Ⅴ) 國民消費支出 및 投資	455,423	692,428
(Ⅵ) 國 民 所 得	455,423	692,428

② 算出方法

㉮ 民間消費支出

民間消費支出의 算出方法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947年＞

(Ⅰ) 農村每戶(6名 1戶 構成) 當年消費支出 ……129,300圓

(Ⅱ) 農村(水產地域 包含) 戶數 ……2,294千戶

(Ⅲ) 農村年間總消費支出((Ⅰ)×(Ⅱ))……296,614百萬圓

(Ⅳ) 都市每戶(6名 1戶 構成)當年消費支出 ……155,160圓

(Ⅴ) 都市戶數 ……1,255千戶

(Ⅵ) 都市年總消費支出((Ⅳ)×(Ⅴ))……194,725百萬圓

(Ⅶ) 民間消費支出總額((Ⅲ)+(Ⅳ))……491,339百萬圓

상기 (Ⅶ)중에는 民間에서 直接消費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에 強制徵收되는 直接, 間接稅額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資產蠶食額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直間接稅 및 資產蠶食額을 공제하여야만 國民所得에서 消費支出한 액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論理에 의하여 民間에서 政府에 納付할 대금으로서 아직 미납중인 예컨데 "借款 및 援助物資賣上金未收額" 등은 일종의 資產蠶食額으로 이것은 所得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리하여 상기중에 포함된 (Ⅶ)중에 포함된 이러한 제금액을 공제하여 年純消費支出額(즉 國民所得에서의 消費支出)을 유도한다.

여기서 공제항목으로서

(Ⅷ) 자산잠식(民間消費支出總額의 6.3%)……30,954百萬圓

(Ⅸ) 借款 및 援助物資賣上金 未收額 ……10,421百萬圓

(Ⅹ) 直接稅, 間接稅 ……3,750百萬圓

(Ⅺ) 民間消費支出額 (Ⅶ)－(Ⅷ)－(Ⅸ)－(Ⅹ) ……446,214百萬圓

＜1948年度＞

戶數構成은 1947년과 동일하다고 간주하며 民間消費支出額은 1947년 대비 53%의 물가상승만큼 증가하였다고 가정하고 기타에 대하여는 1948년과 같은 산출방법에 의하여 1948년 民間消費支出額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Ⅰ) 農村 및 都市總消費支出(1947년 대비 53% 증가)…751,741百萬圓

(Ⅱ) 資產蠶食(잠식률은 전년과 동일한 6.3%) ……47,360百萬圓

(Ⅲ) 直接稅, 間接稅 ……10,170百萬圓

(Ⅳ) 借款 및 援助資金賣上金 未收額 ……36,831百萬圓

(Ⅴ) 民間消費支出額 (Ⅰ)－(Ⅱ)－(Ⅲ)－(Ⅳ) ……657,387百萬圓

㉰ 政府消費支出(1947～1948)

정부는 1947, 1948年 양해에 27,378백만圓, 49,410百萬圓을 그 경비로 소비지출하였는데 그 상기 政府支出額중에서 國民所得에서의 소비지출이 아닌 부분 즉 한은대상금 및 차관과 미국원조금을 공제하여 政府消費支出純額을 산출한다.

政府消費支出純額 構成

(單位 : 百萬圓)

	1947	1948
(Ⅰ) 財產 및 官業收入	11,685	20,319
(Ⅱ) 直接稅 및 間接稅	3,750	10,171
(Ⅲ) 韓銀 貸上金	11,455	12,362
(Ⅳ) 美國借款 및 援助物資賣上金	488	6,557
(Ⅴ) 合　　計	27,378	49,410
(Ⅵ) 政府消費支出純額	15,435	30,490

㉱ 國內投資

國內投資 算出根據

(單位 : 百萬圓)

	1947	1948
① 當座預金包含 銀行預金 (總預金－政府預金－同業者預金－貸付增加)	-6,715	3,868
② 金錢食卓	-17	3
③ 郵便貯金	33	32
④ 生命保險	-0.5	9
⑤ 國民生命保險	56	56
⑥ 郵便年金	1	1
⑦ 證券投資	1,393	2,113
⑧　計	-5,249	6,077

1947年 및 1948年의 國內投資를 보면 年間貯蓄額을 新投資로 보아 저축을 통하여 新投資額을 算出하고 있다.

政府消費支出중에도 新投資로 使用되는 部分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과거에 잠식된 投資인만큼 新投資라고 보지 않는 것이 上例이다. 본투자액 算出資料는 金融機關의 資料인만큼 民間에서 直接 投資된 부분은 산정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알 도리도 없다. 投資額 算出根據는 위와 같다.

여 백

第3章　政府樹立과 統計發展期의 轉機

여 백

第3章 政府樹立과 統計發展의 轉機

第1節 建國初期의 統計概況

1. 政府樹立과 初期統計機構의 構成

右翼民族陣營과 美軍政當局은 蘇聯勢力의 南下와 北韓側 소비에트體制에 同調하는 左翼의 分裂策動때문에 獨立政府構成이 늦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美蘇共委가 決裂된 상태에서 1947年 8月, 美國에서는 韓國獨立을 위한 4大 國會議를 提案했다가 蘇聯에 의해 거부되었다. 美國은 결국 同年 9月 17日에 이 問題를 第2次 國際聯合總會에 上程하였고 國際聯合은 同年 11月 14日의 決定에서 國際聯合監視下의 總選에 의한 政府樹立과 이의 擔當機構로서 「國際聯合臨時韓國委員團」을 構成키로 하고 同委員團을 1948年 1月 8日에 서울에 派遣하였다.

그러나 國際聯合臨時韓國委員團의 活動은 北韓駐屯蘇聯軍司令官의 拒否로 北韓地域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國際聯合에서는 「可能한 地域內」에서 選擧를 實施할 수 있도록 決議하였고 그 결과 부득이 1948年 5月 10日에 南韓에서나마 總選擧實施로 制憲國會가 成立되었다.

國會는 新生國의 名稱을 大韓民國으로 하고 國體는 民主制, 政體는 共和制로 하는 原則을 정하여 憲法制定審議에 들어가 7月 17日에 制定·公布하기에 이르렀다.

建國初期政府組織은 大統領直屬下의 1院(審計院), 2委員會(考試委員會, 監察委員會)와 國務院(內閣)을 구성하는 11部 및 國際總理所屬下의 4處가 그 大綱이었다.

11個部는 內務, 外務, 國防, 財務, 法務, 文敎, 農林, 商工, 社會, 交通 및 遞信部등이고 4個處는 總務處, 公報處, 法制處 및 企劃處이다.

한편 당시 政府組織法 등에서는 統計業務를 公報處의 所管事項으로 하였으나 실

제의 實行에는 同年 11月 4日字「公報處職制」(大統領令 第15號)가 公布됨으로써 公報處 統計局으로서의 職制를 갖추었다. 初代公報處長은 金東成(大韓民國30年〈1948〉 8月 4日字) 初代統計局長은 金鳳圭(大韓民國30年 〈1948〉 8.15)였다. 당시 統計局에는 統計官室과 庶務, 企劃, 國勢調査 및 人口調査의 4個課를 두고 직원 1,000명정도 였다. 이때 美軍政時 保健厚生部로 넘어갔던 人口動態調査를 다시금 統計局으로 移管시켰다.

統計局組織은 1950年 3月 31字 직제개정으로 同 4月 1日에 종전의 統計官室과 庶務課를 폐지함으로써 3課(企劃, 國稅調査, 人口調査)로 되고 직원수도 1,000명에서 600명으로 축소되었다(이때 統計局長으로 朴玄煜 任命).

農業統計도 美軍政時에는 1947年 6月에 法令 143號로 農業統計委員會와 함께 農林部안에 調査統計課를 두고 各級 地方廳에도 農業統計擔當을 두었으나 정부수립 직후에는 統計業務가 公報處(統計局) 所管事項이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한때 解體危機에 있었으나 政府 各部處의 職制가 제정되던 1948年 11月 4日에 農林部 職制 속에 長官秘書室에 調査統計課를 두게 되었다. 1950年 4月 직제개편시에는 調査統計課를 次官室直屬으로 하였으나 實際의 統計活動은 없었다.

그밖의 다른 院·部·處·廳 등 각 官署에도 總務課나 庶務課 또는 文書課內에 統計擔當을 두고 所管業務와 關聯된 統計事項(行政統計)을 管掌하도록 하였었다.

한편 1950年 5月에는「銀行法」과「韓國銀行法」이 制定되고 同年 6月 12日에 朝鮮銀行이 韓國銀行으로 再發足하였다. 중앙은행으로서의 韓國銀行의 設立은 경제적으로는 國民經濟의 安定과 發展에 必要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通貨信用政策의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調査와 統計業務를 전담하는 調査部를 舊朝鮮銀行 調査部의 진용과 지료를 인수하면서 설치하였다.

이 調査部가 새롭게 기능을 갖추고 각종 經濟統計調査業務가 稼動進入段階에 들어가고 있었다.

2. 建國初期의 統計活動

1948年 11月 4日字 公報處職制에 의한 統計局 機能이 確定되자 곧 12月 13日字 大統領令 第39號로 「第1回 總人口調査施行令」을 公布한 것이 統計施策으로 처음 出現한 셈이며 이는 國政의 基本인 國勢의 把握이 시급함을 인식한 당시의 行政命令이지만 建國初期의 法令과 行政力을 整備하여가는 중에 統計分野에서 表出된 최초의 政令이다.

본래 總人口調査는 西紀로 5年 또는 10年에 해당하는 해에 週期로 실시하는 것이 國際慣例이나 建國初期의 時急함과 最近의 總人口 資料로서는 日帝에 의하여 1944年 5月 1日 현재로 資源調査法에 의하여 실시한 臨時人口調査(南北韓 全國) 뿐이므로 豫定年度보다 1년을 앞당겨 1949年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綜合經濟施策과 함께 추진하였다.

즉 1949年 1月 8日에 政府는 서둘러 韓國에서는 최초로 「經濟復興 5個年計劃」을 수립하고 이어 同年 1月 27日에 法律 第18號로 人口調査法을 制定公布함으로써 人口調査가 經濟施策의 基本임을 나타내며 그와 관련된 人口調査의 法律的 基盤을 정비한 것이다. 이 法에서 總人口調査는 1950年을 基準으로 每10年마다 실시한다는 것과 다만 第1回 總人口調査는 1949年에 실시함을 明文化하였다(同法 第2條). 곧이어 1949年 2月 15日字 總理令 第6號로 「第1回 總人口調査 地方事務處理規則」을 公布하여 調査票(「總人口調査申告書」)와 要計表 및 綜合表 등 양식을 마련하여 同年 5月 1日 零時를 기해서 總人口調査를 실시하였다.

政府는 또 同年 9月 1日字 內務部令 第3號로 「戶口調査規程」을 마련하였는 바 이는 朝鮮과 日帝 總督府時代를 통하여 지속된 年度別 戶口調査慣行을 復舊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의한 調査는 6.25동란 때문에 지연되었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그대신 1952年에 人口調査法에 근거한 年末常住人口調査를 着手하였으나 그나마 1953, 54年에는 豫算制約으로 中斷하였다가 1955年부터 再開하였다.

人口動態調査는 前述한 人口調査法(法律 第18號) 과 새로이 1949年 12月 19日에 大統領令 第252號로 公布한 「人口動態調査令」을 근거로 同年 12月 21日字 總理令 第19號인 「人口動態調査令施行規則」을 마련하여 1948年分을 調査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6.25動亂으로 1949年 調査는 資料를 모두 逸失하였고 그나마 1950年度分부터는 中斷되었다가 1952年度分부터 續開하였다. 다만 1950, 51年度分과 그 以後의 時系列은 標本抽出調査로 推計하기는 하였다.

上記調査는 모두 公報處 統計局의 所管業務로 실시한 것이다. 이들 人口統計以外에도 統計局이 公報處로 編入될 當時에 推進하던 業務를 보면 恒久事業으로서 上述한 總人口調査 및 人口動態調査와 함께 産業施設 및 勤勞實態調査, 資源 및 生産量調査 그리고 政府機關形態調査 등을 들 수 있고 한편 臨時事業으로 住宅調査, 家計調査와 기타의 特別調査를 實施하면서 統計弘報를 위한 月報發行, 統計講習會, 統計展覽會 같은 行事를 計劃하고 있었다.

恒久事業中에서 産業施設 및 勤勞實態調査(鑛工業 및 交通事業場의 生産設備와 勤勞狀況 調査), 資源·生産量調査(農林水産, 電力, 地下資源과 그 生産) 및 政府機關形態調査(專賣, 鐵道, 遞信 및 輸出入 등) 등은 과거에 「報告例」에 의하여 統計資料를 蒐集하던 것이다. 그러다가 政府樹立以後에도 「報告例制度」를 徹底化하려고 試圖해도 잘 안되고 있었음을 당시의 統計局 當務者들이 呼訴하고 있었다. 그 대신 統計局 職員들이 각 官署를 찾아다니며 자료수집, 製表, 檢算, 分析하여 이들을 統計月報에 게재하곤 하였다.

臨時事業의 경우에는 1950年부터 家計調査(서울地域)를 韓國銀行과의 協同으로 1950年 1月에 調査만 한 상태(統計月報 3月號에 發表)로 6.25動亂으로 중단되고 그밖의 弘報事業 등도 그 와중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公報處 統計局에서 發刊한 統計月報는 1949年 1月에 創刊號를 내었는데 이때는 創刊號답게 統計의 重要性에 관한 金東成 公報處長의 創刊辭와 함께 中央統計機關으로서의 統計局을 소개하고(統計局長 金鳳圭), 당장의 事業으로서 그해에 있을 第1回 總人口調査에 관한 關係法令解說과 人口統計問題에 관한 글(人口調査課長 韓凡錫 : 醫學博士)이 실려 있다. 또 過政때 실시하다 넘어온 國民登錄 調査資料를 揭載하고 있다. 1949年 1月에 創刊된 以來 당시만 해도 每月 刊行치 못하고 第4號는 6月, 第5號는 8月에 刊行하였다.

모든 統計情報의 集約이라 할 수 있는 「韓國統計年鑑」을 光復後 南朝鮮過渡政府 庶務處 調査研究署 統計課에서 1948年 3月 31日字로 「南朝鮮統計年鑑」을 刊

行한 바(計數는 1943年度分 中心)있으나 政府樹立 以來에는 公報處 統計局에서 1955年에야 創刊號(1952年 計數)를 發刊한 以來, 1956年에 第2號(1953年)부터는 內務部 統計局에서 發刊하였다.

過渡政府에서 넘어 온 業務로는 1948年 3月에 「南朝鮮產業勞動力 及 賃金調査」(1946. 11月 現在)를 庶務處 統計署(Census Division, Office of Administration) 名義의 報告書로 出刊하였고 또 1948年 8月에는 「第2回 南朝鮮勞動統計調査 報告書」(1948. 1. 31 現在)를 過渡政府의 勞動部 統計室에서 刊行하였다.

農業統計는 農林部職制에 의하여 長官秘書室 調査統計課에서 耕地面積, 農家戶口數등 農業基本統計를 調査하였으며 그밖에 食糧作物生產量은 農政課, 家畜統計는 畜政課에서 조사하였다.

韓國銀行은 韓國銀行法에 규정된 調査部의 기능으로서, 金融通貨委員會의 지시를 받아 通貨와 銀行業務, 財政, 物價, 賃金, 生產, 國際收支, 其他에 관한 統計資料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를 하고(韓國銀行法 第36條)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年次報告書, 分期報告書의 작성과 統計月報를 비롯한 각종 刊行物의 發刊 및 國家의 統計業務改善과 경제, 통화, 銀行業務에 관한 弘報 業務를 담당한다. 이들 業務를 위하여 韓國銀行法에는 調査部에 대하여 그 職務의 遂行에 필요한 資料와 情報를 政府와 自然人 또는 法人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主要 調査活動과 統計刊行物을 보면 朝鮮銀行시절의 調査部 以來 金融, 物價, 賃金관련 統計를 중점 作成하여 왔는데 金融關聯統計는 크게 貨幣發行, 預金, 貸出金, 金利, 어음交換 및 金融機關營業關聯統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物價關聯統計로는 1910년 舊韓國銀行에서 편제하기 시작하여 1939년과 1945년 두차례에 걸쳐 개편된 「京城都賣物價指數」를 1948年 3月과 1949年 3月에 지수산출방식을 개선하여 서울시 都賣物價調査表 및 서울시 都賣物價商品類別指數를 작성하였다.

이 당시 物價調査對象處로는 서울시내 각 市場 및 商街의 주요 都賣商店을 選定하여 1개 상품에 대하여 10개 이상의 商店을 조사하여 平均價格을 산출하였다.

한편 每週 木曜日에 그 주간의 시세를 調査하여 月平均價格을 산출하였다. 賃金關聯統計로는 서울시 俸給指數, 서울시 勞動賃金工種別指數, 서울시 勞動賃金

등이 있다.

서울시 俸給指數는 公務員, 敎員, 會社員, 銀行員 등으로 나누어 남자는 專門大學卒業정도의 勤務經歷 3년, 扶養家族 3인 이상을 둔 職場人을, 여자는 高等學校卒業정도의 勤務經歷 1년 이상인 職場人을 對象으로 俸給을 조사하여 俸給指數를 산출하였다.

서울시 노동임금공종별지수는 주로 서울시내 및 근교에 있는 100名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큰 공장을 표준으로 하여 각 工種別代表工場이라고 인정되는 공장 5개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賃金은 18세 이상의 보통기술자 실제수령받는 월임금을 실제근무일수로 나누어 1日賃金을 산출하였다.

한편 임금산출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외의 食費, 作業成績에 의한 支拂金, 特勤料, 時間外 勤務料 등은 임금에 가산하고 現物支給은 그 현물을 그 달의 도매가격으로 평가하여 화폐임금에 合算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인 現物支給이나 위로금은 제외하였다.

조선은행에서 발간하던 통계간행물로는 經濟年鑑, 朝鮮經濟年報, 調査月報, 物價總覽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以上의 統計調査活動 以外에도 財務部에서 發刊한 稅務年報(1950)와 貿易年報(1950, 51年)가 있고 韓國貿易協會에서도 1951年版 貿易年鑑을 發刊하였다. 또 商工部는 主要鑛山物賦存, 生產統計와 工場分布資料를 1950年에 發表하고 商工會議所는 主要商品價格調査資料(1949)를 作成하였다.

建國初期의 韓國銀行 定期刊行物

刊行物名	最初發刊年度	週期	收錄內容
經濟年鑑	1949	年刊	土地 및 人口, 產業, 貿易, 金融, 財政, 企業, 物價 및 勞動, 運輸, 遞信, 社會文化, 外國統計
朝鮮經濟年報	1948	年刊	人口, 土地, 產業, 貿易, 金融, 財政, 物價, 勞動, 動力, 運輸, 燃料, 企業, 外國統計
調査月報	1947	月刊	金融, 金利, 物價, 勞賃, 貿易, 財政, 海外經濟, 輸出入, 地域別 新設會社 業種別 統計
物價總覽	1949	不定期	서울都賣物價指數, 서울重要商品都賣價格, 서울重要商品都賣價格指數, 全國消費物價指數, 地域別生必品 小賣價格

第2節　轉換期의 統計需要와 統計基盤

1. 動亂勃發과 社會再編成

1950年代에서 1960年代 初期에 이르는 이 時期는 歷史的 進行過程의 試練期였다는데서 社會的 再編成 時期에 해당하는 轉換期的 局面으로 認識할 수 있다.

6.25動亂은 韓國社會의 모든 分野에 걸쳐 物質的, 精神的 基盤을 순식간에 파괴해 버렸을 뿐 아니라 戰亂을 통하여 造成된 虛脫感, 敵愾心 같은 對克狀況과 그 과정에서 밀려든 基督敎的 唯一神思想과 프로레타리아트 無神論的 唯一階級主義간의 對立, 그리고 美國式 民主主義와 소비에트社會主義體制에 의한 西歐式 破壞作用 등이 傳統的 人文秩序와 價値意識의 沒落을 가져왔고 싫건 좋건, 또는 歷史的 功過를 떠나 韓國社會의 變革을 強要하면서 再編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25動亂이 준 피해는 무엇보다 人物의 損失이다. 日帝의 愚民政策 때문에 高等敎育(專門以上)을 받은 層은 全國民의 0.35% 水準이고 中等敎育(中高校)을 받은 사람도 3.01%에 불과하였다(國校就學者 17.89%, 不就學은 77.14%). 그러다가 光復以後 5年만에 터진 6.25動亂은 그나마 있던 人力까지도 탕진했다. 그 결과 國民的 指導者도 保有치 못하고 또 이들을 뒷받침하고 견제하며 國民을 이끌어갈 中間管理層이 全無한 實情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政治圈이 社會勢力으로서의 自己力量을 發揮할 수도 없거니와 言論人, 敎授, 文筆人, 宗敎人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는 指導勢力임을 自處하였지만 主導할 共同認識도 마련하지 못한 채 國民을 선동하는 氣質만 키워가며 時流에 빠지기 일쑤였다.

이처럼 당시의 支配的 主導勢力(엘리트)들은 國民과 遊離되었을 뿐 아니라 支配主導勢力間의 內部統合도 이루지 못한 實情이었다. 그것이 그대로 4.19義擧와 5.16軍事革命으로 이어진 것은 이 轉換期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것이다.

2. 戰後復舊와 統計需要

1950年부터 1952年까지은 3年間 흉작이 계속되어 穀價는 폭등을 계속하였다.

動亂以後의 財政은 國防費를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격증하였으나 國土의 대부분이 전쟁터로 변해 재원의 대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1950년 세입총액의 66.4%를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1년부터 강력한 財政緊縮을 단행하는 한편 歲入增大를 위하여 戰時稅制의 정비와 國債 및 債券의 조기 등도 강력히 추진한 결과 1951년도와 1952년도에는 [illegible] 의 계속적인 방출로 통화량을 끊임없이 증가하고 인플레는 악화일로였다.

1952년 5월에 「大韓民國과 統合司令部間의 경제조정에 관한 協定」(이하 協定)을 체결하고 원조물자운용, 유엔군 대여금상환 및 정부보유달러위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한편 정부는 非常時 戰費調達을 위한 전시세제로 2차에 걸친 稅制改革을 단행하였다.

통화금융면에서는 막대한 군사비의 염출과 UN軍에 대한 한화대여등 때문에 1950年 6月 25日 현재 5,600만원이던 화폐발행액은 1955年 7月末에는 13억 4천만원으로 약 24배의 팽창을 나타내었다.

이에 정부는 1950年 8月 28日字 「朝鮮銀行券의 流通과 교환에 관한 件」으로써 1950年 9月부터 1952年 1月까지 5차례 걸쳐 북제주에서 종래의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통화교환을 하였고, 第2次로 1953年 2月 14日에는 「緊急通貨 및 金融措置」를 단행함으로써 8.15해방후 누적되어 오던 인플레와 6.25動亂을 계기로 한 通貨供給 누증에 따라 물가 등귀 및 通貨價値의 下落防止를 위하여 100圓對1圓으로 通貨單位를 切下, 명칭 변경을 하였다.

이처럼 51年 이후의 전시경제체제정비와 53年 2月의 緊急通貨措置 以後에는 부동구매력이 어느정도 흡수되고 외화 대부제의 실시로 輸入貿易도 促進되어 外米가 다량 도입됨으로써 物價上昇의 先導的 役割을 하던 곡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動亂勃發 1週年 정도가 지나자 산업시설과 流通秩序의 回復事業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清平發電所復舊와 京釜間電話開通 또는 遠洋漁船의 도입 등이

있었고 制度面에서 歸屬財産處理法(8月 24日), 韓國造幣公社法(9月 2日) 및 財政法(9月 24日) 등이 公布되었다. 이처럼 戰後復舊事業이 1954년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불과 3년만에 動亂前의 水準에까지 도달하였다.

전력과 석탄을 비롯한 鑛業部門은 1953年에 이미 動亂前 水準을 回復하였고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전력은 年平均 15.4% 增加하였으며 鑛業은 石炭과 중석을 비롯한 주요광산물의 증산으로 年平均 19.7%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방직공업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輕工業 部門에서는 국내수요의 大部分을 充足시킬 수 있는 水準에 까지 도달하였다.

戰後再建期의 전반기인 1953년 7월부터 1956년말사이는 基幹産業育成을 위하여 ICA 및 UNKRA자금과 정부보유외화에 의한 板유리, 비료, 철강 및 화약공장 등이 활발하게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외국원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鑛工業生産은 1957年 以後 1960年 3月까지도 年平均 12.3%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持續하였으나 1957~1958年을 고비로 한 원조감소로 國內生産活動은 다소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GNP성장률도 1957年의 8.8%를 정점으로 그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以後 軍事政府는 經濟企劃院을 설치하면서 綜合經濟再建 5個年計劃(1962~66) 作成을 指示하였다(1961. 7. 22). 이때부터 韓國經濟는 從前의 經濟安定政策에서 經濟再建政策으로 轉換하였고 이른바 1960年代以後의 經濟開發政策을 推進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前述한 각종 復興計劃이 提示되고 援助導入에 힘입은 民間部門의 經濟活動도 活潑하여졌다. 더욱이 1955年부터는 自由主義 經濟原則으로의 改憲과 政府機構의 改編이 잇따르고 1956年 3月부터 착수한 새로운 經濟復興5個年計劃案이 發表되었다.

이에 따라 動亂期間을 통하여 위축되었던 統計活動도 回生하기 시작하였다.

1955年初에 復興部가 新設되고 統計局이 從前의 公報處에서 內務部로 移管되면서 統計需要를 充當한 각종 行政統計, 調査統計를 充實化할 準備를 하였다. 農林部와 韓國銀行의 統計活動도 이때부터 活潑하게 되었다. 農業銀行法(1956. 2月)과 農協法(1957年 2月)이 公布되고 이들 機構는 1958年에 發足하였다.

外國援助收入總括

(단위 : 千$)

	合 計	U. S. A				CRIK		UNKRA
		GARIOA	ECA&SEC	PL480[1]	AC	SUN	SKO	
1948	179,593	179,593	—	—	—	—	—	—
1949	116,509	92,703	23,806	—	—	—	—	—
1950	58,706	—	49,330	—	—	—	9,376	—
1951	106,542	—	31,972	—	—	74,448	—	122
1952	161,327	—	3,824	—	—	10,229	145,235	1,969
1953	194,170	—	232	—	5,571	8,365	150,422	29,580
1954	153,925	—	—	—	82,437	14,049	36,142	21,297
1955	236,707	—	—	—	205,815	4,950	3,761	22,181
1956	326,705	—	—	32,955	271,049	24	307	22,370
1957	382,893	—	—	45,522	323,268	—	—	14,103
1958	321,272	—	—	47,896	265,629	—	—	7,747
1959	222,204	—	—	11,436	208,297	—	—	2,471
1960	245,393	—	—	19,913	225,236	—	—	244
1961	199,245	—	—	44,926	154,319	—	—	—
1962	232,310	—	—	67,308	165,002	—	—	—
1963	216,446	—	—	96,787	119,659	—	—	—
1964	149,331	—	—	60,985	88,346	—	—	—
1965	131,441	—	—	59,537	71,904	—	—	—
1966	103,261	—	—	37,951	65,310	—	—	—
1967	97,018	—	—	44,378	52,640	—	—	—
1968	105,856	—	—	55,927	49,929	—	—	—
1969	107,264	—	—	74,830	32,434	—	—	—
1970	82,636	—	—	61,703	20,933	—	—	—
1971	51,217	—	—	33,651	17,566	—	—	—
總 計	4,181,971	272,296	109,164	795,705	2,425,344	112,135	345,243	122,084

註 : 1) PL 480號 第1款에 의거한 導入剩餘農產物 販賣代錢의 一部는 美側이 使用하므로 이는 援助로 看做할 수 없으나 本表에서 使宜上 導入額을 揭載하였음.

資料 : GARIOA와 ECA는 駐韓美國經濟協調處使節團, SEC와 CRIK는 調達廳, UNKRA는 國聯韓國再建團, AID와 PL480 第1款은 韓國銀行 및 駐韓美國經濟協調處

引用 : 韓國經濟年報 1974 全國經濟人聯合會

3. 政治的 變革期의 統計機構

가. 政府機構의 改編

1948年에 政府組織法이 制定된 以來, 政府機構는 1949年 3月에 一次改革을 실시하였고 1955年 2月의 第2次改革이 있은 이래 1963年末까지 第16次改革까지 있었다. 그중에서 1961年 5月 軍事革命以後에 행하여진 12차례를 제외하면 自由黨政權下에서는 1960年 7月 1日의 改編까지 4차례뿐이다. 이중 1955年 2月의 第2次改革이 정부조직 改編에서는 가장 큰 變動이라 할 수 있다.

이때에 國務總理制를 폐지하고 國務委員序列에 의한 首席國務委員制를 擇하였으며 保健部와 社會部를 합쳐서 保健社會部로 改編하였다.

政府機構改編(1948～1963)

經　過	年 月 日	改　編　內　容
政府組織法公布	1948. 7.17	1院(審計院), 2委員會(考試, 監察委員會), 11部(內務, 外務, 國防, 財務, 法務, 文敎, 農林, 商工, 社會, 交通, 遞信), 4處(總務, 企劃, 公報, 法制)
第 1 次　改 正	1949. 3.25	保健部 新設, 外資購買處, 臨時王宮財產管理委(大統領直屬), 管財廳, 臨時外資管理廳 設置
第 2 次　改 正	1955. 2. 7	國務總理廢止, 復興部新設, 保健社會部(保健＋社會) ┌總務處→國務院事務局 公報處→公報室(大統領直屬)：統計局은 內務部로 法制處→法制室(法務部直屬) └企劃處→復興部 企劃局 外資廳(外資購買處＋臨時外資管理廳)：復興部所屬, 管財廳→財務部管理局, 專賣廳(財務部所屬), 海務廳(商工部所屬), 舊皇室財產管理委員會, 舊皇室財產事務總局
第 3 次　改 正	1956. 2. 1	公報室에 放送管理局 設置, 外務部에 儀典局 設置
第 4 次　改 正	1960. 7. 1	內閣責任制, 國務總理 國務院事務處(公報室, 法制室 吸收)
第 5 次　改 正	1961. 5.26	(國家再建非常措置法)：國務總理→內閣首班, 復興部→建設部
第 6 次　改 正	1961. 6.22	公報部 新設
第 7 次　改 正	1961. 7.12	行政管理局, 軍事援護廳 設置

經　過	年 月 日	改　編　內　容
第 8 次　改 正	1961. 7.22	建設部 廢止, 經濟企劃院(統計局, 豫算局 吸收) 設置, 中央經濟委員會, 國土建設廳 新設
第 9 次　改 正	1961. 8.22	監察委員會를 國家再建最高會議 所屬으로
第 10 次　改 正	1961. 8.24	企劃統制官室(內閣首班直屬) 新設
第 11 次　改 正	1061.10. 2	外務部 儀典局→儀典室, 情報局과 文書局 新設, 內務部의 土木局을 國土建設廳으로, 商工部 海務廳 廢止(농림, 교통, 내무에 분산) 法制局→法制處, 外資廳 폐지, 調達廳(企劃院所屬) 新設, 文化財管理局
第 12 次　改 正	1962. 3.21	農事院→農村進興廳(농림부직제개편, 지역사회국을 農村進興廳으로)
第 13 次　改 正	1962. 5.10	軍事援護廳→援護處, 울산개발기획본부 신설
第 14 次　改 正	1962. 6.18	國土建設廳→建設部, 經濟企劃院에 1, 2, 3차 產業局 新設
第 15 次　改 正	1963. 8.26	保健社會部所屬 勞動局→勞動廳, 交通部所屬 鐵道廳 新設, 國防部 合同參謀本部設置(연합참모국 대체)
第 16 次　改 正	1963.12.14	監査院, 國民運動本部, 中央情報部 등 大統領 直屬으로, 調達廳(經濟企劃院所屬)→財務部所屬 : 經濟企劃院의 각 產業局과 財務局 管財局 廢止, 企劃統制官室→企劃調整室

그중에서도 國務總理制 廢止에 따라 總理傘下의 4個處가 없어짐으로써 가장 큰 變動을 보인 部分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機能을 調整하여 他部署에 業務를 移管하거나 縮少하게 된 것이다.

먼저 總務處는 國務院 事務局이 되고 企劃處는 新設部署인 復興部의 企劃局이 되었다. 法制處는 法制室로 되어 法務部所屬이 되고, 公報處는 公報室로 되어 大統領直屬으로 하는 한편 그 속에 있던 統計局을 內務部로 移管하였다.

한편 管財廳은 財務部 管財局으로, 또 專賣廳을 財務部 所屬으로 설치하고 海務廳을 商工部所屬으로 신설하였다. 臨時王宮財產管理委員會를 舊皇室財產管理委員會로 하고 舊皇室財產事務總局을 두었다. 이로써 政府機構는 1院 12部 3廳 2室로 縮少되었다.

나. 統計局에서 調査統計局으로

統計局이 公報處 소속일 때는 處長이 金東成(1948. 8. 4), 李哲源(1949. 6. 6), 金活蘭(1950. 8. 15)에서 다시금 李哲源(1950. 1. 28), 葛弘基(1953. 3. 6) 등으로 바뀌었고 統計局長은 金鳳圭(1948. 8. 15), 朴玄煜(1950. 4. 21), 卓長濟(1951. 8. 19와 1953. 5. 29重任) 및 金昌模(1952. 10. 9) 등이었다.

統計局의 機構는 內務部로 所屬變更이 된 以後에도 종전의 企劃課, 國勢調査課 및 人口調査課의 3課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人員數는 600名線에서 400名線으로 줄었다. 이때의 統計局 機能은 그뒤 1957年 6月 24日字 大統領令 第1284號에 의한 內務部職制 改正으로 크게 整備되었다.

새로운 職制에서 1950年 4月의 機構改編時에 없어졌던 統計官制를 다시 살려 그것을 三級甲類(書記官級)와 三級乙類(事務官級)에 해당하는 職級을 각 1人씩 두게 하였고 業務部署도 4個課로 늘려 各課의 分掌事項을 再整備한 것이다.

- 統計基準課 : 각종 統計와 統計制度의 企劃, 研究審査, 統計基準設定과 總括的 調整, 統計月報 및 其他 他課主管이 아닌 事項
- 人口統計課 : 國勢調査와 人口動態統計에 관한 事項
- 經濟統計課 : 家計, 勞動力, 物價 資源 및 其他 經濟統計에 관한 事項
- 製　表　課 : 각종 統計의 製表計劃과 機械製表에 관한 事項

이로써 從前의 企劃課가 統計基準課로 되고, 人口統計部分은 國勢調査課와 人口調査課를 합하여 人口統計課가 되었으며 經濟統計部分은 經濟統計課를 신설하여 管掌케 하였다. 그리고 資料處理관계 업무는 製表課로 集約시켰다.

그러나 統計局의 機能擴大에 비하여 從事公務員은 大幅 축소하여 正規職員 58名과 臨時職 195名(合計 253名)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政府의 財政的 어려움과 政府機構 縮少方針에 따른 것이다. 여하튼 1957年에 이루어진 통계국의 이 조직은 1961年에 經濟企劃院이 설립되면서 內務部에서 經濟企劃院 소속으로 移管되었다. 經濟企劃院은 1961年 7月 22日字 閣令 第57號의 職制에 의하여 從前의 建設部 職制를 폐지하여 建設部에 있던 總務課 綜合企劃局 및 物動企劃局과 財務部의 豫算局 및 內務部의 統計局을 統合한 것이다. 여기서 建設部는 본래 復

興部였었다. 그 復興部를 5.16 直後인 5月 6日에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이때 國務總理制가 폐지되고 內閣首班制가 됨)을 제정하면서 建設部라고 改稱하였는데 당시에는 建設部가 國土管理, 土木建設 등이 아닌 「國家建設」 部署로서의 建設部라고 한 것이다.

1961年에 統計局이 經濟企劃院 소속으로 되면서 經濟政策業務와 統計機能이 密接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또 그 초기에는 機構面에서도 製表課를 編修課로 改稱한 것 以外에는 종전의 4課構成을 그대로 지녔으나, 1962年 6月 18日(정부조직법개정 법률 109號)에 調査分析課가 追加되면서 統計局의 名稱도 「調査統計局」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調査統計局은 經濟企劃院의 副院長補의 系統이였었다. 그러다가 1963年 12月 7日의 改編에서 經濟企劃院 傘下의 「外局」이 되었다. 機構面에서는 從前의 經濟企劃院長을 副總理兼 經濟企劃院長官이라 하였으며, 調査統計局에 있던 調査分析課를 經濟調査課로 改稱하여 經濟企劃院 綜合企劃局으로 보내고 從來의 編修課를 統計企劃課로 하고 그밖에 統計基準課, 人口統計課 및 經濟統計課는 그대로 두는 4課를 維持했다.

여기서 統計企劃課는 統計局事務의 全般的 企劃 및 總務業務와 함께 資料處理業務도 담당하는 部署로 되었다. 統計基準課는 統計調査業務와 諸般統計行政을 擔當하고 人口統計課는 國勢調査, 人口動態調査, 就業技術系 人的資源調査 등을 담당하며 經濟統計課는 勞動力調査(經濟活動人口調査)를 비롯하여 家計調査, 消費者物價調査 및 鑛工業統計調査(산업총조사) 등을 담당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中央統計機關인 調査統計局의 機構變遷過程에서 重要한 事實은 統計政策審議機構로서의 委員會를 設置한 것을 說明해야 할 것이다. 國勢調査委員會와 統計委員會가 그것이다.

國勢調査委員會는 1960年度 「人口·住宅 및 農業에 관한 國勢調査의 綜合的인 實施와 管理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또 그밖에 「政府統計의 改善에 관한 諮問에 必要한 建議」를 할 수 있도록 4292年(1959) 2月 10日에 大統領令 第1,449號 「國勢調査委員會規程」에 의하여 당초 內務部(統計局)에 設置한 것이다.

委員長을 內務部長官으로 하고 財務, 復興, 農林 및 保健社會部의 長官과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委囑하는 人士를 委員으로 構成하고 事務局長은 당초 復興

部 公務員이 맡도록 하였었다. 그뒤 1959年 9月 21日字 國勢調査委員會規程의 改正(大統領令 第1,518號)에 의하여 事務局長은 統計局長이 맡게 되었다.

이 國勢調査委員會는 1962年 3月 10日字 閣令 第513號로 統計委員會規程이 公布될 때까지 存續하다가 그 중에 審議機能은 統計委員會로 承繼되고 統計基準, 統計行政 등 事務局에서 수행하던 實務機能은 統計局 基準課로 移管시키고 解體되었다.

統計委員會는 1962年 1月 15日字 統計法(法律 第980號) 制定에 根據하여 당초는 同年 3月 10日字 閣令 第513號로 設立된 것이다. 그것이 8次의 改正을 거쳐 1976年 5月 8日字 大統領令 第8,117號에 의한 規程이 되었다. 이 委員會의 當初 設置目的은 「指定統計와 一般統計를 비롯한 기타의 政府統計調査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는 것이었다.

한편 통계국의 傘下機構로서는 1959年 7月 10日에 「中央官署 統計擔當官協議會」를 構成하였고 同年 11月 25日에는 그무렵의 第32次 國際統計協會 總會(1960. 5月 日本 東京)에 參席하는 것을 계기로 社團法人 大韓統計協會를 設立하였다. 또 1960年 12月 5日에는 內務部令(第16號)으로 國際統計委員會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이들은 5.16 以後 整備되었다.

〈參考〉 1960年을 前後한 主要 統計補助機關들

1. 中央官署 統計擔當官 協議會
   - 4292. 9. 10 施行
   - 會長 : 內務部 統計局長, 幹事 : 內務部 統計官
2. 社團法人 大韓統計協會
   1959. 11. 7 創立 : 初代會長 兪尙根(副會長 陸芝修, 宋正範)
3. 國際統計研究委員會
   - 規程「內務部令第66號」1960. 2. 5 公布
   - 委員長 : 內務部次官
4. 駐韓統計顧問團

- 1958年 5月, 來韓

  團長　Dr. Stuart A. Rice, 1958. 4. 23～1959. 3. 31

  Mr. Charles B. Lawrence 1959. 4. 1～1960. 8. 25

  Dr. Stuart A. Rice 1960. 8. 26～1960. 12. 2

  Dr. Benjamin Tepping 1960. 12. 3～1963. 5. 31

다. 其他의 統計機關과 變遷

農林部의 統計擔當 部署로서는 1950年 3月에 調査統計課가 次官室 直屬으로 된 以來 1955年 2月 政府機構 改編時의 職制改正으로 이것이 農政局 調査統計課로 되면서 그 속에 統計係와 調査係를 두었고 그전에 農政課에서 담당하던 食糧作物 生産量統計를 吸收하였다. 이 機構는 1964年에 管理係가 增設될 때까지 持續되었다.

保健社會部는 그 설립당초(1949年 3月)에 勞動局에 「調査指導課」를 두고 勞動統計를 내었었다. 5.16直後인 1961年 10月의 政府機構改編時의 職制改正으로 「勞動統計課」로 名稱을 바꾸어 勞動統計와 함께 失業, 就業 및 救護實態 등의 統計도 수행하다가 1963年 8月 26日에 勞動局이 勞動廳으로 되면서 그 總務課內에 統計係를 두고 한편 保社部 本廳에도 企劃管理室內에 統計係를 두어 前者는 勞動統計를 담당하고 後者는 保健統計와 要救護者實態調査 등을 실시하였다. 이때 本廳에 Remington Rand의 統計機械를 설치하여 保社部도 資料處理의 機械化를 시작하였다.

商工部에는 工業局(2局)에 調査課를 두어 去來基準에 의한 輸出入統計와 生産에 관한 行政報告統計를 담당하였으나 1963年 12月의 職制改正時에 이 調査課를 폐지하고 統計業務를 企劃管理室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여기서 生産動態調査를 實施하였다.

그밖에 文敎部, 法務部, 交通部, 遞信部 등에서도 必要統計를 行政報告로 수집하여 편제하였고 서울·釜山과 各 道들도 年末常住人口調査를 비롯한 각종 調査와 管內 行政(報告)統計를 編纂하였다.

韓國銀行은 戰時 狀況下에서 諸般資料의 紛失, 組織的인 調査網의 逸失 등으로 調査機能이 한때 麻痺에 빠졌었다.

이에 調査部는 1951年 3月 動亂勃發以後 근 1년동안 中斷되었던 調査月報를 「動亂特輯臨刊號」로서 續刊하게 된 것을 계기로 調査業務는 다시 정상을 찾게 되었다.

解放前부터 編制하여 오던 서울都賣物價指數가 6.25動亂이 勃發한 1950年 6月부터 10個月間 中斷되자 1951년부터 休戰協定이 締結된 1953년까지는 釜山地域都賣物價를 基準으로 서울都賣物價指數를 作成하였고 1942年부터 시작한 都市家計調査는 해방이후 중단되었다가 1950年 1月 公報處統計局이 韓國銀行과 合作으로 生計費調査를 實施하였으나 6.25 動亂으로 中斷되었다가 1951年 7月부터 다시 부산의 60세대를 對象으로 하여 調査를 재개하였다.

1953年 5月에는 統計業務專擔을 위하여 調査部 第2課를 統計課로 改編하고 7月에 産業調査課를 신설하여 기본적인 産業調査에 착수하는 한편 基礎 중요통계의 수집작성을 準備하였다. 1953年 7月에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外援의 뒷받침으로 經濟復興事業이 本格化하게 되자 1954年에는 産業調査課를 廢止하여 海外調査課를 新設하고 1955年에는 다시 統計課를 一, 二, 三 統計課로 分割하여 관장업무를 넓히고 기존 企劃調査課와 圖書課를 包含한 六個課를 두어 이후 약 3년간을 노력한 끝에 경제연감의 복간을 비롯하여 國民所得, 金融, 財政, 生産 및 기타경제전반에 걸쳐 各種 統計系列의 整備를 보게 되었다.

4. 主要統計施策의 展開

가. 統計振興施策의 摸索

動亂에서 벗어나면서 그 이전에 수립하였던 중요통계자료와 施設 등을 燒失당하거나 파괴당한 상태에서 統計機構와 機能도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 무렵의 統計行政도 不在狀態를 면할 길이 없었다.

統計施策이 하나의 정책적 과제로 본격적으로 摸索되기 시작한 것은 統計局이

公報處에서 內務部로 移管된 1955年 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해에 있었던 第1回簡易國勢調査의 實施와 함께 促進될 수 있었다.

당시 統計局으로서는 國勢調査와 年末常住人口調査 및 人口動態調査같은 人口統計를 爲主로 하고 其他 統計調査領域을 擴大하고 있었으나 이직도 統計에 대한 基本母法으로서는 人口調査法을 위주로 하는 몇가지 施行令 등이었으므로 産業經濟統計나 行政報告 등 統計全般에 대한 體制整備가 必要하였었다. 그러던 차에 5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는 統計進興施策을 위한 研究가 活潑化되고 있었다. 이미 1956年頃부터 基本法으로서의 「統計法」 制定試案을 作成하였고, 아울러 統計에 대한 企劃, 審議, 研究를 위하여 中央에 統計委員會 設置를 構想하고 있었다. 또 綜合統計報告例規程을 편찬할 必要性도 強調하고 있다.

한편 統計의 對國民弘報를 위한 統計圖表展示會의 開催나 統計講習會의 實施 등을 準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6.25動亂으로 中區 藝場洞 所在 統計局 廳舍(現 統一院 자리)가 全燒되어 專用廳舍를 못지니고 있던 상태에서 統計局職員이 2, 3處에 分散되어 근무하던 당시로서는 모든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럴 때 국회에서 統計機能活性化建議案이 採擇되어 政府로 移送되었다. 동시에 이때 統計局의 機構를 從前에 企劃課, 國稅調査課, 人口調査課의 3個課에서 統計基準課를 비롯하여 人口統計課, 經濟統計課 및 製表課의 4個課로 늘림으로써 지금까지의 人口統計中心에서 벗어나 統計行政機能에 基準業務를 定着시킬 뿐 아니라 또 經濟統計面에서도 家計調査(500個家口)와 小賣物價調査(24個調査區) 그리고 每月末 7日間씩 하는 勞動力調査(層別任意抽出에 의한 449個標本調査區) 등 調査以外에 資源調査와 官廳統計(行政報告統計)도 담당하게 되었다.

1958年 5月 6日에는 당시의 國務會議(第38次)에서 統計行政強化要綱이 議決되었고 곧 그달부터 Rice統計顧問團을 2年契約(실제로는 5個年契約으로 延長)으로 맞아들였다. 또 그해 11月 4日의 國務會議에서는 國勢調査委員會 設置를 議決한데 이어 同 委員會를 1959年初에 설치하였다. 國勢調査委員會는 表面上 1960年 人口總調査를 對備한 것이지만 그 機能은 1956年부터 構想하던 統計委員會의 기능을 잠정적으로 遂行한 過渡期的 機構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1959年末부터 1960年初에 걸쳐 統計局에서 推進한 統計行政主要施策에서는 一次的으로 統計行政의 刷新을 強調하고 있다.

첫째 統計法令의 整備이다. 무엇보다 統計法의 制定을 推進하면서 統計事務處理規程들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統計行政機構의 擴大強化를 圖謀하여 中央의 統計局과 각 部處의 統計機能을 現代化하면서 國勢調査委員會의 設立을 계기로 地方廳의 統計機構도 정비하기로 하였다.

셋째 統計要員의 陳容強化와 資質向上을 들 수 있다. 統計公務員중에 統計專擔職員을 配置하고 統計擔當官制를 導入한다. 또 地方統計公務員任員要綱制定(統計官, 統計主任 등)도 서둘렀다. 그리고 統計要員의 敎養訓練을 強化하는 한편 國立公務員訓練院에서의 統計敎育課程을 必須科目으로 履修토록 制度的으로 保障하는 한편 先進國의 統計技術導入을 위하여 統計要員의 海外研修派遣과 統計裝備交換 및 外國圖書의 번역발행도 추진하였다.

이때에 統計顧問團(Rice mission)과의 滯韓契約을 1958年 5月에서 1960年 6月까지를 1963年 6月까지로 3個年間 延長契約하였다.

넷째 統計事務改善刷新方案으로서 中央官署統計擔當官協議會를 설치 운영하고 地方에서는 수시로 地方統計實務者會議를 開催한다. 동시에 綜合統計報告例의 編纂을 계속사업으로 推進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 統計業務 遂行에 따르는 豫算을 確保하고 統計施設의 整備를 위한 努力의 傾注가 必要하다. 國家財政이 不足한 형편이었으므로 이에는 對充資金에 의한 特別會計 등 豫算確保가 追求對象이었다. 한편 統計施設面에서는 統計局廳舍의 新築을 서둘러 鍾路區 慶雲洞에 있는 垈地는 確保한 상태여서 이의 建築費는 對充資金으로 充當하여 實行할 수 있었다. 이때 統計機械의 導入은 IBM機種을 購入 또는 賃借契約하여 成事시켰다.

여섯째 統計에 대한 汎國民的 認識의 啓發에 注力하는 것이다. 이를 당시에는 「統計槪念의 昂揚」이라고 하였다. 統計昂揚週間 設定이나 統計圖表展示會 開催, 統計研修 등의 勵行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統計行政施策은 그 당시의 각종 委員會, 研究會의 構成運營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近代式 委員會制度를 統計行政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로 1960年以前에 이미 다음과 같은 機構가 稼動하고 있었다.

① 中央官署統計擔當官協議會

② 特別市·道統計實務者會議

③ 統計刊行物審議委員會

④ 勞動力調査研究委員會

⑤ 人口動態調査研究委員會

⑥ 國際統計研究委員會

이어 1961年에는

⑦ 家計·物價調査研究委員會와

⑧ 統計委員會(法定)

또 1962年에는

⑨ 資源調査研究委員會

1963年에는 ⑩ 統計行政機構研究委員會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法制的 實行準備를 다져가고 있었다.

이 무렵부터 각종 統計關係 國際會議에 參加하거나 이들 國際會議를 國內에 誘致하였다.

上記 施策중 셋째項인 統計要員의 養成은 새시대의 統計振興에 必要한 優秀한 統計專門家의 確保와 그를 위한 要員 練修의 履行을 적극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의 1960年度 總調査를 成功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計劃立案과 그것의 執行이 要求되었다. 먼저 國勢調査委員會 所屬職員에 대한 資質向上 敎育과 함께 당시의 소요판단에 따라 國勢調査集計員 800名을 年次的으로 採用 補強하고 地方에서도 市道地域 센서스調査員 이외에 國費職員을 包含한 地方廳의 統計專擔職員 1,862名을 確保하여 전국에 配置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統計當局에서 有能한 統計行政家, 實務分析者, 統計理論家들의 양성을 切感하여 1957年부터 해마다 십여명의 요원을 선발 海外統計研修는 물론 각종 國際統計會議에 參與토록 하였다. 이들이 조만간 韓國의 統計界를 開發시킨 主役들이 된다.

그 무렵에 海外에 派遣한 實績을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初期의 統計人 海外派遣記錄(統計局中心)

時　期	參　席　者	國際會議또는研修課程	備　考
1952. 8～	張胤錫(統計局基準課長), 方淑(保社部防疫課長), 韓凡錫(保社部課長)	日本 東京, 西太平洋地區 人口動態 및 保健統計講習	
1952. 10～ 53. 8	卓長濟(公報處統計局長)	獨逸헨大 經濟學部 研究課程	
1957. 8～ 58. 8	李在昊(內務部統計局主事)	美센서스局, 캐나다統計局 統計行政 및 調査方法 研修	美ICA技術援助
1957. 11～ 58. 11	高晳煥(統計局事務官)	印度, 봄베이 人口統計調査訓練所	UN技術援助
1958. 7～ 59. 8	高晳煥, 朴在榮(統計局事務官 및 主事)	美센서스局, 캐나다統計局에서 統計研修	美ICA技術援助
1958. 9. 1～ ～59. 12. 30	張胤錫(基準課長), 朴炳德(統計局 事務官)	日本 東京, 全世界 1960年 人口·住宅·農業센서스訓練	UN/FAO 主催
1958. 12. 8 ～58. 12. 17	趙利濟(駐韓統計顧問團) 및 池連泰(外務部事務官)	泰國, 방콕, 第2次亞細亞統計官會議 參席	ECAFE 아세아경제위원회 주최
1959. 7. 20 ～60. 7. 18	金鍊(統計局)	印度, 봄베이 人口統計調査訓練所	UN技術援助
1959. 8～ 60. 8. 25	李昌濟, 趙利濟(統計局 主事)	美 센서스局, 캐나다統計局 國勢調査研修	ICA技術援助
1959. 11. 21 ～	趙弼濟(統計局), 韓貞洙(農林部), 吳世敏(韓銀) 등 9名	比, 마닐라大, 統計訓練所：第1次國勢調査訓練	ICA技術援助
1959. 12. 28 ～60. 1. 13	成東準(統計局製表課長), Fairy, scott(統計顧問團)	日本의 統計機構視察	
1959. 12. 28 ～60. 3. 3	統計局 및 國勢調査委員會 職員 25名	日本 東京, IBM機械訓練所：資料處理要員訓練	

時　期	參　席　者	國際會議또는研修課程	備　考
1960. 4. 5 ~4. 15	蔡汶植(經濟統計課長), 裵奎成(農林部), 李仁坤(韓銀)	泰國 방콕, 第3差亞細亞統計官會議, 產業調査關係	UN統計委, ECAFE 및 FAO共同開催
1960. 4. 14 ~7. 18	鄭寅煥(統計局), 李承雨(忠北) 및 金榮鎬(農協) 등 11名	比, 마닐라大 附設 統計技術訓練院 第2次國勢調査研修	
1960. 5. 19 ~1961. 1.	방혼제(統計局)	濠洲 켄베라大 統計資料研修	
1960. 5. 28 ~6. 16	兪尙根(統計局長), 陸芝修(서울大), 朴海殷(產銀), 高晳煥(基準課事務官)	日本 東京, 第32次國際統計協會參席	(社)統計協會 所屬으로 參席
1960. 6. 20 ~7. 8	李在昊(統計局)	印度 봄베이, UN人口問題研究所：統計資料評價 및 利用問題研究	ECAFE地域統計資料研究會
1960. 9. 11 ~9. 15	金俊輔, 高承濟(서울大), 崔虎鎭(中央大)	스위스 제네바 I-O技法國際會議	(韓國側發表者)
1960. 10. 8 ~61. 10	任泰彬(統計局基準課)	印度 봄베이 人口問題研究所：人口分析技法研究	
1960. 10. 12 ~60. 11. 25	朴在彬(統計官甲), 權赫泰(統計官乙)	比, 마닐라「人口動態 및 保健統計會議參席」	世界保健機構 開催
1961. 5. 10 ~61. 5. 25	張炳寅(統計局長), 李相信(課長), 朴在彬(統計官), 洪重基(事務官) 및 Dr. Tepping, B. J(統計顧問團長)	日本統計機構視察	

統計刊行物로서는 統計局自體調査에 의한 각종 報告書나 研究分析論文 및 弘報物 등 以外에 統計年鑑과 統計月報는 진작부터 發刊하고 있었으나 1958年부터는 國際統計와 統計情報 등도 定期刊行物로 發行하기 시작하였다. 1961年 3月에는 統計月報를「經濟調査月報」로 改題 創刊하여 一時 發行하였으나 이는 뒤에 季刊

經濟調査로 續刊하고 統計月報는 다시 살려 出刊하였다.

不定期刊行物중 세계統計, ECAFE報告書 아시아지역統計 등 外國의 統計調査資料를 수집하여 중요한 論說資料는 번역하여 出刊하였고 한편으로는 統計學辭典, 統計便覽, 統計史 등도 편찬할 準備로 豫算探索과 國內學界·專門家와의 協議를 계속하였다.

特記할 事項은 國際標準分類에 맞추어 한국의 標準産業分類, 商品分類 등에 필요한 基礎資料의 蒐集과 硏究作業도 主要施策의 하나로 推進하고 있었다.

以上의 1960年을 前後한 統計施策은 곧 닥칠 開發年代의 跳躍을 위한 摸索단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統計廳 廳舍의 移轉過程을 略述코자 한다. 본래 日帝는 總督府機構에 統計를 專擔하는 獨自部署가 없이 統計擔當이 文書課 등에 소속되어 南山의 倭城臺 舊總督府 建物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30年度 人口總調査를 실시하면서 그해 1月에 「臨時國勢調査課」를 舊總督府 「商品陳列館」(南大門 맞은편, 現 大韓商議 南側)으로 移轉했었고 그러다가 뒤에 다시 南山 舊總督府 建物로 옮겨 總督府 官房 企劃課, 美軍政 統計署時代를 지냈다.

이 南山 舊總督府 建物(藝場洞 : 舊KBS자리)이 政府樹立後의 公報處 統計局이 位置하던 곳인데 그나마 이 건물이 6.25事變으로 全燒하자 그 뒤부터 統計局 廳舍는 流轉하였다. 즉 中央廳 第1別館(中央博物館 西北 : 9.28收復時), 釜山 慶南道廳 講堂(1.4後退時)에서 還都後 다시 中央廳 別館(治安局 鑑識係와 共用)에 정착하는가 하더니 1955年에는 一部課(企劃, 人口)는 中央廳 別館에 남고 一部(國勢調査課)는 反共會館(現 美大使館 자리 : 전기통신공사옆) 3層과 附屬콘셀建物로 分散시켰고 이는 다시금 監理會館(朝鮮日報社 西北 옆 : 基準, 人口課)과 唐珠빌딩(經濟, 製表課)으로, 또다시 高麗빌딩(基準, 人口, 經濟課)과 唐珠빌딩(製表課) 또는 中央廳 本館 東側(製表課) 등으로 分散 配置되었다.

1961年 5.16革命後에는 中央廳(東側) 本館에 全部署를 集合했었다가 同年 9月에 慶雲洞廳舍가 竣工됨으로써 비로소 統計局 자체의 청사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80年代末에 이르면 慶雲洞廳舍도 협소해져서 몇차례 증축에도 불구하고 一部 局·課를 隣接한 高合빌딩에 分散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80年代부터 본격화한 國家中央統計機構로서의 役割增大와 機能擴張에 따라 廳舍確保가 다시금 當面問題로 부각되었고 더욱이 1991年에 統計廳 發足과 機構의 擴大改編에 따라 1992年 10月 28日에 驛三洞 所在 한타빌딩으로 統計廳 新廳舍를 移轉하고 慶雲洞廳舍에는 統計硏修院과 電算資料處理別館 및 서울統計事務所를 配置하였다.

나. 統計關係 適用法令

國勢調査委員會規程이 1959年 2月 10日에 制定 公布되었지만 1960年의 센서스를 마치고 年來 推進하던 統計法이 1962年 1月 15日에 法律 第980號로 제정·공표되고 나서는 1962年 3月 10日에 統計委員會規程이 公布되어 施行하게 되었다. 統計法施行令은 1962年 3月 20日에 閣令 第512號로 공포되고 同施行規則도 同年 8月 21日에 經濟企劃院令 第19號로 制定됨으로서 그뒤 오늘날의 統計關係法令의 根幹을 이루게 되었다.

1960年初만해도 統計關係法令으로서는 人口統計關係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人口調査法이 基本이고 이에 人口動態調査令과 國勢調査令 또는 總人口調査令 등의 施行令과 함께 각종 규정과 要綱을 實務指針으로 制定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法令規程은 현재 대부분 소멸되고 그 이후 1971年까지의 법령체계는 「統計法」體系下에서 정리되어 있다.

統計關係法令중에서 特記할 것은 行政報告統計에 관한 규정의 제정이다.

日帝時代에는 舊來의 報告統計를 「報告例規程」으로 규격화해서 全國에서 1年에 500~600個에 달하는 報告를 받아서 이를 總督府 官房文書課에서 統制調整하였고 이들 報告例資料들을 總督府의 植民地統治目的에 活用하여 財政, 産業經濟, 社會文化 및 學術分野에 미치는 전부문에 걸쳐 日帝時代의 社會情報資料로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지만 光復과 政府樹立以後에는 이런 非統計用趣旨에 의한 統制報告를 重視하지도 않았고 당시의 行政紀綱이 이런 體制를 復舊할 餘力이 없었다. 그러나 舊來의 報告慣習에 익숙해 있던 一部에서는 끊임없이 옛날과 같은 報告例制度에 의한 行政統計의 統制化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美軍政·過政時代나 建國

初期에도 內務部, 農林部, 社會部 같은 각 部處나 法院같은 機關에서 각기 나름의 必要에 따라 樣式과 記入要領을 傘下官署에 下達하여 報告資料를 徵求·聚合하기는 하였으나 日帝時代의 文書課와 같은 中央統制機能이 없었기 때문에 行政統計相互間의 計數가 一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각 관청마다 달리 적용한 分類·槪念 定義 등의 便宜性이 統計로서의 利用에 제약이 되었다.

그런 중에 內務部와 農林部, 保社部 등에서는 그들의 行政系統을 통하여 地方廳으로부터의 報告事項을 累次 例規化하였었고 그 일부는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1960年前後 統計關係法令

番號	法　　令(規程)	公布年月日	根　　據	備　　考
1	第1回 總人口調査施行令	1948.12.13	大統領令第39號	
2	人口調査法	1949. 1.17	法律 第18號	(폐지)
3	第一回總人口調査地方服務處理規程	1949. 2.15	總理令 第6號	
4	戶口調査規程	1949. 9. 1	內務部令 第3號	
5	人口動態調査令	1955. 6. 8	大統領令 第1,032號 (개정)	1955.12.19 大統領令第252號(당초)
6	第1回簡易總人口調査令ㅈ	1955. 6. 8	大統領令第1,033號	
7	人口動態調査令施行規則	1955. 6.28	內務部令 第46號	
8	第1回簡易總人口調査規程	1955. 7. 7	內務部令 第47號	
9	統計行政強化要綱	1958. 4. 6	第38回國務會議議決	
10	特別市, 道 國勢調査事務處理要綱	1959. 7.27	第9回國勢調査 專門委員會議決	
11	人口住宅分科委員會規程	1959. 9.10	委員會規程 第14號	
12	國勢調査委員會規程	1959. 9.23	大統領令 第1,527號	
13	國勢調査委任專決事項規程	1959.10. 7	委員會規程 第5號	
14	總人口調査令	1959.11.13	大統領令 第1,527號	
15	農業分科委員會規程	1959.11.17	委員會規程 第6號	
16	地方行政機關統計事務處理規程	1960. 2. 3	內務部訓令 第132虎	
17	國際統計硏究委員會規程	1960. 2. 5	內務部令 第55號	
18	檀紀 4293年度 國勢調査事務推進基本要綱	1960. 2. 5	第14回國務會議議決	
19	國勢調査令	1960.11. 3	國務院令 第19號	

統計局에서도 公報處 時節부터 수차례 이에 관한 試圖를 하였었고 1952年6月에

는 內務部에서 內務行政에 必要한 「報告例」를 內務部 訓令(第39號:1952)으로 示達한 바 있었다(報告事項 108種). 統計局이 內務部에 所屬(1955年 2月)된 以後에도 統計事項을 行政報告로 받은 體制를 꾸준히 硏究하며 각 部處와 수많은 協議調整을 거쳐 1958年경에는 일단 그 시안이 마련되었고 그것의 실효성을 좀더 검토하며 2年餘 끝에 1960年 12月 31日字 國務院訓令 第180號로 「定例報告規程」을 公表하였다. 延858種에 달하는 이 규정은 總督府當時의 報告例規程보다 한층 發展시킨 것이지만 이러한 報告規程은 무엇보다 중앙관서간의 協調와 함께 一線官署의 協調와 統計的 素養이 要請되는 것이나 당시의 內務部 行政組織은 이의 施行에 여러가지 利點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中央에 位置하는 主要機關의 協助가 分權的 機能때문에 不足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답답하고

報告例 報告事項(內務部所管例示)

(第三輯 內務部所管報告例)

番號	報告例名	報告種別	一次報告機關	提出通數	調査月日	報告期限
1	郡參事會 會議狀況報告書	半年	郡	1	6, 12月末	翌月15日
2	地方議會運營狀況報告書	年	道, 市	1	12月末日	1月20日
3	邑面議會狀況報告書	〃	邑, 面	1	〃	1月末日
4	行政區域狀況報告書	〃	市, 邑, 面	1	〃	〃
5	市, 邑, 面組合狀況報告書	〃	郡	1	1月 1日	1月20日
6	道(特別市)國家公務員定員報告書	〃	特別市, 道	1	〃	1月10日
7	郡(邑)國家公務員定員報告書	〃	〃	1	〃	〃
8	特別市, 道地方公務員定員報告書	〃	〃	1	〃	〃
9	郡(區)地方公務員定員報告書(一般會計)	〃	〃	1	〃	〃
10	市,邑,面地方公務員定員報告書(一般會計)	〃	市, 郡	1	〃	1月20日
11	地方廳公務員配置報告書(一般,特別會計)	〃	〃	1	〃	〃
12	事務監査計劃報告書	〃	〃	1	〃	〃
13	月間監査實施狀況報告書	月	〃	1	〃	翌月10日
14	公務員非行狀況報告書	半年	〃	1	6,12月末日	翌月15日
15	民願書類處理狀況報告書	月	市, 邑, 面	1	每月末日	〃
16	第一國民兵職業別統計報告書	半年	〃	1	6,12月末日	翌月20日
17	徵兵忌避者取扱狀況報告書	月	〃	1	每月末日	翌月15日

番號	報告例名	報告種別	一次報告機關	提出通數	調査月日	報告期限
18	徵集該當者內譯明細算出報告書	月	市, 邑, 面	1	每月末日	翌月15日
19	徵集執行狀況報告書	卽	〃	1	〃	執行後15日
20	徵集該當者移動狀況明細報告書	月	〃	1	〃	〃
21	第一國民兵學歷別統計報告書	半年	〃	1	6,12月末日	翌月20日
22	豫算決算取扱規程運營狀況報告書	期	〃	1	3,6,9,12月末日	〃
23	俸給給與支拂狀況報告書	月	〃	1	每月末日	翌月10日
24	地方財政運營實態調査報告書	期	〃	1	3,6,9,12月末日	翌月20日
25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報告書(一般, 特別會計)	〃	〃	1	〃	〃
26	市 邑·面分地方財政調査交付金(特別交付金)經理狀況調査報告書	年	〃	1	12月末日	1月末日
27	納稅表彰報告書	卽	特別市, 道	1	〃	表彰後5日
28	地方稅負擔狀況報告書	年	市, 邑, 面	1	〃	1月末日
29	林野稅表	〃	〃	1	〃	〃
30	車輛稅表	〃	〃	1	3月末日	4月末日
31	家屋稅表	〃	〃	1	6月末日	7月末日
32	船稅表	〃	〃	1	7月末日	8月末日
33	動力稅表	〃	〃	1	10月末日	11月末日
34	鑛產稅附加稅表	〃	〃	1	2月末日	3月末日
35	鑛區稅附加稅表	〃	〃	1	11月末日	12月末日
36	地方稅事務分掌表	半年	〃	1	6,12月末日	翌月20日
37	戶別稅表	〃	〃	1	2,8月末日	〃
38	營業稅附加稅表	期	〃	1	3,6,9,12月末日	〃
39	自動車稅附加稅表	半年	〃	1	8,11月末日	〃
40	屠畜稅報	期	〃	1	3,6,9,12月末日	〃
41	漁業稅表	〃	〃	1	〃	〃
42	取得稅表	〃	〃	1	〃	〃
43	特別行爲稅表	〃	〃	1	〃	〃
44	免許稅表	〃	〃	1	〃	〃
45	交通稅表	〃	〃	1	〃	〃
46	歲入移越額計算報告書	年	〃	1	2月末日	3月末日
47	土地賃貸價格調査報告書(附表)	〃	〃	1	5月末日	6月末日
48	地方稅徵收報告書	月	〃	1	每月末日	翌月15日
49	特別市, 道費歲入徵收報告書	〃	〃	1	〃	〃

番號	報 告 例 名	報告種別	一次報告機關	提出通數	調査月日	報告期限
50	地方稅異議申告處理報告書	卽	市, 邑, 面	1	每月末日	翌月 15 日
51	外資受拂總括報告書	月	〃	1	〃	〃
52	外資使用實績報告書	〃	〃	1	〃	〃
53	道路整備成果報告書	半年	土木管區	1	春, 秋	作業後10日
54	道路修路員實績報告書	月	〃	1	每月末日	〃
55	上水道作業狀況報告書	〃	市, 邑, 面	1	〃	翌月 15 日
56	重機現況報告書	〃	現場土木管區	1	〃	〃
57	維持機動班實績報告書	〃	土木管區	1	〃	翌月10日
58	補修機動班實績報告書	〃	〃	1	〃	〃
59	統計行政成績査定報告書(市, 區, 郡)	〃	市, 區, 郡	1	〃	〃
60	統計主任移動報告書	卽	〃	1	〃	移動後10日
61	統計報告成績報告書	月	〃	1	〃	翌月 15 日
62	統計事務連絡調整狀況報告書	〃	〃	1	〃	翌月 10 日
63	統計報告未濟狀況報告書	〃	〃	1	〃	〃
64	統計行政施策實績報告書	〃	〃	1	〃	〃
65	月別機關別確認評點狀況報告書	半年	〃	1	6,12月末日	翌月 15 日
66	月別機關別施政改善狀況報告書	〃	〃	1	〃	〃

아쉬운 편은 통계국 담당공무원이므로 이들이 各機關에서 보내오는 定例報告를 기다리지 못하고 각 관청을 찾아가서 關係官의 協助를 간청해서 겨우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월보 및 통계연감 등에 수록하였다.

현재는 각기관별로 자체의 定例報告制度가 定着되었고, 또 報告資料의 電算化와 각 기관나름대로의 定期刊行物 發刊 등으로 官廳(行政)統計는 協助體制가 잘되어 있다.

統計關係法令은 그후 더욱 發展하여 開發年代인 60年代를 통하여 統計法에 의한 施行令, 施行規則 등이 속속출현하면서 각종 조사의 報告義務, 發表節次, 調査內容의 調整業務 등이 規定되었다.

※ 統計報告規程關係

1) 報告例(內務部訓令第39號) 1952. 6.25
2) 法院統計規程(대법원규칙 제62호) 1959.11.10
3) 定例報告規程(國務院訓令第180號) 1960.12.31
4) 法院統計規則(大法院規則 第117號) 1962. 4.14

5. 統計活動의 擴散

가. 總人口調査를 통한 統計振作

戰後處理가 進行되면서 時宜에 맞추어 1955年 1960年度 總人口調査를 實施하였다.

1955年度의 調査는 正規 總人口調査사이의 中期에 해당하기 때문에 政府樹立以後의 「第1回簡易總人口調査」라 하였는데 이는 4282(1949)年의 人口調査法에 根據하여 4288(1955)年 6月 8日字 大統領令 第1,033號인 「第1回簡易總人口調査令」과 同年 7月 7日의 內務部令 第47號 「第1回簡易總人口調査規程」을 制定하여 본래는 1955年 6月 30日 零時를 期하여 實施하려던 것을 實行은 同年 9月 1日零時를 기하여 하였다. 조사사항은 姓名과 性別, 年令, 職業, 學歷, 住居狀況 및 農·非農家 區分 등 12個 項目이었다. 이때의 總人口가 21,526.4천명으로 1949年 5月의 南韓總人口 20,188.6천명보다 6년간에 불과 6.6%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總人口調査의 推移

調 査 時 期	總人口數(명)	期間中增加率(%)	備 考
1944年 5月	15,879,110	—	「臨時戶口調査」의 南韓分推定
1947年 5月	19,886,234	25.24	過渡政府의 「國民登錄調査」
1949年 5月	20,188,641	1.52	「第1回 總人口調査」
1955年 9月	21,526,374	6.63	「第1回簡易總人口調査」
1960年 12月	24,989,241	16.08	「人口 및 住宅國勢調査」

正規調査인 「1960年度 人口 및 住宅 國勢 調査」도 역시 人口調査法을 근거로 하되 1960年 11月 3日字 國務院令 第91號 「國勢調査令」에 의하여 1960年 12月 1日 零時를 期하여 實施되었다. 1955年度 調査나 그 以前의 어느 總人口調査에 비해서

도 正規調査로서의 準備도 2年餘에 걸쳐 철저히 하였고 더욱이 1959年에 설치한 國勢調査委員會의 寄與가 至大했던 만큼 비교적 完璧한 調査 되었고 調査以後에 실시한 404個標本調査區에 대한 事後調査와 IBM統計機械에 의한 集計業務 등으로 總人口調査에 관한 한 初期의 成功事例가 되고 있다.

이때의 調査 總人口數는 24,989.2천명이었다.

統計調査에 의한 總人口調査 以外에도 行政報告에 의한 年末常住人口調査는 前述한 바와 같이 戰爭이 小康狀態에 들어선 1952年에 일단 실시하였으나 1953,54年은 中斷하였다가 1955年부터 再開하였다. 또 人口의 出生, 死亡 및 婚姻關係를 보는 動態調査도 1952年부터 시작하여 1954年 1月과 1955年 6月에는 「人口動態調査令」과 「人口動態調査令施行規則」(書式)을 改正하면서 調査의 實效性을 提高하였다.

6·25事變 被殺者 및 被拉者 申告數(名單調査)

	被殺者[1]				被拉者				合計	
		%	男	女		%	男	女		%
總數	59,964	100.0	44,008	15,956	82,959	100.0	81,369	1,590	142,923	100.0
서울	1,383	2.3	1,160	223	20,517	24.7	19,982	535	21,900	15.3
京畿	2,536	4.2	2,373	163	15,958	19.2	15,870	88	18,494	12.9
忠北	633	1.1	575	58	6,168	7.4	6,155	13	6,801	4.8
忠南	3,680	6.1	3,476	204	9,973	12.0	9,624	331	13,653	9.6
全北	5,603	9.3	4,394	1,209	7,013	8.5	6,592	421	12,616	8.8
全南	43,511	72.6	29,565	13,946	3,555	4.3	3,506	49	47,066	32.9
慶北	628	1.05	586	42	7,486	9.0	7,396	90	8,114	5.7
慶南	689	1.15	662	27	1,815	2.2	1,807	8	2,504	1.8
江原	1,216	2.0	1,139	77	10,429	12.6	10,404	25	11,645	8.1
濟州	23	0.04	18	5	45	0.05	15	30	68	0.05
鐵道警察	62	0.10	60	2	—	—	—	—	62	0.04

註 : 1) 1952년 3.31 현재 : 군경을 제외한 공무원과 민간인

資料 : 公報處 統計局

六·二五 事變被害(1950. 6.25～1953. 7.27間)

	總數		負傷		死亡 및 失踪						資産被害額	
							死亡	虐殺	行方不明	拉致		
	(人)	%		%		%					(백만환)	%
總數	990,968	(100.0) 100.0	229,625	(23.2) 100.0	861,343	(86.9) 100.0	(24.7) 244,663	(13.0) 128,936	(30.6) 303,212	(8.5) 84,532	410,590	100.0
서울	129,908	13.1	34,680	15.1	95,228	11.1	29,628	8,800	36,062	20,738	185,076	45.1
京畿	128,740	13.0	25,479	11.1	103,261	12.0	39,728	7,511	39,965	16,057	39,985	9.7
忠北	70,003	7.1	12,658	5.5	57,345	6.7	24,320	3,409	23,304	6,312	12,834	3.1
忠南	75,409	7.6	20,290	8.8	55,119	6.4	23,707	5,561	15,829	10,022	19,084	4.6
全北	91,861	9.3	15,364	6.7	76,497	8.9	40,462	14,216	14,609	7,210	11,436	2.8
全南	193,788	19.6	52,168	22.7	141,620	16.4	14,193	69,787	53,469	4,171	20,069	4.9
慶北	97,851	9.9	21,061	9.2	76,790	8.9	35,485	6,609	27,112	7,584	58,590	14.3
慶南	72,306	7.3	32,417	14.1	39,889	4.6	19,963	6,099	11,986	1,841	45,621	11.1
江原	130,777	13.2	15,483	6.7	115,294	13.4	17,122	6,825	80,819	10,528	17,869	4.4
濟州	325	0.03	25	0.01	300	0.03	55	119	57	69	28	(0.006)

資料：大韓民國 統計年鑑 4286年板, 內務部 統計局

무엇보다도 6.25戰亂中의 被害狀況과 그 復舊對策을 重視하던 當時로서는 人力과 財産의 실제적인 被害調査를 서둘렀다. 이에 公報處 統計局 當時인 1952年에는 3月 31日現在로 動亂中 被殺者와 被拉者를 申告받아 이의 集計를 공표하고 아울러 그 名簿까지 作成하여 休戰會談에서의 對北提案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1953年과 1954年에도 動亂中 人命과 財産上의 被害狀況에 대한 全般的 調査를 하여 그 결과를 1954年과 1955年에 發表하였다.

勞動力調査는 過渡政府때의 勞動部 統計管官室과 庶務處 統計署 그리고 政府樹立 以後에는 社會部 또는 保健社會部의 勞動局 調査指導課 등에서 勞動統計에 관한 調査報告書－統計刊行物을 편찬 發表하였다. 그러나 中央統計局에서도 勞動力調査를 統計的 方法에 의한 體系를 구축하려고 硏究하면서 1956年 11月부터는 調査員(38名)과 集計員(3名)을 두고 試驗檢査를 하였다. 그리고 1957年 6月 24日字 大統領令 第1,284號로 調査構圖를 갖추게 되었는바 이에 의한 調査는 1962年 5月까지 지속하였다. 1962年 8月부터는 「經濟活動人口調査」로 改編하여 年4回의 標本調査에 의한 就業 및 失業實態의 調査統計資料를 供給하고 있다.

나. 産業經濟와 關聯된 統計

1960年의 總人口調査는 당시에 國勢調査의 이름으로 實施되었는 바 農業分野의 國勢調査도 1958年부터 準備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1961年 2月 1日에 實施하였다. 이로써 農業的 生産基盤을 總量規模로 把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農林部는 이보다 앞서 政府樹立과 同時에 各種 農業施策을 展開하면서 農業生産에 관한 行政統計를 持續的으로 維持하면서 특히 農家戶數와 人口 및 糧穀作物, 畜産物 등에 관한 것을 農林基本統計로 年·月報로 發表하여 왔었다. 그중에서도 農産物 生産에 관한 調査技法이 定着하기 이전인 그 당시만 해도 收穫高의 推計精度를 높이는 것이 農政當局과 統計專門人들의 最大關心事였다. 그에 따라 行政統計를 補完히고 뒷받침할 調査統計技法의 開發이 要請되고 있었다.

1953年 7月에는 農林部와 韓國銀行調査部門에 合同으로 農村實態調査를 1年間 實施하였고 그 뒤에 1954年 7月부터는 農林部가 獨自的으로 農家經濟調査와 農産物 生産費調査등을 標本調査法에 의하여 實施하였다.

農家經濟調査는 1962年 12月부터 韓銀 및 農協 등과 協同으로 實施함으로써 調査體系를 定立하여 相當水準의 組織的 調査로 發展시켰다. 그밖에도 農林部 糧政課의 食料品消費調査와 漁政課의 漁家經濟調査 등은 50年代까지 農林部가 遂行한 統計開發實績의 하나로 特記할 수 있다.

한편 農業銀行에서도 1958年부터 農村物價調査와 함께 農家經濟 및 特作物에 관한 各種 調査를 實施하다가 그것들은 1961年 7月 29日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調査部 등으로 承繼되었다(이해에 1957年에 別途로 設立된 農業銀行과 農業協同組合이 併合됨).

農業部門以外의 産業經濟活動과 關係되는 統計로서는 前述한 바와같이 建國以來 商工部에서 輸出入統計(去來基準)와 生産에 관한 行政統計를 내었으나 이를 1961年 5月 29日부터는 工産品生産申告制(商工部公告 2,702號)에 의하여 每月申告로 接受하였다.

韓國의 産業經濟統計는 1950年 6月에 設立한 韓國銀行의 調査部에서 金融·財政

政策의 基礎資料로 必要한 各種 調査를 實施한 것이 韓國統計發展을 促進하였다. 1952年부터는 이미 2月에 基本的 産業調査에 着手하면서 散失된 主要統計의 蒐集作成을 準備하고 있었다.

1953年 7月에 休戰이 되면서 經濟復興事業이 本格化하자 金融·財政, 通貨, 物價關係는 물론 鑛工業經濟의 現況이나 貿易去來 그리고 都市勞動者家口와 農家의 經濟調査까지 하였다.

1954年 4月에 이들을 集約한 「産業總覽」을 發刊하고 1955年에는 「經濟年鑑」을 發刊하면서 「第1回鑛工業統計調査」(産業총조사의 嚆矢)를 實施하였다.

産業統計調査의 始發은 韓銀調査部에서 1954年 1月에 「生産企業體名簿」作成에서 發進하여 그해에 商工部와 協同하여 「主要企業體實態調査」를 實施한 것이다. 그리하여 1955年에 韓國最初의 鑛工業總調査(센서스)를 實施하였던 바 이때만 해도 그것은 事業體數調査 中心이었으므로 生産額調査는 包含하지 아니하였다. 이 調査는 1958年과 1960年에 産業銀行으로 移管되어 實施되었고, 1963年과 1966年에는 經濟企劃院과 産業銀行의 共同調査로 되면서 業種別 生産額과 就業者數 등도 調査하였다.

韓國銀行은 또 1956年에 「建築物建築許可統計」를 編制하였고 韓國에서는 최초의 賃金과 勞賃에 관한 指數인 「鑛業 및 製造業生産從業員의 月給與額 및 出動日數」를 調査하였으며 나아가 1957年 8月에는 「産業生産指數」를 編制하기 시작하였다. 韓國銀行은 이 指數를 1961年과 1963年에 改編하였고 1963年에 이를 産業銀行으로 移管하였다. 이 作業은 1967年부터 統計廳으로 承繼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韓銀은 또 1961年에 實施한 農業센서스에도 參與하였고 같은 해부터 「企業經營分析」(1960年度分)을 實施하였다. 그러다가 1962年에는 統計法이 制定되면서 都市家計와 農家經濟調査, 消費者物價指數 編制같은 것도 政府로 移管하였다.

韓國銀行이 初期에 遂行한 이러한 多方面의 統計調査活動은 韓國의 國民計定統計 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다.

韓國에서는 日帝末期와 美軍政時代를 통하여 國民所得推計를 위한 試圖가 있었고 政府樹立以後에도 財務部를 비롯하여 몇몇 機關에서 이의 準備까지 着手하였던 것이며 一部 外援機關에서도 이에 關心을 두고 있던 차에 6.25動亂을 맞이하였다.

그뒤 1951年 10月에는 당시의 企劃處와 財務部 및 韓銀이 合同으로 「國民所得調査委員會」를 構成하였고, 이들의 作業結果로 1952年 1月에 韓國 最初의 「國民所得推計」(1951年分)를 發表하였었다. 그러면서도 韓銀은 一部에서 自體作業을 통하여 産業別國民總生産에 관한 1948~52年度分 推計資料를 非公式的으로 發表한 바가 있었다. 또한 1952年 중에 여러가지 産業關係 調査를 着手하면서 各種 統計系列을 갖추게 되자 國民所得推計에 관한 技法을 硏究發展시켜 1954年 3月에는 1952, 53, 54年度의 國民所得 推計値를 發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56年에는 復興部 企劃局과의 協議및 協助過程을 거쳐 「1953~55會計年度의 市場價格에 의한 國民總生産」을 推計하였다.

이윽고 1957年에는 國民所得推計機關으로 韓國銀行이 公式指定되자 1958年부터 GNP를 公式推計하기 시작하였다.

韓國銀行은 그밖에 1954年 10月부터 「韓國經濟圖表」를 作成·發表하여 50年代를 통하여 持續하였다.

끝으로 國民經濟計算의 白眉라 할 産業關聯表를 作成하게 되는데 이는 본래 1958年에 復興部內의 産業開發委員會에서 試作한 바 있었으나 5·16軍事革命 以後에 最高會議에서 經濟企劃院으로 하여금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立案토록 命令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韓國銀行에 대해서는 GNP推計와의 連繫關係를 考慮하여 産業關聯表 作成을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 韓銀에서는 經濟開發計劃의 部門에 따라 43個部門의 1960年表와 1963年表를 作成하였다.

韓國銀行의 國民計定은 뒤에 資金循環表와 國際收支計定表로 擴張되었다.

한편 休戰以後 經濟復興機關으로서 1954年에 設立한 韓國産業銀行도 各種 統計調査를 實施하여 이를 「産業銀行月報」에 發表하고 産業生産指數, 鑛工業센서스 등 各種 産業統計를 改善發展시키는 한편 1955年에는 「韓國産業經濟十年史」를 刊行함으로써 이무렵의 韓國經濟實情把握을 위한 基礎文獻이 되게 하였다.

韓國은 6.25動亂등 與件이 不安한 狀態에서도 人力과 資金力의 限界를 克服하여 上記 各種 統計調査活動과 行政報告統計를 갖추어 나아갔고 1950年代에 이미 相當量의 統計系列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各種統計刊行物로 發表하였다.

50年代의 統計를 集約한 「大韓民國統計年鑑」에서 그 創刊號(公報處 統計局:1952

年版, 1954年刊)와 同 第4回(1957年版刊:內務部 統計局)分의 統計目次를 보면 다음과 같다.

初期統計年鑑의 統計表目次

가. 創刊號(1954年刊)

Ⅰ. 土　地

1. 大韓의 位置
2. 大韓의 面積
3. 南韓의 面積
4. 道 行政區劃
5. 南韓의 行政區域
6. 國　有　地
7. 南韓의 國有地
8. 民　有　地(其一非課稅地)
9. 民　有　地(其二課稅地)
10. 南韓의 民有地(其一非課稅地)
11. 南韓의 民有地(其二課稅地)

Ⅱ. 氣　象

12. 平均氣壓
13. 高極氣壓
14. 低極氣壓
15. 平均氣溫
16. 平均最高氣溫
17. 平均最低氣溫
18. 高極氣溫
19. 低極氣溫
20. 平均濕度
21. 最少濕度
22. 平均風速度
23. 最大風速度
24. 降水量
25. 最大降水量

Ⅲ. 人　口

26. 家口 및 人口
27. 市郡別人口
28. 職業別人口(4285年 3月末)
29. 職業別人口(4282年 5月 1日)
30. 年齡階級別人口(4285年 3月末)
31. 年齡階級別人口(4282年5月1日)
32. 母의 年齡 및 出產順 別出兒數
33. 年齡別死亡者數
34. 出生·死亡·死產,婚姻 및 離婚數
35. 出生兒數
36. 死產數
37. 原因別死產數
38. 婚姻件數
39. 夫妻相互間年齡別 婚姻數
40. 離婚件數
41. 夫妻相互間年齡別 離婚數

42. 外國人分布狀況
43. 日本居留韓國人分布狀況
44. 在日韓國人強制送還狀況
45. 在韓日本人送還狀況

Ⅳ. 農家 및 畜産

46. 農家戶數, 人口 및 耕地面積
47. 畓水利面積
48. 桑田面積
49. 米穀및 麥類收穫高
50. 豆類收穫高
51. 雜穀類收穫類
52. 特用作物收穫高
53. 菜蔬類收穫高
54. 果樹類收穫高
55. 家蠶生産高
56. 家畜類
57. 米穀및麥類買上實績
58. 藁工品買上實積
59. 水利狀況

Ⅴ. 林業

60. 林野面積
61. 林野蓄積
62. 立木長生狀況
63. 製材品生産量
64. 木材以外의 林産物生産量
65. 丸木, 薪炭, 其他用材生産量

Ⅵ. 水産業

66. 水産業者戶口및人口
67. 魚種別漁獲高
68. 品種別製造狀況
69. 水産養殖
70. 型別漁船隻數
71. 水産團體別噸數別漁船隻數

Ⅶ. 鑛工業

72. 鑛物生産
73. 石炭生産 및 輸入量
74. 石炭貯蓄量
75. 國有炭鑛出炭量
76. 工業生産
77. 石油類配定
78. 石油類消費量

Ⅷ. 電氣 및 瓦斯

79. 發電量
80. 電力供給
81. 火力發電用石炭消費量
82. 電氣機器生産
83. 瓦斯事業

Ⅸ. 專賣

84. 煙草耕作人分布狀況
85. 煙草耕作分布狀況
86. 葉煙草收納狀況
87. 煙草罹災및補償金支給狀況
88. 煙草耕作用 資金融資狀況
89. 煙草製造實績

90. 塩生産實績
91. 水蔘收納및製造狀況

X. 運送 및 遞信

92. 營業線路線數延長
92. 旅客運送人員및 延人員
94. 貨物輸送톤數및延톤수
95. 鐵道旅客運輸收入
96. 鐵道貨物運輸收入
97. 主要貨物別鐵道輸送
98. 登錄船舶
99. 國別港別船舶入港
100. 國別港別船舶出港
101. 月別船舶入出港
102. 港灣別品目別貨物및旅客壽輸送
103. 主要貨物別海運實績
104. 軌道運輸
105. 電車運輸
106. 自動車臺數
107. 電話度數 및 料金
108. 電報通數 및 料金
109. 國內郵便物數
110. 外國郵便物數
111. 小包郵便物數
112. 郵便貯金
113. 郵便爲替(換金)
114. 振替貯金
115. 國民生命事業

XI. 貿易

116. 輸出入許可狀況(總括)
117. 輸出許可狀況
118. 輸入許可狀況
119. 輸出入品總價格
120. 國別 및 港別輸出品價格
121. 國別 및 港別輸入品價格
122. 月別輸出入品價格
123. 類別輸出入品價格
124. 港別稅關收入額
125. 糧穀 및 砂糖輸入實績

XII. 物資導入 및 需給

126. C.R.I.K.物資導入
127. S.E.C.物資導入
128. 先導價格
129. 重要物資配給狀況

XIII 通貨 및 金融

130. 韓國重要經濟指標
131. 銀行券發行高
132. 銀行券券種別發行高
133. 通貨量
134. 外換保有高
135. 對美弗換率
136. 金融機關店舖數
137. 全國銀行資產計定
138. 全國銀行負債計定
139. 全國銀行預金受拂狀況

140. 預金 및 貸出狀況
141. 都市別預金 및 貸出金狀況
142. 手形交換高
143. 手形不渡高
144. 金融機關貸出金與收狀況
145. 金融機關預金者別預金計定
146. 金融組合預金受拂狀況
147. 大韓金融組合聯合會資產計定
148. 大韓金融組合聯合會負債計定
149. 無盡會社契約狀況및諸計定
150. 損害保險會社事業概況
151. 損害保險會社資金運用狀況
152. 國債分布狀況
153. 國債消化狀況
154. 通貨措置總括實績
155. 金額別地域別申告內譯
156. 申告者別內譯

XIV. 物價 및 生計

157. 全國小賣物價指數
158. 主要都市小賣物價地差指數
159. 料金指數
160. 生計費調査

XV. 勞動 및 賃金

161. 職業別失業者數
162. 企業體從事員數 및 勞動組合數
163. 都市別勞動賃金
164. 釜山市勞動賃金

XVI. 財　政

165. 歲入歲出豫算年次比數
166. 檀紀四二八四年度歲入決算
167. 檀紀四二八四年度歲出決算
168. 財政資金(國庫金)受拂概況

XVII. 歸屬財產

169. 歸屬財產處分狀況
170. 歸屬財產貸貸料및賣却代金徵收狀況
171. 歸屬農地償還 狀況
172. 分配農地償還 狀況

XVIII 公務員 및 選擧

173. 國家公務員
174. 地方公務員
175. 敎育公務員
176. 辯護士數
177. 大統領選擧狀況
178. 副統領選擧狀況
179. 第一回國會議員選擧狀況
180. 道議會議員選擧狀況
181. 道議會議員當選者(所屬別政黨및社會團體別)
182. 道議會議員當選者(年齡別)
183. 道議會議員當選者(職業別)
184. 市邑面議會議員選擧狀況
185. 市邑面議會議員當選者(所屬別政黨및社會團體別)

186. 市邑面議會議員當選者(年齡別)
187. 市邑面議會議員當選者(職業別)
188. 市議會議員選擧狀況
189. 市議會議員當選者(所屬別 政黨및社會團體別)
190. 市議會議員當選者(年齡別)
191. 市議會議員當選者(職業別)
192. 邑議會議員選擧狀況
193. 邑議會議員當選者(所屬別 政黨및社會團體別)
194. 邑議會議員當選者(年齡別)
195. 邑議會議員當選者(職業別)
196. 面議會議員選擧狀況
197. 面議會議員當選者(所屬別 政黨및社會團體別)
198. 面議會議員當選者(年齡別)
198. 面議會議員當選者(職業別)

XIX. 敎　　育

200. 全國各學校學生數
201. 全國級學校卒業生數
202. 大學校狀況
203. 師範學校狀況
204. 高等學校狀況
205. 中學校狀況
206. 國民學校狀況
207. 大學校學科別學生數
208. 師範學校學年別學生數
209. 高等學校學科別學生數

XX. 衛生 및 厚生

210. 醫療機關設置狀況
211. 醫療機關從事員分布狀況
212. 重要死因別死亡者數
213. 死因및年齡別死亡者數
214. 結核死亡者數
215. 法定傳染病에 依한 死亡者數
216. 急性傳染病發生·死亡者數및率
217. 豫防藥生產現況
218. 癩療養所및收容者數
219. 衛生作業實績
220. 豫防注射人員數
221. 海港檢疫
222. 海港防疫措置
223. 海港檢疫傳染病患者發生數및死亡者數
224. 衛生關係業者數
225. 接待婦檢診成績狀況
226. 罹災民救療實績
227. 寡婦및其兒童數
228. 厚生施設收容人員數
229. 避難民救護狀況
230. U.N救護物資配定
231. 救護糧穀配當狀況
232. 國民住宅建築資料割當狀況
233. 三八以北避難民道別分布狀況

XXI. 警察·司法 및 災害·事故

234. 犯罪檢擧數및 送致狀況
235. 變　　死(月別)
236. 變　　死(道別)
237. 財產犯罪被害
238. 財產犯罪檢擧
239. 警察上救護(月別)
240. 警察上救護(道別)
241. 檢事搜査犯罪事件
242. 少年犯檢査搜査事件
243. 少年院委託年齡別收容및出院
244. 少年院保護少年收容및出院
245. 刑務所別在所者人員數
246. 各刑務所在所者數
247. 交通事故
248. 火災發生概況

XXII. 六·二五動亂 被害

249. 人命被害
250. 歸屬財產被害
251. 部處別被害
252. 官公署및公營建物被害
253. 一般企業體建物被害
254. 部門別一般企業體建物被害
255. 一般企業體施設被害
256. 一般住宅被害
257. 各學校被害
258. 宗教團體所屬建物被害
259. 港灣施設被害
260. 土木施設被害
261. 砂防施設被害
262. 上水道施設被害
263. 國寶古蹟被害
264. 家畜被害

XXIII. 國際統計

265. 面積 및 人口
266. 通貨供給量
267. 中央銀行割引率
268. 外換率
269. 國民所得
　A. 推計國民所得
　B. 產業源泉別國民所得
270. 輸出入額
271. 輸出入數量指數
272. 輸出入單價指數
273. 生計費指數
274. 都賣物價指數
275. 工業生產指數
276. 戰後世界鑛工業生產增加率
277. 失業者數

附錄

度量衡換算表

나. 第4回(1957刊)

Ⅰ. 土地

1. 大韓民國의 位置
2. 大韓民國의　面積
3. 行政區域
4. 國有地
   A. 全國國有地
   B. 南韓의 國有地
5. 民有地
   A. 全國民有地(非課稅地)
   B. 南韓民有地(非課稅地)
   C. 全國民有地(課稅地)
   D. 南韓民有地(課稅地)

Ⅱ. 氣　象

6. 測候所의 位置
7. 天氣日報
   A. 快晴日數
   B. 曇天日數
   C. 降水日數
   D. 暴風日數
8. 平均氣壓
9. 高極氣壓
10. 低極氣壓
11. 平均氣溫
12. 平均最高氣溫(℃)
13. 平均最低氣溫(℃)
14. 高極氣溫(℃)
15. 低極氣溫(℃)
16. 最少濕度(%)
17. 平均濕度(%)
18. 日照時數(%)
19. 平均風速度(m/s)
20. 降水總量(mm)

Ⅲ. 人　口

21. 全國人口總括表
22. 年齡別 人口
23. 年齡別人口比率
24. 教育程度別人口
25. 教育程度別1人口比率
26. 產業別人口
27. 產業別人口比率
28. 勤勞狀況別人口및比率
29. 全國區市郡總人口表
30. 全國市別人口
31. 邑人口
32. 出生, 死亡, 死產, 婚姻및離婚數
33. 出生兒數
34. 母의年齡및出產順別出生兒數
35. 死亡者數
36. 死產數
37. 月別婚姻件數
38. 夫妻相互間年齡別婚姻數
39. 月別離婚件數
40. 夫妻相互間年齡別離婚數

41. 人口動態
42. 人口分布의 變遷

Ⅳ. 農　業

43. 營農家非農家別家口및比率
44. 業態別農家戶數
45. 耕作規模別農家戶數
46. 農家戶數人口및耕地面績
47. 國籍別農家戶數및農家人口數
48. 耕地面績
49. 農產物總生產高(粗穀)
50. 農產物總生產高(精穀)
51. 米穀收穫高
52. 麥類收穫高(粗穀)
53. 麥類收穫高(精穀)
54. 豆類收穫高
55. 雜穀收穫高(粗穀)
56. 雜穀收穫高(精穀)
57. 署類收穫高
58. 果實收穫高
59. 菜蔬收穫高
60. 特用作物收穫高
61. 桑田面積
62. 家蠶生產高
63. 生絲生產高
64. 糧穀輸入實績
65. 政府의 米穀및 麥類買上實績
66. 秋穀收納實績
67. 麥類收納實績(精穀)
68. 家畜類
69. 水利組合設置狀況

Ⅴ. 林業

70. 林相別林野面積
71. 所有別林野面積
72. 林野蓄積
73. 所有別林野蓄積
74. 造林狀況
75. 林產物生產
76. 樹苗表
77. 砂防事業實績

Ⅵ. 水產業

78. 養殖高·製造高·漁獲高·漁業者戶口및
    船舶數總括表
79. 水產養殖
80. 地方別漁獲高表
81. 製造高表

Ⅶ. 鑛業

82. 鑛業總括
83. 鑛業및製造工業
84. 鑛業從業員數
85. 鑛業事業體數
86. 鑛業및製造業體數
87. 鑛業事業體의 給與支拂總額
88. 鑛業및 製造事業體의 給與支拂

總額

89. 鑛業및 製造業從業員數

90. 石炭生產量

91. 石油類販賣量

92. 石炭生產및 輸入量

93. 石炭貯藏量

94. 油類配定

Ⅷ. 製造工業

95. 製造業總括

96. 製造業事業體數
(常時從業員數別)

97. 製造業從業員數
A 道別
B 市區別

98. 製造業事業體의 給與支拂總額
A 道別
B 市區

99. 重要工業生產量

100. 電氣機械器具生產

101. 製造業種要製品生產量

Ⅸ. 建設工業

102. 住宅實態

103. 主要都市建築物建築許可統計
A. 用途別
B. 資材別

104. 水道施設狀況表

105. 道路狀況表

106. 道路建設

107. 橋梁建設

Ⅹ. 電　氣

108. 年次別發受電力量

109. 水火力發展計劃과 實績

110. 發電所發電計劃과 實績

111. 發電所別負荷實績

112. 年次別供給電力量

113. 需用家別電氣供給電力量및 損失電力量

114. 種別需用電力量

115. A. 需用家數(戶)
B. 燈數및契約容量

Ⅺ. 專賣

116. 煙草耕作分布

117. 煙草耕作人分布

118. 葉煙草收納

119. 製造煙草生產및 販賣

120. 鹽田製造業者分布生產販賣狀況

121. 官署鹽田面積및 製鹽生產量

122. 民製鹽業者數및 面積

123. 官署別民製鹽生產量

124. 人蔘耕作및收納

Ⅻ. 運　輸

125. 營業線路線數別延長

126. 線別驛數및 營業表

127. 機關車保有量

128. 客貨車保有量
129. 客貨車運用狀況
130. 機關車客車貨車修理狀況
131. 線別 主要貨物輸送
132. 主要貨物品目別運數實績
133. 電車運輸
134. 軌道運輸
135. 用途別自動車數
136. 自動車臺數
137. 船舶保有量
138. 登錄된 船舶
139. 噸級別船舶狀況
140. 檢査船舶및 測度船舶
141. 主要貨物別海運實績
142. 各港別入出港船舶및 貨物統計表
143. 航空輸送狀況
144. 定期旅客運航實績
145. 鐵道旅客輸送人員및延人員
146. 鐵道運輸收入
147. 民間航空輸送量
148. 自動車運輸實績

XIII. 遞　信

149. 通信機關一覽
150. 電話加入者數
151. 國內郵便物數
152. 外國郵便物數
153. 國內電報通數
154. 市外電話度數및料金
155. 遞信事業및國民生命保險收入實績
156. 郵便貯金
157. 郵便換金
158. 國民生命保險
159. 教育保險

XIV. 貿　易

160. 主要商品別外換決濟額
161. 輸入許可(民間)
輸入許可(政府民間總數)
162. 輸出許可(民間)
輸出許可(政府民間總數)
163. 港別輸出入額
164. 港別輸出入톤量
165. 主要商品別輸出量및金額
166. 主要商品輸入量및金額
167. 商品類別輸出入額
168. 主要國別輸出入額
169. 港別貿易船入港實績

XV. 金　融

170. 主要經濟指標
171. 通貨量
172. 通貨量增減의 主要原因
173. 銀行券券種別發行高
174. 當座預金回轉率(一般銀行)

175. 韓國銀行計定
176. 韓國產業銀行計定
　A. 資　　產
　B. 負　　債
177. 一般銀行計定
　A. 資　　產
　B. 負　　債
178. 大韓金融組合聯合會計定
　A. 資　　產
　B. 負　　債
179. 金融組合計定
　A. 資　　產
　B. 負　　債
180. 農業銀行計定
　A. 資　　產
　B. 負　　債
181. 金融機關部門別預金
182. 金融機關部門別貸出金
183. 道別預金및貸出金
184. 主要都市別預金및貸出金
185. 手形交換高및 手形不渡高
186. 對美弗換率
187. 金및外換保有高
188. 韓國銀行外國部外債資產
189. 韓國銀行外國部外債負債
190. 外換受拂狀況
191. 國別輸出入決濟
192. 貿易外收支

XVI. 物　　價

193. 全國小賣物價指數
194. 서울釜山小賣物價指數
195. 各地小賣物價指數
196. 서울市都賣物價指數
197. 各地生活必需品小賣價格
198. 九個都市重要商品小賣價格
199. 主要都市小賣物價地域差指數
200. 先導價格
201. 서울釜山生活必需品小賣價格指數
202. 서울料金및料金指數

XVII. 生　　計

203. 서울特別市生計費
　A. 總平均
　B. 俸給生活者
　C. 勞動者
204. 地方生計費總平均
205. 糧穀保有量및消費量(서울)
206. 勤勞者生活費實態狀況
207. 農家收支

XVIII. 賃　　金

208. 서울勤勞賃金產業別平均指數
209. 서울職種別總平均勞動賃金
210. 主要都市日傭勞動賃金

XIX. 勞動 및 社會

211. 靜養院生勤態및 治療狀況

212. 靜養院生授職輔導,
修了者就職斡旋
213. 年金申請取扱
214. 年金給與對象者現況
215. 醫療援護實績
216. 救護糧穀配付
217. 軍事援護實績
218. 職業紹介所
219. 勞動組合申告設立및取消變更
220. 產業別疾病者狀況
221. 產業別事業體數및從業員數
222. 產業別保健厚生施設狀況
223. 產業別勞動者分布에 依한
事業體및從業員數
224. 產業別勞動組合數및
勞動組合員數

XX. 財　政

225. 各會計別豫算執行및　資金經理
狀況統計表
256. 歲出豫算額및 實績表
227. 4288年度　一般會計各部處別歲
入歲出(純計)
228. 4288年度　各特別會計歲入歲出
(純計)
229. 國債分布狀況
230. 外國援助受入總括表
231. ICA援助受入狀況
232. UNKRA援助受入狀況
233. 國立劇場特別會計歲入歲出(項
目別)
234. 經濟調整特別會計歲入歲出(項
目別)
235. 產業復興國債金特別會計歲入歲
出(項目別)
236. 國民生命保險및郵便年金特別會
計歲入歲出(項目別)
237. 通信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項
目別)
238. 交通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項
目別)
239. 農地改革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
(項目別)
240. 糧穀管理特別會計歲入歲出(項
目別)
241. 舊皇室財產特別會計歲入歲出
(項目別)
242. 專賣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項
目別)
243. 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歲入歲出
(項目別)
244. 一般財政歲入歲出　一般會計國
防費戰亂收拾費및 國債金 特別
會計包含
A. 項目別歲入
B. 項目別歲出

C. 所管別歲出

XXI. 公務員 및 選擧

245. 公務員(公務員總數)
246. 中央廳公務員數
A. 中央廳本部
B. 中央廳所屬
247. 地方廳公務員數
A. 特別市및道公務員數
(國家公務員)
B. 特別市및道公務員數
(地方公務員)
C. 區郡敎育區警察署및消防署
公務員數
D. 市公務員數
E. 邑公務員數
F. 面公務員數
G. 事業所公務員數
248. 學校公務員數
249. 大統領選擧狀況表
250. 副統領選擧狀況表
251. 서울特別市및道議員選擧狀況表
252. 서울特別市및道議員學歷및政黨
團體別當選者數
253. 서울特別市및道議員年齡別및職
業別當選者數
254. 市長選擧結果表
255. 市議會議員選擧投票狀況表
256. 市議會議員選擧結果表
257. 邑長選擧結果表
258. 邑議員選擧結果表
259. 面長選擧結果表
260. 面議會議員選擧結果表

XXII. 敎育 및 文化

261. 全國各學校數
262. 全國學校別學生數
263. 國民學校狀況
264. 全國中學校總集計表
265. 全國高等學校總集計表
266. 全國師範學生集計表
267. 大學校狀況
268. 公民學校狀況表
269. 技術學校一覽表
270. 中學校卒業狀況
271. 高等學校卒業狀況
272. 師範學校卒業狀況
273. 大學校卒業者狀況
274. 圖書館狀況表
275. 定期刊行物
276. 劇場狀況表
277. 國寶古蹟名勝天然紀念物狀況
278. 圖書出版

XXIII. 衛　生

279. 醫療機關
280. 醫療業者

281. 癩療養所收容中癩患者動態
282. 第一種傳染病患者發生死亡
283. 第二, 三種傳染病患者發生死亡
284. 海港檢疫
  A. 入港船舶및上陸人員
  B. 出港船舶및離陸人員
  C. 豫防措置
285. 航空檢疫
  A. 着出港航空機및着離港人員
  B. 防疫措置
286. 豫防接種
287. 衛生作業實績
288. 防疫藥品生產 및 支出
289. 醫藥品醫療用具衛生材料化粧品製造業및製品製造登錄및許可
290. 國立血液銀行事業實績
291. 接待婦檢診實績
292. 保健所事業實績狀況
293. 麻藥中毒者狀況

XXIV. 司　法

294. 登錄事件表
295. 檢查搜查犯罪表
296. 少年犯罪事件表
297. 受刑者의 出入狀況
298. 上告審民事(行政및選擇)事件表
299. 上告審刑事事件表
300. 卽決事件表
301. 第一審民事事件表
302. 第二審民事事件表
303. 第一審刑事事件表
304. 第二審刑事事件表

XXV. 警　察

305. 行旅死亡者發生狀況
306. 火災發生槪況
307. 接客營業許可狀況
308. 自動車交通事故發生狀況
309. 財產犯罪發生狀況
310. 變死者發生狀況
311. 犯罪發生狀況
  A. 發生件數
  B. 檢擧件數
312. 少年犯罪發生狀況
  A. 發生件數
  B. 檢查件數

XXVI. 國際統計

313. 世界人口推計面積및密度
314. 各國人口百萬以上의 都市
315. 敎育程度
316. 國民所得推計
317. 生計費
318. 米穀生產
  A. 主要生產國
  B. 其他生產國
319. 大麥生產

A. 主要生產國
B. 其他生產國
320. 小麥生產
A. 主要生產國
B. 其他生產國
321. 大豆生產
322. 家畜
323. 漁業
324. 貿易船舶톤數
325. 世界工業生產指數
326. 綿織纖維生產
327. 金生產
328. 鐵鑛生產
329. 銅鑛生產
330. 시멘트生產
331. 石炭生產
332. 原油生產
333. 自然가소린 生產
334. 小麥粉生產
335. 自動車生產
336. 新聞紙生產
337. 書籍發刊
附　錄
度量衡換算表
A. 메－터法基準
B. 야－드뽄드法基準
C. 尺貫法基準
換算率表

6. 統計顧問團의 活動

가. 統計顧問團의 設置背景과 主要業績

1958年에 美國의 서베이스·리써취會社(Surverys and Research Corporation)는 美政府 對外援助處(ICA)와 韓國統計의 改善에 관한 契約을 締結하였다. 이어 4月에는 美國의 對外援助處와 大韓民國 政府와의 契約에서 上記會社가 서울에 設置하는 統計顧問團이 韓國統計制度와 統計調査活動의 改善을 위하여 韓國政府에 協助토록 하였다. 當初 契約期間은 2年이었으나 3年間 더 延長하여 5年으로 되었다. 初代團長에는 Stuart A. Rice(1958. 4.23～59. 3.31), 2代는 Charles B. Lawrence(1959. 4. 1～1960.,8.25), 3代는 Stuart A. Rice(1960. 8.26～1960.12. 2)이었고 4代는 Benjamine J. Tepping(1960.12. 3～1963. 5.21)이었다. 이 統計顧問團은 戰後의 日本統計制度와 統

計調査를 再建시킨 前歷을 갖고 있었다.

當時 復興部가 美國의 對外援助處와 統計顧問團을 誘致하기 위한 契約을 交涉하는 過程에서, 한편으로 內務部 統計局은 「統計行政強化要綱」을 施行할 準備를 하고 있었던바 이 要綱을 1958年 5月 6日字로 第38回 國務會議에 上程하여 議決하였다. 이 要綱의 趣旨는 解放以來 數次에 걸친 統計機構의 變革에도 불구하고 統計事務職員의 縮小와 其他 豫算의 制約등으로 正常的인 運營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政府各機關에 分散된 統計機能을 有機的으로 綜合調整하는데 많은 隘路가 있으므로 當時 草案中인 統計法이 制定 公布될 때까지 이 「統計行政強化要綱」에 依據하여 統計機能의 強化, 統計制度와 統計調査活動의 改善 및 統計間의 綜合調整을 圖謀코자 한 것이었다.

統計顧問團이 來韓할 當時에는 人口·住宅 및 農業센서스가 1960年에 UN勸告下에 全世界的으로 實施될 豫定으로 있었으므로 자연히 1960年度 센서스의 計劃과 準備가 그들의 첫째課題였다. 到着하면서 먼저 센서스 準備事項을 檢討한 顧問團은 당시 韓國銀行에서 農業調査計劃案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餘他調査에 대한 準備가 不足함으로 보고 韓國政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建議案을 提示하였다.

1) 1960年 人口·住宅 및 農業센서스에 관한 調査票의 作成準備, 最終統計表의 作成計劃 및 集計問題등 調査의 實施計劃은 關係機關이 直接 取扱하되 關係國務委員으로 構成된 國勢調査委員會로 하여금 이를 監督하게 한다.
2) 韓國銀行이 이미 作成한 農業調査計劃은 대체로 本案대로 利用토록 한다.
3) 國內에 있는 集計機는 國勢調査委員會 事務局管轄下에 集中시켜 韓國政府는 물론 集計機를 必要로 하는 各機關이 共同으로 使用케 한다.

이러한 建議에 따라 國勢調査委員會의 設置와 同事務局의 運營方法을 內容으로 한 大統領令이 草案되었다. 國勢調査委員會의 設置로 1960年度 센서스의 諸般問題를 統御할 수 있었고 政府各部處間의 統計活動分擔을 明確하게 하고 나아가 將次 中央統計調整機關으로서의 役割도 하게 할 것을 豫定하고 있었다.

國勢調査委員會는 1958年 11月 4日字 第100次 國務會議에서 그 設置要綱이 議決되고 1959年 2月 10日字로 大統領令 第1,449號로 國勢調査委員會規程이 公布되었

다. 이 委員會의 構成은 內務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財務部, 復興部 및 保健社會部의 長官과 其他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委囑하는 人士를 包含하여 合計 9名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도록 하고 있었다. 委員會의 職務는 人口·住宅 및 農業調査의 實行計劃, 調査의 實施 및 調整에 관한 事項과 기타 政府統計에 관한 諮問에 答申하며 必要한 建議事項이나 그밖에 委員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 되어 있었다.

委員會에는 事務局을 두어 事務局長 一人과 專門委員 및 幹事 약간명을 두되 專門委員會는 센서스에 所要되는 豫算, 調査票의 作成, 保管, 分類, 集計 및 調査員의 訓練에 관한 事項등 實務的인 事務를 審議 決定하게 하였다. 이 國勢調査委員會의 機能은 1960年센서스가 끝나 統計局이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될 때 統計局으로 吸收되었다.

한편 1959年 9月에는 「中央官署統計擔當官協議會」의 規程을 만들었다. 이는 政府各部處廳은 물론 國會, 大法院, 審計院 등에서 管掌하는 統計에 관하여 相互間에 緊密한 連絡과 調整을 함으로써 正確 迅速한 統計를 期하기 위하여 內務部內에 設置하여 上述한 「統計行政強化要綱」을 中央官署水準에서 實踐하게 하는 것이다. 이 協議會는 內務部 統計局長이 會長이 되고 各院部室廳의 協議會代表者는 統計擔當官, 統計局의 課長, 統計官 및 事務官 등으로 構成하였었다. 이 機構는 統計法에 制定 公布될 때까지 持續되었다.

韓國銀行에서 計劃·準備하고 있었던 農業센서스를 農林部로 移管시키고 센서스要員은 二次에 걸쳐 統計局, 農林部 및 韓國銀行 등에서 選拔한 20名을 1959年 11月부터 1960年 7月사이에 3個月間씩 필리핀 國立大學附設統計訓練所에서 ICA資金으로 硏修하게 하였다. 이들은 「센서스 및 統計方法」, 「人口·住宅 및 農業調査」의 各 課程을 履修함으로써 實務要員으로 養成되었다.

한편 센서스後에는 資料處理要員으로서 統計局에서 25名을 選定하여 日本國 鑛濱에 있는 IBM技術訓練所에 1960年 12月 28日에 派遣하여 約 65日間의 訓練을 修習토록 하였다.

한편 資料處理機資材는 ICA資金으로 IBM會社로부터 一部는 購買하고 一部는 賃貸하였다. 이들 機資材는 당시에 美貨 405,000弗에 該當되는 것이며 其他 一般備品

및 消耗品 138,208弗과 建築資材 170,660弗도 調達하였다.

이 과정에서 統計顧問團은 1960年度센서스를 위한 要員의 海外訓練, 廳舍 및 資料處理所의 確保와 資料處理機資材의 確保 등을 側面支援하였었다. 한편 韓國政府의 各種 統計活動을 檢討하여 統計資料의 適用範圍設定과 統計의 正確性, 調査方法 및 利用 등에 관한 檢證,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統計機構 檢討, 統計行政의 改善, 統計活動의 責任分擔 및 統計調査에 관한 法令의 제정과 各部處間의 有機的인 連絡과 政府의 集計機 需要 등도 檢討함으로써 國家統計體系의 統合에 必要한 計劃을 講究하고 그 結果로서 많은 建議를 韓國政府에 提示하였다.

그들이 出刊한 對政府 建議는

1) 韓國統計의 改善策
2) 統計刊行物의 整備策
3) 統計用語集
4) 韓國의 標本調査機關
5) 韓國의 輸出入統計
6) 韓國의 都賣物價指數
7) 經濟活動의 槪念

등이다.

當時 政府는 1959年에 統計局內에 統計刊行物審議會, 1960年에는 國際統計研究委員會를 設置하여 各種 編纂資料의 審議와 韓國標準產業分類制定에 관하여 細部, 審議를 하여 왔다. 또한 人口·住宅分科委員會와 農業分科委員會 등에서도 센서스의 實務的 準備 및 施行 등에 관하여 審議하였고 이미 着手하고 있던 勞動力調査를 評價審議하기 위해 勞動力調査研究委員會도 開催하였다. 이러한 分科委員會나 小委員會에도 統計顧問團室의 諮問官이 陪席하여 有用한 諮問에 응하여 왔다. 이들 各種 分科委員會는 統計法이 公布된 以後 統計委員會內의 各 分科委員會로 吸收되었다.

나. 統計顧問團의 對政府建議

統計顧問團이 來韓하여 約2年間 韓國의 統計制度 및 統計機關의 調査活動 등을 檢討하여 얻은 結論으로서 다음과 같은 建議를 하였다.

먼저 長期的인 見地에서 韓國統計의 發展은 統計와 統計人에 대한 國民의 態度 如何에 依存한다고 할 수 있는데 政府가 國民의 여론을 引導할 수 있는 措置로서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統計機構의 改善, 둘째는 統計要員의 訓練과 報酬 및 地位 등의 改善이다. 그러면서 統計機構의 改善에는 政府組織 및 機能의 一部 變更이 수반됨을 지적하였다.

(1) 「一般目的」統計의 集中

特殊하고 制限된 行政的 目的以外에 一般目的을 지니는 統計資料는 可能한 限 早速히 統計局에 集中되어야 한다. 이러한 機能으로 統計局은 대체로 美國의 센서스局과 같이 政府全體에 대하여 하나의 奉仕機關이 된다. 따라서 統計局은 모든 週期的 센서스를 擔當하게 한다. 그러나 統計局은 調査對象과 直接的인 關係를 맺고 있는 다른 機關의 專門的 知識 및 經驗을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2) 中央標本調査機關의 創設

標本抽出에서 科學的 方法을 使用함으로써 比較的 적은 費用으로 여러 種類의 統計資料를 수집할 수 있다. 政府에서 必要한 大部分의 統計는 全數調査보다 小規模의 標本調査를 통하여 더 正確하고 效率的으로 수집할 수 있다. 統計局은 모든 政府機關과 일부 民間機關이 利用할 수 있도록 半自治的인 中央標本調査機構를 創設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中央標本調査機構의 要員은 반드시 高度의 訓練을 받은 者로 構成되어야 하고 이 訓練課程에는 標本理論 및 實驗計劃法에 관한 科目이 包含되어야 한다.

(3) 韓國統計資料處理所의 創設

1960年代센서스의 資料處理가 끝나면 韓國政府에 移讓될 現代式 IBM 施設은 統計局 製表機能의 核心이 될 것이다. 韓國統計資料處理所의 施設은 韓國行政의 모든 機關과 기타 많은 民間機關에서 統計資料의 處理에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機關도 中央標本調査機構와 같이「一般管理」의 目的을 위해서는 統計局內에 두되 半自治權이 認定되어야 한다. 이 機關도 역시 高度의 訓練을 받은 技術者로 構成되어야 한다.

(4) 農林部所管統計의 改善

農林部 農政局 調査統計課는 國家的 事業인 1960年度 農業센서스를 擔當하고 있다. 비록 以後의 모든 總調査는 統計局이 執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農林部의 調査統計課는 韓國農業의 發展에 寄與할 技術的 問題로 보아 課以上의 地位로 昇格시킬 必要가 있다. 즉, 이 課를 局으로 昇格시키든지 長官直屬下에 存置시키든지 혹은 科學的 目的에서 좀더 確然히 規定되는 農事院으로 移轉하는 形式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其他 統計機關 事務機能의 限界設定

一般的으로 制限된 行政的 目的을 위한 統計의 수집 및 分析事務는 關係部處에 殘留시켜야 할 것이나 이러한 事業을 擔當하는 機關의 事務限界는 明確히 規定되어야 한다.

(6) 統計調整 및 管理의 權限

官廳과 民間을 막론하고 모든 統計活動은 서로 連結시켜야 한다. 즉, 調整되어야 한다. 이것은 資金과 努力面에서 最大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必要한 것이다. 民間機關의 統計活動內容을 改善하도록 協議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統計調整機關의 設置가 必要한 것이다.

統計調整機關의 設置에 있어서 두가지의 方案을 提議한다. 첫째는 國務總理室 혹은 國務院 事務處에 別途의 機關을 設置하는 것이다. 이러한 機關은 英國·美國 및 日本政府의 調整機關과 비슷한 것이 된다. 第二案은 統計局에 一般統計의 事務와 同時에 統計調査의 權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方案으로는 統計局이 카나다의 中央統計局과 비슷한 機關이 된다.

(7) 國勢調査委員會를 統計委員會로 改編

1960年度센서스를 위하여 創設한 國勢調査委員會는 그 機能이 強化되고 獨立된 統計委員會로서 繼續되어야 한다. 統計調整管理機關은 統計委員會의 事務局의 役割을 擔當하게 한다.

(8) 民間의 統計事業 參與

韓國國民은 政府統計에 關心을 갖고 있다. 國民은 統計情報의 源泉이며 政府統計의 利用者이다. 國民은 그들을 代表하는 民間團體를 통하여 統計問題에 관한 그들의 意思를 發表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政府는 國民의 이러한 權利를 行使하도록 一種의 常任諮問委員會를 創設하고 또 特別公聽會를 마련하여야 한다.

(9) 統計法의 制定

健全하고 效率的인 韓國統計制度를 確立하는데 要求되는 가장 重要한 節次는 그 範圍에 있어서 카나다와 日本의 統計法과 比較될 수 있는 韓國統計法의 制定으로 마련될 수 있다.

(10) 政府統計要員의 訓練

韓國에 統計專門業이 생길 때에는 政府의 統計公務員으로 充當할 수 있는 充分한 人的資源을 養成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의 統計機關에 있는 職員의 實力을 養成하기 위한 特別한 努力이 要請된다.

最低限의 統計學修學을 規定하여 이를 統計公務員의 資格에 必須條件으로 할 수 있다.

現在 在職中인 職員들에게는 「在職者訓練」의 計劃을 마련할 수 있다.

文敎部는 統計學을 韓國의 大學校 및 各種 學校에서 하나의 重要學科目으로서 敎授하도록 장려할 수 있고 統計公務員을 希望하는 學生에게 應用統計學을 講義하도록 한다.

특히 앞서 指摘한 中央標本調査機構와 같은 統計機關의 技術的인 職位에 補職될

統計專門家의 養成을 위하여서는 優秀한 學生을 外國으로 留學시켜 그 專門分野에서의 學位를 획득하게 한다.

報酬, 階級, 賞與 및 其他 惠澤을 줌으로써 有能한 人才를 政府統計公務員으로 이끄는 誘導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다. 韓國統計에 대한 評價

統計顧問團의 活動成果는 그들의 韓國統計에 대한 評價로 集約되고 있다. 특히 1960年度센서스以後에 있었던 資料處理, 새로운 標本調査나 統計法制定以後의 統計行政體制下의 각 統計機關의 活動 등에 대하여 1961~63年間에 觀察한 사실을 토대로 내린 評價이기 때문에 將來의 韓國統計 進路에 대한 直接的인 助言과 暗示的 表現에서 그들 活動의 成果를 集約하였다고 할 것이다,

60年代初 統計顧問團의 滯韓活動과 韓國統計 評價報告資料는 1990年에 顧問團長이던 B. J. Tepping에게서 入手하여 현재 Rice Mission Document Semiannual Report (1961~63)로 보존하고 있는 바, 그러나 이 報告書는 韓國政府나 統計界에 한 것이 아니라 그들 本國의 서베이스·리서치社나 ICA에 提出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보고서를 本部에서 公式으로 採擇하였는지의 與否를 떠나 그 利用에는 建設的인 面과 否定的인 面이 있었음을 有意해야 할 것이다.

統計顧問團이 韓國統計發展에 寄與한 것은 過少評價할 수는 없다. 사실 1960年을 前後한 그 무렵의 韓國統計事情은 겨우 近代化의 문턱을 바라보는 初步的 段階였었기 때문에 理論과 實務技法 制度的 要件을 및 統計認識 全般에 걸친 그들의 各種 勸告·提案 및 指導는 바로 오늘날의 韓國統計 定着에 基盤을 提供한 것이었다. 그러나 反面 그들은 당시의 韓國統計發展段階에 관한 歷史的 背景을 度外視하였고 美國的 體質인 그들 視覺에서 韓國統計와 官僚屬性, 社會的 雰圍氣를 評價하고 있었던 것이다. 光復後 15年內外는 統計뿐 아니라 韓國社會를 近代化로 이끌기에는 一世代도 안되는 日淺한 歲月이었고 그나마 6·25動亂으로 인한 逆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였다. 統計에서 가장 중요한 調査客體도 定着되어 있지 못한 이런 雰圍氣에서 活動하면서 統計顧問團은 被援助國 統計에 대한 未備點, 不

完全性, 無責任性, 無計劃性을 집중적으로 檢討하였고 심지어 특정인사의 人身攻擊的 表現도 서슴치 않고 있었다. 반면 韓國統計의 사소한 業績도 그들의 功이었음을 이 보고서 도처에 強調해서 本部에 報告하였던 것이며 때로는 그들의 活動以前부터 獨自的으로 推進해오던 統計施策 調査活動과 統計法制定 行政統計의 發展 등까지도 그들 業績에 援用하고 있었던 것이다. 高踏的이었던 그들의 活動이 지금도 記憶에 남지만 韓國統計發展過程을 回顧하며 그들이 나름대로의 功은 있었지만 歷史的 視野는 결코 깊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統計專門家團의 韓國統計評價項目을 以下에 紹介한다.

1) 統計調整

約 2年間 그들은 韓國政府에 대해서 統計調整의 效率的인 制度를 勸告하여 왔다. 가령 1962年 1月에 公布된 統計法은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統計調整의 責任을 賦與하고 있는데 3名 乃至 5名의 有能한 統計官이 長官이 統計法上의 法的 責任을 履行해야 한다고 하였던바 歷代 長次官은 이 建議에 意見一致는 表示하였지만 實際上의 措置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統計調整의 責任은 實質的으로 統計局에 委任되어 있었고 不幸하게도 統計局과 그 要員들은 다른 機關으로부터 尊敬받은 만큼 技術的으로 充分한 能力도 없거니와 政府의 階級組織에서 높게 評價받을 位置에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統計局과 다른 統計機關과의 關係定立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初期의 統計委員會機能도 非效率的인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經濟企劃院의 一種의 行政機關으로 되버렸다는 것이다.

委員會는 1962年 下半期에 세번, 1963年 上半期에는 한번밖에 會合을 갖지 못하였다. 그나마 몇번 있었던 會合도 특별하게 實質的인 內容이 없었다는 것을 附言했다. 다만, 分科會에서는 產業分類, 職業分類, 外國貿易分類, 商品分類 및 人口統計에 관한 分科委員會 등에서 成功的인 事例가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貿易統計分科委員會는 商工部의 無關心에서 惹起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輸出資料의 申告制度에 實質的인 改善을 보았고 統計調整分野에서 相互利益問題를 論議하는 「所望스러운 徵兆」를 指摘하면서 몇차례 안되는 統計委員會의 會議에서 農林部의 農村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產費調査와 統計局의 家計調査가 指定統計가 指定되었음을 想起시켰다.

2) 統計局

1961年 7月에 內務部에서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된 이후의 統計局에 대해서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무척 否定的으로 보고 있었다. 그것은 內務部 當時의 公務員에 비하여 經濟企劃院側의 顧問團에 대한 消極的 對應에 따른 評價가 作用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 몇몇 中間層 公務員에 대한 인신매도도 서슴치 않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韓國에는 適格한 資格을 지닌 統計公務員이 없었던 것으로 비친것은 當時의 형편에서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事件만 터지면 長次官등 高位職에 接近하려다가 여의치 못하면 經濟企劃院(統計局이 아님)의 高位職에 대한 非協助를 指摘하는 습성이 보였다. 거기에다 不適格하다고 指摘한 統計公務員에 대한 人的事項도 매우 不確實했다. 60年代初에 上級統計官(課長級)이 5年間 空職으로 있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사실 60年代初만 해도 모든 統計局 公務員을 統計專門家로 充當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人的 事情이었다.

그들은 1962~63年間에 있었던 統計局의 再組織過程에서 統計局의 名稱이 調査統計局으로 改稱되면서 그들이 希望하던 調査企劃課의 設置를 당장 실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새로운 課는 政府高位官吏의 意向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고까지 하였다. 그만큼 그들의 評價는 그들의 建議案에 非協調的이면 特定人, 特定職位 내지 特定事案에 대해서 特定視覺을 보였던 것이다.

3) 센서스 資料處理

統計局에 IBM統計機械가 설치된 것은 1961年 7月이며 資料處理要員은 1961年에만 해도 2月과 7月에 걸쳐 400名이 充員되었었다. 이에 대하여 顧問團의 評價는 「利用할 수 있는 事務室空間이나 職員採用計劃에 施行이 늦어진 結果」로 資料處理를 위한 職員과 穿孔機操作員의 敎育이 1961年 7月까지도 안되고 있었다던가 後續充員計劃도 「統計局의 行政的인 混亂」으로 資料處理要員을 同年 9月에 가서 完全히 充員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統計局에서는 이미 1959年부터 資料整理要員을 日本, 필리핀등에 派遣하고 있었고 1960年에는 集計要員 蒐集節次를 完了한 狀態였던 것을 그들은 評價하지 않고 있다. 顧問團은 또 資料處理過程에서의 監督소홀과 監督要員의 責任感 缺如를 지적하면서 統計顧問團과 統計局의 實務陣間의 繼續된 議論에도「多少의 改善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農林部의 調査統計課의 不安全性때문에 農業센서스의 資料處理가 더욱 늦어진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동안에 統計局과 農林部는 理論的으로 進步된 抽出標本에 의한 製表를 準備하여 標本製表의 計劃과 標本誤差를 計算하였던 바 이를 그들 評價報告書에서는 그들의 勞苦로 詳述하고 있었다.

4) 農業標本調査

1961年 7月以來 農林部에서 실시한 준비와 農村調査는 充分한 事前調査도 없었고 또 顧問團의 諮問에 應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實施하였음을 指摘하고 있다.

農林部의 計劃不實과 그로 인한 調査規模의 事後縮小에도 現地調査活動에 대하여 監督은 不在였다고 한다. 그 이유를 調査統計課內의 人事移動에서 찾고 그것이 모든 調査의 資質을 低下시키는 一次的인 理由라고 보았다. 또한 農林部에서 收穫期末에 標本筆地에서 實施하는 米穀生產量 推定調査도 그들 顧問團이 事後에 參與함으로써 統計要員의 技術的인 能力과 農業統計의 有用性을 疑問視한다고 하였다.

1962作物統計調査年度에도 統計顧問團에게 諮問을 求하여 왔을때 印度나 日本이 겪은 몇가지 經驗을 反映시키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現地調査員이 地方公務員이고, 中央調査要員도 技術的인 能力이 貧弱하였기 때문에 現地 調査는 主로 現地調査員의 選拔과 訓練, 그들에 대한 監督 및 調査作業에 必要한 適切한 裝備의 供給들을 暗示的으로 建議하였다고 했다. 또 1963年에 몇個의 農業調査에 關與하였는데(米穀生產高調査, 麥類生產高調査, 食糧消費調査, 農家經濟調査 및 農家生產費調査 그리고 一般目的을 지니고 센서스間의 中間時點에 실시하는 農業調査등) 여기서 다시 前述한바 있는 農政局調査統計課의 機能을 注視하며 이때의 主된 결함은 技術的으로 訓練받은 專門人이 없다는 것, 그리고 要員의 能力을 改善시킬 計劃도 없었다는 등이었다.

5) 經濟活動人口調査

統計顧問團은 統計局이 勞動力調査를 廢棄하고 韓國實情에 有效한 情報가 되도록 經濟活動人口調査로 代置해야 한다고 建議하여 1962年 4月에 顧問團은 그에 관한 目標의 策定, 調査作業 및 標本設計에 參與하였다. 統計局은 이 調査를 8月과 12月에 實施해보고 앞으로는 正規的으로 4分期마다 實施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顧問團에서는 統計局의 擔當要員이 標本抽出節次, 調査票作成, 現地人力의 行政 및 資料蒐集의 技術的 側面 등을 배웠다고 생각였다.

6) 人口動態統計

人口動態統計制度의 改善에 대해서는 國民의 慣習과 姿勢를 變化시키는데 時間이 要할 것이므로 그동안의 標本調査를 實施할 것을 建議하였다. 당시 4分期마다 實施하는 經濟活動人口調査에 附隨해서 人口動態統計調査를 하고 있었으므로 動態統計의 推定値를 改善하기 위해서 標本數를 늘리고 標本家口와 자주 面接할 것을 建議하였다.

動態調査에서 登錄制度에 대해서는 登錄法에 醫師, 産婆, 看護師 및 其他 醫療人들의 申告責任을 強化하도록 建議하였다.

7) 國民總生産

國民總生産의 推計에 있어서 韓國銀行調査部가 適用하는 推計節次上 國民總生産의 基礎가 되는 基本的 資料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은 당시의 實情이었다. 顧問團은 특히 農業, 製造業 및 都小賣業등 重要部門에서 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8) 技術系人力調査

技術人力調査는 원래 1961年에 처음 經濟企劃院 技術管理局이 實施하여 그 結果를 出刊하였었다. 現地 調査作業은 高麗大學校의 몇 名의 大學敎授의 監督아래 調査가 進行되었었다. 여기서도 目的과 槪念, 用語定義와 訓練이나 經驗이 없는 面接員이 지적되었다. 그뒤 經濟企劃院 技術管理局은 統計局에게 1963年度 技術系人力

調査의 實施를 要請하였고 統計局은 質問書가 完成된 調査便覽을 提示하였다. 이 便覽과 質問書의 複寫本으로 統計局要員들과 每年 會合을 가졌으나 統計局은 獨自的으로 改定한 調査便覽을 準備하였다.

統計局이 統計顧問團의 勸告案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안 以後 顧問團은 統計局과 많은 會合을 가졌다. 論議過程에서 統計局은 고문단 권고안의 많은 部分을 採擇하기 시작하였으나 重要한 권고가 拒絶되었던 것도 言及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調査에서 韓美間의 視覺差는 많았던 것같았다.

9) 센서스統計 分析 및 센서스事後調査

調査統計局은 製表가 끝난 센서스結果의 分析에서도 統計顧問團과 步調를 같이 하지 않았다. 滿年齡의 換算이나 事後調査實施에도 方法上의 異見을 露出한 것이다. 그 결과 統計顧問團은 調査統計局이 繼續的인 督促에도 不拘하고 총조시資料의 分析을 소홀히 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심지어 農業센서스에서는 農林部도 資料分析에 아무런 計劃도 準備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10) 韓國產業銀行의 鑛工業調査

統計顧問團은 從業員 5人以上을 雇傭하고 있는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의 生產, 出荷, 附加價値, 在庫 및 勞動에 관한 月別調査의 設計에 대해서 韓國產業銀行調査部와 緊密하게 協助하였다고 했다. 韓國에서 現代的인 標本抽出原則에 依據한 產業調査의 最初의 例가 될 것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豫算上의 限界와 敎育, 監督 및 其他 및 이 作業의 質的統制에 대하여 改善할 餘地가 있다고 하였고 調査에서 蒐集된 資料를 手動으로 處理하는 期間이 約 2個月間 걸렸으므로 機械的인 製表計劃을 勸告하여 調査統計局의 資料處理所에서 集計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調査結果의 檢證에서 이의 改善計劃을 協議하는 한편 이 調査에 依據한 產業生產指數의 作成도 硏究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다른 方法으로 指數를 作成하고 있던 韓國銀行 調査部와도 協議하였다. 統計顧問團은 產業銀行 調査部 統計課에서 이 調査에 從事하고 있는 職員들은 有能하였다고 하였다.

11) 韓國統計會議

1962年 가을부터 議論되어 왔던 韓國統計會議가 1963年 5月 11日과 12日의 2日間 開催되었을 때 26名의 講演者중에 顧問團室에서도 2名이 參與하였다. 그 會議는 相當히 成功的이었다고 생각하며 會議가 끝난 後 一團의 講演者와 其他 關心있는 사람들이 統計協會의 設立을 目的으로 따로 모여서 세사람이 指名되어 組織委員會를 構成하였다고 했다.

12) 其他 活動

統計顧問團은 그밖에도 商工部의 産業調査,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農家經營調査, 調査統計局 人口統計課의 人口動態調査, 뉴욕人口委員會의 補助로 家族計劃協會가 作業하고 있는 研究事業, 調査統計局이 計劃하고 있는 家計調査및 人口, 住宅, 農業센서스의 事後調査分析 등에도 諮問하였다. 또한 東國大學校와 高麗大學校에서 統計學科의 設置와 教科課目에 대한 協議를 하였고 顧問團中의 한사람은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에서 標本抽出論에 관한 講義를 하는 한편 또 한사람은 韓國銀行 調査部에서 基礎統計學에 관한 講座를 가졌었다. 韓國政府의 公務員 3人이 2週間의 日程으로 日本 視察을 겸하여 統計調査의 問題와 節次를 研究토록 하였고 AID訓練에 參加하고자 하여 候補들을 選定하여 建議하기도 하였다.

13) 資料處理所

統計局에 現代的인 製表裝備를 補完設置한 것은, 人口·住宅 및 農業센서스의 莫大한 作業을 끝마친 後에도 政府나 其他 機關에게도 이를 活用케 하는 것이었다. 統計局 施設은 이미 韓國産業銀行, 韓國銀行, 財務部등 여러 機關에서 活用케 하고 있다. 1963年 여름以後에는 利用機關數가 더욱 擴大되리라고 期待하였는데 問題는 이들 機關間의 會計處理를 規定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顧問團은 政府의 特別措置를 促求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資料處理施設의 共同利用을 위한 綜合計劃이나 部品充當計劃 그리고 機械整備要員의 訓練과 確保에 관한 計劃등을 事前에 갖추도록 提案하였었다.

第4章 開發時代의 統計發展

여 백

第 4 章 開發時代의 統計發展

第 1 節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統計活動

1. 開發의 目標와 統計機能

가. 開發時代의 意義

5·16以後 革命政府와 그 延長線上의 第3共和政時代가 이른바 開發年代에 해당된다. 이 시대의 歷史的 特性은 革命政府에 의해서 추진된 革命的 措置로서 성격지을 수가 있다. 즉 政治的으로는 政治活動淨化法 등으로 舊時代의 政治秩序를 도태시킨 것이며 經濟的으로는 強力한 經濟開發推進에 의한 工業化 成長戰略을 추구하면서 不正蓄財處理法 등으로 상징되는 舊世代의 經濟注力基盤을 폐기시켰다. 理念的으로는 革新系와 反社會勢力등 分派要素을 除去하고자 反共法의 強化와 特定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法 등을 制定하는 한편 社會的으로 國民的 一體感 集約과 國家管理에 必要한 各種法令 制度의 정비와 時策을 講究해 나아감으로써 이를 汎國民的 近代化 運動으로 誘導하였다. 특히 近代化運動은 農村地域을 中心으로 胎動한 새마을 運動에서 보듯이 韓民族의 時代的 克服과 國民的 次元의 自覺運動으로 規定하기까지 한다.

이들 모든 것은 한마디로 國民的 近代化運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2年 12月의 第3共和國憲法制定과 1963年 12月 17日의 民政移讓으로 開發年代의 近代化運動은 지속될 수가 있었다. 그것은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1961年의 革命政府下에서 착수하여 1962年에 開始되었기 때문에 第3共和政으로 자연스럽게 인계되어 1966年까지 第1次計劃期間을 소기의 목적대로 完成하고 이어서 1967年부터 시작된 第2次計劃期間까지도 延長할 수 있었기 때문에 開發年代로 特徵지어

外資導入의 推移

(백만불)

	總 額	長 期				短 期 (純)	外換SA計定
		小 計	그 중 借 款				
				公 共	商 業		
1961	3.2	1.1	1.1	1.1	—	2.1	—
1962	31.2	6.4	6.4	6.3	0.1	24.8	—
1963	84.7	47.7	43.2	24.3	18.9	37.0	—
1964	35.0	36.5	30.2	11.1	19.1	−1.5	—
1965	19.3	48.5	39.1	11.2	27.9	−29.2	—
1966	177.0	190.9	172.5	62.8	109.7	−13.9	—
1967	297.1	217.6	217.6	79.8	137.8	79.5	—
1968	577.5	556.2	364.2	112.1	252.1	21.3	—
1969	667.7	547.6	509.0	148.1	360.9	111.8	8.3
1970	850.5	455.3	430.3	147.1	283.2	387.5	7.7
1971	983.9	791.4	644.4	323.7	320.7	179.8	12.7
合 計	3,727.1	2,899.2	2,458.0	927.6	1,530.4	799.2	28.7

註 : 長期(小計)에는 借款以外에 Bank loan, IMF資金, BOND 및 貿易信用 등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 財務部, 大韓商工會議所

지는 1960年代의 時代的 屬性을 적어도 政治的으로는 維持한 것이다.

韓國이 60年代에 들어와서 추구한 經濟政策은 50年代의 經濟再建, 經濟復舊 등 政策에서 벗어나 成長戰略을 추구한 것이며 그것을 工業化優先의 輸出產業振興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운영은 50年代의 民間主導에 의한 自由經濟體制를 政府主導의 開發政策體制로 轉換하였고, 對外經濟協力에서 지금까지의 援助財源을 止揚하고 借款 또는 外資의 導入으로, 工業化推進에 必要한 財源을 充當하며 그에 따라 市場經濟를 비록 政府主導라 할지라도 輸出產業優先戰略과 결부해서 對外開放化時代로 轉換하였다.

이로써 韓國經濟의 進路는 資本面에서는 國內貯蓄에 의한 投資源確保時까지 外資를 活用코자 한 것이고 市場問題는 國內市場의 制限을 벗어나 輸出에 의한 對外指向性, 그리고 產業構造面에서는 工業化優位를 設定해서, 이에 필요한 經濟運營 및 그 管理는 政府가 主導하는 韓國的 경제성장 패턴을 體質化한 것이다. 말하자

면 管理的 資本經濟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開化期以來 밀려든 西歐型近代國家의 資本主義經濟의 틀을 1960年代에 이르러 韓國型으로 導入·定着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점이 政治·社會·經濟面에서 「計劃的」「管理的」機能에 統計가 寄與한 바를 추구하는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開發計劃의 特徵

革命以前의 韓國經濟는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온 政治的, 社會的 不安으로 거의 수습할 수 없는 破產段階로 치닫고 있었다. 침체한 經濟로 失業者와 絶糧農家는 격증하고 農家高利債의 누증, 일부 不正축재자의 비대화 등과 이에 便乘한 각종 經濟惡과 社會不條理 現象도 나타났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과감한 經濟社會改革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革命政府는 革命公約의 하나로써 「民生苦를 시급히 解決하고 國家自主經濟再建에 總力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고 우선 經濟政策의 촛점을 여기에 맞추었다. 당시의 經濟社會改革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經濟自立과 工業化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수립,

둘째,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를 통한 國際收支의 改善圖謀

셋째, 農村高利債整理 및 農產物價格維持法의 制定

넷째, 歲入증대와 財政支出의 합리화를 위한 豫算制度 改革

다섯째,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一連의 社會制度面의 革新 등으로 구분된다.

政府는 1962년을 기점으로 하는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樹立하고 이와 아울러 政府組織法을 개정, 經濟企劃院을 설치하여 長期經濟開發計劃의 樹立과 執行을 計劃性있고 均衡있는 綜合的인 經濟行政을 맡도록 하였다.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目的은 무엇보다도 計劃性없고 均衡을 잃었던 韓國經濟에 뚜렷한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計劃의 基本目標도 經濟의 自立成長과 工業化을 위한 기반조성에 두었다. 計劃期間中의 開發優先順位는 ①電力·

石炭 등 에너지供給源의 확보 ②農業生產의 增大에 의한 農家所得의 상승과 國民經濟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③基幹產業의 확충과 社會間接資本의 충족 ④遊休資本의 活用 특히 雇傭의 증가와 國土의 보전 및 개발 ⑤輸出增大를 구축하는 國際收支의 改善 ⑥技術의 振興 등의 順이었다.

이상과 같은 開發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國內資源의 最大限의 動員과 積極的인 外資導入을 추진토록 하였다.

60年代의 開發計劃에 나타난 特徵은 과거의 각종 再建計劃들이 特定 部分에서의 目標計劃値 중심으로 設計한데 비하여 部門別 變數의 槪念이 動員된 것이다.

第1次計劃에서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7.1%라는 意慾的 水準으로 策定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所要되는 投資規模와 消費需要의 推定, 雇傭效果, 產業構造의 變動, 輸出入目標設定 등이 그것이다.

第1次計劃은 「自立經濟達成을 위한 基盤構築」을 目標로 내세웠고 計劃期間 중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7.1%로 策定하였지만 그중에서 鑛工業生產은 14.8% 增加하도록 하였다. 기간중 소요되는 投資規模를 基準年度(1960)에 비하여 136.9% 늘리고 총수요에 대한 投資需要의 比率을 1960年의 11.7%에서 1966年에는 20.7%로 끌어올린다. 이로써 工業化를 추진하여 鑛工業의 比重을 60年의 18.2%에서 66年의 26.1%로 늘리고 이에 소요되는 投資財源 중 外資의 比重을 60年의 31.5%에서 목표연도에는 25.1%로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國內貯蓄依存度 內資調達比重을 높이려고 하였다. 한편 失業率도 14.8%가 되리라고 설정하였다. 이로써 期間中에 쌀생산은 2.9배, 석탄생산 2.2배, 시멘트생산은 3.2배로 늘리며 발전시설도 수력·화력발전소 15개를 건설하여 시설용량을 100만kw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1차계획은 計劃期間을 1962年~1966年으로 잡고 그 案은 5·16直後 國家再建最高會議의 지시에 따라 당시의 復興部와 建設部를 거친 經濟企劃院을 설치하면서 당장에 결정한 것이다. 그 成案過程에서는 復興部 產業開發委員會 및 復興委員會의 3個年計劃을 비롯한 前代의 각종 綜合計劃 또는 部門別 計劃이 참고되었으나 이때만해도 第1次計劃이라기 보다는 5個年綜合經濟計劃이라고 해서 目標戰略 자체를 重要視하고 있던 것이다. 말하자면 第1次計劃은 前代의 再建生活型과 第2次計劃以後의 管理計劃型의 過渡期的 性格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第1次5個年計劃의 實績

	計 劃	實 績
經濟成長率(年平均, %)[1]		
國民總生産	7.1	7.8
農林水産業	5.7	5.6
鑛 工 業	14.8	14.3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4.4	8.4
産業構造(目標 構成比, %)		
農林水産業	34.8	34.4
鑛 工 業	26.1	20.2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39.1	45.4
投資 및 貯蓄率(目標率, %)		
總投資率	22.7	21.6
國內貯蓄率	12.9	13.1
海外貯蓄率	9.8	8.5
固定投資配分(期間中 構成比, %)		
農林水産業	12.8	11.0
鑛 工 業	32.4	28.6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54.8	60.4
貿易 및 國際收支(目標年, 經常億달러)		
商品輸出	1.4	2.5
商品輸入	4.9	6.8
貿易收支	−3.5	−4.3
總經常收支	−2.5	−1.0
失業率(目標年, %)	14.8	7.1
住宅普及率(目標年, %)	−	75.3
租稅負擔率(目標年, %)	16.3	10.7
名目通貨量增加率(年平均, %)	−	18.9
物價上昇率(年平均, %)		
GNP디플레이터	−	19.3
全國都賣物價指數	−	16.2

註 : 1) 實績은 1975年 不變價格 基準임.
資料 : 大韓民國政府『經濟開發5個年計劃』第1次, 大韓商工會議所

計劃立案過程의 촉박과 部門間 計劃의 一貫性缺如는 무엇보다도 통계자료의 不充分과 實務技法의 未熟이 겹쳐서 計劃의 全般的 骨格이 不安全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當時만해도 最高會議나 指導者들의 成就意志에도 불구하고 이를 實務的으로 뒷받침할 人的, 知的資源이 確保되지 않은 狀態이고 計劃立案에 必要한 實踐的土臺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第1次計劃은 出發하면서 蹉跌이 나타났다. 計劃初年度부터 穀物生産凶作과 米價主導下의 인플레이션 暴進, 貯蓄不在, 內資調達不振과 革命勢力에 대한 美國의 견제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外援의 削減같은 것은 前代부터 이어져 온 市場經濟의 跛行構造를 더욱 심화시켰다. 거기에 1962年 6月의 貨幣改革이란 衝擊도 實效를 거두지 못했고 韓日會談으로 國交를 再開하려던 努力은 國內 一部勢力의 反撥인 6·3 事態로 번졌다. 일종의 內外試練이었다.

당시 學界와 輿論은 이 經濟開發計劃이 失敗로 돌아갔다고까지 하였다. 民政體制로 再出發한 第3共和政의 政府는 서둘러 「補完計劃」을 마련하여 成長드라이브를 年平均 5%로 減速시키고 安定基調로 回歸코자 하였다. 그러나 經濟는 1964年初를 경계로 好調로 反轉하였다. 結果的으로는 目標年度에 이르러 實績이 「補完計劃」은 물론 당초의 計劃値도 초과달성하였다.

第2次計劃은 第1次計劃期間의 中盤부터 立案에 着手하였다. 이때는 1次計劃의 補完計劃과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을 때였다.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自立經濟確立의 促進」을 目標로 設定하고 GNP成長率을 1次計劃水準인 7%로 잡았다. 이른바 Adelman模型을 導入하여 計劃을 구성하되 國民計定 특히 産業聯關表의 利用이 可能했었다. 그리고 經濟科學審議會의 檢討와 國內 各 大學, 硏究所 등의 頭腦를 參與시키고 심지어 外國援助機關과의 協助도 配慮하였다.

第2次計劃은 1964年에 草案을 마련한 뒤 1966年 7月 29日에 確定發表하였다. 그 당시의 評價는 計劃의 構造가 比較的 均衡性을 유지한 一貫性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內資의 不足과 外資依存의 不可避性, 限定된 頭腦集團과 經營人力 不足 등 때문에 重點戰略開發部門의 設定과 그에 대한 集中化가 不可避하였다.

初期開發經濟에서 人力, 資金力, 經營力을 優先順位 部門에 集中投入하는 不均衡成長體制로 補完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輸出드라이브를 本格化하였다.

第2次5個年計劃의 實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經濟成長率(年平均, %)			鑛 工 業	30.7	24.3
國民總生産	7.0	9.7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53.0	68.5
農林水産業	5.0	1.5	貿易 및 國際收支		
鑛 工 業	10.7	20.0	(目標率, 經常億달러)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6.6	12.6	商品輸出	5.5	11.3
産業構造(目標年 構成比, %)			商品輸入	8.0	21.8
農林水産業	34.0	27.0	貿易收支	−2.5	−10.5
鑛 工 業	26.8	22.4	總經常收支	−1.0	−8.5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39.2	50.6	失業率(目標年, %)	5.0	4.5
資本 및 貯蓄率(目標年, %)			住宅普及率(目標年, %)	−	77.8
總投資率	19.9	25.2	租稅負擔率(目標年, %)	14.2	15.1
國內貯蓄率	14.4	14.5	名目通貨量增加率	−	33.3
海外貯蓄率	5.5	10.7	(年平均, %)		
固定投資配分			物價上昇率(年平均, %)		
(期間中 構成率, %)			GNP디플레이터	−	14.8
農林水産業	16.3	7.2	全國都賣物價指數	−	7.8

註 : 實績은 1975年 不變價格基準
資料 : KDI, 大韓商工會議所

目標年度의 商品輸出을 5.5億佛로 정하고 鑛工業成長率은 年平均 10.7%를 維持하여 目標年度인 1971年의 鑛工業比重은 26.8%로 끌어올리고 失業率은 5%로 낮추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結果的으로는 目標年度인 1971年에 GNP가 年平均 9.7%의 成長率을 나타내었고 이의 主役인 鑛工業生産은 20.0%增加에 輸出規模(商品)도 11億3千萬弗로 計劃目標를 약 2倍정도 超過達成하였다.

反面 農業部門은 計劃期間 중 1.5% 成長에 그치고 産業構造面에서 농업부문比率이 27.0%로 줄었다. 農業經濟의 相對的 低成長은 重點戰略開發에 의한 波及效果로 상쇄되리라던 期待를 充足하여주지 못한채 不均衡成長의 陰影으로 남았다.

韓國經濟는 60年代의 2次에 걸친 開發改革으로 輕工業基盤을 다졌고 70年代의 重化學工業으로 跳躍하는 단계에서 經濟自立達成과 産業高度化를 계속 追求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1, 2次計劃期間 중의 不作用解消方案도 講究하였다. 그러나 不均衡 成長 추세는 80年代에 들어 第5次計劃段階에서부터 方向을 設定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韓國經濟의 工業化中心의 高度成長은 60年代와 70年代를 일관한 彈性을 지니고 있었다.

이 彈性이 開發戰略에 의한 成長追求와 市場經濟를 管理體制와 融合한데 있었다. 이른바 計量模型計劃의 結實이었다. 특히 제2차計劃에서 總量計劃은 GNP, 輸出入, 投資, 消費, 貯蓄같은 巨視的 目標間의 均衡的 要因을 檢出하려고 하였고 部門別計劃은 總量目標에 必要한 産業部門에서의 需要와 投資判斷 및 最適投資配分基準을 提示하는데 注力하였으며 이때의 部門間 投資優先順位와 成長戰略이 決定된다. 그럴수록 統計的, 計量的 分析技法이 重要視되었다. 이 무렵 學界나 産業界에서 經營合理化 戰略産業, 妥當性調査 또는 産業構造의 近代化같은 用語와 함께 科學的 管理技法이 풍미하였다.

2. 統計法令의 整備

1962年 1月 15日에 制定公布한 統計法(法律 第980號)은 같은 해 말인 12月 12日에 法律 第1,215號로 改正되었다. 이 改正法에 의해서 指定統計와 一般統計의 區分이 더욱 明白히 定義되었고 統計의 申告義務와 罰則條項이 強化되었으며 종전의 人口調査法과 함께 資源調査法(1939) 및 農業統計報告令(1947)을 폐기하였다.

統計法施行令은 1962年 3月 10日에 閣令 第512號로 制定公布한 1969年 10月의 大統領令으로 나올 때까지 4回의 改正을 보았다. 이 施行令에서 指定統計의 告示事項과 一般統計調査의 申告節次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一般統計의 範圍를 施行令에 明文化하였었다. 현재는 이 施行令의 委任에 의해서 經濟企劃院의 告示로 규정하고 있다(「일반통계의 調査統計와 報告統計의 範圍」: 1977. 3. 7. 經濟企劃院告示 第12號). 統計法施行規則은 1962年 8年 21日의 經濟企劃院令으로 公布한 以來 指定統計와 一般統計의 指定申請, 調査申告 및 이들의 變更申告 등에 관한 節次와 樣式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統計法令體系下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規則(1962. 9. 19)을 시작하여 各

指定統計調査의 施行規則이 制定되었다. 그것이 1971年까지 19個에 달한다.

그중에서 人口動態調査(1962. 11), 家計調査(1963. 4), 人口住宅센서스(1964. 9), 鑛工業센서스(1964. 4)등은 經濟企劃院令에 의한 것이고, 農業센서스(1968. 12), 農家經濟 및 農産物生産費調査(1964. 5), 農業基本統計(1968. 12)나 漁業센서스(1969. 8)등은 農林部令, 그리고 生産動態調査는 商工部令, 勞動資金調査는 保健社會部令에 의해서 公告되었다.

한편 統計法令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指定統計는 1971年까지 25種에 달해서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와 같다.

통계법령, 규칙의 제정

법령·규칙	근　거		공포년월일
〈통계법령〉			
1. 통계법	법　률	980	1962. 1. 15
2. 통계법 시행령	각　령	512	1962. 3. 10
3. 통계법 시행규칙	경제기획원령	19	1962. 8. 21
4. 통계자료의 공표협의 규칙	〃	41	1966. 7. 8
5. 통계위원회 규정	각　령	513	1962. 3. 10
〈지정통계 시행규칙〉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경제기획원령	37	1964. 9. 26
2. 인구동태조사 규칙	〃	21	1962. 11. 1
3. 경제활동인구조사 규정	〃	20	1962. 9. 19
4. 농업센서스 시행규칙	농림부령	298	1968. 12. 12
5. 광공업센서스 규칙	경제기획원령	35	1964. 4. 16
6.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규칙	농림부령	161	1964. 5. 21
7. 가계조사 규칙	경제기획원령	24	1963. 4. 11
8. 생산동태조사 규칙	상공부령	123	1965. 2. 11
9.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 시행규칙	경제기획원령	39	1965. 8. 13
10. 전국 소매물가조사 시행규칙	〃	46	1968. 4. 10
11. 상업센서스 시행규칙	〃	45	1968. 4. 10
12. 식량작물생산조사 규칙	농림부령	303	1968. 12. 30
13. 농업기본통계조사 규칙	〃	296	1968. 12. 4
14.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245	1969. 3. 12
15. 노동이동조사 시행규칙	〃	244	1969. 3. 12
16. 직종별임금조사 시행규칙	〃	243	1969. 3. 12
17. 국부통계조사 시행규칙	경제기획원훈령	50	1969. 5. 31
18. 어업센서스 시행규칙	농림부령	394	1969. 8. 25
19. 어업생산고조사 규정	〃	445	1971. 2. 9

지정통계의 지정고시

지정번호	지 정 통 계 의 명 칭	조사실시기관	고시년월일	고시번호
1	인 구 센 서 스	경 제 기 획 원	62. 6. 1	3호
2	주 택 센 서 스	〃	〃	〃
3	인 구 동 태 조 사	〃	〃	〃
4	경 제 활 동 인 구 조 사	〃	〃	〃
5	농 업 센 서 스	농 수 산 부	〃	〃
6	광 공 업 센 서 스	경 제 기 획 원	〃	〃
7	상 주 인 구 조 사	서울시,부산시각도	62. 6. 13	19호
8	농 가 경 제 조 사	농 수 산 부	62. 12. 8	6호
9	농 산 물 생 산 비 조 사	〃	〃	〃
10	가 계 조 사	경 제 기 획 원	〃	〃
11	생 산 동 태 조 사	상 공 부	64. 10. 23	16호
12	농 촌 물 가 및 임 료 금 조 사	농 협 중 앙 회	65. 7. 22	17호
13	전 국 도 매 물 가 조 사	경 제 기 획 원	67. 2. 28	1호
14	도 소 매 업 센 서 스	〃	67. 5. 29	2호
15	식 량 작 물 생 산 량 조 사	농 수 산 부	〃	〃
16	농 업 기 본 통 계 조 사	〃	68. 4. 18	25호
17	광 공 업 통 계 조 사	경 제 기 획 원	〃	〃
18	사 업 체 노 동 실 태 조 사	노 동 청	〃	〃
19	매 월 노 동 통 계 조 사	〃	〃	〃
20	직 종 별 임 금 조 사	〃	〃	〃
21	국 부 통 계 조 사	(공 동)	68. 11. 21	51호
21호의1	정 부 자 산 부 문 조 사	한 국 은 행		
21호의2	법 인 자 산 부 문 조 사	한 국 산 업 은 행		
21호의3	개 인 자 산 부 문 조 사	중 소 기 업 은 행		
21호의4	가 계 자 산 부 문 조 사	경 제 기 획 원		
22	어 업 센 서 스	수 산 청	69. 4. 7	2호
23	광 공 업 동 태 조 사	경 제 기 획 원	70. 3. 27	1호
24	어 업 생 산 고 조 사	수 산 청	70. 12. 9	5호
25	어 업 기 본 통 계 조 사	〃	71. 7. 9	1호

上記 각종 統計法令과 規則들은 1960年代初에 體系를 갖추면서 年次를 거듭할수록 擴大되고 精密化·改善方向으로 改正되었다. 특히 이들 法令·規則은 社會制度에서 영향받은 바가 크기 때문에 法令·規則의 改善方向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實行上의 實效性에도 따르기 마련이다. 이들 統計法令의 再定立은 때마침 當局에서 1961年 12月부터 着手한 각종 舊法令에 대한 全般的인 整備의 一還으로 더욱 促進되었다. 그에 따라 이기간(1961～71)중에 統計法施行令은 4回, 施行規則은 2回, 그리고 統計委員會規程도 7回 改正된 것을 包含하여 각종 調査規則도 대개 2～4回씩 改正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꾸준히 새로운 통계관계 법령과 조사규칙들을 제정했다.

第1次經濟開發計劃이 끝나는 해인 1966年 7月에 公布한 統計資料의 公表協議規則은 國內統計의 信賴性과 正確性 및 一貫性 追求에 寄與하고자 한 것이며 이로써 第2次經濟開發計劃부터는 統計資料에 대한 依存度를 더욱 能率化시켰다고 할 것이다.

금번 硏究에서 參考로 한 統計에 관한 각종 법령의 改正經過資料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각종 통계법령 개정경과 참고자료

統計法令關係

1) 統計法(法律第980號)	1962. 1. 15
2) 統計法施行令(閣令 第512條)	1962. 3. 30
3) 統計法 施行規則(經濟企劃院令 第19號)	1962. 8. 21
4) 統計法中 改正法律	1962. 12. 12
5) 統計法 施行令 改正	1963. 2. 25
6) 〃 〃 〃	1964. 4. 2
7) 統計法施行規則中改正	1964. 4. 16
8) 統計法施行令中改正	1966. 5. 2
9) 統計法施行令改定令	1969. 10. 27
10) 統計法施行規則改定令	1970. 9. 16

11) 統計資料의 公表協議 規則	1966. 7. 8
12) 統計資料의 公表協議 規則	1970. 9. 16
13) 統計調査指導員 및 調査員 服務規程	1963. 2. 13
14) 統計調査員服務規程 改正令	1971. 12. 21
15) 통계관계법령집	1971. 5. 1
16) 통계관계법령집	1974. 12.

人口調査關係

1) 人口調査法(法律第 18 號)	4282. 1. 27
2) 戶口調査規程(內務部令第 3 號)	4282. 9. 1
3) 第1回總人口調査施行令(大統領令第 39 號)	4282. 12. 13
4) 第1回總人口調査地方事務處理規則(總理令第 6 號)	4282. 2. 15
5) 第1回總人口調査 特別地域調査規則	4282. 2. 15
6) 國軍部隊와 艦船의 總人口調査事務處理節次	4282. 2. 23
7) 船舶의 總人口調査事務處理節次	4282. 2. 23
8) 刑務所의 〃 〃 〃	4282. 2. 23
9) 警察官署의 〃 〃 〃	4282. 2. 23
10) 全羅南道第1回總人口調査地方事務取扱細則 (全羅道訓令第 5 號)	4282. 2. 28
11) 忠淸北道臨時總人口調査局規程(忠北道訓令第 2 號)	4282. 3. 3
12) 忠淸南道臨時總人口調査局規程(忠南道訓令第 4 號)	4282. 3. 4
13) 忠淸南道第1回總人口調査地方事務處理細則 (忠南道訓令第 5 號)	4282. 3. 4
14) 서울市臨時總人口調査局規程(서울市訓令第 3 號)	4282. 4. 1
15) 서울市第1回總人口調査事務處理細則(서울市訓令第 5 號)	4282. 4. 1
16) 第 1 回總人口調査施行令의 效果에 관한 件	4282. 3. 3
17) 第 1 回總人口調査紀念郵票發行件	4282. 3. 28
18) 第 1 回簡易總人口調査令(大統領令 1,033號)	4288. 6. 8

19) 第 1 回簡易總人口調査規程(內務部令 47 號)	4288. 7. 7
20) 國勢調査令(國務院令 第 91 號)	4293. 11. 3
21) 國勢調査記念特殊通信 日附印	4293. 11. 11
22) 人口센서스施行規則	1964. 9. 29
23) 人口動態調査令(大統領令 252 號)	4282. 12. 19
24) 人口動態調査令施行規則(總理令第 19 號)	4282. 12. 21
25) 人口動態調査令施行規則中改正(書式)	4287. 1. 9
26) 人口動態調査令中改正	4288. 6. 8
27) 人口動態調査規則	1962. 11. 1
28) 人口動態調査規則中改正	1964. 4. 16
29) 人口및住宅센서스施行規則改正	1970. 6. 13
30) 人口動態調査規則 改定令	1970. 9. 16
31) 人口動態調査規則中 改定令	1971. 3. 18

其他調査關係

1) 經濟活動人口調査規程	1962. 9. 19
2) 經濟活動人口調査規程中 改正	1964. 4. 16
3) 家計調査規則	1963. 4. 11
4) 家計調査規則中改正	1964. 4. 16
5) 鑛工業센서스規則	1964. 4. 16
6) 農家經濟 및 農產物生產費調査規則	
7) 全國小賣物價調査 施行規則	1968. 4. 10
8) 農業센서스 施行規則	1970. 12. 12
9) 全國小賣物價調査施行規則 改定令	1970. 9. 16
10) 食糧作物生產調査規則改定令	1969. 8. 16
11) 全國小賣物價調査施行規則改定令	1970. 9. 17
12) 生產動態調査規則 改定令	1969. 8. 16
13) 商業센서스施行規則 改定令	1970. 9. 16

14) 鑛工業센서스規則 改定令	1970. 9. 16
15) 經濟活動人口調査規程 改定令	1970. 9. 16
16) 家計調査規則 改定令	1970. 9. 16
17)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査 施行規則改定令	1970. 9. 16
18) 商業센서스施行規則 施行令	1971. 3. 18
19) 家計調査規則中 改定令	1971. 3. 18
20) 統計資料의 供給協議規則中 改定令	1971. 3. 18
21) 經濟活動人口調査規程中 改定令	1971. 3. 18
22) 鑛工業센서스規則中 改定令	1971. 3. 18

以上과 같은 統計法令의 制定과 改正은 統計施行施策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한국의 통계관련제도는 1960年代의 開發年代를 통하여 일단 마무리된 셈이었다.

3. 統計機構 및 調査組織

1961年 7月 22日字로 政府組織法이 改正되고 建設部(前 復興部)의 廢止, 內務部職制改正 및 經濟企劃院職制의 制定(閣令第57號)이 동시에 이루어워짐으로써 統計局이 經濟企劃院 傘下로 移管되고 난 이후에 統計局의 組織은 1971年 5月까지 11回改編되었다.

그중에서도 1963年 12月 16日字로 外局(調査統計局)으로 獨立한 이후에는 한때 編修課가 統計企劃課로 흡수되었으나 1968年 2月 14日에 統計企劃課에서 企劃課와 資料處理課를 分離하는 改編을 보았고 또 經濟統計課에서 消費統計課가 分離되면서 종전의 4個課가 6個課로 늘어나고 또한 副理事官級의 統計審議官室을 설치하는 등 統計局職制의 變革을 이루었다. 이때에는 常勤職員數(調査員은 別途)도 一般職 100名을 포함하여 技能·雇傭職 117名등 도합 217名으로 되었다.

1969年 12月에는 生産統計課와 物價統計課가 增設되어 8個課로 되고 그것이 1971年에는 局長 밑에 1審議官室 8個課에 一般職公務員 219名과 技能·雇傭職

42名등 261名으로 착실히 中央統計機構를 整備해 나갔다.

調査統計局의 機構는 1975年에 企劃課를 庶務課로 改稱하고 旣存의 基準課, 人口統計課以外에 舊體制下의 經濟統計에서 分化된 産業統計, 工業統計, 商業統計 및 物價統計 등을 課單位로 分化하고 資料處理業務를 資料管理課와 製表課로 分離하였다. 또 새로이 地方 8個市道에 統計事務所(事務官 또는 主事級 所長)를 두고 地方統計調査 專擔組織을 指揮·管理할 調査管理課도 설치하였다. 그밖에 副理事官級으로 統計審議官以外에 統計調査官室과 資料管理官室을 둠으로써 調査統計局은 局長밑에 3擔當官室 10課 8地方事務所로 組織과 機能을 強化해 나아갔다.

본래 統計局의 地方調査組織은 1950年代부터 地方에 調査員을 派遣시킨 바 있으나 1963年初에는 「統計調査指導員 및 調査員服務規程」을 制定하고 地方駐在指導員과 調査員을 두고 企劃課에서 직접 관리하여 왔다. 그것을 1975年부터 地方駐在 調査組織을 地方事務所로 改編強化한 것이다. 이러한 調査組織의 整備는 1960年代를 통하여 다져온 결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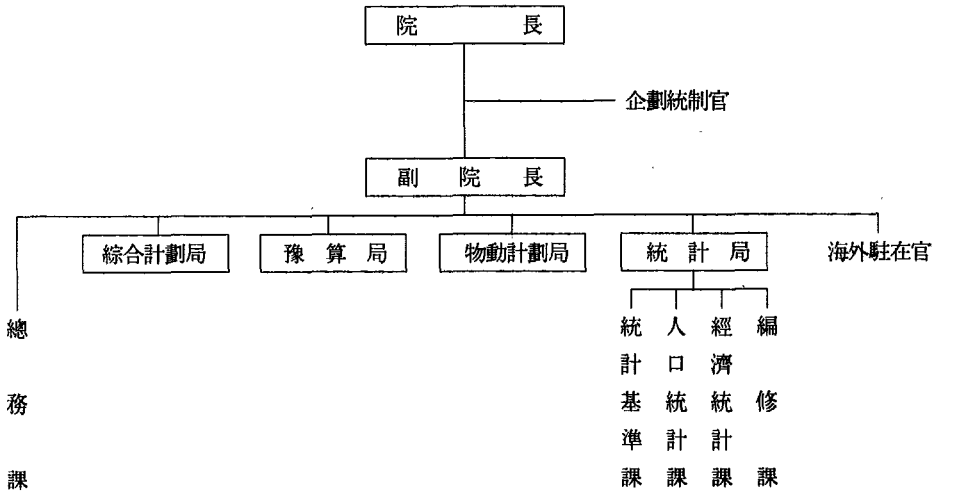
〈中央統計部署職制 關係〉

1) 政府組織法公布	4281. 7. 17
2) 政府組織法改正	4288. 2. 7
3) 內務部職制中 改正	4290. 6. 24
4) 國勢調査委員會規程	4292. 2. 10
5) 國勢調査委員會規程中 改正	4292. 9. 23
6) 經濟企劃院 職制	4294. 7. 22
7) 內務部職制中 改正	4294. 7. 22
8) 國勢調査委員會規程中 改正	4294. 8. 10
9) 統計委員會規程	1962. 3. 10
10) 經濟企劃院職制 改正	1962. 6. 29
11) 統計委員會規程中 改正	1962. 7. 9
12) 內務部 職制中 改正	1962. 7. 9
13) 經濟企劃院職制 改正	1962. 10. 29

14) 統計委員會規程中 改正	1963. 10. 26
15) 經濟企劃院 職制改正(全文)	1963. 12. 16
16) 調査統計局 職制(全文)	1963. 12. 16
17) 統計委員會規程中 改正	1964. 3. 11
18) 統計委員會規程中 改正	1966. 5. 2
19) 統計委員會規程中 改正	1967. 2. 16
20) 調査統計局 職制中 改正(定員表)	1967. 4. 12
21) 調査統計局 職制 改正	1968. 2. 14
22) 統計委員會規程中 改正	1968. 8. 3
23) 調査統計局 職制 改定令	1969. 9. 20
24) 統計委員會 規程 改定令	1969. 12. 5
25) 人口政策委員會 規程 改定令	1969. 12. 5
26) 調査統計局 職制中 改定令	1969. 12. 18
27) 經濟企劃院 職制中 改定令	1971. 5. 24
28) 調査統計局 職制中 改定令	1971. 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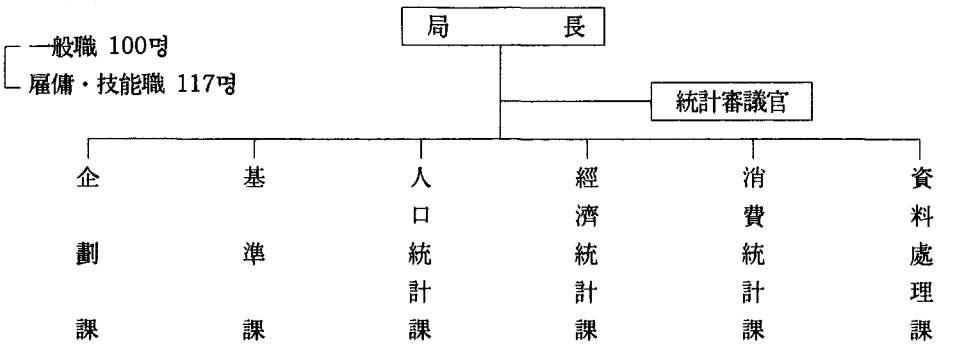
經濟企劃院 統計局

1961. 7. 22 公布
(閣令 第5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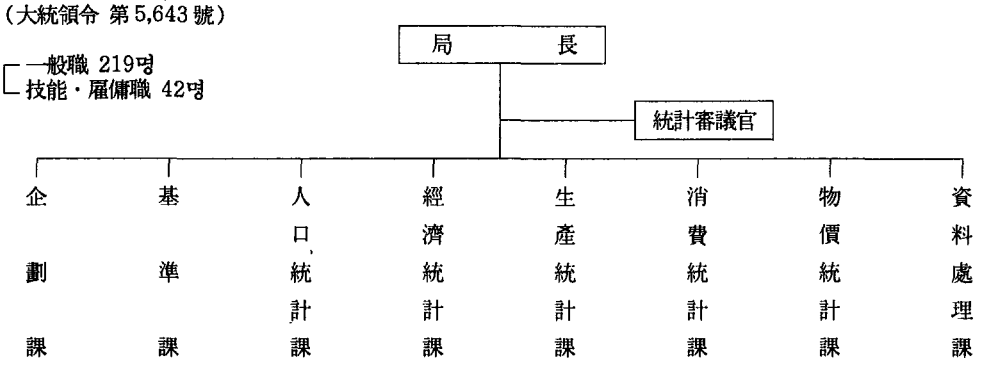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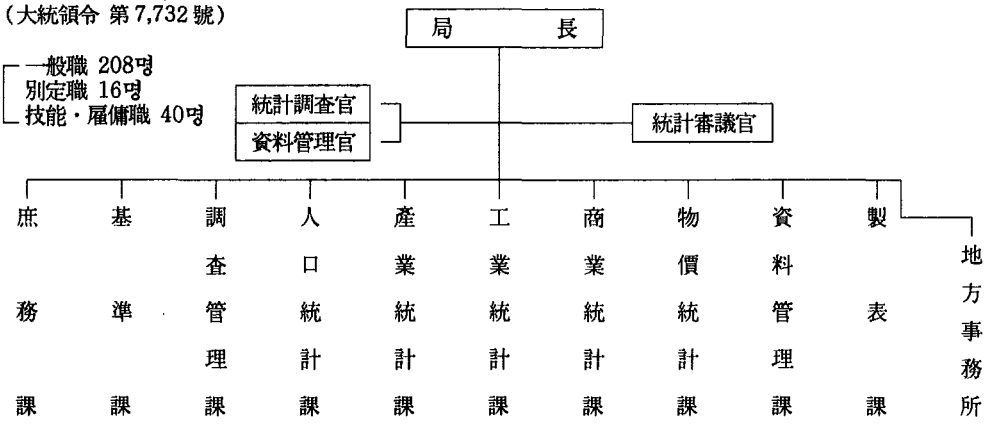
1968. 2. 14 公布
(大統領令 第3,369號)



1971. 5. 24 公布
(大統領令 第5,643號)



1975. 8. 14 公布
(大統領令 第7,732號)



政府의 統計調査에 관한 諮問과 建議事項을 審議하는 統計委員會는 政府主要官署의 統計關聯 室局長과 國策銀行 및 主要經濟團體의 調査部長을 當然職으로하고 여기에 學界와 社會指導級 名士를 選任委員으로서 構成하고 있다. 그 構成과 機能事項을 규정한「統計委員會規程」도 수차에 걸쳐 改正하였다. 開發年代의 統計業務增加와 政府統計의 質的向上에 副應하여 統計的 專門分野別로 分科會를 設置運營하고 있다. 이것이 1960年代末에는 16個分科나 되고 있다. 이들 中央統計機關의 職制變更過程을 時代的 順序로 배열한 改正令과 16個分科는 아래와 같다.

〈統計委員會 16個分科會 名稱〉

1. 人口統計分科會
2. 產業統計分科會
3. 經濟統計分科會
4. 社會統計分科會
5. 基準分科會
6. 調整分科會
7. 標本調査分科會
8. 統計制度分科會
9. 經濟指數分科會
10. 經濟資料審議分科會
11. 國富統計分科會
12. 國民所得分科會
13. 產業分類分科會
14. 商業分類分科會
15. 職業分類分科會
16. 消費統計分科會

農林部는 1955年에 農政局 調査統計課內에 統計系, 調査系를 두었던 바 1964年 10月에 1個係를 增設하여 管理係, 調査係 및 經濟係로 담당部署를 정하였었다. 그것을 1971年 11月 22日字 農林部 職制改正으로 調査統計課를 局水準을 改編하여 擔當官을 書記官級에서 副理事官級으로 昇格시켜 이를 調査統計官이라 하고 그밑에 書記官級의 作物統計擔當官(管理係, 調査係)과 經濟統計擔當官(經濟 1係, 經濟 2係)을 두어 이를 企劃管理室에 所屬하게 하였다. 그뒤 調査統計官은 1973年 1月의 農林統計官과 1973年 3月의 農業統計官으로 改稱하면서 地方調査組織을 編成하였다. 1974年 2月 1日字 農林部令, 第516號로「農水產統計事業所, 出張所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規則」을 제정공포하여 施行한 以來 1976年末에 長官直屬으로 農業統計地方事務所를 整備하게 되었다. 地方調査組織은 道單位의 9個農業統計事務所와 市郡단의 139個 農業統計出張所이다.

水產廳과 山林廳도 1966年 2月과 12月에 각각 설치되면서 그속에 소관통계부서로써 調査統計課를 두었으며, 보사부의 勞動統計課는 1963年에 勞動廳이 설치되면서 보사부 本廳에는 企劃管理室에 統計係를 두었고 勞動廳에는 총무과내에 統計係를 발족시켰다. 商工部의 工業2局에 있던 調査課는 1963年 12月에 폐지하고 統計業務를 企業管理室에서 담당하였다.

韓國銀行도 調査部의 機構를 調査業務와 統計業務로 분리하여 專門化시키는 것이 요청됨에 따라 1967年 11月에 종래의 調査部를 調査第1部와 調査제2부는 養分하여 조사제1부는 調査分析業務를 專擔하게 하고 調査제2부는 國民所得을 비롯한 統計業務를 管掌하게 하였다.

4. 統計行政施策

統計施策面에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中央統計局의 機構와 機能을 擴大強化하는 한편 地方統計의 活性化를 위하여 1968年 5月부터 각 市道의 企劃監査室 統計係를 調査統計課를 昇格시켜 內務局에 屬하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市郡에도 統計專擔係를 설치하도록 추진하였다.

統計制度는 指定統計分野를 계속 확대해 나아가고 각종 統計에 대하 公表協議機能을 더욱 強化시켰다.

한편 標準分類事業을 계속사업으로 硏究함으로써 1963年의 韓國標準產業分類와 韓國標準職業分類의 制定을 始發로 1964年의 韓國標準貿易分類 制定을 公告하였다. 韓國標準疾病死因分類는 1952年부터 이미 世界保健機構(WHO)의 國際死因表를 基礎로 韓國死因·傷害 및 疾病分類를 制定하였던 바 이를 1972年에 改正을 하였다. 韓國行政區域分類에 관한 作業은 1964年 8月 1日에 경제기획원고시(제15호)로 공표한데 이어 1965, 1967年 및 1973年에 개정하였다.

이상의 初期分類表 制定以來 1968年과 1970年에 UN의 分類改正版과 韓國의 產業·職業 및 商品構造 發展을 反映하여 改正함으로써 分類項目을 더욱 專門化多岐化하였다.

1968年에는 당시 실시하던 각종 標本調査들을 一方으로는 改善하며 一方으로는

統合할 수 있는 多目的 標本을 設計하였다. 그밖에도 統計要員訓練의 一環으로 地方統計要員에 대한 統計技術敎育과 電子計算組織 訓練 등을 위한 海外硏修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施策등을 통하여 統計調査領域을 착실히 확대 강화해 나아갔다. 1960年代後半에 調査統計局에서는 종전부터 조사하던 經濟活動人口調査, 家計調査 및 全國小賣物價調査와 同 消費者物價指數 編制 등을 계속하면서 새로이 産業動態調査와 貯蓄動向調査를 着手하였고 1968年에는 1966年 人口센서스 結果를 공표하였다. 그해에 人口動態調査에서는 申告調査를 改善하고 人口動態特別調査와 人口移動調査를 兼行하면서 國富統計調査와 商業센서스를 실시한 것은 그간의 韓國統計調査活動의 成果를 集約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結實이라 할 것이다.

이무렵부터는 行政統計에 대하여도 整備 必要性이 提案되었다. 이에 1965年부터 統計局의 主要擔當者들이 硏究팀을 구성하여 作業한 結果를 全國主要行政統計調査報告書로 發表하였고 이 事業은 1980年까지 지속되었다. 1950年代末에 統計局에서 각종 官廳統計(行政統計)의 整備를 目的事業으로 推進하려면 試圖는 1960年代 中盤에 結實을 본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行政統計는 크게 改善되었다.

統計協會는 1959年에 社團法人으로 發足한 以來 5·16革命으로 새전기를 맞으면서도 제대로 活動을 못하고 방치된 상태였는데 이를 1963年에 統計局을 비롯한 統計關聯官廳과 公共機關 및 民營團體을 會員으로 包容하고 當然職, 選任職의 任員陳을 構成한 財團法人으로 再出發(初代會長 李恩馥)하였다. (財)統計協會는 設立以來 統計理論의 開發·先進化와 統計技法 및 統計敎養 擴散을 위한 紹介物을 發刊하거나 敎育訓練事業은 물론 國內外統計와 調査活動에 관한 官民間의 情報交換 등 事業을 꾸준히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1年에는 第1回全國統計人大會와 硏究發表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이무렵부터 統計家, 統計人의 役割을 自覺하고 統計役軍이란 말까지 出現하였다.

1960年代의 主要統計刊行物로서는 각 기관마다 각종 統計年報, 年鑑을 비롯한 經濟年鑑 및 月報 등을 活潑히 編纂發刊하였다 (1971年 經濟企劃院의 韓國統計年鑑은 第18回). 그 밖에도 예컨대 調査統計局에서는 1968年에 1966年度 人口센서스 報告書, 全國主要行政統計綜合報告, 都市家計報告書, 經濟活動人口調査, 主要

人口統計와 全國小賣物價調査 및 消費者物價指數 등이 있었다. 特記할 것은 統計用語定義集을 1963年 12月 20日字로 發刊하였는데 建國以來 實施하고 있는 調査를 包含하여 당시의 産業센서스 등 指定統計 10種 및 기타 一般調査에서 쓰이는 1,734個 用語들의 定義를 17個部處와 18個企業體에서 提出받아 收錄한 것이다. 이用語定義集은 1962年에 駐韓統計顧問團에서 簡略하나마 學術的 풀이로 내어놓은 統計用語集과 함께 初期의 統計辭典 準備資料로서 意義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당시에 韓國銀行에서도 統計關係刊行物을 활발하게 내어 놓았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로서 韓國銀行法에 규정된 법적간행물인 統計月報는 1970年 12월말 현재 제24권 5호까지 발간하였다.

또 경제통계연보는 매년 金融, 財政, 國民計定, 産業, 國際收支, 企業經營, 物價, 賃金 등의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이는 196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그밖에 前述한 國民所得年報(每年), 産業關聯表作成報告, 企業原價報告書와 企業經營分析 및 韓國의 資金循環 등 보고서를 發刊하였다.

한편 1956년이래 임금수준의 단계적인 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鑛業 및 製造業生産從業員의 月當給與額 및 出勤日數」통계를 작성발표하여 왔던 바 이를 바탕으로 1967年 6월을 기준으로 鑛業, 製造業 및 電氣業의 賃金基本調査를 실시하였으며 1968年 3월에는 이를 임금구조, 임금제도 및 노동비용 등으로 나누어 수록한 賃金基本調査報告(단행본)를 출간하였고 物價總覽을 1949년의 초판으로부터 1961년 1964년 1966년판을 거쳐 1968년에 제5판을 발행하였다.

韓國銀行은 1951년부터 시작한 家計調査를 1963년까지 지속하였는 바 1964년 5월 家計調査에 관한 13년간의 資料를 總整理하여 統計篇에 標本設計 및 調査方法 기타 參考事項을 곁들인 家計調査綜合報告를 單行本으로 發刊하였다.

또한 1953년 7월부터 1962년 6월까지 실시한 農家經濟調査를 集約하여 1963년 3월에 同調査의 槪要와 過去 韓國銀行 調査月報에 게재되었던 內容들을 綜合收錄한 「農家經濟綜合報告」를 單行本으로 出刊하였다. 그리고 1967年부터 地域經濟調査資料를 해마다 내어 놓았다.

끝으로 統計裝備面에서는 1968年의 商業센서스 實施와 1969年初의 1968年度 國富統計調査實施 및 1970年度 人口·住宅과 農業센서스 등 大型調査 輻輳와 其

他의 基幹調査業務를 對備하기 위하여 資料處理機械의 現代化, 大容量化가 必要하게 되었다. 從前의 IBM1401型 C－6(記憶容量 16,000字)은 小型電算機로서 당시의 資料處理需要를 充當하기에는 力不足이 되었다. 이에 대체할 機種으로서 당시에 SLT(Solid Logic Technology)式 IBM 360/40의 導入을 추진하여 이를 1968年에 매듭지은 것이다. 이에 必要한 技術要員 10名을 日本등 IBM센터에 파견하여 연수를 마쳤음은 물론이다. 이제 한국의 컴퓨터 시스템은 第3世代機種으로 進入한 것이다.

第 2 節 調査·加工統計의 擴散

1. 調査統計의 開發

1960年代는 새로운 統計와 그 法制 및 施設의 대거出現時期이다. 政府樹立 以前의 慣行에서 보듯이 便法的인 政令에 의해서 人口, 農地物産, 資源 등 限定된 分野에서의 報告統計情報을 탈피하여 經濟社會全般에 걸쳐 調査統計 특히 標本調査技法分野로 擴張시켜 開發年代의 統計需要를 충족코자 하였다.

人口統計分野에서도 1960年에는 人口調査法에 의하여 人口센서스를 實施하였으나 1966年度分부터는 1962年의 統計法과 1964年 9月 29日字(經濟企劃院令第37號) 人口센서스施行規則을 근거로 調査한 이래 時日이 지나면서 더욱 精致化해 갔다.

「年末常住人口調査」는 1964年까지는 每年 12月 31日 현재로 실시하다가 1965年부터는 10月 1日을 基準으로 하면서 「常住人口調査」로 名稱을 바꾸고 調査責任도 1962年부터는 統計局에서 각 市·道로 넘겨 시행해 오고 있다. 1960年代의 센서스人口와 常住人口의 調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센서스人口와 年末 常住人口

單位 : 家口, 名

	센 서 스 人 口				年 末 常 住 人 口			
	家口數	人口數	男 子	女 子	家口數	人口數	男 子	女 子
1960	(4,377,973) 4,361,424	(24,989,241) 24,954,290	(12,543,968) 12,525,457	(12,445,273) 12,428,833	4,377,973	24,989,241	12,543,968	12,445,273
1961	–	–	–	–	4,343,727	24,925,816	12,316,479	12,609,337
1962	–	–	–	–	4,539,071	26,277,635	13,145,289	13,132,346
1963	–	–	–	–	4,688,615	27,489,848	13,757,045	13,732,803
1964	–	–	–	–	4,769,533	28,181,096	14,144,069	14,037,027
1965	–	–	–	–	4,844,439	28,647,176	14,351,585	14,295,591

單位：家口，名

	센 서 스 人 口				年 末 常 住 人 口			
	家口數	人口數	男 子	女 子	家口數	人口數	男 子	女 子
1966	(5,184,229)	(29,159,640)	(14,684,147)	(14,475,493)				
	5,176,951	26,126,518	14,666,191	14,460,327	5,184,229	29,159,640	14,684,147	14,475,493
1967	–	–	–	–	5,101,040	29,470,831	14,748,828	14,722,003
1968	–	–	–	–	5,233,958	29,954,498	14,997,579	14,956,919
1969	–	–	–	–	5,420,627	30,432,334	15,239,979	15,192,355
1970	(5,863,440)	(31,465,654)	(15,795,677)	(15,669,977)				
	5,856,901	31,435,252	15,779,615	15,655,637	5,863,440	31,465,654	15,795,677	15,669,977
1971	–	–	–	–	5,866,094	31,962,271	15,993,966	15,968,305

註：1. 人口센서스(　)안 숫자는 外國人 包含.
2. 年末常住人口調査는 各市道別로 年末 또는 各年 10月1日字로 調査한 行政區域單位 常住人口調査의 集計値임. 단, 센서스년도에는 센서스숫자임.

資料：經濟企劃院

한편 人口動態調査는 국민신고에 의한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1963年부터는 1/1,000 표본에 의한 4分期別「人口動態標本調査」를 실시하고 1968年에「人口動態特別調査」와「人口移動調査」를 실시함으로써 動態調査의 內容을 改善해 나아갔다.

勞動力調査는 1959年以來 勞動接近方法으로 層化2段任意抽出에 의하여 4,400家口의 標本에서 14歲以上 家口員을 상대로 每月末에 調査하여 왔다. 이를 1962年 8月부터는「經濟活動人口調査」로 改稱하여 層化任意多段抽出에 의한 14歲以上 常住人口의 1/1,000을 표본으로 分期別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勞動力중 就業技術人力現況을 파악하고자 1961年에「韓國 技術系人的資源調査」를 실시한데 이어 1963年에도「就業技術系人的資源調査」를 실시하여 結果報告書를 出刊하였다.

勞動廳(1963. 9. 1設置) 企劃管理室에서는 1952年以來 每年 실시하던「事業體勞動實態調査」를 從業員 10人以上 事業場을 對象으로 계속 실시하는 한편 1966年 1月부터는 從業員規模가 製造業 5人以上, 鑛業은 10人以上인 事業場의 全從業員을 대상으로「賃金基本調査」를 실시하였다.

鑛工業센서스는 1963年과 1966年에 經濟企劃院과 韓國產業銀行 調査部가 共同으로 實施하고 1970年에도 실시하였다. 한편 產業銀行에서는 獨自的으로 鑛工業

部門의 短期的 變動狀態를 파악하는 「鑛工業標本調査」를 1962年 3月부터 실시한 데 이어 1963年 10月부터는 「鑛工業生産者販賣價格調査」에 착수하여 이를 指數로 編制·發表하기 시작하였다. 또 1966年부터는 「鑛工業生産量調査」를 통하여 鑛工業生産業指數를 편제하였다.

1968年 7月을 기준으로 經濟企劃院, 商工部, 韓國銀行 및 韓國産業銀行 등이 共同으로 3年週期의 商業센서스를 着手(조사기간 1968. 7. 1~7. 20)하였고 1969年에 그 첫 調査結果報告書를 出刊하였다.

한편 商工部 企劃管理室에서는 1961年 5月以來 工産品生産申告制에 의한 生産動態調査資料를 編制·公表하여 왔는데 이것이 1965年 1月부터는 指定統計 第11號(1964. 10. 23지정)로서 5人以上 事業體를 대상으로 하는 月別調査를 계속하였다.

政府에서는 경제활동 所産으로서 再生産力이 있는 國民經濟의 資産規模를 파악하고자 國富統計資料의 蒐集方案을 講究하다가 1969年에 韓國에서는 처음으로 國富統計調査를 實施하게 되었다. 조사기준시점을 1968年末로 設定하고 1969年 上半期중에 실시한 이 調査는 經濟企劃院(土地및家計資料), 韓國銀行(政府및對外資産), 韓國産業銀行(法人資産) 및 中小企業銀行(個人資産) 등이 共同으로 參與하였다.

産業動向調査의 基本이 되는 産業(鑛工業)生産指數의 編制는 韓國銀行에서 1952年부터 준비하여 그것을 1957年에 1955年度基準指數를 편제공표한 이래 이들 1960年 5月과 1962年 7月 및 1967年 3月에 각각 1958年度, 1960年度 및 1965年度基準指數로 改編하여 擴大改善하여 왔다. 韓國銀行은 産業生産指數를 季節變動調整指數로도 編制하였으며 그밖에도 製造業者製品在庫指數도 算出하였다.

中小企業銀行調査部에서도 1961年부터 「中小企業實態標本調査」를 分期別로 實施하였던 바 1963年부터는 이를 月別調査와 併行하였고 1965年부터는 이調査에 의하여 中小企業生産指數를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해에는 또한 1964年末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運輸業基本實態調査」도 실시하였다.

都市家計調査는 韓國銀行調査部에서 1955年에 8大都市를 대상으로 하는 調査로 擴大改編하는 以來, 1960年에 이를 任意標本調査方法으로 改編하여 1963年 까지

지속하였다. 이 조사는 1963年부터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되었으며 經濟企劃院은 이를 더욱 改善하여 全國30個都市를 母集團으로 하는 層化3段抽出法에 의한 抽出率 1/650에 해당하는 1,800家口를 대상으로 分期別家計調査로 定着시켰다. 그 첫 보고서는 1964年「都市家計調査報告」(1965年 7月)로 發刊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農林部 農政局 調査統計課에서 실시하던 農家經濟調査는 1961年 7月에 標本選定(任意標本抽出)과 調査內容 등을 개편해 오다가 1962年 12月 8日字로 指定統計(第8號)가 되면서 더욱 發展시켰다.

韓國銀行에서 실시하던 物價調査 중 都賣物價는 1960年基準指數부터 品目數를 360個로 늘렸고 그뒤로도 品目數를 계속 擴張시키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全國小賣物價調査와 消費者物價指數編制는 1964年부터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農業銀行에서 실시하던「農村物價 및 賃料金指數」는 1959年 5月의 249個 品目으로 늘린데 이어 1961年 7月에 農業銀行이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吸水統合되면서 1965年 1月에 이 統計가 指定統計 第12號로 指定되어 改編擴大되었다.

貿易統計는 1958年까지 商工部 商易局의 簡易通關集計와 財務部 稅關局의 通關時點基準集計로 편제되어 왔으나 1959年 1月부터는 財務部 稅關局에서 完全한 輸出入統計體制를 갖추어 發表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韓國銀行은 이중 國際標準貿易分類(SITC)에 의한 分類集計로 發展시켰다. 그것이 1962年 1月부터는 수출입신고서에 의한 컴퓨터(IBM)集計가 가능해지자 貿易統計全般에 대한 改編이 이루어졌다. 1963年 2月에 貿易統計審議委員會가「貿易統計作成要綱」을 確定함으로써 韓國貿易統計는 國際水準의 統計로 軌道進入을 하였다.

交通部와 遞信部, 保社部의 企劃管理室에서도 각기 行政資料에 의한 交通統計, 遞信統計 및 保健社會統計를 年月別로 集計하여 月報 또는 年報로서 발표하였다. 文敎部에서는 1962年(行政管理課), 1963年(中央敎育硏究所)에 文敎統計要覽을 發刊한데 이어 1965年부터 同 企劃管理室에서 文敎統計年報를 발간하고 있다.

2. 國民計定 및 關聯統計의 發展

가. 國民計定推計의 實效性 提高

1960년대 들어 旣存統計의 改編과 함께 産業關聯表 作成을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統計와 經濟調査도 着手되었다. 즉 經濟의 다부문 分析과 豫測 및 計劃 樹立의 必修不可缺한 産業聯關表는 50年代의 産業開發委員會가 使用하던 技法을 全面改編하여 1960年度分 産業聯關表를 1963年에 作成한 것이며 1965年부터는 새로이 資金循環 分析을 하였다.

한편 1967년 4월에 政府가 國富調査를 實施하기로 決定함에 따라 經濟企劃院을 비롯하여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등이 共同調査業務에 着手하여 1969年에 實施하였다.

1962년 1月에 制定된 統計法에 의하여 家計調査가 指定統計로 됨으로써 家計調査와 農家經濟調査統計는 政府로 移管되었고 消費者物價指數統計業務와 함께 國民經濟計定推計의 實效性을 追加하였다.

나. 國民計定 關聯統計

(1) 國民所得

國民所得推計業務는 基準年度를 從前의 1955年에서 1960年으로 그리고 다시 1965年 및 1970年으로 變更함과 동시에 構成項目의 再調整作業을 통하여 全面的으로 改編하였다. 1960年 基準改編時(1963)에는 産業聯關表(I－O)및 鑛工業센서스에 의한 基礎統計整備에 따라 推計方法을 대폭 改善한 것이며 1965年 基準 改正時에는 農産物統計의 現實化, I－O에 의한 鑛工業統計의 改善 및 運輸業部分 補完 등에 의한 改善이 主要骨子이다.

특히 1967年부터는 不變 및 經常價格系列에 의한 4分期別 推計도 實施하여 오고 있는데 1973年에는 同 推計方式을 從前의 EPA方式에서 CENSUS方式으로 變

更하는 同時에 季節變動調整系列을 作成함으로써 國民所得推計業務는 큰 發展을 보았다. 1974年에는 UN統計局이 制定한 新國民計定體系(New SNA)에 의거하여 國民所得統計의 改編推計에 着手하였다.

한편 韓銀의 都賣物價調査는 物價政策樹立에 있어서의 有用度를 높이기 위하여 輸入商品都賣物價指數를 輸出入物價指數로 대체하는 作業을 進行해 왔다. 동시에 全國 15個 地域에 있어서의 主要商品의 都賣 및 小賣價格을 每分期마다 調査하여 商業「마－진」율을 産出하고 있으며 이를 國民所得推計에 利用하고 있다.

(2) 資金循環

國民經濟部門間의 資金의 흐름을 全體的으로 觀察할 수 있는 資金循環計定은 1965年이래 1963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每年度別 및 每分期別로 資金循環統計를 作成하고 있으며 이를 綜合하여 「韓國의 資金循環」을 發刊하고 있다. 이와 같은 資金循環計定은 1968年부터 「分期別 國民所得」計定이 作成 發表됨에 따라 從來의 「金融去來表」에 資本計定을 追加 統合한 「貯蓄·投資 및 金融去來表」로 확충되었으며 1974年에는 通貨金融統計體制의 改編에 따라 同 計定의 金融部門에 대한 調整이 이루어졌다.

(3) 産業機關表 및 國富統計

韓國銀行은 1960年부터 5大國民計定統計의 하나인 産業聯關表의 作成에 着手하여 지금까지 1960년, 1963년, 1966년, 1970년 및 1975년의 産業聯關表와 1968年 및 1973年에 簡易産業聯關表를 작성한 바 있다.

특히 1970年 産業聯關表의 作成時에는 産業聯關表의 應用範圍를 넓히기 위하여 商業 運輸「마진」및 잔폐물「매트릭스」와 物量表 등 各種 附屬表와 勞動聯關表도 作成하였다. 그리고 1975년 産業物量表를 基礎로 한 1978년 簡易産業聯關表, 韓日國際産業聯關表, 美國, 日本, 東南「아시아」諸國과의 國際産業聯關表를 作成하기 위하여 이들 國家의 硏究所들과 協調를 계속하였다.

또한 經濟活動의 結果로 蓄積된 國內의 再生産可能 流刑固定資産을 調査하는 國

産業別國民總生産(經常市場價格)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669	1970	1971
	(10 억 원)											
農業,林業및漁業	89.31	113.85	130.27	217.00	333.04	303.28	356.87	385.88	467.25	594.77	718.54	890.65
漁業	2.18	2.04	3.50	5.12	9.54	13.62	16.66	24.03	29.87	34.68	47.26	63.20
鑛業및採石業	5.23	5.54	7.07	8.35	12.37	16.21	19.14	23.77	24.92	29.38	38.96	44.47
製造業	33.51	39.74	50.64	73.21	110.93	143.79	190.33	240.47	327.32	433.16	558.65	692.62
電氣가스및水道事業	1.85	3.30	4.54	4.85	6.36	9.98	14.17	17.44	22.50	31.50	43.98	53.20
電氣가스業	1.71	3.08	4.28	4.34	5.78	9.30	13.23	16.46	20.84	28.35	37.67	44.81
建設業	8.20	9.63	11.65	14.70	20.23	27.66	38.04	49.66	79.08	121.63	146.77	161.95
都小賣및飮食宿泊業	36.26	41.37	53.02	71.54	97.55	136.39	182.82	240.60	302.60	399.33	488.58	605.18
運輸倉庫및通信業	11.33	13.76	17.08	19.90	23.91	32.14	53.21	76.82	109.77	144.38	182.52	224.17
運輸倉庫業	9.69	12.07	14.78	17.07	19.99	27.00	43.63	65.30	93.36	124.97	159.65	197.56
金融保險不動產및用役法	4.42	5.26	6.79	8.56	11.76	15.59	20.63	29.27	42.42	58.01	80.82	107.73
住宅所要	16.29	16.56	18.49	21.78	25.31	27.99	33.42	45.90	55.72	64.18	77.58	95.32
公共行政및國防	17.17	20.11	26.17	27.60	33.08	39.33	52.80	65.57	83.50	105.06	134.57	163.09
社會및個人서비스業	19.55	22.28	26.64	32.08	36.52	45.71	62.23	83.90	114.67	148.84	201.43	259.93
教育서비스業	9.51	10.11	12.21	13.42	14.79	15.89	23.76	31.90	45.26	57.86	82.34	109.10
海外部門	1.81	2.78	3.18	3.33	5.25	7.65	13.38	21.95	23.18	25.03	11.89	-3.48
國民總生産	244.93	294.18	355.54	502.90	716.31	805.72	1,037.04	1,281.23	1,652.93	2,155.27	2,684.02	3,294.83
農林漁業	89.31	113.85	130.27	217.00	333.04	303.28	356.87	385.88	467.25	594.77	718.54	890.65
非農林漁業	155.62	180.33	225.27	285.90	383.27	502.44	680.17	895.35	1,185.68	1,560.50	1,965.48	2,404.18
鑛工業	38.74	45.28	57.51	81.56	123.30	160.00	209.47	264.24	352.24	462.54	597.61	737.09
社會間接資本및其他	116.88	135.05	167.56	204.34	259.97	342.44	470.70	631.11	833.44	1,097.96	1,367.87	1,667.09
國民總生産(1975 不變價格)	2,845.64	3,004.58	3,071.14	3,350.65	3,671.50	3,884.99	4,378.48	4,669.39	5,195.61	5,911.39	6,363.98	6,962.46

資料：韓國銀行

富調査를 1968年末과 1977年末 基準으로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및 中小企業銀行 등이 共同으로 실시한 바 있다.

(4) 産業 및 景氣統計등

韓國銀行에서 1957年 8月부터 編制發表하였던 産業生産指數를 1960年 5月과

1962年 7月 두 차례의 改編을 보았고 이를 1969年 1月에 産業銀行으로 이관할 때까지 지속하였다.

1966年부터는 韓銀에서 分期別로 企業家豫想方式에 의한 景氣豫測을 實施하였으며 다시 1967年부터는 景氣動向指數 作成에 着手하여 1969年에 53개 系列에 의한 試算結果를 토대로 「韓國經濟의 景氣動向指數의 作成과 그 問題點」이란 硏究資料를 발표하였다. 1966年 2月부터는 短期經濟豫測調査(BSI)를 實施하여 왔는데 이는 1982年 12月에 編制가 中斷되었다.

한편 1956年 6月, 鑛工業體에 從事하는 從業員의 賃金水準 및 出勤日數를 把握하여 勞動政策樹立에 필요한 基礎資料로 이용할 수 있도록 「鑛工業常用從業員 月當給與額 및 出勤日數調査」를 실시하여 1968年까지 調査하였고 이는 1969年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되어 계속되었다.

1955年 12月 主要都市의 建築許可狀況을 建物의 用途別, 使用資料別로 把握하여 國民所得推計, 景氣動向分析에 有用한 基礎資料로 利用할 수 있도록 「主要都市建築許可調査」를 실시하여 1969年까지 調査하였고 1970年 6月에는 이것이 建設部로 移管되었으며 한편 1964년以來 生産指數와 함께 製造業의 최근 動向과 收給狀況을 分析하는 데 利用하는 製造業者 製品在庫指數編制도 1968年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되었다.

(5) 企業經營分析

韓國銀行은 1962年에 처음으로 企業의 經營活動을 計數的으로 把握하여 各種經營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企業經營分析을 하였다. 이는 1960년도 鑛工業센서스에서 鑛業 및 製造業의 從業員 5인 이상 事業體 15,572 業體 중에서 有意抽出方法에 의하여 145개 業體를 選定하여 分析을 한 것이다.

調査週期는 年2回의 調査를 원칙으로 하되 이번에는 첫번째 調査라는 特性을 勘案하여 比較分析이 可能하도록 1960年과 1961年의 2個年度 分을 調査하였다. 그 후 鑛業과 製造業에 局限되었던 調査對象業種을 1962年에 電氣業을, 1963年에는 建設業, 都小賣業, 運輸業, 서비스業을 追加하였으며 1968年에는 調査方法을 從前

의 有意抽出方法에서 層化任意抽出 및 單純任意抽出法을 並行하는 方法으로 變更하였다.

(바) 企業原價分析

韓國銀行은 1963年에 韓國 企業의 製品原價를 分析함으로써 經營合理化促進을 위한 資料로 利用하고자 1962년도 企業原價調査(企業經營分析調査對象業體와 同一)를 실시하였던 바 이는 原價를 構成하고 있는 各 要素費用의 性格을 動態的으로 觀察함으로써 費用과 조업률과의 相關關係 등 채산變化를 實證的으로 捕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企業原價分析은 1968年까지 작성하였으나 1969년 이후에는 企業經營分析에 통합되었다.

第 3 節 開發時代의 主要統計

1. 人口統計의 整備過程

가. 人口靜態統計

(1) 總人口調査

人口靜態統計의 근간을 이루는 總人口調査는 1925년以來 國勢調査 또는 簡易國勢調査의 名稱으로 매 5年마다 實施하여 왔다. 그러나 日帝下의 人口調査는 植民地 經濟收奪을 위한 것으로 人口調査로서의 그 基本이 定立되어 있지 못하였다. 또 調査의 結果도 嚴格히 統制되어 一般國民의 利用도 制限되었다.

1945年 解放과 더불어 國土가 兩斷된채 1948年 政府樹立直後에는 國民經濟生活의 向上을 企劃하는 綜合的인 政府施策의 하나로 統計作成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人口調査를 서둘렀다.

政府樹立後 最初의 人口調査에 관한 法令은 1949. 1. 27日 法律 第18號로써 公布·施行된「人口調査法」이다. 이 法律은 全文 6個條에 지나지 않은 간단한 것이지만 이로써 人口統計는 그 法的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人口調査法」은 第1條에서 "大韓民國 領域內에서 總人口 및 人口動態에 관한 調査를 行하여 施政의 基本인 資料를 作成·發表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第2條는 調査의 時期를 1950年을 基準으로 매 10年마다 總人口調査를 施行하되 總人口調査가 있는 後 5年마다 簡易總人口調査를 施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建國直後의 緊急性에 비추어 第1回 調査는 1949. 5. 1日에 實施하도록 하였다. 第3條에서는 人口動態調査에 관한 規定을 두어 人口의 動的 變動을 觀察하도록 하였다.

第4條에서는 人口調査에 의하여 蒐集된 資料와 報告의 轉用禁止를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總人口調査 申告書를 利用하여 個別的인 어떤 집의 幽靈人口을 摘發한다든지 또는 具體的으로 어떤 個人의 稅金을 增加시키는 데에 利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申告者로 하여금 安心하고 申告義務와 眞實義務를 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第6條에서는 人口調査 遂行에 따르는 法的·制裁的 效果를 規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本 法은 一般國民의 申告義務, 眞實義務 및 一定한 不作爲 義務의 違反(2號 및 3號)과 調査從事者의 秘密義務違反(1號)에 관하여 一定한 刑罰을 課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한편 第1回 總人口調査의 施行令(1948. 12. 13 大統領令 第39條)은 16個條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중 第1條에서는 第1回 總人口調査의 基準時點을 1949. 5. 1日 午前 0時 現在로 定하고 있으며 第2條에서는 調査期日에 領域內에 現存한 者를 家口單位로 調査한다고 調査單位(對象)를 規定하고 있다.

第3條에서는 調査項目을 規定하고 있는데 姓名은 重複, 漏落 또는 誤記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며, 家口에 있어서의 地位는 우리나라 家族制度의 變化를, 配偶關係는 男女離合의 狀態 및 民族의 風習 또는 慣習을 把握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職業項目은 産業年次計劃 樹立 等에서 勞動配置 또는 失業者 對策 그리고 國土計劃의 樹立이나 國民經濟의 組織을 把握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學歷項目은 우리나라의 文盲率을 파악하여 成人敎育 또는 未就學 兒童의 敎育方針 및 學校種類와 敎育科目을 韓國 現實과 將來에 맞게 樹立하는데 基礎資料로서 利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軍事經驗란과 徵用經驗란은 日本帝國主義 強壓으로 學兵 또는 徵兵으로 끌려간 靑·壯年들 중 살아서 歸國한 숫자의 把握 및 이를 根據로 對日賠償計劃을 樹立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公報處 統計局內에 國勢調査課를 設置하고 1949. 5. 1日에 第1回 總人口調査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6·25動亂으로 總人口數等 速報資料를 除外한 一體의 調査資料를 消失·紛失하였다.

이 당시의 調査票는 그 自體로서 速報資料를 集計할 수 있도록 下端에 調査家口의 男女別 年齡階層別 記入欄을 設計하였었다. 이에 의하여 調査終了와 同時에 서둘러 集計한 速報資料에서 總人口數와 함께 道別 年齡別職業槪況 資料나마 保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實務者들이 考案한 功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調査總人口數는 20,189千名이었다.

종전후 旣存의 모든 産業 및 社會諸般施設이 破壞되고 國土는 荒廢되어 政府는 經濟復興計劃을 위하여 國家의 人的·物的資源의 分布狀況 等에 관한 統計需要에 對處하여 豫算을 確保하는 한편 1955. 2. 17에는 統計局을 公報處로부터 內務部로 移管하여 그 안에 企劃, 國勢調査, 人口調査課를 設置하여, 同年 9月 1日에 內務部 傘下 行政機關을 動員하여 簡易總人口調査를 實施하였다.

1962. 1. 15日 統計法이 制定되기 前까지 人口調査는 1949. 1. 27日字에 法律第18號 人口調査法에 根據를 두고 實施하였다. 1955年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도 人口調査法 第2條 規定과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令(大統領令 第1,033號)에 依據하여 實施되었으며, 全國的인 人口를 비로소 어느 정도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었다. 이당시에 특기할 것은 簡易總人口調査의 結果를 利用하여 그간 人口의 靜態와 動態 등을 綜合하여 처음으로 推計人口를 算出한 것이다.

1960年에는 國際的으로 實施되는 人口, 住宅 및 農業센서스를 契機로 韓國의 센서스도 커다란 轉換期를 맞이하였다. 1960年 人口住宅國勢調査도 人口調査法 第2條와 國勢調査令(1960. 11. 3 國務院令 91號)에 依據하여 實施되었다.

그러나 解放以後의 統計는 數次에 걸친 統計機構의 變革과 統計事務職員의 縮小, 其他 豫算의 制約 等으로 當初의 構想보다 정상적인 운영을 圖謀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政府 各機關에 分散된 現在의 統計機能을 有機的으로 綜合統計化 하는데 많은 問題點이 있었다.

당시 라이스(Stuart. A. Rice)博士 一行의 統計顧問團이 政府의 組織行政 및 事業活動을 망라한 改善된 統計計劃을 進展시키는 등 12個部門에 관한 事項을 協調하기로 契約하고 1958年末에 滯韓團을 設置하게 되었다. 그들중 一員으로서 國勢調査顧問을 雇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 이 顧問團은 1960年度 人口, 住宅 및 農業調査의 計劃과 準備를 取扱하면서 建議案을 採擇하였고 政府 當局에서도 이들 建議案을 檢討한 끝에 國勢調査委員會의 設定에 관한 大統領令을 制定하여 國務會議에서 通過시켰고(1959. 2. 10日, 大統領令 第1,449號) 이 委員會가 中心이 되어 1960年 12月 1日에 人口

및 住宅 總調査를 實施한데 이어 1961年 2月 1日에는 農業總調査를 實施하였다. 또한 過去에 없었던 이들 總調査에 대한 事後調査를 다음해 3月에 實施하였다. 이때의 調査結果는 단순한 숫적 事實을 結合한데 그치지 않고 相互間의 連關性을 具體的으로 表示하여 政府樹立後 10個年間의 國家發展의 樣相을 把握할 수 있게 하였다.

1956年 人口總調査는 當初 1965年 實施할 計劃이었으나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投資資源 確保에 따른 豫算事情으로 1年 延期하고 調査區도 1960年 당시의 約 6萬家口에서 3萬9千으로 줄이고 또 住宅에 관한 調査는 實施하지 않았다. 그러나 集計過程에서 電子計算機(EDPS)를 使用하여 資料處理期間을 短縮시키고 結果表의 項目을 한층 豐富하게 하였다.

또 1966年 人口總調査에서 人口의 基本的 屬性(家口 및 人的 事項과 敎育程度)은 全數調査하였으며 普通調査區中 1/10에 해당하는 3,753個調査區를 標本調査區로 하여 이 調査區에 대하여서는 全數調査項目以外에 出産力(15歲以上 婦女者에 대한 總 出生兒數 및 1年間의 出生兒數)과 經濟活動(14歲以上者에 대한 就業與否, 産業, 職業, 從事上의 地位)項目을 調査하였다. 이때부터 標本理論을 導入하여 調査나 集計過程에서 人力과 時間을 節約하고 誤差를 最少化하고 管理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調査回數가 거듭되면서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當初 人口의 基本的인 屬性에만 치중했던 調査項目이 統計資料 需要의 增大, 利用度의 多樣化와 國際的 比較性을 充足할 수 있도록 敎育程度, 經濟活動 등 經濟的 社會的 屬性까지도 調査項目에 包含시켜 擴大해 나아갔다.

1970年 人口總調査에서는 人口의 離農現象과 都市集中化가 社會的 問題로 대두됨에 따라 人口移動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出生地와 5年前 住居地 項目을 追加하였으며 또 한편 人口의 急增에 따른 出産力을 測定하기 위하여 出産力 項目을 標本調査로 하였다. 한편 資料處理過程에서는 좀더 現代化된 電子計算機의 導入으로 處理期間이 더욱 短縮되었다.

1975年 總調査는 1970年의 調査와 같이 「總人口 및 住宅調査」라는 名稱으로 實施되었으며 調査項目에서도 初婚年齡과 '追加 職業 希望'등이 追加로 調査되었

다.

이상의 解放後 70年代까지의 센서스實施에 의해서 나타난 人口數의 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總調査人口 推移

(單位：千名, %, 名)

調査基準日	人口數	男子	女子	年間人口增加率	性比
1949. 5. 1	20,189	10,201	9,988		102.1
1955. 9. 1	21,526	10,767	10,760	1.02	100.0
1960. 12. 1	24,989	12,544	12,455	2.88	100.8
1966. 10. 1	29,193	14,702	14,491	2.70	101.5
1970. 10. 1	31,466	15,796	15,670	1.89	100.8
1975. 10. 1	34,707	17,461	17,245	1.98	101.3
1980. 11. 1	37,436	18,767	18,669	1.50	100.5

第1回 총조사 施行年度라 할 수 있는 1949年의 解放直後의 混亂과 無秩序가 어느정도 정돈되었고, 海外에서의 歸還者도 일단락 지었으며, 北韓에서의 越南者도 建國前에 비하여 훨씬 弱化되어, 人口面에서도 어느정도의 安定期를 形成하였다고 볼 수 있다. 第1回 總人口調査에서 南韓人口의 總數는 20,189千名이었으며 男女間의 性比는 好100名當 男子 102.1名으로 나타나 男子가 女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거의 均衡狀態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1950年 韓國動亂은 人口構造面에도 지대한 變動을 強要하였다. 戰爭으로 傳統的 價値構造의 機能이 弱化되었고 또한 早婚慣行이 終熄되었다. 6·25動亂중 全體國民의 거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生活基盤이 破壞되었으며 多出產價値觀에 正面으로 反對하는 產兒制限이 合法的, 默示的으로 流行하였다.

戰爭이 미친 影響은 家族觀이나 出產調節行爲에 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家族形成 및 出產力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었다. 兵役徵集, 死傷者의 發生, 避難民의 戰時困境으로 相當數의 사람들이 結婚을 遲延시켰으나 또는 오랜 期間동안 別居하였다. 그 結果 休戰이 되어 平常을 되찾은 後에 結婚의 물결이 높아지고 出生

이 急增하여 1950年代 末期에 들면서 '베이비 붐'의 現象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從前以後에는 社會의 混亂도 漸次 整頓되고, 人口面에서도 人口의 增加는 社會的인 要因에 의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自然增加에 의해 增加하기에 이르렀다. 1960年 人口住宅國勢調査의 結果에 의하면 南韓의 總人口는 約 2,500萬名으로, 1955年에 比하여 約 350萬名이 增加하여 센서스 年間 人口 增加는 約 30萬名에 달하였고 센서스간 人口增加率도 2.88%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 常住人口調査

常住人口調査는 1896年에 制定된 戶口調査規則을 母體로 每年 實施하여 온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는 調査로 人口센서스와 함께 우리나라 靜態調査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45年부터는 南北分斷과 行政機能 未定着 및 6.25 動亂등으로 實施되지 못하다가 釜山遷都시 6.25動亂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人口分布狀況 및 人口動態등을 把握하기 위하여 1952年에 한번 實施한 바 있으며 常住人口調査가 定着하게 된 것은 1955年 以後 統計業務가 公報處로부터 內務部로 移管되고서이다. 그리하여 1955年부터는 人口센서스 年度를 除外하고는 每年 實施하여 왔다.

1961年에 經濟企劃院이 設置되고 統計局도 經濟企劃院 所管이 되는 한편 統計法이 制定 公布된 後에는 1962年 6月 13日에 指定統計 第7號 年末常住人口調査라는 名稱으로 指定되어 統計法 第3條와 서울特別市 및 各 市·道 常住人口調査實施條例에 의하여 從來 中央에서 調査하던 것을 地方自治團體로 調査業務를 移管하고 調査時點도 12月 31日에서 12月 1日로 變更하였다. 1965年에는 調査時點을 10月 1日로 變更하고 名稱도 「常住人口調査」로 改稱하였다. 그러나 年末常住人口調査는 行政系統을 통한 調査이므로 人口센서스 結果에 比하여 信賴性이 매우 낮은 實情이다. 이에 1968年의 調査結果는 公布를 留保하였고 1969年에는 調査自體를 中止하였다가 1971年부터 이를 다시 再開하여 實施하고 있다. 1983年에는 從前에 使用하였던 多家口連記式調査票를 單記式調査票方式으로 바꾸었고 1986年부터는 調査時點을 11月 1日로 變更하여 實施하고 있다.

常住人口調査는 行政統計로서 調査方法이나 調査過程에 많은 問題點이 있으나 地域別로 人口의 變動狀況(地域別 人口數, 年齡構造, 家口數)을 把握하여 地方行政機關의 諸般 行政目的에 基本資料로 使用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서 人口靜態에 관한 重要統計로 持續하였다.

(3) 住民登錄制度

韓國의 住民登錄制度는 社會·經濟가 發達함에 따라 人口移動이 頻繁하여지자 戶籍이 있는 곳(本籍地)과 實際生活을 營爲하는 곳(住所地)이 漸次 乖離되는 現象을 보여, 本籍地 以外에 住民의 生活과 一致할 수 있는 住所地를 認定하는 制度이다. 日帝下인 1942年 6月 26日에 처음으로 寄留令을 制定·實施하여 公證할 수 있는 住所地制度를(「寄留籍」)實施하였다. 그러나 이 寄留令에 의한 寄留申告는 申告狀況이 極히 不振하여 實際生活과의 乖離狀況은 여전히 피할 수 없었다.

1962. 5. 10에 法律 第1,067號로 制定된 住民登錄法은 단순히 戶籍과 實際生活과의 乖離現象만을 補充하는데 그치지 않고 住民의 住居關係와 移動狀態까지 明確히 把握하여 廣範하게 行政의 基礎資料로 活用케 하고 있다. 여전히 住民의 申告原則에 따라 住民登錄表를 作成케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制度上의 缺陷을 惡用하는 事例가 많아 오히려 公信力을 低下시켜 왔다. 이에 1968年 6月 29日 法律第2,016號로 從前의 住民登錄法을 大幅改正하여 住民의 申告事項중 戶籍과 關聯되는 事項은 반드시 戶籍法에 基準하도록 하고 其他 住民의 諸般 申告事項은 關聯機關間의 通報에 의하여 確認하도록 하고 아울러 未申告 轉出入者에 대한 強制登錄을 規定하여 住民登錄이 住所地를 管轄하는 公簿로서 公信力을 높이게 되었다.

現在의 住民登錄制度에서는 住民登錄簿上의 人口가 每月 戶籍法上의 出生·死亡申告에 의해 修正되고 있으며, 轉出入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上의 轉出入 申告에 의해 修正되고 있다. 따라서 住民登錄制度에서는 行政區域別 人口數, 出生·死亡數, 轉出入者數 및 轉入前 居住者制 移動者數등의 人口統計資料가 把握되고 있다. 이러한 統計目的 以外에도 住民登錄簿는 選擧人名簿作成, 就學通知書의 作成, 各種 公課金의 賦課 等 國家 및 地方行政上의 目的을 達成하는 데에도 活用되고 있다.

나. 人口動態統計

(1) 人口動態調査

人口動態統計는 人口靜態統計(人口센서스, 常住人口調査)와 함께 人口統計의 兩大 根幹을 이루고 있는 統計이다.

人口動態統計는 舊韓末부터 戶籍申告에 의하여 出生·死亡의 數를 얻었고, 戶籍이 있는 本籍地에서 行政事務에 附隨하여 統計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現代的 意味의 統計作成 目的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었다.

1945年 第2次 世界大戰이 終結되자 美軍政 保健部에서 現在主義에 立却해서 申告調査를 實施한 바 있고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됨에 따라 1949年1月의 法律 第18號「人口調査法」과 同年 12月의 大統領令 第252號로 人口動態를 申告하게 하였다.

이로써 人口動態統計는 戶籍申告 寫本에 따라 地方 邑·面長이 報告, 集計하던 2次的 統計에서 國民의 申告에 의하여 作成되는 一次的 統計로 轉換하게 되었다. 同時에 過渡政府時代부터 保健厚生部에서 하던 人口動態調査는 公報處 統計局으로 移管하여 人口調査課에서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에 관한 統計를 每 1年 期間으로 作成하였다.

1950年 6.25動亂의 勃發로 人口動態調査는 一時中斷되었으며 단지 1952年에 人口動態調査의 一部가 要約式으로 實施되어 人口速報의 一部分으로 發表하였으나, 數百萬을 헤아리는 北韓에서의 越南民과 戰時 人口移動 등으로 不安한 住居狀態는 人口動態調査에 큰 打擊을 주었다.

1955年 2月에 統計局이 內務部로 移管되어 人口動態調査를 強化하였으나 國民申告의 不振으로 統計의 信憑度가 매우 낮았다.

한편 1961年7月에 經濟企劃院 設置後에 1962年6月11日에 人口動態調査가 指定統計 第3號로 指定·告示되었으며 人口動態調査規則(經濟企劃院令)에 의하여 實施하고 있다. 이 法令에 따라 戶籍法에 規定한 申告義務者는 出生, 死亡, 婚姻, 離婚 等의 人口動態事象이 發生하면 法定期間內에 戶籍申告와 同時에 管轄 區·市·邑·面長

파 오 손 면

에게 義務的으로 申告하여야 하고, 申告書중 1枚를 經濟企劃院 長官에게 提出하도록 制度化하였다. 이로써 人口統計資料의 質도 상당히 改善되었고 1964, 1965, 1966年度에는 이들 結果를 「人口動態統計」로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1970年부터는 戶籍申告와 別途로 分離되었던 人口動態申告書를 戶籍申告書와 同一用紙 同一面(戶籍申告書 下段)에 記載하도록 一元化시키는 劃期的 措置를 法院과 協調하여 취하는 등 申告率 提高를 위한 努力을 持續的으로 集中시켜 왔다.

이때 忠南 大田市 三省洞, 公州邑, 大德郡 儒域面을 人口動態 示範地域으로 指定하여 重點管理하였다.

한편, 國民申告에 의하여 作成되는 人口動態統計의 낮은 信憑性을 補完하기 위하여 1963年부터 年 4回 分期別로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實施하였고, 한편 應答者의 協調와 調査員의 資質, 調査技法上의 開發을 促進시키고자 1979年부터는 標本調査를 每月 反復的으로 實施하는 한편 同一 標本調査區에 대하여 重複調査, 回顧調査를 實施하여 動態資料의 精度 提高에 力點을 두었다.

1978年에는 月別 經常標準調査와 別途의 特別 標準家口를 對象으로 "人口動態特別調査"를 實施하여 經常標準調査를 補完·發展시켰으며 1987年 下半期에는 約 55,000標本家口를 對象으로 大規模 人口動態特別調査를 實施하였다.

(2) 人口移動統計

前述한 바와같이 人口移動統計는 1962年5月10日字 法律 第1,067號로서 住民登錄法이 公布됨에 따라 住民登錄 業務의 處理過程에서 얻어진 業務統計이다. 즉, 地方行政機關에 의한 報告統計로서 住民登錄法에 의하여 住居登錄을 옮긴者가 作成하는 轉出入 申告書를 洞·邑·面에서 聚合·整理하여 區·市·郡과 市·道를 거쳐 經濟企劃院에 提出하며, 이를 調査統計局 人口統計課에서 集約하여 人口의 移動狀況을 週期的으로 把握하여 人口政策 및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하여 活用하게 하고있다.

人口移動統計는 1976.4.10日에 一般統計 111-21-05로 承認되었으며, 以後 1980.9月에는 過去 各各 다른 樣式으로 申告하던 轉入, 退去, 再登錄申告를 한장의 樣式으로 統合하여 使用하고 있다.

(3) 死亡原因統計

死亡原因統計는 國民保健 및 醫療分野의 政策樹立과 硏究에 必要한 資料로서 國民의 保健水準 및 한나라의 社會, 經濟, 文化的 發展程度를 反映하는 主要 保健指標로서도 活用되고 있다.

死亡原因統計는 1938年 人口動態調査規則 制定으로 作成이 시작된 人口動態統計의 一部로서 生産하였으나 申告의 漏落 또는 不正確한 死因의 記載 等으로 인하여 제대로 作成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55, 1966, 1979年에는 死因統計가 作成되었다.

以後 死亡原因統計가 國民保健 및 醫療分野의 政策樹立에 必須不可缺하게 됨에 따라 그 需要가 急增하였고 또 死亡에 관한 動態申告資料의 質도 改善되어 1982年에는 1980年度 死亡原因統計資料를 收錄한 死亡原因統計年報가 發刊되었으며, 以後 每年 作成되어 오고 있다.

한편, 死亡原因統計는 死亡者의 住所地 또는 本籍地의 洞·邑·面事業所에 接受된 死亡申告書를 地方行政機關을 통해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接受한 뒤, 死因을 國際病源分類(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맞게 符號化하여 集計하고 있다.

(4) 生命表

生命表는 지금 막 태어난 出生兒가 現在 時點에서의 死亡패턴을 將來에도 똑같이 經驗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정하여 年齡別 期待壽命을 推定하여 綜合的인 死亡力 水準을 나타내는 것이다.

解放前에 作成된 韓國人의 生命表는 日本人 Y.Ishi(石南國)와 Mizushima(水島治夫) 및 박재빈氏에 의해 作成되었는데, Y.Ishi에 의해 作成된 1906～1910年 우리나라 사람의 平均壽命은 불과 23.5歲(男子 22.6歲, 女子 24.4歲)로 나타났다. 1926～1930年 사이에는 33.6歲로 30歲를 넘고 있으며 解放以前 1940年 初盤에 45歲 정도가 되었다.

解放과 6.25事變으로 一時的으로 中斷되었던 生命表作成은 1955年과 1960年 두 센서스間 生殘率을 利用하여 死亡패턴을 모델生命表에 適用시켜 1955～1960年사이의 韓國人의 生命表를 作成하면서 再開되었다. 이 生命表에 의하면 解放前 1940年初의 韓國人의 平均壽命이 45歲 정도이었던 것이 1955～1960年에는 52.6歲(男子 51.1歲, 女子 53.7歲)로 約 7내지 8歲가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1年度에 접어들면서 韓國人의 平均壽命은 57.5歲로 이때에 비로서 女子의 平均壽命이 60歲를(60.歲)넘고 있다.

以後 繼續해서 韓國人의 生命標가 調査統計局에서 作成·發表되었는데, 特히 1978～79年의 生命表는 過去 1年 6個月 期間을 對象으로 獨立된 回顧調査를 實施

우리나라 平均壽命의 推移

(歲)

年　　度	男　　子	女　　子	計	作　成　者
1906～10	22.6	24.4	23.5	Y.Ishi(石南國)
1911～15	24.0	26.0	25.0	〃
1916～20	25.8	28.2	27.1	〃
1921～25	28.3	30.8	29.6	〃
1926～30	32.4	35.0	33.6	H.Mizushima(水島治夫)
1931～35	36.3	38.5	37.1	Y.Ishi(石南國)
1936～40	40.6	44.7	42.6	〃
1938～42	42.5	45.0	43.8	朴　在　彬
1942	42.8	47.1	44.9	Y.Ishi(石南國)
1955～60	51.1	53.7	52.6	金　日　炫
1961	54.5	60.6	57.5	〃
1966	59.7	64.1	61.9	調 査 統 計 局
1970	59.8	66.7	63.2	〃
1978～79	62.7	69.1	65.9	〃
1983	63.8	72.2	67.9	〃
1985	64.9	73.3	69.0	〃
1987	66.0	74.1	69.9	〃
1989	66.9	75.0	70.8	〃

하여 蒐集한 死亡資料를 根據로 作成하였다. 이 回顧調査는 人口動態標本調査를 補完하는 方法으로 1978年과 1979年 2年에 걸쳐 同一 標本地域에 대해 重複調査를 實施하였으며, 蒐集된 두 結果를 相互 對照하여 各 調査에서 漏落件數와 두 調査에서 모두 漏落한 件數를 推定함으로써 總 死亡件數와 그리고 死亡率을 推定하여 이를 土臺로 生命表를 作成하였다. 이 結果에 의한 韓國人의 平均壽命은 65.9歲로 나타났으며, 男子의 平均壽命이 이때서야 비로서 60歲를 넘고 있다.

1983年에 女子의 平均壽命은 72.2歲로 70歲가 넘고 있으며, 1989年에는 韓國人의 男女平均壽命이 70歲(男子 66.9歲, 女子 75.0歲)를 넘고 있다.

(3) 人口推計

人口推計는 將來人口의 크기 및 構造를 死亡, 出生, 移民 等의 水準 및 그 影響에 대한 特定한 假定을 根據로 觀察·豫測하는 것이다.

韓國 最初의 人口推計는 1957年 유엔의 經濟社會理事會, 人口分科委員會에 의한 아시아 地域 各國의 人口推計의 一部로서 1955年부터 1980年까지 25年間의 南韓 및 北韓人口를 推計한 것이 있다. 이때 使用된 資料는 1955年의 標本抽出集計에 의한 資料이었으며, 比較的 높은 死亡力 水準의 假定을 使用한 關係로 推計値는 1960年의 센서스 結果와 比較하면 約80萬의 不足을 보여주고 있다.

1960年에는 1955年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의 全數結果를 利用하여 1975年까지 20年間의 人口를 推計하였는바(金煉) 이전의 유엔推計에 比하여 死亡率의 빠른 低下와 낮은 出生率을 假定하여 推計하였다. 그러나 1955年의 年齡階級別 構造가 1960年에 比하여 多少의 差異를 보여, 推計 結果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1963年度에는 1960年度 國勢調査에 의한 綜合集計結果를 基礎人口로 利用하여 1960年부터 1980年까지의 20年동안의 韓國 將來人口를 推計하였다(崔仁鉉, 임태빈).

主 要 人 口 推 計 現 況

作成者(機關)	推計期間	基礎人口	作成年度	公表
1. 김 연	1955~1975	1955 인구센서스	1960	1955~1975 한국인구추계, Demographic Training & Research Center, Bombay
2. 최 인 현	1960~1980	1960 인구센서스	1963	1960~1980 한국인구추계, 한국통계월보, 1963, No.6~7, pp.5~54
3. 임 태 빈	1960~1980	〃	1963	1960~1980 한국인구추계, 한국통계월보, 1963, No.11~12, pp.5~47
4. 조사통계국	1960~2000	〃	1963	1960~2000 한국신인구추계
5. 조사통계국	1966~1986	1966 인구센서스	1970	1966~1986 한국인구추계, 1966 인구센서스 종합분석보고서, pp.27~66
6. Population Council	1970~2150	1970 인구센서스	1974	Republic of Korea, Country Prospects(New York), pp.2~19
7. 김 대 영	1960~2040	〃	1975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인구의 추계, 1960~2040, 연구조사보고 75-11권
8. ESCAP	1970~2100	〃	1978	ESCAP, Illustrative Population Projec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1970~2100, 1978
9 .조사통계국	1975~1985	1975 인구센서스	1976	
10. 조사통계국	1960~1975	1975 인구센서스	1976	과거센서스간 수정추계인구
11. 홍 사 원	1975~2075	〃	1978	한국개발연구원, Population Status Report: Korea, 1978
12. U N	1950~2025	〃	1982	Domographic Indicators of Countries Assessed in 1980
13. 조사통계국	1976~2050	1980 인구센서스	1981	제5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인구부문계획
14. 조사통계국	1985~2023	1985 인구센서스	1986	제6차 〃
15. 조사통계국	1985~2020	〃	1988	출생률 저하로 인한 수정

資料 : 金景中 韓國의 經濟指標 1989, .108~109.p

같은해 1963年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開催하는 아시아 人口會議(1963.12.10)에 提出하기 위하여 韓國의 將來人口를 1960年부터 1980年사이 20年間을 推計하였다(임태빈). 이 推計에서는 基本人口 및 年齡別 人口構造는 1960年 國勢調査의 全數結果를 利用하되, 死亡率은 1955年 簡易總人口調査에서 調査된 各 年齡別人口와 「코호

트(cohort)」의 5個年後의 生存者인 1960年 센서스에서 얻어진 各 年齡別 人口를 比較하여 生殘率을 求한 뒤 UN에서 作成한 모델生命表를 利用하여 얻어진 出生時 平均壽命 52.5年(歲)를 利用하였으며 한편 出生率은 逆生存率法으로 推算된 性 및 年齡別 修正出生率을 利用하였다.

그 以後에도 韓國人口에 대한 推計作業이 統計局을 비롯한 機關과 個人의 硏究結果가 있다.

2. 農林水產業 統計의 體系化

가. 農業統計組織 및 制度의 變遷

우리나라 農林水產 統計組織은 크게 보아 ① 統計專擔機關과 ② 부수적 통계조사 수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시 행정업무 수행상 행정통계를 수집하는 기관과 통계조사의 일분야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統計組織이라고 하면 보통 통계조사전담기관을 지칭하므로 여기서는 통계조사 전담기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大韓帝國時代의 農商務部 및 日帝의 총독부 농림국에 의한 행정통계가 주류를 이루던 일제하의 통계조사기구는 美軍政期間에도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1947년6월에 전면 개편되었다. 즉 美軍政廳은 1947.6.21에 法令 제143호 「農業統計報告令」을 공포하여 農林水產統計組織을 개편하였던 것이다. 全文 9條의 이 법령은 農產·水產·林產物에 관한 統計資料의 수집·대조, 報告書 및 統計作成의 담당기구로서 農業統計報告委員會를 農務部內에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원은 위원장 1인, 집행위원 1인, 위원 7인으로 규정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農務部 農業經濟局長이 집행위원은 農業經濟局 統計課長이, 그리고 7인의 위원은 水產局·山林局에서 각각 1인, 農業經濟局에서 5인을 통계관으로 임명하여 이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地方組織으로서는 道農業統計官 — 府·郡農業統計士 — 邑·面農業統計官 각 1명씩을 道·府·郡·邑·面에 배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독립된 통계조사기구가 계통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조사기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채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도 방치되어 오다가 1948년11월4일자 大統領令 제23호 農林部 職制 制定에 의해 秘書室에 統計係만이 있는 調査統計課가 설치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調査統計課는 農業基本統計(경지면적·농가호수·농가인구 등)만 조사하였으며, 그 외의 통계는 관련 各 事業局·課에서 조사하였다. 예컨대 家畜統計는 畜政課에서, 食糧作物生産量은 第一農政課에서 조사하였던 것이다. 이후 1971년11월22일자로 단행된 농수산부 직제 개편시까지 調査統計課 체제는 유지되었다. 그 동안에도 調査統計課의 기능이 다양화하고 또 他局課로부터 調査業務가 移管되는 등에 의해 점차 調査統計課의 조직이 확대되어 갔다. 즉 1950년3월31일자 農林部 職制 改正에 의해 次官室 直屬으로 바뀌었다가 55년2월에는 다시 農政局 調査統計課로 개편되면서 統計係 外에 調査係가 신설되었으며, 이와 함께 農政課에서 맡고 있던 食糧作物生産量調査 業務가 調査統計課로 移管되었다. 또한 1958년부터 농업센서스 업무가 調査統計課에 추가되었고, 64년10월1일자로 課의 組織이 管理係·調査係·經濟係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68년12월에는 畜産課에서 취급해오던 家畜統計 業務가 調査統計課로 이관되었다. 이후에도 70년1월1일부로 糧政課 業務였던 糧穀消費量調査가 調査統計課로 移管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1년11월22일자의 職制改正으로 調査統計課는 局水準으로 승격되어 企劃管理室 소속으로 바뀌는 한편, 책임자인 調査統計官(局長級) 밑에 作物統計擔當官과 經濟統計擔當官을 두도록 하였다. 調査統計官의 명칭도 1973년1월에 農林統計官으로 바뀌었다가 1974년1월28일자로 農業統計官으로 바뀌었으며, 이와 함께 독립된 地方調査機構로서 道別로 9개의 農業統計業務所, 市郡 單位에 農業統計出張所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전국적인 農業統計調査機構가 정비된 셈이다.

나. 調査人力과 裝備의 擴充

(1) 調査人力

農村 現地에서 統計調査를 전담하는 調査員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54년부터였다. 정부는 이때부터 農家經濟調査와 農産物生産費調査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33명의 調査員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이 중 17명은 農家經濟調査機構에 배치되어 170家口의 農家를 對象으로 農家經濟를 調査하였으며, 16명은 160家口의 農家를 對象으로 農産物生産費를 調査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체제는 196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61년 革命政權이 들어서면서 개편되었다. 즉, 革命政府는 61년7월들어 당시의 調査員 33명을 모두 解任하는 대신 國土建設隊員 중에서 80명을 定規職으로 새로 採用하여 이들을 任意標本 調査方式에 의한 새로운 標本設計에 따라 선정된 農家經濟調査地區에 배치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다음해인 62년1월 革命政府는 다시 80명의 調査員을 채용하여 이들을 調査地區에 배치하고, 대신 61년7월에 調査地區에 배치하였던 80명은 本部 各課로 전보시켰다.

1965년부터 米穀生産量調査 方式이 行政調査에 의한 全數調査에서 標本調査方式으로 變更된 후 66년1월1일자로 政府는 統計指導要員 203명을 채용하여 市·道와 市·郡에 배치하였으며, 68년1월에는 무려 1,667명의 통계요원을 채용하여 이 중 1,474명은 邑面當 각 1인씩 배치하고 나머지 143명은 市·道와 市·郡에 指導要員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때 邑·面에 배치된 1,474명의 統計調査要員이 統計調査보다는 다른 業務에 從事케되는 폐단이 발생하자 政府는 69년12월1일부터 1,474명의 읍·면 統計要員들을 市·郡에 이동시켜 統計調査業務에 專念토록 하였다. 70년에는 糧穀消費量調査業務가 糧政課로부터 調査統計課에 移管되면서 양곡소비량 조사원 60명이 調査統計課에 배속되어, 이들도 조사지구에 배치되었다.

1971년1월19일부로 그때까지 雜級職이었던 調査員 및 統計要員 2,028명 중 1,349

명이 正規職으로 전환되고, 당시 缺員 人員 612명은 解免되었으며, 나머지 67명은 定規職化되지 못한 채 잡급직으로 糧穀消費量調査業務에 배치되었다. 定規職으로 전환된 1,349명은 內務部 所屬 定員에 포함되게 하였으나 人事權은 農林部長官이 管掌하는 2중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1971년11월22일자의 職制改正으로 이제까지 課 기준이었던 중앙기구는 本部의 調査統計課가 局 水準으로 昇格되면서 그 定員도 79명으로 늘어났다. 中央機構의 定員은 그 후 약간씩 調整되었는 바, 73년6월에는 66명, 77년3월에는 63명, 78년 79명, 81년4월에 91명, 83년11월에 82명, 86년6월에 81명으로 調整되었으며, 88년9월 現在의 총 81명에 달한다.

1973년1월1일자로 雜級職 160명을 새로 採用하여 農家經濟調査地區에 배치하고 定規職 調査員은 市·郡에 移動 배치시켰다. 農家經濟調査地區가 80개 地區에서 160개 地區로 擴大되면서 현지 調査員으로서는 정규직이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74년1월28일 各道에 農業統計事務所, 市·郡에 農業統計出張所가 신설되면서 내무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던 1,349명의 통계요원이 農水產部 소속 정원으로 이관되었다.

(2) 資料處理

農業統計의 資料處理業務는 1960年度 農業센서스때까지는 統計局의 IBM統計機械에 依存하였고 日常業務는 受動式計算器(22臺), 電動計算器(11臺) 및 電子式計算器(8臺)를 利用하고 그간에는 統計局 또는 中央電子計算所(科學技術處 所屬)에서 大容量의 資料處理를 하였다. 1970年度 農業센서스도 中央電子計算所에 依賴하여 處理하였던 바 그후 1972년부터 調査統計局과의 컴퓨터共同利用 體系를 갖추면서 천공기導入(1974년 10臺)을 시발로 1976年에는 IBM컴퓨터 터미널을 設置(調査統計局과 연결)하였었다. 農水產部의 컴퓨터는 1979年12月에 IBM370/125를 導入하면서 獨自的으로 機能하게 되었다.

다. 農林水產統計體系와 그 內容

農林水產部門統計는 戰前부터 每年末基準으로 邑面에서 農業家口를 對象으로 全數調査하던 「農業基本統計調査」를 비롯하여 家畜統計, 農業生產統計, 農家經濟調査, 農產物生產費調査, 糧穀消費量調査 및 農產物流通調査와 漁業에 관한 基本統計, 生產量 및 漁家經濟 등의 調査가 대부분 1950~60年代에 基礎體制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5動亂以後의 農水產統計는 1952年부터 有意選定한 標本地域에서 坪刈調査에 의한 邑面·里洞推計作況을 市郡道 및 中央으로 報告하는 作物統計에서 보다시피 行政統計로부터 出發하여 1958年부터 試圖하다가 1965年에 시작한 Random Sampling標本調査로 發展하였다.

이 標本調査技法의 發展過程에서 1960년의 農業센서스資料에 의한 母集團, 層化, 抽出率, 標本(筆地와 圃區) 및 推計誤差 등의 管理가 採擇되어 이것이 그 이후의 農業統計 全般에 波及되었다. 이에는 農業部門에 관한 최초의 센서스가 1960年에 實施된 것과 農產物生產統計가 經濟政策의 變數로서 지니는 重要性때문에 生產量調査의 改善方法을 두고 官界, 學界에서 硏究事業이 活潑하였던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였다고 할 수 있다.

韓國에서의 農業센서스는 1930年부터 시작한 世界農業센서스計劃(UN/FAO主管)이 1950年에 그 第2次計劃을 推進할 때 한국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準備를 하다가 6.25동란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第3次世界農業센서스 計劃時期에 해당하는 1960年에 처음 참여한 것이다. 1960年末 현재를 기준으로 300坪以上의 耕地를 가진 家口를 대상으로 1961年2月1日에 실시하였다. 이것이 韓國에서는 第1次農業센서스(農業國勢調査)가 된 것이다.

1970年 第2次센서스는 調査對象을 300坪(10아아르)以上 農家는 물론, 高等園藝·特用作物, 果樹, 家畜 및 養蠶·養蜂 등도 一定規模以上 經營하는 家口를 包含하는

등 擴大實施하였고 1975年에는 비로소 人口센서스처럼 簡易센서스를 실시하였다.

한편 農業센서스以外에 1970年에 처음으로 漁業센서스(總漁業調査)를 水產動植物의 採捕나 養殖業을 경영하는 業體와 從事家口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농림수산통계는 크게 보아 ① 農家經濟 및 農產物生產費 ② 農水產物流通統計 ③ 農畜產物 生產統計 ④ 水產統計 ⑤ 農產物貿易統計 ⑥ 農地基盤統計 ⑦ 農業資材 統計 ⑧ 林業統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經濟統計의 發展

가. 經濟統計發展의 背景

經濟全般을 一定한 假定體系에 集約하여 計量的으로 把握하려는 努力은 實踐計劃의 作成과 政策手段의 發展을 目的으로 計劃模型의 有用性과 重要性을 活用코자 하는 것이다. 政府樹立後 第2共和國이 成立된 1960年初까지 전술한 바와 같이 몇 차례 經濟開發計劃을 시도하였었다. 그중에서도 네이산報告에 의한 韓國再建計劃, 復興部에 의한 3個年計劃, 建設部에 의한 5個年計劃 등이 韓國經濟를 模型體系에 의하여 把握하고 豫測하려는 努力이었다. 그러나 이들 初期段階에서는 特定 形式化된 模型體系없이 主로 數個의 均衡條件을 個別的 接近으로 推定하는데 불과한 時期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事情은 計劃技術의 未熟에도 있었지만 適用할 수 있는 資料의 量과 質에 있어서의 制限에도 起因하고 있었다. 經濟計劃에는 필수적인 主要經濟統計資料가 具備되어 있어야 함에도 當時만해도 이러한 統計資料가 아직 幼稚한 狀態였고 또 總量經濟把握에 必要한 國民所得推計는 初期段階였을 뿐아니라 產業聯關表같은 것은 아직 着手도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50年代에는 韓國經濟의 規模化가 試行段階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政府樹立 初期에는 中央統計局이 公報處에 所屬되어서 人口·社會統計에 置

重하고 있었고 經濟統計는 주로 企劃處, 商工部, 財務部, 農林部 및 復興部 등에서 行政統計로 蒐集發表하는 정도이고, 調査統計로서는 農林部 調査統計課의 農業統計 以外에는 韓國銀行 調査部의 物價, 生産, 企業體調査 등이 있었다.

政府組織法의 改正에 따라 公報處 統計局이 1955年 2月에 內務部로 移管되어 企劃, 國勢調査, 人口調査의 3課로 縮小 改編되고 그후 1957年 6月에 國勢調査課와 人口調査課를 人口統計課로 統合하고 統計基準, 經濟統計 및 製表의 4課로 改編하였다. 政府機構로서는 처음으로 經濟統計를 作成하기 위한 기틀을 만든 셈이었는데 이 機構에서는 家計, 物價, 勞動力 및 資源에 관한 統計를 作成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物價, 家計는 韓銀에서 實施하고 있었고 勞動力調査는 保社部 勞動局 등에서 全國行政機關을 통하여 雇傭, 失業에 관한 資料를 수집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이들 資料도 각 經濟主體의 經濟活動에 관한 統計的 定義나 槪念 및 分類水準이 定立되어 있지 못하였고 行政要員들의 統計知識이나 敎養·資質 등도 못 갖춘 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初期의 政府統計에서 보는 각종 系列과 특히 韓銀調査部의 經濟統計活動들이 韓國의 經濟統計發展에 先驅者的 役割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차에 1958年 美國의 統計調査硏究所(Survey and Research Corporation)가 서울에 統計顧問團(Statistics Advisory Group)을 設置한 後 國際協助處(ICA)의 援助에 따라 美國에 統計硏修生을 派遣하는 한편 顧問官을 招請하는 등 近代的 統計의 發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調査技法에서도 標本理論이 실용화하게 되었고 韓國銀行의 都市家計費調査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任意抽出標本調査方法(Random Sanpling method)에 의하여 調査하게 되었다. 從前에는 有意抽出方法인 典型的 標本調査에 의하여 勤勞者만 約 600家口를 調査하여 왔으나 1959年부터는 全國 都市에서 1,200家口를 對象으로 勤勞者家口 以外의 一般家口도 包含시켜 近代化한 硏究標本調査로 改編한 것이다.

또한 統計作成과 發展에 큰 刺戟을 준 것은 앞에서 말한 네이산報告, 復興部의 3個年計劃 등이라 하겠다. 이들 報告書나 計劃은 한결같이 統計의 必然性과 作成

의 緊要性을 強力하게 要求하였다.

또한 UN統計局의 각종 統計發展勸告案이나 人口住宅과 農業, 鑛工業 및 建設業 등 센서스實施의 勸奬을 받아들이고 한편 國民所得推計를 위한 各種統計의 整備 등으로 經濟統計發展과 統計技術向上에 크게 寄與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物價統計의 整備

物價調査와 그에 의한 指數編制는 1910年7月 大韓帝國末期인 舊韓國銀行의 物價調査에서 起源하여 현재의 이르고 있는 그것이 理論的 合理性을 가지고 改編된 것은 「1947年 基準指數」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特徵은 從前의 指數는 計算公式이 이른바 單純幾何平均方法이었는데 이를 1947年 指數에서 加重算術平均法으로 改編한 것이다.

(1) 1947年 以前의 舊物價指數

1945年8月 光復時에는 物價指數를 平均法的 理論的 根據下에서 1948年3月까지 單純算術平均法에 의해서 算出하여 오다가 1948年 4月에 誤差論的 見地에서 單純算術平均法보다 優位에 있는 單純幾何平均法에 의하여 解放以後의 것을 全部 計算하였다.

이러한 平均論的 物價指數는 막연한 一般的 思惟形態로 認識하게 되는 物價水準보다는 確實히 數字的 把握이라는 點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商品價格 平均的 狀態로서의 物價指數가 意味하는 經濟的 意義는 現實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解放以後의 物價指數가 經濟的 論據가 희박한 平均論的 物價指數算出法을 택한 것은 基礎的 統計資料의 不足때문에 臨時的 便法이었던 것이다.

(2) 1947年 基準 物價指數

① 서울 都賣物價指數

이 指數는 첫째 品目構成이 주로 生産財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消費標準指數로는 不適切하고, 둘째 加重値를 〈生産量〉－〈自家消費量〉+〈輸入量〉에 의하여 算出하였으므로 市場去來回數를 考慮치 아니함으로써 通貨標準指數로서는 合當치 않았다.

② 全國 小賣物價指數

消費生活에 必要한 諸商品을 一定量씩 購入하는데 必要한 貨幣量의 變動比率 즉 貨幣購買力變動을 測定하고자 하였으나 집세, 電氣料, 交通費등 서비스관계 費用과 其他 賃料金을 包含시키는 生計費指數와는 구별되는 形態이다. 그러나 서울 都賣物價指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指數를 算出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單純算式에서 加重總和法(Weighted Aggregative method)를 使用한 것이나 都市別 人口를 加重하여 全國指數를 算出한 것 등은 그 以前指數보다 크게 改善된 점이라 하겠다.

(3) 1955年 基準 物價指數와 그 以後

① 서울 都賣物價指數

1954年부터 實施한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 調査에서 얻은 生産量 및 出荷量에 의하여 指數品目을 選定하였고 加重値를 算出한 것은 從前指數의 編成에서 推計에 의한 資料를 使用하데 비하여 훨씬 科學的으로 指數를 編制하였다고 할 수 있다.

指數品目을 45個에서 199個로 크게 늘리고 商品分類를 從前의 大分類에서 中小分類로 擴大한 것 등이 特徵이라 할 수 있겠다.

② 서울 消費者物價指數

消費者란 用語를 처음 使用하게 되었는데 從前의 小賣物價指數와의 差異點은 첫째 「서－비스」料金을 包含시킨 點이다. 따라서 집세, 電氣料, 水道料, 交通費, 理髮料, 沐浴料 등의 品目을 指數品目에 包含시킴으로써 品目別 加重値 構造에도 큰 變化를 가져왔다.

飮食物費의 加重値는 1947年의 63%에서 47%로 크게 變化하였는데 이는 賃料金을 指數品目으로 包含시킨 데에도 起因하였다. 品目數는 1947年의 46個 品目에서 154個 品目으로 大幅 增加시켰다.

都賣物價指數와 마찬가지로 指數算出公式은 加重總和法에서 加重算術平均法(Weighted Arithmetic Mean Method)으로 바꾸고 市場바구니 즉 마켈 바스켈(Market Basket)을 比率化한 加重値를 使用하는 등 物價統計의 傳統이 긴 만큼 指數編制에 있어서는 先進水準인 셈이었다.

한편 1960年 基準 消費者物價指數에서는 品目數를 154個에서 279個로 크게 늘렸으며 品目分類에 있어서도 5大費目 10個中分類를 5大費目 22個 中分類로 指數를 각각 算出하여 物價分析의 多樣化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指數는 1965年 以後 經濟企劃院으로 移管되어 5次에 걸친 指數改編이 있었다.

③ 農村物價 및 賃料金指數

農協中央會는 1959年부터 農村物價 및 賃料金指數를 編制하였다. 이는 韓國 農村地域의 物價統計에 관한 唯一한 政府指定統計로서 經濟分析 및 政策資料로서 널리 利用하고 있다.

이 指數의 基礎가 되는 價格資料는 農業銀行이 發足되면서 1956年 6月부터 全國 15個 地域을 對象으로 65個 主要 農產物에 대하여 每月 1回씩 調査한 「地方物價調査」가 그 起源이었다.

그후 1958年 4月 農業銀行이 特殊銀行法에 의해서 特殊銀行으로 改編되면서 「農村物價指數」로 擴大시켰다가 1959年에 이르러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査」로 定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9年까지의 價格調査는 當時의 여러가지 事情으로 價格資料 基準에만 局限되었기 때문에 農產物의 全般的인 動向은 把握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61年에 農協中央會가 發足하면서 1959年을 基準으로 한 農村物價 및 賃料金指數를 비로소 算出하였는데 이때의 加重値資料는 韓國銀行이 調査한 1958年 8月부터 1959年 7月까지의 農家家計支出費를 基礎로 하였다.

④ 輸出入 物價指數

1950年代 韓國의 貿易總規模는 輸入, 輸出을 합쳐 年間 5千萬 美弗未滿으로서 輸出品은 重石을 主宗으로 한 小量의 鑛産物과 水産物 그리고 그 加工製品 정도였다. 韓國銀行에서는 國際商品價格動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1957年부터 主要商品 60餘個 品目을 對象으로 輸入 및 輸出價格을 調査하였다. 輸出은 FOB價格으로 그리고 輸入은 CIF價格으로 調査하였는데 이를 月別로 1月을 基準으로 連動指數를 算出하고 1960年부터는 綜合輸出入物價指數, 交易條件指數를 算出하기에 이르렀다.

다. 家計統計의 發展過程

(1) 1950年 生計費 調査

公報處 統計局에서는 當時 朝鮮銀行調査部와 合作하여 1950年 1月 1日부터 1年間을 對象으로 俸給生活者 및 勞務者 家口의 生計費 調査를 着手하였었다. 이 調査는 勤勞階級層의 收支均衡과 그 生活狀態 및 支出構造의 實際를 把握함으로써

(1) 適正賃金 및 俸給基準의 決定과

(2) 國民負擔의 均衡, 物價調節의 基準을 얻고

(3) 生計費指數의 加重値 算出

(4) 穀物의 適正價格 算出

(5) 生活必需物資의 受給調節 圖謀 등

民生問題에 관한 基本統計資料를 作成함이 目的이었다. 이것을 1950年初부터 實施한 것이다.

世界各國은 第1次世界大戰을 戰後하여 貨幣價値의 變動을 測定하기 위하여 消費標準이 되는 主要物品의 個別的인 都賣物價指數 또는 小賣物價指數를 算出하는데서 출발하여 그것이 第2次세계대전을 고비로 生計費指數 算出로 發展함으로써 消費標準物價의 代表的 指數가 되었다.

이 生計費指數의 基礎가 되는 生計費調査를 韓國에서는 政府樹立 직후인 1950年부터 自體開發로 着手하였으나 6.25動亂으로 不幸하게도 중단되었다(敗戰後의 日本은 1946年 6月부터 生計費調査를 實施하였음).

이 生計費調査는 당시 서울市에 限定된 調査地域에서 俸給生活者와 勞務者를 對象으로 實施하였다.

調査對象家口는 公務員(34家口), 國民學校敎員(15) 및 銀行·會社員(40)등 89個의 俸給者家口와 金屬工(6), 化學(10) 및 印刷(14)業種 등의 30個 勞務者家口 등 모두 119個 家口였다.

調査對象 選定要件은

- ○ 調査地域內에 居住하는 家口
- ○ 家口主의 1個月 基本給이 1萬원 以下
- ○ 家口主 夫婦의 同居家口
- ○ 兄弟夫婦나 同居人이 없는 家口
- ○ 長期療養費를 支出치 않은 家口

등으로 하고 있었다.

調査事項은 支出의 種類와 用途, 金額과 住居形態, 住居規模 및 費用(傳·月賃額) 등이며 그밖에 家口員의 性別, 生年月日, 勤務處와 基本給, 俸給日 및 別途로 정한 再庫消耗品의 數量과 金額 등을 每月 末日 現在로 調査하였다. 다음의 表는 1950年 3月에 調査한 同年 1月分 調査結果이다.

한편 6.25戰亂後에는 臨時首都 釜山에서 韓國銀行이 단독으로 有意標本 60家口를 對象으로 都市家計調査를 實施하였고 서울로 收復한 以後에도 1954年에 서울 勤勞者家口를 有意標本 抽出로 1959年까지 계속하였다.

(2) 서울 家計調査

韓國銀行에서는 1959年에 從前부터 實施하여 오던 「生計費調査」를 全面的으로 改編하고 새로운 方法에 의한 「家計調査」를 實施하였다. 이를 위하여 1959年 5月에 試驗段階期間을 걸쳐 同年 10月에 韓國에서는 最初로 任意抽出(Random Sampling method)에 의한 近代的 標本調査를 試圖한 셈이 되었다.

生 計 費 調 査 結 果 表

生計費調査客體種類　及費目別集計總括表(檀紀四二八三年一月分)

	家口數	每家口平均支出(円)	家口員數	一家口當平均人員	每人當平均支出(円)	總額 現金	總額 實物	合計 現金	合計 實物
	(戶)								
	(俸給生活者)								
俸給生活者總數	86	42,452	409	4.7	8,926	3,412,207	238,695	3,207,259	238,695
公務員	34	41,935	158	4.6	9,024	1,328,669	97,130	1,242,872	97,130
銀行會社員	37	45,616	181	4.8	9,324	1,578,179	109,615	1,479,018	109,615
國民學校教員	15	35,820	70	4.6	7,675	505,359	31,950	485,369	31,950
支出總額을 100으로한 比率						100		94.0	
	(勞務者)								
勞務者總數	30	40,143	175	5.8	6,881	1,185,857	18,430	1,085,232	18,430
金屬工業	6	43,782	33	5.5	7,960	251,455	11,240	206,770	11,240
化學工業	10	32,447	61	6.1	5,319	319,418	5,060	308,408	5,060
印刷工業	14	44,079	81	5.7	7,618	614,984	2,130	570,054	2,130
紡績工業	—	—	—	—	—	—		—	—
支出總額을 100으로한 比率						100		91.5	

實支出											
主食物費		副食物費		調味料		外食費		嗜好品		住居費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俸給生活者)											
876,626	81,105	290,754	8,760	60,632	2,600	45,300	2,800	171,565	12,330	150,089	2,300
307,788	53,300	83,100	4,140	30,800	1,650	21,450	—	58,605	5,930	51,585	500
407,988	10,805	169,394	4,100	29,010	450	20,430	2,800	83,650	800	71,259	1,800
160,850	17,000	38,260	520	822	500	3,420	—	29,310	5,600	27,245	—
25.7		8.5		1.8		1.3		5.0		4.4	
(勞務者)											
427,748	—	88,985	1,870	7,460	—	11,890	—	55,800	—	24,090	120
74,604	—	9,710	120	965	—	3,400	—	8,325	—	2,560	120
101,515	—	28,340	—	5,710	—	1,600	—	17,345	—	9,640	—
231,629	—	50,935	1,750	10,785	—	6,890	—	30,130	—	11,890	—
—	—	—	—	—	—		—	—	—		—
33.9		7.5		1.5		1.0		4.6		2.0	

주 • 調査地域 : 서울特別市

• 公報處 統計局과 韓國銀行調査部의 合作調査

資料 : 公報處, 統計月報 1950年 3月號

生 計 費 調 査 結 果 表(계속)

生計費調査客體種類　及費目別集計總括表(檀紀四二八三年一月分)

	實											
	光熱費		被服費		保健衛生費		醫療費		教育費		交通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俸給生活者)										
俸給生活者總數	346,766	750	356,208	31,990	88,018	750	166,297	19,000	43,330	—	66,115
公務員	180,807	650	161,746	1,190	37,262	500	83,547	—	26,165	—	17,985
銀行會社員	101,097	100	149,327	30,800	33,876	250	71,690	19,000	12,255	—	38,980
國民學校敎員	64,862	—	45,135	—	16,880	—	11,060	—	4,910	—	9,150
支出總額을 100으로한 比率	10.2		10.4		2.6		4.9		1.3		1.9
	(勞務者)										
勞務者總數	106,048	—	139,023	—	27,010	380	42,040	—	18,320	—	10,765
金屬工業	9,321	—	33,030	—	6,730	—	5,230	—	8,075	—	2,405
化學工業	27,040	—	46,063	—	6,970	—	20,360	—	6,395	—	5,940
印刷工業	69,687	—	59,930	—	13,310	380	16,450	—	3,850	—	2,420
紡績工業	—	—	—	—	—	—	—	—	—	—	—
支出總額을 100으로한 比率	8.9		11.7		2.3		3.5		1.5		0.9

支出													實支出
通信費	負擔費		交際費		敎養娛樂費		旅行費		冠婚喪祭費		其他費用		以外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現金	實物	支出
					(俸給生活者)								
1,050	24,244	—	284,512	46,290	63,733	1,800	36,525	—	43,995	4,720	92,550	22,450	204,948
—	4,680	—	92,792	17,850	22,240	800	6,930	—	23,340	3,040	32,050	7,580	85,797
600	17,859	—	154,810	21,940	31,153	1,000	23,245	—	17,955	300	45,050	14,870	99,161
450	1,750	—	36,910	6,500	10,340	—	6,350	—	2,700	1,380	15,460	—	19,990
	0.7		8.3		1.9		1.1		1.3		2.7		6.0
					(勞務者)								
—	10,610	—	70,170	8,500	8,240	—	8,220	—	16,480	1,760	22,333	5,800	100,625
—	910	—	23,820	5,900	2,260	—	2,090	—	1,090	—	12,245	5,100	44,685
—	3,780	—	18,850	2,600	2,700	—	6,130	—	—	1,760	30	700	11,010
—	5,920	—	27,500	—	3,280	—	—	—	15,390	—	10,058	—	44,930
	—	—	—	—	—	—	—	—	—	—	—	—	—
	0.9		5.9		0.7		0.7		1.4		1.9		8.5

改編한 家計調査要點을 記述하면 첫째로 舊「生計費調査」를「家計調査」로 改稱하고 有意調査를 任意標本調査로 代替하여 充分한 標本數로 信賴性있는 結果를 期待할 수 있는 점이었다. 이 조사는 또한 誤差率을 算出할 수 있으므로 非標本誤差만 除去할 수 있다면 要求되는 정도의 調査를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調査方法이다.

둘째로 舊「生計費調査」가 家計簿記帳式인 自計式으로 調査한 反面에 改編「家計調査」는 面接調査인 他計式을 爲主로 하고 自計式을 補充하는 折衷主義를 擇함으로써 調査效率을 제고시켰다.

셋째로 調査對象, 調査項目 및 標本數를 擴大하여 近代標本理論의 適正標本數를 充足시킨 점이라 하겠다. 改編「家計調査」는 各階各層을 網羅한 600家口를 對象으로 하여 서울全消費者의 家計實態가 잘 反映되도록 하였다.

넷째로 調査家口의 應答負擔을 덜기 위하여 飮食物費調査는 家計簿記帳式에 의하여 600家口를 3分하여 月別로 初旬, 中旬, 下旬의 各 10日間씩만을 調査하고 其他 調査는 分期別로 3個月에 한번씩 調査하였다. 한편 生計費調査와는 別途로 복덕방 중심으로 家口에 가서 確認하는 房貰調査를 家計調査 附隨調査로 처음으로 實施하였는데 이는 住居費調査의 正確을 期하는데 큰 效果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라. 勞動 및 賃金統計

(1) 勞動力調査

日帝는 30年代에 戰時總動員體制를 구축하면서 勞動 및 資源을 總動員할 目的으로 1930年의 失業調査, 1936年의 勞力所在調査, 1939年의 國民職業能力調査, 1941年의 朝鮮勞動技術調査등 여러 種類의 統計調査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는 施行令, 行政命令 등으로 家口나 事業體에 대하여 申告義務를 強制로 規制함으로써 순수한 統計目的의 調査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다가 2차대전 이후에 統計를 再整備하는 過程에서 國際聯合, FAO, ILO 등 國際統計機關에서 統計의 國際的 基準을 設定하는 한편 調査事項이나 調査日時등

을 統一할 것을 世界各國에 勸告하였고 한국도 이런 國際化趨勢에 호응한 것은 물론이다.

6.25動亂을 지내고 난 韓國은 人口, 農業, 鑛工業등 分野의 센서스를 實施할 準備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勞動力調査를 內務部 統計局에서 1957年부터 이른바 勞動力接近方法(Labor Force Approach)에 의하여 實施하기에 이르렀다.

1957年에 統計局 經濟統計課가 新設되고 처음 着手한 것이 勞動力 人口調査였다.

確率標本理論을 適用하여 一次로 市·邑·面을 抽出하고 二次로 家口를 4,400個 抽出하였다. 이 과정에서 一部地域에서는 부득이 몇 家口를 有意로 選定한 事例도 있었다.

調査는 該當地域의 邑面職員이 家口를 巡廻하면서 調査票를 配分하고 每月初에 調査票를 回收하였는데 應答에 協調한 家口가 60%에도 未達함으로써 실제의 集計에서는 그나마 調査家口數가 2,500家口程度였다. 經濟活動調査週間은 每月末 1週間으로 하였는데 그 當時에는 職業, 産業分類, 就業, 失業, 勞動力人口, 非勞動力人口의 槪念이 確實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調査結果에 나타난 勞動力人口, 就業者, 失業者의 數가 月別로 크게 變動하는 일도 있었다.

(2) 經濟活動人口調査

1961年에 內務部 統計局은 政府組織法 改編에 따라 經濟企劃院에 移管되었으며 經濟企劃院은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앞에서 言及한 勞動力人口調査에 代替하여 經濟活動人口調査를 실시하게 되었다.

調査統計局에서는 1962年 3月부터 當時 AID援助資金에 따라 韓國에 駐在한 美統計顧問團長이며 世界的인 標本理論家인 텝핑(Benjamin J. Tepping)博士의 支援을 받아 政府로서는 勞動力調査 分野에서 처음으로 近代的인 標本調査를 實施하게 되었다.

1960年 國勢調査時에 設定한 調査區의 人口를 母集團으로 하여 第1段階로 調査區, 二段階로 家口로 뽑는 確率比例層化 二段抽出法을 適用한 것으로 오늘날 家口를 對象으로 하는 모든 調査가 이 節次를 밟게된 것이다.

本調査에서 처음으로 調査員, 指導員制度를 導入한 점은 후일 調査統計局의 統計事務所 開設의 基盤이 되었다는 것을 添言하여 둔다.

그리고 ILO의 勸告案을 거의 受容하여 經濟活動人口, 就業, 失業, 非經濟活動人口 등의 槪念과 定義를 確固하게 하였고 勞動力接近方法(Labor Force Approach)을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持續시켜서 時系列分析에 큰 問題가 없게 되었다.

(3) 賃金統計

(가) 鑛業 및 製造業 給與統計

韓國銀行은 1956年부터 每月 서울 賃金指數를 編制하였다. 이 指數는 製造業과 建築業部門에 대한 賃金率의 變動을 測定하기 위한 것으로 1937年까지 月次系列로서 遡及될 수 있었다. 서울特別市 所在의 標本事業體로부터 報告된 職種別 賃金支拂額 및 延出勤日數를 기초로 하여 前者를 後者로 나눔으로써 日當 賃金을 計算하며 賃金支拂額에는 미리 決定되어 있는 現物 및 實物給與만이 포함되고 이밖에 不規則的으로 지급되는 時間外勤務手當, 賞與金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調査하는 職種은 1956年12月 現在 57種이며 1937年을 기준으로한 各 職種別 個別賃金指數를 單純幾何平均함으로써 總指數를 作成하였다. 類別指數는 前記한 57職種을 主된 産業別로 분류한 후에 總指數와 同一한 方法으로 計算하였다.

이 統計는 長期에 걸쳐 利用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1937年에 設計된 以來 經濟가 많이 變動하였음에 反하여 職種의 交替 또는 追加等 局部的인 수정을 加하여 왔을 뿐이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1) 職業의 分類에 無理가 있고, 2) 指數가 單純幾何平均에 의해 作成되어 있기 때문에 産業部門間의 相對的 重要度가 反映되어있지 않고, 3) 綜合的인 數字가 指數의 형태로만 計算되는 까닭에 賃金總支拂額과 1人當 賃金支拂額의 推算 등이 不可能하고, 4) 한 事業體가 數種의 직업에 關聯될 때에는 數種의 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하므로 被調査者의 부담이 너무 큰 點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強力한 經濟統制下에 있던 日帝時代에는 表面에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나 解放以後 各 職種의 賃金이 심하게 變動을 보임으로써 表面化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解放以後 改編의 必要性이 數次 論議되었었고 1950年 6.25事變 直

前에는 計劃이 具體化하여 數個月의 試驗調査도 끝마쳤었다. 그러나 事變突發로 이 計劃은 결국 結實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후로는 피난, 환도 等 환경의 激動이 계속되어 改編計劃은 遲延되었던 것이다.

(나) 賃金經常統計의 種類와 利用

賃金統計는 세가지 主體的 立場에서 考察할 수 있다. 勞動者, 企業家 및 이들을 포함한 政策的 立場인 國家가 그것이다.

勞動者의 立場에서는 賃金은 그의 生活水準을 決定하는 가장 重大한 要素란 點에서 그의 變動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른바 「假處分收入額」이 자기의 生活水準 決定에 한 要素가 된다.

반면 企業家의 立場은 賃金이 生產原價의 한 構成要素로서 生產品의 總原價중 점하는 勞務費의 比率을 계산하는데 촛점이 있었으므로 平均賃金所得統計가 관심이었다. 勞動者의 立場과는 달리 移轉收入이나 移轉支出을 調整하지 않고 企業家가 負擔하는 勞賃金額은 물론 福利施設費, 勞動教育費 등 間接的인 給與도 包含하게 된다.

國家經濟의 立場은 앞의 두가지의 입장보다 더욱 廣範圍한 資料가 要求될 것이다. 國家全般의 勞動 및 賃金政策에서 要求하는 目的을 위해 위의 2個部類에게 必要한 統計는 그대로 利用한다. 즉 勞動者의 購買力과 관련한 「可處分收入統計」와 物價構成要素로서의 「平均賃金所得統計」가 그대로 利用되는 것이다. 이 경우 政策的으로는 產業部門別 賃金패턴이나 所得再分配效果를 勘案해야 하고 勞動의 適正配分政策을 위하여 職業別(業種別), 熟練度別 및 性別 등으로 表示된 賃金率 統計를 利用해야 하는 것이다.

(다) 賃金統計의 作成

이 統計는 1956年 6月分부터 調査하였다. 月別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鑛業과 製造業(담배와 소금 製造業은 除外)에 속하는 全國의 約400個 事業體의 每月給與支給報告書에 의하여 作成하였다.

각 事業體가 提供하는 資料는 從業員 部類別, 性別로 記錄한 月末 現在 從業員數, 月中延出勤日數 및 給與支拂總額이다. 이들을 產業中分類別로 合算한 후에 常傭從業員에 대한 給與總額을 月末現在從業員數로 나누어 中分類別 1人當 月中給與

統計를 作成하였다. 常傭從業員中 生產從業員에 限해서는 延出勤日數로 나누어 日當給與額을 計算하였다.

이들 中分類別 數字는 다시 固定加重値를 使用한 算術平均過程을 거쳐 鑛業 또는 製造業全體의 總平均, 從業員部類 및 性別總平均을 作成하였다. 물론 이 計算過程은 1人當 月中給與額과 日當 給與額을 따로 함으로써 두가지 種類의 統計가 作成되었다. 固定加重値는 「1955年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査」에서 얻은 產業中分類別, 從業員部類別, 性別 從業員數의 100分率에 依據한 것이다.

臨時 및 日傭從業員에 대한 것은 產業中分類別로는 하지 않고 鑛業全體, 製造業全體의 延出勤日數와 給與支拂總額을 合算한 後에 後者를 前者로 나눔으로써 日當을 計算하였다.

이들 통계는 月別로 發表하였다.

마. 鑛業 및 製造業統計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UN이나 FAO, ILO등 機構에서는 二次大戰後 產業, 職業, 商品分類 등을 大·中·小別로 分類하였으며 調査項目의 定義 등을 내려 統計의 一律性, 比較性 등을 매우 重要視하였다. 韓國에서도 1950年代 中盤期부터 이러한 國際機關의 勸告案을 最大限 受容하면서 各種統計의 開發에 힘써왔다.

또한 前述한 네이산報告에서 復興部의 3個年計劃 등에서 國民經濟計定算出에 必要한 資料의 充足을 촉구함으로써 各種 資源調査를 着手하게 되었다.

처음 試圖한 것이 韓國銀行에서 1955年에 實施한 鑛業 및 製造業 事業體調査다. 이 調査는 그후 1958年에 韓國產業銀行이 1960年에는 產銀과 商工部가 合同으로, 그리고 1963年 鑛工業센서스는 產銀과 經濟企劃院이 共同으로 또 1968年부터는 經濟企劃院이 單獨으로 實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5年 當時의 經常市場價格으로 본 產業構成比로 보면 一次產業이 42%, 二次產業은 不過 16% 밖에 안되었다.

바. 貿易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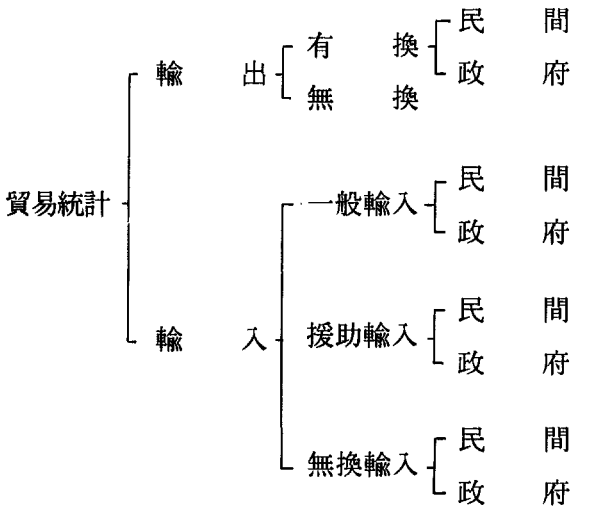
貿易統計는 國家經濟政策의 一環으로서의 物動計劃 및 貿易政策을 樹立하는데 不可缺한 指針이 된다.

그러나 그 當時까지 韓國의 貿易統計를 槪觀하면 8.15解放以後 輸入의 大宗을 이룬 各種 援助資金으로 導入된 輸出品中에는 國內經濟의 緊急事態에 對應하기 위하여 簡易通關形式을 取한 것이 相當數量에 達하였고 이들이 稅關局에서 集計하는 通關時點을 基準으로 하는 貿易統計에는 計上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1958年 2月부터 수차에 걸친 關係機關間의 協議結果 財務部 稅關局 主管下에 1959年 1月부터는 過去에 누락 또는 除外되였던 援助輸入도 全部 包含하는 同時에 評價方式도 統一함으로써 完全한 輸出入統計를 作成하고 한편 韓國銀行은 이를 國際的 比較가 可能하도록 國際標準貿易分類法(SITC)에 의거 再分類하여 定期的으로 發表하도록 合議하였다.

貿易統計의 範圍는 國家資源의 增減을 가져온 物品의 移動을 總網羅하여야 한다. 그것이 國家에 流入할 경우 또는 國家로부터 流出할 경우에 商業的 去來槪念의 包含與否를 不問하고 國家資源의 增減의 結果를 가져 오는 것은 모두 包含한다.

財務部 稅關局에서 集計하는 貿易統計의 編制方法을 보면 다음과 같은 體系로 構成되어 있다.



한편 韓國銀行에서는 改編된 財務部 稅關局 基礎資料에 의거하여 行政上, 學術上 및 國際的 比較 등 巨視的으로 經濟現象을 分析할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하는 意味下에서 普通貿易統計와 特殊貿易統計로 大別하였다.

「普通貿易統計」는 類別로 다음과 같이 編制하였다.

- 普通貿易統計
  - 輸　出
  - 輸　入
    - 一般輸入
      - 民　間
      - 政　府
    - 援助輸入
      - 民　間
      - 政　府

「特殊貿易統計」에는 貿易總量으로 보아서 그 比率이나 國家行政 또는 貿易政策上 그다지 重要하지 않다고 認定되는 諸輸出入은 項目別로만 一括計上한다. 이 項目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特殊貿易統計
  - 輸　出
    - 無 換 輸 出
    - 旅客携帶品
    - 小包郵便物
    - 再 輸 出 品
  - 輸　入
    - 無 換 輸 入
    - 救 護 物 資
    - 旅客携帶品
    - 小包郵便物
    - 再 輸 入 品

當時의 圓貨表示貿易統計는 각 商品의 國內市場價格에서 逆算하여 去來價格을 算定하되 輸出은 FOB價格으로 하고, 輸入은 國內市場의 都賣價格에서 關稅, 物品稅, 內國運送費, 販賣利潤등 國內에 物品이 入荷된 後 國境까지의 輸入原價에 附加되었다고 認定되는 諸價格 要素를 控除함으로써 될 수 있는 限 CIF價格에 近似하도록 하였다.

1955年부터는 UN에서 決議한「去來價格」의 槪念과는 一致하지 않지만 圓貨貿易統計와 併行하여 實際去來條件價格(FOB, C&F, CIF등)에 의한 美弗表示 貿易統計

를 作成하여 왔으나 이를 1959年 1月부터는 輸出은 FOB價格, 輸入은 CIF價格으로 UN에서 勸告한「去來價格」에 符合되는 美弗貨統計를 作成發表하게 되었음은 經濟統計로서 利用價値를 더욱 倍加시켰다.

1959年 4月號 韓銀調査月報에는 美弗貨表示統計를 揭載하였다. 이것은 圜貨表示貿易統計가 必要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나 當面한 利用度 등을 考慮하여 美弗貨表示統計만을 揭載하였다.

4. 統計資料 處理機器의 發展

가. 自動資料 處理時代의 到來

統計活動에서 資料處理作業은 統計調査의 企劃 및 實査에 못지 않게 重要하며 費用도 많이 든다. 統計에서는 흔히 "迅速正確"이라는 말을 쓴다. 統計調査가 끝난 後 그 資料를 迅速하게 集計處理하여 그 正確한 結果를 發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統計에서는 오래 前부터 迅速하고 正確하게 集計하는 方法이 모색되어 온 것은 當然之事였다.

드디어 美國센서스局에서 1890年의 人口센서스 資料處理를 위해 當時센서스局의 職員이었던 Herman Hollerith 博士가 펀치카드와 이에 따르는 일련의 集計機械를 發明하여 使用한 것이 統計資料處理自動化 혹은 機械化의 효시이다.

그리고 흔히 "資料處理"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이는 본래 짐작컨대 解放後 英語의 data processing에 起因할 것이다. 日本에서도 情報處理라는 用語를 使用해도 資料處理라는 말은 使用치 않고 있다. 여하간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의 "集計"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統計分野에서 使用하고 있다. 그리하여 1960年代에 官界나 學界에서 그 使用을 굳히게 되어 오늘날 一般에서도 使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펀치·카드(Puch Card)

한국에서 電子計算機 혹은 컴퓨터를 처음 導入한 것은 1966年度 人口센서스 資

料處理를 위해 1967年에 도입한 IBM 1401型 電算시스템이었으나 실은 그 以前에도 이 電子計算機에 버금가는 自動處理機械를 導入하여 統計局에서 실제 使用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펀치·카드·시스템(Punch Card System, PCS)이었다.

옛날에는 統計調査後에는 거의 100% 手式集計 즉 손으로 分類하고 珠算으로 計算하여 調査報告書를 作成하였으니 이 當時의 人氣者는 珠算有級 혹은 有段者였다. 一級, 二級 有資格者는 물론 初段, 二段 所持者도 있어 때로는 한사람이 책상위에 珠算을 4, 5個를 놓고 集計作業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 後 좀 나아진 것이 手動 혹은 電動卓上計算機의 使用이었다. 그러나 統計資料處理業務에서 가장 主된 作業인 分類作業만은 이때까지 별다른 方法이 없었다. 그러다가 펀치·카트時代가 到來한 것이다. 이 時期는 多少 貧弱한 PCS인 1935年 國勢調査時부터 1955年 簡易總人口調査時까지의 Remington Rand PCS使用時代를 거쳐 1960年부터 67年까지 IBM·PCS時代와 1967年 Computer導入으로 이어졌다.

펀치·카드는 統計原始資料를 구멍의 形態로 카드에 뚫어 이를 高速分類機로 구멍의 位置를 分類하게 된다. 카드上에 0, 1, 2, ……9의 數字의 位置가 있으며 統計調査에서 얻은 原始資料中 예컨대 性別의 男女를 1 혹은 2로 符號化하여 男性은 1의 位置, 女性은 2의 位置를 穿孔하게 된다. 日帝末期와 1955年에 使用한 카드설계 양식은 별첨과 같다. 그러므로 우선 必要한 것이 구멍이 뚫는 機械인데 그것이 穿孔機이다.

(2) 穿孔카드 시스템(Punch Card System)

PCS는 어디까지나 그 基本이 되는 것이 펀치·카드이다. 펀치카드의 種類는 우리나라에서 使用된 것이 두가지로서 하나는 80行(column)으로 된 IBM카드와 45行으로 된 Powers式 카드이다. IBM카드는 Hollerith에 의해 考案되어 IBM의 前身社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使用되고 있다. 한편 Powers式 45行카드는 Hollerith의 美國센서스局 동료직원이었던 Powers에 의해 고안되어 그 나름대로 별도의 會社를 設立하여 그것이 뒷날 Remington Rand(RR) 혹은 UNIVAC社 혹은 Sperry Rand社에 이르도록 使用되어 온 것이다.

이제 日帝때부터 1967年까지 統計局에서 使用되었던 PCS機械를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상술한 바와 같이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과 RR(Remington Rand) 두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使用目的에 따라 多種類의 相異한 機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계는 여러가지로 組合이 되어 일련의 集計製表 즉 資料處理機構를 構成하여 비로소 그 機能을 발휘하게 된다. 機械는 그 構造上에서 分類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作業上으로 보아 基本機械, 補助機械로 나누어 진다.

(가) 基本機械

펀치카드·시스템의 基幹을 이루는 穿孔機(Key-Punch), 檢孔機(Verifier), 分類機(Sorter), 會計機 또는 製表機(Accounting Machine, Tabulator) 등이 여기에 屬한다.

(나) 補助機械

基本機械를 가지고 하는 作業을 좀더 效果的으로, 그리고 效率的으로 하기 위한 機械로서 여러가지 機能을 具備한 機械가 있다. 즉,

複寫穿孔機(Reproducer)

集團穿孔機(Gang Punch)

總括穿孔機(Summary Punch)

翻譯機(Interpreter)

照合機(Collator)

計算穿孔機(Calculating Punch)

分類統計機(Statistical sorting machine)

등이 그것이다.

(3) 1955年簡易人口總調査와 PCS資料處理

이때에 와서 비로소 本格的인 統計資料處理를 機械化시켰다고 볼수 있다. 日帝때부터의 RR式펀치·카드 手動穿孔機에다 1955年簡易人口센서스를 계기로 새로이 導入한 機械는 역시 RR式 모델의 電動穿檢孔機였던바 당시의 보유 機械種類는 多樣하지 못했으나 手動穿孔機 100餘台에다 40대의 電動式穿檢孔機, 2台 集團群穿孔機(gang punch) 그리고 15台의 分類機였다. 이 分類機만은 우수한 製品으로서, 分類되는 카드의 各포켓마다 枚數計算裝置(Counter)가 附着돼 있어서 일일이 손으로

數字를 記錄해야 하는 不便은 있었지만 分類集計하는 作業에는 그 當時만 해도 더 없이 좋은 機械였다. 이 機械들의 當時 Remington Rand 國內代理店은 東洋物産株式會社였다. 當時의 作業場所는 現在의 美大使館(전기통신공사옆) 자리의 콘셋트 假建物이었다. 當時의 人口數 約2,150餘萬名分을 담은 방대한 펀치카드를 오늘날 發展된 機械에 비해 많은 手作業을 必要로 하는 當時의 機械로 처리한다는 것은 數100名의 손을 거치고 몇년을 作業하는 國家의 一大役事가 아닐 수 없었다. 作業環境이 좋지 않은 곳에서 職員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勞苦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作業을 위해 機械의 操作만 하는 것이 아니라 機械故障도 스스로 修理하여 使用해야 하는 처지였다.

當時 使用했던 모든 機械는 1955年簡易人口센서스의 資料處理를 成功的으로 完了한 後 1960年 新型IBM PCS가 導入된 것을 계기로 內務部 統計局으로부터 陸軍本部의 軍需物資資料處理用으로 讓渡移管되었다.

나. IBM時代의 開幕

RR時代는 1955年簡易人口센서스의 資料處理를 끝으로 終幕을 내리고 1960年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계기로 IBM PCS가 導入됨으로써 韓國의 IBM 時代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當時의 統計資料處理機械의 主流를 이룬 것이 IBM과 RR이었으나 이 두가지 機械의 性能은 그 優劣을 가릴 수 없을 程度로 각기 特徵이 있었다고 하나 當時의 시각으로는 IBM은 電氣 또는 電子的인 構成이 많았고 이에 반해 RR은 機械的인 部分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理由 때문이었던지 때마침 歷史上 高度로 發達한 電子産業과 電子機器의 人氣의 물결을 타고 IBM 販賣에 成功한 것이다. 1960年과 70年代에는 資料處理機 또는 電子計算機의 代名詞가 될 程度로 IBM은 美國은 물론 全世界 電算業界를 풍미했다. 따라서 비록 컴퓨터는 아니었으나 우리나라에 IBM이 최초로 들어온 것은 1961年 3月의 PCS였으며 1960年 12月에 實施했던 우리나라 歷史以來 最大規模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 그리고 1961年 2차에 實施한 農業센서스 資料處理를 위한 것이 契機였다.

(1) IBM펀치카드·시스템의 導入

前述한 바와 같이 IBM의 導入은 1960年度 人口 및 住宅센서스가 直接的인 動機였으나 그 센서스業務가 무척 방대한 것이었고 莫大한 豫算이 所要되는 國家的 大事業이었으므로 그 費用은 거의 절반이 當時 ICA(오늘날의 USAID의 前身)資金에 의한 것이였다.

따라서 當時 人口센서스는 물론 우리나라의 統計發展을 돕기 위하여 美國의 統計顧問團(Rice Mission)이 派韓되었으며 資料處理機械의 選定은 自然히 그들의 손에 의하여 천거되고 選定되었다. 이 顧問團에는 機械專門家로서 Mr. Fairley와 Mr. Israel이 고문으로 包含되어 있었다.

Mr. Fairley는 美軍軍屬으로 30年間 PCS資料處理業務에 從事했다고 한다. 그의 PCS技術은 最高境地에 到達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항상 그는 우리들에게 斷片的인 助言이나 한다는 不平이 많았었다. 그러나 그가 Rice Mission과 더불어 歸國할 무렵 約 一週日間 우리들 機械從事者에게 特講을 열었는데 이때 비로소 그가 지닌 祕方을 公開하여 傳授教育을 한 것이다. 이 教育을 통하여 PCS의 活用法이 무궁무진하며 탄복할만한 使用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고 그 後 事務開發과 發展에 커다란 도움을 준것은 事實이었다.

한편 Mr. Israel은 유태系 美國人으로서 大學硏究所에서 20年을 PCS 機械經驗을 쌓았다고 하였다. 1960年 人口·住宅센서스 死後調査를 全國 404個標本調査區에 대해서 實施하였는데 이의 機械集計를 할때 機械實務가 未熟한 요원들을 이끌며 그가 거의 單獨으로 機械處理를 完了하였다.

現在의 鍾路區 慶雲洞에 있는 調査統計局의 廳舍가 未完成이여서 우선 穿孔作業만이라도 시작하여야 하겠기에 現國立博物館 建物內에 穿孔機 90台, 檢孔機 80台를 設置했다. 6.25當時 이 建物은 그 內部가 破壞되어 臨時事務室을 베니어板子로 막아 使用했다. 作業은 시작했으나, 마침 5.16革命 直後이였고 作業環境이 매우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約200台에 달하는 新型機械에 20세 前後의 淑女들이 줄지어 앉아 作業하는 모습은 그 機械音과 더불어 可觀이었다.

最初의 機械는 이렇게 해서 稼動하기 시작했다. 또 穿孔作業이 資料處理過程에

서 첫단계 作業이고 莫大한 時間과 人力이 所要되는 일이었다.

上記 穿孔機와 同時에 導入된 機械는 다음과 같다.

機械名稱		導入台數	台當月賃借料($)
024	카드穿孔機(Card Punch)	90	40.00
059	카드檢孔機(Card Verifier)	80	50.00
519	複寫穿孔機(Reproducer)	5	135.00
085	照合機(Collator)	2	110.00
083	分類機(Sorter)	10	55.00
548	翻譯機(Interpreter)	2	75.00
419	會計機(Accounting Machine)	2	520.00
101	電子統計機(Electronic Statistical Machine)	4	560.00
604	電子計算穿孔機(Electronic Calculating Punch)	2	400.00

이 機械들은 穿檢孔機 約30台, 分類機 2台, 會計機 1台, 電子統計機 1台, 複寫穿孔機 1台 程度 以外에는 大部分 賃借로 도입되었다. 契約當時 韓國側은 機械를 所有할 目的으로 購入을 主張했으나 當時 美國에서는 이런 機械는 대체로 임대하는 것이 慣例였다. 購入하면 一時에 많은 金額이 所要되나 賃貸하면 많은 機械를 長期間 借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電子機器는 수시로 新型이 開發되고 또한 廉價로 制作販賣되기 때문이다. 當時 우리는 이와 같은 習性에 익숙치 못했고 계속 購入方式을 主張하여 機械를 購入하는 쪽으로 結論이 났다.

그리고 이 機械들은 大部分 最新型IBM PCS機器였으며 또한 IBM PCS歷史上 最終모델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IBM社가 以後에 컴퓨터를 開發하여 代置했기 때문이다.

(2) IBM 技術訓鍊

穿孔機와 檢孔機는 特別한 技術訓練이 必要없고 一般 打字機를 배울 때와 같은 熟達이 必要할 뿐이나 그밖의 PCS機는 그 性能이 複雜한 만큼 技術訓練이 必要하게 된다. 즉 機械를 活用하여 펀치카드에 담겨져 있는 原始資料를 읽어 내어 統計

表가 作成되도록 하는데 펀치카드가 이 機械 저 機械를 通過한다. 이 過程이 作業의 흐름(work flow)이고 作業의 性格에 따라 各種機械의 性能에 맞추어 作業을 計劃하고 作業의 흐름圖(flow-Chart)를 作成하며 作業指示書(Operation Procedure)를 準備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約 10週間의 基礎訓練이 必要하게 된다.

內務部 統計局은 이 機械要員을 選拔하고 技術訓練을 海外에서 實施키로 하였다. 訓鍊地는 日本이었고, 人員選拔은 電算業務適性檢査와 英語 및 日本語試驗을 統計局 및 農水產部 統計課職員(外部로부터 採用된 사람도 일부 있었음)을 主對象으로 치루었다.

選拔된 25名은 1960年 12月末 渡日하여 요꼬하마(橫濱)에 所在한 실크센터硏修場에서 約 2個月餘에 걸쳐 上記 全機種의 利用法을 硏修한 것이다. 上記 PCS는 오늘날 컴퓨터와 같은 內藏式프로그램(Stored Program)方法이 아니고 전부가 外部式으로서 기계에 부착하는 配線盤(Control Panel)에다 配線(wiring)을 技術的으로 하여 目的하는 機械作動을 可能케 하는 것으로 當時 이 일을 하는 者를 플래너(Planner)라고 불렀다.

그리고 前述한바 購入分에 해당하는 機械를 自體로 補修하기 위하여 2名의 機械技術者를 採用하여 日本에 파견, 補修技術者(maintenance engineer)訓練을 別途로 받도록 하였다. 賃借分의 維持補修는 IBM이 직접 採用해서 訓練한 2名이 統計局에 常駐하였다.

敎育의 一切는 日本 IBM이 專擔하여 計劃 및 指導하고 進行하였다. 그러나 一切의 敎材는 美國 IBM이 發行한 敎材였다.

(3) 196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資料處理作業

196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資料處理는 統計局 製表課 擔當이었으나 5.16後 改編되어 製表課가 없어지고 統計局 企劃課 集計係로 되었다. 얼마후 다시 集計係가 編修課로 되었다.

센서스資料處理는 처음 集計係內에서 作業의 原則과 順序를 만들고 또 PCS機械配線盤에 配線하고 作業指示書를 作成하는 進行班과 그리고 穿孔班, 機械를 操作

하여 指示書대로 作業을 하는 製表班, 調査票內容檢査 및 符號記入을 하는 內檢班·符號班과 審査班 等이 있었다. 日本硏修를 마친 사람들은 大部分 進行班 所屬이 되어 資料處理業務의 브레인役割을 하였다.

全國에서 蒐集된 調査票枚數는 무려 450萬枚, 人口 1人當 한장의 카드를 作成한다. 그 카드의 總枚數가 무려 2,500萬枚나 된다. 當時의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그러했다. 여기에다 한편 農業센서스도 實施했으므로 이의 카드數도 約 500萬枚, 合計 약 3,000萬枚를 穿孔했는데 約 1年 6個月이라는 長期間이 所要되었다. 穿孔作業은 二交代勤務였으며 일단 穿孔이 끝난 카드는 100% 檢孔作業을 하는 原則을 취하였다.

카드는 製表班(機械室)에 보내어져 擔當 오퍼레이터(機械操作員)가 作業指示書에 따라 機械操作을 하며 製表作業을 하였다. 여기에서도 二交代勤務였다.

모든 센서스製表作業에는 約3年이 所要되었는데 그 業務量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機械設備는 大型컴퓨터의 能力에 하나도 뒤질바가 없었으므로 많은 複雜한 統計表를 作成할 수 있었다. 60年度 人口住宅센서스 最終結果表數는 全數集計로 人口 및 住宅關係 10個表, 標本集計(20%)로서 經濟活動등 35個表를 製作하였다. 그리고 옛날에는 손으로 記入한 結果表를 印刷所로 보냈는데 機械에서 直接產出된 表를 보낼 수 있어 人力을 많이 덜 수가 있었으며 또한 錯誤率도 低下시킬 수가 있었다.

機械를 利用하는 製表作業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다.

(1) 調査票上의 不實記載與否를 發見하고 修正作業을 한다. 이것을 內容檢査라고 하며 이것을 他人이 다시 點檢을 하는데 이를 再檢이라 하였다. 이후 符號記入을 하는데 地域(行政區域); 性別, 職業 및 產業 等을 符號로 變換하는 作業이다. 또한 製表班에서 穿孔된 카드內容을 機械로 錯誤를 發見하는 機械內檢이 있어 過去에는 거의 不可能했던 妥當一致性檢査(consistency check)도 可能해졌는데 심사반에서 發見한 內容도 修正作業을 하였다.

예컨대 15歲女子인데 出生兒數가 3人이라고 하면 이런 카드는 일단 잘 못된 것으로 하여 調査票를 대조하기로 되었다. 過去의 機械로는 이런 作業이 거의 不可能했다.

(2) 穿孔作業이 끝나면 檢孔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천공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檢孔하게 되있었다. 誤穿孔카드는 다시 천공과 검공을 한다.

(3) 카드의 量은 보통 50,000枚~70,000枚 程度의 묶음으로 行政區域을 끊는다. 그렇게 해서 市道, 區市郡, 洞邑面, 調査區, 家口 및 家口員番號順으로 分類羅列하게 된다.

(4) 이 段階에서는 누락 또는 重複된 카드, 順序가 틀려 있는 카드를 085照合機에서 찾아 낸다든가, 카드內容을 肉眼으로 보고자 할때 548翻譯機로 카드上에 印刷해 본다든가, 穿孔機에서의 複寫機能으로 行政區域番號가 틀렸을 때는 數많은 카드를 다시 천공치 않고 틀린 部分만을 정정하도록 하고 519複寫穿孔機로 集團穿孔을 한다든가, 또는 計算問題가 있을 때에는 604電子計算穿孔機에서 計算穿孔하는 補助作業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作業은 데이타品質管理上 꼭 필요한 作業이었다.

(5) 101電子統計機와 419會計機는 用紙에다 直接 集計結果를 印刷한다. 이 結果表는 審査班에 보내어 最終確認을 하게 된다.

이 當時의 作業環境은 機械加熱을 防止하기 위한 冷房施設을 Worthington冷房機 6台가 壁藏式으로 設置돼 있었고 電氣施設도 3,300볼트 變電室이 施設되어 있었으며, 停電時를 對備하여 最新型 美製 Caterpiller 自家發電機2台가 待機하고 있었다. 機械室施設로서는 모든 것이 完全無缺했다고 할 수 있었다.

(4) 1960年 人口住宅센서스 以後

196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와 農業센서스 資料處理까지 끝나고 機械中 一部 購入分만 남기고 大部分 賃借期間 滿了로 IBM이 徹收해 갔다. 그 後에는 旣往에 手集計로 하던 小規模統計調査 즉 經濟活動人口調査 등을 하나씩 機械化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當時 財務部 關稅局 所管인 貿易統計의 集計依賴를 받아 機械로 처리하였는데 當時의 貿易量이 적어 業務量自體는 크지 않고 輸出入 免狀의 回收는 月間 約 3,000件이었다. 이 免狀은 人力의 근거가 되었다. 後日 關稅廳이 發足되어 自體電算施設을 갖추고 貿易統計資料業務를 引受해 갔다. 그리고 産業銀行이 管掌했던 鑛工業動態調査의 資料處理도 統計局PCS機械로 처리하였다. 이 業務는 標本抽

出率로 곱하여 推定値를 計算한다든가 또 標本誤差를 위한 分散計算등 多少 複雜했으므로 주로 604電子計算穿孔機를 많이 使用했다.

다. 韓國最初의 電子計算組織 IBM 1401

1966年 人口센서스를 實施한 後 이의 자료처리를 위하여 導入한 것이 韓國에서 歷史的인 컴퓨터時代를 연 電子計算機 IBM 1401 Syste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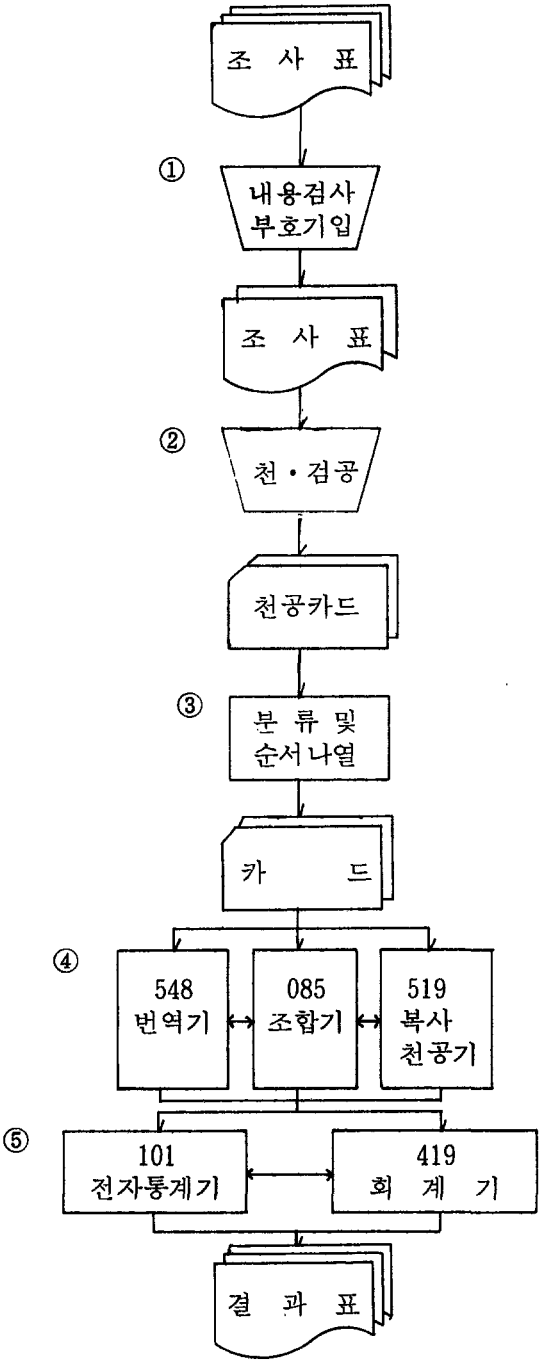
當時의 調査統計局長 咸萬準氏는 1966年 人口총조사資料處理를 위하여 반드시 컴퓨터의 導入이 必要하다는 것을 痛感하여 經濟企劃院次官 金鶴烈氏에게 強調한 바 이때에 導入機種의 選擇이 問題였다. 韓國 最初의 컴퓨터導入이라는 名分과 컴퓨터 製作 各社의 大大的인 宣傳攻勢로 次官과 局長은 이에 苦心하던 차에 美國週刊誌 "TIME"에서 새로이 開發市販되는 電子計算機 IBM System 360의 優秀性에 관한 記事가 게재되었던바 次官은 局長과 議論끝에 IBM 360으로 合意하고 즉시 IBM의 營業擔當에게 360機種導入을 注文하였다. 당시 IBM의 사정은 注文이 밀려 있어 契約後 1年6個月 내지 1年8個月後에나 實際導入이 可能한 실정이었으므로 IBM의 권고대로 IBM System 360을 導入할 때까지 暫定的으로 IBM 1401電算 System을 導入하도록 決定을 보았다. 동시에 IBM機械에 대한 after service라는 問題가 수반되었으므로 IBM 1401컴퓨터의 導入卽時 IBM Korea社를 國內에다 投資設立한다는 約束下에 導入契約이 이루어졌다.

1967年 6月 24日의 始動式에는 經濟企劃院長官 張基榮氏가 테이프를 끊었다. 그리고 이 機械의 導入을 계기로 韓國 IBM(株)이 現地法人으로 出發하였다.

1401은 1959年에 開發한 電子計算機로서는 2世代機械에 해당하는 것으로 完全半導體化(fully transistorized)되었으며 한개의 電子管도 使用하지 않고 있다. 이 機械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使用하던 PCS 혹은 單能機(unit record system)는 점차 老朽化되고 生産中止까지 이르렀다. 이 機械는 全世界에 14,000台가 팔렸다고 하며 月賃借料는 8,000$程度였다. IBM은 다음 世代의 컴퓨터 360시스템이 開發될 때까지 1401型이 主導하였다.

1401型의 正式名稱은 IBM 1401 電子資料處理組職(Electronic Data Processing

자료처리작업의　흐름


조 사 표
①
내용검사
부호기입
조 사 표
②
천·검공
천공카드
③
분 류 및
순서나열
카　　드
④
548
번역기
085
조합기
519
복사
천공기
⑤
101
전자통계기
419
회 계 기
결 과 표

System, EDPS)이며 한국에서 도입한 機械構成은 다음과 같다.

① 1401　中央演算處理裝置(CPU, Central Processing Unit)
記憶容量 16KC(Kilo-Character) 즉, 16,000字, 6bit BCD와 Parity Check bit 및 Word mark bit를 포함하여 8bit로 1 character를 이룬다. 메모리 사이클時間은 11.5ms per character이다.

② 1402　카드解讀穿孔裝置(Card Reader/Puch)
解讀速度分當800枚

③ 1403　印刷裝置(Printer)Chain式活字인 印刷機이며 分當1,100line을 印刷한다. 在來式에 비해 획기적으로 소음이 없으며, 염가이고 高速이다.

④ 729　磁氣테이프裝置(Magnetic Tape Unit)4台, 傳達速度는 15,000~62,000字(秒當), 1/2인치 넓이의 테이프 길이 2,400피트의 릴이며, 記錄密度(density)는 1인치당 800字였다.

⑤ 1405　磁氣디스크記憶裝置(Magnetic Disk Storage Unit)
200字레코드 50,000개 혹은 100,000개를 貯藏할 수 있다. 전송速度는 600ms이다.

1401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言語는 記號프로그램式(Symbolic Program System)을 채택해서 이를 發展시킨 version으로 Autocoder라는 basic assembly language가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IBM Assembly Language의 前身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high level言語로서 FORTRAN, COBOL의 compiler가 具備되었었으나 機械容量의 制限과 處理速度가 느린 까닭에 人氣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使用치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401을 導入한 때는 IBM 360 System이 이미 先進國에서는 使用하고 있었으며 1401도 서서히 물러가는 때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導入한 1401은 再生品(rebuilted)인 것으로 안다. 1967年 4月에 設置되어 1968年 12月 360System이 新規導入될 때까지 使用되었다. 그 후 IBM은 이를 回收했다가 서울대에 기증하였으나 現在는 國立科學博物館에 前述한 PCS機 몇대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

(1) 1401시스템 프로그램敎育

機械導入設置에 앞서 1966年 8月에 IBM社의 초청으로 日本東京에 있는 IBM敎育센터로 컴퓨터 프로그래밍要員訓練을 받으려고 피교육자 5名이 떠났다. 이때의 訓練期間은 3個月이였고 주로 前述한바 있는 Autocoder言語를 利用하는 프로그램 作成法이었다. 그러나 피고육자 全員이 이미 機械資料處理의 經驗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새로운 機械에 대한 適應이 容易했다. 史實 PCS나 컴퓨터나 資料處理의 原則에는 큰 차는 없었고 더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생각하는 方式(logic)은 이미 PCS機의 604電子計算穿孔機와 거의 같았다. 즉 규모는 작아도 604의 Program Step이나 storage 그리고 register의 槪念도 같았으므로 最初 PCS을 접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容易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긍지만은 대단했다. 이때 무엇보다 생소하게 여겼던 것은 PCS에 없었던 테이프와 디스크의 使用法이었다.

컴퓨터와 PCS의 根本的 差異를 보면 單能機의 여러 種類로 구성되는 PCS는 이 機械 저 機械로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해야 하므로 人力이 많이 들고 速度가 느리나 이에 비해서 컴퓨터는 한번만 카드를 解讀裝置에 入力하여 테이프에 옮겨 놓으면 거의 人力이 必要없이 電算組織 內部에서 PCS에 比較할 수 없는 速度로 處理하므로 한두사람의 操作員(operator)만 必要하다.

硏修를 마치고 歸國한 後에 統計局內에서 傳達敎育이 實施되어 各者는 새로운 電算敎育을 받는다는 뜻에서 매우 熱意가 높았다.

그리고 日本에서 理論과 實習을 겸하여 배웠지만 우리方式의 총조사 또는 統計實務를 적용하여 實習한 경험이 없어 韓國 IBM 社가 주선하여 大邱에 所在하는 美軍의 電算施設을 利用하여 實習하도록 해주었다. 프로그래머들은 臨時로 센서스데이터를 準備하여 테스트데이터로 하고 우리손으로 完成한 Program을 휴대하고 大邱에 出張을 가서 美軍電算施設이 한가한 夜深을 利用해 實習하고 經驗을 쌓기도 했다. 그 當時의 美軍電算設備는 全駐韓美軍의 모든 軍需業務를 擔當한 尨大한 施設로서 機種은 우리의 1401보다 約 5倍의 規模를 가진 IBM 7010 電算시스템이었다.

(2) 附帶施設의 準備

冷房施設이나 電氣施設은 旣存의 것으로 別問題 없었으나 우선 PCS와 달리 컴퓨터시스템은 名實 共히 하나의 組職이므로 電算시스템의 重量을 견딜수 있는 마루를 施設하여야 했다. 先進國에는 鐵製의 組立式으로 된 旣成品이 있었으나 그것마저 輸入할 수는 없었고 결국 버팀材料로서는 約15cm角木으로 하고 그 위에다 두꺼운 베니어板 2枚를 겹쳐 깔았다. 그리고 電壓의 高低에 매우 銳敏한 電算시스템에는 自動電壓調整裝置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時急하게 業者에게 製作納品케 했으나 이것이 전혀 自動이 되지 못했다. 그 當時 우리나라 電氣事情은 오늘날과 같지않아 밤만 되면 機械室電壓이 電算시스템이 停止할 정도로 下降하였다. 그 때마다 手動으로 電壓조정기(변압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였다.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24時間 同一한 電壓을 유지해주는 소위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이 있어야 했다. 이 問題는 360시스템을 導入한 後에야 해결되었고 그후 한국에서도 完全한 國産製作에 成功하였다. 自家發電機는 利用했으나 컴퓨터는 정전만 되면 그 때까지 해온 作業은 허사가 되는 일이 非一非再했다. 결국 韓電의 配慮로 이 문제도 多少 해결할 수 있었다.

(3) 1966年人口총조사 資料處理

우선 穿孔作業인데 穿孔機는 IBM 029穿孔機 150台를(검공기 포함)導入하여 一年間 2交代로 作業함으로써 1966年人口센서스 데이터穿孔은 完了되었다. 業務量도 每10年마다 하는 大規模센서스에 비해 이때는 簡易센서스였고 또 住宅調査가 없었으므로 業務量이 60年센서스當時보다 훨씬 적었다. 調査項目이 적었으므로 카드設計도 80칼럼 카-드上에 家族3名分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1401시스템에 의한 資料處理는 PCS와는 전혀 달랐다. 作業의 흐름이 다르다.

여기에서 1401電算시스템으로 資料處理하는 作業의 順序를 흐름圖의 番號順으로 說明해 둔다.

① 調査票를 사람의 눈으로 內容檢査하고 符號記入이 完了된 것을 前述한 新規導入한 IBM 029穿孔機로 데이터 카드를 作成한다.

② 카드를 1402카드解讀裝置로 읽어서 729테이프裝置에 걸려있는 磁氣테이프상에 記錄한다. 테이프 한개의 릴에 80칼럼 카드 弱15萬枚~20萬枚分을 記錄할 수 있다.

③ 카드를 순서로 나열하여 資料의 내용 검사준비를 한다. 센서스의 경우는 行政區域, 調査區, 家口番號, 家口員番號까지 연결된 順序로 나열하자면 12칼럼을 分類하여야 하므로 1401만 하여도 오늘날의 컴퓨터에 비해 低速이므로 1개 릴에 가득차 있는 것을 分類하는데 4, 5時間씩 걸렸다. 夜深에 시작하면 새벽까지 계속 機械는 分類作業을 하였다. 그러다가 停電만 되면 그때까지 한 것은 全部 無效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非一非再하였다.

④ ②와 ③의 경우는 作業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이 IBM에서 提供하는 旣成프로그램(Utility Program)으로 作業하지만 ④의 機械內檢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 프로그래머가 開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作業은 穿孔된 카드의 錯誤·누락·重複된 카드를 索出한다든가 이른바 range check 또는 consistency check 등을 한다. 誤差가 없는 카드는 OK테이프로 보관하고 착오카드는 에러리스트에 印刷해 낸다.

⑤ 이 착오리스트는 調査票와 대조하여 修正을 가하여 다시 천공하여 체크하는 作業過程을 錯誤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그리하여 完全히 修正된 후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⑥ 製表를 위한 分類를 한다.

⑦ 컴퓨터의 1403印刷裝置로 結果表를 作成하는데 여기에서 使用되는 프래그램도 미리 準備돼 있어야 한다.

⑧ 컴퓨터에서 프린트된 結果表는 審査班에 보내어 公表하기 前에 내용을 點檢해 본다.

以上과 같은 方法으로 1966年人口센서스는 1年半이 걸려 그 資料處理를 完了했다. 製表한 結果表數는 全數調査分으로 7個表, 10% 標本으로 23個表를 作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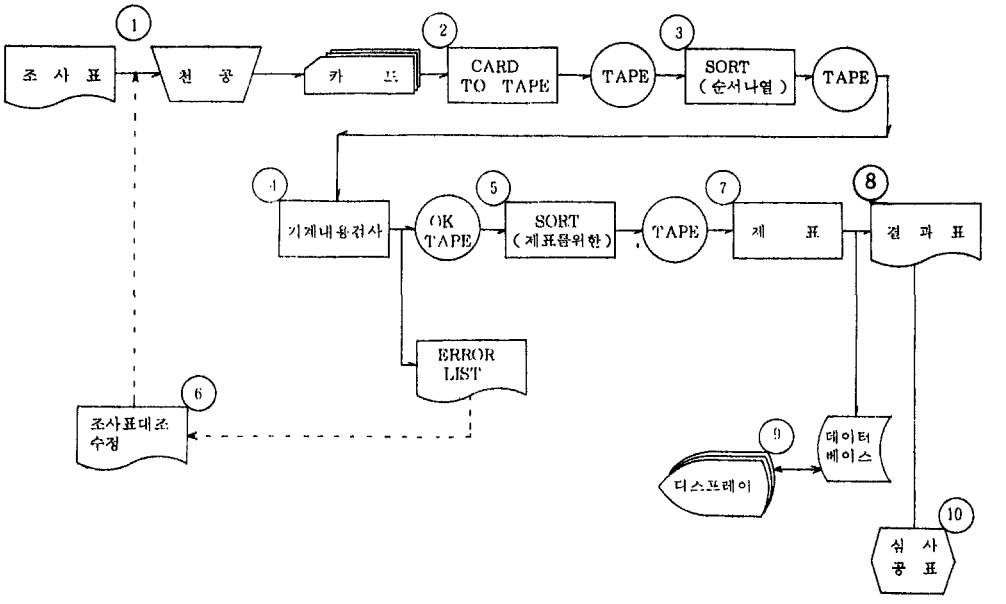
처음에는 全的으로 1401을 1966年人口센서스資料處理에만 使用하였으나 이 作業

이 完了된 후에는 거의 모든 統計調査를 電算化해갔다. 過去의 CS機械로 處理해왔던 것을 다시 1401로 處理하기 위한 프로그램作成에 拍車를 가했다.

이때 銀行主管으로 作成해오던 産業聯關表(I/O Table)는 그 計算法의 어려움과 國內에 電子計算機가 없었으므로 每年 日本에다 計算依賴를 해왔는데 이제 부터는 國內에서 可能해졌다.

한편 電子計算機 設置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稼動後 얼마 안되어 朴正熙 大統領이 視察한 것을 筆頭로 無數한 學生, 公務員 訓練生의 見學이 많아졌다. 教授(大學)들의 計算依賴도 많았다. 中堅프로그래머는 번갈아 가며 TV放送出演依賴를 받았으며 각 大學에서 特講依賴가 많았다. 프로그래머들은 韓國最初의 그리고 時代의 尖端을 달리는 電子計算機를 이나라 누구보다 먼저 다루고 있다는 긍지가 大端했고 寢食을 잊고 프로그램作成에 골몰한 것은 事實이었다.

EDPS 資 料 處 理 作 業 흐 름 圖



(4) IC 및 LSI의 開發과 統計資料處理

트랜지스터의 開發은 2世代 電子計算機를 만들게 했고 統計資料處理도 惠澤을

입어 處理速度도 빨라져 過去에는 생각도 못했던 問題뿐만 아니라 複雜한 問題도 짧은 時間에 解決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人間은 이것으로 滿足치 않고 IC (Integrted Circuit, 集積回路) 그리고 곧 LSI(Large Scale Integration, 大規模集積)가 開發되어 마침내 3世代 컴퓨터가 生産되었다. 電子工學界는 이른바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超大規模集積)를 開發하여 컴퓨터는 그 부피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能力은 倍加를 거듭하여 왔다. 價格은 더욱 低廉해져 대부분의 物價가 上昇하는 傾向임에도 컴퓨터만은 價格이 低下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물결을 타고 統計局에서도 다음 世代의 컴퓨터導入을 構想하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迅速하고 正確한 統計는 이제는 컴퓨터에 依存하지 않고서는 生産할 수가 없다. 이제 1401만으로는 너무나 不足했다. 1401은 너무나 低俗한 컴퓨터였으며 容量이 너무나 작았다. 그런데도 新型컴퓨터와의 能力을 對比할 때 價格은 너무나 비쌌다.

(5) IBM360시스템·모델40의 導入

前述한 바와 같이 統計局資料處理業務는 增加一路에 있었다. 즉 새로운 統計를 開發하고 또한 그 規模도 過去와 같은 集計에 의존한 時代와는 달리 몇십배씩 많아졌다. 大型機械導入의 名分이 發生한 것이다. 그러나 豫算確保가 문제였다.

그리고 新型機械의 注文은 1年半前에 契約을 해야한다. 當時만 해도 IBM컴퓨터는 미리 주문을 해야 했다. 이는 우리나라 豫算 制度에서는 곤란할 당시여서 導入되는 年度의 末頃에 執行할 수 있는 賃借料 한두달분의 少額만 책정하도록 하였다. 機械는 12月 한달만 使用하고 안쓸 수는 없으므로 豫算은 新型을 維持하는 豫算이 通過되게 마련이다. 또한 豫算當局이 컴퓨터를 利用하도록 하여 惠澤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1968年 12月 導入된 IBM 360-40은 記憶容量을 1401의 16KB보다 倍加한 32KB로서 設計原理도 1401과는 전혀 달랐고 우선 프로그램作成法 즉 프로그램用語가 달랐다. Assembly用語도 過去의 Autocoder와는 훨씬 달라졌다.

1968年 7月 시스템360의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한 硏修를 가야 했다. 當時 日本은 컴퓨터가 한창 붐이였으나, 日本製는 아직 人氣가 없고 IBM이 日本에서 成長一

路였다. 東京천조정에 있는 IBM敎育센터에는 每日 500名 以上이 硏修하였다. 韓國 硏修生도 이들과 함께 受講했다. 360入門講義만은 1,000名이 受容되는 講堂에서 一時에 講義하고 各科目別로는 班이 달랐다. 韓國硏修生은 360入門은 물론 assembly 語, COBOL, PL/I, 其他 適用 software 등을 두루 배우는데 約3個月이 걸렸다.

이때 導入된 360-40의 시스템 構成은 다음과 같다.

IBM　360-40　CPU 32 KB, core memory
〃　2540　Card Reader 1台
〃　1403　Printer1
〃　2403　Magnetic Tape Unit(1600～3200bpi) 5台
〃　2311　Magnetic Disk Storage Unit 2台
　　Console Typewriter 1台

機器構成은 전번 1401과 비슷하나 能力面에서 各機器는 倍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Tape나 Disk의 轉送速度가 2倍였다. 그러나 使用해보니 memory의 용량이나 Disk의 容量이 실제로는 不足하였으며 Disk에는 데이터를 위하는 領域이 없었고 operation system이 全部 들어 있었다. 記憶容量은 作業時에 Operation system이 半以上 차지하게 되므로 User의 使用에는 역시 制限이 있었다. high level language使用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므로 主로 assembler로 프로그램을 짰다. 그렇게 해서 作業速度와 能率을 올렸다. high level language만을 배워가지고 新規採用된 프로그래머는 局內에서 assembler를 가르치곤 하였다. 이때부터 점차 他機關에서도 컴퓨터導入이 시작되었으며 統計局의 有經驗 有能한 프로그래머를 스카우트해가기 시작했다.

當時는 統計局이 電算要員養成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統計局이 韓國電算技術普及에 크게 寄與한 것만은 事實이다.

1970年 人口센서스는 經濟活動, 人口移動, 出産力, 住宅調査 等을 包含한 大規模였다. 이의 製表는 約35個表였으며 標本處理는 10%였다. 이제 人口센서스資料處理는 이전처럼 힘들거나 두려운 對象은 못됐다. 벌써 3回의 經驗을 쌓았기 때문이다.

센서스處理가 끝난 後에는 2台의 360-40을 가지고 있어야 할 必要가 없었다. 비록 經常業務量은 계속 늘어나긴 했지만 이무렵 370시스템이 開發되어 發賣하기 시작하였다. 360-40 두대를 내보내고 370-135 1台를 導入하기로 했다.

이당시(1970.8~11) 美商務部센서스局에서의 센서스資料處理 WORKSHOP에 참가하는 한편, 日本 統計局의 專門家(小山弘彦)가 統計局에 約10個月間 파견되기도 하였다.

1971年 2月에 또 한台의 360-40을 導入했다. 記憶容量은 64KB였고, 이것으로는 主로 人口센서스資料處理에 充當했고 旣存의 360은 經常業務를 처리했다. 新規導入分은 記憶容量이 64KB인지라 2台의 컴퓨터가 設置되었다. 그러나 時代는 컴퓨터가 반드시 物體가 커야할 理由는 없는 때였다. LSI는 過去의 機械보다 몸체는 작아도 能力은 몇배로 만들게 했다.

(6) 統計局以外의 電算化擴散

調査統計局이 最初로 電算化를 이룬 後로 政府各機關 및 民間機關에서도 서서히 컴퓨터導入의 氣運이 태동하였다.

1967年 統計局이 電子計算機를 導入할 무렵 韓國生產性本部가 日本生產性本部를 통하여 日本富士通의 FACOM 222를 寄贈받아 設置하여 우리나라 電算業界(民間)에 寄與한바가 컸다. 生產性本部는 電算事業을 獨立시켜 韓國電子計算所로 하여 各機關으로부터 用役業務를 처리하였으며 또한 電算化豫定機關의 電算要員訓練을 專擔하다시피하여 草創期의 그 功이 至大하였다고 할 수 있다. 當時 產業銀行이 擔當했던 우리나라 鑛工業센서스의 資料處理도 遂行한바 있다.

陸軍本部副官監室은 오래前부터 兵力管理의 電算化를 試圖한 바 있어 調査統計局으로부터 관리이전받은 舊型 PCS各種機械를 使用코저 하였으나 너무나 舊型이어서 實用價値가 없음을 알고 陸軍軍需管理團으로 移讓(여기에서도 使用치 못하고 폐기하였음)하고 直時 UNIVAC 9300(32KB)를 導入하였는데 이것이 1968年 6月의 일이었다.

이 當時 行政各部가 모두 電算化를 要求하였으므로 豫算當局은 科學技術處로 하여금 하나의 大型컴퓨터를 設置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共同 利用하기로 하였다. 科學技術處傘下에 中央電子計算所를 設立하고 1971年 9月 UNIVAC 1106(256KB)를 導入하여 政府各部處의 電算業務를 거의 무상처리하였다(後에 總務處로 이관되어 政府電子計算所로 改稱).

이때 農水產部가 實施했던 1970年 全國 農業센서스의 資料處理를 이 計算所는 最初의 業務로 着手하였었다.

韓國科學技術硏究所(KIST)는 1969年 9月 當時 韓國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컴퓨터 CDC 3300(32KW)를 導入設置하고 政府民間 할것없이 방대한 用役業務處理를 해왔으며 電算室開設以來 成奇秀博士의 功績은 世人이다 아는바다.

其他 農水產部, 關稅廳, KDI 등은 調査統計局의 主電算裝置에 터미널을 연결 利用하다가 각기 獨立된 컴퓨터를 導入하여 단독處理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事實은 상기 각기관의 電算室이 統計局 出身의 숙련된 電算要員을 2·3名씩 스카우트 해간 事實이다.

(7) IBM 370-135의 導入

1974年 4月에 360-40 2台代身에 最新型 시스템 370-135를 導入設置했다. 370의 記憶容量은 128KB였다. 處理能力은 스피드보다는 1.5 MIPS(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 1秒當 100萬個의 命令을 遂行)라고 했으며 이런 方式의 能力表現方法을 IBM은 取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high level language인 COBOL과 PL/I을 마음대로 使用할 수 있게 되었다. 記憶容量이나 處理速度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배우기도, 使用하기도 어려운 assembler의 使用을 점차 止揚하였다. 특히 스카우트가 甚한 프로그래머의 需給에 便宜를 가져와야 하는 理由도 컸다.

COBOL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言語는 거의 英語文法에 가까운 言語로서 (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 COBOL) 배우기가 매우 容易하다. 이는 美國의 海軍將校 Hopper女史가 創始者이다. 또 PL/I(Program Language One)은 IBM이 개발한 것으로서 COBOL과 FORTRAN의 特性만 골라 開發한 言語로서 매우 쓰기 便利한 컴퓨터言語이다. 프로그래머는 業務의 特性을 고려하거나 自身이 能한 言語를 마음대로 使用했다.

이때의 시스템構成은 다음과 같다.

※ IBM　370-135　CPU 128KB

〃　2540　Card Reader 1台

〃　3203　Printer(1,200LPM) 1台
〃　3420　Tape Unit 6台
〃　3330　Disk Storage Unit 1台
　　Diskette Reader　1台

特記할 部分은 記憶容量이 前에 比해 倍加된 128KB이고 印刷機는 多少 빠른 것이었고(1,100→1,200LPM), 테이프裝置는 新型으로 바꾸고 台數도 6台로 되었으며 디스크가 3330으로 前에 比해 約3倍가 되었다. Console Typewriter代身에 CMS (Conversational Management System)로 CRT를 利用하게 되었다.

1975年度 人口센서스處理를 위한 키펀치는 그 方法을 完全히 달리했다. 旣存의 IBM029카드펀치는 내보내고 全然 카드를 使用치 않는 方法으로서 그 代身 diskette (flopy disk)를 使用했다. 오랜 歷史를 간직해 온 카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IBM 3740 Key Entry System으로 穿孔하여 컴퓨터시스템에 on-line돼 있는 Diskette Reader(디스켙解讀裝置)에서 테이프에 옮기거나 컴퓨터 메모리 또는 디스크에 直接入力시킨다.

이 무렵부터 統計局은 豫算局의 業務를 一部 電算處理해주었고 韓國開發硏究院(KDI), 農林水産部의 統計資料處理, 關稅廳貿易統計等 업무도 受託處理하였으나 그들도 점차 獨自的으로 電算機器를 導入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調査統計局 main system에다 端末機를 連結하여 自體處理하였다.

調査統計局의 system370-135는 1975年度 人口센서스의 處理를 위하여 容量에 倍加를 거듭했다(1975.12 256KB, 1976.6. 320KB로 擴張).

調査統計局은 그동안 蓄積된 電算化資料가 많아졌다. 主로 磁氣테이프에 收錄된 資料로서 1,000個 reel에 가까워졌다.

1977년 드디어 統計데이타베이스開發에 試驗的인 出發을 하였다. 처음에는 방대한 保管데이터의 어느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構築에는 고도한 技術이 必要하였다. 처음에 物價指數를 入力하여 再檢索해보는 프로그램부터 作成하여 試圖했었으나 如意치 않았다. 결국 資料管理課가 增設되고 데이터베이스 作業을 專擔하게 되었다. 곧이어 豫算을 確保하여 産業硏究院에 用役을 주었다. 硏究를 擔當한 當時의 KDI電算室長 金大泳博士를 비롯하여 數

名이 先進國의 데이터베이스現況을 視察할 目的으로 美國, 카나다, 日本等地로 나가서 調査하였다. 美國, 카나다의 DB는 規模의 크기로 우리의 模倣對象이 될 수 없고 日本 經濟企劃廳의 DB시스템 形態를 擇하기로 하고 開發에 着手하였고 그해 가을에 第1段階로 完成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統計廳 DB의 母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後 1989年代에 들어와 改良을 거듭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연히 電算시스템의 擴張도 要求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利用者數는 如前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기에 資料管理課는 꾸준히 힘을 기울여오다가 統計刊行物에 실을 資料는 主로 DB에 收錄했다가 거의 書籍印刷形態로 컴퓨터에서 作成해내도록 하는 方法에서 DB의 活路와 明分을 찾았다. 統計刊行物發行에 엄청난 時間短縮을 가져오게 된것이다. 同時에 電算機에 들어있는 資料는 언제든지 加工(software package를 利用하여)할 수 있고 檢索이 可能해졌다.

이러는 동안에 main system의 記憶容量 擴大의 必要를 느끼게 된다. 첫째 高級 software를 活用할려면 容量이 充分해야 한다. 1977年 10月에 370-138型으로 交替하고 容量은 512KB로 되고 다시금 1978年 12月에는 倍加한 1,000KB 즉 1MB (mega byte)로 擴張되었다.

이무렵 KDI와 農林水產部는 自體의 電算시스템 즉 IBM 370-125를 導入(79.12)하기에 이르렀다. 이 當時 통계국에서 農林水產部와 關稅廳에 직원이 스카웃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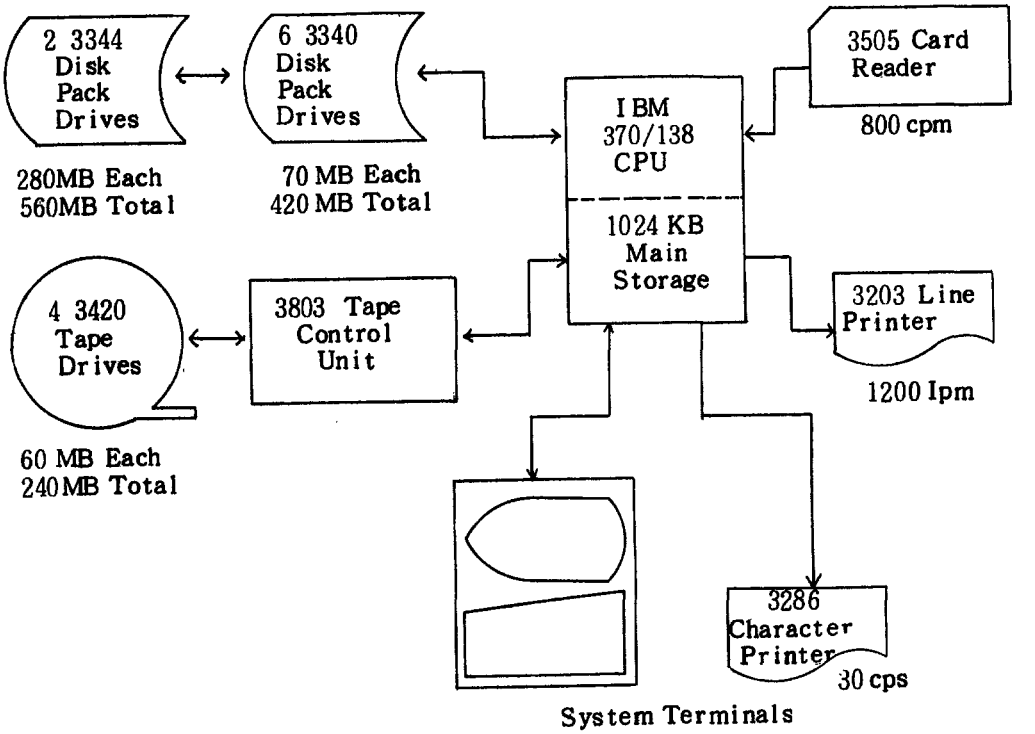
라. 電算組織의 高度化 超大容量化

(1) IBM 370/3031의 導入

370-138은 容量이 1MB가 上限이고 그 以上의 容量擴大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 段階는 높은 모델로 옮겨가야 한다. 1980年 人口총조사 資料處理問題도 있고해서 370/3031의 導入이 不可避했다. 이 시스템의 용량이 2MB가 되어 과거에 DB에서, DL/I(Data Language One)만이 使用可能했던것이 IMS DB1.2(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와 CICS1.5(Customer Information Control System)라는 高級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DB의 支援을 높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OS가 VS(Virtual storage, 假想記憶裝置) 그리고 이른바 virtual machine이라는 것이다. CPU內의 實記憶容量이 不足해도 假想記憶으로(Disk에다 延長하여) 커버한다는 것이다.

IBM SYSTEM 370/138의 構成圖



370-3031의 構成을 간단하게 적어본다.

IBM	370-3031	CPU 2MB, VM, OS/VS
〃	2540	Card Reader
〃	3203	Printer 2台(1,200LPM)
〃	3340, 3344	Disk Storage 총 2giga bytes(GB)
〃	3420	Tape Unit 8台
〃	3704	Communication Control

〃 3277 Terminal(CRT) 6台

이때부터 프로그래머는 從來의 Program Sheet에 記入作成하던 Source Program製作形式에서 탈피하여 Terminal앞에서 作成하게 되었다. 資料處理課의 일부에 CRT室을 設備하여 그안에 設置된 CRT앞에 앉아 交代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形態가 되었다.

위 構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맘모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테잎裝置, 디스크裝置가 엄청나게 커졌다. 經常業務가 불어나고, DB시스템을 支援해야하고, 더구나 80年度 人口센서스를 早期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한 設備가 필요하게 된것이다.

(2)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地域情報시스템)의 開發

統計는 數字만으로 表示하는 時代는 지나가고 그림으로 보는 統計, 그리고 視覺的으로 즉각 이해하는 統計, 더구나 이를 地圖化한 統計가 開發되기에 이르렀다. 簡單히 말해서 地域統計는 地圖上에 色彩로 表示하면 全國 統計를 一目으로 直時判斷이 可能해 진다는 것이다. 當時 IMF의 도움으로 美國, 카나다에 硏修를 보낸 것이 GIS의 시작이었다. 드디어 1983年 1月에 地域情報시스템을 위한 電算組織을 導入하여 資料管理課에 設置稼動시켰다. 機械構成은 다음과 같다.

PDP 11-73 CPU용량 512KB 1台(1985, 12 2MB로 擴張)

CDC 1100 Disk 80MB 1台

SUMMA Graphics Digitizer(36″×48″) 1台

Calcom 1051 Plotter 1台

DECIII Dot Printer 1台

AED 767 Color Terminal 19″ 1台

VT-100 CRT 1台

여기에 使用되는 software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S RT－11, TSX

Compiler : FORTRAN, COBOL, BASIC

Mapping : STRINGS

GRAPHICS : HCBS

이 地域情報시스템開發로 「Mesh統計」시스템을 導入하여 우리나라 地圖에 適用開發 發展시켰다.

(3) IBM SYSTEM 4381-M02 및 P03의 導入

前述한 바와 같이 電子工學의 發達로 電子計算機의 容量은 늘고 處理業務量 對比價格(cost performance)은 계속 低廉하게 되었고 製造業者間에 競爭이 치열하게 됨에 따라 컴퓨터價格은 점점 싸지게 되었다. IBM社가 이무렵 개발한 것이 4000 series로서 4381-M02(記憶容量 8MB)는 370-3031(2MB)과 그 價格이 거의 맞먹었다. 그리하여 1984年 12月에 4381로 交替하였다. 다음해 1985年 12月에는 人口총조사資料處理를 감안하여 容量을 倍加했다. 그러므로 地方電算網을 뒷바침하고 各課에 設置된 워드프로셋서등 約120台에 達하는 傘下 各種 端末裝置를 支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SAS, SPSS, ARIMA 등의 統計 software package를 何等의 制限없이 利用可能해지고 複合同時處理는 그 速度가 빨라진데는 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IBM SYSTEM 4381-P03의 詳細한 構成圖를 參照하기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調査統計局이 導入하였던 電算시스템의 年代表(沿革)도 揭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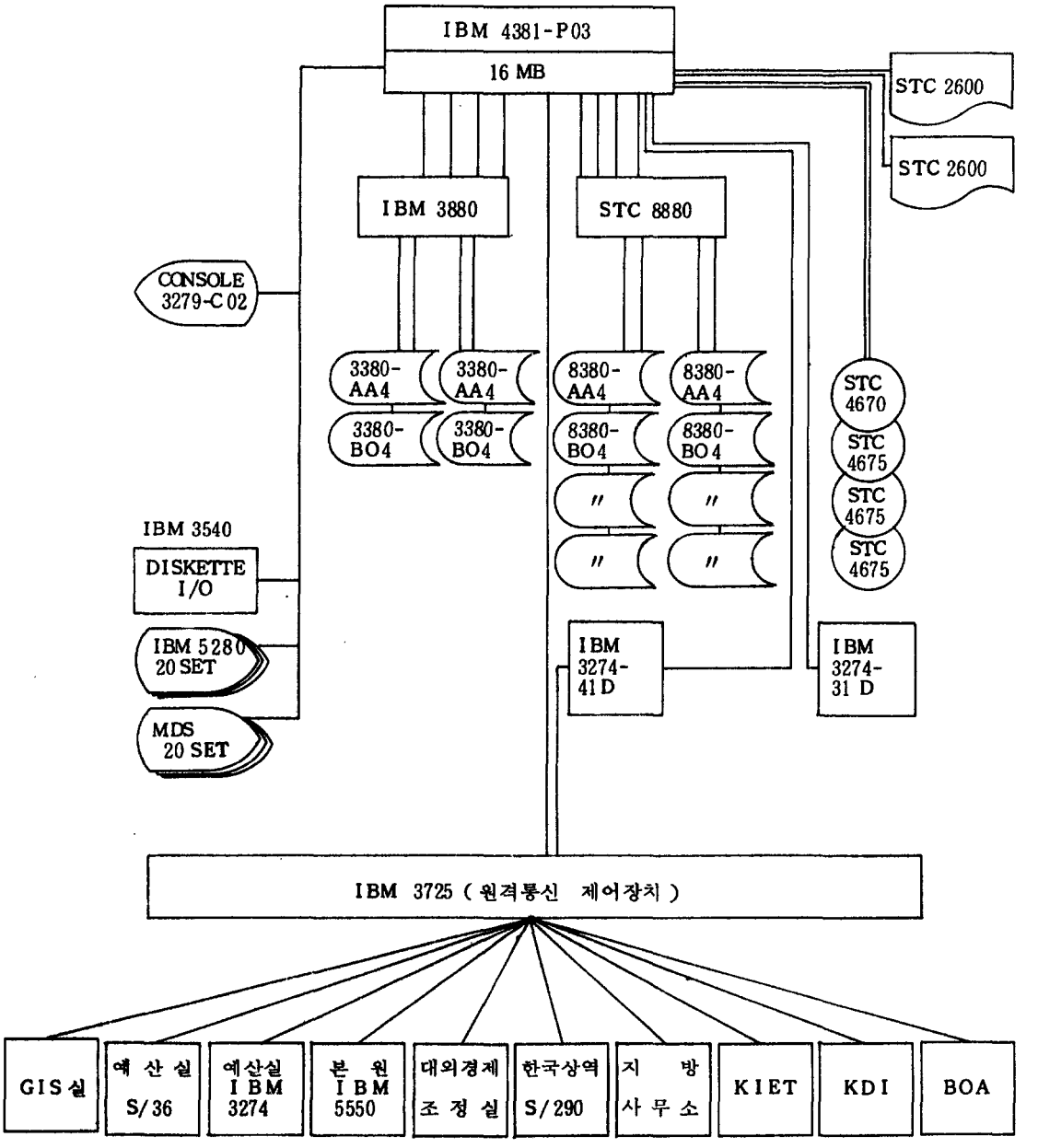
電算裝備 保有 現況

88. 3. 31 現在

裝　置　名	MODEL	臺數	性　　能
中央處理裝置(CPU)	IBM 4381-P03	1	SYSTEM의 中心部로 SYSTEM全般管理 記憶容量 : 16MB, 處理速度 : 65NS
DISK制御裝置	IBM 3880-3	1	DISK裝置와 CPU間의 資料電送 中繼
	STC 8880-2	1	
DISK裝置			DISK에 資料를 收錄 또는 解讀 總臺數 : 12臺, 總容量 : 30G
	IBM 3380 AA4	2	臺當 2.5GB 電送速度 3MB/SEC
	IBM 3380 BO4	2	〃　　〃
	STC 8380 AA4	2	〃　　〃
	STC 8380 BO4	6	〃　　〃
TAPE制御裝置	STC 4670	1	CPU와 TAPE裝置間의 資料電送 中繼 및 TAPE에 資料收錄 또는 解讀
TAPE裝置	STC 4674	3	TAPE에 資料收錄 또는 解讀電送速度 1.2MB/SEC, 密度 6250BPI

裝　置　名	MODEL	臺數	性　　能
SYSTEM印刷裝置			資料 處理結果를 印刷
	STC 2600	2	印刷速度 2600LPM, 132字/LINE
DISKETTE入出力裝置	IBM 3540-B2	1	DISKETTE에 資料收錄 또는 解讀·解讀速度
			6400CPS, 記錄速度 4270CPS
端末機 制御裝置			CPU와 端末機間의 資料電送 中繼
	IBM 3274-D31	1	英文 端末機
	IBM 3274-D41	1	英文, 한글 端末機
	S/290	1	〃
端末裝置(CRT)	IBM 3279-X03	2	PROGRAM開發 및 on-Line檢索(COLOR)
	HQ 378	11	〃
	MDSK 6529	8	PROGRAM開發 및 文書作成
	IBM 5550	28	〃
	POWER 5800	35	〃
端末印刷裝置	IBM 5550	26	화면內容複寫 및 處理結果出力
	IBM 3287-C02	1	〃 (COLOR出力)
	PT 200M	17	〃
	PT 300M	2	〃
	S/290	1	〃
遠隔端末制御裝置	IBM 3725-1	1	遠隔端末裝置와 CPU와 資料電送 中繼
遠隔端末裝置	S/36 SYSTEM	1組	遠隔 資料處理溶 端末機
地域情報制度裝置	LSI-11/73	1組	地域情報를 色彩있게 GRAPHIC製圖
資料入力裝置	IBM 5280	5組	DISKETTE에 資料를 收錄하는 裝置
	M9121H	5祖	DISKETTE枚當 容量 : 237KB

조사통계국　전산 SYSTEM 구성도



調査統計局 電算組織의 沿革

1988.3.31 現在

— 1960. 12	IBM PCS(PUNCH CARD SYSTEM)導入 設置
	• 60年 人口·住宅 및 農業총조사 資料處理
— 1967. 4	IBM 1401-C6 導入(16KC)
— 1968. 12	IBM 360-40交替 導入(32KB)
— 1971. 2	IBM 360-40交替 導入(64KB)
-- 1974. 4	IBM 370-135交替 導入(144KB)
— 1975. 12	IBM 370-135容量 增設(320KB)
— 1977. 10	IBM 370-138交替 導入(512KB)
— 1978. 12	IBM 370-138容量 增設(1KB)
	• DATA BASE發展 支援
— 1980. 12	IBM 3031-002交替 導入(2MB)
	• 80年 人口 및 住宅총조사 資料 適期處理
— 1983. 1	GIS(PDP/11-23)導入 設置(512KB)
	• 地域情報를 色彩있게 圖表·地圖로 作成하여 提供
— 1984. 12	IBM 4381-M02交替 導入(8MB)
— 1985. 12	IBM 4381-P03交替 導入(16MB)
	• 85年 人口총조사 및 DATA BASE活性化 支援
— 1986. 2	GIS(PDP/11-23)容量 增設(2MB)
	• 圖表作成, 統計分析 및 豫測業務 增加
— 1987. 3	地方電算網 構築(19個 地域)
	• 資料蒐集 體系의 改善
	• 地方 統計情報 提供 센타 機能 遂行

第5章 經濟·社會發展期의 統計體系 整備

여 백

第5章 經濟·社會發展期의 統計體系整備

第 1 節 産業構造改編과 統計機能

1. 重化學工業推進의 時代的 背景

70年代에 진입하는 時代的 特徵은 國際的으로는 越南의 共産化와 石油波動 등 資源戰爭이, 國內的으로는 近代化의 試鍊과 高速開發經濟의 持續을 들 수 있다. 그것을 象徵하는 것이 維新政體의 出現과 高速道路 開通으로 表出되었다. 특히 高速道路開通의 社會·經濟的 意義는 자못 컸다. 그것은 開發年代의 跳躍이며 開放化時代의 諸挑戰에 대한 意志였기 때문이다.

1969年 7月 21日의 京仁高速道路 開通과 1970年 7月 7日의 京釜高速道路 開通에 이어 그해 말(12月 30日)에는 湖南高速道路도 일부구간(大全－全州)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全國이 完全한 一日生活圈으로 응축되고 國民生活과 産業活動이 더욱 활기를 띠우며 그만큼 國民經濟規模나 國家經營體制가 前代와는 確然히 區分되는 跳躍期에 들어섰다.

가. 重化學工業과 國民經濟의 跳躍

國家의 開發政策은 대대적인 社會投資로 産業活動을 유발하고 國民經濟를 더욱 活性化하는 것이었다. 그에따라 第3次 5個年計劃의 基本骨格도 自明해진다. 즉, 成長과 安定·均衡의 調和로써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것, 그리고 그로써 國家經濟의 自主的 構造를 달성하는 것이 計劃의 基調였다. 이에는 그때까지의 顯案이던 國際收支의 改善을 持續的으로 추구하고 무엇보다 主穀의 自給實現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다.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위해서는 地域開發의 均衡과 國土의 綜合的 開發을

促進하였다. 당시 第3次 5個年計劃의 重點目標로 제시된 것은 ① 農漁村經濟의 革新的 開發과 ② 輸出의 劃期的 增大 ③ 重化學工業의 建設이었다. 요컨대 持續的 工業化成長을 爲主로 하되 그것이 均衡的인 地域開發을 통해서 農漁村과 勤勞者의 生活을 향상시키는 지렛대이며 長期的으로는 自主經濟의 安定的 要素라고 보았다. 이렇게해서 國民經濟의 跳躍期를 重化學工業의 推進으로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達成코자(指向)하는 것이다.

1, 2次 5個年計劃의 推進實績 延長線上에서 高度成長 패턴과 輸出主導型 產業政策은 계속 추구하면서 經濟跳躍期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한 均衡化側面도 實踐目標로서 強調하였던 것이다. 가령,

① 食糧增產, 主穀自給, 農漁民所得增大, 耕地整理, 機械化促進

② 農漁村保健, 文化施設充實化, 農漁村 電話·道路網 擴充

③ 4大江流域 開發, 地域別 工業團地造成

④ 住宅·衛生施設, 社會保障擴充, 勤勞環境改善, 國民의 福祉生活向上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반면 工業化成長戰略으로 제시한

⑤ 科學技術向上, 敎育施設擴充, 人力開發, 雇傭增大

⑥ 電力, 交通, 保管, 荷役, 通信 등 社會基礎施設의 均衡된 發展

⑦ 貿易輸出目標 35.1億弗, 國際收支改善

⑧ 重化學工業建設, 工業高度化의 達成

등의 比重이 實績面에서 더욱 현저하였던 것을 看過할 수 없다.

政策施行面에서도 鐵鋼, 化學, 非鐵金屬, 機械, 造船, 電子등 6個業種을 戰略產業으로 指定하여 이들을 重點開發키로 하고 財政投融資의 配分을 擴大하는 것으로 「重化學工業 建設」을 具體化했다. 그리고 그밖의 部門에서는 가능한 民間投資를 誘導토록해서 70年代를 통한 현단계에서는 위의 戰略產業部門은 여전히 政府主導를 유지하되 其他는 民間主導로 轉換하는 轉期를 造成코자 한 것이다.

그 결과 3次計劃 期間중 2次產業의 比重은 1972年의 23.4%에서 76年에는 30.0%로 늘어나고 重化學工業化率은 1972年의 34.9%에서 1976年은 45.9%로 11%差나 높아졌다. 이에는 기간중 중화학공업이 70年基準價格으로 9.0~39.7%씩 증가한데 힘입은 것이다. 그로써 產業別國民總生產의 構成에서 보듯이 1976年에

는 鑛工業의 比重이 비로소 30%를 넘었다(31.0).

그러나 1次産業과 3次産業은 각각 1962年의 28.3%와 47.3%에서 1976年의 24.3%와 44.2%로 오히려 약간씩 줄었다.

특히 海外貿易은 當初計劃이던 1976年末 35.1億弗 目標를 수차례 수정해서 65億弗로 늘렸으나 실적은 78.1億弗로 나타나고 經常收支도 修正目標는 1976年에 14.7億弗 赤字였으나 實績은 2.8億弗 赤字로 大幅 改善하였다. 이런 實績의 뒷받침으로 3次計劃期間중의 經濟成長率은 當初目標이던 年平均 8.6%를 상회하여 11.2%를 달성하였고 國民經濟規模(國民總生産)도 1970年 不變市場價格基準으로

産業別 國民總生産의 構成比[1]

單位 : %

區分 \ 年度	1961	1966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農林·漁業	40.2	35.4	28.9	28.3	25.6	25.0	25.4	24.8
鑛·工業	15.2	20.1	22.8	24.4	27.3	19.1	29.7	31.0
鑛業및採石業	1.9	1.6	1.1	1.0	1.0	1.1	1.3	1.0
製造業	13.4	18.5	21.7	23.4	26.3	28.0	28.4	30.0
社會間接資本및其他「서어비스」業	44.6	44.5	48.3	47.3	47.1	45.9	44.9	44.2
國民總生産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韓國銀行「韓國의 國民所得(1975)」,「1976年 國民總生産 實績推計」, 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77)
註 : 1) 經常市場價格基準

重化學工業의 部門別 成長率[1]

單位 : %

區分 \ 年度	1972	1973	1974	1975	1976
重化學工業	9.0	39.7	24.3	9.6	30.0
(重化學工業化率)[2]	(34.9)	(38.8)	(47.8)	(44.6)	(45.9)
化學製品	9.8	20.9	17.9	16.7	25.8
石油및石炭	2.8	20.5	-5.3	7.9	7.9
1次金屬	18.6	52.6	33.9	-2.3	39.2
一般機械	15.0	52.6	-5.7	13.2	47.5
電氣機器	27.7	98.6	52.1	10.7	59.5
輸送用機器	6.7	42.0	67.8	10.2	16.1

資料 : 韓國銀行 調査月報(77.1. p.28), 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77)
註 : 1) 70年 不變價格基準, 2) 經常市場價格基準

國 際 收 支 要 約

(單位：百萬달러)

	1972			1973			1974	
	原計劃	O R B	實 績	原計劃	O R B	實 績	原計劃	O R B
I. 經 常 收 支	-591	-815	-371	-544	-635	-309	-472	-1,000
1. 輸 出 (FOB)	1,584	1,435	1,676	2,027	2,148	3,271	2,493	4,468
2. 輸 入 (FOB)	2,222	2,298	2,250	2,537	2,766	3,837	2,877	5,580
3. 貿 易 外 受 入	421	440	551	447	542	849	476	919
4. 貿 易 外 支 給	533	539	517	615	699	782	698	1,048
5. 移 轉 收 支	159	147	170	134	140	190	134	241
II. 資 本 去 來 (純)	643	820	489	631	720	630	565	1,108
6. 長 期 資 本 (純)	546	599	505	557	720	580	499	884
長 期 資 本 導 入	738	774	707	764	955	841	754	1,177
元 金 償 還 (一)	192	175	202	207	235	261	255	293
7. 短期資本및其他(純)	97	221	-16	74	-	50	66	224
III. 誤 差 및 漏 落	-	-	41	-	-	19	-	-
IV. 外換保有額增減	52	5	159	87	85	340	93	108
V. 外 換 保 有 額	606	540	694	693	776	1,034	786	1,142

		1975			1976[p]		
	實 績	原計劃	O R B	實 績	原計劃	O R B	實 績
I. 經 常 收 支	-2,023	-421	-1,378	-1,887	-359	-1,471	-283
1. 輸 出 (FOB)	4,515	2,975	6,000	5,003	3,510	6,500	7,815
2. 輸 入 (FOB)	6,452	3,246	7,200	6,674	3,654	7,414	8,227
3. 貿 易 外 受 入	838	510	970	881	548	1,051	1,608
4. 貿 易 外 支 給	1,147	786	1,433	1,323	878	1,762	1,717
5. 移 轉 收 支	223	126	285	226	115	154	238
II. 資 本 去 來 (純)	2,009	522	1,527	2,597	469	1,529	1,700
6. 長 期 資 本 (純)	1,052	496	1,146	1,431	424	1,492	1,343
長 期 資 本 導 入	1,390	747	1,441	1,737	706	1,876	1,764
元 金 償 還 (一)	338	251	295	306	282	384	421
7. 短期資本및其他(純)	957	26	381	1,166	45	37	357
III. 誤 差 및 漏 落	28	-	-	-218	-	-	-277
IV. 外換保有額增減	14	101	149	492	110	58	1,521[1]
V. 外 換 保 有 額	1,049	887	1,200	1,542	997	1,600	3,063[1]

資料：經濟企劃院, 韓國銀行, 大韓商工會議所
註：1) 外銀支店保有額　102百萬弗포함.

1971年의 2,826.8십억원에서 1976年의 4,767.9십억원으로 5年間에 68.6%나 늘어났다. 1人當 GNP는 美貨經常달러로 1971年의 266弗이 1976年의 700弗로 늘었다. 사실 1人當 GNP는 3次計劃의 目標値로서는 389弗을 豫定했던 것이 實績値에서 700弗로 나타난 것도 당시의 오일파동 등으로 인한 弗化價値下落의 作用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自信을 보인 것이다.

經濟規模의 擴大

	單位	1971	1976	
			計劃	實績
國民總生産	70年價格 10億원	2,826.8	4,257.1	4,767.9
(成長率)	(期間中平均, %)	-	(8.6)	(11.2)
1人當國民總生産	70年價格 「달러」	251	362	388
(成長率)	(期間中平均, %)	-	(7.0)	(9.1)
	經常, 「달러」	266	389	700
人口	千人	32,882	34,345	35,860
(增加率)	(期間中平均, %)	-	(1.5)	(1.7)
雇傭	千人	10,066	11,792	12,556
(增加率)	(期間中平均, %)	-	(2.9)	(4.5)
投資率	(期間中平均, %)	-	24.9[1]	26.1
國內貯蓄率	(期間中平均, %)	-	19.5[1]	19.3
海外貯蓄率	(期間中平均, %)	-	5.4[1]	7.4
商品輸出	經常, 百萬「달러」	1,132	3,510[1]	7,815
商品輸入	經常, 百萬「달러」	2,178	3,654[1]	8,405

資料：經濟企劃院, 韓國銀行
註：1) 70年 價格基準

그러나 한편 韓國經濟가 지니고 있는 內在的 취약성은 여전히 當面課題로 남아 있다. 불과 10여년간의 高速開發成長을 가지고는 構造的 虛弱基盤이 당장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政府樹立以後 그때까지 지속된 국제수지의 만성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國內貯蓄의 부족과 投資財源의 애로 등은 日淺한 經濟成長力으로서는 여전히 限界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開發政策下에서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戰略部門과 優先順位 下位部門間의 不均衡 즉, 都市·農村間, 地域間 隔差는 더욱 벌어졌다. 60年代以來의 開發政策

推進에서 韓國社會 자체가 확보하고 있던 것이라고는 낮은 敎育水準의 潛在的 失業狀態로 버려져 있던 人力뿐이고 國家·社會를 經營할 管理者, 中間指導者를 못 가지고 있었다. 또 自體蓄積資本이나 國內市場도 不在狀態였으므로 資本은 對外援助, 借款, 債務로 調達하고 市場은 輸出등 海外市場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적어도 開發初期에 겪는 選擇이었다. 그러다가 韓國經濟의 開放化, 國際化와 맞물리다 보면 그만큼 海外依存度는 深化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狀態에서 70年代初의 資源波動과 國際政治上의 緊張 및 對北關係의 尖銳化加速 및 國內의 社會政治的 갈등 등 어려운 與件이 作用하는 激動期를 맞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第3次計劃期間을 마무리할 때는 다른 計劃期間에 비해 가장 성공적인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기간중에는 1972年의 8.3措置와 1974年의 1.14 및 5.29措置 등 시책이 뒷받침하기는 하였으나 그 격동기의 混亂과 不調和는 계속되었었다.

나. 産業構造改編 過程에서의 試鍊

第4次計劃은 1976年 6月 18日에 確定發表하였다. 70年代初의 資源波動도 수습하고 越南戰 以後의 國際通貨體制도 安定된데다가 1976年에는 類例없는 輸出增加로 그다음 1977年에는 待望의 輸出 100億弗을 達成하였고 貿易收支도 黑字로 轉換하였다. 1977年은 第4次 5個年計劃이 시작되는 첫해이다. 또하나의 必須課題인 食糧自給은 1975年에 쌀과 보리의 自給을 이룩한 이래 전체적인 食糧自給達成의 가능성을 보인 이후 1976年에는 大豊을 이루어 當該年度의 1次産業 成長率이 9.4%나 됨으로써 이 역시 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經濟的 好況期에 第4次計劃을 立案하고 出帆시켰다. 計劃의 主調도 「成長」·「衡平」과 함께 「能率」이 追加되었고 計劃의 目標는 먼저 ① 自力成長構造를 實現하는 것이며 다음이 ② 社會開發의 促進 ③ 技術革新과 能率의 向上이다.

自力成長의 構造를 實現한다는 것은 우선 投資財源의 自力調達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다. 또 國際收支의 均衡을 期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해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이루어야 先進經濟로 進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가

능한 時期이기도 하였다. 目標年度인 1981年이라면 5個年計劃등 開發時代가 20년이라는 한 世代를 지나면서 人的·物的資源과 技能·知的力量 모두를 自力化할 만한 期間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4次計劃期間中의 産業政策의 基調를 競爭力強化로 集約시키고자 하였다. 즉,

① 産業構造의 改編과 體質改善

② 農漁村經濟의 構造的 改善

③ 先進工業構造로의 改編과 對外競爭力 強化

④ 資源의 (獨自的)開發과 活用

⑤ 社會間接資本의 均衡的 擴充

등이 計劃案에 담긴 內容이다.

무척 意慾的이고 自信에 차있는 構圖로 出發하였다. 3次計劃 以前까지 흔히 내세웠던 健全財政, 安定基調, 經濟協力, 流通構造의 近代化같은 조심스러운 接近은 상당히 後退하고 있는 것이다.

第4次計劃의 特徵은 한편으로는 自力成長構造와 能率指向的이면서도 지금까지 소홀해왔던 社會開發과 衡平을 強調한 것이다. 人口, 雇傭問題, 人力開發, 國民敎育, 國民保健, 勤勞環境, 住宅供給, 새마을事業 등을 당면과제로 열거하였다.

이러한 計劃立案當時의 취지는 1979年以後의 차질로 제대로 開花하지 못한 채 부득이 1980年代의 第5次計劃인 經濟社會發展計劃으로 넘겨졌지만 당시의 實情은 이제 비로소 社會衡平問題에 接近해서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무렵 統計分野에서도 社會指標의 제정을 着手하고 있었다.

이처럼 意慾的으로 出發한 4次計劃은 1977～78年間에는 類例없는 成長을 보여 각각 計劃目標(9.0%)보다 높은 10.3%, 11.6%의 記錄的 成長을 보였다. 더욱이 1978年에는 一次産業의 不振(－4.0 : 負의 成長)에도 불구하고 非農林漁業部門의 高成長(16.1%)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는 固定投資의 急增(39.4%)과 높은 雇傭率(失業率 3.2%, 計劃은 4.1%)로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9年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의 不況과 태풍피해 그리고 朴大統領拭害등 國內政情의 混迷등 때문에 高速成長에 制動이 걸렸다. 이 해에는 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農林漁業에서 6.7%나 成長을 보였음에도 非農林漁業部門에서의 異常低

成長 및 雇傭 計劃·實績

		1977	1978	1979	1980	1981	1977~81[1]
國民總生産(10億원)	計 劃	11,486.6	12,520.4	13,647.3	14,875.5	16,214.3	-
1975 不 變 價 格	實 績	12,432.3	13,877.1	14,759.1	13,842.8	14,820.0	-
成 長 率	計 劃	10.0	9.0	9.0	9.0	9.0	9.2
	實 績	10.3	11.6	6.4	-6.2	7.1	5.8
農 林 漁 業	實 績	2.1	-4.0	6.7	-22.0	23.0	1.2
非 農 林 漁 業	〃	12.8	16.1	6.3	-2.5	4.0	7.3
總 消 費	〃	7.1	11.0	7.4	-1.0	4.2	5.7
固 定 投 資	〃	26.6	39.4	9.7	-12.0	-5.2	11.7
總 輸 出	〃	27.4	19.0	-4.0	7.9	17.4	13.7
總 輸 入	〃	24.7	29.7	8.8	-3.5	10.0	13.9
失 業 率	計 劃	3.8	4.1	4.2	4.1	3.8	4.0
	實 績	3.8	3.2	3.8	5.2	4.5	4.1

註：1) 年平均資料：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 20年의 回顧와 反省, 1982.

國際收支計劃對實績

(單位：億弗)

	1977		1978		1979		1980		1981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經 常 收 支	-6.3	0.1	-2.4	-10.9	2.4	-41.5	6.8	-53.2	11.7	-44.8
貿 易 收 支	-4.3	-4.8	-0.1	17.8	4.8	-44.0	9.5	-43.8	13.7	-29.9
輸 出	97.0	100.5	119.7	127.1	145.2	147.0	172.9	172.1	202.4	208.9
輸 入	101.3	105.2	119.8	144.9	140.4	191.0	163.5	216.0	188.7	238.7
貿易外收支	-4.3	2.7	-4.7	2.2	-4.8	-1.9	-5.0	-13.9	-4.2	-20.1
移轉去來(純)	2.3	2.2	2.4	4.7	2.4	4.4	2.3	4.5	2.3	5.1
長期資本收支	12.8	13.1	12.8	21.7	11.6	26.6	9.2	18.6	4.8	27.5
基 礎 收 支	6.5	13.3	10.4	10.8	14.0	-14.9	16.0	-34.6	16.5	-17.2
短期資本收支	0.9	0.2	-0.5	-11.7	-1.9	8.4	-2.5	19.4	-3.0	-0.8
綜 合 收 支	0.2	13.1	3.8	-4.0	5.5	-9.7	6.0	-18.9	5.4	-23.4

資料：經濟企劃院, 大韓商工會議所

成長(6.3%)과 輸出의 減少 그리고 輸入에서도 8.8% 增加에 머무는 등 國內經濟가 全般的으로 침체에 들어섰다. 이렇게해서 1979年은 開發年代以來 처음으로 전체 經濟成長率이 計劃目標에 미달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러다가 1980年에는 또

初有의 凶作으로 1次産業에서 −22.0%의 減少를 보이는가 하면 投入部門에서도 固定投資 −12.0%, 總輸入 −3.5% 등의 침체에 따라 2, 3次産業도 −2.5%라는 縮小成長을 내어, 결국 그해의 전체 經濟成長率은 1962年以來 처음으로 −6.2%라는 負의 成長을 記錄하였다. 따라서 國民經濟規模는 1980년의 計劃規模는 물론 1978年 당시보다도 위축되었고 失業率은 오히려 1978年의 3.2%에서 5.2%로 2%포인트나 늘었다.

이처럼 4次計劃의 後半期(1979~81)가 計劃 전체에 차질을 주어 期間中 成長目標 9.2%에 못미치는 5.8%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런 斷層을 보이게 한 1979~81年間은 그뒤의 제5차계획 또는 80年代의 時代的 特性과 결부해서 過渡期的 斷層時期로 볼 수 있다. 어떻든 産業構造改編을 통한 新興工業國으로의 進入이 그만큼 저해된 것이다. 그동안의 産業構造改編過程(1962~81)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計劃期間中 主要指標의 計劃과 實績比較

	單位	1962		66		71		76		81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GNP(80年價格)	億弗	103.2	126.7	137.6	180.6	233.1	287.2	416.1	456.1	668.8	600.7
人口	千名	26,136	26,513	29,185	29,436	32,429	32,883	34,345	35,849	38,807	38,723
1人當GNP (80年價格)	弗	395	477	472	613	719	873	1,212	1,297	1,723	1,551
産業構造											
農林漁業	%	37.1[1]	36.6	34.8[1]	34.4	34.0[2]	27.0	22.4[3]	23.8	18.5[4]	19.6
鑛工業	%	19.4	16.3	26.1	20.2	26.8	22.4	27.9	28.4	40.9	31.3
SOC 및 其他	%	43.5	47.1	39.1	45.4	39.2	50.6	49.7	48.6	40.6	49.1
商品輸出(經常)	億弗	0.66[1]	0.54[1]	1.38[1]	2.09[1]	5.5[2]	9.74[2]	35.1[3]	47.3[3]	202.4	208.8
投資率	%	20.1[1]	12.8	22.7[1]	21.6	19.9[2]	25.2	24.9[3]	25.5	26.0[4]	33.2
國內貯蓄率	%	3.7[1]	3.4	13.0[1]	11.8	14.4[2]	15.4	21.5[3]	23.1	16.1[4]	22.8
就業者	千名	8,497	7,662[5]	10,111	8,423	10,371	10,066	11,792	12,556	14,765	14,048
就業構造											
農林漁業	%	66.1	63.1[5]	64.6	57.9	58.4	48.4	37.7	44.6	39.7	34.2
鑛工業	%	9.4	8.7	10.7	10.8	12.4	14.2	20.5	21.9	26.1	21.3
SOC 및 其他	%	24.6	28.2	24.7	31.3	29.2	37.4	41.8	33.5	34.2	44.5
失業率	%	22.3	8.2[5]	14.8	7.1	5.0	4.5	4.0	3.9	3.8	4.5

註 : 1) 61年價格基準, 2) 65年價格, 3) 70年價格, 4) 75年價格, 5) 63年就業者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白書(1982)

國民總生産과 産業構造

		단　위	1977	1978	1979	1980	1981
GNP		10억원	18,115	24,225	31,249	37,205	45,775
		(백만불)	(37,429)	(51,960)	(62,374)	(61,203)	(67,191)
1人當 GNP		천　원	497.5	655.3	832.5	975.9	1,182.1
		(불)	(1,028)	(1,406)	(1,662)	(1,605)	(1,735)
産業構造	1차산업	%	22.0	20.2	18.5	14.2	15.8
	2차산업	%	28.6	29.2	28.7	29.7	29.5
	3차산업	%	49.3	50.6	52.8	56.1	54.7
重化學工業化率		%	48.3	49.9	52.3	51.0	51.1

註：經常市場價格基準
資料：韓國銀行,「國民所得計定」(198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現代韓國經濟史(1987)

2. 統計行政體系의 整備過程

가. 韓國統計制度의 定着過程

國家의 統計行政體系는 中央統計機構를 비롯하여 정부 각급기관(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및 非政府公共機關에서 수행하는 통계기능을 망라하여 구성한다. 전반적으로는 國家體制의 基本骨格과 時代的 政策需要에 부응해서 統計가 수행할 역할, 범위, 책임, 기능, 자원 등을 배경으로 하고 制度的, 法制的, 政策的 合目的性을 지닌다.

흔히 統計制度를 中央統計機構의 役割과 各級統計機關의 自律性 정도에 따라 集中型과 分散型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分散型의 變化에 따른 折衷型(集中型과 分散型의 절충)을 設定하는 수도 있다. 또 統計機關을 機能面에서 統計資料蒐集機關(實査調査, 行政·業務報告), 資料處理機關과 基準 또는 綜合統計調整機關 및 分析硏究機關으로 區分하기도 한다. 이중에서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은 國家의 中央統計機關으로서 위의 4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여 왔다.

한국의 統計機構는 新羅統一 以來, 발전해 온 報告制度의 定着과 國家機能의 發展과 함께 分化해 온 政府組織의 進化過程에 따라 朝鮮王朝의 六典規範(經國大典) 등에서 보다시피 오랜 歷史的 背景을 지니고 있어서 近代統計制度를 導入하면

서도 政府內 各部處別 固有業務와 관련한 分散型 制度로 발전해 왔다. 현재는 1962年의 統計法施行 이후 각종 정부직제 및 통계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비정부공공법인 등이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통계자료의 수집과 편제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60年대 이후에는 총조사(센서스)등 각종 대규모조사의 出現과 방대한 집계업무를 통계자료 수집과 분리해서 統計資料處理機關으로 分化해 가고 있다.

統計分析 硏究機關은 生産된 統計의 有意性이나 情報內容의 屬性을 취급하는 統計情報의 需要機關이란 점에서 資料蒐集, 資料處理 등 統計生産과 機能을 달리하나 현재 정부 각부처 기관별로 대개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 연구소, 센터, 연구실 등이 어엿한 統計機關으로 寄與하고 있다.

한편 分散型制度下에서는 각종 통계간의 관련성과 통계의 정확성, 효율성,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계의 기준설정이나 綜合調整 및 統計行政의 體制維持에 必要한 機關을 必要로 한다. 이런기관을 統計資料蒐集機關, 統計資料處理機關과 區分하여 統計基準機關 또는 統計綜合調整機關이라 하는데 이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朝鮮時代의 各種報告制度는 經國大典에 의한 啓告樣式에 따라 承政院, 禮曹 또는 戶曹 등에서 統制調整하였고 그것이 大韓帝國時代에는 議政府(또는 內閣)의 軍國機務處나 記錄局(報告課)으로 承繼되었고 日帝는 그들 總督府官房(또는 總務部, 庶務部)의 文書課 또는 總務課에서 전국의 보고통계를 통제하였었다.

政府樹立以後 混亂期에는 한동안 이런류의 통계조정, 통제를 하는 中央機構의 기능이 미약했으나 그래도 前代의 啓告樣式이나 報告例에 관한 規定類의 制定을 시도한 바가 있었다. 1952年 內務部의 「報告例」, 保健部의 「統計報告例」 1955年 保健社會部의 「統計事務處理規程」. 1959年 國防部의 「統計報告統制規程」, 大法院의 「法院統計規程」 등을 거쳐 1960年에 內務部(統計局)에서 統合하여 國務院令으로 제정한 「定例報告規程」 등이 있었고 끝으로 1961.12.16일자 「報告統制規程」(內閣事務處)이 統計法(1962.1.15) 施行이전에 출현한 각종 報告統制관계 규정이었다.

初期段階에 이처럼 각부처가 각기 보고통제규정을 제안했다는 것이 한국통계의 分散型定着과 관련이 있다.

60年代에는 당시 軍事政府와 第3共和政出帆時期에 公文書體系를 정비하면서 報告制度를 美國에서 뒤늦게 1942年부터 실시해온 Report control 制度를 참고해서 政府機關에 의한 모든 보고서식을 총무처 행정관리국(사무관리과 ; 현재는 事務能率課)에서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출현한 것이 上記 1961年 12月 16日字「報告統制規程」으로서 그 세부사항인 報告統制規程施行規則도 제정하였다.

1962年 統計法施行以後에는 순수통계분야는 통계법과 관련시행령, 규칙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상기 보고통제규정도 보고서식의 대부분이 통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기관인 下級官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業務指針이 되고 있을 뿐 통계기준이나 통계조정은 統計法에 의한 調査統計局의 기능으로 되어 있고 기타의 행정보고서식을 총무처 행정관리국의 조정기능에 委任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 國家中央統計機關

國家中央統計機關인 統計廳은 統計의 綜合調整機關이며 統計資料蒐集機關이며 統計資料處理機關으로서의 機能을 한다. 分析·研究業務도 有意性 相關性檢證같은 基本分野는 自體的으로 擔當하되 效用性등 全般的인 分析·研究業務는 經濟企劃院傘下機關인 韓國開發研究院을 비롯한 각종 國公立研究機關과 協調하고 있다.

國家中央統計機關은 美軍政府와 南朝鮮過渡政府時代의 統計署를 改編하여 政府樹立과 함께 1948年 7月 17日字 公報處職制에 따라 國務總理傘下 公報處 所屬의 統計局으로 出發하였다. 그 뒤 1955年 2月 17日字로 內務部所屬으로 移管하였다가 1961年 7月 22日에 經濟企劃院所屬으로 옮긴 후 1963年 12月 16日에는 經濟企劃院의 外局으로서 그 명칭을 調査統計局으로 改稱하여 1990年末까지 지속되었고 1991年부터는 統計廳으로 昇格하였다.

機構面에서는 經濟企劃院의 外局으로서의 調査統計局으로 發足할 당시에 局長(2級)밑에 統計企劃課, 統計基準課, 人口統計課 및 經濟統計課 등 4個課에 一般職 92名과 技能職 121名 및 雇傭員 17名등 230名의 직원을 포용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수차례의 기구를 확대하여 第3次 5個年計劃이 시작되는 1972年에는 局長밑에 副理事官級인 統計審議官을 두고 종전의 4個課에 生產統計課, 消費統計課, 物價統

計課 및 資料處理課를 추가하여 8個課로 늘어났다(직원수 248名). 그 다음해(1973)말에는 物動力과 景氣를 測定하는 主要指標의 하나인 在庫統計를 담당할 在庫統計課를 추가하였다(73.11.14).

그러다가 1975年에 調査統計局의 機構와 部署名稱들을 대폭 개편하였다.

우선 副理事官級을 종전의 統計審議官 1名에서 統計調査官과 資料管理官을 늘린 3名으로 하였고 課單位部署는 企劃課를 庶務課로 改編하고 生産統計, 經濟統計, 在庫統計, 消費統計 등 課의 기능을 조정하여 産業統計課와 工業統計課, 商業統計課 및 物價統計課로 改編代替하였다. 또 資料處理課는 製表課로 改稱하고 앞으로의 統計情報시스템化를 擔當할 資料管理課를 신설하였고 調査組織 특히 地方實査機構의 管理를 위하여 局本部에 調査管理課를 두고 地方에는 종래의 調査員駐在制度를 現實化하여 道單位에 8個 地方統計事務所를 두었다. 그밖에 基準課, 人口統計課는 종전대로 두었다. 이로써 調査統計局은 局長밑에 3個 統計官(副理事官 또는 理事官)과 10個課 및 8個地方事務所(所長은 事務官 또는 主事)의 機構를 지녔다. 이때의 機構改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統計資料需要의 漸增하는 추세에 맞추어 資料利用의 極大化, 效率化를 위한 情報集中管理體制(Data Base)를 構成하고 調査統計局의 機能을 직접, 통계목적을 위한 調査統計以外에도 「報告統計規程」에 의한 報告統計도 統制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에 따라 擔當部署(室課)의 配置를 종래의 調査統計爲主인 部門別分課를 機能別分課로 改編하고 統計調査와 統計資料(統計情報)의 管理機能을 整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직원수는 264名을 定員으로 하고 있었으나 雜級職으로 分類한 地方調査員을 包含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들 調査員은 1978年에 別定職으로 定員化하였다.

이 機構는 대체로 1981年까지 지속하였으나 第5共和政樹立과 함께 行政機構合理化 취지와 社會發展등 새로운 統計需要에 對處하기 위하여 統計官級을 1名 줄여 統計計劃官과 統計管理官 2名으로 하고 工業, 商業, 物價등 統計課를 社會統計, 統計分析 및 流通統計課로 調整改編하였다. 이때 製表課는 다시 資料處理課로 改稱한다. 한편 統計專門人力의 確保와 現地實査組織을 強化하여 새로이 統計職列을 制度化하였다. 이로써 調査統計局의 기구를 한층 機能中心으로 補完하였고 一般職公務員을 60年代에 行政職이나 財經職으로 충당하던 것을 行政, 統計 및 電算職

등으로 충원하며 別定職의 擴充으로 專門統計要員을 폭넓게 活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의 직원수는 一般職이 198名, 別定職이 調査員을 包含하여 539名, 그리고 雇傭職이 資料處理·電算要員을 包含하여 246名 등 合計 936名을 定員으로 하였다. 雇傭職의 대부분은 1989年에 技能職으로 전환하였다.

이 1981年의 組織이 그후 직급수, 직원수의 가감은 있었으나 80年代를 통하여 그 골격을 유지하였다. 다만 지방통계사무소는 所長이 書記官 또는 事務官級으로 上向되고 1990年 4月 7日字 改編에서는 3個統計事務所가 늘고 5個 出張所를 補強하였다. 統計廳으로 昇格하기 직전인 이때의 기구는 局長밑에 2~3級의 一般職 또는 그 相當 別定職으로 補任하는 統計計劃官, 統計管理官과 10個課, 1擔當官, 11個統計事務所 및 5個出張所의 구성을 지니고 전체·직원수는 일반직 256명, 별정직 551명, 기능직 278명 등 1,085명을 정원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2級과 3級 공무원이 3名, 4級 또는 4級相當 14名, 그리고 5級 또는 5級相當 68名을 두도록 하고 있었다.

이상의 中央統計機構 변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國家統計機構가 그 時代의 必要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政府樹立 直後에는 對國民啓蒙, 指導 弘報機能과 統計刊行物의 出版, 官報機能 등과 관련해서 總理傘下 公報處에 속한 것은 大韓帝國時代 總理傘下의 記錄局 報告課를 둔 것과 같은 취지였으나 南北戰亂 以後에는 行政組織을 활용한 統計調査와 報告系統의 內實을 기하고자 內務部에 屬하게 하였었다. 이 당시의 내부조직도 여전히 인구통계, 국세조사와 포괄적인 경제통계 및 統計基準業務 정도였었다.

그러다가 1960年代以後 開發政策의 추진과 함께 經濟企劃院에 所屬되어 統計需要에 부응해 나아갔고 70年代初에는 上級 統計官室과 각종 분야별 기능별 기구를 갖추어 갔다. 특히 1975年은 重化學工業推進과 產業構造高度化 施策에 호응해서, 또 1981年의 改編은 經濟社會發展施策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統計政策立案과 그 執行 및 調整에 관한 重要機關으로서 統計委員會를 설치하였던바(1962) 이는 형식상으로 經濟企劃院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統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中央統計機關의 諮問機構로서 統計綜合調整의 重要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1969年 12月 5日字 改正인 統計委員會

規程에 의하면 經濟企劃院 企劃次官補가 委員長으로 되어 있을 뿐 統計委員은 調査統計局長을 비롯하여 主要部處의 統計部署 局·室長과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등의 調査部長 및 關聯學界의 學者들을 委囑해서 구성하고 있으므로 韓國統計의 實質的 綜合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機能으로 定着한 것이다. 여기서 指定統計의 指定, 一般統計의 調整 및 統計協議事項 등을 審議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시의 統計委員會에는 ① 人口·社會統計, ② 經濟統計, ③ 基準調整 및 標本調査, ④ 農林水産統計, ⑤ 國民計定 그리고 ⑥ 消費統計에 관한 分科委員會를 두도록 하였었다.

그러다가 1976年에 統計委員會規程을 改正할 때에는 經濟企劃院次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統計委員들로서는 統計局長 이외에 經濟企劃院 經濟企劃局長과 韓國開發研究院 副院長을 包含하고 韓銀과 産銀에서는 從前의 부장급에서 理事級으로 上向委囑하였다. 그리고 統計委員會의 機能도 統計作成의 承認, 中止·變更에 관한 사항, 統計結果의 公表, 統計刊行物의 發刊承認 및 統計分析에 관한 事項 등으로 종전보다 統計調整機能을 좀더 포괄적이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事項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 其他의 統計官廳

調査統計局 이외의 重要한 統計機關으로 먼저 農林部의 統計官室이 있다. 이는 1948年 11月의 長官秘書室 소속의 調査統計課로 出發한 것인데 1950年 3月 職制改正으로 次官直屬이었다가 1955年 2月에 農政局 소속으로 옮겨서 課組織을 統計係以外에 調査係(1955年), 經濟係(1964)를 증설하고 統計業務도 家畜統計나 糧穀消費量調査까지 포함시켰다.

이 機構는 第3次 5個年計劃의 發進을 앞둔 1971年 11月22日字 職制改正에 의해서 12月 10日에 調査統計課를 局水準으로 승격시켜 企劃管理室 所屬의 調査統計官室(副理事官級)을 두고 그 밑에 書記官級인 經濟統計擔當官과 作物統計擔當官의 課를 두도록 하였다. 그후 調査統計官의 명칭은 1973년 1월에 農林統計官으로 바뀌었다가 1974年 1월 28일자로 農業統計官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독립된 地方調査機構로서 道單位에 9개의 農業統計事務所와 市郡 단위에 139개의 農業統計出張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전국적인 農業統計調査機構가 정비된 것이다.

1976年 12월 1일 職制改正時에 作物統計擔當官을 生産統計擔當官으로 개칭하고 1係를 增設하여 管理係, 調査1係, 調査2係를 두어 從前의 調査業務를 분장하였다. 그리고 經濟統計擔當官室에도 1係를 增設하여 調査3係를 두었다. 그리고 國立農業經濟硏究所로부터 農業觀測業務를 移管받고 새로 農産物流通統計調査業務에 착수하였다.

1978년 4월 12일 職制改正으로 水産統計業務를 맡은 水産廳을 移管함으로써 農業統計官은 農水産統計官으로 개칭하여 次官直屬으로 두고 그 下部에 農産統計擔當官(管理係, 調査1係, 調査2係) 水産統計擔當官(水産1係, 水産2係, 水産3係) 經濟統計擔當官(經濟1係, 經濟2係, 電算係) 流通統計擔當官(流通1係, 流通2係)을 두었으며 지방은 農水産統計事務所와 出張所로 바꾸었다. 그리고 水産廳所管인 漁業總調査 漁業基本統計調査, 農業生産量調査, 漁家經濟調査業務를 主管하였다.

1978年 6月 24日에는 濟州道에 北濟州農水産統計出張所를 新設하였고 1979년 9월 10일에는 京畿道 農水産統計事務所 管內 楊州郡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農水産統計出張所의 擔當地域을 分割하여 南楊州農水産統計出張所를 신설하였다.

1981年 11月 職制改正으로 統計管理擔當官室을 신설하고, 流通統計와 經濟統計를 統合하여 流通經濟統計擔當官을 두었고 統計管理擔當官밑에 電算室을 신설하였다.

1990年 3月 20 日에는 忠淸南道 農水産統計事務所 管內 瑞山郡의 行政區域 개편으로 泰安統計出張所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農林水産部의 統計機構는 次官直屬下의 農水産統計官室에 統計管理, 農産統計, 流通經濟統計 및 水産統計의 4個擔當官(課長)과 9個地方統計事務所 및 141個出張所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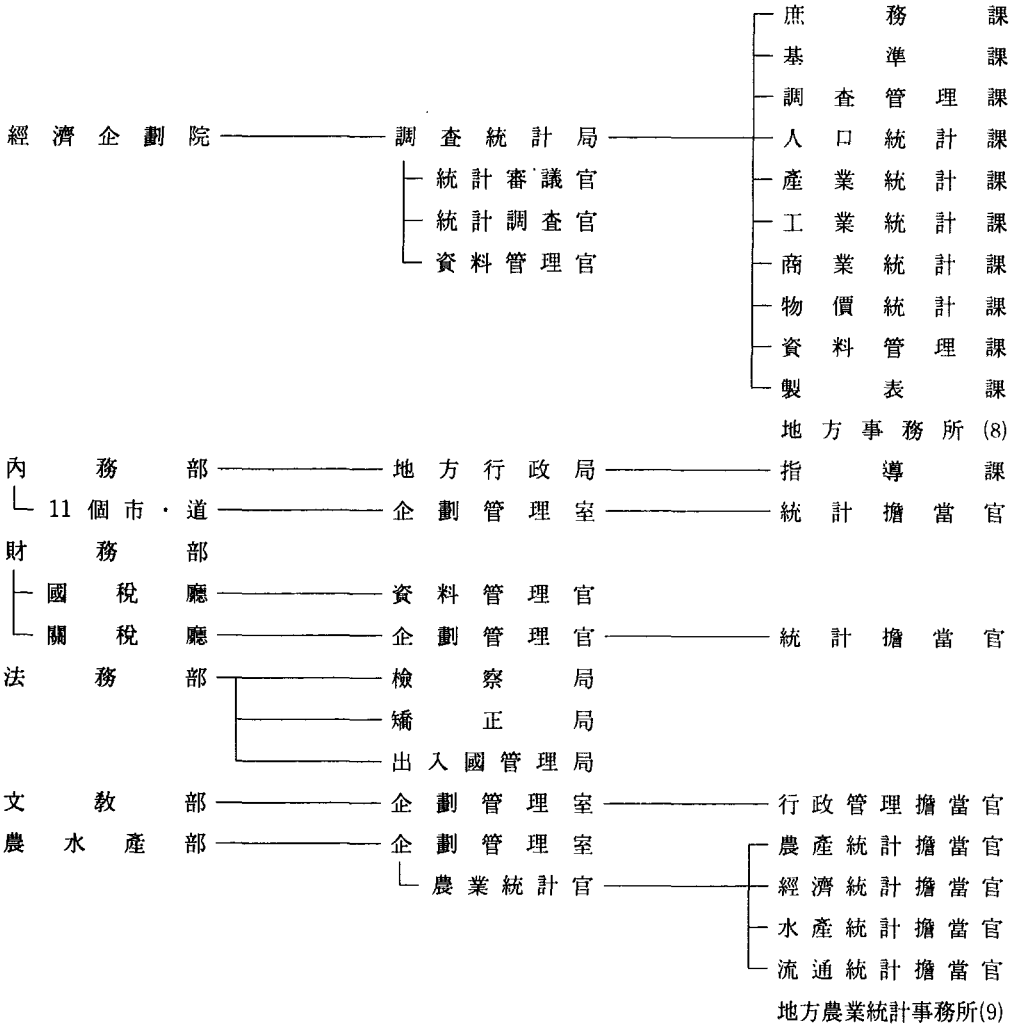
1970年代 初期는 그밖에 農林部傘下機關인 山林廳에 林政局 調査統計課와 水産廳에 漁政局 調査統計課가 있었다.

調査統計局과 農水産統計官室 以外의 統計官廳으로는 內務部, 商工部등 12個部와 總務處, 科學技術處 등의 統計業務가 企劃管理室(國防部는 企劃局)에 속해 있

는 行政管理擔當官(課) 소관이었다. 다만 商工部에는 統計擔當官, 國防部는 審査統計課, 遞信部와 交通部는 審査分析擔當官과 綜合輸送計劃擔當官을 統計主務官으로 하였었고 保社部는 뒤에 統計擔當官을 두었다.

廳單位官廳으로서는 勞動廳의 統計課를 1972年 2月 27日字로 人力開發官室로 승격하고 그 밑에 고용통계, 임금통계 및 자료처리담당관을 두었다가 1977年에는 統計擔當官室로 統合하였고 關稅廳(70.8.27設立)에도 貿易統計課를 두었다. 그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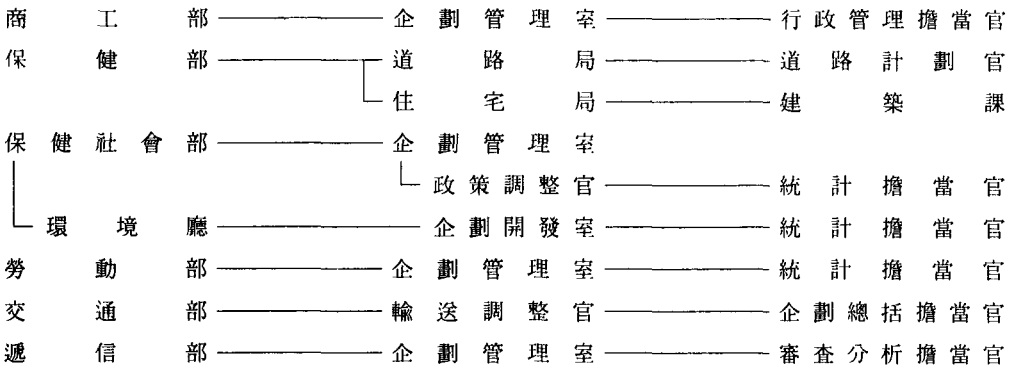
1977年의 統計機關 (政府機關)



- 商工部 — 企劃管理室 — 行政管理擔當官
- 保健部 — 道路局 — 道路計劃官
  - 住宅局 — 建築課
- 保健社會部 — 企劃管理室
  - 政策調整官 — 統計擔當官
  - 勞動廳 — 人力開發官 — 統計擔當官
- 交通部 — 輸送調整官 — 企劃總括擔當官
- 遞信部 — 企劃管理室 — 審査分析擔當官

1981年의 統計機關 (政府機關)

- 經濟企劃院 — 調査統計局
  - 統計審議官
  - 統計調査官
  - 資料管理官
  - 庶務課
  - 基準課
  - 調査管理課
  - 人口統計課
  - 産業統計課
  - 工業統計課
  - 商業統計課
  - 物價統計課
  - 資料管理課
  - 製表課
  - 地方事務所 (8)
- 內務部 — 地方行政局 — 指導課
  - 11個市·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財務部
  - 國稅廳 — 資料管理官
  - 關稅廳 — 企劃管理官 — 統計擔當官
- 法務部
  - 檢察局
  - 矯正局
  - 出入國管理局
- 文敎部 — 企劃管理室 — 行政管理擔當官
- 農水産部 — 企劃管理室
  - 農水産統計官
    - 統計管理擔當官
    - 農産統計擔當官
    - 流通經濟統計擔當官
    - 水産統計擔當官
    - 地方農業統計事務所(9)



의 處廳으로서 企劃管理官(援護處, 鐵道廳 및 專賣廳)이나 調達廳 物資監査擔當官 등의 統計擔當公務員을 두었다.

다만 總務處는 企劃管理室內의 企劃擔當官이 자체통계업무를 主管하되 行政管理局 事務管理課에서는 報告統制規程에 의한 報告統計統制業務를 管掌하였다.

地方官廳으로서는 各市道에 있는 企劃管理室內에 統計主務課를 두었던 바 서울特別市에는 統計課를 기타 釜山直轄市와 9個道에는 일률적으로 調査統計課를 두었다. 그 체제는 1975년부터 모두 統計擔當官室로 改稱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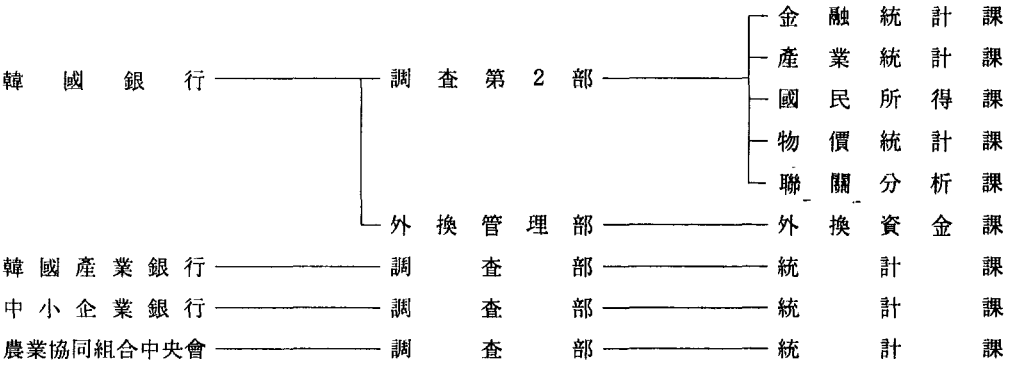
라. 非政府統計機關

主要公共機關으로서 먼저 韓國銀行은 70年代에도 꾸준히 統計業務를 지속하였다. 調査第2部에 金融統計課, 産業統計課, 國民所得課, 聯關分析課 및 物價統計課를 두고 각기 관련 통계업무를 分擔하였다. 그밖에 韓國産業銀行과 中小企業銀行에 調査部 統計課를 두고 있으며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도 調査部를 두고 統計調査課와 市場調査課를, 또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에는 企劃管理室에 調査統計課를 두고 農漁村經濟現況과 農漁家經營實態에 관한 統計資料를 수집하고 있었다. 한편 韓國貿易協會와 大韓商工會議所의 調査部統計課도 貿易統計와 企業景氣, 企業財務實態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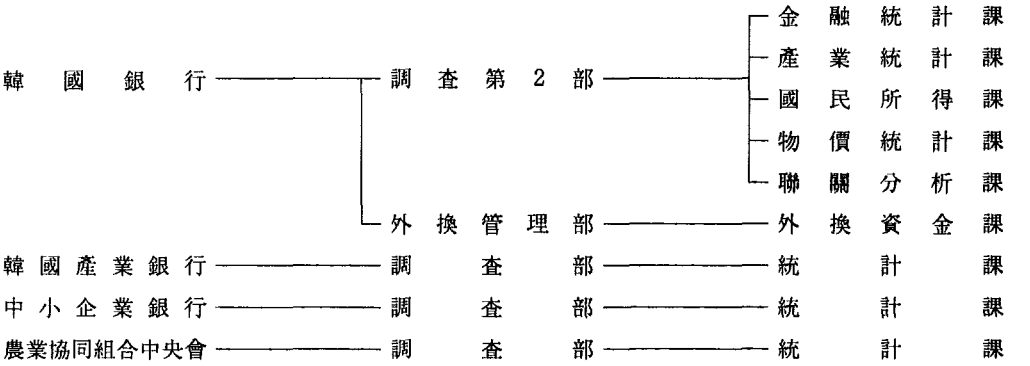
非政府統計機關으로서는 그밖에도 韓國住宅銀行, 國民銀行같은 金融機關과 全國

經濟人聯合會, 韓國經營者協會, 大韓建設協會 같은 經濟團體 및 韓國開發研究院, 韓國人口保健研究院, 農業進興公社, 韓國道路公社 등 政府出捐機關 그리고 韓國生産性本部나 大韓住宅公社, 韓國鑑定院 등이 특히 70年代 後半부터 각종 관련 統計調査를 실시함으로서 統計發展에 寄與한 바가 컸다.

1977年의 統計機關(非政府機關)



1981年의 統計機關(非政府機關)



마. 統計法令의 改編

統計에 관한 母法인 統計法은 1962年 1月 15日 制定되고 同年 12月 12日 제1차 改正이 있은 이후 변동이 없었으나 1975年 12月 31日字로 第2次改正(法律 第2,799호)이 있었다. 19條 附則2條로 구성된 改正統計法은 통계작성의 승인요건을 強化하고(제3조), 統計申告(제4조) 및 資料提出要求(제13조)의 강제성을 부여하

였다. 동시에 統計作成者와 統計調査員의 資格 및 服務要件도 엄격히 규정하고 통계조사상의 비밀보호(제8조)나 통계자료의 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제9조)를 強化하였다.

무엇보다 統計結果의 공포나 統計資料分類 및 統計刊行物 發刊承認 등은 통계기준·조정기관의 통제를 엄격하게 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1970年代 中盤에 統計行政을 위한 법률적 요건은 일단 정착시킨 셈이다.

이 통계법의 개정직후인 1976年 5月 8日에 統計法施行令도 개정공포 하였다. (대통령령 제8116호), 통계시행규칙은 같은 해 7月 21日자 經濟企劃院令(第79號)으로 개정하였다.

이들 基本法, 施行令, 施行規則이 1975～76年 사이에 개정된 것은 1975年의 조사통계국機構 및 職制改編과 同時的 進行이었다고 할 것이며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를 전후하여 統計關聯 法令 全般에 걸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1976～78年間에 있었던 一連의 관계규정 개편과정이다.

1976.	5. 8	통계위원회 규정(개정)
	6.30	통계위원회운영세칙(〃)
	6.29	인구동태조사규칙(〃)
	10.30	농업센서스 시행규칙(〃)
	10.30	농업기본통계조사규칙(〃)
	10.30	식량작물생산량조사규칙(〃)
1977.	1.21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규칙(〃)
	1.21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1.21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1.21	직종별 임금조사시행규칙(〃)
	2.17	어업센서스시행규칙(〃)
	2.17	어업생산고 조사규칙(〃)
	3. 7	일반통계의 조사통계와 조사보고통계의 범위(고시)
	11. 3	통계자료공표협의규칙(개정)

11. 3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개정)
11. 3　경제활동 인구조사규칙(개정)
11. 3　광공업센서스규칙(개정)
11. 3　도시가계조사규칙(〃)
11. 3　도소매업센서스 시행규칙(〃)
11. 3　전국소매물가조사시행규칙(〃)
11. 3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시행규칙(〃)
1978. 1.20　가축통계조사규칙(制定)
7. 7　어업기본통계조사규칙(制定)

3. 産業構造高度化와 統計需要패턴의 變化

가. 새로운 統計의 出現과 統計刊行物

1970年代의 重化學工業推進은 새로운 統計의 需要를 誘發하였고 한편 60年代 以來의 開發經濟에서 나타난 각종 隘路와 이에 대한 反省이 提起되면서 經濟社會的인 變化에 부응하는 統計의 質的 內容改善도 促求하였다.

먼저 70年代에 들어오면서 統計法上 指定統計의 수가 늘었다. 調査統計局에서 실시하는 鑛工業動態調査(70.3.27)와 在庫統計調査(74.11.3) 및 建設業統計調査(74.11.3)를 비롯하여 水產廳에서 실시하는 漁業生產高調査(70.12.9)와 漁業基本統計調査(71.7.9), 그리고 建設部에서 수집발표하는 建築物着工統計調査(75.3.28) 등이 그것이다. 이로써 1975年 현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받아 「고시」한 指定統計의 수는 28개로 되었고 一般統計로 승인받은 279個統計를 합하여 統計法上 指定·承認받은 統計는 300個를 넘게 되었다. 이는 1970年 현재 223個(그중 指定統計 24종)보다 83개가 늘어나서 통계작성건수의 증가율은 37.7%인 셈이다.

통계조사건수의 증가와 함께 특징적인 것은 60年代까지의 총량통계, 물량통계, 생산통계 등 중심에서 動態, 移動, 受注着工, 企業體質, 階層 같은 部門別統計와 流通部門關係의 통계 및 농림어업부분에서의 농기구, 농작물피해, 養蠶과 같은 深

1975년 지정통계일람표

지정번호	지정통계의 명칭	조사실시기관	고시년월일	고시번호
1	인구센서스	경제기획원	62. 6. 1	3호
2	주택센서스	〃	〃	〃
3	인구동태조사	〃	〃	〃
4	경제활동인구조사	〃	〃	〃
5	농업센서스	농수산부	〃	〃
6	광공업센서스	경제기획원	〃	〃
7	상주인구조사	서울시, 부산시, 각도	62. 6.13	19호
8	농가경제조사	농수산부	62.12. 8	6호
9	농산물생산비조사	〃	62.12. 8	6호
10	가계조사	경제기획원	62.12. 8	6호
11	생산동태조사	상공부	64.10.23	16호
12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	농협중앙회	65. 7.22	17호
13	전국소매물가조사	경제기획원	67. 2.28	1호
14	도소매업센서스	〃	67. 5.29	2호
15	식량작물생산량조사	농수산부	〃	〃
16	농업기본통계조사	〃	68. 4.18	25호
17	광공업통계조사	경제기획원	68. 4.18	25호
18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청	〃	〃
19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청	〃	〃
20	직종별임금조사	노동청	〃	〃
21	국부통계조사		68.11.21	51호
21호의1	정부자산부문조사	한국은행	〃	〃
〃 2	법인자산부문조사	한국산업은행	〃	〃
〃 3	개인자산부문조사	중소기업은행	〃	〃
〃 4	가계자산부문조사	경제기획원	〃	〃
22	어업센서스	수산청	69. 4. 7	2호
23	광공업동태조사	경제기획원	70. 3.27	1호
24	어업생산고조사	수산청	70.12. 9	5호
25	어업기본통계조사	〃	71. 7. 9	1호
26	재고통계조사	경제기획원	74.11.13	2호
27	건설업통계조사	〃	〃	3호
28	건축물착공통계조사	건설부	75. 3.28	2호

度接近에서보는 調査를 강화하고 또 景氣나 社會分野의 통계를 보완해 나아간 것이다.

業種別 사업체수조사(總事業體調査의 前身)나 영세사업체조사, 出産力調査, 勞動力流通實態調査, 産業災害調査, 國民營養調査, 社會福祉施設調査같은 것이 이 무렵에 一般統計로 出現하였다. 특히 社會文化的인 要請으로 착수한 것으로는 調査統計局에서 실시한 人口移動調査를 비롯하여 企業經濟의 景氣展望, 文敎部의 學生身體檢査統計나 援護處의 就學者統計, 保健社會部의 家庭儀禮準測狀況報告같은 報告統計도 加勢하였다.

무엇보다 70年代中盤을 고비로 雇傭構造나 疾病死亡統計, 家族制度, 地域統計나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別途의 社會統計를 開發하고 體系化하려는 試圖가 잇따랐다. 그 결과 제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年初(3月1日 現在)에 수집 편제하고 있는 統計로서 統計法에 의해서 指定 또는 承認받은 統計는 指定統計 33個를 포함해서 427個를 헤아린다.

그러나 이들 각종 통계중 1回性調査나 그이후 調査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 調査機關의 消滅, 合併, 轉換 등으로 당초 實施時期가 변질된 것 등을 정리하여 1984年末에는 指定統計 34個와 一般統計 295개등 329個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類似統計의 統合이나 統計機關 調整에 의한 不實統計들이 대거 도태되었음은 물론이다. 1987年末(12月 31日)에는 指定統計 35個를 합하여 347個로 늘어났고 1990年 5月 31日 現在로는 指定統計 36個와 一般統計 299個등 도합 335個의 統計를 86個의 統計作成機關(政府機關 41, 非政府指定機關 45)에서 작성하고 있다. 그중 指定統計로서 1976年 以後에 새로 추가한 것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承認番號와 擔當 統計機關名이다.

76. 7.16　建設業受注統計調査(111－11－15：調査統計局)
78.12.23　運輸業統計調査　(111－11－16：　〃　)
81. 6.26　總事業體統計調査　(111－11－17：　〃　)
83.10.31　雇傭構造調査　(111－11－18：　〃　)
88. 7. 5　都小賣業統計調査　(111－11－19：　〃　)
76.12.17　家畜統計調査　(126－11－06：農林水産部)

83. 7. 7　勞動生産性 統計調査(144－11－04：勞 動 部)
77. 3.31　鐵鋼統計調査　(350－11－01：韓國鐵鋼協會)
77.12.29　電氣機械器具製造業 實態調査(351－11－01：韓國電子工業振興會)
81. 7. 1　常住人口調査　(203－11－01：大邱直轄市)
81. 7. 1　〃　(204－11－01：仁川直轄市)
86.12. 1　〃　(214－11－01：光州直轄市)
89. 4.12　〃　(215－11－01：大田直轄市)
(서울·부산 및 각도의 常住人口調査는 1962年 6月 13日字로 이미 指定되었음)

指定統計와 一般統計의 整備過程에서 각 통계의 承認番號도 종전의 發生別 單純一連番號 附與方式에서 1981年부터는 統計作成의 機關固有番號와 統計種類·作成方法別로 承認一連番號를 附與하는 體系로 갖추었다.

1970年代에 統計政策當局에서는 統計의 生産만이 아니라 國民들로 하여금 이의 活用·利用度를 提高시키고자 하였다. 統計需要의 開發이며 統計의 汎國民化를 促進함으로써 統計에 대한 國民의 協調와 統計利用者의 誤用을 防止하며 나아가 開發政策下의 諸指標와 重化學工業施策, 産業高度化 및 社會開發의 進度를 國民에게 公開 周知시킬 必要에서이다. 따라서 70年代에 들어서면서는 각종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統計刊行物 發刊을 촉진하였다. 무엇보다 統計當局으로서는 統計 그 자체에 대한 범국민적 弘報, 認識提高라는 당장의 課題를 수행해야 한다.

豫算이 許諾하는 한 각종 統計刊行物을 發刊·弘報하고 통계를 알기쉽게 풀이하고 統計關係法令體系나 가능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主要統計의 調査票樣式, 報告書編制 및 각종 통계해설에 필요한 통계조사현황도 조사해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는 1950－60年代에 發刊한 것도 물론 지속했었다. 가령 1952年度分부터 發刊한 韓國統計年鑑을 비롯하여 1949年以來의 韓國統計月報도 1958年부터 再編한 以來 지속하고 人口·住宅總調査나 産業總調査 등도 報告書가 나오는대로 發刊普及하였다.

60年代에는 主要經濟指標, 經濟活動人口, 都市家計年報와 産業·職業·貿易·商品 및 行政區域 등의 標準分類 그리고 物價年報, 主要行政統計報告書 등을 發刊하였다.

그러다가 70年代에는 人口移動統計年報(1970), 統計法令集과 韓國統計調査現況(1971)에 이어 建設業統計(1973), 建設業受注統計(1976), 運輸業統計(1976), 韓國의 社會指標(1978) 그리고 指定統計調査票集(1972), 標準統計用語定義集(제1집 : 1975) 및 알기쉬운 統計(1978), 國富統計(1977年分) 등 새로운 統計刊行物을 出刊하였다.

현재 統計廳에서 一般國民의 統計需要와 관련해서 發行하는 主要한 統計刊行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發刊週期別 主要刊行物

(1991年 6月 現在)

發刊週期	種數	刊行物名	
月刊	9	• 主要統計速報(81)	• 韓國統計月報(49)
		• 景氣動向(81.1)	• 景氣綜合指數(81.1)
		• 產業生產統計(75.1)	• 產業活動動向(89.8)
		• 機械受注統計(79.1)	• 建設受注統計(76.7)
		• 消費者物價	
分期刊	3	• 韓國經濟指標(82)	• 企業經營者景氣展望調査(90)
		• 市·道別 鑛工業活動動向(88)	
年刊	18	• 韓國統計年鑑(52)	• 主要經濟指標(63)
		• 主要海外經濟指標(83)	• 알기쉬운 統計(78)
		• Korea Statistical Handbook(62)	• 韓國의 社會指標(78)
		• 人口動態統計年報(80)	• 人口移動統計年報(70)
		• 死亡原因統計年報(82)	• 產業生產年報(70)
		•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67)	• 建設業統計調査報告書(73.1)
		• 運輸業統計調査報告書(76)	• 物價年報(65)
		• 都市家計年報(63)	• 經濟活動人口年報(63)
		• 都小賣業統計調査報告書(89)	• 서비스業統計調査報告書(89)
3年刊	1	• 雇傭構造統計調査報告書(83)	
5年刊	4	•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書(55) (全國篇, 人口移動篇, 出産力篇, 市·道篇)	
		• 人口住宅總調査暫定 報告書(55)	• 産業센서스報告書(上, 下)(55)
		• 總事業體統計調査報告書(81) (全産業篇, 서비스業篇, 都·小賣業篇)	

發刊週期	種數	刊　　行　　物　　名
10 年 刊	1	• 國富統計調査報告書(68) (綜合篇, 政府 및 對外資産篇, 個人企業資産篇, 家計資産篇, 法人資産篇)
不 定 期	13	• 中國主要統計指標(91) • 韓國人의 姓氏 및 本貫調査報告(上·下卷)(88) • 우리나라의 地域別 將來人口(88) • 한국人의 標準生命表(66)　• 小地域統計地圖(88) • 韓國行政區域分類(64)　• 韓國標準産業分類(63) • 韓國標準貿易分類(64)　• 韓國標準商品分類(64) • 韓國標準職業分類(63)　• 韓國疾病死因分類(73) • 韓國統計調査現況(71)　• 統計關係法令集(71)

(　　)안은 최초로 발간한 年度

이들 統計刊行物은 發刊時期의 時代的狀況을 反映하고 있으며 각 刊行物마다 一定樣式과 基準에 따라 編制하고 있다. 「韓國統計年鑑」은 國家의 統計的 基礎를 集約하고 있다. 當該年度에 國內에서 生産한 統計는 물론 一部 國際統計도 포괄하고 있는데 1954年에 1952年度分을 創刊號로 發刊한 以來 지금까지 刊行하고 있다. 따라서 1970年度는 第17回이고 1976年은 第23回分이다.

項目配列은 대체로 國土의 自然과 一般的 國勢現況을 비롯하여 經濟活動의 1, 2, 3次 産業과 國民生活, 社會, 文化, 公共行政 및 國際統計의 配列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時代相을 반영해서 70年代初에서 80年代 後半으로 가면서 上記 配列中 國民生活 以下의 비중이 커지면서 大分類項目數를 1970年의 30個分類에서 1976年의 23個分類 및 1987年의 18個分類 등으로 集約化해 가고 있다.

中央統計官廳에서 편찬 간행하는 國家統計의 總括인 「韓國統計年鑑」은 當該年度에 國內에서 생산한 全分野의 統計를 可能한 집약한 것이므로 統計情報量이 激增함에 따라 이를 總合하는데는 分類나 採擇系列, 編輯技法등 技術的 要件이 必要한 反面 時代的 背景을 重要視하면서 疏漏나 散慢性을 극복하고 多樣性도 살리며 體制上의 完璧도 기해야 한다. 大分類項目의 單純化나 收錄情報量의 充實度가 그것을 反映한다.

統計刊行物은 韓國統計年鑑같은 綜合刊行物에서만이 아니라 一般統計刊行物 全

韓國統計年鑑 收錄項目 配列

1970	표수	1976	표수	1987	표수
Ⅰ. 토지	4	Ⅰ. 토지	4	Ⅰ. 토지 및 기후	8
Ⅱ. 기후	20	Ⅱ. 기후	5	Ⅱ. 인구	17
Ⅲ. 인구	19	Ⅲ. 인구	16	Ⅲ. 노동 및 임금	12
Ⅳ. 國民계정	14	Ⅳ. 경제활동인구	6	Ⅳ. 농림·어업	47
Ⅴ. 농업 및 임업	45	Ⅴ. 농업·임업및수산업	30	Ⅴ. 광공업	22
Ⅵ. 농가경제	12	Ⅵ. 농가경제	11	Ⅵ. 전기수도 및 건설업	18
Ⅶ. 수산업	11	Ⅶ. 광공업	9	Ⅶ. 도·소매업	11
Ⅷ. 광업 및 제조업	17	Ⅷ. 전력	5	Ⅷ. 무역·국제수지 및 외환	13
Ⅸ. 건설 및 주택	6	Ⅸ. 운수·통신및건설	31	Ⅸ. 운수 및 통신	23
Ⅹ. 운수	14	Ⅹ. 기업경영	6	Ⅹ. 금융 및 보험	36
Ⅺ. 통신	15	Ⅺ. 도소매업	5	Ⅺ. 보건 및 사회보장	34
Ⅻ. 전력	10	Ⅻ. 물가 및 임금	12	Ⅻ. 교육 및 문화	17
XIII. 기업	4	XIII. 가계	5	XIII. 기업경영	6
XIV. 도소매업	5	XIV. 재정	23	XIV. 물가 및 가계	17
XV. 노동력	4	XV. 금융	37	XV. 국민계정	17
XVI. 가 계	5	XVI. 무역	5	XVI. 재 정	22
XVII. 물가 및 임금	12	XVII. 국제수지및외환	6	XVII. 공공행정	30
XVIII. 무 역	13	XVIII. 국민소득	15	XVIII. 국제통계	32
XIX. 외 환	8	XIX. 교 육	18	부 록	1
XX. 금 융	34	XX. 보건·의료및후생	25		
XXI. 재 정	68	XXI. 공무원 및 선거	14		
XXII. 공무원 및 선거	16	XXII. 사법보안및재해	16		
XXIII. 교육 및 문화	26	XXIII. 국제통계	29		
XXIV. 후 생	18	부 록	1		
XXV. 보 건	17				
XXVI. 사 법	22				
XXVII. 보 안	3				
XXVIII. 보 험	5				
XXIX. 재해 및 사고	4				
XXX. 국제통계	23				
부 록	2				
합 계 (590쪽)	477	합 계 (509쪽)	334	합 계 (608쪽)	383

般에 編纂基準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 한국에서도 統計刊行物의 編纂基準에 대한 硏究를 60年代부터 準備해서 70年代에 本格化하였다. 政府는 1965年 2月 25日字 大統領令 第2,060號로 「政府刊行物 調整審議委員會 規程」을 제정해서 그간 1968年, 1970年 및 1973年에 3次에 걸친 改正을 거쳤다. 調査統計局에서도 1973年에 「調査統計局 統計刊行物審議會」를 설치운영하면서 編輯指針書로서 같은 해에 「統計刊行物編輯 및 發刊指針書」를 刊行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 심의회에서는 統計刊行物 編輯上의 基準設定과 編輯技術指導 및 發刊方法 등 刊行物發刊計劃 全般을 事前審議하고 있다. 1989年 4月에는 새로이 「統計刊行物 發刊業務便覽」을 만들어 發刊物 編輯上의 一般的, 總括的 指針과 勸告事項을 提示하고 있다.

한편 1970年代에 農林水産部內에서 刊行하기 시작한 것으로는 農業基盤造成事業(1970), 農作物病蟲害防除(1978), 漁業總調査(1970), 水産物系統販賣高(1972) 및 漁業生産量(1978) 등의 統計와 畜産物需給 및 價格資料, 生産費報告書(1978), 農藥, 肥料 등의 年報(1979) 및 1969年부터 發行하고 있는 農業機械年鑑 등을 들 수 있다. 農林水産關係 綜合統計發刊物로서는 1952年부터 발간하는 農林水産統計(農林統計)年報가 있고 1963年부터 發刊하는 農家經濟調査報告書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其他官廳의 主要統計刊行物로는 保健社會部의 保健社會統計年報, 交通部의 交通統計年報와 勞動部(勞動廳)의 노동통계연보,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 고용전망보고서, 動力資源部의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센서스보고서, 國稅廳의 국세통계연보, 관세청이 무역통계연보와 수출입통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통계연보이외의 각종통계는 모두 70年代에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다.

民間統計機關에서는 韓國銀行에서 經濟統計年報와 調査月報, 統計月報(1982年부터 調査統計月報로 合本發行)以外에도 國民所得年報, 物價總覽, 韓國의 資金循環, 産業聯關表 및 우리나라의 企業經營分析과 우리나라 企業原價分析 같은 것은 60年代以前부터 發刊하던 것이나 특히 70年代이후에는 韓國의 通貨金融統計나 景氣豫告指標·國際收支解說資料와 地域金融統計, 貯蓄市場調査 및 財政統計 등을 刊行하기 시작하였다.

韓國産業銀行도 調査月報, 設備投資計劃調査報告書 등 以外에 財務分析, 韓國의 産業, 外資導入對象事業體調査 등을 내 놓았고 그밖에 中小企業銀行의 中小企業動

向調査, 韓國住宅銀行의 住宅建設景氣展望, 大韓商工會議所의 企業財務實態調査, 全國經濟人聯合會의 景氣展望調査 등이 70年代에 出現하였다.

나. 經濟 및 社會統計體系

각 統計機關은 統計法에 의한 中央統計機構의 主務長官으로부터 承認받은 統計를 비롯하여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産業構造高度化와 均衡社會를 지향하던 70年代 後半의 時代的 狀況과 아울러 새로운 統計需要에 부응해 나아간 것이다. 그간 量的으로 팽창한 統計作成을 整理하면서 統計內容面에서도 總量規模 및 現況 中心의 調査樣態에서 質的問題 즉 分布 및 均衡, 質的深度 및 周邊關係의 究明 등에 必要한 統計로 전환하는 過程과 一致하고 있다. 60年代後半부터 實施하던 主要行政統計調査를 비롯하여 人口, 勞動力關係統計와 鑛工業 등 産業關係, 物價·家計 등에 대한 調査를 지속하며 거기에 人口出産力, 事業體關係가 추가되었다.

먼저 調査統計局의 統計活動을 1975年까지 실시하던 것을 요약해 본다.

調査統計局調査(70年代 前半)

1973	1974	1975
1. 주요행정통계조사	1. 주요행정통계조사	1. 주요행정통계조사
2. 인구동태신고조사	2. 인구동태신고조사	2. 인구동태신고조사
3. 인구동태표본조사	3. 인구동태표본조사	3. 인구동태표본조사
4. 인구이동통계조사	4. 인구이동통계조사	4. 인구이동통계조사
5. 경제활동인구조사	5. 경제활동인구조사	5. 경제활동인구조사
6. 경제활동인구특별조사	6. 경제활동인구특별조사	6. 경제활동인구특별조사
7. 도시가계조사	7. 도시가계조사	7. 도시가계조사
8. 도소매업동태조사	8. 도소매업동태조사	8. 도소매업동태조사
9. 전국소매물가조사	9. 전국소매물가조사	9. 전국소매물가조사
10. 광공업통계조사	10. 광공업통계조사	10. 광공업통계조사
11. 광공업동태조사	11. 광공업동태조사	11. 광공업동태조사
12. 건설업통계조사	12. 건설업통계조사	12. 건설업통계조사
	13. 재고통계조사	13. 재고통계조사
	14. 한국출산력조사	14. 인구 및 주택조사
	15. 영세사업체조사	
	16. 사업체조사	

새로운 統計의 出現만이 아니라 關聯統計 등을 分野別로 각기 다른 機關에서 分散調査함으로써 생기는 調査間의 重複, 基準, 項目定義 등의 混亂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統合하여 調査內容을 充實化할 必要가 있다. 이에 機關別 固有分野와 관련한 現況調査, 動態調査는 그대로 지속하게 하되 總調査와 같은 基本統計는 中央統計機關인 調査統計局으로 統合시켰다. 이에 따라 韓國産業銀行에서 실시하던 鑛工業센서스는 1974年에, 建設業센서스는 1975年에 각기 調査統計局으로 移管시키고 中小企業銀行에서 시작하였던 運輸業센서스도 1977年에 調査統計局의 運輸業統計調査에 吸收統合시킴으로써 産業構造의 綜合的인 分析에 있어 效率性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를 基本統計와 關聯部門別 統計 및 動態統計들간의 連繫性을 確保하게 하였다. 그 結果 70年代中盤부터는 鑛工業統計調査, 鑛工業動態調査, 産業生産指數, 生産者製品在庫指數, 生産能力, 稼動率調査 등을 國家統計機關인 調査統計局에서 主管하게 되었다.

1975年의 統計法改正으로 各級機關의 統計資料에 대한 公表協議 規程을 강화하여 主要統計의 公信力을 높이면서 統計調整對象도 調査統計만이 아니라 貿易統計, 建築許可統計 등 報告統計도 포함시켜서 統計의 作成과 統計調査方法의 改善뿐 아니라 全般的인 國家統計의 體系確立이란 基本趣旨에 따른 統計調整行政으로 轉換하였다.

한편 70年代後半에 들어가면 建設業受注와 運輸業統計調査가 1976～78年間에 指定統計로, 人口移動, 新規登錄事業體, 社會統計, 百貨店統計 등이 一般統計로 承認받았고 1979年에는 機械受注와 住居實態에 관한 統計調査도 시작하였다. 第4次計劃의 最終年度인 1981年 6月에 指定統計로 指定받은 總事業體統計調査는 5年週期調査로서 全産業事業體의 地域別·産業別分布와 雇傭構造를 파악해서 産業政策上의 基礎資料와 각종 統計調査의 母集團資料로 活用하는 것이다.

70年代를 代表하는 것으로는 調査統計局에서 主管한 國富統計, 雇傭構造統計, 生命表作成 및 사회統計를 들 수 있는데 그밖에 景氣指標統計, 農家所得, 生産性指標 등도 있다.

國富統計는 國民計定統計 중 國民所得推計나 産業聯關分析 등 flow間의 計測과는 달리 國民貸借對照表上의 Stock資産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國富는 一定時

調査統計局 統計調査(1980. 6. 1 現在)

	統　計　名　稱	承認番號	承認日字	作成週期
指定統計	人口센서스	1	62. 6. 1	5　年
	住宅센서스	2	〃	〃
	人口動態調査	3	〃	月　別
	經濟活動人口調査	4	〃	分 期 別
	鑛工業센서스	6	〃	5　年
	都市家計調査	10	62.12. 8	月　別
	生産動態調査	11	64.10.23	〃
	全國小賣物價調査	13	67. 2.28	旬 期 別
	都小賣業센서스	14	67. 5.29	3　年
	鑛工業統計調査	17	68. 4.18	年　別
	國富統計調査	21	63.11.21	10　年
	鑛工業動態調査	23	70. 3.27	月　別
	在庫統計調査	26	74.11.13	〃
	建設業統計調査	27	〃	年　別
	建設業受注統計	29	76. 7.26	月　別
	運輸業統計調査	33	78.12.23	年　別
一般統計	主要行政統計調査	60	66. 4. 7	年　別
	都小賣業動態調査	121	69. 8. 4	月　別
	産業統計調査	137	70. 9.21	〃
	人口動態標本調査	143	72. 6. 4	分 期 別
	統計活動現況調査	144	71.10.30	年　別
	人口移動調査	341	76. 4.10	月　別
	新規登錄事業體報告	474	76.12.15	〃
	社會統計調査	519	77. 3.17	年　別
	主要品統計調査	551	78. 2.17	月　別
	機械受注統計調査	573	79. 3. 8	〃
	都市家口住居實態調査	587	79.11. 8	3 年 別

點에 있어서 財貨와 用役의 生産基盤으로서 國民經濟가 保有하고 있는 有形·無形의 資源總體라고 하지만 國富統計調査에서는 이를 統計的으로 國富의 定義를 규정하고 經濟的 意味의 資本投下로 이루어진 資産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國富調査는 그간의 開發政策下에서 國民經濟規模의 擴大와 構造高度化의 進陟에

따라 長期經濟計劃에 必要한 資本保有量을 평가파악하고자 이미 60年代 後半에 試圖한 바 있었다. 즉 經濟開發 第1次 5個年計劃 期間中에 準備를 착수해서 1966年에는 調査方針을 구체화한데 이어 1968年에 指定統計(第111-11-11號)로 지정하고 1968年末을 기준으로 한 第1回國富統計調査를 실시하였다.

그것을 10年週期로 실시키로 하고 있는데 第2回調査부터는 5個年計劃의 1次年度에 맞추어 1977年을 기준으로 1978年에 실시하였다. 이 第2回調査를 위하여 1972年부터 준비해서 그 결과를 1973年 6月에 「國富統計調査便覽」(國富資料 No.1)을 내었다. 1988年에는 1987年末을 기준으로 第3回調査를 실시하였다.

雇傭構造統計는 70年代에는 勞動力調査에서 종전의 勞動力規模나 就業·失業狀態 및 業種別, 從事上의 地位別 같은 「經濟活動人口」의 外狀的 內容을 중심으로 조사하던데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착수한 조사이다. 勤勞現場에서의 勞動力需給, 勤勞條件 내지 勞使問題, 나아가서 系列企業群(企業그룹)의 經營樣態같은 것에 關心을 두기 시작하다가 調査統計局에서 1974年에 「特別雇傭統計調査」를 실시하였다.

調査對象도 總人口調査나 經濟活動人口調査(1962年부터 實施)의 母集團·標本에 만족치 않고 標本數를 대폭 늘렸다. 全國의 약 13만家口로 調査對象을 擴大하고 전통적인 勞動力接近方法에 家口槪念과 所得槪念을 도입하고 이를 地域別 勞動力構造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70年代 中盤부터 顯在化하기 시작한 當面 雇傭計劃과 1977年부터 시작할 第4次5個年計劃의 基本資料로 사용코자 出發한 것이다. 이 조사는 1983年 10月 31日에 指定統計 第111-11-18號로서 3年週期의 「雇傭構造調査」로 정착하였다. 이는 國家의 長·短期人力 및 雇傭政策의 基礎資料로 活用하는 것이다.

1989年 11月에 실시한 第3回調査는 全國 35個主要地域의 2,281個 調査區에서 141,955標本家口를 對象으로 地方公務員과 臨時調査員 등 2,281名(調査區數와 同一)이 동원되어 人的·經濟的 活動, 就學者, 失業者, 勞動力流動, 非經濟活動人口 및 調査區管理 관계 등 7個事項 60個項目을 調査하였다. 調査結果는 1990年 11月에 「1989雇傭構造統計調査報告書」로 發表하였다.

「韓國人의 生命表」는 1978~79年에 重複回顧 調査方法으로 2年에 걸쳐 出生·

死亡에 관한 資料를 수집하여 이른바 Chandra-Demming方法에 의한 死亡件數를 추정함으로써 人口動態標本調査 結果의 人口動態率을 補完한 生命表이다. 1930年代初에 한국인의 簡易生命表를 최초로 작성한 바 있으나 政府樹立以後에는 國土分斷과 戰亂 그리고 激甚한 人口의 社會的 移動 및 國民의 認識未洽으로 人口動態申告資料의 수집이 不完全하여 直接的인 生命表作成이 不可能하였다. 부득이 50年代와 60年代에 실시한 5年週期 總人口調査間의 生殘率을 利用한 死亡樣態를 生命表에 적용하거나 또는 國際聯合의 標準生命表에 準據한 試算資料가 몇번 提示되었었다. 그러나 이런 間接資料에 의한 推計로는 韓國人의 平均期待壽命水準, 將來人口推定 등이 不確實하기 때문에 人口政策·國民福祉·社會保健政策 및 經濟政策 등에 심대한 障碍를 주었다.

70年代末인 1978~79年基準 한국인의 생명표를 작성함으로써 韓國人의 特性에 맞는 固有生命表를 비로소 지니게 되었다. 이 당시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62.70세, 여자가 69.07세로 나타났다. 이는 1926~30 간이생명표에 의해 추정한 1906년당시의 평균수명 22.6세와 24.4세에 비하여 70년간에 거의 3배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남녀간 평균수명의 격차가 2세에서 6세로 더 커져 여자의 평균수명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

韓國人의 平均壽命 推移

(歲)

	1955-60	1966	1970	1978-79	1983	1985	1987	1989
平　均	52.39	61.85	63.15	65.81	69.94	69.00	69.99	70.84
男　子	51.12	59.74	59.77	62.70	63.84	64.92	65.95	66.92
女　子	53.73	64.07	66.70	69.07	72.24	73.33	74.14	74.96

자료 : 「韓國人의 標準生命表」, 統計廳, (1990. 2. 20)

社會統計(社會指標)調査도 1970年代 後半에 특기할 統計調査이다. 현재는 一般統計 第111-21-07號(1977.3.17)로 承認받아 統計廳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試圖가 구체화한 것은 1972年에 이미 「社會統計體制에 대한 考察」이라는 資料를 낼 만큼 일찍이 出發하였다. 그 뒤 社會統計體系化에 관한 國際聯合의 勸告(1969)에 準據해서 1975年 10月에 調査統計局과 韓國開發研究院이 共同으로 「開

發計劃作成을 위한 社會經濟指標作成과 人口統計改善」이라는 硏究에 착수하여 人口, 所得·消費, 雇傭·人力, 敎育, 保健, 住宅·環境, 社會, 公安의 8個部門, 42個領域, 350個指標體系를 설정하였던 바 1978年에는 우선 그중 114個指標를 가지고 試案으로 出發하였다. 특히 第4次 5個年計劃期間 중에 社會開發의 基礎를 造成해서 이를 第5次5個年計劃期間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이드로 삼고자 하였다.

이로써 70年代以後의 統計는 産業經濟 中心에서 國民生活全般의 質的改善中心으로 전환하여 나아가 政策發展의 基調를 經濟領域에서 經濟·社會領域으로 擴散코자 한 것이다. 國家發展이 開發經濟를 基礎로 하여 跳躍段階로 移行하는 時期라 할 수 있는 70年代에 社會統計의 體系化作業이 寄與한 것이다. 이 社會指標는 1978年 試案에 이어 1979年에 128個指標로 構成한 社會指標報告書를 公表하기 시작하였고 10년째인 1988年에는 指標數를 243個로 늘렸다.

통계조사, 체계, 내용 등 統計패턴이 전환하는 시기인 1976年 末에 調査統計局은 大韓統計協會와의 共同으로 棋界學者들을 動員하여 「韓國統計의 長期發展方案硏究報告」를 내 놓았다(1976.12.19 學術硏究報告書). 統計機構民間統計 및 統計敎育訓鍊, 人口統計, 經濟統計, 그리고 資料處理 등에 重點을 두고 그간의 統計活動 現況을 診斷하고 時代的 與件에 부응하는 解決方案을 모색한 것이다. 그때까지의 統計活動에서 나타난 統計機構 및 統計調整機構의 脆弱性을 반성하고 統計活動의 重複, 統計間의 不一致 등 問題와 基礎統計의 科學的 整備保全問題, 統計要員資質問題 등을 이 時點에서 點檢한 것이다. 經濟·社會에 대한 總量接近에서 深層樣態接近으로 移行하는 시기에 과거의 경제활동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未來的 비젼에 대한 方向設定에 있어 統計가 수행할 역할의 重要性을 認識하는데서 出發한 政策當局의 配慮였다고 할 수 있다.

다. 農業生産性과 企業體關聯 統計調査

1970年代에는 調査統計局 以外의 統計機關에서도 새로운 통계조사 내지 統計資料 蒐集活動을 속속 추가하였다.

農水產部는 1971年 12月 10日 職制改編으로 調査統計課를 農業統計官室(準局水準)로 昇格한 이래 1975年度 簡易農業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는 10年週期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 農業總調査(농업센서스)를 總人口調査와 마찬가지로 西紀年度로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해에 실시하는 正規總調査의 中間(5로 끝나는 해)에 簡易調査를 실시하는 5年週期의 調査로 定着시키는 시발을 마련하였다.

그밖에도 農業基本統計調査, 食糧作物生產量調査 등 農業統計 全般에 걸쳐 1980年에는 50여개나 되는 調査·報告統計資料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에는 耕地, 農藥, 肥料, 農機械나 蠶業, 園藝作物, 養松茸 등 農業生產性 및 農家所得事業에 관한 조사를 대거 실시하고 있다.

特記할 사항은 종전에 地方行政系統을 통하여 報告統計로 수집하던 農業基本統計調査資料를 1974年부터는 農業總調査의 調査區를 基礎로 한 標本調査方法으로 代替調査하고 農產物生產費 調査에서도 이때부터 쌀과 보리 爲主에서 콩, 고구마, 옥수수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作物統計의 播種面積도 標本調査方法으로 전환하였다. 1974年에는 또 家畜統計調査를 병행실시하였다.

. 한편 水產廳의 漁家經營調査를 1976年부터 水產業協同組合으로 移管하고나서 1978年부터는 水產統計改善方案에 따라 漁家經濟調査와 漁業基本統計調査도 農水產部로 移管하였다.

農水產統計도 統計法과 施行令 및 施行規則 등에 의하여 調査하며 그중에 主要統計는 農林水產部令으로 調査規則을 제정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다가 1981年 1月 28日字로 모든 統計의 承認番號를 整理하면서 이들을 電算化할 때에 指定 또는 承認番號도 變更하였다.

한편 農村振興廳에서도 독자적인 농산물가격 조사를 착수하였고 水產廳 調査統計課도 어업센서스를 비롯한 어업관계 基本統計와 漁業生產高, 漁業經營調査를 실시한다.

保健社會部는 1973年에 國民身體偏差調査를 실시한 以來 1975年에는 小兒發育値調査, 醫藥品生產實績 등을 調査하였다. 이는 60年代 後半부터 실시하던 疾病傷害統計調査, 國民營養調査 및 要求護對象家口 生活評價調査 등과 함께 보건, 위생, 후생에 관한 基礎調査이다. 勞動廳은 1972年 2月 27日字 機構改編으로 統計課를

農 水 産 部 統 計

1980.6.1 現在

	統　　計　　名　　稱	承認番號	承認日字	作成週期
指定統計	農業센서스	5	62. 6. 1	10　年
	農家經濟調査	8	62.12. 8	月　別
	農産物生産費調査	9	62.12. 8	年　別
	作物統計調査	15	67. 5.29	〃
	農業基本統計調査	16	68. 4.18	〃
	家畜統計調査	30	76.12.17	分 期 別
	漁業센서스	22	69. 4. 7	10　年
	漁業生産高調査	24	70.12. 9	月　別
	漁業基本統計調査	25	71. 7. 9	年　別
一般統計	漁家經濟調査	156	74. 5. 8	月　別
	農業機械保有現況	288	75. 7.29	年　別
	米穀生産推定 및 搾油實績報告	289	〃	〃
	農地轉用狀況報告	290	〃	分 期 別
	耕地利用實績報告	291	〃	半 年 別
	農藥供給狀況報告	292	〃	年　別
	堆肥生産報告	293	〃	分 期 別
	農作物被害報告	294	〃	年　別
	綠肥生産報告	295	〃	〃
	麥類播種面積報告	297	〃	週　別
	麥類品種別面積調査	298	〃	年　別
	뽕밭 實態調査	299	〃	〃
	桑苗生産費調査報告	300	〃	〃
	春夏秋期蠶繭生産 및 共販狀況報告	302	〃	半 年 別
	春秋期 養蠶規模調査報告	303	〃	〃
	春秋期 掃蠶實績報告	304	〃	〃
	原蠶種 및 普通蠶種生産實績	305	〃	年　別
	蠶繭生産費調査	306	〃	〃
	生絲製造販賣費調査	307	〃	〃
	製絲統計月報	309	〃	月　別
	누에飼育報告	310	〃	半 年 別
	園藝作物加工現況調査報告	312	〃	年　別
	促成栽培施設現況 및 生産實績	315	〃	〃

	統　計　名　稱	承認番號	承認日字	作成週期
一般統計	油菜播種實績報告	318	75. 7.29	年　別
	菌草生産 및 收買實績報告	320	〃	〃
	養松茸 生産報告	321	〃	月　別
	畜産物處理 加工實績報告	323	〃	分期別
	酪農牧場 實態把握	324	〃	年　別
	配合飼料生産實績報告	325	〃	月　別
	動物藥品生産販賣狀況報告	328	〃	〃
	屠畜檢查報告	329	〃	〃
	乳製品生産消費狀況 및 價格	330	〃	〃
	穀價報告	331	〃	日　別
	糧穀在庫 現況	332	〃	週　別
	養蠶經營實態調査	340	76. 4. 1	半年別
	송이松茸등조림生産 實績報告	416	76.10. 5	年　別
	農水産物都賣市場業務報告	497	77. 1.19	半年別
	病蟲害發生狀況報告(水稻, 麥類)	498	〃	5 日別
	病蟲害防除實績報告(　〃　)	499	〃	旬　別
	農藥在庫調査	500	〃	年　別
	普通蠶種生産費調査	501	〃	半年別
	糧穀消費量調査	502	〃	月　別
	畜産物加工品檢查狀況報告	529	77. 4. 2	〃
	穀價調節 糧穀放出 實績報告	531	77. 4.15	〃
	夏穀 및 秋穀收買 實績報告	538	77. 7. 6	年　別

人力開發室로 擴張하여 그 밑에 雇傭統計·賃金統計·資料處理 등 3個擔當官(課)을 두어 事業體勞動實態, 職種別賃金 등 調査를 實施하고 있었는데 1974年에는 外資業體, 輸出入業體의 實態調査와 1975年의 勞動者센서스를 실시한 바 있다.

商工部의 工業企劃局 調査統計課에서 生産動態와 石油, 石炭生産, 中小企業工場稼動率, 特許統計 등을 報告統計에 의하여 수집하였으나 1973年부터는 에너지센서스를 試圖하며 鑛山災害統計를 수집하였고 이들을 商工統計月報에 發表하였었다. 그러나 生産動態統計를 調査統計局으로 移管시키는 등 統計業務를 縮小하며 1977年에는 調査統計課를 폐지하여 行政管理擔當官室에 흡수시켰다. 工業團地管理廳에서는 1974年에 工業團地別 入住業體稼動現況과 雇傭現況 및 勤勞者賃金實

態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內務部는 統計課가 없으나 地方局 管理課에 統計擔當官을 두어 地方의 報告統計를 統轄하였다. 管理課에서 하던 統計業務는 1977年부터 指導課 所管으로 改編하였다. 그밖에 70年代에 시작한 住民登錄證發給業務와 관련해서 住民登錄課, 地域開發擔當官室, 都市開發官室에서도 地方統計業務를 활발히 하여 地域別 經濟活動人口調査나 主要經濟指標 등을 作成하고 있으며, 나아가 地域別 住民所得推計도 試圖하며 서울등 일부지역에서 구체화하였다.

1974年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설치한 企劃管理室內의 調査統計課(서울은 統計課)를 1975年부터는 統計擔當官室로 統一시키고 여기에 서울特別市에는 統計擔當官室에 基準係·調査係를, 釜山과 각 道에는 人口統計係와 經濟統計係를 두고 常住人口, 人口動態調査나 經濟活動人口, 家計調査 및 地域住民所得推計 등 地域統計資料의 蒐集과 統計刊行物을 發刊한다. 統計擔當官室職制에는 지역에 따라 電算係 또는 農業統計係를 두거나 하기도 하였다.

外務部에서 1974年부터 실시하는 在外國民現況調査나 文敎部에서 1975年에 大學外廓施設現況調査를 실시한 것도 70年代 統計擴散의 一面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交通部 調査統計擔當官室에서 1975年 7月 29日과 1976年 8月 26日 및 同 11월 16日에 自動車運送實績, 觀光客利用度 및 倉庫, 車輛保有 등에 관한 報告統計를 一般統計로 承認받아 수집·편제하고 있으며 1970年 8月 27日에 設立한 國稅廳의 貿易統計課에서 貿易統計를 編制發表하고 있다.

1970年代는 企業經營과 景氣觀測에 관한 統計가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던 시기이다. 이는 1960年代의 韓國銀行과 韓國產業銀行에서 企業經營分析이나 財務分析 등을 每年 實施하던 것인데 70年代에는 各種 公共機關이나 民間經濟 및 硏究團體에서 統計調査活動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70年代의 特殊한 經濟調整期的 雰圍氣와 相乘作用을 보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大韓商工會議所의 企業財務實態調査(1969年부터)나 企業經營隘路要因調査(1972年부터)등도 이 시대의 必要에 의한 것이다.

景氣統計도 韓國銀行 調査2部에서 60年代初에 主要企業의 短期經濟豫測調査(景氣動向指數 ; 1966.7.5日 一般統計 73호로 承認)를 착수하였고 韓國產業銀行 調査

部에서도 1965年 2/4분기부터 실시한 主要企業의 景氣觀測調査(景氣豫測調査, 景氣展望調査)가 있었으나 韓國銀行에서는 1972年末부터 「景氣豫告指標」를 작성해서 景氣變動의 短期觀測에 有效한 手段으로 活用하였다.

韓國銀行의 景氣統計는 그후 經濟規模의 擴大, 經濟構造의 高度化 등을 반영하여 1976年 2月과 1982年 1月에 改編하였다가 80年代에는 이 指標의 景氣對應性이 低下되었을 뿐 아니라 1981年 3月부터 調査統計局에서 景氣綜合指數를 發表함에 따라 1984年 5月에 중지하였다.

韓國產業銀行 調査部도 1965年 2月以來 短期景氣豫測調査를 一般統計로 承認받아 실시하며 70年代를 통하여 지속하고 있었는데 70年代에 들어와서는 1975年 1月에 大韓商工會議所가 企業景氣展望調査를, 1976年 8月과 9月에는 全國經濟人聯合會가 月間景氣動向調査와 景氣展望調査를, 같은 9月에 韓國貿易協會에서 輸出產業景氣展望指數를 각기 一般統計로 승인받았다. 또 1977年 3月에 韓國生產性本部의 綜合 및 業種別景氣展望調査와 서울地域市場景氣展望調査, 1978年 8日 韓國住宅銀行의 住宅建設景氣展望調査 그리고 1979年 9月에 中小企業銀行에서 發表한 中小企業景氣展望調査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들 경기관계 통계는 이른바 企業實査指數(Business Survey Index ; BSI)라해서 企業活動의 實績, 計劃 및 景氣動向에 관한 企業人의 意見에 입각한 企業活動의 變化方向이나 金額表示 計數의 增減을 全般的 景氣動向의 指標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上記 B.S.I 以外에도 企業活動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자료도 넓은 意味의 景氣指標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가령 韓國產業銀行에서 1965年부터 실시하던 設備投資計劃調査를 비롯하여 中小企業動向調査(中小企業銀行 : 1974.6.1), 企業經營隘路要因調査(大韓商工會議所 1975.2.18), 證券統計(韓國證券去來所 : 1976.6.19)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景氣變動의 要因 또는 그 反映으로 보는 通貨量, 物價, 在庫統計, 輸出入實績과 信用狀, 어음不渡, 工場稼動率같은 것이 모두 이 무렵의 統計分野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以上이 1980年 以前에 있었던 景氣關聯統計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景氣變動에 관한 綜合的 指標는 아직 없었다. 결국 이런 모든 經驗을 축적하여 1970年代末期부터 준비하고 특히 1979年부터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로 1981年 3月에 本格的인 景氣綜

合指數를 編製發表하였다.

끝으로 統計關係 民間團體인 財團法人 大韓統計協會에서도 한국통계의 저변확대를 위한 活動에 參與하였다. 統計연수, 세미나, 統計刊行物 普及에의 참여같은 것이다.

1971年 7月에는 최초의 機關誌「統計界」創刊號를 낸데 이어 同年 8月에는 國際統計協會(ISI) 第38次總會(美, 워싱턴 : 1971. 8.10～8.20) 및 1973年 8月의 第39次 總會(오스트리아, 비엔나 : 1973. 8.21～8.30)에 會長團을 派遣하여 參與하였다. 또 1971年 9月에는 서울 城北區 所在 그린파크호텔에서 第1回統計人大會를 開催하여 세미나와 統計有功者에 대한 表彰式도 가졌다.「統計界」誌는 1975年부터「統計」라는 題號로 바꾸어 새로 창간하였는데 이 새體制의「統計」誌를 그후 꾸준히 持續發刊하여 1991年 7月에 通卷33號를 發刊하였다.

大韓統計協會의 活動은 1980年代에 더욱 積極活動을 展開하며 統計學術 및 技法硏究와 年2回의 統計硏修講座, 統計刊行物의 複製供給 및 統計情報에 관한 對國民奉仕와 年次的 全國統計人大會를 서울과 地方에서 開催하였다. 이 全國統計人大會는 1990年 9月 21日에 第8回大會를 서울 삼성동 所在 韓國綜合展示場 4層大會議室에서 開催하였다. 그때마다 對政府建議와 統計人의 決議文採擇 및 有功者表彰을 겸하여 每大會마다 主題를 設定하여 세미나도 併行하는 慣行을 굳혔다. 1991年 현재 政府 및 各級 公共機關과 民間團體등 75個의 會員團體를 포옹하며 이로써 統計에 대한 인식제고와 범국민적 底邊擴散에 寄與하고 있다. 統計人大會의 沿革과 主題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大韓統計協會主催 全國統計人大會의 沿革과 主題

〈第 1 回〉 1971年 9月 3日 : 統計發展過程의 考察과 方向模索
〈第 2 回〉 1981年 7月 4日 : 統計의 正確性, 眞實性 및 信憑性提高
〈第 3 回〉 1984年 7月 13日 : 統計人의 使命振作과 統計認識의 昂揚
〈第 4 回〉 1985年 7月 5日 : 새로운 統計開發과 統計의 活性化
〈第 5 回〉 1986年 9月 5日 : 國民生活의 統計化 促進
〈第 6 回〉 1987年 5月 29日 : 統計活性化와 地域統計發展促進
〈第 7 回〉 1988年 12月 8日 : 統計의 問題點과 發展計劃摸索

〈第 8 回〉 1990年 9月 21日 : 90年代의 統計發展과 地域統計의 強化

現在 統計廳傘下機關으로는 上記 大韓統計協會(財團法人 1963.5.6 設立) 以外에 韓國應用統計研究所(社團法人 1970.10.10 設立) 韓國統計學會(社團法人 1987.12.21 設立) 韓國統計調査研究所(社團法人 1990.2.1 設立) 韓國社會經濟統計研究所(社團法人 1990.2.1 設立) 및 統友會(社團法人 1987.12.21)등 6個團體가 있다.

라. 統計資料處理施設과 情報管理機構

1960年代初에 Punch Card System 또는 EDPS등 統計機械에 의존하던 통계자료처리시설은 1967年 3月에 調査統計局에서 IBM 1401－C6을 導入함으로써 명실공히 電子計算機體系(Computer System)時代로 進入하였다. 調査統計局은 그 뒤 1971年에 IBM 360/40, 1977年에는 IBM 370/138을 들여오는 등 70年代를 통한 韓國의 컴퓨터時代를 主導하였다. 그로써 調査統計局은 자체의 資料處理業務 以外에도 당시 國內의 각종 統計機關의 資料處理業務도 受託處理함으로써 중앙자료처리기관으로서의 役割을 하기도 하였다. 1978年 당시에는 컴퓨터의 端末裝置(Terminal) IBM3780를 經濟企劃院 豫算局과 韓國開發研究院 및 農水產部에 각 1臺式을 設置하여 調査統計局의 電子計算組織과 連繫하여 使用하고 있었다.

農水產部는 1970年 農業센서스를 科學技術處 中央電子計算所에서 處理한 후 1972年에는 調査統計局의 컴퓨터 共同利用資料處理 方針에 따라 1974년부터 農業統計官室(74.1.28 改稱)의 經濟統計擔當官室에 10대의 穿孔機를 賃借하여 穿孔은 農水產部가, 集計處理는 經濟企劃院이 擔當하는 分擔方式으로 처리하였다. 1976년말에 IBM 3780터미널 1組를 설치함으로써 農水產統計의 獨自的인 電算化를 시작하였다.

農水產部가 獨自的으로 컴퓨터를 保有한 것은 1979年말에 IBM 370/125 컴퓨터를 導入하면서부터이다. 나아가 農水產物의 產地와 消費地價格 등 流通情報의 신속한 수집과 各種統計資料의 集計分析을 위해 같은 時期에 中央과 직접 連結할 수 있는 情報通信用 터미날(MDS21) 30대를 統計出張所에 설치하고 이는 1980

調査統計局 統計資料處理裝備 保有現況

(1978. 5.31 現在)

機械名	型	保有臺數		
		計	購入	賃借
穿孔機 key punch	024 029	16	14	2
檢孔機 verifier	056	10	10	-
Key Entry system	3742	11	-	11
分類機 Sorter	083	3	3	-
照合機 Collater	085	1	1	-
複寫穿孔機 Reproducing & Punch	519	2	2	-
翻譯機 Interpreter	548	1	1	-
Data Converter	3747	1	1	-
電子計算組織 Computer system	s/370/138	1set		1set
端末裝置(Terminal)	3780	3set	-	3set
豫算局				
K D I				
農水產部				
計		4set		4set
		45	31	14

년에 50대, 1981년에 72대등 總152대의 터미날을 中央과 9個地方 統計事務所 및 141個 市郡出張所에 설치하면서 종래 各種統計調査의 調査票를 中央으로 수집하여 穿孔集計하던 중앙집중 資料處理方式을 現地에서 直接入力하여 中央으로 보내는 地方分散 集計方式으로 轉換하고 1981년에는 이를 더욱 확충하여 作物統計, 農業基本統計, 가축통계, 농수산물 유통통계, 수산통계등 모든 農水產統計를 現地에서 터미날로 入力電送하게 하였다. 1983년 1월에는 業務量의 증가로 主 컴퓨터를 中型 IBM 4341(2MB)로 交替하고 全國 전산망을 온라인 네트워크화함으로써 農水產統計處理의 自動化는 물론 價格情報 등을 利用者에게 신속히 提供할 수 있도록 農村振興廳, 水產廳, 山林廳, 農協, 水協, 畜協, 農水產物流通公社, 農村經濟研究院, 서울特別市,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 등과도 터미날을 連結하였다.

1990年 4月에는 農·漁業總調査에 대비하면서 主電算機(Main Computer)를 IBM4381(32MB, FXT 16MB)로 代替하고 아울러 本部用 터미날 TRIGEM 88 25대, IBM PS-55 25대를 새로 導入設置하였다.

한편 科學技術處의 中央電子計算所는 1970年 4月 7日字 大統領令으로 설치한 總務處의 政府電子計算所로 개편하고 거기에 UNIVAC-1106 System을 導入設置함으로써 자체 行政業務의 科學化와 電子計算組織利用度提高, 技術開發普及 및 業務能率化를 기할 뿐 아니라 당시의 農水產部, 勞動廳 등 政府機關의 統計資料處理도 擔當하게 하였다.

이처럼 國內의 電算組織은 1967年의 IBM 1401-C6을 시발로 급속히 늘어나 정부기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硏究機關이나 企業體, 學校 등에서도 導入하여 1974年에 이미 45臺를 헤아리고 있다.

70年代末에 이르면 더욱 급증하여 1979年末현재 427臺로 5年간에 거의 10倍가 늘어난 셈이다. 이때의 電算機는 類型別로 超大型 28臺, 大型 38臺, 中型 91臺에다 小型 108臺 및 미니컴퓨터 162臺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1974年 4月末 現在의 컴퓨터分布를 보면 表와 같다.

자료처리기관별 전자계산기 보유현황

(1974. 4.30 현재)

구 분	기 관 명	기 종	도입년도
정부기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IBM 360/40	71. 4
	〃	IBM 370/135	75. 1
	국방부	IBM 370/135	72.12
	공군본부	IBM 370/135	73. 4
	중앙전자계산소	UNIVAC 1106	71. 6
	육군부관감실	UNIVAC 9300	68. 7
	육군중앙경리단	UNIVAC 9300	68. 3
	철도청	UNIVAC 9400	71.11
	치안국	UNIVAC 9400	72.12
	국세청	CDC 3150	70.11
	국립건설연구소	FACOM 230-10	69. 9
	농촌진흥청	FACOM 230-10	70. 9
	육군사관학교	FACOM 230-15	72.10
	전기통신연구소	PDP 8-E	71. 3
	문교부	FACOM-MATE	73. 3
	보건사회부	UNIVAC 1005	69. 2
	총무처	UNIVAC 9300	
	경제기획원예산국	CDC 200 터미널	70. 6

구 분	기 관 명	기 종	도입년도
정부기관	군 수 참 모 부	IBM 370/135	74. 1
	관 세 청	UNIVAC 9480	73.10
금융기관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	UNIVAC 9400	70. 7
		UNIVAC 9480	73. 8
	한 국 외 환 은 행	NCR Centry 100	70. 1
		NCR Centry 200	72. 7
데이터센터	한 국 전 자 계 산 소	FACOM 230-25	73. 4 67. 8
		CDC 3200	70. 8
		IBM 370/135	
	한국보험전산주식회사	IBM 360/40	72. 1
		IBM 370/135	
	서 울 컴 퓨 터 센 터	CDC 3100/40	72. 4
	부 산 중 앙 컴 퓨 터 센 터	CDC 3100/40	73
기업체 및	대 한 항 공	IBM 360/40	73. 6
정부투자기관	금 성 사	IBM 360/25	71.10
	연 합 철 강	IBM 360/25	72. 1
		IBM 370/125 IBM 1800	73.10
	I B M 코 리 아	IBM 369/25	71. 6
	한 국 전 력	IBM 360/40	71. 6
	한 국 무 역 협 회	NCR Centry 200	71. 1
	한 국 키 보 드	PDP 8-E	72. 8
	기 아 산 업	Burroughs L 3000 E 4000	72.12 70. 6
	부 산 은 행	Burroughs-8000	71.1
	호 남 정 유	IBM 1130 IBM S/3-10	73.12 73. 9
	삼 호 고 무	IBM S/3-10	73. 9
	진 양 화 학	IBM S/3-19	74. 1
	동 아 제 약	IBM S/3-10	74. 3
	조 선 공 사	IBM 370/135	73. 8
	제 일 모 직	IBM 370/125	74. 7
	농 업 진 흥 공 사	IBM 1130	73. 8
연구기관및	한 국 과 학 기 술 연 구 소	CYBER 72-14	73. 1
교육기관	서 울 공 대	IBM 1130	70. 5
	숭 전 대 학 교	IBM 1130	69.12
	연 세 대 학 교	UNIVAC USSC 80	69.10

구 분	기 관 명	기 종	도입년도
연구기관및	중 앙 대 학 교	IBM 1130	71.11
교육기관	동 국 대 학 교	IBM 1130	72. 2
	고 려 대 학 교	IBM 1130	73. 2
	한 양 대 학 교	FACOM 230-10	69.10
	광 운 전 자 공 대	FACOM 230-15	72. 1
	덕 수 상 고	CDC 200 터미널	
	한국과학기술연구소분실	CYBER 732 터미널	
	인 하 대 학 교	IBM 1130	69. 8
	영 남 대 학 교	FACOM 230-25	73.
	서 강 대 학 교	UIVAC USSC 80	71.10
총 계	45대(도입예정 12대는 제외)		

統計調査의 擴充과 資料處理電子計算機의 普及 등이 一般化하자 統計情報量이 급증하면서 大量情報의 供給과 流通 등 情報化時代로 進入하였다. 따라서 70年代 中盤부터 電算組織을 이용한 情報網開發과 그 管理體系構築에 착수하여 이른바 資料集中管理體系(Data Base System)로써 각종 情報資料를 基軸化해서 産業經濟와 社會部門에 관한 방대한 一次統計資料를 加工, 檢索할 수 있는 Program Package를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調査統計局 機構에서 종전의 資料處理課(製表課) 以外에 1975年 8月 14日字로 신설한 資料管理官室과 資料管理課가 이 業務를 管掌해서 1977年부터 資料集中管理開發에 착수하였으며 또 1981年에는 統計分析機能의 強化와 資料基軸化(D/B化) 推進의 效果를 높이고자 統計分析課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1980年代初期에는 이미 經濟動向分析이나 經濟力集中度分析, 時系列分析, 景氣豫測, 景氣綜合指數 算出 등에 이 資料管理機構가 크게 寄與하고 있었다. 그후로도 電算組織에 의한 資料蓄積을 더욱 充實히 할 뿐아니라 主要統計情報需要機關에 端末裝置를 設置하여 統計情報의 流通組織網을 廣範圍하게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調査統計局에서 1977年부터 본격적으로 開發하기 시작한 資料基軸化(D/B化)에는 調査統計局에서 작성하는 統計情報는 물론 其他機關에서 작성하는 主要統計도 入力해서 이를 1991年 統計廳發足과 동시에 20個 分野 265,000系列의 情報로 구성된 統計情報管理 및 利用體系를 韓國統計情報體系(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 KOSIS)로 構築함으로써 범국민적 情報化時代를 맞고 있

다. 한편 정부에서는 1988年에 電算網調整委員會를 설치하고 國家社會電算化中長期計劃(1988.5)에 착수하여 2,000年代의 情報化時代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全國的인 電子計算機普及 趨勢는 別表와 같은 바 이에는 民間部門에서도 특히 經營者의 컴퓨터利用 呼應度에서 보듯이 그 需要度가 높을 뿐 아니라 그 추세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컴퓨터 保有現況

구분 \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연평균증가율 (%)
초대형	31	42	60	76	105	128	33.0
대　형	46	66	84	114	137	164	29.0
중　형	111	137	174	214	265	312	23.0
소　형	143	167	210	401(83)	643(182)	850(236)	42.8
초소형	191	221	238	818(426)	2,316(1,632)	3,499(2,242)	78.9
계	522	633	766	1,623(509)	3,460(1,814)	4,953(2,478)	56.8

주 : (　　)의 수치는 국내 생산제품
자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最高經營者의 컴퓨터 시스템 利用實態

(%)

구분 \ 년도	1984	1985	1986
이해관심도 높고 적극적으로 지원	52.1	47.9	54.9
이해관심 높으나 지원이 소극적이다.	17.2	20.6	16.7
그저 그렇다.	3.2	8.3	4.2
기타 부정적 의견	27.5	23.2	24.2

자료 : 한국정보산업협회, 제4회 컴퓨터 시스템 이용실태 조사, 1987

第2節　經濟社會發展計劃과 統計指標

1. 經濟社會發展目標와 政策課題의 調整

가. 經濟社會發展의 目標設定과 政策課題

第5次計劃은 그 立案當時에 4次計劃 後半期인 80年을 前後해서 政治社會的 不安과 農業凶作, 經濟的 不況 및 對外關係 마찰같은 內外試練을 겪으면서 마련한 것이다. 그에따라 이 計劃은 社會的 안정과 經濟發展의 지속에 重點을 두었다.

그리하여 첫째로 安定을 最優先課題로 내세우고 國民生活安定과 國際收支改善등 經濟的 安定基盤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産業活動의 기틀을 維持해야 하므로 産業의 國際競爭力提高와 經濟社會全般에 걸친 開放化, 自律化, 分權化 施策을 과감히 추진해서 雇傭機會의 擴大와 所得增大를 위한 經濟成長을 7~8% 水準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生産性 向上과 經濟的인 能率을 增進시키고자 하였다.

셋째로는 당시에 社會的으로 沸騰하고 있던 均衡化要求를 充足하는 것이다. 階層間, 地域間, 部門間의 격차와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經濟社會發展過程에의 參與基盤을 확대해서 그 결실의 衡平的 配分을 指向한다. 그러자면 國土의 均衡的 發展과 社會開發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이상은 지난날의 投資優先順位論, 不均衡成長論 範疇가 현단계에서는 더이상 설득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認識한 것이며 國民的 合意基盤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發展計劃이 必要한 것이다. 그에 따라 第5次計劃은 그 名稱도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이라고 규정하였다.

第5次經濟社會發展計劃은 이런 취지에서 安定, 能率, 均衡을 目標로 잡고 그 實踐的 戰略으로서 經濟體質의 再編을 통한 安定的 恒久的 發展基盤의 構築을 指向하고 있다. 第4次計劃期間 중에도 社會發展을 추구하였었으나 그것이 1979年의

斷切을 겪고나서 5次計劃에서 具體化하였다. 第5次計劃은 4次計劃당시에 「成長, 均衡, 能率」을 計劃目標의 基底로 하였던 것과 비교해서 「成長」을 「安定」으로 代替하고 한편으로 相對的合理性의 槪念인 「衡平」을 普遍的 合目的 槪念인 「均衡」으로 調整한 것이다. 「能率」도 4次計劃 당시의 技術革新, 合理的 經濟運營등 〈能率의 向上 極大化〉에서 5次計劃에서는 生產性向上과 產業經濟力을 開放, 自律, 分權化에 의한 雇傭機會擴大, 所得增大에 基盤을 둔 〈經濟·社會全般의 能率增進〉으로 擴大 解釋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政策의 優先順位는 產業間 投資部門間의 우선순위 중심에서 脫避하여 ①物價安定政策을 最優先順位로 하고 ②競爭力促進과 ③對外開放政策을 적극화한 輸出主導戰略을 유지하면서 ④(投資部門보다는)國內外市場部門에서의 比較優位 設定 ⑤國土의 均衡開發과 環境保全 및 ⑥積極的인 社會開發推進으로 國民의 基本需要를 충족시키는 것을 發展戰略으로 하였다.

第5次計劃의 經濟政策的 基盤은 雇傭安定과 適正成長으로 집약하면서 社會開發의 擴大에 좀더 重點을 둔 것이다. 住居, 國民保健, 人口政策, 敎育 人力과 雇傭安定, 社會保障, 勞使關係 및 勤勞者福祉, 兒童·靑少年啓發과 새마을運動의 持續 등을 列擧하였다.

이렇게해서 1980－81年間의 混亂時期에 設定하였던 經濟社會發展計劃은 1982年부터 어떻든 政局이 鎭靜되고 社會經濟的 雰圍氣가 安定해지자 當初計劃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따라 原計劃에서 提示하였던 理念과 方向을 유지하면서 1981－83年間에 있었던 經濟實績의 超過達成과 轉換期的 調整政策 執行過程을 再檢討해서 物量的 目標는 市場經濟運行에 맡기고 각종 制度改善과 問題解決 중심으로 修正計劃을 構成하여 1983年에 發表하였다.

原計劃立案 당시에는 國內外經濟與件의 不安과 經濟運營에 대한 多角度의 批判, 反省 등이 噴出함으로써 產業活動이 극도로 위축된데다가 產業政策上의 進路設定도 流動的인 狀態였다. 一種의 調整期的 時代狀況의 初期段階로 進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1年부터 投資優先順位 設定基準의 再檢討와 財政運營에서 제로베이스 豫算編成制度를 導入키로 하였고 第5次 計劃이 출발하던 1982年에는 獨占規制, 公定去來強化, 私債陽性化 및 金融實名制 등을 추진하겠다는 7.3措置를 발표하면서 建設工事 등을 早期着工하기도 하였다. 이때에 漢江開發도 착수하였다. 더

욱이 韓美頂上會談에서 美軍撤收白紙化와 에너지對策協調 등에 合意하여 對美關係도 改善하였다. 1983年에는 國際原油價도 진정되었으므로 2月26日에 國內油價引下措置를 단행하고 강력한 不動產投機抑制施策(2.16措置)등을 발표하면서 國內景氣도 재차 活性化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下半期부터는 國際景氣도 上昇局面에

總量規模(第5次 經濟社會發展計劃)

	單　位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2-86 實質伸率(%)
經濟規模									
國民總生産	1980年價格,10億원	35,030.6	37,216.0	40,193.3	43,207.8	46,448.4	49,932.0	53,676.9	–
(成長率)	(%)	(−5.7)	(6.2)	(8.0)	(7.5)	(7.5)	(7.5)	(7.5)	(7.6)
	經常價格,10億원	35,030.6	44,650.4	54,984.4	65,589.4	77,568.8	91,325.6	107,461.2	–
	〃 ,百萬弗	57,427	65,953	78,103	91,350	106,991	124,762	145,218	–
國民總生産디플레이터	1980=100	100.0	120.0	136.8	151.9	167.0	182.9	200.2	–
(增加率)	(%)	(27.7)	(20.0)	(14.0)	(11.0)	(10.0)	(9.5)	(9.5)	(9.5)
人口	千　名	38,124	38,723	39,331	39,951	40,578	41,209	41,839	–
(增加率)	(%)	(1.57)	(1.57)	(1.58)	(1.57)	(1.55)	(1.55)	(1.49)	(1.55)
1人當國民總生産	1980年價格,千원	918.9	961.1	1,021.9	1,081.5	1,144.7	1,211.7	1,282.9	5.9
産業別成長率									
農林漁業	1980年價格,%	-22.0	18.0	3.0	2.5	2.5	2.5	2.5	2.6
鑛工業	〃	-1.2	4.8	11.6	10.5	10.5	10.5	10.6	10.8
(製造業)	〃	(-1.2)	(4.8)	(12.0)	(10.8)	(10.8)	(10.8)	(10.8)	(11.0)
社會間接資本·其他	〃	-2.2	3.3	7.7	7.4	7.3	7.1	7.0	7.3
産業構造									
農林漁業	經常價格,%	16.9	18.1	17.4	16.8	16.1	15.1	14.9	–
鑛工業	〃	30.7	30.6	30.9	31.2	31.7	32.2	32.7	–
社會間接資本·其他	〃	52.4	51.3	51.7	52.0	52.2	52.3	52.4	–
支出構造									
消費	經常價格,10億원	27,593.4	34,720.2	41,699.0	48,747.1	56,675.8	65,470.3	75,616.3	5.3
(消費率)	(%)	(78.8)	(77.8)	(75.8)	(74.3)	(73.1)	(71.7)	(70.4)	–
對外去來									
商品輸出	經常價格,百萬弗	17,214	21,000	25,300	30,500	36,500	44,000	53,000	11.4
商品輸入	〃	21,598	25,200	29,300	34,200	39,700	46,800	55,500	8.4

資料：經濟企劃院

들어서고 있었으므로 國內經濟는 計劃當時의 豫測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회복하였다.

經濟의 總量指標는 1983年에 이미 原計劃에서 벗어나 초과달성을 보임으로써 計數修正作業이 必要하였고 특히 物價上昇趨勢(인플레이션 進行)의 종결, 國際收支의 改善과 9.0%라는 견실성장 등에서 보듯이 과거 20餘年間 이룩해 온 高度成長으로 經濟體質과 構造는 이미 先進經濟로 指向하고 있다는 것을 韓國經濟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새로운 經濟構造의 전환과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던 第5次計劃이 高度成長期의 패턴을 단순히 維持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도성장기에 누적되었던 構造的 課題로 重点을 移行시켜야 할 時期이다. 轉換期的 調整政策도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된 것이 健實財政運營, 總需要管理, 輸入·外資導入의 效率性提高, 新技術開發投資이며 國土資源, 交通·通信施設運營의 效率化와 生活環境의 保全改善 등에서 보는 經濟體質全般의 自律性과 競爭力確保를 위한 制度改善이다. 그점에서 修正計劃은 原計劃의 補完이며 거기에 政府機能을 市場機能과 國民便宜爲主로 定立하며 綜合調整機能의 強化와 地方行政의 自律的 開發能力提高 그리고 行政電算化의 추진과 國家綜合情報管理體系構築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大會 準備事項을 追加한 것도 5次計劃 修正計劃의 특징이다.

과거의 開發計劃은 工業化, 輸出產業化, 產業構造高度化의 體制였다. 가령 1, 2차 計劃은 社會間接資本擴充과 輸入代替, 輕工業中心의 對外指向的 工業化戰略이었던 데 비하여 그 이후는 3차計劃의 基調인 成長, 安定, 調和에서 보듯이 한편으로는 重化學工業化 등 高度成長을 지속하면서도 工業化過程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農漁村經濟의 革新(새마을運動, 農產物價格維持, 農漁家所得增大, 環境改善 등)政策의 추진으로 都農間生活隔差 解消에는 寄與하였으나 高賃金趨勢와 企業經營隘路 그리고 後發開發途上國들의 추격등 도전을 克服하고자 4次計劃에서는 重化學工業推進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政策金融 등을 集中投資하였던 것인데 그 結果는 輸入需要의 增加와 인플레이션의 進行을 격화시켰다. 한편 70年代 後半에 닥친 第2石油波動과 世界經濟의 不況이 重化學部門施設投資의 竣工期와 겹친 狀態

였으므로 4次計劃後半期에 一聯의 經濟安定化와 構造調整을 위한 經濟運營方式의 轉換努力에도 불구하고 80年을 전후한 物價不安 國際收支惡化, 低成長 거기에 정치, 사회적 混亂이라는 社會經濟的 시련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런 雰圍氣에서 출발하고 企劃했던 5次計劃을 착실히 다져나가서 이제는 그것들을 해소하면서 당초계획을 1984年부터는 수정보완하였다. 결국 제5차계획기간은 이때까지의 계획에 비하여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第5次計劃의 修正計劃

	單　位	1983		1986	
		當初	修正	當初	修正
國民總生產	80年價格, 兆원	43.2	45.6	53.7	56.7
	80年價格, 億弗	708	751	900	933
經濟成長率	%	7.5	9.3	7.5	7.5
1人當國民總生產	80年價格, 千원	1,082	1,142	1,283	1,355
	80年價格, 弗	1,773	1,879	2,170	2,229
失業率	%	4.3	4.1	4.0	3.8
國民總生產換價指數	上昇率 %	11.0	2.9	9.5	2.0
商品輸出	經常價格, 億弗	305	232	530	357
商品輸入	經常價格, 億弗	342	249	555	351
經常收支	經常價格, 億弗	−44	−16	−36	4
總投資率	%	31.1	27.6	32.5	29.5
國內貯蓄率	%	25.7	24.2	29.6	29.3
海外貯蓄率	%	5.4	2.9	2.9	0.2

資料 : 經濟企劃院

나. 第5次 經濟發展計劃의 成果

5次計劃은 1986年에 12.5%의 成長을 보였으나 期間중 年平均 7.9%씩 성장하여 計劃値 7.5%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安定指向的인 成長을 지속한 셈이며 1986年의 國民經濟規模는 經常價格水準으로 83.8兆원으로 당시의 美弗貨換算評價額도 951億弗로 1천억불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1人當 GNP도 이미 1984年에 2,

000불에 넘어서고 1986年에는 2,296弗을 計算할 수 있었다.

主要社會開發 指標

	單位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幼稚園就園率(幼兒園包含)	%	15.0	19.4	23.5	31.8	38.0	44.2
國民學校平均學級當人員	名	49.8	48.8	46.9	44.2	42.4	41.3
中學校平均學級當人員	名	64.9	63.9	63.9	63.5	59.9	56.9
高等學校平均學級當人員	名	59.9	58.5	58.1	57.8	57.7	55.8
醫師 1 人當人口	名	2,186	2,121	2,041	1,948	1,841	1,737
100人當電話普及臺數	臺	8.9	10.4	12.1	13.8	16.7	19.3
電話供給率	%	76.2	80.8	84.0	85.8	93.1	98.1
上水道普及率	%	57	59	61	64	67	70
市級	%	87	88	89	89	90	91
邑面級	%	13	15	18	22	26	31
1 人當給水量	ℓ	264	270	276	284	292	300
市級	ℓ	278	285	297	309	322	335
邑面級	ℓ	137	141	152	165	180	195
下水處理率	%	8	8	8	8	8	25
糞尿終末處理率	%	62	66	71	77	84	95
市級	%	65	70	76	82	89	97
邑面級	%	48	48	49	60	71	90
道路鋪裝率	%	34.1	35.7	39.0	42.4	44.9	48.6
國道	%	55.3	60.4	67.0	69.4	71.2	77.7
地方道	%	11.0	12.8	18.1	22.3	25.6	29.2
郡道	%	4.7	5.2	6.0	10.5	12.0	13.5
住宅普及率	%	69.4	68.2	67.6	67.3	67.6	68.6
避姙實踐率	%	56	58	60	65	68	70
總出產率	名	2.7	2.6	2.5	2.4	2.3	2.3

이 기간중의 成長主導部門은 여전히 鑛工業으로서 1982年(4.1%)과 1985年(3.8%)을 제외하고는 12~17%씩 성장하였다. 그 결과 産業構造는 鑛工業部門이 1981年의 30.7%에서 1986年의 31.4%로 약간 늘어났고 工業構造面에서도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1981年의 50.7%에서 1986年의 56.8%로 6%差이상이 늘어났

다. 이러한 工業化의 진전은 勞動力人口를 흡수하여 失業率을 1981年(4.5%)보다 0.7%포인트나 낮은 3.8%로 낮추었다. 이로써 5次計劃期間 중에는 計劃目標의 하나인 적정성장의 지속과 고용안정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차계획중의 성과는 물가상승의 억제와 국제수지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제5차계획 입안당시의 原計劃에서는 物價上昇率을 10% 以上으로 잡았었으나 1983年의 수정계획에서는 2%수준으로 대폭 낮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消費者物價와 GNP-Deflator에서 보듯이 2-4%線에서 安定하고 都賣物價는 1%에도 못미치다가 1986年에는 -2.2%의 下落을 보였다. 5個年 平均으로는 0.9%상승에 머물었다. 이런 長期에 걸친 한자리 물가는 光復後 처음이었다.

物價水準變動

(1980=100.0, %)

	전국도매물가지수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		총생산환가지수	
	총지수	변동율	총지수	변동율	GNP 환가지수	변동율
1982	126.0	4.7	130.1	7.2	123.1	6.7
1983	126.3	0.2	134.5	3.4	127.9	3.9
1984	127.2	0.7	137.6	2.3	132.8	3.8
1985	128.3	0.9	141.0	2.5	138.2	4.1
1986	125.5	-2.2	144.2	2.3	141.2	2.3
년평균	-	0.9	-	3.0	-	4.1

또 한편 國際收支面에서는 1981年 207億弗 수출에서 1986年에 339억불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5年間에 64%나 증가한데 비하여 輸入은 243億弗에서 297億弗로 불과 22%增加에 그침으로써 국제수지는 기대 이상으로 급격히 개선되었다. 실제로 1981年만해도 經常收支가 46億弗의 赤字를 보였으나 1982年부터 國際收支改善의 자신을 보여서 10億弗 內外의 赤字를 지속하다가 1986年에는 비로소 수지균형을 이르는 4億弗 黑字를 計劃하고 있었으나 실적은 1986年에 무려 46億弗의 黑字를 내었다.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실적대비

	단 위	1981		1982			1983		
		계획	실적	원계획	수정계획	실적	원계획	수정계획	실적
국민총생산[2]	80년불변,조원	37.2	39.1	40.2	41.7	41.2	32.2	45.6	46.1
	成 長 率 (%)	6.2	6.6	8.0	5.6	5.4	7.5	9.3	11.9
	경상가격,조원	44.7	45.1	55.0	51.8	50.7	65.6	58.3	59.0
GNP-Deflator	상 승 률 (%)	20.0	15.4	14.0	7.1	6.7	11.0	2.9	3.9
1 人 當 GNP	경상가격(불)		1,719		1,800		1,773	1,880	1,914
총 인 구[1]	천 명	38,723	38,723	39,331	39,331	39,326	39,951	39,951	39,910
취 업 인 구	천 명	14,037	14,048	14,490	14,424	14,379	14,938	14,515	14,505
실 업 률	%	4.8	4.5	4.4	4.4	4.4	4.3	4.1	4.1
상 품 수 출[2]	경 상 가 격 (억 불)	210	207	253	209	209	305	232	232
상 품 수 입	경 상 가 격 (억 불)	252	243	293	235	235	342	249	250
경 상 수 지	경 상 가 격 (억 불)	−54	−46	−49	−26	−26	−44	−16	−16

	1984			1985			1986		
	원계획	수정계획	실적	원계획	수정계획	실적	원계획	수정계획	실적 (잠정)
국민총생산[2]	46.4	49.1	50.0	49.9	52.7	52.7	53.7	56.7	59.3
	7.5	7.5	8.4	7.5	7.5	5.4	7.5	7.5	12.5
	77.6	63.3	66.4	91.3	69.4	72.8	107.5	76.1	83.8
GNP-Deflator	10.0	1.0	3.8	9.5	2.0	4.1	9.5	2.0	2.3
1 人 當 GNP		1,979	2,044		2,159	2,047	2,170	2,229	2,296
총 인 구[1]	40,578	40,578	40,406	41,209	41,209	40,448	41,839	41,839	41,184
취 업 인 구	15,369	14,965	14,429	15,813	15,428	14,970	16,268	15,881	15,505
실 업 률	4.3	4.0	3.8	4.2	3.9	4.0	4.0	3.8	3.8
상 품 수 출[2]	365	265	263	440	309	264	530	357	339
상 품 수 입	397	275	274	468	310	265	555	351	297
경 상 수 지	−41	−10	−13	−38	−3	−8	−36	4	46

주 : 1) 총인구는 년앙추계인구, 단 1985년 실적은 총인구조사자료.
2) 상품수출입은 모두 FOB 平價額을 國際收支基準으로 調整한 金額 : 韓國銀行 國際收支表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이제 國際去來에서 해결할 문제는 그때까지 누증해 온 外債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나 이미 국제수지의 호전에 따라 그 축소전망도 밝아지고 있었다.

1985年에 514億弗이던 外債가 그해 말에 이미 467億弗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무렵부터 美國등으로부터 輸入開放促求와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촉구 등 市場開放壓力이 거세어지면서 한국은 輸入自由化進行計劃을 제시해서 自由化率은 1983年의 80.4%수준에서 1986年에는 91.5%로 또 다시 1988年에는 95.4%로 할것을 豫示하였다.

國民生活面에서는 주택공급을 165百萬m^2를 늘렸음에도 주택보급률은 1981年의 70.5%를 약간 못미치는 70.1%를 보였으나 上水道普及率은 57%에서 70%로, 道路鋪裝率도 34.1%에서 54.0%로 대폭 늘렸다.

특히 社會開發面에서 一般會計 중 敎育部門의 財政支出을 1981年의 18.5%에서 1986年에 20.1%로, 또 地方交付金도 6.7%에서 8.2%로 대폭늘려 가령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學級當 學生數를 65名 또는 70名線에서 모두 60名으로 개선했고 醫療保險과 醫療保護의 受惠率도 1981年의 40.6%에서 56.7%로 5年間에 16%포인트나 늘렸다. 거기에 零細民에 대한 職業訓練을 4次 計劃期間 중인 77－81年間의 346萬名에서 5차계획기간 중에는 거의 7倍나 되는 2,347萬名으로 늘려 社會開發 특히 영세민 생활대책에 좀 더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개발이나 醫療部門 등에서는 비록 實績向上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當初의 意慾的인 계획치에 다소 미달하던데 비하여 영세민 생활대책만은 당초계획(2,200만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총생산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81年의 52.1%에서 1982－86年間에는 54.0～55.5%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寄與했다.

農業部門에서는 耕地整理率이 1981年의 54%에서 86年의 66%로 끌어 올리고 農業機械普及도 1981年의 120萬臺에서 86年의 193萬5千臺로 늘려 농업생산성 기반을 크게 發展的으로 支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第6次計劃의 成果와 構造調整

第6次 경제사회발전계획(1987－1991)은 1985年 7月에 이미 그 골격을 갖추

고 1986年 9月 16日에 확정발표하였다. 1985年이라면 時局은 緊張局面으로 進入하기 시작하였더라도 經濟活動은 그 이후 줄곧 지속적으로 國內外 經濟好況을 기반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시작하던 時期이다. 그 결과 1986年에서 1988年까지 3年間은 12－13%의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經濟規模도 급팽창하고 60%를 넘는 重化學工業化率에 의해 뒷받침된 輸出의 好調로 經常收支面에서 1986年의 46.2億弗과 1987年의 98.5億弗 및 1988年의 141.6億弗씩 黑字를 示顯함으로써 당시의 유일한 爭点이던 外債論爭을 拂拭하였다. 따라서 外債도 1985年에 467億弗이던 總外債가 1988年에는 312億弗로, 1989年에는 294億弗로 줄었고 對外資産을 뺀 純外債는 1985年의 356億弗에서 1989年에는 30億弗로 急減하였다. 國際收支 黑字가 지속하면서 이제는 外換인플레이션 問題로 論爭이 바뀌었다.

제 6 차 계획기간중의 주요지표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P)
경제성장률(%)1)	7.5	12.9	7.5	13.0	7.5	12.4	7.0	6.8	7.0	9.3	7.0	8.4
경제규모 경상,조원	－	90.6	－	106.0	－	126.2	－	141.8	－	171.5	－	206.0
경제규모 85가격,조원	78.8	88.2	84.7	99.6	91.1	112.0	97.5	119.6	104.3	130.7	111.6	141.6
1 人 當 GNP(불)	2,331	2,505	2,474	3,110	2,767	4,127	3,065	4,994	3,396	5,659	3,800	6,498
수　출 (억 불)	317	339.1	356	462.4	398	596.5	442	614.1	491	631.2	544	695.8
수　입 (억 불)	292	297.1	326	385.8	363	482.0	403	568.1	447	651.3	476	765.6
경상수지 (억 불)	25	46.2	30	98.5	35	141.6	39	50.5	44	△21.8	48	△87.3
총 외 채 (억 불)	475	445	479	356	482	312	481	294	473	317	461	393
순 외 채 (억 불)	357	325	343	224	324	73	301	30	271	64	237	125
도매물가2) (%)	△2.0	△1.5	2.0	0.5	2.0	2.7	2.0	1.5	2.0	4.2	2.0	5.4
소비자물가2) (%)	2.5	2.8	3.0	3.0	3.0	7.1	3.0	5.7	3.0	8.6	3.0	9.3
실　업　률	4.0	3.8	3.7	3.1	3.6	2.5	3.7	2.6	3.7	2.4	3.7	2.3

註 : 1) 1991의 실적중 GNP는 잠정추계
2) 1985年 基準指數에 의한 변동률
資料 : 經濟企劃院

1人當 GNP는 1987年에 이미 3,100弗을 이루고 1989年에는 5,000弗에 육박하였다. 이에는 就業人口의 增大로 失業率이 1987年의 3.1%에서 1988, 1989年에

는 각기 2.5%와 2.6%로 完全雇傭水準에 이르렀고 物價水準變動도 都賣物價가 1987年의 2.7%, 1988年의 1.1%로 안정되고 소비자 物價도 3~7%수준을 유지하였다.

1989年까지 이룩한 이러한 실적은 6次計劃의 目標値에 비하여 대부분은 초과달성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는 1988年 以後에 극심한 勞使紛糾와 賃金上昇 그리고 원貨價値切上 등을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온것이다. 한편 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88年부터 상승하고 國際收支가 1990年에는 적자로 나타나기는 하고 있지만 80年代를 통한 전반적인 성과는 第6次計劃의 基調였던 「能率과 衡平을 토대로 한 經濟先進化와 國民福祉의 增進」은 적어도 總量指標面에서는 달성해 갔다.

그러나 당초 第6次計劃이 指向한 바는 第4次 및 第5次計劃 延長線上에서 본 이런 經濟發展의 調整만이 아니라 社會發展이란 側面을 강조하고 있었다. 第6次計劃의 基本趣旨는 上記 基本目標達成을 위해서 設定한 다음과 같은 重點推進課題에 含蓄하고 있다. 즉

첫째, 經濟社會의 制度發展과 秩序의 先進化

둘째, 產業構造의 改編과 技術立國의 實現

셋째, 地域社會의 均衡發展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

이들 課題는 1988年의 政權交替와 社會意識의 轉換期를 맞아 과거 5차례 있었던 經濟開發指向, 經濟社會發展이라는 時代的 合目的性에 民主化의 進展이라는 條件을 充足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것을 制度發展의 秩序나 地域社會의 均衡發展 또는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이란 推進課題로 轉換한 것이다. 즉 산업고도화시책에 이은 경제적 구조조정을 경제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完成하고자 하는 것이며 80年代를 일관한 이 構造調整期的 특성을 6次計劃에서 뚜렷이 부각시켰다.

＜6차계획의 主要政策方向＞

1) 雇傭機會의 擴大를 위한 適正成長의 持續(雇傭構造改善, 수출의존도 緩和 分配改善의 安定基調)
2) 國際收支黑字基調의 定着과 外債負擔緩和
3) 產業構造調整促進과 技術立國의 實現
4) 地域間均衡發展과 地方經濟의 活性化

5) 國民福祉의 增進과 衡平提高

6) 市場經濟秩序의 暢達과 政府機能의 再定立

한편 社會開發面에 있어서는 1989年까지를 評價한 1990年度 經濟白書(經濟企劃院 發行)에 의하면 福祉施策을 ①經濟成長과 調和를 해가면서 ②全國民의 醫療保險體系確立 ③國民年金制의 擴大運營 ④低所得層의 生活向上支援 ⑤最低賃金制(1988年에 이미 實施)의 擴充 및 ⑥教育의 質的改善 등을 통하여 內實化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不動產投機抑制나 部門間, 地域間 均衡發展과 環境保全施策 등을 產業構造調整의 促進과 並行코자 하였다.

이에 대한 政策的 調整作業은 1989年初에 나온 第6次 經濟社會發展計劃의 修正計劃에서 具體化하였다. 이는 計劃初期年度(1987)의 急激한 經濟成長과 國際收支黑字등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른 對內外構造調整의 必要性이 증대하고 당시 第6共和政出帆을 계기로 한 自律性·公正性의 國民的期待에 부응코자 했던 것이다.

이 修正計劃에서 重點推進課題로 提示한 것은

가. 經濟의 自律化 公平性提高를 위한 制度改善－稅制改革, 不勞所得改革, 金融自律化, 公定去來制強化, 自律的 勞使關係의 定着

나. 疎外階層 및 落後部門에 대한 重點支援－農業生產性向上, 勤勞者·庶民住宅難解消, 農漁民·低所得層의 子女教育問題解決 등

다. 經濟의 開放化와 國際化推進－國際收支管理, 產業構造의 內外需均衡化, 國際協力과 海外投資促進등

을 設定하고 있다. 그것이 1989年以後의 經濟運營計劃에서 구체화한 것이며 經濟白書등은 第6共和政下의 第6次計劃推進方向과 經濟政策效果를 評價한 것이다.

다음은 第6次計劃의 修正計劃에 나타난 主要計劃指標이다.

이 修正計劃은 政權交替期에도 불구하고 經濟社會與件이 成長과 安定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國民의 民主化意識과 自律化指向이 高潮되고 있던 時期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經濟와 社會는 1989年부터 經濟活動의 萎縮과 國際的 開放壓力의 틈바구니에서 成長率鈍化와 輸出不振, 코스트 인플레이션, 勤勞意慾·社會的 成就感의 沈滯 등을 겪고 있다. 社會開發을 위한 각종 制度의 推進과정에서 나타나는

第 6 次 5個年計劃의 修正計劃指標

	1987	1988	1989	1990	1991
經 濟 成 長 (%)	12.0	10.0	8.0	7.5	7.5
1 人 當 GNP (경 상 弗)	2,826	3,600	4,270	4,840	5,500
輸 出 (억 불)	473	575	640	705	795
輸 入 (억 불)	410	525	610	680	765
經 常 收 支 (억 불)	99	95	75	60	60
都 賣 物 價 (%)	2.7	3.0	3.0	3.0	3.0
消 費 者 物 價 (%)	6.1	6.0~7.0	5.0	5.0	3.0
就 業 者 (천 명)	16,354	16,802	17,154	17,510	17,882
失 業 率 (%)	3.1	3.1	3.4	3.5	3.5

資料：韓國經濟主要政策課題. 1989年1月, 經濟企劃院

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主要總量展望

	單 位	1987	1991	1996	年平均增加率	
					87－91	92－96
經常 GNP	兆원	91	198	357	10.0[1]	7.5[1]
經常 GNP	億弗	1,028	2,727	4,926	21.5	12.5
1人當GNP	弗	2,505	6,316	10,908	20.3	11.5
輸 出	億弗	347	710~720	1,300~1,400	15.6	21~14
輸 入	億弗	316	805~815	1,300~1,400	20.7	10~12
經常收支	億弗	46	80水準	50~70	－	－
都賣物價	%	1.4	9.5內外	6水準	7.4	6內外
消費者物價	%	2.6	3水準	2~3	3.3	2~3
總就業者	千명	15,505	18,505	20,637	3.6	2.2
製造業就業者	千명	3,826	5,048	5,975	5.8	3.4
失 業 率	%	3.8	2.4	2.4	－	

註：1) 實質成長率
資料：主要經濟指標 1992 統計廳

不可避한 拮抗作用이 調整期의 시련으로 表出되었다고 보고 있다. 6次計劃의 全般的인 평가는 최종 目標年度인 1991年을 지나 具體化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근로의욕, 기업의욕을 동시에 소생시키고 市場經濟力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調整期에 突出하는 不可測的인 拮抗要素들을 극복하는 시책과 社會開發의 定着化課題를 浮刻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2年부터 시작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마련하였다.

2. 統計發展施策과 社會福祉關聯統計의 開發

가. 「統計部門計劃」과 統計廳發足

第6次計劃에서 特記할 것은 「統計部門計劃」을 처음으로 獨立된 部門으로 立案編成하여 推進한 것이다.

統計部門計劃의 意義에 대하여는 「國家의 開發政策이 總量的 成長爲主에서 地域間, 産業間, 階層間 均衡發展과 國民福祉의 充實化로 轉換하였다고 해도 開發의 効果를 計量化하기 어려운 統計部門을 長期發展計劃에 包含시키게 된 것은 그간 開發計劃의 성공적 推進에 따른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情報化시대의 요청에도 있겠지만 통계가 여타부문 計劃樹立의 基礎資料提供과 각 部門의 계획성과를 測定하는 分野로서 갖는 중요성」이라고 指摘하고 있다(「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統計部門計劃」의 머리말, 經濟企劃院, 1986).

그러나 統計에 대한 관심은 第5次計劃(1982－86)에서도 이미 그 修正計劃(1983)에서 國家綜合情報管理體系를 위하여 統計情報의 수요증가에 따라 調査統計體系를 정비하고 統計情報銀行을 구축해야 함을 課題로 제시하여 이를 추진하였었다. 여기서 統計情報銀行을 흔히 Data Bank 또는 Data Base라 해서 統計情報集中管理機構 또는 情報基軸을 말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統計部門에 대한 中長期發展計劃이 具體化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6次計劃에서는 政府機能속에 行政電算化등 國家統合情報管理體系擴充을 추진하면서 統計制度의 發展을 별도의 部門으로 다루고 있다.

計劃의 基本戰略으로서는 ①各部門統計의 技術的 發展과 ②一般目的的 國家基本統計의 統合化, 體系化基盤 再定立을 追求하고 있으며 主要政策方向으로서는

첫째, 統計의 質的改善 및 開發 ; 統計作成基準의 改善, 地域統計作成體系構築, 새로운 統計의 開發 및 統計分析業務의 效率化,

둘째, 統計情報管理의 改善과 移用의 擴散 ; 統計情報의 綜合的 管理, 각종統計資料의 普及 및 活用強化

셋째, 統計作成機能의 強化 ; 國家基本統計의 統合體系化, 統計專門人力의 養成 및 資質向上 資料處理機能의 強化를 推進한다.

80年代後半부터 實施한 統計活性化를 위한 制度的 補完과 각종 統計調査들은 上記한 80年代의 經濟社會構造調整時期에 統計部門 中長期發展計劃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國家中央統計機構로서 國家統計業務全般에 걸친 中樞役割을 하는 統計廳은 ① 統計의 基準設定과 綜合調整, ②國家基本統計의 生産 ③統計情報의 綜合管理와 普及을 그 主要機能으로 定着하였고 여기에 1991年 9月 統計研修院의 設立과 함께 統計研修機能이 제자리로 追加되었다.

나아가 國家統計行政의 長短期發展計劃을 樹立하고 그를 施行하면서 國家統計制度改善과 地域統計發展을 推進하여 經濟社會의 中長期發展에 先導機能을 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 80年代라는 構造調整期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발하고 수행해온 統計發展施策으로 中央 및 地方官廳과 公共機關의 統計活動은 伸張되어 왔으나 아직도 調査統計局을 비롯한 다른 統計機關들도 날로 增大해 가는 새로운 統計의 開發과 統計需要를 充當하기에는 組織面에서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 특히 統計專門人力의 不足과 그런 人力의 組織化로 誘引할 制度的 要件을 改善해야 할 分野가 많이 尙存해 있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統計에 대한 行政風土나 國民의 理解度가 아직 所望水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統計改善發展과 開發에 沮害要因이라고 認識하고 있다.

統計에 대한 國民的 認識提高를 위하여서는 現存하는 각종 國公立統計機關과 함께 民間部門에서의 統計研究 및 그 振作活動을 위한 廣範圍한 參與를 促進하는 機構의 設立을 촉진하고 있다. 1990年을 전후하여 統計廳傘下의 6個統計團體도 이 취지에 따라 설립한 것이다. 다음은 1990年 4月 1日 現在 統計經歷期間別 및 學

歷別 國內統計人力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機關別 統計人力現況 (統計經歷期間別)

(단위 : 명)

	총 계			통계 기획 분석			통계 행정 지원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총 계	5,148	2,706	2,442	775	563	212	349	195	154
- 중앙정부기관	3,714	1,439	2,275	372	221	151	278	138	140
○ 조사통계국	1,286	548	738	165	49	116	165	96	69
○ 농림수산부	2,056	585	1,471	54	34	20	100	32	68
• 전 담	2,026	557	1,469	35	15	20	100	32	68
○ 보건사회부	71	61	10	38	33	5	10	7	3
• 전 담	23	18	5	5	5	—	10	7	3
○ 노 동 부	96	69	27	16	13	3	3	3	—
• 전 담	23	17	6	5	2	3	3	3	—
○ 기 타	205	176	29	99	92	7	—	—	—
- 지방자치단체	731	706	25	87	82	5	37	33	4
○ 본 청	151	140	11	87	82	5	37	33	4
• 전 담	148	37	11	85	80	5	37	33	4
○ 시·구·군	580	566	14	—	—	—	—	—	—
- 지정기관	703	561	142	316	245	71	34	24	10
○ 한국은행	261	220	41	111	96	15	21	13	8
• 전 담	144	21	23	89	78	11	21	13	8
○ 한국산업은행	48	45	3	11	8	3	—	—	—
• 전 담	10	7	3	9	6	3	—	—	—
○ 기 타	394	296	98	194	141	53	13	11	2

	전산 전문 요원			자료검사			자료입력			자료수집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총 계	142	63	79	349	266	83	205	125	77	3,328	1,506	1,822
- 중앙정부기관	130	51	79	234	164	70	190	115	75	2,510	750	1,760
○ 조사통계국	67	29	38	66	25	41	57	30	27	766	329	437
○ 농림수산부	46	11	35	53	42	11	127	79	48	1,676	387	1,289

	전산 전문 요원			자료검사			자료입력			자료수집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5년 미만	5년 이상
• 전　　담	46	11	35	43	34	9	126	78	48	1,676	387	1,289
○ 보건사회부	5	3	2	15	15	—	3	3	—	—	—	—
• 전　　담	5	3	2	—	—	—	3	3	—	—	—	—
○ 노　동　부	—	—	—	24	20	4	—	—	—	53	33	20
• 전　　담	—	—	—	15	12	3	—	—	—	—	—	—
○ 기　　타	12	8	4	76	62	14	3	3	—	15	1	14
— 지방자치단체	—	—	—	24	22	2	3	3	—	580	566	14
○ 본　　청	—	—	—	24	22	2	3	3	—	—	—	—
• 전　　담	—	—	—	23	21	2	3	3	—	—	—	—
○ 시·구·군	—	—	—	—	—	—	—	—	—	580	566	14
— 지 정 기 관	12	12	—	91	80	11	12	10	2	238	190	48
○ 한 국 은 행	—	—	—	48	40	8	—	—	—	81	71	10
• 전　　담	—	—	—	34	30	4	—	—	—	—	—	—
○ 한국산업은행	—	—	—	3	3	—	—	—	—	34	34	—
• 전　　담	—	—	—	1	1	—	—	—	—	—	—	—
○ 기　　타	12	12	—	40	37	7	12	10	2	123	85	38

資料：統計廳

機關別 統計人力現況 (學歷別)

(단위：명)

	총　　계			통계 기획 분석			통계 행정 지원		
	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총　　계	5,148	3,481	1,667	775	145	630	349	237	112
— 중앙정부기관	3,714	2,749	965	372	80	292	278	188	90
○ 조 사 통 계 국	1,286	844	442	165	38	127	165	103	62
○ 농 림 수 산 부	2,056	1,750	306	54	15	39	100	79	21
• 전　　담	2,026	1,747	279	35	15	20	100	79	21
○ 보 건 사 회 부	71	16	55	38	4	34	10	5	5
• 전　　담	23	9	14	5	1	4	10	5	5
○ 노　동　부	96	75	21	16	3	13	3	1	2
• 전　　담	23	16	7	5	1	4	3	1	2
○ 기　　타	205	64	141	99	20	79	—	—	—

	총 계			통계 기획 분석			통계 행정 지원		
	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 지 방 자 치 단 체	731	556	175	87	40	47	37	24	13
○ 본 청	151	85	66	87	40	47	37	24	13
• 전 담	148	82	66	85	38	47	37	24	13
○ 시 · 구 · 군	580	471	109	—	—	—	—	—	—
— 지 정 기 관	703	176	527	316	25	291	34	25	9
○ 한 국 은 행	261	83	178	111	12	99	21	19	2
• 전 담	144	50	94	89	10	79	21	19	2
○ 한국산업은행	48	10	38	11	—	11	—	—	—
• 전 담	10	—	10	9	—	9	—	—	—
○ 기 타	394	83	311	194	13	181	13	6	7

	전산 전문 요원			자료검사			자료입력			자료수집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총 계	142	50	92	349	210	139	205	184	21	3,328	2,655	673
— 중앙정부기관	130	49	81	234	151	83	190	173	17	2,510	2,108	402
○ 조사통계국	67	16	51	66	46	20	57	49	8	766	592	174
○ 농림수산부	46	31	15	53	44	9	127	118	9	1,676	1,463	213
• 전 담	46	31	15	43	41	2	126	118	8	1,676	1,463	213
○ 보건사회부	5	—	5	15	4	11	3	3	—	—	—	—
• 전 담	5	—	5	—	—	—	3	3	—	—	—	—
○ 노 동 부	—	—	—	24	19	5	—	—	—	53	52	1
• 전 담	—	—	—	15	14	1	—	—	—	—	—	—
○ 기 타	12	2	10	76	38	38	3	3	—	15	1	14
— 지방자치단체	—	—	—	24	18	6	3	3	—	580	471	109
○ 본 청	—	—	—	24	18	6	3	3	—	—	—	—
• 전 담	—	—	—	23	17	6	3	3	—	—	—	—
○ 시 · 구 · 군	—	—	—	—	—	—	—	—	—	580	471	109
— 지 정 기 관	12	1	11	91	41	50	12	8	4	238	76	162
○ 한 국 은 행	—	—	—	48	28	20	—	—	—	81	24	57
• 전 담	—	—	—	34	21	13	—	—	—	—	—	—
○ 한국산업은행	—	—	—	3	1	2	—	—	—	34	9	25
• 전 담	—	—	—	1	—	1	—	—	—	—	—	—
○ 기 타	12	1	11	40	12	28	12	8	4	123	43	80

資料：統計廳

第6次計劃의 統計部門計劃이나 또는 政策當局에서 推進해야 할 統計施策은 이들 問題를 解消코자하는 각종 制度의 補完이다. 이를 위하여 1990年代에 들어서면서 上記問題들을 講究하고 제시한 施策方向은 다음과 같다.

統計作成機關機構表(1985年 4月 現在)

1. 政府機關

- 經濟企劃院 — 調査統計局
  - 統計計劃官
  - 統計管理課
  - 庶務課
  - 基準課
  - 調査管理課
  - 人口統計課
  - 社會統計課
  - 産業統計課
  - 流通統計課
  - 統計分析課
  - 資料管理課
  - 資料處理課
  - 地方事務所(11)
- 總務處 — 企劃管理室 — 行政管理擔當官
- 科學技術處 — 情報計劃局 — 綜合計劃課
- 國家報勳處 — 企劃管理室 — 電算統計擔當官
- 外務部 — 〃 — 行政管理擔當官
- 內務部
  - 地方行政局 — 指導課
  - 地方開發局 — 새마을企劃課
  - 地方財政局 — 地籍課
- 財務部 — 企劃管理室
  - 調査統計擔當官
  - 電算處理擔當官
- 法務部
  - 企劃管理室 — 行政管理擔當官
  - 矯正局 — 作業指導課
  - 出入國管理局
- 國防部 — 計劃評價官室 — 管理分析擔當官
- 文教部 — 企劃管理室 — 行政管理擔當官
- 農水産部 — 企劃管理室

農水產統計官
- 統計管理擔當官
- 農水產統計擔當官
- 流通經濟統計擔當官
- 水產統計擔當官

地方農業統計事務所(9)

- 商　工　部 — 企劃管理室 — 行政管理擔當官
- 建　設　部 — 道　路　局 — 道路計劃課
  - 住　宅　局 — 建　築　課
- 保健社會部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交　通　部 — 輸送調整局 — 調査統計課
- 遞　信　部 — 企劃管理室 — 企劃豫算擔當官
- 文化公報部 — 企劃管理室 — 行政管理擔當官
- 勞　動　部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動力資源部 — 資源開發局 — 企　劃　課
- 調　達　廳 — 企劃管理官 — 行政管理擔當官
  - 調　整　局 — 資料管理課
- 山　林　廳 — 林　政　局 — 林　政　課
- 專　賣　廳 — 企劃管理官 — 電算擔當官
- 國　稅　廳 — 資料管理官
- 關　稅　廳 — 關稅調査局
  - 電算通信課
  - 關稅調査課
  - 統　計　課
- 兵　務　廳 — 企劃管理官 — 行政管理擔當官
- 水　產　廳 — 漁　政　局 — 製　造　課
- 工業振興廳 — 企劃管理官室 — 行政管理擔當官
- 特　許　廳 — 管　理　局 — 資　料　課
- 鐵　道　廳 — 企劃管理官 — 營業開發擔當官
- 海運港灣廳 — 企劃管理官 — 電算擔當官
- 環　境　廳 — 企劃管理官 — 統計擔當官

2. 地方自治團體

- 서울特別市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釜山直轄市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大邱直轄市 — 企劃管理室 — 企劃擔當官
- 仁川直轄市 — 企劃管理室 — 企劃擔當官

- 京　畿　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江　原　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忠淸北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忠淸南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全羅北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全羅南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慶尙北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慶尙南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 濟　州　道 ——— 企劃管理室 ——— 統計擔當官

3. 指定機關(42個機關)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調　査　部 ——— 調 査 1 課
  調 査 2 課
  資　料　課
-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 調　査　部 ——— 統計調査課
  金融調査課
  經營調査課
- 大韓建設協會 ——— 調　査　部 ——— 經營調査課
  統計調査課
- 大韓商工會議所 ——— 調　査　部 ——— 經濟調査課
  產業調査課
  資　料　課
  流　通　部 ——— 流　通　課
  物　價　課
  商　易　課
-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 調　査　部 ——— 市場調査課
  經營調査課
  電　算　課
- 韓國機械工業振興會 ——— 調　査　部 ——— 調 査 1 課
  調 査 2 課
  資　料　課
- 醫療保險管理公團 ——— 企劃調査室 ——— 調　査　課
  電　算　室
- 韓國教育開發院 ——— 企劃調整室

- 韓國保險公社 — 調 査 部
  - 統 計 課
  - 調 査 3 課
- 大韓住宅公社 — 住宅研究所 — 調 査 課
- 農業振興公社 — 農 業 部 — 農業經濟課
- 韓國道路公社 — 企劃管理室 — 企 劃 課
- 韓國證券去來所 — 調 査 部 — 統 計 課
- 大韓結核協會 — 疫 學 部 — 調査研究課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 技術調査部 — 調査統計課
- 大韓生命保險協會 — 企劃調査部 — 調査統計課
- 大韓紡織協會
  - 企劃調査課
  - 統計刊行課
- 韓國土地開發公社 — 調 査 部 — 地價調査課
- 國際觀光公社 — 企劃調査室 — 統 計 課
- 韓國銀行 — 調査第2部
  - 金融統計課
  - 産業分析課
  - 物價調査課
  - 國民所得課
  - 新國民計定專擔班
- 韓國産業銀行
  - 調 査 部 — 産業調査3課
  - 企劃指導部 — 第 3 課
- 國民銀行 — 調査開發部 — 統 計 課
- 中小企業銀行 — 調 査 部 — 統計調査課
- 韓國住宅銀行 — 調 査 部 — 統計調査課
- 農業協同組合中央會 — 調 査 部
  - 農業經濟課
  - 流通調査課
  - 金融調査課
  - 經營調査課
  - 農村開發調査課
- 韓國電力公社 — 調 査 部 — 經營分析課
- 證券監督院 — 調 査 部 — 統 計 課
- 韓國標準研究所
  - 電 算 室
  - 標準調査室
- 中央企業振興公團 — 情報資料部

- 韓國寄生蟲撲滅協會 — 調査研究課
- 韓國纖維產業聯合會 — 企劃調査部 — 情報管理課, 情報調査課
- 國土開發院 — 電 算 室
- 韓國動力資源研究所 — 에너지統計調査分析室(서울事務所)
- 韓國電氣通信公社 — 企劃管理室 — 經營分析課
- 韓國開發研究院 — 研究員室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 調査評價部 — 調査統計擔當室
- 韓國鑑定院 — 企劃調査部
- 韓國生產性本部 — 產業經濟調査部
- 全國經濟人聯合會 — 調 査 部 — 調 査 1 課, 調 査 2 課
  產 業 部 — 總 括 課, 產 業 1 課, 產 業 2 課
- 韓國經營者協會 — 調 査 部 — 經 濟 課, 法 制 課
- 韓國鐵鋼協會 — 統計資料部 — 統 計 課, 資 料 課
- 韓國貿易協會 — 調 査 部 — 統 計 課, 電子計算所

① 統計專門人力의 確保와 이들의 離職防止 및 高級專門要員의 特採擴大 등 制度的 誘引策을 講究한다.

② 統計知識의 普及과 技法의 擴散, 專門人力의 持續的 養成을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統計研修院을 設立한다.—이에는 기존의 韓國開發研究院에 統計研究開發部署를 설치하는 것도 包含한다.

③ 統計情報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統計綜合電算網을 構築한다.

④ 政府各部處別로 統計專擔部署를 指定하고 部處間 統計協議會를 設置한다.

⑤ 中央統計機構를 擴充하고 이의 기능을 實質的으로 發展시킨다—이는 1991

年에 統計廳 發足으로 具體化하였다.

統計廳 발족으로 • 統計政策의 總括調整, • 統計豫算의 審議, • 國家基本統計의 生産이라는 機能이 有機的으로 結合해서 國家統計를 均衡的으로 育成할 制度的 基盤을 갖추게 되었다.

80年代後半 특히 第6次經濟社會發展計劃 期間중의 統計發展施策은 90年代와 21世紀를 앞둔 經濟社會構造調整期의 統計需要에 對應하기 위하여 1991年에 統計廳이 發足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통계는 機構, 體制, 機能面에서 획기적 발전의 基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1991年 4月에는 統計情報管理 및 供給體制構築의 일환으로 統計情報시스템(KOSIS)을 開發하고 9月에는 統計人力 및 要員養成을 위한 統計硏修院이 發足하였다.

나. 80年代後半에 실시한 主要統計調査

1985年 11月 1日을 基準으로 실시한 第13次 「人口 및 住宅센서스」에 이어 1990年에는 이를 「人口 및 住宅總調査」로 改稱하여 第14次 人口住宅總調査를 실시하였다. 1990年總調査에서 밝혀진 人口는 43,520천명(暫定集計)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5年 總人口調査資料를 利用하여 1986年의 第6次5個年計劃에 人口部門計劃을 作成하면서 1985~2023年間의 人口를 推計하였고 1988年에는 出生率低下를 勘案한 修正推計人口資料와 地域別(市道單位)將來人口를 추계하였다.

農業총조사도 1985年 12月 1日現在와 1990年 12月 1日 現在로 실시하였는데 1990年에는 漁業總調査도 실시하면서 또한 山林基本調査를 航空寫眞에 의해서 실시하였다. 이들 農林水産部門의 總調査結果로 그와 관련한 基本統計調査의 標本틀도 改編하였다. 農家經濟調査는 1987年에, 漁家經濟調査는 11月에 改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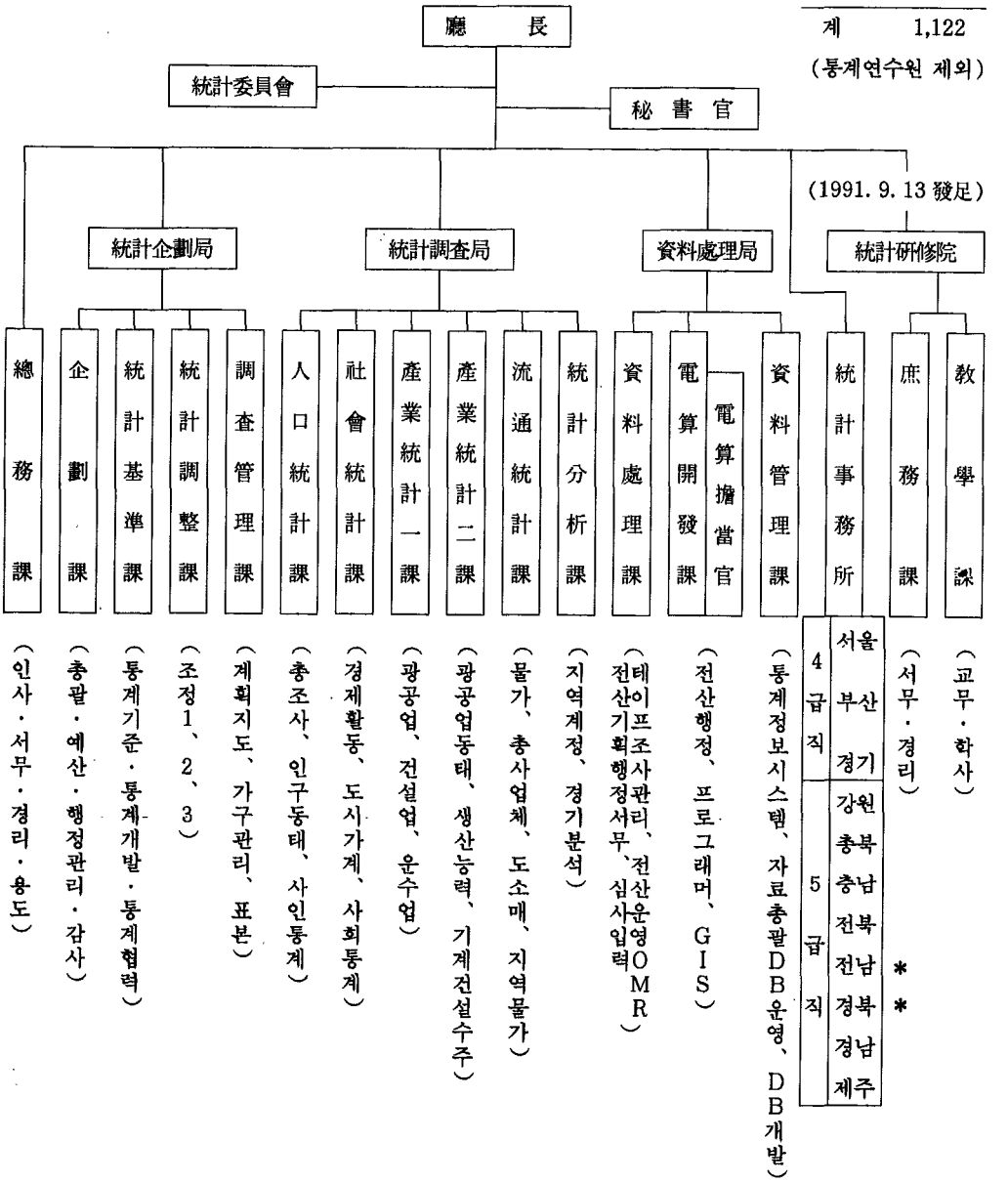
鑛工業總調査는 1984年에 産業센서스로 名稱을 바꾸고 1988年度基準 調査는 1989年에 실시하였는바, 産業生産指數, 生産者出荷指數, 生産者製品在庫指數 및 生産能力, 稼動率調査(指數), 그리고 勞動生産性指數(韓國生産性本部)등은 1988年부터 1985年基準指數로 改編하였다.

統計廳機構(1991. 1. 10 現在)

<정원>

별정직	552
일반계	287
기능직	283
계	1,122

(통계연수원 제외)



주 : *는 1991. 9. 13에 4급소장으로 승격됨.

뿐만아니라 都賣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등 物價變動의 基準年度도 같은해에 1985年 基準으로 개편하였음은 물론이다. 1986年에는 第6次都小賣業센서스와 總事業體調査를 실시하였고 에너지總調査(센서스)는 1987年에 第3回次를, 또 1990年에는 第4回次를 실시하였다.

國民所得推計는 1986年에 國際聯合(UN)에서 勸告하는 新SNA에 의한 新國民計定으로의 移行을 完了하였고 産業聯關表는 1985年表를 1988年에 發表해서 1986年延長表도 作成하였다. 1987年에 標本調査로 出發한 서비스業統計調査는 1988年에 第1回調査에 이어 1990年에 第3回調査를 실시하였다.

한편 1959年以來 O.E.C, 韓國銀行 및 內務部 등에서 開發해서 推計해오던 地域所得統計는 1983年부터 調査統計局에서 綜合開發에 착수하여 이윽고 1989年에 一般統計로 作成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內部資料로 利用하고 있다.

1988年에는 第3回國富調査를 실시하고 1991年에는 1986年에 실시한 總事業體調査를 5年週期로 調査하였다.

이상은 1990年을 전후하여 3年, 5年 또는 10年週期로 실시하는 主要統計들을 열거한 것이고 그밖에도 政府樹立以來 실시해서 지속해 온 각종 月別, 分期別, 半期別, 내지 年間 실시의 繼續統計는 시일이 갈수록 개선·정교해지면서 실시하였음은 물론이다.

1990年 5月 31日 現在 86個機關에서 352種의 統計를 統計法上의 指定統計 또는 一般統計로 승인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중에서 1980年代後半에 새로히 出現한 統計들을 보면 이 시기의 社會開發, 構造調整이라는 時代的 特性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선 調査統計局에서 새로 착수한 統計는 다음과 같다.

都小賣業統計調査를 1988年 7月에 月別調査로 承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月 5日에는 서비스業統計調査를 承認받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業統計調査(一般統計 第111－21－15號로 指定)는 經濟社會構造의 변화에 따라 國家經濟에서 차지하는 서비스産業의 比重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統計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서비스産業分野의 經營構造와 運營實態를 把握하여 經濟各分野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統計作成現況(1990. 5. 31現在)

	統計作成機關數	統計作成件數				
		計	種類別		作成方法別	
			指定統計	一般統計	調査統計	報告統計
政府機關	41	236	32	204	87	149
中央	26	228	31	197	80	148
地方[1]	15	25	15	10	10	15
指定機關	45	99	4	95	68	31
合計	86	335	36	299	155	180

1) 地方自治團體가 각기 실시하는 作成件數를 別個로 計上함.
가령 常住人口調査는 1件이지만 15個市道分 15個로 함과 같음.

1989年 2月 23日에는 地域所得統計를 承認하여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그밖에 調査統計局에서는 1985年 8月 20日의 財政收支(地方)調査와 1987年 5月 21日의 市中勞賃實態調査(半期別)를 出帆시켰다.

社會開發部門에서 重要한 統計로는 保健社會部와 勞動部 등에서 時代에 부합하는 새로운 統計들을 속속 착수하였다. 保健社會部에서는 1988年에 社會福祉施設從事者現況(半期別), 少年·少女家長世帶現況(分期別), 兒童相談所相談現況(分期別) 및 障碍者便宜施設設置現況(年間)을 1988年 2月 22日字로 同時에 承認받았고 7月 13日에는 隔年週期의 患者調査를 發足하였다. 또 1989年에는 國內入養現況調査도 半期別調査로 승인받았다(89. 3. 28).

한편 勞動部에서는 1985年 8月 29日의 屋外勤勞者職種別賃金調査(年別)에 이어 1986年에 勤勞者健康診斷實施狀況報告(年別)를 비롯하여 醫療機關別診斷費支給狀況報告, 休廢業失職者現況報告(以上 分期別)와 海外就業者募集申告 및 送出許可現況報告나 産業災害保險給與支給狀況報告(以上 月別) 등 報告統計를 대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1989年 9月 25日字로 同時에 승인받은 것들이다. 調査統計로는 1989年 2月 20日에 事業體賃金實態調査(年別)와 勤勞者生計費調査(半期別)를 承認받아 실시한 것이다.

그밖에 中央 및 地方官廳과 公共機關(統計指定機關)統計로서 이 시기에 착수한 것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1985年以後)

韓國標準硏究所	國民體位調査	1986. 4.22(年別)
釜山商工會議所	釜山地域製造業體 經營指標調査	1985. 4.30(3 年)
釜山商工會議所	在來市場 經營實態調査	1986. 6.10(3 年)
慶尙北道	慶北企業經營者景氣展望調査	1985. 2. 1(分期)
釜山直轄市	釜山市車輛交通量調査	1985.10. 7(年別)
建設部	建築物統計	1985. 2.15(3 年)
內務部	地方稅 및 稅外收入徵收實績	1986.12.16(月別)
〃	地方稅表作成報告	1986.12.16(年別)
韓國電力公社	家電機器普及率調査	1987. 5.20(2 年)
韓國消費者保護院	國民消費行態 및 意識構造調査	1987.10.12(3 年)
總務處	公務員센서스	1988. 3.14(5 年)
大韓專門建設協會	專門建設業統計調査	1988. 5.21(年別)
韓國生産性本部	附加價値勞動生産性指數	1988.7.7(分期別)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製造業生産設備實態調査	1988. 7. 4(年別)
遞信部	郵便센서스	1988.11.11(3 年)
韓國電氣通信公社	加入電話現況	1988.12. 7(月別)
大韓建設協會	建設業經營分析	1989. 2.10(年別)

다. 社會福祉關聯統計의 開發과 發展

80年代를 통하여 추진한 社會發展施策에 부응하여 실시한 주요통계와 새로 出現한 統計들을 그 명칭과 統計作成의 취지만으로서 이 시대의 構造調整期的 特徵을 잘 알 수 있지만 그 내용들도 좀더 細分化되고 多樣化社會의 指向과 一致하고 있다. 이를 統計的으로 指標化하고자 技法面에서 改善하고 나아가 統計制度 全般으로 波及시키고자 하던 試圖는 이미 1980年代初에 착수하였다.

1981年에 標準産業分類改編案을 檢討하며 그것으로서 「産業統計綜合作成體系構築을 위한 硏究」報告書를 硏究機關(韓國産業經濟硏究所)에 위촉하여 作成케 하였다(81. 12). 이 당시만해도 製造業部門의 問題點을 찾아 韓國産業構造를 제대로

把握하고 經濟統計間의 國際比較를 위한 産業分類改善試案을 作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로써 1982年부터 改編作業에 착수하여 1984年 1月 26日字로 「韓國標準産業分類 第5次改正」을 公表하였고 나아가 그것은 韓國標準貿易分類도 1984年 1月(第6次改正)과 1987年 1月(第7次改正) 및 1988年 1日(第8次改正)의 잇다른 改編으로 이어졌다. 指標의 體系化作業은 1982年에 調査統計局에서 그 당시 政府에서 추진중인 構造調整作業을 支援하며 統計情報의 體系的 蒐集을 목적으로 1982年에 에너지, 自動車, 重機械, 産業支援과 投資審査部門 및 農家所得部門 등에 대한 旣存資料의 整備를 중심으로 統計情報의 Data Base化, 統計技法硏修 등을 연구하여 1983年 2月에 「産業構造調整硏究를 위한 基礎統計」報告書를 出刊하였다.

이러한 指標의 體系化硏究는 1985年에 「經濟指標의 體系化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大韓統計協會 85. 12. 26)와 「經濟指標解說」(88. 2)을 거쳐 「韓國의 經濟指標」(金景中, 每日經濟新聞社 1989. 2. 25)로 이어졌다. 「韓國의 經濟指標」는 1969年 「經濟統計論」(金俊輔 一潮閣 1969) 以來 한국의 經濟統計指標를 學術的으로 集成한 最近의 文獻이 되었다. 그보다앞서 韓國銀行은 指標의 解說資料로서 1983年 12月에 「알기 쉬운 經濟指標解說」을 發刊한데이어 1987, 1990年의 修正版을 내었다.

한편 産業統計體制에 대하여는 商工行政과 관련하여 그 改善方案을 제시한 「國內産業動向把握을 위한 統計體制 改善方案」(産業硏究院 1985. 10)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은 모두 産業經濟를 중심으로 한 80年代의 經濟社會發展이 이루어지기 前段階에서 시도한 것이다. 이무렵 社會開發에 관한 指標의 整備는 保健社會關聯統計를 중심으로 整備하여 왔다. 특히 保社部門統計속에 醫療등 保健分野와 함께 國民生活, 國民健康, 零細民狀態 등은 물론 低所得層生活安定, 社會保障, 國民年金制度, 社會福祉서비스, 健全家庭育成같은 社會生活分野의 指標들이 80年代 中半을 고비로 具體性을 지니고 構築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保健社會部門計劃」과 「統計部門計劃」이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社會福祉關聯統計의 開發은 保社分野와 함께 人口, 經濟活動, 所得, 消費, 敎育, 文化, 住宅 環境, 餘暇, 犯罪 등 人間의 社會生活, 個人生活, 文化生活과

관련한 量的, 質的 福祉指標를 포괄하는 綜合的인 指標로 구성한다. 産業經濟活動의 綜合指標인 景氣綜合指標나 國民經濟의 水準을 綜合한 國民設定과 같은 國民福祉指標의 편성이 이무렵의 관심사항이었다.

그로써 ①經濟成長爲主의 物量中心指標를 補完하고 ②國民의 關心事項과 生活水準등 國民福祉를 測定하는 基礎資料를 提供할 뿐 아니라 ③福祉政策의 方向과 社會發展의 흐름을 測定한다.

韓國에서 社會指標를 編制公表한 經過는 앞서 記述한바와 같거니와 1972年 國聯 統計委員會 第17次會에서 議決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한데 이어 한국에서도 1975年 10月부터 社會指標體系를 開發하고 硏究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1978年에 350個指標를 體系化해서 그중 114個指標를 試案으로 作成하였고 1979年에는 다시금 128個指標로 構成한 「韓國의 社會指標」를 작성하여 이해부터 發表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發表指標는 해마다 增加하여 1982年에는 177個, 1987年에는 225個, 그리고 1990年에는 262個指標로 늘렸고 1991年에는 278個指標를 作成發表하였다.

公表社會指標數 趨移

第4次計劃期間		第5次計劃期間		第6次計劃期間	
年　度	指標數	年　度	指標數	年　度	指標數
		1982	177	1987	225
1978	(114)	1983	187	1988	243
1979	128	1984	198	1989	252
1980	151	1985	208	1990	262
1981	166	1986	215	1991	278

주 : (　)안은 未發表分

社會指標體系는 80年代에 들어서도 持續한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에 따라 종전의 350個指標體系로는 未洽하여짐에 따라 社會變化趨勢에 맞추어 改善할 必要가 대두하였다. 이에 第6次計劃의 開始年度인 1987年에는 다시금 韓國開發硏究院과의 共同硏究로 대폭적인 改善作業을 하여 새로운 經濟·社會發展에 부합하는 9個部

門 468個指標를 체계화하였고 이 新體系에 따라 1988年부터 指標를 作成發表하고 있다.

社會指標의 作成方法으로서는 468個指標體系 중 기존자료로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이를 再分類編制하여 活用하고 그밖에 주로 主觀的 關心事項같은 기존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社會統計調査」(一般統計, 承認番號 第111－21－07號 : 77. 3. 17)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해서 指標化하고 있다.

社會指標體系槪要

部　　門	指　　標　　內　　容	指標數	1990 公表指標數
人　　口	總人口成長, 人口分布와 移動, 人口構成등	46	22
所 得·消 費	所得水準, 所得分配, 消費水準, 貯蓄水準, 經濟的 生活의 安定 등	30	15
雇 傭·勞 使	雇傭構造, 勤勞條件, 安全保護, 職業選擇과 移動, 勤勞者의 自己開發, 非差別待遇, 勞使關係 등	103	45
敎　　育	敎育機會, 敎育資源, 敎育効果 등	64	36
保　　健	健康狀態, 死亡 및 疾病, 保健醫療人力 및 施設, 保健醫療 利用, 營養狀態, 保健醫療서비스 등	48	35
住 宅·環 境	住居狀態, 環境公害, 災害 등	54	42
社　　會	家族形成 및 解體, 家族生活의 安定性, 家族關係의 圓滑化, 家族의 生活安定 및 保護, 社會階層, 社會參與의 增加 등	41	21
文 化·餘 暇	文化活動, 餘暇活動 등	31	20
公　　安	犯罪로부터의 安全, 犯罪以外 事故로부터의 安全, 社會의 安定度, 保安能力 등	51	26
計		468	262

1990年度 社會指標로 作成한 262個指標중 185個는 기존자료를 이용한 것이고 77個는 社會統計調査의 結果를 利用한 것이며 1991年의 社會統計調査(91. 5. 20～5. 31)에서는 약 32,500個標本家口의 15歲以上 人口를 對象으로 34個調査項目을 自計式·他計式竝用方式으로 調査하였다.

3. 民主化·地方化·國際化時代의 統計發展

가. 民主化와 經濟社會發展指標

經濟政策面에서 80年代에 들어서는 市場自律機能中心으로 經濟運營基調를 전환해 왔다. 開發年代에는 資本主義體制이면서도 각종 制度的 規制들이 政府主導型開發戰略과 物價安定, 國內產業保護育成, 投資優先順位 및 그 調整에 따른 財政投融資 등의 必要때문에 存在해 왔다. 그것이 이제는 民間部門의 創意性과 自律性을 찾고자 하는 民間經濟主導型, 自律經濟 또는 經濟民主化등 論爭을 誘發하고 있다.

거기에 開放化가 急進展함에 따라 이미 1988年에 國際通貨基金(IMF) 8條國이 됨으로써 外換自由化의 義務를 준수해야 하고 1989年 11月부터는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11條國으로 移行함으로써 貿易自由化도 촉진받고 「우루과이·라운드」의 多者間協商에서 貿易開放 壓力을 받고 있다.

이처럼 經濟의 民主化, 開放化는 內外的 與件때문에 促進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產業構造高度化나 社會發展構造調整, 그리고 對外市場開放 같은 것이 民主化로 집약되는 전환기에 대처해서 制度的 改善을 可視化해가고 있으며 이제 政策方向도 民主化를 추구한다.

80年代末에 추구하는 당면시책은 政府規制緩和와 競爭을 촉진하며 한편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을 지속해서 公定去來秩序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1990年 經濟白書 : 經濟企劃院). 이런 바탕에서 民間主導의 經濟體質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와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을 추진하는 시책으로 社會經濟 및 行政的 費用과 規制效果, 豫想問題點과 效率化 등을 고려해서 10個產業을 選拔하였다.

①煉炭產業, ②酒類產業, ③精油產業, ④貨物自動車運送產業, ⑤情報通信產業, ⑥醫藥品, ⑦農藥製造業, ⑧配合飼料, ⑨豆類加工製品 및 製粉業이 그것이다.

이들 10個產業에 대하여 參入制限, 價格制限, 設備制限을 비롯한 그밖의 營業活動上의 규제등 競爭制限的인 政府規制를 年次的으로 緩和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1989~90年에도 廣告業, 化粧品, 自動車管理, 버스旅客運送, 海運, 遠洋漁業, 建

設業 및 金融, 證券, 保險業 등 10個産業을 對象部門으로 追加하여 政府規制緩和 方案 내지 規制改善方案을 講究하고 있다. 規制緩和는 競爭促進, 公定去來制度強化를 통한 民間主導, 市場經濟自律化등 經濟民主化를 지향하며 나아가 社會先進化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본 民主化의 進度는 第6次計劃의 主要政策方向에서 市場經濟秩序의 暢達과 政府機能의 再定立에서 骨格을 잡고 있다.

○ 國民과 企業人의 自律 競爭 및 創意에 입각하고 국제화추세에 부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發展定着.

○ 産業活動의 경쟁원리확대와 機會均等化를 위한 公定去來秩序確立

○ 金融自律化의 效率的 推進

○ 對外開放의 擴大와 對外協力機能의 強化

○ 經濟社會發展段階에 부응하는 政府役割과 機能의 再定立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제1항은 經濟民主化를 集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指標로는 國家政策決定過程과, 企業經營主導力 및 消費者行動 等의 樣態變化, 金利등 金融自律性, 公定去來制度監視, 消費者保護施策과 같은 經濟力集中度分析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民主化施策과 관련해서는 흔히 地域所得등 地方統計나 雇傭構造, 教育環境, 生活水準같은 社會統計 및 金融, 財政, 市場經濟의 運營이나 政府規制등과 관련한 企業經營統計 등이 民主化進展에 따른 統計的 指標를 제공하고 있다.

統計廳에서 실시하고 있는 社會統計調査에 의하여 教育機會擴大와 그 充足度, 社會階層의 主觀的意識과 社會的 移動에 관한 評價指標 및 國民의 投票權行使등 政治參與意識과 宗教人口分布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勤勞者들의 勤勞條件에 대한 만족도나 勞動政策에 대한 業界意見調査(大韓商工會議所, 80. 6. 5 승인), 女性의 就業態度, 賃金水準, 勤勞條件등에서 보는 非差別化(差別의 축소경향)등도 民主化와 관련한 指標이다.

國民生活과 관련해서는 保健社會部門의 國民生活實踐調査(保社部)를 비롯하여 國民消費行態 및 意識構造調査(韓國消費者保護院, 87.10.12승인), 家口消費實態調査(統計廳, 5年週期의 指定統計 : 승인번호 111－11－20)와 家口의 所得階層別

分布狀態指標(社會統計調査) 등을 들 수 있고 韓國銀行의 貯蓄市場調査 內容中의 「家計貯蓄 및 家計經濟에 대한 認識」이나 國民銀行의 家計金融利用實態調査는 家計金融의 自律水準을 나타내는 指標가 된다.

1988年 12月에 있었던 金利自由化措置 施行以後에는 「기업경영분석」(韓國銀行 調査部)을 비롯한 각종 기업경영실태, 기업경기전망 등 조사에 기업경영과 금융자율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왔으며, 證券市場, 保險制度分野의 統計도 80年代 후반에 와서 더욱 정비되었다.

끝으로 國家政策의 意思決定과 豫算編成 財政運營에 대해서 「財政收支調査」(調査統計局, 85. 8. 30 승인)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韓國開發硏究院에서는 1981年 以來 國家財政, 豫算과 관련한 主要政策課題를 分析한 「國家豫算과 政策目標」라는 硏究報告書를 매년 發表하고 있으며 그밖에 중요한 單行本報告書로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1985) 「우리나라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1987),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1988) 및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1988)등을 發刊하였다. 또 1989年에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및 「經濟規制와 競爭促進(II)」를 出刊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경제의 民主化와 관련해서 競爭力條件 經濟主體들의 意思決定機能分散과 競爭力條件의 衡平化 등을 主題로 하고 있다.

나. 地方化時代의 統計需要

(1) 地方化時代의 背景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地域割據主義, 封建統治를 排斥해 온 歷史的 傳統때문에 光復과 政府樹立 以後에도 統治行態面에서는 中央執權的 屬性을 지속해 왔으나 反面, 民主主義制度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새삼스럽게 西歐式 分權主義와 地域化, 地方自治를 制度面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當然論理와 그 實施의 時宜性을 두고 論爭과 政治的 마찰로 40年代와 50年代의 진통기를 경과했다.

그런대로 第1共和政 및 第2共和政時代를 통하여 地方自治制度를 可視化해 갔으나 60年代 以後에는 다시금 그 效用性을 두고 그나마 일시 중단하였다. 따라서 開

發年代를 통하여 1～4次 5個年計劃(1962～81)을 추진하면서도 地域 또는 地方化에 대한 時代的 要求는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80年代에 들어서면서 民主化의 進路가 明白해지자 이를 정치적,경제사회적으로 問題化해서 이제는 먼저 經濟社會的으로 地域發展을 추구하기로 하였고 90年代의 政治的 地方化時代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地方化時代에 대한 準備는 80年代에 들어서 本格化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開發政策의 延長으로서 國土計劃과 環境改善의 必要에서 출발하였다. 즉 그 初期段階인 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82～86)에서는 「國土의 均衡發展과 環境保全」(當初計劃 : 1981 發表), 또는 「國土의 均衡發展과 生活環境改善」(修正計劃 : 1983發表)이라고 해서 國土의 合理的 利用과 都市圈의 健全한 發展 및 社會間接資本의 均衡的 擴充을 통하여 生活環境을 改善하는 것을 重要視하였다. 그것이 80年代中盤부터 主題를 지역개발의 필요성으로 전환하면서 구체화한다.

1985年 9月 30日에 發表한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韓國開發研究院)에서는 國民福祉의 增進과 地域發展이란 大前提下에 都市圈人口 및 機能分散, 地方生活圈과 地域經濟基盤造成 그리고 土地·水資源의 利用管理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로소 地方·地域問題를 浮刻시켰다. 이로써 第5次 計劃의 「環境保全」「生活環境改善」을 「國民福祉의 增進」으로 하고 또 「都市圈의 健全한 發展」이 「首都圈人口 및 機能分散」과 「地方生活圈」「地域經濟基盤造成」으로 發展한 것이다. 그것은 「能率과 衡平을 토대로한 經濟先進化와 國民福祉의 增進」을 基本目標로 설정한 第6次計劃(1987～91)으로 承繼되어 重點推進施策의 하나로 「地域社會의 均衡的 發展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이 出現한다. 동시에 이 第6次計劃에 처음으로 「地域開發部門計劃」(經濟企劃院), 「地方發展部門計劃」(內務部)이 獨立한 分野로 틀을 갖춤으로써 이제부터 地方化時代를 대비해서 구체적 설계를 착수하였다.

그 基本政策方向은 「地域間均衡發展과 地方經濟의 活性化」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地域間 均衡發展推進, ②社會間接資本의 均衡配置, ③國民生活便益施設의 均衡供給, ④地方의 企業活動與件改善과 ⑤地方自治團體의 經濟·商工行政機能強化를 지향한다. ①, ②, ③項은 地域均衡施策을 強調하고 ④, ⑤項은 與件과 機

能面을 同時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⑤項은 地方行政의 機能을 전통적인 農業部門, 農家所得對策爲主에서 商工行政面을 補完해서 地方行政의 體制發展, 自律機能強化에 기여케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地方自治制實施와 地域의 均衡있는 發展」(內務部, 「地方發展部門計劃」)이라는 國家的 課題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第6次計劃의 地方化施策은 第5次計劃 당시 「國土의 均衡發展과 環境保全」이라는 目標와 비교할 때 불과5년만에 상당한 發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地方化의 초기단계에서 추구하던 國土의 均衡發展이란 課題는 第5次 및 第6次 計劃에서 地域開發과 관련해서 여전히 大前提로 設定하고 있었으나 純粹한 意味의 國土計劃은 별도의 「國土綜合開發計劃」에 의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70年代부터 10年單位로 추진하던 것인데 第1次國土綜合開發計劃(1972~81)에 이은 第2次計劃(1982~91)을 1981年 12月末에 공표하였다. 이 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은 당초 人口의 地方定着과 均衡있는 國土開發을 目標로 구성하였었으나 그간 首都圈集中抑制와 地域開發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地方都市와 農漁村의 相對的 落後가 더욱 顯在化하자 1987年 1月에 이를 地域經濟圈 形成을 爲主로 하는 修正計劃을 公表(大統領公告 第92號 : 87. 1. 19)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第6次經濟社會發展計劃과 그 地域發展部門計劃 및 第2次國土綜合 開發計劃의 修正計劃에서 추구하던 地方化의 課題는 결국 國土의 균형개발과 地方經濟活性化로 結集할 수 있으며 이는 高度成長에서 派生한 地域間 不均衡發展을 시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의 潛在力을 擴大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90年代 地方自治制實施를 앞둔 80年代의 主要政策課題였다.

＜地方經濟의 現況＞

	首都圈	%	地 方	%	計	%
○ 總 面 積(1986)	11,675	11.8	87,498	88.2	99,173	100.0
○ 人口(千人)(1986)	15,804	39.1	24,616	60.9	40,420	100.0
○ 製 造 業(1987)						
• 企業體數(個)	31,049	57.1	23,344	42.9	54,393	100.0
• 生產額(10億원)	49,654	43.6	64,131	56.4	113,791	100.0

＜廣域經濟圈域別 工業現況＞

(構成比 : 全國＝100.0)

經濟圈域	工業敷地面積(1986)		鑛工業生産額(1987)	
	(千m²)	構 成 比	(10億원)	構 成 比
○ 首　都　圈	87,006	32.2	49,766	43.2
○ 東　南　圈	127,800	47.3	46,929	40.8
○ 中　部　圈	20,246	7.5	6,768	5.9
○ 西　部　圈	28,280	10.5	9,353	8.1

우선 이를 위한 對策方向을 요약하면

첫째 首都圈地域의 産業集中을 억제하고

둘째 工業團地의 計劃的 發展을 통한 地方工業化, 農漁村地域 工業化 및 農工地區開發을 促進하며

세째 특히 地域間 發展隔差解消를 위하여 中部圈과 西南圈地域의 工業化를 促進하고

네째 동시에 地方企業에 대한 金融支援 擴大와

다섯째 地方工業化의 關鍵이 되는 社會間接資本投資의 擴大 등을 摘記할 수 있다.

아울러 第6次經濟社會發展計劃에 統計部門計劃을 입안하면서 기존의 지역통계 작성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地域統計 需要와 整備方案을 모색하는 硏究(「地域統計整備方案硏究」, 國土開發硏究院 1986年 12月)도 地方統計와 地域開發間의 同時性을 보인 것이다.

(2) 地域統計의 發展

80年代 後半부터 活潑해진 地方化의 促進과 함께 統計分野에서도 地域統計, 地方統計의 開發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70年代까지의 總量的 成長政策과 國民經濟開發戰略 때문에 각종 統計指標로 전환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地域統計란 일정한 地域內의 特定한 事實을 주어진 目的에 따라 計量的으로 把握한 숫자이다. 즉 對象으로 하는 調査單位의 地域的 分布를 分析目的에 따라 全

國을 일정한 小地域으로 分割하고 이러한 小地域單位로 調査나 추계에 의해서 作成된 統計를 말한다. 地域統計作成에 使用되는 地域單位는 邑·面·洞, 市·郡, 市·道 등의 行政區域이 一般的이나 分析目的에 따라 行政區域과는 다른 特定地域을 對象으로 作成되기도 한다.

현재의 地方統計는 중앙정부각부처에 제출하는 行政報告統計가 약 200種에 이르고 있다. 이는 韓國史의 中世以來 發展해온 報告(啓告)制度慣行에 따라 그 지역의 地方自治團體에서 資料를 蒐集하여 보고하는 一線地方官廳의 主要機能中에 하나로서 現代的인 統計調査技法이 發達하기 전까지는 國家統計의 實體的 地主였고 현재에도 그 位置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建國初期에는 統計槪念이 行政槪念과 混同해 있었고 報告樣式도 統一性이 없었을 뿐 아니라 統計業務의 責任도 擔當部署別로 重複 또는 散在하여 報告統計의 信賴性과 有用性에 스스로 制限을 받았다. 朝鮮時代의 각종 啓告式(經國大典)이나 事目(條例), 또는 總督府時代의 報告例(規程)보다 後退한 狀態였다.

(가) 光復前의 統計活動(1945年 以前)

人口統計의 歷史는 古代부터 진작 시작하였고 統一新羅때부터는 朝鮮末期까지 三年週期로 調査하였으나 近代的 意味의 人口統計는 1896年부터는 戶口調査規則에 의하여 每年 實施한 戶口調査와 1909年 民籍法의 制定으로 戶籍申告에 의한 人口統計가 地方行政系統을 통하여 作成한 것이 그 효시로서 오늘날 常住人口調査라 불리우는 가장 오랜 歷史를 갖고 있는 人口統計이다. 그러나 近代統計的 方法에 의한 人口調査를 實施한 것은 1925年에 國勢調査라는 名稱으로 實施한 것이 처음이며 그후부터, 每 5年마다 地方行政機關을 통하여 實施하였다.

(나) 光復以後 1960年까지의 統計活動

1945年 8月 15日 光復과 더불어 美軍政廳과 過渡政府(1946年)의 庶務處에 統計署를 設置하여 國家統計業務를 擔當하였고, 한편 地方行政機關에서는 各種 報告資料의 圓滑한 蒐集을 위하여 洞·邑·面 單位에 統計專擔要員을 配置, 正確한 基本統計作成에 注力하였다.

1948年 政府樹立과 同時에 統計署는 公報處 統計局으로 改編되었고 또한 農林部에도 農業統計課가 設置되어 역시 地方行政機關을 통하여 統計資料를 蒐集하였다.

그러나 地方行政機關에서는 中央 各部處에서 要求하는 各種 報告統計의 現地 資料蒐集機能만을 遂行하였기 때문에 地方統計 自體의 專擔組織은 有名無實하였다.

1955年 2月에 統計局이 從來의 公報處에서 內務處로 소속이 바뀌면서, 行政系統을 통한 統計報告體系를 비로소 정비해 나아갔다.

(다) 統計基盤의 整備(1960年代)

地方行政機關의 統計活動은 中央 各部處가 要求하는 資料를 蒐集·報告하는 것이 主軸을 이루었다. 60年代의 開發政策과 함께 統計局이 經濟企劃院 소속이 되고 나서 1962年에 各市道에다 內務局內에 統計係를 설치해서 여기에 地方統計業務를 집약시켜 각종 報告統計는 물론 人口나 農業 또는 地域產業活動과 관련한 調査統計業務도 담당하게 하였다. 地方行政報告統計는 1965年부터 실시한 主要行政統計調査를 통하여 行政統計에 대한 槪念, 用語, 定義 및 基準 등의 統一과 報告統計作成의 體制化 등 全般的인 行政報告統計業務整備로 轉期를 이룰수 있었다. 이에는 약 2년간의 시일을 소요하였다.

調査統計로는 常住人口調査, 地域別 經濟活動人口調査가 각 市·道에서 共通的으로 實施하였으며 이 외에도 각 市·道가 自體的으로 作成하는 統計로서 서울시가 勞動力調査外 3種, 京畿道가 農家經濟調査와 米麥生產費調査, 忠淸北道가 都市家計調査外 3種, 慶尙北道가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產費調査外 3種, 全羅南道가 人口移動報告 統計 等을 作成하였다.

그러다가 第1次5個年計劃이 끝날 무렵인 1966年부터 統計係를 統計課로 승격시키고, 1967年 7月에는 統計課의 機構를 擴大改編하여 각 市道의 內務局 所屬에서 企劃管理室 所屬으로 移管하였고 이와함께 市·郡에는 統計係를 설치하였다. 이들 지방정부의 통계기구를 통하여 市道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작성 편제하는 통계 이외에도 經濟企劃院, 農水產部 등에서 실시하는 大規模 統計調査도 수행했었다.

(라) 總量統計時代(1970年代)

그동안 4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樹立 및 推進過程에서 統計의 重要性은 더욱 強調되었으나 計劃의 目標가 總量的 成長戰略이었기 때문에 國家統計 역시 全國單位統計 爲主로 發展하였지만 그럴수록 地方統計組織의 整備를 促進하였다.

특히 統計組織面에서 볼 때 地方自治團體의 統計機構와는 別途로 經濟企劃院 地方統計事務所와 農林水產部의 地方統計事務所가 設置되어 現場調査機能을 擔當하였다. 이로써 地方統計發展의 轉機를 마련한 셈이며 國家 全體的으로 보면 이 時期에 統計業務의 專門化와 體系化가 이루어졌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75年부터는 각 市道의 統計課를 統計擔當官室로 改稱하고 市·郡單位에는 統計係를 두었다. 이무렵 1974年1月에 農水產部에서는 各市道에 統計事務所(9個道)와 出張所(市·郡)를 設置하고 調査統計局도 1975年 8月14日부터 8個地方統計事務所를 신설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의 統計機構와 함께 全國的인 地方統計調査網을 整備하고 있었다. 80年代에는 勞動部에서도 地方事務所(40個)를 두고 統計專擔職員을 配置하고 있다.

(마) 統計基礎의 再定立(1980年代~)

1980年代에 들어와 開發戰略이 經濟成長爲主에서 成長과 형평을 追求하는 綜合的인 社會開發과 地域的인 均衡發展으로 轉換함으로서 社會衡平을 增進하고 國民生活의 質을 向上하기 위한 社會部門 統計와 地域開發計劃에 必要한 地域統計需要가 크게 增大되었다. 이에따라 社會指標, 景氣綜合指數等 綜合的인 分析·加工統計를 開發하는 한편 國民所得配分推計와 地域所得推計의 改善에도 전력을 경주하였고 동시에 地域所得統計, 地域別生產動態를 把握할 수 있는 地域生產統計 등의 開發이 촉진되고 있다. 다만 統計組織面에서 各 市·道의 統計機構가 비록 課水準으로 擴大되었으나 市·郡單位의 機構는 오히려 縮小되어 庶務統計係로 綜合된것은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統計人力確保와 專門性 提高에 脆弱點이 된다고 할 수 있다.

地方統計發展過程

年 度 別	統 計 組 職	統　　計　　活　　動
○ 光復以前		• 1896年 戶口調査規則 및 同細則制定에 의한 戶口調査 • 1909年 民籍法에 의한 人口動態申告統計 作成 • 1910年부터 戶口調査를 每年 實施 • 1919年부터 土地調査(1928年完了) • 其他 行政報告 統計 作成

年 度 別	統 計 組 職	統 計 活 動
○ 1945. 8～ 1948. 10 (光復後 美軍政時)	• 洞·邑·面에 統計專擔要員配置	• 人口動態統計, 常住人口調査, 國勢調査등 人口關聯統計 調査 • 其他 行政報告統計 作成
○ 1948. 11～ 1955. 1	• 上 同	• 上記 人口關聯統計 調査 • 農耕地 및 農作物生産量統計 調査 • 其他 行政報告統計 作成
○ 1955. 2～ 1961. 6	• 各 市·道 內務局에 統計課設置	• 上 同
○ 1967. 7～ 1969. 12	• 各 市·道 企劃管理室의 統計課로 擴大 改編	• 中央機關實施 大規模統計調査資料 蒐集 • 各 市·道의 常住人口 調査 • 各 市·道의 地域別 經濟活動人口 調査 • 서울市 勞動力 調査 • 서울市 人口動態 標本調査 • 서울市 市民生活實態 調査 • 서울市 個人經濟力 調査 • 서울市 自動車乘客交通量 標本調査 • 京畿道 農家經濟 및 米麥生産費 調査 • 忠北 無煙炭 入荷 및 消費 調査 • 忠北 農業增産 調査 • 全南 人口移動報告統計 • 慶北 農家經濟 및 農産物生産費 調査 • 慶北 家計 調査 • 大邱市 個人經濟力 調査
○ 1970. 1～ 1979. 12	• 各 市·道 劃計 管理室 傘下 統計擔當官(2～3個 系) 設置 • 市·郡에 統計係設置 • 經濟企劃院 傘下에 各地方 統計事務所(8個)設置 • 農林水産部 傘下에 各地方 統計事務所(9個)設置	• 中央機關實施 大規模 統計調査의 資料蒐集 • 各市·道 常住人口 調査 • 各市·道 地域別 經濟活動人口 調査 • 各市·道 統計年鑑發刊 • 서울市 市民所得推計 • 서울市 晝夜間人口 調査 • 서울市 移動人口 調査 • 釜山市 乘客交通量 調査 • 釜山市 橫斷路步行者 調査 • 釜山市 市民階層別 家計所得 調査 • 釜山市 事業體 調査 • 仁川市 經濟活動人口 調査

年 度 別	統 計 組 職	統　　計　　活　　動
		• 京畿道 都市人口 및 住宅 調査 • 城南市 自體實態 調査 • 城南市 人口 및 家口經濟·文化 統計調査 • 江原道 都市家計 調査 • 忠北 都市家計 調査 • 忠南 技術人力資源과 機能別 就業實態調査 • 忠南 農家所得 調査 • 木浦市 經濟活動人口 調査 • 慶北 農家經濟 및 農産物 生産費 調査 • 慶北 새마을所得 調査 • 大邱市 家計 調査
○ 1980. 1~ 1986. 末	• 各市·道 企劃管理室 傘下 統計擔當官 2個係 • 市·郡에 庶務統計係로 綜合縮小 • 經濟企劃院 傘下의 各地方 統計事務所(9個) • 農林水産部 傘下의 各地方 統計事務所(9個) • 勞動部 傘下 各地方事務所(40個)에 統計專擔要員 配置	• 中央機關實施 大規模 統計調査의 資料蒐集 • 各市·道 常住人口 調査 • 各市·道 地域別 經濟活動人口 調査 • 各市·道 統計年鑑發刊 • 慶北 企業經營者 景氣展望 調査 • 釜山市 車輛交通量 調査

우리나라의 각 機關에서 作成하는 法定統計는 1988年 7月 現在 341種이 生産되고 있다. 이 중 過半數의 統計가 全國單位로만 作成되고 있으며, 市道單位 以上의 地域資料를 生産하는 統計는 143種으로 大部分 市道의 行政組織을 통한 報告統計로 作成되고 있다.

地域統計의 現況　　(1988年 7月 基準)

作成機關	合計	調査統計	報告統計	備考
國家機關	128	35	93	
中央	120	28	92	各 市·道2, 서울3, 忠南·慶北·釜山 各1
地方	8	7	1	釜山 商工會議所 8
民間機關	15	14	1	仁川 商工會議所 2 大田 商工會議所 2
合計	143	49	94	

地域統計機構　　(1988年 4月 基準)

區分		機構	入力	備考
中央部署	調査統計局	8個 地方事務所 6 個 出張所	734名	
	農林水産部	9個 地方事務所 141 個 출장소	1,977名	
	勞動部		51名	地方事務所에 1名씩 配置
地方部署	市·道	課單位	164名	各 市道別 7~19名
	市·郡·區	係單位	521名	庶務統計係(各 1~2名)
	邑·面·洞	—	3,386名	他業務와 兼職(各1名)

(3) 地域統計의 開發과 支援體系

앞으로 이러한 地域統計에 대한 需要는 急激히 늘어날 것이며, 地域統計에 대한 重要性은 더욱 強調될 것이다. 왜냐하면 地方自治의 實施로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地域計劃의 樹立을 위해서는 먼저 그 基礎가 되는 部門別 基礎統計가 整備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地域計劃은 地域間의 發展隔差를 解消하고 經濟活動의 地方分散策 등을 包含한 綜合的이고 實踐可能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住宅, 教育, 保健 등 人口의 定住를 위한 福祉政策과 住民의 經濟活動과 直結되는 所得增大施策 및 産業再配置計劃 등이 包含되어야 한다. 따라서 妥當性있는 地域計劃을 立案하기 위해서는 地域住民에 관한 詳細한 統計와 地域別로 區分된 産業別 生産量統計, 流通에 관한 統計등 여러 部門의 統計가 必要할 뿐 아니라 地域所得과 같은 2次統計도 作成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統計部門計劃을 樹立한 第6次計劃에서는 經濟發展計劃의 主要政策중 하나로서「地域統計作成體系의 構築」을 提示하고 있다. 우선 당장은 地域間 均衡發展이라는 時代的 轉換期에 地域計劃의 基礎資料인 地域統計의 長短期發展計劃을 樹立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推進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地域別人口推計開發등 11가지 事業을 設定하고 있다. 즉,

① 地域別 人口推計 開發
② 小地域統計 開發
③ 地域別 雇傭統計 開發
④ 地域別 賃金水準統計 開發
⑤ 市道別 農家·所得資料 生産
⑥ 市道別(鑛工業) 生産指數 作成
⑦ 地域別(製造業) 稼動率統計 作成
⑧ 地域別 社會間接資本 投資實績統計 開發
⑨ 地域別 消費者物價調査 開發
⑩ 地域別 家計調査 開發
⑪ 地域所得推計統計 開發

등이다.

地域所得推計는 1967年부터 內務部에서 당시의 12個市道(서울시除外)를 대상으로「住民所得推計」資料를 작성해서 발표하였으나 그 推計體系나 資料 有效性이 統計的으로 不完全하여 1979年부터는 公表하지 않고 內部資料로만 活用하다가 1986年에 중단하였다. 한편 서울시도 獨自的으로 準備하여 1973年부터 韓國開發研究院(1977年까지)과 高麗大學校(1978, 79년), 서울市立大學(1980年以後) 등 研究機關에 위촉하여「서울市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을 推計 發表하다가 1988年부터 중단하였다.

그러나 統計的으로 體系研究에 의한 본격적인 地域所得推計는 調査統計局에서 1983年부터 이에 대한 計劃樹立과 基礎資料를 수집하면서 출발하였다. 당시 이를 위해 官界·學界의 專門家會合과 UN이나 ESCAP의 統計諮問官도 초빙했었다. 1984年에는 시범적으로 忠淸南·北道에서 1981,82年度分 道內總生産推計를 試算

한 이래 1990年까지 15個市道 전부에 대하여 1985～88年間의 市道別 道內總生産을 推計함으로써 內部準備를 축적하였다. 調査統計局에서는 이를 위하여 基礎資料가 없거나 있더라도 地域所得推計資料로서 活用하기 어려운 部門은 매년 그 前年末을 기준으로 하는 「地域所得 特別調査」와 「市道間 移出入物資 流通量 調査」를 실시해서 市道別로 過去 一年間의 管內最終生産物의 價値創出額을 評價하여 道內總生産을 추계한다.

한편 1988年에 처음 開發해서 1989年부터 分期別로 地域別鑛工業指數(1985年基準)를 發表하면서 分析한 市道別 鑛工業動向(주요 광공산품에 대한 月別生産, 出荷, 在庫量등) 資料도 地域統計分野에 有用하며 地域物價統計도 현재 1985年基準指數를 11個市를 대상으로 편제하고 있으나 1990年 基準指數로 改編하면서 32個都市로 擴大할 豫定이다. 1985年 8月 30日字 一般統計 第111-2-13號로 승인한 (地方)財政收支調査는 地方의 行政機關, 敎育機關 등을 대상으로 每年 調査하고 있는데 아직 公表하고 있지 않으나 地域所得推計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고 있다.

地域統計의 發展과 統計情報의 地方化에는 컴퓨터를 利用한 地域情報體系(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IS)의 開發이 寄與하는 바가 크다. 地域統計資料를 用途에 따라 表現하는 一連의 電算組織體系로서 각종 地域統計情報의 地域別 特性이나 그 추세를 숫자와 색채지도, 도표의 형태로 나타낸다. 小地域(MESH, GRID Square)別로 統計表를 作成하고 行政區域別 統計地圖도 작성하고 있다.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와 「1985年 鑛工業統計調査」의 集計結果를 이용한 「行政區域別統計地圖」를 1988年 12月에 發刊한데 이어 1990年 10月에는 역시 1985年 人口·住宅센서스 集計結果를 이용해서 全國의 首都圈, 中部圈, 嶺南圈 등 3個圈域에 대하여 人口·住宅 및 其他의 主要項目을 地圖로 作成해서 地域別特性을 밝힌 「小地域統計地圖」를 發刊하였다.

한편 地方統計發展을 위한 支援施策으로서는 統計廳 地方統計事務所의 組織과 人力을 補強해서 地域統計開發의 求心點役割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計作成支援을 강화하기 위해서 地方統計公務員을 대상으로 한 統計硏修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해서 제공하며, 統計廳의 經濟統計電算網(KOSIS)을 市·道와 연결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統計供給서비스를 擴大해

地域統計의 改善 및 開發(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統計部門)

部門別	單位事業名	細部改善方案	年度別推進日程 '87	'88	'89	'90	'91
人口部門	地域別 人口推計開發	○ '85年 人口센서스結果와 各種人口動態資料를 活用 2000年까지 市道別 人口 推計 • 人口推計技法 硏究 • 人口推計資料 蒐集 • 人口推計					
	小地域統計開發	○ Mesh技法을 利用, 人口, 産業센서스 資料를 1km²의 小地域으로 分類하여 人口·事業體의 分布파악 등 地域開發計劃資料提供 • '80年人口資料入力 • '85年人口資料入力					
雇傭部門	地域別 雇傭統計開發	○ 月別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規模 擴大를 通한 地域資料生産 • 標本規模擴大 16,500家口→30,000家口 • 5大市 및 道廳所在地市資料 生産					
	地域別 賃金水準統計開發	○ 事業體勞動實態調査의 對象을 擴大하여 地域別 産業別 賃金水準集計					
農林漁業部門	市道別 農家所得資料生産	○ 農家經濟調査標本을 改編하여 市道別 農家所得 集計					
鑛工業部門	市道別生産指數作成	○ 月別 鑛工業動態調査의 標本規模를 擴大하여 市道別 生産統計 作成 • 標本擴大 4,600業體→10,000業體 • 試 算 • 地域生産指數公表					
	地域別 稼動率統計作成	○ 月別 生産能力 및 稼動率 統計의 標本規模擴大를 通한 地域稼動率 作成 • 標本擴大 • 試 算 • 地域稼動率公表					

部門別	單位事業名	細部改善方案	年度別推進日程				
			'87	'88	'89	'90	'91
建設·運輸業部門	地域別 社會間接資本投資實績統計開發	○ 地域單位를 區市郡으로 하여 道別資料 生産 • 統計作成基準改善 • 統計蒐集機能補強 • 資料生産					
物價, 家計, 住宅部門	地域別 消費者物價調査開發	○ 9大都市의 消費者物價調査對象地域을 擴大하여 地域消費者物價統計 作成 • 地域擴大 9大都市→60個市 • 價格調査, 試驗調査 • 加重値算定, 指數品目 確定 • 指數試算 • 指數公表					
	地域別 家計統計開發	○ 月別 都市家計調査 標本 規模 擴大로 地域資料 生産 • 標本改編 • 標本規模決定 • 地域資料生産 ○ 市道自體家計調査 開發 支援					
國民計定部門	地域所得推計統計 開發	○ '86年度 道內 總生産推計 ○ '87年度 道內 總生産推計 – 政府消費支出, 總固定資本形成計定推計 ○ 地域所得推計公表					

나아가기로 하고 있다. 현재 統計廳은 上記 地域情報시스템(GIS)을 이용하여 人口 및 住宅總調査의 調査區要圖를 電算化하는 作業을 推進하고 있다.

한편 地方自治團體 스스로도 각종 새로운 統計를 開發해 가고 있는데 1980年代 後半에 統計法上 승인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統計調査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만, 下記 統計중 ◎表示를 한 것은 1990年 5月 31日 현재의 統計目錄에서 除外된 것이다.

① 常住人口調査(서울을 비롯한 15個市道 全部：1962年부터)

◎ 地域別經濟活動人口調査(서울：1970年부터, 其他市道는 1982－89)

② 人口動態標本調査(서울：1963부터)

③ 市民所得推計(서울：1973부터)

④ 人口移動調査(서울：1976부터)

⑤ 生活水準 및 意識調査(서울：1989年부터)

⑥ 車輛交通量調査(釜山：1985부터)

⑦ 農·漁家 所得調査(忠南：1977부터, 江原：1976～86)

◎ 企業經營者景氣展望調査(慶北：1985～89)

◎ 實態調査(京畿道城南市：1977～87)

⑧ (釜山地域)製造業(業種別工場) 操業狀況 調査(釜山商工會議所；1967부터)

⑨ 公共料金 및 서비스料金 動向(釜山商工會議所；1977부터)

⑩ 消費者 購買性向 調査　(〃；1984부터)

⑪ 製造業體 經營指標調査　(〃；1985부터)

⑫ 在來市場經營實態調査　(〃；1986부터)

◎ 職種別 勞賃實態調査　(〃；1967～1889)

◎ 中小製造業 經營實態調査　(〃；1984～88)

◎ 金型產業 經營實態調査　(〃；1988 1回限)

◎ 鑄物產業 經營實態調査　(〃；1988 1回限)

◎ (仁川地域) 工業構造와 勞動事情分析(1974 仁川商工會議所；1974～89)

◎ 製造業 生產係 勤勞者 賃金實態調査(1974 仁川商工會議所；1976～89)

⑬ 工場運營實態調査(大田商工會議所；1967부터)

地域統計에 관한 綜合的인 刊行物로서는 調査統計局에서 이 分野의 各種統計資料와 業務資料들을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地域統計年報」로 1988年부터 發刊하고 있다. 1990年度版(第3回)의 地域統計 內容은 198個表로 구성되어 있고

○ 主要指標	(要約表)
○ 氣象·面積 및 人口	15個表
○ 雇傭 및 賃金	12個表

○ 農業·林業·漁業	36個表
○ 鑛工業·電氣·가스·水道事業	8個表
○ 都小賣·金融保險業 및 서비스業	21個表
○ 建設業·運輸·倉庫·通信業	19個表
○ 醫療·社會·保健	20個表
○ 敎育·文化	28個表
○ 住宅·環境·公安	19個表
○ 地方行政 및 財政	10個表
○ 市·郡	10個表
合　　計	198個表

地方化時代의 展望과 함께 都市化의 경향도 더욱 급속해지고 있다. 이에 內務部에서 1966年 12月부터 調査하기 시작해서 1976年 4月 19日字 一般統計 第121-22-01號로 승인받은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에서는 전국 도시에 대한 각종 현황과 都市基盤施設實態와 地方都市의 變化趨勢를 파악해서 都市行政資料로 活用하고 있다.

한편 國內의 都市間 比較는 물론 外國의 都市現況과도 比較할 必要에서 서울市統計擔當官室에서는 「都市比較統計」를 발간하고 있다. 最近版은 1991年 7月에 「1990年版」을 發刊하였다. 1989年末 基準으로 ①槪況 ②國內大都市 比較統計 ③東南亞大都市統計 ④世界大都市比較統計 ⑤世界其他都市比較統計로 區分하여 편집하였다.

한편 韓國土地開發公社에서도 1990年 8月에 「都市統計－國內·國外」 3권을 발간하였다. 國內 73個都市에 대한 43個項目과 國外의 160個都市(人口100萬以上市)에 대한 16個項目을 지표화해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 또는 쇄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國土開發硏究에서는 第6次 經濟社會發展計劃(1986～91)에 맞추어 地域問題를 硏究하면서 그 결과인 「地域資料便覽」을 발간하였는바 西南圈, 東南圈을 1985年 12月에, 首都圈, 太白圈을 1986年에 발간하였다.

끝으로 民間統計團體인 財團法人 大韓統計協會에서도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統計人大會를 개최하였는 바 1987年 5月 29日의 第6回 統計人大會에서는「統計活性化와 地域統計發展促進」, 1990年 9月 21日의 第8回 統計人大會에서는「90年代의 統計發展과 地域統計의 強化」라는 主題를 각기 설정했을 뿐 아니라 이들 主題와 관련한 세미나를 同時에 開催하며 이 分野에 從事하는 學者, 專門家 및 統計公務員의 硏究論文을 發表하였다. 이런것은 모두 80年代後半 地域·地方統計의 개발이란 課題의 重要性이 급격히 浮上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國際化時代의 展開와 國際統計

國際化時代는 國家의 政治·社會的 制度와 國民經濟를 基盤으로 해서 國家라는 地域主義와 國際秩序라는 世界主義의 調和를 스스로의 意志와 能力에 따라 能動的으로 對處해서 寄與할 수 있는 時代이다. 따라서 國際化時代는 自主力量發展이라는 跳躍段階를 거쳐서 經濟社會體制의 高度化 進入段階에서 展開된다. 國際化의 初期에는 對外開放과 自己保護를 동시에 추구하는 消極的 對應에서 出發하여 漸進的으로 進展하다가 能動的, 積極的 作用으로 國際社會에 參與하는 形態로 轉換한다.

80年代에 들어 國際經濟社會에서 韓國經濟의 位相이 浮上함에 따라 對外關係에서 새로운 問題가 多樣하게 提起되고 있으며 동시에 時代에 맞는 役割을 찾아 새로운 對外政策을 追求해 나아간다. 이처럼 國際關係의 問題意識擴大와 積極對應擴散을 통하여 國際協調와 國際秩序改編에 責任當事者로 進入한 段階를 國際化時代라고 할 수 있다.

韓國經濟는 第1, 2次5個年計劃期間인 60年代까지의 초기단계에서는 國民經濟의 基礎需要를 充足해 나아가면서 輕工業部門 위주의 輸入代替와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추구하는데 不過했다면 第3, 4次5個年計劃期間인 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의 推進으로 2차에 걸친 石油波動, 資源民族主義 및 新保護貿易主義라는 對外環境을 극복하여 온데 意義가 있다., 第5次計劃을 시작하던 80年代初은 産業競爭力 涵養을 추구하던 時期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工業化, 輸出市場擴大, 國民經濟規模의 擴大指向등 規模追求에서 탈피하여 産業合理化와 産業構造高度化 및 國際競爭力 強化같은 體質高度化가 정책적 초점으로 부상했다.

80年代는 開發段階와 高度化段階·國際化時代間의 構造調整期이며 內外試鍊의 綜合調整期였다.

第2次石油波動의 영향으로 油價引上, 低成長, 高인플레이션이라는 世界經濟의 三重苦에 農業部門 凶作, 投資萎縮 및 負의 成長이라는 國民經濟의 斷層이 겹쳐 그것이 經濟發展史面에서 調整期的 現象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그 이후는 이 調整期的 時代가 80年代를 통하여 持續한 특징을 지니게 하였다. 1979年末의 10.26事態를 뒤이은 政治·社會的 激變도 同軌였다.

이무렵 세계속의 韓國의 位相은 輸出入, 海外建設같은 國際開放化 趨勢에도 불구하고 資源確保, 國民福祉의 向上같은 經濟自律化, 安定的 成長이나 競爭力強化등이 當面課題였기 때문에 國際化의 水準은 겨우 몇몇 기업의 海外進出에서 보는 初期的 현상을 보이는데 불과했다.

그러다가 1982~83年에 한국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찾고 景氣動向도 1984年부터 上昇局面에 들어섰다. 對外去來에서는 經常收支赤字의 축소, 輸出入依存度 減少 등으로 自力成長 實現과 對外均衡基盤의 定着이 可視化했다. 第5次經濟社會發展計劃의 補完이 要請되었고 곧이어 修正計劃을 成案 發表하였다. 이때의 重點施策이 輸出構造의 內實化, 輸出市場開拓의 적극화, 輸入需要의 節減과 效率化 外資導入 效率性 提高 등으로 集約하였는 데 이로써 保護貿易傾向에 능동적으로 對處해서 國際收支의 均衡化와 自力成長을 實現코자 하였다. 당시 國聯에서 80年代의 開途國自立과 經濟成長이란 主題下에 「第3次 UN開發 10年」이라는 國際開發戰略을 채택한 것도 刺戟으로 작용하였다.

80年代後半의 第6次計劃은 調整期의 마감에 해당한다. 우선 第6次計劃의 前半期에 확실해진 國際收支의 黑字基調를 定着시키고 당시의 잇슈로 분분하던 外債負擔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다. 즉

1) 黑字基調의 構造的 定着化

2) 保護主義 克服의 輸出戰略

3) 地域別 貿易收支 不均衡 縮小(특히 對日逆調問題)

4) 外債管理適正化

5) 國際收支黑字의 通貨運營柔軟化

6) 輸出入關聯制度의 先進化推進

등이다. 國際化時代 進入에 따른 本格的 準備이다. 從來의 物量爲主 輸出에서 附加價値 外貨稼得率 中心의 市場變化를 促進하고 輸出入企業의 創意性과 情報能力을 최대한 活用하며 나아가서는 당시 國際經濟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뉴라운드)실시에 대비하는 개방정책의 확대와 적극추진이다.

韓國經濟가 80年代 後半期에 國際化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기할 것은 第6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에서 「對外協力部分計劃」을 처음으로 독립된 부문으로 設定한 것이다. 이 第6次計劃의 對外協力部門計劃에서 과거의 保護와 規制爲主의 經濟運營方式을 開放과 責任을 수반하는 自律로 政策을 轉換키로 함으로써 國際化의 始發이 具體化하였다. 그 基本骨格은 앞으로의 世界經濟與件에서 保護貿易主義가 長期化할 것이라는 것, 世界經濟의 相互依存關係가 深化하면서 太平洋經濟圈의 浮上 등으로 國際貿易秩序도 改編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展望에 立脚하고 있다. 이에 대한 政策課題로서는 新保護貿易主義, 新多者間 貿易協商과 GATT體制의 變質 등 國際貿易秩序變化에 대응해서 한편으로는 投資誘致, 技術水準의 先進化를 추구하되, 外換, 資本, 서비스部門의 國際化와 長期協力基盤의 構築으로 太平洋時代의 主役을 擔當하도록 하는 것이다. 重點 政策으로서는 開放經濟移行에 다른 國內產業의 競爭力을 더욱 補完함은 물론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이나 開發途上國상대의 協力強化 등을 추가하고 있다.

여기에, 舊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圈의 급속한 解體와 東西獨의 統一, EC, ASEAN, NAFTA등 지역경제 블럭형성기운 등은 국제 정치·경제의 새로운 對應課題를 提起하고 있다.

이 무렵 未來生產發展硏究의 일환으로 산업구조의 國際化와 함께 國際的 企業協力, 國際分業問題를 提起(「韓國產業의 國際化와 國際分業」: 韓國開發硏究院 1987年 4月)한 것도 당시의 雰圍氣를 表出한 것이다. 國際化의 一般的 展開過程은 ①間接輸出→②直接輸出→合作企業의 段階를 거쳐 ③單獨投資로 發展한다고 보고

있다. 그 사이에는 外國과의 技術提携나 마켓팅專擔機構發展 등도 갖추어지나 이로써 韓國經濟의 競爭力은 收益性과 함께 費用, 危險負擔도 동시에 增幅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國際化進展에 따른 韓國產業體의 座標를 展望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先進諸國과의 국제경쟁에 필요한 技術高度化의 진로도 극명해진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技術導入을 꾸준히 늘려왔고 그것이 1985년까지 대략 3,500건을 넘고

우리나라의 國際分業形態 展望

水平的國際分業　垂直的國際分業

產　業		國際分業形態 50	100%
機械工業	1986	30	70
	2010	65	35
電子工業	1986	50	50
	2010	75	25
自動車工業	1986	75	25
	2010	70	30
造船工業	1986	70	30
	2010	90	10
石油化學工業	1986	25	75
	2010	50	50
精密化學工業	1986	5	95
	2010	50	50
鐵鋼工業	1986	90	10
	2010	80	20
纖維工業	1986	95	5
	2010	75	25
食品加工業	1986	해당없음	
	2010		
스포츠	1986	80	20
레저產業	2010	60	40

資料 : 產業研究院

業種別 技術導入 現況(80년대 전반까지)

(單位：件, %)

年度別 / 業種別	'62-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機械	453	59	70	62	82	123	124	973
	(30.1)	(26.5)	(28.3)	(20.1)	(22.8)	(28.5)	(27.4)	(27.6)
電子·電氣	279	47	33	60	80	78	134	711
	(18.5)	(22.2)	(13.4)	(19.5)	(22.2)	(18.1)	(29.6)	(20.2)
精油·化學	270	36	38	44	50	64	65	567
	(17.9)	(16.2)	(15.4)	(14.3)	(13.9)	(14.8)	(14.3)	(16.1)
金屬	141	19	19	24	22	21	22	268
	(9.4)	(8.6)	(7.7)	(7.8)	(6.1)	(4.9)	(4.9)	(7.6)
化學·纖維	40	3	6	23	27	29	16	144
	(2.7)	(1.3)	(2.4)	(7.5)	(7.5)	(6.7)	(3.5)	(4.1)
食品	25	5	15	21	20	24	18	128
	(1.7)	(2.3)	(6.1)	(6.8)	(5.6)	(5.5)	(4.0)	(3.6)
造船	32	5	19	14	21	17	20	128
	(2.1)	(2.3)	(7.7)	(4.5)	(5.8)	(3.9)	(4.4)	(3.6)
其他	264	48	47	60	58	76	54	607
	(17.6)	(21.6)	(19.0)	(19.5)	(16.1)	(17.6)	(11.9)	(17.2)
計	1,504	222	247	308	360	432	453	3,52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財務部

從業別 技術導入 推移(80년대 후반)

(單位：백만달러(件))

分野 / 年度	飮·食料	纖　維	化　學	金 屬·非金屬	機　械	電氣·電子	其　他	計
'62～'82	14.3	29.3	214.1	74.7	156.5	111.3	80.5	680.7
	(8.0)	(10.6)	(476)	(267)	(715)	(473)	(168)	(2,285)
'83	3.0	4.3	21.1	11.5	42.8	36.3	30.5	149.5
	(25)	(30)	(56)	(28)	(103)	(86)	(34)	(362)
'84	3.6	5.4	33.0	11.5	62.0	57.8	39.9	213.2
	(20)	(3.1)	(84)	(31)	(140)	(78)	(44)	(437)
'85	3.6	4.0	33.2	12.7	86.1	88.3	67.6	295.5
	(20)	(15)	(68)	(38)	(151)	(133)	(29)	(454)
'86	6.3	6.6	51.7	22.5	103.3	148.0	72.6	411.0
	(18)	(24)	(108)	(32)	(170)	(137)	(28)	(517)
'87	5.0	8.3	65.4	18.7	131.3	197.2	97.8	523.7
	(26)	(37)	(135)	(56)	(161)	(164)	(58)	(673)
'88	6.5	8.3	112.1	12.8	126.8	265.0	144.8	676.3
	(16)	(52)	(161)	(46)	(195)	(212)	(69)	(751)
'89	8.9	13.3	151.4	36.2	166.9	388.4	123.5	888.6
	(22)	(56)	(150)	(45)	(168)	(231)	(91)	(763)
'90	9.5	14.5	217.1	24.2	232.6	467.7	121.4	1,087.0
	(18)	(44)	(138)	(47)	(188)	(219)	(84)	(738)
計	49.6	93.8	891.7	224.8	1,108.3	1,760.0	797.3	4,925.5
	(224)	(396)	(1,357)	(590)	(1,991)	(1,733)	(654)	(6,944)

資料：產技協, '90年度 技術導入 年次報告書, 1991.5

業種別 海外投資 推移

(單位：百萬달러)

	1968-81	1982	1983	1984	1985	1986	86年末殘額
鑛　業	13	90	49	22	71	74	244 (38.5)
林　業	38	10	18	6	3	0	56 (8.8)
水 產 業	11	0	0	0	2	4	10 (1.6)
製 造 業	37	5	26	13	20	70	160 (25.3)
建 設 業	31	10	3	3	3	2	35 (5.5)
運輸保管業	3	0	1	0	0	0	2 (0.3)
貿 易 業	38	8	13	8	12	14	77 (12.2)
不 動 產	22	0	0	0	3	3	26 (4.1)
其　他	16	7	3	4	4	5	23 (3.7)
計	209	129	113	57	118	172	633(100.0)

註：(　)내는 構成比(%)

資料：韓國銀行

있다. 産業高度化의 초기 단계에서 技術導入의 必要性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80年代에 들어서 海外投資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經濟先進化와 함께 한국산업의 國際化 진전의 주요지표가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1990年度 經濟白書(經濟企劃院 : 1990年 11月刊)는 經濟運營與件을 世界經濟與件과 國內 經濟運營實績을 평가해서 國際社會에서 役割을 增大하고 通商協力基盤을 強化하는 것이 時代的 課題라고 보고

1) 世界經濟環境變化

2) 韓·美交易 通商摩擦

3) OECD등과의 政策協調

4) 對日貿易逆調

5) EC統合對應

6) 對開發途上國 經濟協力

7) 對北方經濟交流·協助

등을 敍述하고 있다.

國際化時代의 展開와 함께 國內에서는 世界속의 한국의 位相을 가늠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의 情勢와 社會經濟的指標, 國際機構의 活動 및 그 解說資料같은 刊行物

地域別 海外投資

(단위 : 千$)

	총 투 자 액	청산액	순투자액	누계액	지역별투자액 동남아	북 미	중남미	유 럽	기 타
1980	21 095	5 639	15 458	141 905	1 588	4 387	2 191	659	12 270
1981	40 077	8 380	31 697	173 602	9 897	5 579	10 395	1 109	13 097
1982	129 375	13 413	115 962	289 564	8 674	47 118	21 657	2 352	49 574
1983	113 163	9 344	103 819	393 383	28 912	48 848	14 082	2 407	18 914
1984	56 974	5 661	51 313	444 696	10 821	17 826	8 113	1 068	19 146
1985	117 822	86 330	31 492	476 188	17 659	31 397	40 752	919	27 095
1986	171 999	14 846	157 153	633 341	7 153	79 205	2 395	5 580	77 666
1987	397 235	64 520	332 715	966 056	131 075	177 172	4 496	6 844	77 648

자료 : 한국은행

을 대거 발간하였다. 韓國貿易協會와 大韓貿易振興公社, 韓國輸出入銀行 등에서 國別便覽 또는 國際 經濟·通商機構 등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고 특히 北方政策推進에 따라 共產圈에 대한 經濟體系나 經濟動向解說資料(韓國銀行)와 共產圈 國別便覽(產業硏究院)을 발행하고 있다.

經濟企劃院에서 經濟政策業務資料로서 作成한 「對外經濟便覽」(1989年 8月 1日)은 이상에서 기술한 韓國의 對外政策, 開放化, 國際化 進路를 實務的으로 解說한 指針書이다. 韓國의 對外經濟關係 組織은 정부 각 부처에서 각기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對外業務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綜合機能은 1983~86年間의 海外協力委員會와 이를 1986年에 發展的으로 改編한 「對外協力委員會」 및 「對外經濟調整室」에서 맡고 있다.

對外關係資料는 外局에 대한 實態 情報와 國內에서 각종 統計調査를 실시하여 作成하는 資料가 發刊物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世界各國의 情勢를 指標形態로 發刊하고 있는 것으로는 韓國開發硏究院에서 主要國의 經濟動向과 展望을 수록한 「世界經濟動向 主要指標」를 月間으로 發刊하고 있으며 產業硏究院에서도 月刊「世界經濟動向」(1983年부터)과 季刊 「北方地域經濟」(1988年부터)를 발행하고 있다.

韓國銀行에서는 1987年에 세계각국의 국민소득 통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속의 한국경제」를 발간한 바 있으나 1991年 6月에는 國民所得 이외에도 敎育·住居環境, 文化·保健, 社會間接資本 등 廣義의 國民生活水準도 比較하여 그중에서 韓國의 位相에 관한 指標를 年次的으로 順位를 매겨 같은 「세계속의 한국경제」란 이름으로 發刊하였다. 또 同行에서는 「主要國의 經濟指標」(每月 2回)와 「주간 내외경제」(週1回)를 발간하고 있으며 韓國의 國際去來關係를 理解할 수 있는 資料로서 韓國이 1955年에 IMF에 가입한 이래 年間單位로 國際收支表를 작성하여 왔는데 이를 1968年에는 分期別로, 또 1979年부터는 月別로 작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解說 資料로서 1989年 4月에 「國際收支統計解說」을 發刊하였다.

한편 調査統計局에서는 1983年부터 「主要海外經濟指標」를 發刊하고 있다. 1991年度版에는 30個項目의 項目別 經濟指標時系列(1971~89)과 함께 23個

國을 對象으로 한 國別 主要經濟指標 및 主要商品의 國別生産을 게재하고 있으며 특히 統一院資料를 이용한 南北韓主要經濟指標(1988年度)를 부록으로 對比하고 있다.

韓國의 國際關係에 관한 統計는 크게 國內統計機關과 國外統計機關의 統計活動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國外統計機關은 다시 美國, 日本등 主要 外國의 統計機關에서 自國의 關心事項과 관련해서 작성하는 統計와 UN, IMF, ILO, OECD 등 國際機關에서 國際間 統計交流 또는 開發途上國의 統計發展 支援을 위한 活動으로 나누어 區分할 수 있다.

統計法上 承認받은 國際關係統計

主管 및 統計名稱	週期	承認日字	承認番號
<法務部>			
① 出入港 航空機 및 乘務員統計報告	月	75. 7.29	123-22-02
② 出入港 船舶 및 船員統計報告	〃	〃	123-22-03
③ 滯留外國人統計	〃	76.12.20	123-22-10
④ 出入國者統計	〃	75. 7.29	123-22-01
<保社部>			
⑤ 國際檢疫狀況	分期	81.12. 3	129-22-34
<交通部>			
⑥ 觀光客 移動狀況報告	分期	75. 7.29	130-22-05
⑦ 月間 民間航空運航統計	月	〃	130-22-06
⑧ 觀光客 利用施設의 外國人觀光客 利用人員 및 外貨獲得報告	半期	76. 8.26	130-22-08
⑨ 航空部門 外貨收入實績	月	〃	130-22-11
⑩ 海難事故 現況	月	〃	130-22-07
<遞信部>			
⑪ 國際郵便物 나라別 利用物數 및 郵便囊 取扱統計	年	75. 7.29	131-22-01
<關稅廳>			
⑫ 貿易統計	月	76. 7.14	137-22-01
<勞動部>			
⑬ 海外就業者 募集申告 및 送出許可現況報告	月	86. 9.25	144-22-20

主管및統計名稱	週期	承認日字	承認番號
<海運港灣廳>			
⑭ 國際旅客(페리호) 運送實績	月	76.11.30	146-22-02
⑮ (外航)運航免許船舶 統計	〃	81.10.30	146-22-07
⑯ 貨物 運送實績	〃	75. 7.29	146-22-03
⑰ 入航船舶屯數別 統計	〃	〃	146-22-05
⑱ 外貨輸入實績	〃	〃	146-22-09
⑲ 海技士免許 및 船員手帖 發給統計	〃	76. 8.26	146-22-08
⑳ 登錄船舶統計	〃	75. 7.29	146-22-06
<韓國銀行>			
㉑ 國際收支統計	分期	76. 7.22	301-21-10
㉒ 輸出入物價調査	月	76. 1.15	301-21-06
㉓ 外換受給統計	月	76. 7.22	301-22-17
<韓國觀光公社>			
㉔ 外來觀光客輿論調査	年	80. 5. 8	322-21-02
<韓國貿易協會>			
㉕ 輸出産業景氣展望調査	分期	76. 7.13	330-21-01
㉖ SITC에 의한 貿易統計	月	76. 9.14	330-22-02
㉗ 輸出企業經營實態調査	年	80. 3.26	330-21-04
<中小企業銀行>			
㉘ 中小企業動向調査	月	74. 6. 1	304-21-02
<全國經濟人聯合會>			
㉙ 月間景氣動態調査	月	76. 8.18	338-21-04
<大韓商工會議所>			
㉚ 企業景氣展望調査	分期	75. 1. 7	343-21-01
<韓國鐵鋼協會>			
㉛ 鐵鋼統計調査	月	77. 3. 31	350-11-01

1990年 현재 한국에서 國際關係와 관련하여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통계법상 承認받은 통계만 해도 별표에 열거한 것과 같이 대략 30여종을 헤아리지만 이들은 대개 이미 70年代 중반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착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包含되지 않고 統計法上 승인통계가 아닌것으로서 中央 및 地方官廳과 公共團體에서 그들의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作成하는 統計資料(가령 LC開設件, 合作企

業件, 技術導入件 등)와 각종 국제협력단체의 海外市場 조사나 업무관련 통계들이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經濟企劃院을 비롯하여 外務部, 商工部, 農林水産部 등에서 수행하는 國際關係의 政策統計資料들도 많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한 통계는 國際關係만이 아니라 國內統計分野에 관한 것도 통계국제교류에 일환으로 대부분 UN등 國際機關과 세계각국에 송부해서 그들 기관과 국가의 대외통계자료로 活用케 하고 있다. 다만 특기할 것은 北韓에서도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그들 통계를 어느 國際統計機關에도 개방하고 있지 않아 國際統計資料上에는 해당계수가 없거나 N.A(可用不能) 表示로 되어 있다.

세계각국의 통계관계 조직, 법제 및 統計活動 등은 1959年에 調査統計局에서 「諸外國의 統計組織과 法規」를 발간한 이래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를 編譯해서 國內에 소개하고 있다. 최근의 것으로는 1988年에 「주요국의 統計組職」(Ⅰ. Ⅱ)을 발간하였다.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諸外國의 統計組職과 法規, 1959, 內務部 統計局
○ 諸外國의 統計制度, 1974年 7月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 카나다의 統計制度 및 統計의 活用, 1985年 11月, 調査統計局
○ 日本의 統計制度와 人口센서스, 鑛工業指數, 1986年 3月 調査統計局
○ 日本統計行政의 中長期構想, 1986年 12月 調査統計局
○ 主要國의 統計組職, 1988年, 調査統計局
○ 主要國의 統計組職(Ⅱ), 1988年, 調査統計局
○ 主要國際統計機構의 統計活動, 1988年, 調査統計局

그밖에 이번 硏究過程에서 확인한 主要國의 統計指標 統計現況, 各國의 制度的 實態를 硏究한 資料와 共産圈硏究資料를 列擧하였다.

국제통계분야에서 전세계 각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國際聯合과 그 傘下機關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대부분 獨立的인 통계업무기구와 통계조사 또는 分析業務를 지니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개자료도 조사통계국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다. 조사통계국에서는 1988年에 「주요국제기구의 통계활동」을 발간하였다.

主要 外國의 統計 및 實態硏究資料

圖　書　名	著　者　名
— 주요국가의 농업정책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국 경제지표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관실
— 주요국 단체교섭의 특징과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 (주요국별, 품목별) '89수출현황	대한무역진흥공사
— 주요국별 '91/'92년 경제개관	한국무역협회
— '91/'92년 주요국별 경제개관	〃
— 주요국별 철강요람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 주요국 식량수급표	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 주요국의 경제지표	한국은행
— 세계각국의 주택관련통계	대한주택공사
— 주요국의 고용과 임금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공업소유권법제	국제경제연구원
— 주요국의 금융산업 및 증권회사의 수익	고려증권주식회사
— 주요국의 기술개발과 경제발전	한국은행 조사제1부
— 주요국의 농산물유통 : 일본·대만	농협중앙회
— 주요국의 농업정책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주요국 단체교섭의 특징과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 원유가 급등과 주요국의 대응	국제경제연구원
— 주요국의 독점금지법 제비교	국가보위 입법회의도서관
— 주요국의 법인소득과 조세제도 : 영·미	한국조세연구소
— 주요국의 산업재해대책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상속과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소
— 주요국의 석탄산업지원제도개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요국의 성장제도	한국증권거래소 조사부
— 주요국의 소득정책	국제경제연구원
— 주요국의 수입규제현황	대한무역진흥공사
— 주요국의 수입규제조사	대한무역진흥공사
— 주요국의 신협금융제도	배용수
— 주요국의 에너지 수급전망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연불수출제도와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국의 예산동향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외환관리제도	한국외환은행
— 대만의 중심환율제도 운용사례	한국은행 조사제1부

圖 書 名	著 者 名
–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임금 및 임금상승률 비교	대한무역진흥공사
– 주요국의 자원대책	한국외환은행
– 주요국의 재판제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정보통신제도 및 정책동향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주택임대제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주요국의 증권세제	한국증권거래소
– 주요국의 지급준비제도	한국은행 조사제1부
– 주요국의 지방자치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지역개발정책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지적소유권 보호현황	대한무역진흥공사
– 주요국의 첨단산업기술개발	중소기업은행조사부
– 주요국의 통계조직,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주요국의 통계조직(II),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주요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조사제1부
– 주요국의 회의의사규칙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의 회의입법과정과 법제기구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주요국제기구의 통계활동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주요국제상관습 및 협약	한국무역협회

이들 중 중요한 국제기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國聯統計處(Statistical Office of United Nation ; UNSO) : 1946年 6月 21日字 經濟社會理事會의 決議로 同 理事會 統計委員會와 함께 國聯事務局內에 UN統計處를 設置

②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44年 7月의 Bretton Woods協定에 따라 1944年 12月에 設置

③ 國際復興開發銀行(世界銀行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Bretton Woods協定에 따라 1946年 6月 業務開始

④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5年 美國에서 제안하고 1947年 제네바 회의에서 準備會議를 가진데 이

어 23個國 중심으로 發效

⑤ 國際勞動機構(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年 4月 發足

⑥ 世界食糧農業機構(Food and Agricalture Organization) 1945年 11月 發足

⑦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1960年 1月 大西洋經濟會議를 거쳐 1961年 9月 1日 發足

⑧ 國際聯合 開發計劃(UNDP) 1966年 1日 發足

⑨ 國際聯合通商開發會議(UNCTAD) 1962年의 第17次 UN總會決議를 거쳐 1964年 12月 常設化

⑩ 亞細亞開發銀行(ADB) 1966年 12月 9日 發足

共產圈 研究資料

圖 書 名	著 者 名
– 공산권 연구	극동문제연구소
– 공산권의 국민계정체계해설	한국은행
– 공산권 경제동향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 공산권 경제동향	한국은행 조사제1부
– 공산권 경제통계집 1977	해외경제연구소
– 공산권 국가의 통상관계법	법제처
– 공산권 국별편람－북한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체코슬로바키아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폴란드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동독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베트남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캄보디아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불가리아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루마니아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라오스	산업연구원
– 공산권 국별편람－헝가리	산업연구원

그밖에 主要國際機構들로서는 國際聯合地域委員會인 ECE, ESCAP, ECLAC, ECA, ESCWA 등이 있고 國聯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地域別 域內協力機構로서 CMEA(상호경제협력위원회)를 비롯하여 EUROSTAT, ECM, EFTA, LAFTA,

CACM, IASI, COMECON, ASEAN 및 APEC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밖의 國際協力 및 開發關係機構로서 IDA, IFC, UNIDO, CCC, UNESCO, WHO 등이 있다.

한편 韓國은 上記 國際統計機構나 世界各國의 統計機關 및 統計專門家團과 國際統計協力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ESCAP 統計委員會나 FAO亞太地域農業統計委員會 및 ILO, WHO 關係者會議는 물론 韓·中·日 및 ASEAN 統計局長會議 등에 적극 參考하고 있으며 UNSO, IMF, IBRD나 美國의 센서스局, 日本의 統計局, EC統計局(EUROSTAT) 및 각종 國外硏究所 등에 統計公務員이나 要員들을 常住派遣하거나 分野別로 統計硏修課程을 마치게 하고 있다.

第 3 節　情報化時代의 統計座標

1. 統計技法의 發達

가. 資料蒐集 및 調査技法의 變遷

統計의 對象은 自然과 社會集團에 대한 歷史的 認識에서 出發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現象과 社會現象의 存在를 集合化하고 그것에 歷史的 意味를 부여할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技術統計의 命題가 出發한다. 그런데 初期의 統計命題는 그 주된 對象이 戶口, 軍事力, 活動地域, 田籍, 産物같은 國力에 관한 指標가 중심이 되었을 뿐 아직은 統計單位에 대한 基本標識, 構造標識의 理論的 基準같은 嚴密性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近世以前의 韓國에서는 주로 國家의 行政力을 동원하여 統治資料를 蒐集하는 慣例가 진작부터 있었던 바 특히 古代의 律令體制가 整備되면서 地方組織을 통한 行政報告慣行이 定期性을 띠게 되기도 하였다. 新羅의 民政文書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는 三國時代 以來 일관되게 中央政府內에 두었던 戶口·量田에 관한 專擔部署들이 뒷받침이 되었다. 朝鮮朝에서도 一代를 통하여 戶口의 每式年調査報告가 定例化되어 그에 관한 時系列資料를 갖추고 있음을 앞에서 說明하였거니와 朝鮮朝 租稅制度의 빈번한 개편, 號牌·戶籍制度와 族譜의 完備, 貫鄕과 地方行政區域의 固定化같은 것은 한국 특유의 古典的 統計調査機能의 발전과정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啓報(啓告)統計」「行政統計」「申告統計」의 發展이었다.

여하튼 統計的 認識을 특징짓는 集團觀察의 數量的 表現이 당시에 이미 官廳統計活動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點口部(百濟), 調部(新羅), 戶曹(高麗) 등과 版籍司, 工匠府(朝鮮) 등이 있었고 算學博士(羅代), 算學職官員(麗鮮代)을 비롯하여 算學, 政治算術 또는 經世濟民에 관한 古典文獻들이 많이 출현하였다(算學啓蒙, 算學正義, 萬機要覽등).

初期의 戶口調査에서 보다시피 資料蒐集方法에 있어 朝鮮때까지는 啓告(申告)

式이었다. 때문에 身分과 土地品階에 따라 申告對象에서 除外된 것, 申告를 누락한 것도 많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中央에서 敬差官이나 計點使가 지방에 派遣되기도 하였다. 量田制에 品結制를 채택한 것이나, 踏驗法(實査法), 比摠法(總比例法) 등의 稅法은 이들 敬差官의 調査報告에 의한 作物(作況)統計에 근거를 두고 있다.

開化期가 되면 政府機構의 改革과 함께 戶口調査 등을 租稅·賦貢기능에서 分離하고 軍政도 一般行政과 獨立(高宗初)시켰으나 아직도 行政報告統計의 古典的 慣行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調査慣行(技法)이 統計集團 敍述에서 全數調査, 部分調査의 區分認識 不足, 靜態·動態의 混同은 물론 統計單位, 計量單位의 定義나 申告上의 問題, 集計上 問題, 誤差 내지 信賴性問題 등에 대한 倫理的 根據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이때까지 國力(國家狀態)에 관한 記錄資料는 남겼으나 統計學的 硏究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確率理論이나 誤差分析論이 開發된 이후에 속하는 分野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19세기까지의 古典記述統計學 段階이던 西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段階는 아직 古典的 組合理論과 古典確率論 정도의 水準이고 統計理論上으로는 槪念規程의 明確性이나 母集團, 標本의 區分, 精密調査槪念 構成같은 것이 缺如되어 있거나 不明하였었다. 즉 調査技法面에서는 19세기말 W.S.Gosser(student)의 大分布가 精密標本論, 推測統計學의 發端이 되면서 1920年代 R.A.Fisher의 變量分析法, 實驗計劃法 등으로 調査의 精密性問題가 提起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즉 資料蒐集에 따르는 여러 統計上의 技法들이 推測統計學의 發達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때에 비로소 行政統計, 報告統計, 申告統計와 調査統計의 槪念區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무렵부터 標本觀察과 集團性把握(推測)에 관한 技法이 展開되어 1930年代의 理論的 檢證段階를 거쳐 40年代의 2次大戰을 계기로 社會調査에 본격적으로 擴張活用되는 과정을 거쳤는 바 韓國에서도 이 근대적 意味의 調査技法導入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그 이전 단계인 舊韓國時代나 日帝의 開化된 統計라는 것도 西歐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行政力 能率이나 強壓技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日帝時代의 統計活動은 韓國의 傳統的인 啓告式 行政統計를 承繼하여 그들의 「報告例」規程에 의해서 官吏로 하여금 調査하게 하는 統制報告式으로 轉換하였다. 이때에는 당시의 世界史的 潮流인 富國強兵施策, 植民地統制行態에 따라 모든 行政分野를 커버하는 방대한 資料를 蒐集하였다. 이때의 調査는 警察·憲兵과 總督府 官吏가 査察力을 동원해서 실시한 것이므로 純粹한 統計調査資料는 아니나 地方行政網 및 總督府 官署를 통하여 꾸준히 지속된 것이므로 日帝의 독특한 報告統計體制라 할 수 있다. 가령 統計分類나 項目定義 등에서 判斷的인 예가 많았고 系列에 斷層과 不連續이 다반사일 뿐 아니라 調査擔當이나 所管部署가 거의 流動的일만큼 변동이 심하였다. 거기에 調査基準日이나 頻度가 수시로 변경된다. 그러면서도 이들 報告資料는 官房 文書課나 總務課등에서 一貫되게 통제하는 것만은 변함없었다.

1925年에 처음 실시한 이른바 국제조사(日本에서 第1回調査는 1920年)를 계기로 각종 統計分類의 原理가 定着되기 시작한다. 또 이때의 調査는 原則的으로 自計主義이다. 1937年부터 실시된 人口動態調査도 형식적으로는 申告制(실제로는 총독부관리 작성)이다. 調査票類의 形式은 1925年 國勢調査만은 單記票式이고 「地方分査」로 하였고 1930年부터는 家口票(「世帶票」)에 의한 「中央集査」로 集計하였다.

調査資料의 分類, 集計, 製表는 統計單位의 共通標識을 集合하는 과정이므로 이의 技術的 進步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初期에는 手集計가 불가피하였다. 1925年 總人口調査(「國勢調査」)시의 單記票 資料는 調査現地인 府郡 및 道에서 地方分査에 依存하였다. 手集計는 ①計牌法(카드法), ②劃線法(點檢度數表法), ③轉記法(簿記法, 도는 整理法) 등이 있는 바 大部分의 報告例 統計가 이들 手集計方法을 利用하여 地方分査를 原則으로 製表處理되었다. 이 과정에서 日本에서 獨特하게 發展한 調査票의 縮小型인 傳票型 「小票」類가 많이 移用되었다.

資料處理技法은 改善은 종래에 단순한 조사항목형태인 單純票·小票의 地方分査體系에서 機械集計와 中央集査로 移行케하였다. 複合統計表의 分量도 늘어나고 간단한 抽出集計도 試圖되었다. 가령 1930年 國勢調査時에 $\frac{1}{1000}$ 家口를 抽出集計

하여 概數를 速報로 發表하였다.

資料處理用 機械에는 美國에서 1890年 센서스集計時부터 使用한 Hollerith System(電氣式)과 1910年 센서스때부터 登場한 Power System(機械式)이 그뒤 日本에도 導入하였던 바, 資料處理機械가 처음 시작된 1930年度 國勢調査時에는 總督府內에 45列用 手動式 穿孔器와 檢孔器(東芝·津上製)를 각기 200대 및 電動式 群穿孔器 5臺를 들여왔고 Remington分類機도 35臺를 導入하여 資料處理에 임하였다.

1941年에는 滿鐵로부터 물려받은 電動式 集計機도 2臺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日帝下의 統計調査에서 標本調査는 1933～38年間의 地域別(5個道)로 農家家計實態를 조사한 바 있고 都市家口까지 포함한 것은 1943年부터라 하나 前述한 바와 같이 統計的 檢證이나 理論的 妥當性을 못가진 채 진행된 것이다.

物價調査와 그 指數編制는 舊韓末以來의 歷史를 가지고 있지만 國民所得推計는 解放以後의 일이다.

다만 個人的으로(日本人 土方成美등) 生産統計(農林漁業部門)와 所得統計(其他部門)資料에 의하여 1930年代의 國民所得을 추정하여 日本人所得과 比較하는 시도는 있었다.

나. 初期의 加工統計

우리가 흔히 일컫는 加工統計란 제1차 원시기초통계를 토대로 하여 통계이용 목적에 맞도록 가공·변형한 통계를 말한다.

가령 5大國民計定(國民所得, 資金循環, 産業聯關, 國際收支, 國富統計)과 物價指數를 비롯한 각종 지수(景氣指數, 産業指數, 出荷, 在庫指數, 貿易指數, 輸出入單價指數 등) 등이 있고, 이밖에 企業經營分析, 鑛工業 總調査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國民所得推計를 가공통계의 대표라 할 수 있다.

韓國의 加工統計는 물가지수등 극히 일부 統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960년대 들어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48년 이전에 작성되었던 통계는 物價指數, 賃金指數등 극히 일부 統計를 제외하고는 원시기초통계가 대부분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통계의 최초작성시기 및 작성기관

	최초 작성시기	최초작성기관
국민소득	1949년	한국(조선)은행
자금순환	1963년	한국은행
국제수지	1955년	〃
물가		
도매물가	1910년	한국은행
소매물가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
국부	1968년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부분별로 분담
광공업센서스	1962년	경제기획원
기업경영분석	1960년	한국은행
무역지수	1963년	한국은행
노동생산성지수	1964년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자출하지수	1963년	한국산업은행
제조업재고지수	1951년	한국은행

① 物價指數

당시의 物價統計로는 1910년 구한국은행에서 京城重要物價表를 바탕으로 작성한 都賣物價指數와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한 小賣物價指數의 2가지 種類가 있었는 바 小賣物價指數는 그후 서비스가격까지 포함하여 消費者物價指數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0년 최초로 작성한 都賣物價指數는 比較基準時點을 1910년 7월로 하고 30개 품목을 조사하여 單純算術平均法을 사용하였다. 이 指數는 1939年 1月에 1936년 基準으로 개편한 뒤 1945년 6월까지 계속 우리나라의 公式的인 都賣物價指數로 이용되어 왔다. 이때의 都賣物價指數 편제방식은 比較基準時點을 1936년 平均으로 하고 조사대상품목을 30개에서 80개로 늘려 單純幾何平均法으로 바꾸었다. 都賣物價指數의 제2차 개편은 1949년 4월에 比較基準時點을 1947년 平均으로 하고 45個品目調査에(라스파이레스식)으로 변경하였다. 小賣物價指數편제는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小賣物價를 조사하여 지수화하기 시작한 데에 비롯된

다.

그후 1945년 8월하순부터 조선은행이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京城小賣物價指數를 산출하여 발표하였다. 물가지수산출방식은 單純算術平均法을 택하였다.

이와같이 작성된 京城小賣物價指數는 1945년 8월부터 1948년 7월까지 약 3년간 使用되었다.

그후 小賣物價指數는 1948년 8월에 單純幾何平均法으로 변경하였다.

② 國民所得

우리나라의 國民所得統計를 체계적으로 推計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8월 James K.Hall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내한 했던 財務部 司稅顧問團의 건의에 따라 韓國銀行이 國民所得 공식추계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였다.

따라서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정부수립시까지 國民所得推計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1937년에 당시의 조선총독부 재무국 이재과에서 시산한 바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1937년 조선의 國民所得을 20億円으로 推計하였다. 이때의 推計方法을 오늘날과 같이 國際的 標準에 맞추어 推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경제학자인 土方成美씨가 1937년 조선의 國民所得을 27.5億円으로, 高橋龜吉씨가 17.6億円으로, 그리고 日本 東洋經濟社가 17.3億円으로 각각 추산한 것을 산술평균하여 22億円 정도로 1차 측정한 후 다시 당시 조선의 經濟力이 日本의 10%정도의 수준임을 감안하여 약 20億円으로 計算한 것이다.

그후 1941년부터 해방전 1945년까지의 國民所得推計는 특별한 推計方式이나 추계기법의 개발없이 단지 1937년도의 國民所得推計値를 근거로 연장추계해 온데 불과하였다. 즉 1941년도의 國民所得은 각종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동년의 私人所得(個人所得)의 增加率은 1937년도의 國民所得推計金額인 20億円에 곱하여 추계하였고 그 다음해인 1942년도의 國民所得은 각종 생산물의 전년대비증가율인 20%를 당해년도의 國民所得增加率로 보고 이를 전년도 國民所得推計金額에 곱하여 개략적인 國民所得을 추산하였다.

한편 1943년 이후 해방시까지는 당시 조선의 生産狀況, 매년의 財政 및 産業資

金供給豫想規模, 日本의 國民所得增加率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략적인 國民所得을 推算하여 왔다. 해방전 조선의 國民所得은 아래와 같다.

해방전 조선의 국민소득

(단위 : 億円)

1937	1941	1942	1943	1944	1945
30	30	35	40	55	70

해방직후에 있어서의 國民所得推計는 부득이 南韓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企劃處 經濟企劃局은 生産統計를 이용한 生産國民所得을, 재무부 시세국은 司稅行政資料를 이용하여 分配國民所得을 推計하였고, 조선은행 조사부에서는 1949년에 消費면에서 본 消費投資方法으로 1947년 이후 계열의 支出國民所得을 각기 분담하여 추계하였다.

이상의 3가지 方式의 推計는 統計上의 不一致를 제외한다면 槪念的으로는 그 規模가 서로 비슷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③ 勞賃指數

우리나라의 勞賃指數는 1925년 11월 朝鮮銀行에서 月別勞賃平均指數를 산출하여 朝鮮銀行 統計月報에 수록하여 발표한 것이 최초의 統計이다.

이 당시 勞賃指數産出에 관한 基礎資料의 미비로 자세한 指數産出方式을 把握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京城노동자의 직업을 크게 18개 직종으로 分類하고 1910년 7월의 職業別 賃金을 100으로 하여 당해년도의 월별, 직업별 賃金指數를 구하고 이를 單純算術平均하여 勞賃指數를 산출하였다.

그후 1948년에 들어 朝鮮의 經濟發展과 더불어 해방전보다는 다소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면서 직종간 賃金上昇幅이 당시의 經濟狀況과 고용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었고 종전의 勞賃指數가 직업별 노임의 加重値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勞賃指數算出方式을 개편하였다. 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比較基準時點을 종전의 1910년 7월기준외에 1936년도 平均을 100으로 하여 比較基準時點에 따라 2가지 勞賃指數를 작성하였으며, 勞賃調査對象職種도 1936년을 比較基準年

度로 하는 勞賃指數을 크게 확대하였다.

한편 勞賃指數 算出方式도 종전의 單純算術平均方式에서 벗어나 單純幾何平均方式을 채택하였으며 1910년을 기준년도로한 統計는 1910년부터, 1936년을 基準年度로 한 統計는 1942년부터 시계열을 소급조정하였다.

이로써 일제시대 및 미군정시대의 우리나라 勞賃指數統計는 질적인 면에서 커다른 발전을 보게 되었다.

2. 標本調査技法의 發達과 展望

가. 標本調査實施 概要

韓國에서 標本調査로 實施한 最初의 統計調査는 現在는 統計廳에서 實施하고 있는 都市家計調査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家計調査는 日帝末期인 1942年에 처음으로 着手하였으나 1945年의 光復과 더불어 資料는 모두 消失되어 現在로는 그 內容을 전혀 알 수가 없다.

1948年 政府가 樹立된 후에는 1950年 1月에 當時의 朝鮮銀行(現在의 韓國銀行)調査部와 公報處 統計局(公報處 統計局은 政府組織改編에 따라 內務部 統計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을 거쳐 現在의 統計廳이 됨)의 共同事業으로 서울의 勤勞者家口(俸給生活者家口 및 勞務者家口) 120家口의 非確率標本(有意標本)으로 生計費調査라는 이름의 家計調査를 實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調査는 不幸하게도 6·25事變으로 半年도 넘기지 못하고 中斷되었다.

이 調査의 뒤를 이어, 1951年 7月부터 韓國銀行에서는 單獨事業으로 當時의 臨時 首都인 釜山에서 勤勞者家口 50家口의 非確率標本으로 生計費調査를 實施하였다.

1953年의 休戰으로 政府가 서울로 還都하게 됨에 따라, 同年 9月에는 그 동안 實施하여 오던 釜山地域 生計費調査는 中止하고, 그대신 서울地域 生計費調査를 勤勞者家口 200家口의 非確率標本으로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9年 10月에는 調査의 名稱을 生計費調査에서 家計調査로 바꾸면서, 標本規模를 600家口로 擴

大改編하였다. 이 標本改編은 매우 初步的이기는 하지만 韓國에서는 처음으로 確率標本理論을 導入하고 確率標本抽出技法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轉期를 이루었으며, 이때부터 完全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相當한 水準의 確率標本抽出技法을 사용하였다. 이 서울地域 家計調査는 1962年 1月부터 豫算 및 其他의 事情으로 標本을 450家口로 縮小改編하여 1963年까지 實施하였다.

韓國銀行에서는 서울地域의 家計調査와는 별도로 1954年 7月부터 韓國銀行의 支店이 設置된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全州, 淸州, 木浦의 8個 地方都市에서 總 160家口의 非確率標本으로 生計費調査를 實施하고 이어서, 1958年 6月에는 春川의 20家口를 追加하여 1958年까지 繼續되었다. 그리고, 1961年에는 濟州市를 除外한 全地方都市를 調査對象地域으로 확대하여 確率標本抽出技法으로 抽出된 總 1,050家口의 標本으로 地方都市家計調査를 實施하였다. 또, 1962年에는 邑地域에서도 確率標本抽出技法으로 抽出된 400家口의 標本으로 邑地域家計調査를 實施하였다.

한편 이 무렵 當時의 內務部 統計局에서는 1957년부터 勞動力調査라는 이름의 經濟活動人口調査를 全國的으로 確率標本으로 每月 地方行政機關에 依賴하여 實施하였던 바, 이때의 標本은 1955年 人口센서스 調査區를 이용하여 確率標本으로 抽出한 450個 標本調査區에서 다시 全體抽出率이 1/1,000이 되도록 抽出한 約 4,000家口의 自體加重標本이었다.

이 勞動力調査는 1961年 8月부터는 1960年 總人口調査區를 이용하여 새로 改編된 標本을 사용함과 동시에, 調査의 名稱을 勞動力調査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로 바꾸었으며, 現地調査도 地方行政機關에 依賴하여 實施하던 것을 統計局 直屬의 男子統計調査員을 確保하여 實施하였다. 이때의 標本은 1960年 總人口調査區를 이용하여 確率標本으로 抽出한 476個 標本調査區에서 다시 全體抽出率이 1/1,000이 되도록 抽出한 約 5,100家口의 自體標本이었다.

1963年에 旣存의 經濟活動人口調査 외에 人口動態標本調査와 都市家計調査를 새로 實施하게 되었는데, 人口動態標本調査는 經濟活動人口調査와 같은 標本에서 同時에 竝行하여 調査를 實施하였으며, 都市家計調査는 全都市를 對象地域으로하여 確率標本으로 抽出된 344個 標本班에서 다시 全體抽出率이 1/650이 되도록 抽

出한 約 1,700家口의 自體加重標本을 調査統計局 直屬의 女子調査員을 確保하여 實施하였다. 이와같은 全都市의 家計調査가 實施됨에 따라, 韓國銀行의 서울地域 家計調査는 1964年부터 中止하였다.

1969年에는 1965年 總人口調査區를 이용하여 抽出한 126個의 多目的 標本調査區로 標本을 改編하였는데, 이 多目的 標本調査區는 各種 家口標本調査에서 共同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각 標本調査區를 여러개의 區域으로 分割하여 각 標本調査區마다 1個 區域씩을 調査하면 全體抽出率이 1/1,000인 自體加重標本이 되며, 각 標本調査區를 40家口～44家口가 되도록 여러개의 區域으로 分割하고, 126個 標本調査區에서 各各 1個씩의 區域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를 男子調査員이 擔當하였으며, 市部의 46個 標本調査區에서는 各各 經濟活動人口調査 區域과는 별도의 1個區域에서 女子調査員이 都市家計調査를 擔當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標本改編에 의한 標本家口數는 過去에 比하여 10%程度밖에 增加하지 않았다.

1972年에는 多目的 標本調査區를 126個 調査區에서 165個 調査區로 擴大改編하였는데 이때에는 1970年 人口센서스 調査區를 이용하였다. 標本調査區에서는 過去와 같은 區域分割이 없이 全數調査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實施하였다. 따라서 經濟活動人口調査 標本은 1/1,000의 標本에서 1/500의 標本으로 改編하고, 標本家口數는 12,000家口로 거의 培나 增加하였다.

그리고 都市家計調査는 過去 標本에서 1年間 더 調査하다가, 1973年부터 市部地域의 모든 家口標本調査는 女子調査員이 擔當하게 됨에 따라, 市部에서 男子調査員이 擔當하던 72個 調査區를 女子調査員이 擔當하여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實施하고, 各 調査區內에서는 다시 1/3의 居處를 系統抽出하여 都市家計調査를 實施하였다. 따라서 都市家計調査의 標本은 1/1,000의 標本에서 1/1,500의 標本으로 改編되었으나 市部의 家口數 增加로 標本家口數는 過去와 거의 비슷한 約 1,800家口가 되었다.

家口標本調査의 標本은 1977年, 1982年, 1988年에 繼續하여 改編되었으며, 標本을 改編할 때마다 標本規模는 擴大되었다. 특히, 1988年 標本改編에서는, 經濟活動人口調査의 경우에는 就業者數와 失業者數에 관한 市道別 推定値의 提供을 試

圖하고, 都市家計調査의 경우에는 6大都市別 家計收支에 관한 推定値의 提供을 試圖하게 되었다.

事業體部門에서 標本調査로 實施한 最初의 統計調査는 現在 統計廳에서 實施하고 있는 鑛工業動態調査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韓國銀行에서는 1954年부터 1968年까지 生産指數編制의 目的으로 調査對象品目을 生産하는 事業體를 全數調査하였으며, 全數調査가 不可能한 경우에는 生産額이 큰 事業體부터 차례로 一部의 事業體만을 調査하였다. 실제적으로 이 調査를 標本調査라고는 할 수 없지만, 標本調査로 實施하게 되는 契機가 되었다.

한편 韓國産業銀行에서도 1962年부터 1960年 鑛工業總調査의 事業體를 이용하여 確率標本抽出技法으로 抽出된 約 2,400個 事業體의 標本으로 鑛工業標本調査를 實施하였으며, 이를 補完하기 위한 地域單位標本調査를 竝行하여 實施하였다. 이 調査의 標本은 1965年에 1963年 鑛工業總調査의 事業體를 이용하여 改編하였으며, 이 調査는 1970年에 當時의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으로 移管되면서 調査의 名稱도 鑛工業動態調査로 바뀌었다. 이때, 調査統計局에서는 準備段階로서 새로 設計한 確率標本에 의한 調査를 5個月間 韓國産業銀行의 調査와 竝行하여 實施하였다.

그후 이 鑛工業動態調査의 標本은 네차례의 改編을 거치면서 標本設計技法이 相當히 高度化되었으며, 여기에서 開發된 標本抽出技法은 統計廳의 各種 事業體標本調査의 標本設計에도 活用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國의 標本調査는 1950年代初에 統計局과 韓國銀行에서 시작한 이래 家口標本調査는 統計廳의 家口標本調査로 이어지고 있고, 事業體標本調査는 韓國産業銀行의 調査를 거쳐 統計廳의 事業體標本調査로 이어지면서 그 技法이 繼續的으로 改善되어 왔으며, 結果的으로는 이러한 過程에서 얻은 經驗과 技法이 다른 分野에서 대부분의 標本調査에 擴散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統計調査技法의 發展過程 및 內容은 앞에서 言及한 順序와 範圍에 따라 자세히 考察하여 보기만 하여도 거의 大部分 把握할 수 있으므로, 以下에서 그 標本設計技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나. 家口部門 標本調査

(1) 韓國銀行 地域別 家計調査

(가) 最初의 家計調査

1950年 1月에 當時의 公報處 統計局과 韓國銀行에서 共同事業으로 서울의 勤勞者家口 120家口를 有意標本(非確率標本)으로 抽出하여 生計費調査라는 이름의 家計調査를 實施하였던 바, 이 調査는 6·25事變으로 中斷되었다. 이때의 標本家口는 서울市民의 「中堅」이라고 推測되는 俸給者家口 90家口(公務員 35, 國民學校敎員 15, 銀行員·會社員 40) 및 勞務者家口 30家口(金屬工 6, 化學工 10, 印刷工 14)를 調査의 性格에 맞추어 有意的으로 抽出한 것이다. 이 調査가 初創期的인 性格이 바로 나타날 정도로 粗雜한 것이기는 하지만 政府樹立 이후 最初의 標本調査라고 할 수 있다.

(나) 釜山市 家計調査

1951年 7月부터 1953年 8月까지 韓國銀行의 單獨事業으로 當時의 臨時 首都인 釜山에서 勤勞者家口 50家口를 有意標本으로 抽出하여 生計費調査를 實施하였으며, 이때의 標本家口는 종전과 같이 俸給者와 勞務者의 中堅層에서 俸給者家口 30家口(公務員 15, 國民學校敎師 5, 銀行員 10) 및 勞務者家口 20家口(紡織工, 化學工, 精米工, 土木工 各 5)를 有意的으로 抽出한 것이다.

(다) 서울市 家計調査

1953年에는 政府가 서울로 還都하게 됨에 따라, 同年 9月에는 서울地域의 生計費調査를 200家口의 有意標本으로 다시 시작하였다. 이때의 標本家口는 俸給者家口 100家口(公務員 30, 國民學校敎師 20, 銀行員 15, 會社員 35) 및 勞務者家口 100家口(化學工, 機械工, 紡織工, 食料品製造工 各 25)를 有意的으로 抽出한 것이다. 특히, 이 調査에서는 처음으로 所得階層別 集計를 試圖하였다는 점에서 그 特徵을 찾을 수 있다.

이 서울市 生計費調査는 1959年 10月의 標本改編과 함께 調査의 名稱을 家計調査로 바꾸면서 많은 發展을 이루었다.

첫째로 標本家口 抽出過程에서 確率標本抽出技法이 사용되었으며, 標本家口數의

決定에 完全하지는 못하지만 確率標本理論이 適用되었다는 점이다.

標本家口는 二段抽出法으로 600家口를 抽出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의 254個洞 중에서 農村地域에 該當하는 26個洞을 除外한 219個洞을 分割 또는 統合하여 約 2,000家口가 包含되는 146個의 抽出單位地域을 設定하고, 家口數를 基準으로 한 確率比例系統抽出法으로 25個의 抽出單位地域을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이와 같이 抽出된 25個의 地域 하나하나가 調査員 1名이 擔當하는 地域이다. 標本으로 抽00出된 地域에서는 모든 家口에 대한 豫備調査로서 家口名簿를 作成하고, 각 地域別로 豫備調査結果에 나타난 職業 및 所得階層別 家口分布에 比例하도록 24家口씩을 抽出하였다.

標本家口數는 家口當 月平均 支出額의 標本誤差를, 95% 信賴 水準에서 5%로 하여 單純任意標本의 標本規模 算出公式을 適用하여 488家口의 標本規模를 얻었다. 이때의 月平均 支出額의 相對分散은 約 500家口의 試驗調査結果에서 얻은 相對分散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細目別 支出額의 相對分散은 總支出額의 相對分散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것으로 豫想하여 總支出額을 基準으로 算出된 標本規模 488家口에서 주어진 豫算으로는 最大規模인 600家口로 增加시켜 決定하였다.

둘째로 標本으로 抽出된 家口는 轉出 및 그밖의 理由로 調査不能이 되지 않는 한 1年間 繼續하여 調査하였으며, 調査不能家口가 생겼을 때에는 같은 地域에서 特性이 같은 다른 家口로 代替하였다. 특히 오래된 標本家口는 25%의 範圍에서 每分期마다 같은 方法으로 抽出된 새로운 家口와 交替하였다.

셋째로 過去의 調査에서는 標本家口에서 每月 미리 받은 家計簿를 매일 매일 直接 記入토록 하고 調査員을 記入 督勵 및 指導를 위하여 每月 여러 차례 標本家口를 訪問하는 自計式 調査方法를 사용하였으나 一部의 項目은 自計式 調査方法을 그대로 維持하고 나머지 項目은 訓練된 調査員(女子大學生)이 面接調査하는 他計式 調査方法을 竝行하여 사용하였다. 즉, 過去의 同一 標本家口에 대한 每月 調査를 分期別 調査로 바꾸어 飮食物費 以外의 項目(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에 대하여는 1月, 4月, 7月, 10月에 지난 3個月間의 支出을 調査員이 訪問하여 面接調査하였으며, 飮食物費의 경우에는 全體 標本家口를 9等分하여 每分期別로 10日間씩만 循環하며 自計式調査를 實施함으로써 標本家口에서는 每分期別로 指定된

10日間만 飮食物費를 記入하면 되므로 標本家口의 負擔이 輕減되어 보다 正確한 內容의 記入을 期待하였다.

이와 같이 自計式方法과 他計式方法을 竝行한 理由는 보다 正確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한 것이었다. 自計式方法은 標本家口에서 完全하게 記錄하여 주기만 하면 가장 좋은 方法이지만, 1個月만이라도 事實대로 꾸준히 記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調査가 長期化할수록 內容이 不實하게 될뿐만 아니라 家計簿의 作成을 통하여 얻은 事實로 支出規模를 合理的으로 縮小시키는 傾向이 생겨 標本의 代表性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을 經驗하였으며, 또한 同一한 豫算으로 보다 많은 家口를 調査할 수 있다고 判斷하게 되었다.

이 調査는 1962年부터 豫算 및 其他의 事情으로 標本地域數를 25個 地域에서 18個 地域으로 縮小改編함으로써 標本家口數도 600家口에서 450家口로 減少된 상태에서 1963年까지 繼續되었다. 이때의 標本抽出方法은 抽出單位地域의 家口數가 2,000家口 정도에서 3,000家口 정도로 變更되고, 標本地域當 標本家口數가 1家口씩 增加하여 25家口로 되었다는 점을 除外하고는 종전의 方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韓國銀行 支店所在地 都市生計費 調査

1953年 9月부터 서울地域의 家計調査를 實施하면서 1954年 7月에는 韓國銀行 支店所在地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全州, 淸州, 木浦의 8個 地方都市에서 總 160家口의 有意標本으로 生計費調査를 實施하였으며, 1958年 6月에는 春川의 20家口가 追加되어 1958年까지 繼續하였다. 標本家口는 各市에서 均等하게 20家口씩 中産層이라고 推測되는 家口를 有意的으로 抽出하였으며, 俸給者家口 10家口(公務員 3, 國民學校敎師 3, 銀行員 2, 會社員 2) 및 勞務者家口 10家口(紡織工 3, 化學工 3, 食料品製造工 2, 機械工 2)로 配分하였다. 그리고, 當時 서울의 每月調査와는 달리 각 分期의 中間月인 2月, 5月, 8月, 11月에만 自計式方法으로 實施하였다.

(마) 地方都市 家計調査

1961年에는 1959年에 中止하였던 韓國銀行 支店所在地 都市生計費調査를 濟州市를 除外한 全地方都市로 擴大하여 確率標本抽出技法으로 抽出된 1,050家口의

標本으로 1年間, 地方都市家口調査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濟州市를 除外한 當時의 25個 市중에서 人口가 50萬名以上인 釜山과 大邱는 各各 別個의 大都市層으로 하고, 나머지의 23個 市를 人口가 10萬以上인 中都市層과 人口가 10萬未滿인 小都市層으로 層化하고, 35個의 標本地域을 人口數에 比例하도록 配分한 結果, 釜山과 大邱에 各各 8個 地域과 5個 地域이 割當되었으며 中都市層과 小都市層에는 各各 12個 地域과 10個 地域이 割當되었다. 그리고 中都市層과 小都市層에서는 各各 5個씩의 市를 人口數를 基準으로 한 確率比例抽出法으로 抽出하였으며, 各層別 標本地域數를 標本으로 抽出된 市에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配分한 結果, 仁川과 光州에 各各 3個地域과 大田, 全州, 春川, 鎭海, 慶州, 群山, 木浦, 原州에 各各 2個의 地域이 割當되었다. 다음 段階로 釜山, 大邱 및 標本으로 抽出된 10個 市에서는 洞 또는 統을 서로 隣接하도록 여러개씩 結合하여 約 3,000家口가 包含되는 抽出單位地域을 設定하고, 各各 割當된 數의 地域을 單純任意抽出하였다. 그리고, 最終段階로 標本地域에서는 모든 家口에 대한 基本調査結果를 이용하여 30家口씩을 標本으로 抽出하였으며, 1名의 調査員이 1個의 地域을 擔當하였다.

(바) 邑地域家計調査

1962年에는 地方都市家計調査를 中止하고, 邑地域家計調査를 確率標本抽出技法으로 抽出된 400家口의 標本으로 1年間 實施하였다. 이를 위하여 濟州道의 邑과 農家가 過半數以上인 邑을 除外한 85個의 邑을 地域에 따른 生活樣式의 差異를 考慮하여 中部·嶺東地域, 湖南地域 및 嶺南地域의 3個 層으로 層化하여 16個의 標本邑을 各層의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配分하고, 各層에서는 割當된 數의 邑을 家口數를 基準으로 한 確率比例抽出法으로 抽出하였으며, 營農家口가 過半數인 邑과 濟州道의 邑은 미리 抽出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다음 段階로 各 標本邑에서는 農家가 過半數인 地域의 家口와 調査에 不適當한 家口는 除外하고 1,500家口씩의 家口名簿를 作成하여 25家口씩을 單純任意標本으로 抽出하였다.

(2) 統計廳 家口標本調査

(가) 經濟活動人口調査 實施

經濟活動人口調査는 1957부터 當時의 內務部 統計局(現在의 統計廳)에서 勞動

力調査라는 이름으로 1962年 5月까지 全國的인 確率標本으로 每年 實施하였으며, 450個의 標本調査區에서 全體抽出率이 1/1,000이 되는 自體加重標本으로 約 4,000家口를 調査하였다

標本調査區는, 1955年 人口국세조사時 8,808個의 調査區를 地域的인 條件 및 農業部門 就業率에 따라 市部에서 12個層과 郡部에서 22個層을 設定하고, 市部의 경우 152個 標本調査區를, 郡部의 경우 298個의 標本調査區를 人口數에 比例하도록 各層에 配分하여 각 層別로 標本調査區를 抽出하였다. 市部·郡部의 人口比例에 따르면, 市部의 標本調査區數는 76個 調査區가 되지만 그 두배인 152個 調査區로 하였다.

그리고, 標本調査區內에서는 市部의 경우 1/6의 家口를 郡部의 경우 1/3의 家口를 標本으로 抽出하여 標本家口의 全體抽出率이 1/1,000인 自體加重標本이 되도록 하였으며, 總 標本家口수는 約 4,000家口가 되었다.

특히, 이 當時에는 標本調査區를 一部씩 같은 特性의 다른 調査區로 완전히 交替하여 每 3個月마다 完全히 交替되는 標本의 連動交替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現地 實査業務는 별도의 調査員이 擔當하지 않고 地方行政 機關을 통하여 實施하였으며, 地方行政機關을 통한 蒐集資料를 集計하는 初步적인 段階에 있었다.

(나) 經濟活動人口調査 標本改編 및 人口動態標本調査 實施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樹立과 그 遂行을 위하여 政府統計業務의 強化策이 講究됨에 따라, 1962年 8月부터 勞動力調査는 男子調査員을 專擔調査員으로 確保하여 現地 實査業務를 擔當하게 되었으며, 調査의 名稱도 經濟活動人口調査로 바꾸고, 標本도 1960年 人口센서스 調査區를 利用하여 새로 改編된 786個의 標本調査區에서 全體抽出率이 1/1,000이 되는 自體加重標本으로 約 5,100家口를 調査하게 됨과 同時에, 月別 調査를 分期別 調査로 實施하게 되었다.

그동안 實施하지 않았던 人口動態標本調査는 1963年부터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擔當調査員이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同時에 並行하여 實施하게 되었다.

標本調査區는, 1960年人口센서스 調査區 중에서 休戰線 隣接 地域의 調査區와 各種 施設單位調査區를 除外하고, 7大都市(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全

州)와 기타 地域으로 나누어 抽出하였다.

7大都市에서는 1960年 人口 센서스 調査區를 地域 및 人口數를 考慮하여 人口數가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93個의 層을 層化하고, 各層에서는 人口數에 比例하는 確率로 2個의 標本調査區를 抽出하였다.

기타地域에서는 地理的인 條件을 考慮하여 2個 以上의 市邑面을 묶어서 605個의 抽出單位地域을 만들어 그 特性(人口數, 農家率, 漁家率, 畜率, 鑛業就業率, 製造就業率)에 따라 人口數가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30個의 層으로 層化하고, 各層에서는 人口數가 比例하는 確率로 2個의 抽出單位地域를 標本으로 抽出하였으며, 標本으로 抽出된 60個의 抽出單位 地域에서는 各各 10個의 人口센서스 調査區를 人口數에 比例하는 確率로 系統抽出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이 抽出된 總 786個의 標本調査區에서는 標本家口의 全體抽出率이 1/1,000이 되도록 家口를 系統抽出하였으며, 1966年 調査結果의 標本家口數 約 5,100家口가 되었다.

(다) 都市家計調査 實施

1963年부터 都市家計調査를 當時의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擔當하게 됨에 따라 이 調査의 現地 實査業務를 擔當할 女子調査員을 專擔調査員으로 確保하게 되었고, 調査對象地域도 全都市로 擴大하여 새로 抽出된 344個 標本班(1個 標本洞에서 1個 標本班)에서 全體抽出率이 1/650이 되는 自體加重標本으로 約 1,700家口를 調査하였다.

이때 都市家計調査의 標本은 當時의 32個 市 중에서 中央으로 부터 交通이 不便한 濟州市와 束草市를 除外하고, 6大都市와 기타 都市로 나누어 抽出하였다.

6大都市에서는 各各 平均財産稅額, 人口密度 등의 特性을 利用하여 洞을 總 130個層(各市의 家口數에 따라 서울 57, 釜山 34, 大邱 15, 仁川 10, 光州 6, 大田 8)으로 層化하고, 各層에서는 家口數에 比例하는 確率로 2個 洞씩, 總 260個의 標本洞을 抽出하였으며, 24個의 기타市에서는 各市를 1個의 層으로 하여 各市에서는 家口數에 따라 2個 以上의 짝수의 洞을 抽出할 수 있도록 84個의 洞을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各市에 配分하고, 各市에서는 家口數에 比例하는 確率로 配分된 數의 標本洞을 抽出하였다.

이와같이 抽出된 344個의 標本洞에서는 各各 1個의 班을 單純任意 抽出하고, 標本으로 抽出된 班에서는 標本家口의 全體抽出率이 1/650이 되도록 家口를 系統抽出하였으며, 1966年 調査結果의 標本家口數는 約 1,700家口가 되었다.

그런데, 市部에서는 都市家計調査를 經濟活動人口調査 및 人口動態標本調査와는 調査員과 標本을 달리하여 獨立的으로 實施함으로써 調査에 隨伴되는 行政業務 및 實査管理業務가 分離되므로 限定된 豫算과 人員으로는 調査管理를 徹底히 하는데 隘路點이 있게 되었다.

또한, 1965年에는 男子調査員이 小賣物價調査(韓國銀行의 서울消費者物價調査의 全國擴大)를 새로 擔當하게 되었다. 그리고, 各種 開發計劃의 遂行으로 모든 社會與件이 急變하였으나, 同一한 標本을 長期的 使用함으로써, 이를 反映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多目的 標本設計

1969年에는 標本과 關聯된 問題點을 解決하고 行政上의 편이, 調査管理의 徹底 등을 위하여 126個 標本調査區를 各各 40家口－44家口의 여러個의 區域으로 分割하여 그중 1個의 區域에서 全數調査를 하면 全體抽出率이 1/1,000인 自體加重標本이 되도록 多目的 標本으로 改編하였으며, 모든 標本調査區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實施하고, 市部의 46個 標本調査區에서는 다른 1個 區域에서 全數調査로 約 1,800家口에 대하여 都市家計調査를 實施하게 되었다.

이 多目的 標本의 標本調査區는 1966年 人口센서스 調査區 중에서 陸地閑地調査區, 落島閑地調査區 및 施設單位調査區를 除外하고 普通調査區 중에서 抽出한 것이다.

普通調査區 중에서의 標本調査區는 市部와 郡部로 나누어 層化抽出 하였는데, 市部에서는 約 14,000個의 普通調査區를 調査區 特性(住宅率, 農家率, 教育施設, 市場까지의 距離, 텔레비젼 保有家口率)에 따라 家口數가 비슷하게 되도록 23個의 層으로 層化하였으며, 郡部에서는 約 25,000個의 普通調査區를 調査區 特性(住宅率, 農家率, 醫療施設, 交通施設, 特産物, 主産物, 邑·面事務所까지의 距離, 水理施設)에 따라 市部層의 家口數와 비슷하게 되도록 40個의 層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各層에서는 家口數에 比例하는 確率로 2個의 調査區씩, 總 126個의 標

本調査區로 抽出하였으며, 각 標本調査區를 調査區가 비슷하게 여러 個의 區域으로 分割하여 그 중 1個의 區域을 標本으로 抽出할 때의 全體抽出率이 約 1/1,000인 自體加重標本이 되도록 여러 個의 區域(普通 3個－4個의 區域)으로 分割하였다.

그리고, 市部地域의 46個 標本調査區에서는 女子調査員이 各各 1個 地域에서 都市家計調査를 全數調査로 實施하였으며, 男子調査員은 다른 1個地域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全數調査로 實施하고, 郡部地域의 80個 標本調査區에서는 各各 1個區域에서 男子調査員이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全數調査로 實施하였다. 1969年 調査結果의 都市家計調査의 標本家口數는 約 1,800家口가 되었고,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의 標本家口數는 約 5,600家口가 되었다.

그런데 1963年부터 實施한 人口動態標本調査의 그동안의 調査結果는 人口센서스 資料로 間接的인 方法에 의하여 推定한 動態率과 비교하여 評價한 結果, 기대했던 水準에 미치지 못하여 1969年 3/4分期부터 일단 中止하였다.

1970年에는 都市家計調査를 擔當하는 女子調査員의 業務量이 過多한 것으로 判明되어, 調査區域의 家口數를 1/6씩 減少시켜 調査區域을 縮小함에 따라 全體抽出率은 1/1,000에서 1/1,200으로 되었으며, 標本家口數는 1,800家口에서 1,600家口로 減少하였다.

男子調査員은 經濟活動人口調査외에 全國 鑛工業動態調査(韓國産業銀行에서 引受하여 1969年부터 實施), 都小賣業務動態調査(서울地域에 한하여 1970年부터 實施, 現在全都市로 擴大)의 事業體 中에서 1個의 調査를 追加로 擔當하게 되어, 市部地域 男子調査員의 業務量이 過去에 비하여 急增하게 되었다.

또한, 各種 開發計劃의 遂行으로 工場의 建設, 大規模의 任宅團地 造成, 水路의 新設 및 擴張 등에 따르는 住宅의 集團的 撤去 및 新築 등으로 인하여 標本區域內의 家口數가 너무 많이 減少하거나 增加하는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調査員의 業務量 調整등 調査管理가 힘들게 되었다.

1) 多目的 標本 1次改編

1972年에는 標本과 關聯된 問題點을 解決하고, 調査員의 業務量을 가급적 均等하게 함과 同時에 限定된 數의 調査員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市部地域에

서는 男子調査員이 擔當하던 經濟活動人口調査를 女子調査員이 追加로 擔當하는 方案을 講究하게 되었다.

이러한 過程으로, 1970年 人口센서스 調査區 中에서 落島閑地調査區와 施設單位調査區를 除外한, 나머지의 普通調査區와 陸地閑地調査區를 利用하여 50家口～90家口의 165個의 標本調査區를 抽出하고, 각 標本調査區에서 全數調査할 때의 全體抽出率이 1/500이 되는 約 12,000家口의 自體加重 標本으로 標本을 改編하고, 1972年부터 이 標本에서 男子調査員이 經濟活動人口調査를 擔當토록 하였다.

그리고, 市部地域에서는 1973年에 男子調査員이 擔當하던 經濟活動人口調査를 女子調査員이 擔當하게 되었고, 同時에 都市家計調査도 經濟活動人口調査의 市部地域 72個 標本調査區에서 各各 1/3의 居處를 系統抽出하여 標本居處 內의 모든 家口를 全數調査하였으며, 標本家口의 全體抽出率이 1/1,500이 되는 自體加重標本이 되었다. 1973年 調査結果에 의하면, 都市家計調査의 標本家口數는 約 1,800家口가 되었고,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家口數는 約 13,500家口가 되었다.

또한, 1973年부터는 1969年 3/4分期이래 中止하였던 人口動態標本調査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 當時의 標本調査區는 1970年 人口센서스 中에서 落島閑地調査區와 施設單位調査區를 除外하고, 普通調査區와 陸地閑地調査區 中에서 抽出하였다.

普通調査區 中에서 標本調査區는 人口센서스 當時 基本項目에 追加하여 經濟活動狀態, 出產力 등에 관한 項目을 調査하기 위하여 行政區域番號 및 調査區番號順으로 系統抽出한 20%의 實査標本調査區를 利用하여 抽出하였다.

즉, 普通調査區 中에서 抽出된 15,047個의 實査標本調査區를 50家口 未滿인 경우에는 그 다음 또는 앞의 番號의 實査標本調査區와 統合하여 抽出單位調査區의 家口數가 50家口를 超過하였다. 그리고, 각 調査區의 人口數에 대한 1次產業, 2次產業, 3次產業 就業者의 百分率 資料를 利用하여, 市部와 郡部別로 各各 抽出單位調査區를 1次產業 從事率의 내림순으로 1次分類하고 각 1次分類 內에서는 다시 2次產業 從事率의 내림순으로 2次分類 하였으며, 각 2次分類 內에서는 3次產業 從事率의 내림순으로 分類하여 抽出單位調査區의 名簿를 作成하였다. 이때, 抽出單位調査區의 家口數가 50家口～90家口이면 크기의 測度 1을, 100家口～179家口

이면 크기의 測度 2를, 180家口～259家口이면 크기의 測度 3을 賦與하였다.

이와같이 作成한 市部·郡部別 調査區名簿에서 各各 調査區別 크기의 測度의 合計(市部 35,831, 郡部 45,872)의 1/500에 해당하는 數의 調査區인 市部의 72個 調査區, 郡部의 92個 調査區를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系統抽出하였으며, 標本으로 抽出한 調査區의 크기의 測度가 1이면 그 調査區 自體를 標本調査區로 하고, 크기의 測度가 2以上인 調査區는 家口數와 비슷하게 크기의 測度와 같은 數의 區域으로 分割하여, 分割된 區域 中에서 1個의 區域을 標本調査區로 單純任意抽出하였다.

그리고, 536個의 陸地閑地調査區 中에서는 1個의 標本調査區를 有意抽出하였다.

2) 多目的 標本 2次改編

그동안의 經濟開發計劃의 遂行에 의한 各種 工場의 建設, 大規模 住宅團地의 造成, 道路新設 및 擴張 등에 따르면 建物의 集團的 撤去 및 新築으로 인하여 標本調査區 內의 住宅이 완전히 撤去되거나, 이와는 반대로 新築住宅 및 家口가 急增하여, 調査員間의 業務量의 調整등 調査管理가 힘들게 되었다.

또한, 家口標本調査의 資料 移用者로부터 보다 細分化된 資料를 要求하였으므로, 行政的으로는 調査員 增員을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하면서, 技術的으로는 調査員의 業務量을 별로 增加시키지 않고도 標本地域數를 增加시키는 硏究를 推進하였다. 이러한 努力과 硏究의 結果로, 1977年에는 120名의 調査員을 增員시키면서 標本도 經濟活動人口의 調査의 경우에는 全體抽出率을 1/500에서 1/349로 擴大시키면서 標本規模는 165個 調査區의 13,500家口에서 422個 調査區의 21,000家口로 增加되고, 이중 市部의 280個 調査區에서는 各各 2/3의 家口가 包含되는 區域을 都市家計調査 地域으로 設定하게 됨에 따라 都市家計調査의 경우에는 全體抽出率을 1/1,500에서 1/523.5로 擴大시키면서 標本의 規模는 72個 調査區의 1,800家口에서 284個 調査區의 4,000家口로 增加시켜 標本을 改編하였다.

이 標本改編에서는 男子調査員이 郡部의 1個 調査區를 擔當하는 것은 從前과 같지만 女子調査員의 경우에는 市部의 1個 調査區씩을 擔當하던 것을 2個 調査區씩 擔當토록 하는 대신에, 郡部에서는 70家口 程度의 人口센서스 調査區를 그대로 標本調査區로 하지만 市部에서는 家口數가 비슷하게 2個 區域으로 分割하여 그중 1

個 區域을 標本調査區로 抽出하여 經濟活動人口調査를 全體調査하고 그중 2/3家口가 包含되는 區域에서 都市家計調査를 追加토록 하여 市部의 調査區當 調査規模를 過去의 1/2程度로 調整함으로써 女子調査員의 業務量을 별로 增加시키지 않고도 標本調査區를 보다 더 擴散시킬 수 있었다.

이 當時의 標本改編에서는 全國을 서울, 釜山, 大邱, 기타 道廳所在地(水原, 春川, 淸州, 大田, 全州, 光州, 濟州) 및 中都市(仁川, 馬山), 기타 小都市(23個 市), 郡部의 6個의 層으로 分類하였다.

그리고, 1975年 人口센서스에서는 當時의 35個市와 9個道 각 郡部의 44個 地域別로 抽出率을 1/4(濟州市 및 濟州道 郡部)부터 1/49(서울)까지 달리 適用하여 行政區域番號 및 調査區番號 順으로 實査標本調査區를 系統抽出하고, 實査標本調査區에서는 基本項目 외에 經濟活動狀態 및 出産力 등에 관한 項目을 追加하여 調査하였다.

따라서, 各層에서는 經濟活動狀態에 관한 資料를 活用하기 위하여 이 實査標本調査區 中에서 標本調査區를 抽出하였다.

그런데, 서울, 釜山, 大邱를 除外한 3個層에서는 各層에 包含되는 市 또는 各道 郡部에서의 實査標本調査區 抽出率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層別로 實査標本調査區의 抽出率이 가장 적은 地域의 抽出率과 같게 되도록 다른 地域의 實査標本調査區 중에서 一部를 行政區域番號 및 調査區 番號 順으로 系統的으로 除外시켰으며, 實際的으로 各層에 包含된 實査標本調査區의 抽出率은 層에 따라 1/9부터 1/49까지 서로 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郡部를 除外한 市部의 5個 層에서는 各各 實査標本調査區를 1次産業從事率, 2次産業從事率, 3次産業從事率의 資料를 利用하여, 다음과 같이 6個의 集團順으로 分類하고, 각 集團內에서는 다시 住宅率, 飮食·宿泊業從事率의 資料로 再分類하였다.

第1集團 : 1次産業＞2次産業＞3次産業

第2集團 : 1次産業＞3次産業＞2次産業

第3集團 : 2次産業＞1次産業＞3次産業

第4集團 : 2次産業＞3次産業＞1次産業

第5集團：3次產業＞1次產業＞2次產業

第6集團：3次產業＞2次產業＞1次產業

郡部層에서는 實査標本調査區를 우선 邑部와 9個道의 각 郡部 順으로 分類한 다음, 各各 産業別 從事率 資料로 市部의 各層에서와 같이 6個集團順으로 再分類하였다.

그 當時에 家口調査를 위하여 活用可能한 最大 調査員數는 289名이었으므로, 280名을 各層의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配分하고, 市部의 各層에서는 1名의 女子調査員이 2個 調査區를, 郡部層에서는 1名의 男子調査員이 1個의 調査區를 擔當하도록 各層別로 家口數에 比例하는 確率로 標本調査區를 抽出하였으며, 市部에서 284個의 調査區와 郡部에서 138個의 調査區가 抽出하였다.

그리고, 標本으로 抽出된 調査區를 各各 人口센서스 家口數 基準으로 70家口가 되도록 調査區 境界線을 調整하여, 郡部의 경우에는 이 自體를 標本調査區로 하고, 市部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家口數와 비슷하게 2個의 區域으로 分割하여 이 中 1個 區域을 標本調査區로 하였으며, 이들 調査區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를 全數調査하였다. 結果的으로는 全體抽出率이 1/349인 約 21,000家口의 自體加重標本이 되었다.

都市家計調査는 市部 各 標本調査區에서 2/3의 家口數가 包含되는 區域을 設定하여 이 區域에서 全數調査하였으며, 結果的으로는 全體抽出率이 1/523.5인 約 4,000家口의 自體加重標本이 되었다.

3) 多目的 標本 3次改編

그동안의 經濟開發計劃의 遂行으로 社會構造가 複雜多樣하게 되었고, 이를 標本에 가급적 잘 反映시킬 수 있도록 1982年에는 1980년 人口센서스 調査區를 이용하여 標本을 改編하였다.

이 標本改編에서는, 市部의 경우 女子調査員이 2個씩의 調査區를 擔當하던 것을 3個씩의 調査區를 擔當토록 하는 대신에 調査區間의 移動時間을 考慮하여 3個 調査區에서의 1人當 總調査家口數는 過去의 85% 程度가 되도록 하였으며, 結果的으로, 全國 標本調査區의 全體抽出率은 1/349에서 1/547로 減少되었으나 標本調査區數는 422個 調査區에서 540個 調査區로 增加되었으며, 調査區當 調査規模調

整으로 調査家口數는 21,000家口에서 15,500家口가 되었다. 이 標本調査區中 市部의 447個 調査區에서는 각각 家口數의 1/2이 包含되는 地域을 都市家計調査의 區域으로 設定하게 됨에 따라, 都市家計調査의 경우에는 全體抽出率이 1/523.5에서 1/1,094로 減少되면서 標本調査區數는 284個 調査區에서 447個 調査區로 增加되었고 調査家口數에서 4,400家口가 되었다.

標本調査區 抽出을 위하여는 1980年 人口센서스에서는 速報集計를 위하여 地域單位調査區(施設單位 調査區를 除外한 普通調査區 및 섬調査區)중에서는 行政區域番號 및 調査區番號 順으로 1/12의 調査區를 系計 抽出하여 優先的으로 集計하였으며, 時期的으로 이 速報用 調査區를 利用할 수 밖에 없었다.

標本調査區 抽出을 위하여, 우선 市部에서는 17個의 小都市를 地理的으로 가까운 隣接 都市와 統合하여 50個 市를 33의 集團으로 分類하고, 郡部에서는 9個 道를 個別 集團으로 하여 市部와 郡部別로 各各 이 地域集團의 行政區域 番號順으로 整理하였다.

그리고, 각 地域集團에서는 抽出單位 調査區를 農家率이 1%以上인 경우와 1% 미만인 경우로 먼저 分類한 다음 (각 地域 集團의 特性에 따라 1%以上의 基準을 택한 경우도 있음) 다시 1次産業從事率, 2次産業從事率, 3次産業從事率을 利用하여 1977年 標本改編때와 같은 方法으로 6個 集團 順으로 2次分類하였다.

이와 같은 6個의 産業分類集團 內에서는 다시 주된 住宅의 特性에 의하여 一般住宅 調査區, 聯立住宅調査區, 아파트調査區, 其他調査區의 順으로 3次分類 하였으며, 最終的으로는 住宅所有率의 順으로 分類·羅例하여 抽出單位 調査區名簿를 作成하였다.

이때 抽出單位 調査區의 人口센서스 家口數를 市部로 나누어 반올림한 結果를 각 抽出單位 調査區의 크기의 測度로 賦與하였다.

이 當時의 家口標本調査에 活用可能한 調査員은 242名이었으며, 일 調査員數를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市部, 郡部에 配分하고, 市部에서는 女子調査員 1人이 3個 調査區를, 郡部에서는 男子調査員 1人이 1個 調査區를 擔當토록 하여 市部에서 447個의 調査區와 郡部에서 93個 調査區를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系統抽出하였다.

이와 같이 標本으로 抽出된 調査區에서는 家口數가 비슷하게 크기의 測度와 같은 數의 區域으로 分割한 다음 市部의 調査區에서는 各各 2個씩의 區域을 抽出하고 郡部의 調査區에서는 各各 6個씩의 區域을 抽出하여 經濟活動人口調査의 調査區로 하였다. 結果的으로 全體抽出率이 1/547인 自體加重標本이 되었다.

그리고, 市部의 各 調査區에서는 2個 區域中 1個 區域에서만 都市家計調査를 實施함으로써 全體抽出率이 1/1,094인 自體加重標本이 되었다.

그리고, 1982年부터는 新築아파트 中에서도 같은 抽出率 標本調査區를 抽出하여 繼續 追加하고 있으며, 標本調査區 內에서 아파트가 아닌 一般住宅이나 聯立住宅이 急增한 경우에는 2個 以上의 標本調査區로 分割하여 各各을 하나의 調査區로 取扱하였다.

특히, 1982年부터는 經濟活動人口調査의 調査頻度를 分期別 調査에서 月別調査로 變更하였고, 1983年 10月부터는 標本을 週期的으로 一部씩 交替하여 나가는 標本連動交替制度를 導入하였다.

4) 多目的 標本 4次改編

1980年 人口센서스 結果를 이용하여 標本을 改編한 以後에 11個 市가 追加로 新設되었으나 市가 新設될 때마다 이를 標本에 反映시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였으므로, 새로운 標本의 改編이 時急하게 要求되어 왔다.

또한, 地域別 經濟開發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地域別 統計資料의 要求가 急增하여 왔으나, 이를 充足시켜 주지 못하고 이는 實情이었다.

따라서, 1988년에는 이러한 要求를 어느 程度 充足시켜 주는 方向으로 1985年 人口센서스 結果를 基礎로 하여 標本을 改編하였다.

즉, 經濟活動人口調査의 경우에는 就業者數와 失業者數에 관한 市道別 推定値의 提供을 試圖하고, 都市家計調査의 경우에는 6大 都市 각각 및 其他 市 全體의 7個 地域別 家計收支에 관한 推定値의 提供을 試圖하게 되었다.

經濟活動人口調査의 市道別 標本의 크기는 調査區當 調査家口數를 市部 30家口, 郡部 40家口로 하고, 失業者數의 市道別 推定値의 精度가 全國推定値의 精度에 寄與하는 水準으로 考慮하여 失業者數 推定値의 目標相對標本誤差를 서울과 釜山에서는 各各 6%와 7%를 適用하고 大邱, 仁川, 光州의 3個 市에서는 各各 8%를,

大田에서는 9%를 適用하여 標本調査區數를 算出하였다. 各道에서는 11%(濟州道에서만 15%)를 適用하였다. 그리고 結果的으로는 全國的인 標本調査區數는 961個 調査區가 되었으며, 全體的인 標本抽出率은 1/306로서 1985年 人口센서스 家口數로는 31,000 家口가 標本으로 包含되었다.

都市家計調査의 경우에는 調査區當 調査家口數를 不適格 家口를 包含하여 約 10家口로 하고, 7個 地域別 勤勞者 家口의 所得, 家計支出 및 食料品費의 目標相對標準誤差를 各各 7%, 9% 및 6% 以下가 되도록 地域別 標本調査區數를 各各 50個 調査區 以上으로 한 다음, 地域別 推定値의 精度가 全國 推定値의 精度에 寄與하는 水準을 考慮하여 서울 150個 調査區, 釜山 67個 調査區, 大邱·仁川·光州·大田의 경우에는 各各 52個 調査區로 하였으며, 기타 市의 경우에는 總 90個 調

都市勤勞者家口 家計收支의 市道別 相對標準誤差(%)

－1986年 3/4分期

地域	調査區數	勤勞者家口數	相對標準誤差(%)					
			所得	勤勞所得	事業 및 副業所得	其他所得	家計支出	消費支出
全國	481	2,732	2.1	2.1	6.8	4.7	2.1	2.0
集團 1								
서울	172	1,033	3.2	3.3	11.5	6.5	3.2	2.4
釜山	69	366	4.9	4.9	15.4	9.1	4.6	4.4
大邱	39	194	7.5	6.5	24.3	23.1	9.0	9.1
京畿	38	211	7.0	6.9	22.7	11.0	7.2	7.1
慶南	31	245	7.9	12.0	28.5	20.3	10.7	10.6
集團 2								
仁川	24	148	6.6	6.7	37.2	14.5	7.1	6.2
光州	15	57	18.7	19.7	35.8	25.7	19.1	19.4
江原	16	85	22.7	24.0	33.5	24.1	20.0	19.7
忠北	12	63	16.9	14.6	34.0	48.7	20.5	20.3
忠南	16	77	10.7	10.8	47.7	23.8	11.0	10.4
全北	18	102	11.3	12.0	26.8	21.1	10.7	10.0
全南	10	44	22.1	14.3	45.2	30.0	22.7	21.4
慶北	17	91	14.0	14.3	33.8	24.1	13.9	12.6
濟州	4	16	45.4	45.1	69.9	50.8	47.0	46.8

8大費目의 市道別 相對標準誤差(%)

－1986年 3/4分期

地　域	食料品	住　居	光　熱 水　道	家口什器 家事用品	被　服 신　발	保　健 醫　療	教育教養 娛　樂	交　通 通　信
全　國	1.8	5.8	2.4	4.5	2.5	5.8	3.9	2.6
集　團　1								
서　울	2.9	10.8	4.3	7.9	4.4	6.7	5.9	3.6
釜　山	4.4	8.0	5.0	9.3	5.5	9.9	10.6	5.3
大　邱	5.6	9.7	6.7	12.4	7.9	15.1	15.7	7.2
京　畿	6.2	10.6	9.2	11.6	9.1	12.4	9.2	19.8
慶　南	6.6	15.6	11.6	14.5	7.4	12.7	12.3	8.9
集　團　2								
仁　川	6.1	24.0	9.9	14.0	11.1	15.2	16.7	6.8
光　州	17.4	50.3	18.2	47.0	20.2	55.2	18.0	20.5
江　原	19.7	20.8	17.4	29.5	23.8	24.2	20.6	22.4
忠　北	15.9	18.6	22.4	37.8	19.2	27.9	35.6	18.4
忠　南	10.6	29.7	10.6	22.3	13.3	14.2	17.0	12.0
全　北	9.8	28.5	11.2	17.5	12.2	31.6	14.5	10.2
全　南	19.9	58.6	19.3	43.5	23.7	59.9	24.5	23.6
慶　北	10.6	20.9	12.6	22.7	14.5	23.8	25.6	15.5
濟　州	44.8	75.6	52.3	75.3	45.1	48.5	55.2	44.7

査區로 하였다. 結果的으로 全都市의 標本調査區數는 515個 調査區가 되었으며, 全體的인 標本抽出率은 1/1,278로서 1985年 人口센서스 家口數로는 5,510家口가 標本으로 包含되어 이 中의 適格家口數는 4,500家口 程度가 될 것으로 보았다.

4次標本改編에서는 基本項目에 대한 地域別 推定値의 提供을 試圖하기 위하여 우선 過去 調査結果에서 大略的이나마 標本誤差에 관한 情報를 얻기 위하여 標本誤差를 算出하여 보았다.

1986年 3/4分期 都市家計調査의 月平均 家計收支 및 消費支出費目의 市道別相對標準誤差의 算出結果를, 標本調査區數가 30個 調査區 以上인 市道를 第1集團으로 하고 30個 調査區 未滿인 市道를 第2集團으로 하였다.

이때, 調査區數에 의하여 30個 調査區 以上인 市道의 集團과 30個 調査區 未滿인

市道의 集團으로 나눈 理由는 30個 調査區 未滿인 경우의 相對標準誤差는 安定性이 작기 때문에 별도로 參考하기 위한 것이다.

家計收支의 相對標準誤差와 8大費目의 相對標準誤差를 比較해 보면, 8大費目의 相對標準誤差가 全般的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兩者間의 內容을 基礎로 하여, 1986年 3/4分期에 同一한 標本抽出方法으로 市道別로 各各 50個 調査區를 抽出하여 同一한 條件에서 同一한 方法으로 調査했다고 假定할 때의 家計收支와 8大費目의 相對標準誤差의 期待値는 各各 다음과 같다.

이것에 의하면, 1個 地域에서 50個 調査區를 調査한다고 할 때의 勤勞者家口의 家口當 所得과 家計支出의 相對標準誤差는 各各 7%, 以下와 9% 以下의 水準을 추지할 수 있을 것으로 豫測하였다.

50個 調査區 基準의 家計收支의 相對標準誤差(%)의 期待値

地　域	調査區數	所　得	勤　勞所　得	事業 및副業所得	其　他所　得	家　計支　出	消　費支　出	非消費支　出
全　國	50	6.4	6.4	21.2	14.4	6.5	6.3	12.5
集　團　1								
平　均		6.1	6.6	20.6	11.8	7.0	6.5	13.0
서　울	50	5.9	6.0	21.4	12.1	5.9	4.5	10.9
釜　山	50	5.7	5.7	18.1	10.7	5.4	5.2	13.7
大　邱	50	6.6	5.7	21.4	20.5	8.0	8.1	9.7
京　畿	50	6.1	6.0	19.8	9.6	6.3	6.2	12.9
慶　南	50	6.2	9.5	22.5	16.0	8.4	8.4	17.6
集　團　2								
平　均		8.7	8.4	20.2	14.2	8.8	8.5	13.7
仁　川	50	4.6	4.6	25.8	10.0	4.9	4.3	11.4
光　州	50	10.2	10.8	19.6	14.1	10.5	10.6	12.8
江　原	50	12.8	13.6	19.0	13.6	11.3	11.1	15.7
忠　北	50	8.3	7.2	16.7	23.9	10.0	10.0	10.6
忠　南	50	6.1	6.1	27.0	13.5	6.2	5.9	14.5
全　北	50	6.8	7.2	16.1	12.6	6.4	6.0	11.6
全　南	50	9.9	6.4	20.2	13.4	10.2	9.5	17.9
慶　北	50	8.2	8.3	19.7	14.0	8.1	7.4	15.5
濟　州	50	11.4	11.3	17.5	12.7	11.8	11.7	13.0

한편, 8大費目에 의하면 1個 地域에서 50個 調査區를 調査한다고 할 때의 勤勞者家口의 엥겔係數 算出의 基礎가 되는 食料品費의 相對標準誤差는 6% 以下의 水準을 維持할 수 있는 것으로 豫測한다.

따라서, 6大都市 各各 및 其他 都市 全部의 7個 地域別 都市家計調査의 標本調査區數는 地域別 家口數와 地域別로 活用 可能한 調査員數를 考慮하여 決定하되, 50個 調査區 以上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經濟活動人口調査의 경우는 1986年 9月 및 11月 調査結果의 主要項目에 대한 相對標準誤差의 算出結果이다.

여기에 의하면, 基本分類의 項目 중에서 相對標準誤差가 1%未滿 項目은 經濟活動人口(0.69%～0.75%), 就業者(0.74%～0.78%), 非經濟活動人口(0.98%～1.03%)이며, 失業者(4.06%～4.00%)의 경우가 가장 크다.

50個調査區 基準의 8大費目의 相對標準誤差(%)의 期待値

地域別	食料品	住居	光熱水道	家口什器家事用品	被服신발	保健醫療	教育教養娛樂	交通通信
全國	5.6	17.9	7.4	14.0	7.8	17.8	11.9	8.1
集圍 1								
平均	5.2	11.9	7.6	11.6	7.1	11.6	11.0	8.7
서울	5.5	20.0	9.1	14.7	8.2	12.4	10.9	6.7
釜山	5.1	9.4	5.9	10.9	6.5	11.7	12.4	6.3
大邱	5.0	8.6	5.9	10.9	7.0	13.4	13.9	6.4
京畿	5.4	9.2	8.0	10.1	8.0	10.8	8.1	17.2
慶南	5.2	12.3	9.1	11.5	5.8	10.0	9.7	7.0
集圍 2								
平均	7.9	17.4	8.8	16.1	9.7	16.4	12.0	9.0
仁川	4.2	16.6	6.8	9.5	7.7	10.5	11.6	4.7
光州	9.5	27.5	10.0	25.7	11.1	30.2	9.8	11.2
江原	11.2	11.8	9.8	16.7	13.4	13.7	11.6	12.7
忠北	7.8	9.1	11.0	18.5	9.4	13.7	17.5	9.0
忠南	6.5	16.8	6.0	12.6	7.5	8.0	9.6	6.3
全北	5.9	17.1	6.7	10.5	7.3	19.0	8.7	6.1
全南	8.9	26.2	8.7	19.4	10.6	26.8	11.0	10.6
慶北	6.2	12.2	7.4	13.2	8.5	13.9	14.9	9.0
濟州	11.2	18.9	13.1	18.8	11.3	12.1	13.8	11.2

經濟活動人口調査 主要項目에 대한 相對標準誤差(%)

項　　目	'86.9	'86.11	項　　目	'86.9	'86.11
基本分類			**就業者職業**		
經濟活動人口	0.69	0.75	專門·技術職	4.51	4.67
·就業者	0.74	0.78	行政·管理職	7.41	7.26
·失業者	4.06	4.00	事務關聯職	2.91	2.89
非經濟活動人口	0.98	1.03	販賣從事職	3.47	3.04
就業者産業			서어비스職	4.02	3.87
農林漁業	5.48	5.77	農水産職	5.49	5.79
鑛工業	3.08	2.95	生産·運輸·其他	2.63	2.55
·製造業	2.89	2.84	**就業者從事上의地位**		
서어비스業	2.07	1.96	自營業主	1.88	1.87
·電氣業	16.37	15.76	無給家族從事者	4.33	4.52
·建設業	3.92	3.83	常時雇	1.89	1.90
·都小賣·飮食·宿泊業	3.60	3.15	日傭	4.69	4.50
·運輸·通信業	4.27	4.24	**失業者前職有無**		
·金融·保險業	4.14	3.96	前職失業者	4.97	4.61
·社會·個人서어비스業	3.17	3.21	新規失業者	7.13	6.55

經濟活動人口調査 結果의 資料利用者의 大部分은 失業者에 대하여 가장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細分化되고 精度높은 失業者統計를 要求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新標本設計에서 市道別 標準規模 算出에는 失業者數의 標準誤差를 基準으로 삼는 것이 合理的이다.

이와같이 標本誤差를 分析한 다음에는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規模를 다음과 같은 過程을 거쳐 決定하였다.

1985年 人口센서스 結果를 利用하여, 施設單位 調査區와 섬地域의 調査區를 除外한 나머지의 普通調査區의 家口를 各 市道의 市部·郡部別로 各各 行政區域番號, 調査區番號 및 家口番號 順序로 30家口單位와 40家口單位의 두가지 基準에 대한 單位當 失業者數의 標準偏差와 變異係數를 算出하고, 調査區當 調査家口數를 30家口 基準으로 하여 失業者數의 相對標準誤差를 6%에서 9%까지 1%포인트씩 增加시켰을 때의 各各의 경우에 대한 地域別 標準의 크기를 算出하여 要約한 結果

表이다.

이때의 標準調査區數 算出公式은 다음과 같다.

$$n_h = N_h \frac{\sum N_{hi} S^2_{hi}}{E^2_{hi}} : n_{hi} = n_h \frac{N_{hi}}{N_r}$$

n＝標本調査區數

N＝單位調査區數

S^2＝單位調査區當 失業者數의 分散

E＝許容誤差의 失業者數

h＝市道를 나타내는 첨자

i＝市部·郡部를 나타내는 첨자

그런데, 家口標本調査에 投入可能한 調査員數는 女子調査員(1人當 市部의 2個 調査區 擔當) 約 300名 및 男子調査員(郡部 全域 및 一部 市部地域에서 1人當 1個

市道別 失業者數 推定을 위한 標本의 크기(調査區當 30家口 基準)

地域	6%		7%		8%		9%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全國	2,334	70,020	1,724	51,720	1,325	39,750	1,051	31,530
市部	1,382	41,460	1,019	30,570	785	23,550	620	18,600
郡部	952	28,560	705	21,150	540	16,200	431	12,930
6大市	730	21,900	539	16,170	413	12,390	327	9,810
서울	150*	4,500	111	3,330	85	2,550	67	2,010
釜山	119	3,570	88*	2,640	67	2,010	53	1,590
大邱	112	3,360	82	2,460	63*	1,890	50	1,500
仁川	115	3,450	85	2,550	65*	1,950	52	1,560
光州	118	3,540	87	2,610	67*	2,010	53	1,590
大田	116	3,480	86	2,580	66	1,980	52*	1,560
9個道	1,640	48,120	1,185	35,550	912	27,360	724	21,720
市部	652	19,560	480	14,400	372	11,160	293	8,790
郡部	952	28,560	705	21,150	540	16,200	431	12,930

* 採擇된 標本調査區數임.

調査區 擔當) 約 260名 程度임을 考慮하면, 郡部의 調査區數가 가장 작게 되는 경우는 相對標準誤差를 9%로 했을 때의 431個 調査區이므로 根本的으로 男子調査員이 不足하게 되어, 各道의 標本調査區 決定은 별도의 方法을 講究하기로 하고, 우선 6大都市 各各의 標本調査區數를 먼저 決定하였다.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및 大田(大德郡 包含)의 6大都市의 경우에는 全國推定値에 대한 市別 推定値의 寄與度(家口數 百分率)와 投入 可能한 調査員數에 따라 失業者數의 相對標準誤差를 달리 適用하여 標準의 크기를 決定하였다. 즉, 失業者數의 相對標本誤差가 서울에서는 6%일때의 150個 調査區, 釜山에서는 7%일 때의 88個 調査區, 大邱·仁川·光州에서는 각각 8%일 때의 63個 調査區, 65個 調査區 및 67個 調査區로 하였으며, 大田의 경우에는 9%일 때의 52個 調査區로 하였다.

郡部의 標本調査區數를 減少시키는 方法으로는 相對標準誤差를 크게 適用하거나, 調査區當 調査家口數를 30家口에서 40家口로 增加시켜 보는 것이 一次的인 方法이므로, 市部의 調査區當 調査家口數는 그대로 30家口로하고 郡部의 調査區當 調査家口數를 30家口에서 40家口로 增加시킴과 同時에 失業者數의 相對標準誤差를 11%부터 15%까지 增加시켰을 때의 各各의 경우에 대한 標本의 크기를 算出하였다.

道別 失業者數 推定을 위한 標本의 크기

(調査區當 市部30家口, 郡部 40家口)

地域	11%		12%		14%		15%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9 個 道	498	17,550	421	14,840	311	10,960	274	9,640
市 部	237	7,110	200	6,000	148	4,440	122	3,960
郡 部	261	10,440	221	8,840	163	6,520	142	3,680

이의 內容 중에서 相對標準誤差가 11%일 때의 郡部의 調査區數는 261個의 調査區이므로 活用可能한 男子調査員數와 一致되지만, 男子調査員이 市部의 一部 調査區를 擔當하게 되는 경우를 考慮하면 郡部의 調査區數를 더 減少시켜야 한다. 따라서 道別로 各各 郡部의 調査區數를 10% 減少시켜 市部에 追加하는 方法으로 調整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道別 失業者數 推定을 위한 標本의 크기(內容調整結果)

地　域	11%		12%		14%		15%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調査區數	家口數
9 個 道	498	17,310	423	14,700	313	10,880	272	9,450
市　部	261	7,830	222	6,660	164	4,920	143	4,290
郡　部	237	9,480	201	8,040	149	5,960	129	5,160
京　畿	58*	1,940	49	1,640	37	1,240	32	1,070
市　部	38	1,140	31	960	24	720	21	630
郡　部	20	800	17	680	13	520	11	440
江　原	55*	1,890	47	1,610	35	1,200	30	1,030
市　部	31	930	27	810	20	600	17	510
郡　部	24	960	20	800	15	600	13	520
忠　北	56*	1,940	47	1,630	35	1,210	30	1,040
市　部	30	900	25	750	19	570	16	480
郡　部	26	1,040	22	880	16	640	14	560
忠　南	57*	2,120	49	1,820	36	1,340	31	1,150
市　部	16	480	14	420	10	300	9	270
郡　部	41	1,640	35	1,400	26	1,040	22	880
全　北	52*	1,790	45	1,550	33	1,140	29	1,000
市　部	29	870	25	750	18	540	16	480
郡　部	23	920	20	800	15	600	13	520
全　南	55*	1,990	47	1,700	34	1,230	30	1,080
市　部	21	630	18	540	13	390	12	360
郡　部	34	1,360	29	1,160	21	840	18	720
慶　北	60*	2,130	50	1,770	37	1,310	33	1,170
市　部	27	830	23	690	17	510	15	450
郡　部	33	1,320	27	1,080	20	800	18	720
慶　南	57*	1,930	49	1,660	36	1,220	31	1,050
市　部	35	1,050	30	900	22	660	19	570
郡　部	22	880	19	760	14	560	12	480
濟　州	48	1,580	40	1,320	30	990	26*	860
市　部	34	1,020	28	840	21	630	18	540
郡　部	14	560	12	480	9	360	8	320

* 採擇된 標本調査區數임.

經濟活動人口調査 地域別 標本의 크기

地　域	調査區數	家 口 數	抽出率의 逆　數	地　域	調査區數	家 口 數	抽出率의 逆　數
全　國	961	32,140	306.083	忠　南	57	2,120	211.854
市 部	730	21,900	300.436	市 部	16	480	148.167
郡 部	231	9,240	319.465	郡 部	41	1,640	230.494
大都市	485	14,550	306.827	全　北	52	1,790	274.268
서 울	150	4,500	519.398	市 部	29	870	245.862
釜 山	88	2,640	319.167	郡 部	23	920	301.130
大 邱	63	1,890	265.582	全　南	55	1,990	273.447
仁 川	65	1,950	174.687	市 部	21	630	218.873
光 州	67	2,010	116.507	郡 部	34	1,360	293.728
大 田	52	1,560	133.122	慶　北	60	2,130	343.901
京　畿	58	1,940	597.170	市 部	27	810	295.247
市 部	38	1,140	560.237	郡 部	33	1,320	373.758
郡 部	20	800	649.800	慶　南	57	1,930	473.917
江　原	55	1,890	215.037	市 部	35	1,050	405.190
市 部	31	930	198.097	郡 部	22	880	476.966
郡 部	24	960	231.448	濟 州	26	860	135.942
忠　北	56	1,940	166.660	市 部	18	540	131.222
市 部	30	900	210.411	郡 部	8	320	143.906
郡 部	26	1,040	182.087				

여기에서 濟州道를 除外한 8個 道의 경우에는 失業者數의 相對標準誤差가 11% 일 때의 標本의 크기를 擇하였으며, 濟州道의 경우에는 家口數 및 人口數가 全國의 1.2% 程度에 不過하고, 調査員의 新規採用에도 限界가 있어 一般 失業者數의 相對標本誤差가 15%일 때의 標本의 크기를 擇하였다.

結果的으로 總 調査區數는 市部 730個 調査區(21,900家口)와 郡部 231個 調査區(9,240家口)로 決定되었으며, 全國 調査區數는 961個 調査區(31,140家口)가 된다.

한편 都市家計調査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過程을 거쳐 標本規模를 決定하였다.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및 其他 都市(55個市)의 7個地域別 都市家計調査의 標本調査區數는 全都市 推定値에 대한 地域別 推定値의 寄與度(全都市

家口數에 대한 百分率), 地域別로 投入이 可能한 調査員數 등을 考慮하여 決定하되, 勞動者家口의 所得, 家計支出, 食料品費의 相對本準誤差를 各各 7%, 9% 및 6% 以下의 水準이 되도록 50個 調査區 (調査區當 不適格家口를 包含하여 10家口 調査)以上이 되도록 하였다.

全都市 家口數의 37%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에는 150個 調査區, 13% 以上을 차지하는 釜山의 경우에는 67個 調査區, 10% 未滿을 차지하는 大邱, 仁川, 光州, 大田의 경우에는 各各 52個 調査區로 하였으며, 其他 都市의 경우에는 90個 調査區로 하였다. 道別 市部의 調査區數는 각 道別 市部의 1985年 人口센서스 結果의 家口數에 比例하도록 其他 都市의 90個 調査區를 配分하여 決定하였다.

結果的으로, 全都市의 調査區數는 總 515個 調査區가 되었으며 地域別로는 經濟活動人口調査의 6大都市 各各 및 各道 市部의 調査區數보다 작거나 같게 되었다.

經濟活動人口調査와 都市家計調査의 標本規模－市部

地　域	經濟活動人口調査		都 市 家 計 調 査		
	調査區數	家 口 數	調査區數	家 口 數*	抽出率의 逆數
全 都 市	730	21,900	515	5,150	1,277.583
大 都 市	485	14,550	425	4,250	1,050.431
서　울	150	4,500	150	1,500	1,558.193
釜　山	88	2,640	67	670	1,257.612
大　邱	63	1,890	52	520	965.288
仁　川	65	1,950	52	520	655.064
光　州	67	2,010	52	520	450.346
大　田	52	1,560	52	520	399.365
其 他 市	245	7,350	90	900	2,350.244

* 不適格家口 包含

이와같이 經濟活動人口調査와 都市家計調査의 標本規模를 決定한 다음에는 음과 같이 標本調査區를 抽出하였다.

먼저 1985年 人口센서스 調査區 중에서 각 市道의 施設單位 調査區와 섬地域의 調査區(섬調査區 및 普通調査區)를 除外한 나머지의 모든 普通調査區의 대하여 각각 家口數, 人口數, 産業別 就業者數, 居處의 種類別 居處數, 中央煖房與否別 住

宅數 등의 分類指標 算出을 위한 基礎資料를 集計하고 普通調査區를 洞邑面別로 調査區番號 順序로 100家口 以上이 되도록 2個 또는 3個 調査區씩을 統合하여 하나의 抽出單位調査區로 設定하였다. 이때, 各 統合調査區에 대하여 分類指標 算出을 위한 基礎資料를 集計하였다.

다음에는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및 道別 市部·郡部의 24個 地域別로 各各 抽出單位 調査區를 産業特性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順序로 1次分類하였다.

抽出單位別 調査區의 産業特性 分類內譯

集 團	分 類 內 譯
1	1次産業從事率 > 2次産業從事率 > 3次産業從事率
2	1次産業從事率 > 3次産業從事率 > 2次産業從事率
3	2次産業從事率 > 3次産業從事率 > 1次産業從事率
4	2次産業從事率 > 1次産業從事率 > 3次産業從事率
5	3次産業從事率 > 1次産業從事率 > 2次産業從事率
6	3次産業從事率 > 2次産業從事率 > 1次産業從事率

그리고, 각 1次分類 內에서는 다시 主된 住宅特性에 의하여 아파트調査區, 一般住宅調査區, 聯立住宅調査區, 其他 調査區의 順序로 2次分類하였으며, 아파트調査區에 限하여 煖房施設에 의하여 中央煖房과 其他 煖房으로 分類하였다. 最終的으로는 行政區域 및 調査區番號 順序로 羅列하여 抽出單位調査區名簿를 作成하였다.

이때, 抽出單位 調査區의 人口센서스 家口數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結果를 각 抽出單位의 크기의 測度로 賦與하였다.

이와 같이 抽出單位 調査區名簿를 作成한 다음에는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및 各道 市部·郡部의 24個 地域別 抽出單位 調査區名簿에서 各各 經濟活動人口調査의 地域別 標本의 크기의 標本調査區數대로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抽出單位 調査區의 標本을 抽出하였으며, 標本으로 抽出된 總 961個(市部 730, 調査區 231)의 抽出單位 調査區를 家口標本調査의 基本標本調査區로 하였으며, 각 基本標本調査區 內에서는 다시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1個의 人口센서스調査를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調査區로 抽出하였다.

따라서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調査區數는 總961個(市部 730, 郡部 231)의

調査區가 되었다.

그리고,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調査區중에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都市家計調査의 標本規模－市部의 都市家計調査의 標本調査數대로 都市家計調査도 實施하는 調査區를 系統抽出하였다. 이때, 其他 市의 경우에는 表와 같이 定해진 90個의 調査區를 道別 市部의 總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도록 各道의 市部에 配分하고 各道의 市部別로 經濟活動人口調査의 標本調査區 중에서 配分된 數의 調査區를 系統抽出하였다. 이 結果에 의한 道別 市部의 都市家計調査의 標本調査區分布이다.

各道 市部의 調査別 標本調査區數

地　域	經濟活動人口調査	都市家計調査	地　域	經濟活動人口調査	都市家計調査
計	245	90	全　北	29	9
京　畿	38	27	全　南	21	6
江　原	31	8	慶　北	27	10
忠　北	30	6	慶　南	35	18
忠　南	16	3	濟　州	18	3

이와같이 抽出된 標本調査區에서는 人口센서스 當時의 調査區要圖, 家口名簿 및 調査區設定基本圖를 複寫하여 가지고 現地確認하면서 調査區要圖를 條正·補完하고 再作成하였다. 그리고, 각 調査區別로 家口數가 비슷하게 되도록 크기의 測度(人口센서스 家口數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數)와 같은 數의 區域으로 分割하고 각 區域에 一連番號를 賦與하였다. 그리고, 市部의 調査區에서는 1個區域을 單純任意抽出한 다음, 이 區域부터 一連番號順序로 3個의 區域을 標本으로 抽出하였으며, 郡部 調査區에서는 같은 方法으로 4個의 區域을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그리고, 각 調査區別로 標本으로 抽出된 區域들을 하나로 묶어서 經濟活動人口調査와 人口動態標本調査의 實査調査區로 하였으며, 이 實査調査區 內에서는 全數調査토록 하였다.

結果的으로 全國의 標本抽出率은 約 1/306(市部 約 1/300 郡部 約 1/319)이 되며, 1985年 人口센서스 家口數로는 961調査區(市部 730, 郡部 231)에서 31,100家口(市部 21,900 郡部 9,240)가 標本으로 包含된다.

그리고, 都市家計調査도 實施하는 調査區의 경우에는 3個의 標本區域중에서 제일 처음에 標本으로 抽出된 區域에서 全數調査로 都市家計調査를 實施토록 하였다. 都市家計調査의 全都市에서의 標本抽出率은 約 1/1,278(6大都市 約 1/1,050 其他 都市 1/2,350)이 되며, 1985年 人口 센서스 家口數로는 515個 調査區(6大都市 425, 其他 都市 90)에서 約 5,100家口가 標本으로 包含된다. 이 5,100家口 중에서 不適格家口를 除外한 適格家口는 約 4,500家口 程度가 될 것으로 豫想하였다.

다. 事業體部門 標本調査

(1) 韓國銀行의 鑛業 및 제조업 事業體 調査

韓國銀行에서는 1954年에 商工部와 協力하여 全國의 主要企業體實態調査를 實施한 바 있는데 (「生產企業體名簿」) 1955年부터는 產業生產指數를 編制하기 위한 目的으로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査를 처음으로 實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57年 8月부터 산업생산지수를 편제하여 1968年까지 繼續하였다.

韓國銀行의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査에서는 調査對象品目을 生產하는 事業體를 可能한 範圍내에서 全數調査하였으며, 全數調査가 不可能한 品目의 경우에는 生產額이 큰 事業體부터 차례로 적당한 數의 事業體만을 調査하였다. 실제적으로는 生產額이 큰 一部의 事業體만 調査하는 品目의 경우에 이들 調査事業體의 總生產額이 全體事業體의 總生產額의 70%以上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調査는 실제적으로 標本調査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 當時에 이러한 方法을 採擇한 理由는 產業生產指數는 總生產量을 推定하는 것이 아니라 生產活動水準의 變動을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같은 方法으로도 調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調査에서는 1957年부터 大部分의 事業體에 대한 郵便調査로 轉換하였으나, 이 調査는 1958年에 韓國產業銀行으로 옮겨지면서 鑛工業센서스로 발전해서 1960年에는 產銀과 商工部의 合同으로, 1963年에는 產銀과 經濟企劃院의 共同으로 실시하다가 1968年부터는 經濟企劃院 單獨으로 실시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韓國產業銀行 鑛工業標本調査

韓國產業銀行에서는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에 관한 調査를 1958년부터 실시하다가 1962年 3月부터는 이를 鑛工業標本調査로 개편하여 이 이름으로 每月 實施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標本事業體는 1960年 鑛工業센서스에서 調査된 事業體 資料를 이용하여 產業中分類別로 各各 獨立的으로 抽出하였다.

產業中分類別로는 우선 產業細分類로 1次層化하였으며, 各 產業細分類 내에서는 다시 從業員數에 따라 3個層으로 2次層化하였다. 이때의 從業員數에 의한 層은 鑛工業의 경우에 5人～49人(小規模事業體), 50人～199人(中規模事業體), 200人以上(大規模事業體)으로 層化하였으며, 製造業의 경우에는 5人～29人(小規模事業體), 30人～99人(中規模事業體), 100人以上(大規模事業體)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大規模事業體層의 事業體는 모두 全數調査하고 나머지의 모든 層에서는 標本事業體를 抽出하여 調査하였다. 이때, 產業中分類別로 .68%의 信賴水準에서 附加價値의 許容標本誤差를 5%로 하여 大規模事業體層을 제외한 나머지 層에서의 最適標本事業數를 算出하였다. 層別 標本事業體는 系統抽出하였는데, 이때의 抽出間隔은 抽出率의 逆數를 整數化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標本事業體를 抽出할 때에 附加價値가 從業員數, 在庫額 및 出荷額이, 비슷한 事業體보다 特異하게 큰 事業體는 大規模事業體層에 包含시켜 全數調査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抽出된 事業體는 約 2,400個 事業體가 되었다.

事業體標本과는 별도로 93個 洞邑面을 標本으로 抽出하여 標本洞邑面에서는 調査對象이 되는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를 全數調査하고, 이 結果로 事業體調査에서의 標本推定値를 補完하였다. 이와같은 地域標本과 事業體標本은 1960年 鑛工業센서스에서 調査된 事業體의 資料를 이용하여 抽出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센서스에서의 調査漏落事業體와 센서스 以後의 新設事業體에 대한 補完目的으로 사용한 것이다.

1965年에는 1963年 鑛工業센서스 事業體의 資料를 이용하여 標本을 改編하였는데, 1962年의 標本設計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962年 標本設計에서는 鑛業은 從業員 200人以上, 製造業은 從業員 100人以上의 事業體를 全數調査하였으나 新標本設計에서는 鑛業의 경우 70人以上, 製造業은 從業員 60人以上의 事業體를 全數調査함으로써 全數調査의 部分을 擴大하였다. 그리고, 事業體標本을 補完하기 위한 方法으로 地域標本만을 사용하던 것을 標本地域外에서도 全數調査對象事業體가 發見되는 대로 大規模事業體로 追加하여 調査하였다. 또한, 産業中分類別 附加價値의 許容標本誤差를 68%의 信賴水準에서 5%로 適用한였던 것을 6%로 增加시켰다.

(3) 調査統計局의 事業體標本調査

(가) 鑛工業動態調査

1970年 2月부터 當時의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도 鑛工業動態調査를 實施하게 됨에 따라 韓國産業銀行의 鑛工業標本調査는 同年 7月에 中止하였다.

當時의 標本은 1968年 鑛工業센서스의 事業體 資料를 이용하여 抽出하였으며, 調査對象品目은 333個로 品目에 따라 標本事業體의 抽出方法을 달리 하였다.

우선 調査對象品目을 全數調査品目과 標本調査品目으로 分類하였으며 標本調査品目은 다시 全數調査層과 標本調査層을 設定하는 品目과 其他의 品目으로 分類하였다.

全數調査品目은 重要品目(加重値가 큰 品目)이면서 事業體數가 많지 않은 品目으로, 이러한 品目의 事業體는 모두 다 標本으로 抽出하여 全數調査하였다.

全數調査層과 標本調査層을 設定하는 標本調査品目은 生産額이 큰 事業體數가 小數이긴 하지만 이들 事業體가 차지하는 生産額의 比重이 큰 品目으로, 이러한 品目의 경우에는 生産額의 比重이 큰 小數의 事業體만으로 그 品目의 總生産量의 90%以上을 차지하는 하나의 層을 만들고 이 層을 全數調査層으로 하여 이 層의 事業體는 모두 다 標本으로 抽出하여 全數調査하였으며, 全數調査의 事業體가 아닌 모든 事業體를 標本調査層으로 하여 이 層에서는 標本事業體를 抽出하여 調査하였다.

이때 標本調査層에서는 事業體를 市道, 生産額規模, 從業員規模로 다시 層化하여 그 品目의 總生産額의 許容標本誤差를 68%의 信賴水準에서 3%以內가 되는

것을 目標로 各層의 最適標本事業體를 算出하고 算出된 數의 標本事業體를 系統抽出하였다.

기타의 標本調査品目은 나머지의 모든 品目으로, 이 品目의 경우에는 全數調査層을 設定하지 않고 앞의 標本調査層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標本事業體를 抽出하였다. 따라서, 標本調査品目의 경우에는 全數調査層을 設定했든 안했든 品目別로 各各 그 品目의 總生産額의 許容標本誤差를 68% 信賴水準에서 3%를 目標로 한 것이다.

1972年에는 1970年 鑛工業統計調査의 事業體 資料를 이용하여 標本을 改編하였는데, 調査對象品目은 333個 品目에서 339個 品目으로 增加하였다.

過去, 標本設計에서의 全數調査品目은 重要品目으로서 事業體가 많지 않은 品目으로 하였으나, 이 標本改編에서는 重要品目과 重要品目은 아니지만 그 品目을 生産하는 事業體가 많지 않은 品目(生産事業體數가 20個以下인 品目)으로 그 範圍를 擴大하였다.

그리고, 全數調査層과 標本調査層을 設定하는 品目으로 過去에는 全數調査層의 生産額이 그 品目의 總生産額의 90%以上을 차지하도록 하였으나, 이 標本改編에서는 90%의 基準을 없애고 生産額에 의한 事業體分布를 考慮하여 그 未滿의 경우도 많이 設定하였다.

또한 全數調査層과 標本調査層을 設定하여 標本調査層에서 一部의 事業體를 標本으로 抽出하는 경우와 全數調査層을 設定하지 않고 그대로 一部의 事業體를 標本으로 抽出하는 경우에 過去에는 事業體를 層化하였으나 이 標本改編에서는 層化를 하지 않고 生産額의 크기순으로만 羅列하였으며, 그 品目의 總生産額의 許容標本誤差를 68% 信賴水準에서 3%을 適用하던 것을 95% 信賴水準에서 5%를 適用하여 單純任意標本에 의한 標本事業數를 算出하여 算出된 數의 標本事業體를 系統抽出하였다.

1977年에는 1975년 鑛工業統計調査의 事業體 資料를 利用하여 다시 標本을 改編하였는데 調査對象品目은 339個 品目에서 420個 品目으로 增加하였다.

당시의 2次標本改編에서 重要品目과 事業體數가 작은 品目을 全數調査品目으로 選定하는 基準은 1次標本改編과 같으며, 1次標本改編에서는 標本調査品目 중에서

全數調査와 標本調査層을 設定하지 않은 品目이 있었으나 2次標本改編에서는 標本調査品目이면 모두 全數調査層과 標本調査層을 設定하였다. 또한 標本調査層에서 標本事業을 抽出할 때에 그 品目의 總生産額에 대한 許容標本誤差를 95% 信賴水準에서 5%를 適用하던 것을 68% 信賴水準에서 5%를 適用하였다.

2次標本改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事項은 콤퓨터를 사용하여 全數調査層과 標本調査層을 設定하는 方法으로, 매우 간단하고 科學的인 方法을 開發하였다. 이 方法에서는 品目別로 各各 그 品目을 生産하는 事業體를 그 品目의 生産額의 내림순으로 羅列한다. 그리고, 生産額이 가장 첫번째 事業體만을 全數調査層에 包含시키고, 나머지의 事業體를 標本調査層으로 하여 標本調査層에서는 그 品目의 總生産額에 대하여 주어진 許容標本誤差를 適用하여 單純任意標本의 標本事業數를 算出하고 이 標本事業體數에 全數調査層의 事業體數 1을 더하여 全體 標本事業體數를 算出한다. 다음에는 2번째 事業體까지를 全數調査層에 包含시키고, 나머지의 事業體를 標本調査層으로 하여 標本調査層에서는 同一한 方法으로 標本調査層의 標本事業體數를 算出하고 全數調査層의 事業體數 2를 더하여 全體標本事業數를 算出한다. 이와같이 계속하여 全數標本層의 事業體數를 하나씩 增加시켜 나가면서, 그때마다 앞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標本調査層의 標本事業數를 算出하고 全數調査層의 事業體數를 더하여 全體 標本事業數를 算出한다. 이와같은 過程을 反復하다 보면, 全數調査層의 事業體數가 하나씩 增加함에 따라 各各에 대한 全體 標本事業體數는 繼續하여 減少하다가 反對로 增加하게 되는 데, 增加하기 직전의 全體 標本事業體數(실제로 가장 작은 全體 標本事業體數)가 最適規模이며, 이때의 全數調査層의 事業體數와 標本調査層의 標本事業數를 택하면 가장 效率的인 最適의 標本을 抽出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方法은 콤퓨터를 사용함으로써 可能하였으며, 이러한 方法을 現實에 適用하여 活用한 것은 아마도 世界에서 最初일 것이다.

1982年에는 1975年 鑛工業統計調査의 事業體 資料를 이용하여 標本을 改編하였으며, 調査對象品目數는 420個 品目에서 451個 品目으로 增加하였다.

이때의 3次標本改編에서는 調査對象品目을 生産하는 事業體를 우선 從業員이 300人以上인 事業體와 300人未滿인 事業體의 2個 集團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從

業員 300人以上 事業體部門의 産業生産指數와 300人未滿 事業體部門의 産業生産指數를 별도로 編制하기 위한 것으로, 從業員 300人以上 事業體는 모두 다 標本으로 抽出하여 全數調査하였다. 그리고, 從業員 300人未滿 事業體만을 對象으로 하여 각 品目別로 2次標本改編에서 開發한 方法을 그대로 사용하여 標本事業體를 抽出하였다. 다만, 基準資料는 過去의 生産額이 아닌 出荷額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品目別로 300人未滿 事業體의 總出荷額의 許容標準誤差는 68%의 信賴水準에서 5%를 目標로 한 結果가 되었으며, 從業員 300人未滿 事業體와 300人以上 事業體를 統合한 全體 事業體의 總附加價値의 許容標準誤差는 68%의 信賴水準에서 5%보다 작아지게 된다.

1987年에는 1985年 鑛工業統計調査의 事業體 資料를 이용하여 標本을 제4차로 改編하였으며, 調査對象品目數는 451個 品目에서 666個 品目으로 增加하였다.

3次標本改編에서는 從業員 300人以上의 事業體와 300人未滿 事業體의 2個集團으로 分類하였으나 4次標本改編에서는 從業員 100人以上 事業體와 100人未滿의 事業體의 2個 集團으로 나눈 것을 除外하고는 2次標本改編에서의 方法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나) 運輸業統計調査

運輸業統計調査는 中小企業銀行에서 1964年과 1969年에 全數調査로 2回 實施하였으며, 1977年度 調査부터 每年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實施하여 오고 있다.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는 이 調査를 實施할 때부터 調査對象業種 중에서 택시運輸業部門에 대하여는 部分的으로 標本調査로 資料를 蒐集하였다.

1977年 調査와 1978年 調査에서는 택시運輸業을 會社택시業과 個人택시業으로 나누어 會社택시業에 대하여는 事業體(會社)單位의 全數調査를 實施하고 個人택시業에 대하여는 個人택시를 標本으로 抽出하여 調査하였다.

個人택시를 標本으로 抽出할 때에 基本的으로 考慮된 事項은 個人택시業에 대하여 별도로 集計하여 發表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運輸業에 포함시켜 市道別로 集計하여 發表한다는 條件이었다.

1977年 調査와 1978年 調査에서는 個人택시의 標本을 抽出하는 方法으로 同一

한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1978年 調査에서의 標本抽出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978年 12月 31日 現在 全國의 個人택시數는 14,690대이었으며, 標本規模는 限定된 調査員數 및 調査能力을 考慮하여 400대로 일단 決定하였다.

그리고, 택시運輸業에 대하여도 市道別로 發表한다는 條件과 個人택시의 運輸收入과 費用이 市部와 郡部 間에 差異가 있을 것이라는 假定을 考慮하여 全國을 12個 市道(서울, 釜山 및 各道)로 나누고, 名道에서는 다시 市部와 郡部로 나누어 總 18個의 地域層을 設定한 다음, 全國의 標本規模인 400대를 각 地域層의 個人택시數의 제곱근에 比例하도록 각 地域層에 配分하고 配分된 數가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로 上向調整하였으며, 이 結果의 全國 標本規模는 407대가 되었다. 각 地域層의 標本規模를 짝수로 調整하였음에도 全國 標本規模가 407대의 홀수로 된 것은 個人택시가 1대뿐인 地域層이 1個 있었기 때문이며, 각 地域層의 標本規模를 짝수로 한 것은 標本誤差計算에서 Simple Random Model과 Paired Model을 竝行하여 適用하여 보기 위함이었다.

각 地域層에서는 定해진 數의 個人택시를 系統抽出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個人택시 名簿는 區市郡別로 免許番號순서로 作成한 것을 사용하였다.

1979年에는 個人택시制度에 追加하여 限時택시制度가 새로 생겼으며, 個人택시는 所有主가 直接 運轉하여야 하지만 限時택시는 所有主가 個人이란 점에서는 個人택시와 같지만 별도의 運轉技士 雇傭이 認定되는 택시이므로, 運輸收入 및 費用이 個人택시와는 差異가 있다. 따라서, 個人택시와 限時택시를 分離하여 별도로 標本을 抽出하였으며 각 地域層別 標本規模는 과거와는 다른 方法으로 算出하였다.

이때, 市道別로 각각 1978年 個人택시 標本調査結果를 이용하여 運輸收入, 運輸費用, 附加價値의 3個 項目에 대한 相對分散을 算出하고, 이중 相對分散이 가장 큰 項目의 許容標本誤差가 68%의 信賴水準에서 12%以下가 되는 것을 目標로 하여 單純任意標本의 의한 標本規模를 算出하였으며, 各道에서는 算出된 標本規模를 다시 市部와 郡部에 最適割當法으로 配分하였다.

限時택시의 경우에는 限時택시가 1979年에 생겨 1978年 調査에서는 없었으므로 個人택시業에서 사용한 相對分散을 그대로 사용하여 個人택시에서와 같은 方法

으로 市道別 標本規模 및 各道의 市部·郡部別 標本規模를 算出하였다.

이렇게 하여 算出된 全國 標本規模는 개인 택시 484대 및 限時택시 533대인 총 1,017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標本規模는 限定된 調査員數와 業務量을 考慮할 때 問題点이 있어 一律的으로 1/3씩 減少시켜 最終 標本規模로 하였으며 結果的으로 全國 標本規模는 個人택시 323대 및 限時택시 355대의 總 678대가 되었다. 각 地域層別로 個人택시 및 限時택시의 標本을 抽出할 때에는 免許年月日 순서에 따라 系統抽出하였다.

1980年에는 用達運輸業에서도 個人用達制度가 새로 생겨, 用達運輸業에 대하여도 會社用達業은 會社單位의 全數調査를 實施하고, 個人用達業에 대하여는 個人用達車를 標本으로 抽出하여 調査하였다. 따라서, 1980年 調査에서는 個人택시業, 限時택시業, 個人用達業에 대하여는 標本調査를 實施하였다.

1980年 調査에서 個人택시業에 대하여는, 市道別로 各各 前年度 調査結果에 의한 運輸收入, 運輸費用, 附加價値別 相對分散 중에서 가장 큰 項目의 標本誤差가 90% 信賴水準으로 5%以下가 되는 것을 目標로 하여 單純任意標本에 의한 標本規模를 算出하였으며, 各道에서는 算出된 標本規模를 다시 市部와 郡部에 最適割當法으로 配分하였다. 따라서, 1979年度 調査에서는 68% 信賴水準에서 許容誤差를 12%로 하여 算出된 標本規模를 1/3씩 減少시켰으나, 1980年度 調査에서는 90% 信賴水準에서 許容誤差를 5%로 하고 算出된 標本規模를 調整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달라진 內容이다.

限時택시業에 대하여도 前年度 調査結果를 이용하여 個人택시의 경우와 同一한 方法으로 標本規模를 決定하였다. 限時택시制度는 1979年에 새로 생겨 그 前年度 調査가 없었기 때문에 1979年 調査에서는 個人택시業의 相對分散을 사용하였지만 1980年 調査에서는 그 前年度 調査結果의 相對分散을 사용할 수 있었다.

個人택시 및 限時택시를 標本으로 抽出하기 위한 名簿는 각 市道에 依賴하여 作成하였으며, 각 市道에서는 1980年末 基準으로 個人택시名簿와 限時택시名簿를 各各 區市郡別로 作成하여 編綴하였다. 이렇게 作成된 個人택시名簿와 限時택시名簿에서 各各 20個 地域層別로 다음과 같이 一連番號를 賦與하였다.

個人택시의 경우에는 旣存택시(事業免許日이 1979. 12. 31 以前인 경우)에 대

하여 一連番號를 먼저 賦與하고, 繼續하여 新規택시(事業免許日이 1980. 1. 1 以後인 경우)에 대하여 一連番號를 賦與하였다. 限時택시에는 新規택시가 없기때문에 名簿에 記入된 순서 그대로 一連番號를 賦與하였다. 個人택시와 限時택시의 標本은 이와같이 賦與한 一連番號순으로 정해진 數의 택시를 系統抽出하였다.

1981年 調査에서는 각 市道別 個人택시의 標本規模와 限時택시의 標本規模를 信賴水準 90%에서 許容標本誤差 5%인 경우(1案)와 95% 信賴水準에서 7%인 경우(2案)로 나누어 算出하였다(1案의 標本規模가 2案의 標本規模보다 크다). 그리고, 個人택시數 및 限時택시數의 合計가 會社택시數 및를 포함한 總 택시數의 40% 以上인 6個 市道(서울,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濟州)에서는 1案에 의한 標本規模를 택하였으며, 나머지의 7個 市道에서는 2案에 의한 標本規模를 택하였다. 그리고 各道에서는 정해진 個人택시의 標本規模를 市部·郡部別 個人택시數에 比例하도록 配分하고, 限時택시의 標本規模도 같은 方法으로 市部·郡部에 配分하였다.

실제적인 標本抽出作業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각 地方統計事務所에서 擔當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標本抽出指針을 提供하였다. 이에 따라 각 地方事務所에서는 該當 市道의 個人택시管理臺帳 및 限時택시管理臺帳에서 주어진 出發番號와 抽出間隔을 사용하여 휘발유택시 중에서 먼저 標本택시를 抽出하고, 계속하여 디젤택시, 개스택시 순으로 標本택시를 系統抽出하였다.

個人用達의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이 前年度 調査結果를 이용하여 1案과 2案으로 市道別 標本規模를 算出하고, 個人用達車數가 會社用達車數를 包含한 總用達車數의 70% 以上인 9個 市道(서울, 釜山, 大邱, 仁川, 京畿, 忠北, 忠南, 慶北, 慶南)에서는 1案에 의한 標本規模를 택하였으며, 나머지의 4個 道에서는 2案에 의한 標本規模를 택하였다.

1982年 調査에서는 각 市道別로 個人택시의 標本規模와 限時택시의 標本規模를 별도로 算出하지 않고, 서울과 釜山에서는 各各 個人택시와 限時택시를 燃料에 따라 디젤택시, 휘발유택시, 개스택시의 3個 層으로 나눈 總 6個를 設定하였으며, 各道에서는 市部·郡部別로 各各 個人택시와 限時택시를 燃料에 따른 3個 層으로 나눈 總 12個 層을 設定하여 각 市道의 標本規模를 最適割當法으로 各層에 配分할

때의 市道別 標本規模를 算出하였다.

이를 위하여 前年度 調査結果로 각 市道別로 運輸收入, 運輸費用, 附加價値의 3個 項目의 層別 推定分散을 計算한 다음 層別 分散을 이용하여 市道別 分散을 計算하였다. 이와같이 計算된 市道別 3個 分散에서, 市道別로 分散이 가장 큰 項目을 하나씩 택하여 이 項目의 許容標本誤差를 68% 信賴水準에서 1.5%에서 2.5%까지 0.1%포인트씩 增加시켜 가면서 市道別 標本規模를 最適割當法으로 各層에 配分한다고 할 때의 市道別 標本規模를 算出하였다. 그리고, 個人 및 限時택시數가 約 19,300대인 서울에서는 許容標本誤差를 1.5%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約 3,300대인 釜山에서는 1.7%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택하였으며, 個人 및 限時택시 수가 3,000대 未滿으로 會社택시數보다 많은 京畿, 忠北, 濟州에서는 許容標本誤差를 2.0%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나머지의 8個 市道(大邱, 仁川,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에서는 2.5%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택하였다. 각 市道別로는 정해진 標本規模를 最適割當法으로 各層에 配分하였다.

個人用達의 경우에는 서울과 釜山에서는 디젤用達車와 휘발유用達車의 2個層을 設定하고, 各道에서는 市部·郡部別로 各各 디젤用達車와 휘발유用達車의 2層으로 나눈 總 4個 層을 設定하여, 個人 및 限時택시의 경우와 같이 각 市道別로 運輸收入, 運輸費用, 附加價値의 3個 項目 중에서 分散이 가장 큰 1個 項目을 選擇한 다음, 68% 信賴水準에서의 許容標本誤差를 1.2%부터 3.0%까지 0.1%포인트씩 增加시켜 나가면서 個人 및 限時택시의 경우와 같이 市道別 標本規模를 最適割當法으로 각 層에 配分한다고 할 때의 市道別 標本規模를 算出하였다. 그리고, 個人用達車가 1,500대 以上인 서울(約 6,700대)과 釜山(約 1,800대)에서는 許容標本誤差를 1.2%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個人用達車가 1,500대 未滿으로써 그 市道總 用達車數의 95%以上인 大邱, 仁川에 대하여는 2.0%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택하였으며, 個人用達車數가 60%－94%인 京畿, 忠北, 忠南, 濟州에 대하여는 許容標本誤差를 2.5%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나머지의 5個 道(江原, 全北, 全南, 慶北, 慶南)에 대하여는 3.0%로 했을 때의 標本規模를 택하였다. 각 市道에서의 層別 標本配分은 역시 最適割當法에 의하였다.

個人 및 限時택시와 個人用達車의 실제적인 抽出業務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의 地方統計事務所에서 擔當하였다.

1984年에는 個人用達의 燃料가 單一化되고, 1986年에는 限時택시가 廢止되고 個人택시의 燃料가 單一化되었으며, 同年調査부터는 그동안 全數調査로 實施하여 오던 農產物倉庫業에 대하여 標本調査로 實施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變更된 內容이 별로 없다.

農產物倉庫業에 대한 標本은, 1986年 調査에서는 個人택시나 個人用達의 標本設計方法과 거의 同一한 方法으로 設計하였으나, 1987年 調査에서는 鑛工業動態調査에서의 標本抽出方法을 사용하여 設計하였다.

라. 調査技法 體系의 轉換과 展望

社會가 發展하면 할 수록 그 構造는 더욱 더 複雜·多樣하여 지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旣存의 統計보다는 좀더 細分化되면서도 더욱 正確한 統計資料의 提供을 要求한다. 또한, 現在까지는 별로 필요치 않던 統計도 새로 要求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한편, 國家 全體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하여는 全國單位의 統計에 追加하여 地域單位의 統計가 必須的이며, 이는 地方自治制의 初期段階를 벗어나면 더욱더 加速化될 展望이다. 어느 面에서는 國家 全體로 볼 때는 그리 時急한 統計가 아닌것도 一部 市道에서는 그 地域의 特性에 맞는 開發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必須的인 統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主要 外國에서 作成하고 있는 各種 統計에 대하여 그 目的, 活用分野, 作成方法 등에 관한 資料를 蒐集·整理하여 보면, 그간의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統計部門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統計調査도 開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現在의 與件에서는 그 實施가 不可能하지만 앞으로 實施할 수있는 統計調査가 무엇인지도 미리 알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統計調査의 開發을 위하여는 國內外의 統計作成現況을 點檢하고 繼續하여 修正·補完해 나아가는 努力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새로운 統計調査의 開發은 물론 旣存 統計調査의 改善에 대한 새로운 情報의 役割

도 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分野이다.

21世紀의 情報化社會로 進入함에 있어 統計調査의 對象인 應答者의 傳達情報가 더욱 細分化되는가 하면 프라이버시問題나 調査呼應의 時間的 負擔등과 관련하여 拒否反應도 점증할 것인데 이런 應答者와의 關係를 밀접하게 하는 調査設計 技術의 開發이 具體化할 展望이다. 그에 따라 全般的인 調査 技術體系에 變化가 不可避할 것이다.

現在 作成하고 있는 統計 중에서 이미 市道單位의 地域別 統計作成을 實施하고 있는 것도 있고, 試圖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段階的으로 그 統計의 種類를 擴大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는 地域別 各種 開發計劃樹立을 위하여는 必須的으로 統計資料가 基礎이기 때문이다.

또한, 地方政府로서는 中央政府에서도 提供하지 못하는 統計를 自體 豫算으로 實施하려 해도 그에 관한 專門人力이나 技術이 없어 實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實施하더라도 粗雜한 狀態로 實施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中央政府의 積極的인 技術支援 및 指導에 관한 現實的인 措置方案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地方의 統計 資源(人力, 技術, 裝備 및 情報 등)도 확충시켜 나아갈 것이다.

3. 情報化時代의 統計情報處理

1966年度에 실시한 人口住宅總調査의 資料處理를 위하여 1967年에 우리나라 最初로 당시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IBM 1401型컴퓨터를 도입한 이래 계속 發展되는 新型컴퓨터를 거듭 交替도입하여 顯在 大型 IBM 3090(32MB) 및 4381(16MB) 2개 System을 보유하고 있으며 人口住宅總調査를 비롯하여 各種統計情報處理에 소요되는 時間을 단축하여 왔다. 초창기의 1401컴퓨터의 容量 14KC와 비교할 때 컴퓨터의 容量規模와 밀리세컨드(mili-second=1000분의 1초) 단위 처리속도가 오늘날에는 나노세컨드(knano-sec=10억분의 1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더욱이 現在 統計廳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에 專用되는 컴퓨터 툴

러런트 시스템(Tolerant System)을 導入設置하여 데이터베이스 즉 經濟統計情報 시스템(ESS, Economic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活用에 적극 힘쓰고 있다.

컴퓨터가 統計資料處理에 도입된 것은 統計調査結果를 더욱 빨리 그리고 正確하게 集計하고 좀더 상세한 結果表를 作成하기 위해서였으며, 結果가 빨리 集計되지 않으면 그 利用效果는 심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最近의 急變하는 우리나라 經濟情勢에 人口移動이 극심하고 地域의 産業構造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그 結果의 利用이 요망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統計作成에는 資料處理가 차지하는 時間 때문에 그 發表와 利用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統計廳을 비롯한 各 統計作成機關은 계속 時間短縮을 위한 技術開發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가. 光學式解讀入力(OMR, Optical Mark Recognition)

在來式 電算入力方式은 데이터를 일일히 사람의 손으로 key-in하는 것으로 매우 時間이 걸리는 作業過程이다. 따라서 이 作業을 短縮하는 方法으로 나온 것이 소위 OMR이다. 各種 客觀式試驗에 흔히 使用하고 있는 OMR部類에 속하는 기계장치가 바로 이것이다. 다만 試驗採點 등에 使用하고 있는 것은 入力量이 아무리 많아도 幾万～幾10万枚에 불과하나 統計調査資料를 入力하는 경우, 특히 人口住宅總調査의 경우에는 그 調査票가 1家口當 1枚라 할지라도 約1千万枚以上을 컴퓨터에 入力해야한다. 過去에는 총조사의 最終結果가 3年後에야 完全發表된 것도 이 調査資料의 入力에 소요되는 방대한 時間때문이었다. 美國의 경우는 FOSDIC (Film Optical Sensing Device Interchange Code)를 그리고 日本, 카나다등 先進諸國에서는 30年前부터 光學式入力方法을 試圖해서 開發해왔고 오늘날에는 거의 成功的이다. 韓國에서도 總調査때마다 이의 實行을 試圖하였고 또 1970年代初 一部調査(例. 경제활동인구조사등 ; 寫眞參照)에서 실시해보기도 하였으나 豫算 및 技術問題 등으로 미루어오다 지난 1990年度人口住宅總調査에 드디어 實用하여 現在 實效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使用하고 있는 光學式入力裝置는 日本製 N7814型으로서 매우 高

價라서 3臺만을 導入하여 가동시키고 있는데 역시 入力所要時間이 約1年을 豫定하고 있다. 이들 6個月以下로 단축하는데는 이 機械의 臺數를 倍로 늘려야 할 것이다. 물론 2,000年代에는 이 機械의 처리속도기 현재 分當 90～100枚보다 훨씬 有力한 장치가 개발될 것으로 展望되나 그보다 현재 기계를 國產化하여 低價에 設置할 수 있는 方法을 業者와 더불어 모색할 것으로 期待된다. 그리하여 2,000年代에는 入力作業자체를 各市 道등 現地에서 끝내는 方式으로 市·道마다 한臺씩 설치하는 일도 國產化가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 統計資料內容檢查(Editing)

資料入力 다음으로 時間이 많이 걸리는 作業이 調查資料의 內容檢查라 할 수 있다. 종전까지의 方法은 컴퓨터로 入力된 데이터의 착오부분을 사람의 能力으로는 빠드리기 쉬운것 까지도 모두 찾아내어 이른바 error sheet로 인쇄해낸다. 이 리스트를 조사표와 對照하고 정확하게 정정한 후에 또다시 키入力(key-in)을 하여 처음 作業을 반복하였다. 이 작업은 거의 入力에 의지해야 하므로 많은 時間이 소요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先進國에서 사용하고 있는 方法中 하나에 自動修正法(automatic imputation)이라 하여 事前에 錯誤類型을 생각하여 가장 妥當한(확률적으로) 答을 機械的으로 정정하는데 이는 사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을 作成하여 처리하게 한다. 이 方法은 거의 入力을 생략할 수 있는 方法이기는 하나 때로는 結果資料에 커다란 偏倚를 초래한다는 뜻에서 나라에 따라서는 禁忌視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美國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入力된 資料를 디스크에 깔아놓고 內檢要員이 自身의 擔當分野를 PC(개인용 컴퓨터)터미널로 Host Computer(주전산기)를 통하여 수시 接近修正을 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방대한 資料의 베이스가 되는 디스크容量이 커야하고 PC가 內檢要員 1人當 1臺비율로 설치해야 하므로 統計廳의 경우 數百臺의 PC를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開發이 先決條件이라고 하겠으나 上記 自動修正法과 併用함으로써 入力을 절약하고 作業節次도 많이 단축시킬 것이다.

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계속되는 電子技術의 發展으로 PC의 性能이 上昇하고 또한 價格이 低廉하여지고 있다. PC라 할지라도 그 記憶容量이 過去 大型컴퓨터(main-frame Computer)에 못지않다. PC는 곧 DB(data base)의 터미널로 利用된다. 中央의 大型電算組職에 아무리 많은 資料를 축적한다해도 利用치 않고서는 DB의 眞價를 발휘할 수 없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INS(Information Network System), ISDN (Integrated Service of Digital Network), 또는 VAN(Vaiue-Added Network) 등 모두가 DB/DC/DP의 發展形態로서 中央에서의 방대한 量의 Data 축적가능, 通信技術의 發達, 端末機器의 廉價 등을 可能케 했고, 그 普及도 加速化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特記할 事項은 DB, DC, DP 즉 데이터베이스, 데이터通信(Data Communication), 情報處理 혹은 資料處理(Data Processing)의 區分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電算處理에서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는 電算環境으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2,000年代에는 各家庭에까지 용이하게 DB 터미널이 普及될 것이다. 현재도 이미 가정에서 DB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先進諸國의 代表的인 例로서 美國大學聯合에서 구축한 대형 DB, 美勞動部의 LABSTAT, 日本經濟新聞社의 NEEDS라는 超大型 DB, EC의 COMET나 UROLINK, 그리고 프랑스 INSEE(통계연구소)의 DB 등이 世界DB界의 尖端을 달리고 있는데, 韓國의 DB事業은 先進諸國에 比해 많이 늦은 感은 있으나 현재 상당한 實績을 올리고 있다. 즉 현재 범국가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行政電算網設置計劃이 그것이다.

統計廳에서는 1977年부터 통계청에서 作成하는 統計情報는 물론 他機關에서 作成하는 주요통계정보를 컴퓨터에 入力·管理하는 統計情報시스템(KOSIS,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을 꾸준히 開發하여 온바 上記 行政電算網事業의 일환으로 우선 各行政機關이나 大學 및 硏究所에서 保有하고 있는 電算網用 端末機에 通信回線(電話回線)을 연결하여 KOSIS에 入力되어 있는 經濟統計情報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종전의 통계정보 利用은 작성기관에서 배부하는 統計刊行物에 의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刊行物을 保有하고 있지않은 기관에서는

統計情報를 求하기 위하여 作成機關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不便을 겪어야 했으나 KOSIS의 開通으로 각기관의 事務室에서 行政網用 端末機를 통하여 필요한 統計情報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KOSIS의 內容을 보면 20개분야에서 약26만계열의 統計를 최대30年 前부터 최근까지 月別, 分期別, 年度別 時系列資料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DB의 특징으로는 현재 內藏되있는 소프트웨어로 이 DB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各種分析 즉 增減率, 構成比, 寄與度 등을 간단한 利用者의 조작으로 쉽게 算出할 수 있게 되었다. 좀더 資料의 高次的인 利用으로는 SAS나 SPSS Software package의 利用으로 未來豫測을 위한 計算 혹은 시뮬레이숀作業이 가능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현재 統計廳은 景氣變動豫告에 관한 계산작업은 오래전부터 實行하고 있다. 現在 및 各企業의 연구소까지 KOSIS를 開放한 사실은 韓國의 DB發展에 획기적인 事實이 아닐 수 없다. 2,000年代는 各家庭에까지 普及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는 조처로 Super급 Host Computer 導入을 계획하여야할 것이다.

라. 地域情報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는 컴퓨터그래픽이라하여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는 機能을 이용하여 地圖 또는 統計地圖, 統計圖表 등을 용이하게 作成하는 技法을 말한다. GIS技法을 利用하여 현재 統計廳에서는 "눈으로 보는 統計" 즉 地圖로서 地域別比較 또는 變動推移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統計地圖를 作成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멧슈統計』이다. 센서스資料를 가지고 全國土를 가로·세로 1㎞로 구분한 小地域內의 統計値를 상세하게 色彩 또는 明暗으로 表示하여 一目瞭然한 判斷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앞으로 地域社會開發事業에 利用한다면 도움이 클 것이다.

1980年 以前까지만 해도 韓國에서 GIS는 물론 Computer graphic이란 지극히 생소한 分野였다. GIS技法은 美國하버드大學에서 최초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카나다 統計廳과 IMF電算室 등에서 實用化한 것이다. 韓國에서도 統計廳(當時 調査統計局)은 1981年에 GIS開發의 필요성을 切感하고 電算職 職員2名을 카나다 統計廳과 IMF에 硏修를 보냈었다. 그 後 IMF의 GIS技術者를 초빙하여 도움을 받은

바도 있다. 1982年에 統計廳은 GIS개발에 필요한 電算機器 즉 Digitizer와 plotter 그리고 이에 따르는 Software를 具備한 하나의 小型電算組織을 導入設置하고 實務에 착수하였다. 그 後 1985年에 3名의 電算要員이 日本등 GIS의 先進技術을 硏修하는데 參加하였다. 그동안의 개발성과 중에서 『小地域統計地圖』가 代表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GIS의 課題는 小地域統計의 계속적인 硏究發展이겠으나 이것은 開發이 完了段階에 들어가 있으므로 다른 課業을 擇하게 될 것이다. 그 中 하나가 센서스 調査區地圖(要圖)의 Computer入力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20~30년간 住宅地, 工場地帶等의 地域變動이 심하여 5年마다 實施하는 人口住宅總調査時에는 調査區地圖를 다시 그려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 分野에 GIS技法을 活用하는 일은 2,000年代에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Laser Printer와 Remote Sensing

2,000年代를 展望할 수 있는 Computer System과 統計情報處理의 변모중에서도 레이저光을 利用한 印刷裝置와 遠距離測定技術이 있다.

컴퓨터印刷出力裝置는 과거에 라인·프린터(Line-Printer)라 하여 132字1行을 한번에 인쇄하되 1分間 1,000~1,200行의 速度(1分間 約15万字)였다. 당시로서는 굉장한 速度였으며 오늘날에도 아직 利用範圍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프린터가 出現한지 10數年이고 앞으로도 무수히 보급될 것이다. 이의 특징은 라인 프린터의 約10倍 以上의 속도를 발휘하며 동시에 各種活字(漢字, 한글, 英字, 數字)의 크기까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印刷結果를 출판하기 위하여 一般印刷所에서 組版하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전에 컴퓨터에서 最終出版物體制로 인쇄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一般印刷所는 複寫하는 作業과 製本하는 작업만 하게 된다.

Rempte Sensing은 人工衛星(Landsat)이나 航空機에서의 撮影으로 農產物生產量이나 其他 調査對象物을 추계하는 것이다. 오늘날 精密한 遠距離撮影技術이 發達하고 동시에 撮影結果가 즉각 컴퓨터에 入力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情報處理에

크게 寄與할 것이다. 현재에도 아프리카 奧地의 人口調査에 이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4. 先進社會의 要件과 統計座標－結語

政府樹立以後의 國家體制構築過程을 거쳐 60年代以後의 經濟開發推進과 社會發展을 追求하면서 社會經濟的으로 現代化를 達成하고 90年代를 맞고 있다. 앞으로의 國家目標는 成長爲主의 開發戰略에서 發展과 衡平 및 國民福祉를 同時에 追求하는 轉換期로서 21世紀를 對備하고 있다.

이에 統計分野에서도 지금까지의 總括的 發展計劃을 脫皮하여 對外的으로는 部門別로 多樣해진 社會的 統計需要를 充足하며 對內的으로는 統計生產基盤을 整備해 나아가고 있다. 人口의 老齡化, 女性의 社會進出, 所得再分配問題나 地方化時代·國際化時代의 到來 등은 統計에 대한 外部作用 즉 社會的 統計需要로서 作用하며 統計制度, 統計行政, 統計人力, 統計基準, 統計分類, 調査·報告體系, 統計情報網 및 統計生產의 綜合的品質管理 등은 內部作用 즉 統計基盤先進化의 要件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統計界는 그동안 長短期構想과 時策을 推進하였고 韓國統計의 內外要件을 調整하며 調和해 왔다.

韓國에서 統計發展에 관한 展望, 對策 計劃 등은 政府樹立以後 이 分野의 專門家들에 의해서 꾸준히 추구해 왔고 따라서 斷片的인 硏究報告書나 論文들로 계속 발표해 왔다. 그중에서 60年代初까지 重要한 것을 例記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統計의 重要性「統計月報」創刊號, 公報處 統計局, 1949.9.
- 統計要綱, 姜益秀, 靑鳩文化社, 1954.
- 統計行政, 林春成「地方行政」, 1957.7.
- 韓國統計의 實態와 將來,「國會報」, 1957.10.
- 統計行政強化 實施要綱,「統計月報」, 內務部 統計局, 1958.4.
- 韓國統計의 改善策, 駐韓美國統計顧問團(Rice Mission), 1960.11.
- 韓國統計機構의 整備強化와 經濟開發計劃「통계월보」第3條 第1號, 經濟企劃院 統計局 1961.

그러나 이 무렵까지는 韓國統計가 처한 現況과 重要性 그리고 改善策을 중심으로 論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2次 5個年計劃이 끝나면서 韓國統計의 進路에 대한 中長期發展을 구체적으로 構想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1年9月에 「韓國統計發展方向에 관한 硏究」(大韓統計協會)가 나온 이후, 1976年에는 調査統計局에서 大韓統計協會에 위촉하여 硏究하게 해서 그로써 「韓國統計의 長期發展方案硏究報告」(1976.12.19)를 提出하였다(第2章 參照). 그 以後에도 각종 統計發展方案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80年代中盤 以後 發表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經濟指標의 體系化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大韓統計協會 1985.12.
- 「國內產業動向把握을 위한 統計體制改善方案」 產業硏究院 1985.10.
- 「統計行政의 發展方向」 金景中 1987.
- 「農水產統計의 現況과 發展方向」 崔龍圭 1988.7.
- 「地自制實施와 地域統計發展計劃」 申賢均 1989.2.
- 「景氣變動豫測統計의 改善方案」 南繁· 1989.2.
- 「우리나라現行統計의 活動과 그 改善方案」 朴聖炫 1989.2.
- 「基準調整業務改善」 林成坤 1989.2.
- 「國家社會電算化 中長期計劃」 電算網調整委員會, 韓國電算院, 1988.5.
- 「에너지統計體制改編方案에 關한 硏究」 에너지경제연구원 1989.4.
- 「建設關聯統計의 體系化와 合理的 運營方案」 國土開發硏究院 1989.12.
- 「韓國政府의 中央統計局에 있어서의 統計調査를 위한 品質管理組計劃」 朴聖炫, 金民卿 1991.2.

이밖에도 綜合的으로 또는 部門別로 對策이나 構想을 밝힌 文獻들이 많았으나 결국 이런 모든 것을 集約한 것이 1986年에 발표한 第6次經濟社會發展計劃(1987－91)의 「統計部門計劃」이며 그에 따라 80年代 後半에는 이에 바탕하여 韓國統計를 發展시켜 왔다. 이 計劃은 1984年부터 計劃立案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이무렵인 1985年 12月에 總務廳(1984年 5月 發足)의 委囑으로 統計審議委員會에서 「統計行政의 中長期構想」을 立案提示(答申)하였다.

韓國統計는 90年代初인 현단계에서 體制나 統計生產의 量的·質的水準에서 完熟期에 접근하고 있다. 統計作成의 計劃樹立과 技法處理 등이 더욱 精巧해지고 高

度化함에 따라 統計의 正確性이나 統計分析과 그 活用度 및 部門別計劃의 多樣化를 期하고 있다. 그러나 21世紀는 情報化時代이고 地方化와 國際化時代가 더욱 本格的으로 展開되리라는 것은 確實하다. 統計의 正確性과 活用度의 提高 및 分野別 深層統計調査의 開發같은 統計調査基盤整備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갈 課題일 것이다.

統計制度面에서는 韓國의 統計制度가 基本的으로는 分散型 體制라 할 수 있으나 狹小한 國土에 人口의 過密化, 經濟와 技術의 高度蓄積, 社會體制의 後期產業化現象 등이 더욱 급진적으로 進行할 것이므로 統計分野에서는 部門別分化·專門化와 그로인한 統計情報의 需給隘路作用도 相乘할 것이다. 隘路現狀의 露呈은 Hardware 部門에서의 裝備보다는 人力分野에서, Software部門에서는 制度보다는 設計, 處理등 Programme分野에서 顯在化할 것이며 그것이 情報化時代의 競爭力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를 機構와 制度面에서 補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1世紀의 統計體制는 이들 統計資源을 統合化方向으로 誘導해서 中央統計機構의 調整, 基準化機能을 強化하고 集中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提案이 많다. 20世紀初에 後發先進國으로 進入했던 獨逸, 카나다, 스웨덴, 和蘭, 濠洲 등 諸國에서 集中型 統計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그 歷史的 背景이 21世紀를 맞는 韓國統計 進路에서도 參考될 것이다.

이처럼 統計專門人力·統計資源의 效率的 活用과 調査體系의 能率化, 統計客體의 協助增進 등을 통한 統計의 質的高度化를 위해서 統計機能全般에 걸친 集中化와 統合化의 추세가 漸高하고 있는데 한편 統計需要機關과의 連繫 및 相互調和를 위해서 각급 統計需要機關의 專門家로 構成하는 「連絡會議」를 두거나 統計基盤整備의 一環으로 統計의 生產部門과 需要部門間의 人的交流나 施設·作業의 共同利用制 制度化方案 등도 講究하고 있다. 더욱이 南北統一을 展望하면서 北韓地域에 近代的 統計技法을 擴散시켜 이를 統合하고 時系列連續性을 持續化 해야할 準備도 지금부터의 課題라 할 수 있다. 21世紀를 앞둔 90年代는 그 準備期間에 該當한다.

1991年 11月에 發表한 第7次 經濟社會發展5個年 計劃(1992－1996)은 「21世紀의 經濟先進化와 統一에 대비하는 經濟의 內實化와 效率化」를 追求하고 있다. 지난 第6次計劃期間에 推進한 自律化, 開放化, 國際化와 均衡和發展施策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는 이들 추세에 부응하여 政府主導를 더욱 축소하고 民間部門 活性化의 幅을 더욱 擴大하도록 誘導하는 制度的 環境의 造成을 重視하고 있다.

이에따라 統計部門에서도 第6次計劃期間中에 國家統計作成機關의 制度的 基盤은 強化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령 地域統計開發이나 國際統計作成體系의 構築과 함께 統計廳發足과 統計硏修院 設立 등이다. 현재 統計政策當局에서는 第7次計劃의 統計部門計劃(案)을 수립함에 있어 당면한 先進社會를 追求하는 統計的 要件으로서

(1) 國家發展政策의 轉換에 따른 統計需要의 增大

(2) 地方化時代에 따른 地域間 均衡發展要求 增大

(3) 國民經濟規模의 急激한 增加, 産業構造의 高度化, 職業의 多樣化 趨勢 加速化

(4) 統計의 國際協力機能增大 및 共産圈國家統計情報 供給必要

등을 展望하고 있다. 그로써 第7次計劃期間中 統計部門의 計劃目標를 ① 統計의 均衡的 發展圖謀와 ② 統計調査의 正確性 提高 ③ 統計資料의 利用度 提高 및 ④ 國家統計作成基盤強化라는 骨格을 갖추기로 하고 있으며 특히 情報化時代를 對備해서 電算組織을 補強해서 統計電算網을 擴大하며 統計情報普及機能의 強化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바로 21世紀를 向한 韓國統計座標를 定着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여 백

〈附　　錄〉

1. 參考資料目錄
2. 統計年表
3. 主要統計指標
4. 參考圖表

여 백

1. 參考資料目錄

Ⅰ. 統計全般

(1) 東史年表(抄) 魚允迪 東國文化社 4292年報

(2) 近世略年表(韓國史大系年表 三珍社 1975)

(3) 韓國經濟年表(1845~79), 國會立法調査局圖書館 1980. 8

(4) 韓國政治年表(1945~84), 國會立法調査局圖書館 1984. 12

(5) 聯合年鑑, (株)聯合通信社, 1991. 5

(6) 解放 20年史(日誌) 希望出版社 1965.

(7) 解放 二十年史(記錄編) 世文社 1975.

(8) 韓國統計의 實態와 將來「國會報」1957. 10月

(9) 內務行政 便覽 統計局編 내무부 4290. 12.

(10) 內務行政治績史(통계행정편) 내무부 4291.

(11) 韓國の 統計事情(姜五佺) アジア經濟研究所 1965

(12) 韓國の 統計事情(咸萬準) 〃 〃 1967

(13) 韓國の 統計調査(崔善來)(上, 下) 〃 〃 1971

(14) 네이산 報告(韓國經濟再建計劃) 韓國產業銀行(번역) 1954. 2. 4

(15) 韓國經濟概況 內務部 統計月報 第6號 4293

(16) 統計消息·雜報 등(統計月報, 國際統計 및 統計情報 拔萃) 1959. 1~1961. 5

(17) 韓國統計調査狀況, 1971, 72, 73, 75, 82, 85 및 1989.

(18) 韓國統計의 長期發展方案 研究報告書, 大韓統計協會, 1976. 12

(19) 產業構造 調整을 위한 基礎統計, 調査統計局, 1982.

(20) 經濟指標의 體系化와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大韓統計協會 1985.

(21) 韓國의 統計制度, 調査統計局 1978, 1981

(22) 알기쉬운 통계(199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9

(23) 알기쉬운 經濟指標 해설, 한국은행 1990. 6
(24) 韓國의 經濟指標, 金景中, 每日經濟新聞社 1989. 2
(25) 1980年代의 主要經濟政策(電算統計資料檢索), 全國經濟人聯合會 1990. 7
(26)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90. 10
(27)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韓國開發研究院 1991. 6
(28) 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 修正計劃(1987~91), 大韓民國政府 1987. 5
(29) 經濟民主化와 政府規制, 韓國經濟研究院 1991. 2
(30) 經濟民主化와 基本構想, 韓國經濟研究院 1988. 4
(31) 第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經濟企劃院 1971
(32)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經濟企劃院 1976
(33) 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大韓民國政府 1981
(34) 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修正計劃 大韓民國政府 1983
(35)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大韓民國政府 1986. 9
(36)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統計部門計劃, 經濟企劃院 1986. 9
(37)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對外協力部門計劃, 經濟企劃院 1987
(38)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地域開發部門計劃, 經濟企劃院 1987. 7
(39)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地方發展部門計劃, 內務部 1987. 6
(40) 韓國經濟百年史 總目錄, 辛水吉, 韓國經濟韓國社 1989. 2
(41) 統計基準年報, 日本 總務廳 統計局 1991
(42) 日本統計發達史, 日本統計研究所編, 東大出版部 1960
(43) 日本統計制度再建史, 日本統計研究所編, 東大出版部 1962
(44) 總理府 統計局 八十年史稿, 日本總理府 統計局 1951
(45)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錄(一) (日本)友邦協會 1956
(46) 日本統計文化史序說, 小島勝治, 未來社 1972
(47) 統計行政の中長期構想, 日本統計審議委員會 1985. 12
(48) 日本統計行政의 中長期構想, (번역)調査統計局 1986
(49) 第7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經濟企劃院 1991. 11

(50) 朝鮮統計總覽, 朝鮮經濟硏究所 1931年.
(51) 統計要綱, 姜益秀 1954.
(52) 統計調査便覽,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9. 9.
(53) 經濟統計學 金俊輔 1969. 2

II. 統計法令·行政

(1) 舊韓國 各府 各衙門 通行規則 (開國503年 1884)
(2) 朝鮮總督府統計事務取扱方法 1911.
(3) 〃 〃 〃 〃 改正(1918, 25, 27, 41年)
(4) 報告例規定 別冊 甲號 書式 (1922)
(5) 〃 〃 〃 乙號 書式 (1922)
(6) 〃 〃 〃 甲號 書式 (1936)
(7) 朝鮮法令輯覽, 朝鮮總督府 1938
(8) 統計關係法令集, 調査統計局 1971. 5, 1974. 12, 1979. 3, 1982. 9 1986. 7
(9) 內務部 報告例, 官報, 4285. 6. 25
(10) 保健部 統計事務處理 規程, 官報, 4285, 4. 10
(11) 保健部 統計報告例, 官報, 4285. 5. 25
(12) 保健社會部 統計事務處理規程, 官報, 4288. 2. 25
(13) 江原道 警察署 등 對象名簿 備置의 件, 官報, 4292, 1. 5
(14) 統計報告統制規則(國防部訓令), 官報, 4292, 4. 15
(15) 內務部 治安局所管定期報告書式中一部 改正, 官報, 4292, 1. 29
(16) 保健社會部 報告例 中 改正, 官報, 4292, 2. 23
(17) 法院 統計規程(大法院規則) 官報, 4292, 11. 10
(18) 定例報告規程(內務部 統計局) 官報, 4293, 12. 31
(19) 法院統計規程中 改正(大法院 規則) 官報, 4293, 6. 28
(20) 統計法 (法律 第980號) 官報, 1962. 1. 15

(21) 統計法 施行令(閣令 第512號)官報 1962. 3. 10
(22) 統計委員會 規程(閣令) 官報, 1962. 3. 10
(23) 法院統計規則 官報, 1962. 4. 24(法院統計規程廢止)
(24) 統計法施行規則(經濟企劃院令), 官報, 1962. 8. 21
(25) 統計法中 改正法律 官報, 1962. 12. 12
(26) 統計法 施行令中 改正의 件 官報, 1963. 2. 25(외2건)
(27) 統計法施行規則 및 各種調査 規則 改定令 官報, 1964. 4. 16(外 18件)
(28) 統計調査指導員 및 調査員 服務規程 官報, 1963. 2. 13
(29) 지정통계조사표집 調査統計局 1972.
(30) 우리나라 統計의 重要性「統計月報」創刊號 公報處統計局 4282
(31) 統計局 業務「統計月報」(第5號) 公報處 統計局 4282. 8月
(32) 統計行政(林春成)「地方行政」4290. 7月
(33) 統計行政의 槪要와 沿革「統計月報」(創刊號) 內務部統計局 4291. 3月
(34) 統計行政強化實施要綱「統計月報」內務部 統計局 4291. 4月
(35) 4292年度 統計行政主要施策等「통계월보」1호 內務部 統計局 4292.
(36) 統計行政主要施策 (통계월보) 5호 내무부 통계국 4292.
(37) 統計行政主要施策「통계월보」1호 〃 〃 4293.
(38) 4293年度 統計行政主要施策計劃에 관한 件「통계월보」내무부 통계국 4293. 2호
(39) 統計와 統計資料(Rice Mission 제공)「통계월보」8호 내무부 통계국 4293
(40) 重要統計行政計劃表,「통계월보」5호 내무부 통계국 4293. 7月
(41) 重要統計實施計劃表「통계월보」6호 내무부 통계국 4293. 8月
(42) 統計要員 海外派遣 實績 1952~61(拔萃)
(43) 1968年度 調査統計局 主要活動「한국통계월보」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69. 1月
(44) 우리나라 統計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大韓統計協會 1971. 9

(45) 統計行政의 發展方向 金景中 1987. 3
(46) 韓國統計의 改善策:1960. 11. 21(第1輯) 駐韓統計顧問團 對政府建議書
(47) 統計刊行物의 整備策 : 1961(第2輯) 〃 〃
(48) 統計用語集 : 1962. 1. 1(第3輯) 〃 〃
(49) 韓國의 標本調査機關 : 1962. 2. 1(第4輯) 〃 〃
(50) 韓國의 輸出入統計 : 1961. 3. 1(第5輯) 〃 〃
(51) 韓國의 都賣物價指數 : 1962. 3. 1(第6輯) 〃 〃
(52) 經濟活動의 槪念(60年 census와 關聯하여) : 1962. 3. 1(第7輯) 〃 〃
(53) 統計使節團 來韓의 意義「통계월보」(創刊號) 내무부 통계국 4291. 3
(54) 統計使節團來韓「통계월보」(2호) 내무부 통계국 4291. 4
(55) 駐韓統計使節團의 業績「통계월보」 〃 4292. 1
(56) Rice Mission Documents File(I) Semi-Annual Reports etc.
(57) Rice Mission Documents File(II) Sampling Method in Rice Field Surveys
(58) 統計法改正, 官報 1975. 12. 31
(59) 統計法施行令改正, 官報 1966. 5, 1969. 10, 1967. 5, 1991. 4
(60) 통계법시행규칙개정, 官報 1972. 5, 1976. 7
(61) 통계법해설자료, 통계청 1991. 5
(62) 報告統制規程, 官報 4294. 12. 16
(63) 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 개정령, 관보 1983. 3. 23
(64) 보고통제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령, 관보 1984. 10. 4
(65) 사무관리규정, 총무처 1991. 6
(66) 指定統計調査票集, 調査統計局 1978
(67) 統計調査票書式集〈指定統計〉第1輯, 調査統計局 1966
(68) 각종조사표류집, 조사통계국 1982
(69) 法院事務規則, 官報 1963. 6. 26
(70) 법원사무규칙, 관보 1987. 2. 27
(71) 통계자료의 공표협의규칙, 관보 1966. 7. 8

(72) 통계자료의 공표협의규칙개정 1970. 9. 16, 1972. 5. 25, 1977. 11. 3

(73) 일반통계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범위, 관보 1977. 3. 7

(74) 業務綜合資料(業務資料), 90年度(調査統計局) 91年度(統計廳)

Ⅲ. 統計機構·職制

(1) 舊韓國官制 (開國 503年 ; 1894)

(2) 總巡執務章程 (開國 503年)

(3) 巡檢職務章程 (開國 503年)

(4)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 (開國 504年)

(5) 度支部分課規程 (開國 504年)

(6) 內部分課規程 (開國 504年)

(7) 甲午更張官制 (開國 503年)

(8) 舊韓國政府官報解題 (1894～1910年)

(9) 韓國統監府官署一覽表 (1910)

(10) 韓國統監府, 朝鮮總督府所屬官署 概要表 (1905年～1944年)

(11) 朝鮮總督府 및 所屬官署分課一覽 (1911年, 1943年)

(12) 朝鮮總督府 官房國勢調査課職制變遷 (1910～1948年)

(13) 總監府事務分掌規程 (1907年)

(14)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1910年)

(15)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改正 (1943. 44 및 45年)

(16) 道知事分掌規程 (1910年)

(17) 朝鮮統計協會規則 (1935年)

(18) 建國初期의 機構·職制大綱, 官報, 1948. 9. 1

(19) 大韓民國 政府機構의 統計活動 「국제통계」 2권 3호 내무부 통계국 1960.

(20) 統計組織과 現況 概要 「통계월보」 3호 내무부 통계국 4293.

(21) 公報處 등 各部處職制改正 官報, 4283. 3. 31

(22) 政府組織法改正 官報, 4292. 2. 7
(23) 國勢調査委員會規程 官報, 4292. 2. 10
(24) 國勢調査委員會規程중改正 官報, 4292. 9. 23
(25) 國勢調査 委員會 處務規程 통계국, 통계월보 2號 4292.
(26) 法院行政處 各課 所官事項에 관한 件 官報, 4292. 3. 10
(27) 地方行政機關 統計事務 處理規程 官報, 4293. 2. 3
(28) 국제통계 연구위원회 규정 官報, 4293. 2. 5
(29) 統計組織과 現況概要 내무통계국 통계월보, 第3號 4293.
(30) 大韓民國 政府機構의 統計活動 내무부통계국 국제통계 第3號 4293.
(31) 우리나라의 統計機構의 整備強化와 經濟開發計劃 통계정보, 第3卷, 第1號 4294.
(32) 經濟企劃院 職制 官報, 4294, 7. 22
(33) 國勢調査委員會規程中改正 官報, 4294. 8. 10
(34) 經濟企劃院 및 調査統計局 職制改編 등, 官報, 1963. 12. 16～1971. 5 24(統計委員會 規程改正包含)
(35) 調査統計局 組職變遷(1945～1990) 調査統計局 基準課 1990. 7
(36) 財團法人 大韓統計協會定款, 1981. 12. 23
(37) 統計局의 經濟企劃院 編入「통계정보」卷頭辭 3권 6.7호 경제기획원 통계국 4294.
(38) 貞婦組織法改正法律, 官報 4288. 2. 7
(39) 內務部職制規程中改正, 官報 4290. 6. 24
(40)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官報 4294. 7. 22
(41) 經濟企劃院職制中改正, 官報 1967. 1. 9
(42) 調査統計局職制改正, 官報 1967. 1. 9
(43) 조사통계국직제개정, 官報 1970. 2. 27
1972. 2. 15, 1973. 11. 14, 1975. 8. 14
1978. 3. 4, 1978. 9. 23, 1979. 4. 6,
1980. 7. 1, 1983. 10. 7

(44) 경제기획원직제개정령, 관보 1981. 11. 2
(45) 統計委員會規程改正, 관보 1962. 7. 9, 1963. 10. 26, 1964. 3. 11, 1966. 5. 2, 1967. 2. 16, 1968. 8. 3, 1969. 12. 5, 1976. 5. 8, 1985. 5. 4
(46) 직제 및 정원표, 통계청 1990. 12
(47) 諸外國의 統計制度,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4
(48) 諸外國의 統計組織과 法規, 內務部 統計局 1959. 7
(49) 諸外國의 統計組織과 法規, 內務部 國勢調査委員會 事務局 1959
(50) 카나다의 統計制度 및 統計의 活用, 經濟企劃院 統計調査局 1985. 11
(51) 주요국제통계기구의 통계활동, 조사통계국 1988
(52) 主要國의 統計組織, 調査統計局 1988
(53) 主要國의 統計組織(II), 調査統計局 1988
(54) 日本の統計訓練制度 日本總務廳 統計研究所 1988
(55) 國內產業動向 把握을 위한 統計體制 改善方案, 產業研究所 1985. 10

Ⅳ. 戶口, 人口, 勞動

(1) 新羅帳籍(AD720경), 韓國史大系, 1975
(2) 國寶, 戶籍으로 본 高麗者의 社會構造(韓國史研究, 第16卷), 許興植 1977.
(3) 戶口總數(正祖 13年, 1789年) 서울大學校 古典叢書, 1971
(4) 朝鮮王朝時代人口推定에 관한一試論(서울大學校「東亞文化」第14輯), 權泰煥 愼鏞廈, 1977
(5) 增補文獻備考(戶口考), 1908
(6) 萬國政表(土地 및 人口) 開國 494年(1885)
(7) 戶口調査規則 및 細則(建陽元年 : 1896)
(8) 民籍法執行心得(隆熙 3年 : 1909)
(9) 韓國戶口表(政府財政顧問本部) (1907)

(10) 民籍統計表(內務警務局編) 隆熙4年 (1910)

(11) 現在人口, 朝鮮人, 日本人別 性別比例(1916～1922年)

(12) 現在戶口, 道別 (1911～1924年)

(13) 現在人口統計 (1910～1925年)

(14) 現在戶口, 道別 (1926～1937年)

(15) 現在戶口, 職業別 (1935～1937年)

(16) 人口調査表

(17) 戶口調査規程(1922年)

(18) 國勢調査에 關한 法律

(19) 朝鮮에 있어서 國勢調査에 關한 件 (1920年)

(20) 國勢調査令 (1918年)

(21) 國勢調査施行令 (1918年)

(22) 國勢調査規則 (1919年)

(23) 國勢調査規則改正 (1919年)

(24) 大正14年簡易國勢調査에 關한 件 (1925年)

(25) 大正14年國勢調査施行令 (1925)

(26) 大正14年簡易國勢調査特別地區調査에 關한 件 (1925年)

(27) 大正14年簡易國勢調査結果表目次 (1925)

〈附 道別 地帶 및 人口表, 調査票, 國勢調査員徽章〉

(28) 昭和5年朝鮮國勢調査施行規則 (1930)

(29) 昭和10年國勢調査施行令 (1935)

(30) 昭和10年國勢調査施行規則 (1935)

(31) 昭和15年國勢調査施行令 (1940)

(32) 昭和15年國勢調査施行規則 (1940)

(33) 昭和19年人口調査規則 (1944)

(34)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目次 (1930)

〈附 面積, 世帶 및 人口, 府部 및 郡部別人口, 職業分類表, 申告書用紙 國勢調査紀念徽 章圖〉

(35) 昭和10年 朝鮮國勢調査報告書目次

〈附 面積, 世帶 및 人口(道別), 徽章圖, 申告書用紙〉

(36) 昭和15年 國勢調査報告書目次 (1940)

〈附 人口 및 世帶, 申告書用紙〉

(37) 昭和19年 人口調査目次(1944)

〈附 道別人口, 調査票用紙〉

(38) 昭和14年臨時國勢調査施行令 (1939)

(39) 昭和14年臨時國勢調査施行規則 (1939)

(40) 人口統計調査에 關한 件 (統計例規)

(41) 統計小票規程 (訓令 第16號 및 第31號)

(42) 朝鮮人口動態調査規則

(43)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令

(44)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規則

(45) 朝鮮勞動統計調査施行規則

(46) 朝鮮國勢調査評議會規程 (1918年 6月 22日)

(47) 昭和14年國民職業能力申告令 (1939)

(48) 昭和14年國民職業能力申告令規則 (1939)

(49) 4280年 國民登錄에 對하여 (1947)

〈附 登錄用紙〉

(50) 4280年 國民登錄結果表目次 (1947)

〈附 南韓人口, 地域別人口, 各歲別人口〉

(51) 昭和 5年 出生, 死亡, 結婚, 離婚, 配偶數 (1921年~1930年)

(52) 昭和 7年 出生, 死亡, 結婚, 離婚, 配偶數 (1923年~1932年)

(53) 昭和 8年 出生, 死亡, 結婚, 離婚, 配偶數 (1924年~1933年)

(54) 昭和 9年 出生, 死亡, 結婚, 離婚, 配偶數 (1925年~1934年)

(55) 昭和 10年 出生, 死亡, 結婚, 離婚, 配偶數 (1926年~1935年)

(56) 昭和 11年 出生, 死亡, 結婚, 離婚, 配偶數 (1927年~1936年)

(57) 昭和 12年 出生, 死亡, 結婚, 離婚, 配偶數 (1933年~1937年)

(58) 昭和 13年 人口動態年報目次 및 總覽表 (1938)
(59) 昭和 16年 人口動態年報目次 및 總覽表 (1941)
(60) 昭和 17年 人口動態年報目次 및 總覽表 (1942)
(61) 人口調査結果報告(其一) 朝鮮總督府 1944. 5. 1
(62) 南朝鮮人口動態統計目次 및 統計 (1946年)
(63) 우리나라의 人口動態統計調査의 過去와 現在
(64) 美軍政時代人口動態 (調査規則 및 調査票)
(65) 昭和 16年 勞動技術統計報告書目次 및 統計 (1941)
(66) 昭和 17年 勞動技術統計報告書目次 및 統計 (1942)
〈附 事業票, 勞務票, 技術票用紙〉
(67) 昭和 17年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朝鮮總督府 (1942)
(68) 昭和 18年 〃 〃 〃 〃 (1943)
(69) 昭和 20年 勤勞統計調査規則 (1945)
(70) 朝鮮에 있어서 失業調査 (1935, 36年)
(71) 朝鮮에 있어서 工場 및 從業者數 (1937年)
(72) 勞力所在調査 (1939年)
(73) 戶口調査規程 (內務部令) 官報, 4292. 9. 1
(74) 韓國人口統計問題 (韓凡錫)「統計月報」創刊號 公報處 統計局 4282
(75) 第1回 總人口調査 關係法令 및 規程, 公報處 統計局 統計月報 4282, 2號
(76) 第1回 總人口調査關係諸規則(13種) 官報 4282, 2. 15
(77) 總人口調査는 어떻게 進行되고 있나 統計局 統計月報 4282, 4호(6月)
(78) 第1回 總人口調査 速報 統計局 統計月報 4283. 3月(9호)
(79) 人口調査의 時期問題, 大韓民國의 女多地域 統計月報, 4283, 1
(80)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 및 施行規則, 官報, 4288, 6. 8.
(81) 第1回 簡易總人口調査 標本抽出報告書 內務部 統計局 4288. 9. 1. 현재
(82) 簡易總人口調査結果 確定人口 公告, 官報 4289, 1. 20
(83) 4291年末現在 人口調査概要 內務部統計局 統計月報 4292. 3號
(84) 人口調査의 組織 및 構成(張胤錫)「地方行政」內務部, 4290, 5月號

(85) 國勢調査令 (國務院令, 91) 內務部 統計局 統計月報 4293. 8號
(86) 國勢調査關係法令 내무부 통계국, 통계월보 4293. 3號
(87) 國勢調査準備事業 (附 國勢調査委員會處務規程, 委員會規程 第1號 4293, 4. 1) (崔仁圭)「통계월보」4292. 2 내무부 통계국
(88) 國勢調査準備業務「통계월보」7호 내무부 통계국 4293
(89) 人口의 破裂(金廷換)「국제통계」2권 1호 내무부 통계국 4293.
(90) 人口,「통계연감」(第7回) 내무부 통계국 4293
(91) 韓國統計小史(鄭洋植)「통계월보」2호 내무부 통계국 4293.
(92) 1960年度 人口調査의 槪要(張胤錫)「통계정보」3권 5호 내무부 통계국 4294.
(93) 韓國의 人口統計(李朝時代以前 : 趙璐濟)「통계청」3권 6, 7호 경제기획원 통계국 4294.
(94) 韓國人口統計에 관한 檢討(朴在彬)「韓國統計月報」1962. 1, 2호 경제기획원 통계국
(95) 人口 및 農業國勢調査 解說「통계월보」8호 내무부 통계국 4293.
(96) 人口 및 住宅센서스 速報「통계월보」3권 2호 내무부 통계국 4294.
(97) 人口「센서스」의 事後調査에 대한 提案「통계정보」3권 1호 내무부 통계국 4294.
(98) 未來의 韓國人口 推計「통계정보」3권 1호 내무부 통계국 4294.
(99) 1960 人口住宅國勢調査 速報抽出集計結果 經濟企劃院 1962. 7. 16
(100) 1960 人口住宅國勢調査報告(全數集計結果) 經濟企劃院 1963. 11. 23.
(101) 韓國의 人的資源「통계월보」3호 내무부 통계국 4293.
(102) 國勢調査의 由來와 意義(권혁태) 「통계월보」 1호 내무부 통계국 4293.
(103) 4292年度 人口住宅 試驗調査結果 評價報告 내무부 통계국「통계월보」1號 4293.
(104) 國勢調査 調査區 設定要綱 내무부 통계국, 통계월보 7號 4293.
(105) 國勢調査의 趣旨와 그 內容(兪尙根) 統計月報 第6號 4293.

(106) 國勢調査 速報로 본 人口現象(朴在彬) 통계정보 第5號 4294.
(107) 1960年 人口센서스 概要, 經濟企劃院
(108) 1970年 총인구 및 주택조사 개요, 경제기획원
(109)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10) 人口住宅 센서스 製表過程, 통계정보 5號 4294.
(111) 人口動態調査의 主要概況「統計月報」創刊號 內務部 統計局 4291. 3
(112) 우리나라 人口動態統計調査의 過去와 現在「統計月報」(第9號) 公報處 統計局 4283. 1
(113) 人口動態調査關係法令·規則 「統計月報」 (第9號) 公報處 統計局 4283. 1
(114) 人口動態調査 申告書 改正, 官報 4287. 1. 9
(115) 人口動態調査令中改正, 官報(筆寫) 4283. 6. 8
(116) 最近 世界人口動態考察「국제통계」1권 5호 내무부 통계국 4292.
(117) 人口推計 내무부통계국 통계월보 2號 4291.
(118) 韓人의 死亡과 死因에 關한 統計學的 考察(朴在彬)「통계정보」3권 6, 7호 경제기획원 통계국 1961.
(119) 인구동태통계(4290년도 월별인구동태건수)「통계월보」2호 내무부 통계국, 4291
(120) 疾病統計「통계월보」8호 公報處 統計局 4283.
(121) 六.二五事變 被殺者 名簿 公報處 統計局 4285. 3. 31
(122) 六.二五事變 被拉者 名單 公報處 統計局 4285. 11. 2.
(123) 六.二五動亂被害調査結果 統計年鑑 創刊號 및 第2回, 統計局
(124) 出生死亡資料上의 誤差와 그 修正方法(金南一) 1986.
(125) 南朝鮮産業勞動力及 賃金調査, 庶務處 統計署 1946. 11
(126) 勞動力調査「통계월보」第1號(3月) 內務部 統計局 4291.
(127) 勞動力調査의 概要「통계월보」第2號 內務部 統計局 4291.
(128) 韓國技術系人的資源調査報告書(就業現況)經濟企劃院, 1961
(129) 就業技術系 人的資源調査報告(結果表) 經濟企劃院 1963年度

(130) 就業技術系 人的資源調査報告(結果分析) 經濟企劃院 1963年度
(131) 1975年 經濟活動人口調査結果報告書 調査統計局 1975. 10.
(132) 人口動態調査規則, 官報 1962. 11. 1
(133) 人口動態調査規則改正, 官報 1964. 4. 16, 1968. 6. 8
(134) 인구동태조사규칙개정, 官報 1971. 3. 11, 1976. 6. 29
(135) 한국의 인구동태, 조사통계국 1964
(136) 韓國의 人口動態統計, 調査統計局 1965
(137) 經濟活動人口調査規程, 官報 1962. 9. 19
(138) 經濟活動人口調査規程改正, 官報 1968. 6. 8, 1971. 3. 8, 1977. 11. 3
(139) 특별고용통계조사보고(1974) 조사통계국 1976. 12
(140) 사업체노동실태조사규칙, 관보 1969. 3. 2
(141) 사업체노동실태규칙개정, 관보 1975. 5. 31, 1977. 1. 21, 1981. 4. 8
(142)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관보 1975. 5. 31, 1981. 4. 8
(143) 매월노동통계조사규칙개정, 관보 1977. 1. 21
(144)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관보 1969. 3. 12
(145)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개정, 관보 1975. 5. 3, 1977. 1, 21, 1981 4. 8
(146) 노동이동조사시행규칙, 관보 1969. 3. 12
(147) 1983年 公務員센서스 실시계획서, 관보 1983. 3. 19
(148)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관보 1970. 6. 13
(149)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관보 1977. 11. 3
(150) 1978~79년 한국인의 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151) 韓國人의 標準生命表,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90. 2
(152) 新規人力採用動態 및 展望調査, 韓國經營者總協會 1986. 6
(153) 雇傭構造統計調査報告書(1989), 調査統計局 1990. 11
(154) 雇傭構造統計調査報告書(1983), 調査統計局 1984. 11
(155) 雇傭構造統計調査報告書(1974), 調査統計局 1976. 12
(156) 經濟活動人口年報 1989.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57) 勞動力關係 主要統計資料(발췌)
(158) 高麗社會史硏究, 許興植 1981.
(159) 朝鮮王朝戶籍의 基礎的硏究, 韓榮國 1985, 韓國史學6集
(160) 民籍法, 大韓帝國 1090, 法律8號 韓國中央農會報3卷4號
(161) 日本古代籍帳의 硏究 岸俊男 1983(3刷)
(162) 朝鮮の 人口現象, 朝鮮總督府官房 文書課(善生永助) 1927.
(163) 朝鮮の 人口硏究 善生永助 1925.
(164) 朝鮮の 人口問題 善生永助(總督府 官房文書課) 1935.
(165)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槪要 1943.
(166)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解說集 1943.
(167)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人口綜合分析報告書」調査統計局, 1989.
(168) 韓國人口增加分析, 石南國, 勁草書房 1972.
(169) 韓國人의 死亡率과 死因에 관한 硏究, 朴在彬「통계연보」(經濟企劃院) 1963.
(170) 우리나라 死亡原因別 死亡樣態, 金日炫 1987.
(171) 1955－75 韓國人口推計, 김연, 1960.
(172) 韓國人口推計(1960－1986), 調査統計局 1970.
(173) 우리나라人口의 推計(1960－2040) 金大泳, 韓國開發硏究院 1975.
(174) 大韓民國人口推計(1960－80) 최인현 1963.
(175) Population Status Report : Korea, 홍사원 韓國開發硏究院 1978.
(176) 人口推計(1976－2050), 調査統計局 1981.
(177) 人口推計(1985－2023), 調査統計局 1986.
(178) 人口動態現況과 將來人口趨移, 調査統計局 1988.
(179) 장래인구추이, 통계청 1991.
(180) Estimation of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Mot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Coale, Ansley J, Leejay Cho, and Noreen Goldman 1980.
(181) Model Life Tables for Developing Countries, UN 1982.

(182) An Abridged Life Ta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Koh Kap-Suk and Kim Il-Hyun 1964.

(183) 總人口調査, 1960, 1966, 1970, 1975, 1980 및 1985年度.

(184) 韓國의 人口成長推移와 展望, 金日炫,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185) 人口動態統計改善事業報告書, 人口 및 家族計劃研究所, 1981.

(186) 人口動態 特別調査實施計劃,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7.

(187) 人口動態申告 및 統計調査制度의 改善을 위한 改革方向의 研究 신윤재 1987.

(188) 人口動態調査改善을 위한 方法論的考察, 韓國人口學會 1989.

(189) 韓國人의 死亡者構造分析 李三植 韓國人口學會 1990.

(190) 死亡原因統計年報 1982-89各年度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1) 최근 한국인의 死亡者 傾向에 관한 考察, 金駉舜·李東宇 1969.

Ⅴ. 土地, 田制, 農林水產

(1) 高麗時代의 量田制(東方學兵 제16집) 延世大學校 1975

(2) 土地調査法 (隆熙 4年 : 1910)

(3)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事務分掌規程 (1910年)

(4) 土地調査令 (1912年)

(5) 朝鮮林野調査令 (1918年)

(6) 大正8年 水產業戶口調査 (1919年)

(7) 農業者戶口調査 (1929, 30, 31, 33, 34, 35, 36, 37, 38年)

(8) 耕地面積別農家戶數調査 (1938年)

(9) 耕地面積 (1933, 35年)

(10) 特用作物實收高 (1938年)

(11) 水產額調査 (1938年)

(12) 水產業者戶口調査 (1929~1937年)

(13) 水產製造高 (1936年)

(14) 畜産物産額調査 (1936, 38年)
(15) 肥料消費調査 (1930年)
(16)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Agrica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South Korea, UNKRA-UNFAO 1954
(17) 農業센서스 研究資料,「調査日報」韓國銀行 1957. 7月, 8月, 10月
(18) FAO에서 勸告한 1960年 世界農業센서스計劃「調査月報」韓國銀行 1959年 5月
(19) 農業調査準備狀況報告(ECAFE 地域)「국제통계」4293. 2권7호
(20) 産業增産 諸計劃, 내무부 통계국 통계월보 1960. 2號
(21) 農水産統計(申潤)「韓國農政 40年史〈上〉」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22) 農業센서스施行規則, 官報 1968. 12. 13
(23) 농업센서스시행규칙개정, 관보 1969. 8. 16, 1971. 11. 13, 1976. 10. 30
(24) 農家經濟 및 生産物生産費調査規則, 官報 1964. 5. 26
(25)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규칙, 관보 1977. 1. 21
(26) 식량작물 생산조사규칙, 관보 1969. 8. 16
(27) 식량작물 생산조사규칙개정, 관보 1971. 11. 13, 1976. 10. 30
(28) 農業基本統計調査規則, 관보 1968. 12. 4
(29) 농업기본통계조사규칙개정, 관보 1969. 8. 16, 1971. 11. 13, 1976. 10. 30
(30) 가축통계조사규칙, 관보 1977. 1. 20
(31) 어업센서스시행규칙, 관보 1969. 8. 25
(32) 어업센서스시행규칙개정, 관보 1977. 7. 7
(33) 어업생산고조사규칙, 관보 1971. 2. 9
(34) 어업생산고조사규칙개정, 관보 1977. 2. 17, 1978. 7. 7, 1985. 12. 6
(35) 農村水産業 主要統計 時系例 資料
(36) 高麗時代의 量田制, 金容燮, 延世大學校「東方學志」第16輯, 1975.
(37)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
(38) 量案의 研究(上) 서울大, 史學研究 7集, 金容燮, 1960.

(39) 三政圖說, 趙 汶, 1884.
(40) 三政厘整節目, 趙斗淳 1865.
(41) 農林水產古文獻備要, 金榮鎭 1982.
(42) 太常菜園靑根田新定量案, 奉常寺 1782.
(43) 漣川東道芝沙洞田畓量案, 1854.
(44) 改量後各面田畓量案(江華), 1864.
(45) 田畓量案(淑大所藏)
(46) 京畿牧場量案, 內藏院 1895.
(47) 田制詳定所遵守條畫, 戶曹 1644.
(48) 朝鮮後期의 貢物貿納制, 德成外志子, 歷史學報 113輯. 1987.
(49)「韓國農業經濟史硏究」, 朱奉圭, 先進文化社, 1979.
(50)「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厦, 韓國硏究院, 1979.
(51) "日帝下의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연구", 강영심,「韓國學報」제 33호
(52)「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5.
(53)「米穀生產費論」, 安仁燦, 一潮閣, 1986.
(54) 韓國農政四十年史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9. 10.
(55) 農政史關係資料集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8. 8.
(56) 農政改革史硏究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9. 12.
(57) 農業統計樣式改正의 件, 農商工部 1909, 韓國中央農協報 3卷 10號
(58) 農業統計에 關한 件, 農商工部 1908, 韓國中央農會報 2卷6號
(59) 耕地面積調, 農商工部 1912. 朝鮮農會報 8卷12號
(60) 土地建物所有權證明規則, 大韓帝國 1908, 韓國中央農會報2－7
(61) 地稅에 關한 件, 大韓帝國 1908, 韓國中央農會報 2－7
(62) 土地調査法, 度支部 1910, 官報 4,765護 隆熙 4年 8月 24日.
(63)「韓國土地農產調査報告」, 本田奉介外, 農商務省, 1906.
(64) 度基衡 및 施行規則. 農商工部, 韓國中央農會報 3－9, 1909.

(65) 韓國度量衡にに就て, 三宅貞太郎, 韓國中央農會報 3－11. 1908.
(66)「韓國中央農會報」, 韓國中央農會, 1908. 6, 1909. 7.
(67)「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朝鮮農會, 1930.
(68)「1926(大正十五)年度 農家經濟調査書」, 慶尙北道農會, 1926.
(69)「農家經濟狀態調査書」, 平安北道 理財課, 1927.
(70)「生活狀態調査」其の1 水原郡 1929, 其の2 濟州道 1929, 其の3 江陵部 1931, 其の4 平壤府 1932, 其の7 慶州郡, 朝鮮總督府. 1934.
(71)「全朝畓田賣買價格及收益調」, 朝鮮殖產銀行, 第1回～16回, 1929～1944.
(72)「農家經濟調査」(全羅南道の分) 1932, (京畿道の分) 1932, (平安南道の分) 1933, (慶尙南道の分) 1934, (咸鏡南道の分) 1934, 朝鮮農會
(73)「農家經濟概況調査 (自作兼小作農家 및 小作農家, 1933～38年)」,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村振興課, 1940.
(74)「優良營農調査書」, 朝鮮學會, 1936, 1937.
(75)「數字朝鮮研究」, 李始星, 金世鎔, 世光社, 1933.
(76)「朝鮮にお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朝鮮總督府 農林局, 1934.
(77)「朝鮮小作年報(1, 2집)」, 朝鮮總督府. 1937, 1938.
(78)「朝鮮農地關係彙報(제1집)」, 朝鮮總督府. 1939.
(79)「朝鮮農地年報」, 1940.
(80)「朝鮮の農業事情」, 朝鮮總督府 殖產局, 各年版
(81)「朝鮮米の研究」, 菱本長次, 千倉書房, 1938.
(82)「朝鮮の農業機構」, 印貞植, 白揚社, 1940.
(83)「朝鮮の農業」, 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84)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發達編) 朝鮮農會 1940.
(85)「朝鮮米穀事情(4)」, 石塚峻, 朝鮮農會報, 1938. 1.
(86)「小作農民に關する調査」, 朝鮮總督府 殖產局, 1928.
(87)「小作慣行調査書」, 全羅北道 內務部, 1923.

(88)「小作制度並農家經濟に關する調査書」, 全羅北道, 1922.
(89)「京畿道農村社會事情」, 京畿道 內務部 社會課, 1924.
(90)「朝鮮の小作慣習」, 朝鮮總督府, 1929.
(91)「朝鮮米關係資料」, 農林省米穀局, 1937.
(92)「米穀經濟の研究(2)」, 河田嗣郎編, 有斐閣, 1940.
(93)「米價及び米價統制問題」, 八木芳之助, 有斐閣, 1932.
(94)「朝鮮米の進展」, 鮮米協會, 1935.
(95)「朝鮮米穀要覽」, 朝鮮總督府 農林局, 1937.
(96)「朝鮮における米穀政策の變遷」, 石塚峻, 友邦協會, 1983.
(97)「優良營農調査書」, 朝鮮農會, 1937.
(98) 李朝貢納制の研究, 田川孝三 1964.
(99) 朝鮮農政史考, 西鄕靜夫 1937.
(100) 韓國農業技術史, 李殷雄 1983, 正民社刊
(101) 16세기의 量田과 陳田收稅, 李載龔 1987, 韓國史學論叢
(102) 18～19世紀前半と同米, 木, 布, 錢の徵收, 支出と國家財政, 安達義博 1976,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13集
(103)「農林統計の理念」, 近藤康男, 農山漁村文化協會, 1975.
(104)「農業統計發達史」, 原政司, 日本經濟評論社, 1980.
(105)「植民時期朝鮮社會經濟の統計研究」, 村上勝彦外3人, 東京經大學會誌 第136號, 1984.
(106)「農產物の生產費はどう計算するか」, 吉野新立, 博友社, 1980.

Ⅵ. 產業經濟·經營

(1) 會社統計 (1927)
(2) 家內工業統計 (1935)
(3) 市場統計 (1935)
(4) 工產額調査 (1936, 37年)

- 第一卷

  營業種類 및 經營形態에 依하여 區分된 店鋪數, 從業者 및 賣上金額

- 第二卷

  營業種類 및 經營形態에 依하여 區分된 店鋪數, 從業者 및 賣上金額

- 第三卷

  營業種類 및 經營形態에 依하여 區分된 店鋪數, 從業者 및 賣上金額

- 第四卷

  營業種類 및 從業者階級에 依하여 區分된 店鋪數, 從業者의 種類別 賣上金額

- 第五卷

  營業種類, 營業繼續年數 및 企業組織에 依하여 區分된 店鋪數

(5) 生產指數編制要領－試案－「調査月報」韓國銀行 1957. 7月

(6) 新產業生產指數解說「調査月報」韓國銀行 1960. 5月

(7) 產業生產指數의 季節變動修正에 關하여「調査月報」韓國銀行 1960. 9 (14권9호)

(8) 4228年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査槪要「조사월보」韓國銀行 1956. 3

(9) 1963年 鑛工業센서스結果報告書(發刊辭) 경제企劃院 1964. 12

(10) 綜合景氣地標를 보는 방법 韓國銀行

(11) 우리나라 경기예고지표의 편제 韓國銀行

(12) 景氣豫告指標 改編內容 韓國銀行 (1975)

(13) 景氣豫告指標 改編內容 韓國銀行 (1982)

(14) 우리나라 企業經營分析 韓國銀行 (1960－61)

(15) 〃 〃 韓國銀行 (1962)

(16) 〃 〃 韓國銀行 (1985, 1986, 1988)

(17) 우리나라 企業原價分析 韓國銀行 (1962, 1965)

(18) 鑛工業센서스規則改正, 官報 1968. 6. 8

(19) 광공업센서규칙개정, 관보 1970. 9. 16, 1977. 11. 3

(20) 生產動態調査規則, 官報 1965. 2. 11

(22)생산동태조사규칙개정, 관보 1969. 2. 14, 1969. 9. 16
(23) 鑛工產品物動量統計調査報告書(1982),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4. 9
(24) 產業統計綜合作成體系構築을 위한 硏究, 韓國產業經濟硏究院 1981. 12
(25) 산업생산연보(197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2
(26) 광공업센서스보고서 (시리즈 I, II) (1973), 1975
(27)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71), 경제기획원 1972
(28) 商業센서스施行規則, 官報 1968. 4. 10
(29) 상업센서스시행규칙개정, 관보 1970. 9. 16, 1977. 11. 3
(30)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관보 1975. 9. 27
(31)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1980), 조사통계국 1981. 12
(32) 총사업체조사(1981), 경제기획원 1983. 3
(33) 住宅建設業體가 본 住宅建設景氣展望(1985 3/4. 4/4分期), 韓國住宅銀行 1985. 8
(34) 建設關聯統計의 體系化와 合理的 運營方案, 國土開發院 1989. 12
(35) 에너지統計調査結果報告書, 에너지經濟硏究院 1991. 3
(36) 產業生產年報 (1990), 統計廳 1991. 7
(37)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89) 統計廳 1991. 2
(38) 에너지統計體制改編方案에 관한 硏究, 에너지經濟硏究院 1989. 4
(39) 서비스業統計調査報告書(1990), 統計廳 1991. 7
(40) 建設業統計調査報告書(1989), 調査統計局 1990. 11
(41)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1973), 조사통계국 1974
(42) 1989運輸業統計調査報告書, 調査統計局 1990. 12

Ⅶ. 社會·文化·地域

(1) 社會統計體制에 대한 考察,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2
(2) 韓國의 社會地標(1989, 1990)의 經濟企劃院 計劃統計局
(3) 한국의 사회지표(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4) 保健社會 1988年, 保健社會部 1988. 10

(5) 韓國의 社會指標－試案, 調査統計局 1978. 12

(6) 韓國의 사經濟發展과 社會開發, 大韓商工會議所 1977

(7) 地域統計年報,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8, 1989, 1990年度

(8) 國家發展과 地域均衡(1990年代 地域發展長期構想), 國土開發研究院 1989. 12

(9) 地域統計調整方案研究, 國土開發研究院, 1986. 12

(10) 地域經濟白書 1991年度, 慶尙南道 1991. 9

(11) 地方化時代의 仁川地域經濟社會開發方向, 仁川商工會議所 1990. 5

(12) 小地域統計地圖(1985인구 및 住宅센서스 結果),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90. 10

(13) 行政區域別統計地圖,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8. 12

(14) 地域所得메뉴얼(연구자료), 統計分析課 1989. 12

Ⅷ. 家計, 物價, 賃金

(1) 都賣物價指數 (1910～1947年)

(2) 賃金統計 (明治 44年～昭和 4年)

(3) 賃金調査 (昭和 5, 6, 7, 8, 12, 14年)

(4) 物價調査 (昭和 5, 6年)

(5) 物價指數調査(都小賣別) 昭和 12年

(6) 小賣物價調査 (昭和 7, 8, 9, 10, 13年)

(7) 工場賃金調査 (昭和 10年)

(8) 家計調査要綱 (昭和 18年)

(9) 生計費調査「統計月報」4283. 3月(第9號) 公報處 統計局

(10) 物價綜攬(1945. 8～1949. 4) 1949. 6. 25 朝鮮銀行

(11) 都賣物價統計改編에 관한 解說「조사월보」韓銀 1955. 9月

(12) 全國都賣物價暫定指數發表에 際하여「조사월보」韓銀 1957. 3月

(13) 消費者物價指數作成에 관한 案「조사월보」韓銀 1957. 4月

(14) 鑛業 및 製造業給與統計解說「조사월보」韓銀 1957. 3月

(15) 給與統計改編에 關하여「조사월보」韓銀 1960. 3月

(16) 서울市 家計調査「조사월보」한국은행 1960. 1月(14권 1호)

(17) 서울房貰의 實態「조사월보」한국은행 1958. 4月

(18) 農家經濟調査方法改編要綱「조사월보」한국은행 1960. 4月(14권 4호)

(19) 小賣物價調査概要「통계월보」내무부 통계국 4291. 2號

(20) 家計調査規則, 官報 1963. 4. 8

(21) 家計調査規則改正, 官報 1968. 6. 8

(22) 가계조사규칙개정, 관보 1970. 9. 16

(23) 도시가계조사개요 경제기획원조사 통계국, 1971.

(24) 도시가계조사규칙개정, 관보 1977. 11. 3

(25) 전국소비자물가조사시행규칙개정, 관보 1970. 9. 16, 1977. 11. 3

(26)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査施行規則, 官報 1965. 8. 13

(27)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시행규칙개정, 관보 1970. 9. 16, 1977. 11. 3

(28) 都賣物價指數 概要(1975. 80, 85年 基準), 한국은행

(29) 輸出入物價指數(1980. 85年 基準 指數), 한국은행

Ⅸ. 國民經濟, 金融財政 對外關係

(1) 朝鮮貿易概況 (昭和 11, 12年)

(2) 貿易統計 (1910～1947年)

(3) 財政金融 (1911～1944年)

(4) 金融統計 (昭和 12, 14年)

(5) 南朝鮮金融實情 (1945～1947年)

(6) 國民所得推計 (1937～1946年)

(7) 國民所得 推計에 대한 韓美間의 異見, 地方行政, 1957. 7月

(8) GNP 推計의 經過 經濟企劃院

(9) 國民所得推計의 基準年(1980)改編, 韓國銀行 1983. 12
(10) 國民計定體系의 改正論議 韓國銀行 1987. 12
(11) SNA生産計定 統計便覽 韓國銀行 1989. 12
(12) 産業關聯表 作成 槪要 韓國銀行
(13) 1980年表의 作成 經緯와 特徵 韓國銀行
(14) 1985年 商業聯關表作成上의 諸特徵 韓國銀行
(15) 1986年 産業聯關表(延長表)作成槪要 韓國銀行 1988. 12
(16) 1987年 産業聯關表(延長表)作成 槪要 韓國銀行 1989. 12
(17) 金融槪觀表의 意義와 作成方法 한국은행
(18) 通貨信用 規制方式 및 通貨金融統計의 變遷 한국은행
(19) 現行通貨指標의 問題点과 改善方案 한국은행
(20) 資金循環設定의 槪要 한국은행
(21) 資金循環設定의 발전과 제개념 한국은행
(22) 資金計定體系의 沿革과 槪念, 한국은행
(23) 韓國金融三十年史, 大韓金融團 1978. 12
(24) 국부통계조사시행규칙, 관보 1969. 5. 31
(25) 1985年 産業聯關表作成報告, 韓國銀行 1988
(26) 국민계정(1970~80), 한국은행 1987
(27) 1985年 景氣統計關聯資料集(內部資料), 調査統計局 1986. 6
(28) 國富統計調査解說, 韓國銀行 1977. 8
(29) 國富統計調査便覽, 調査統計局 1973. 6
(30) 國富統計調査(1987), 調査統計局 1989
(31) 國際收支統計解說, 韓國銀行 1989. 4
(32) 세계속의 한국경제, 한국은행 1991. 6
(33) 主要海外經濟地標(1991),統計廳 1991. 8
(34) 貿易便覽(1982), 韓國貿易協會 1982. 6
(35) 金融自由化, 國際化에 따른 金融政策의 方向, 韓國經濟硏究院 1991. 5
(36) 國際化時代의 海外投資戰略, 産業硏究院 1989. 11

(37) 國際經濟(1981年度), 國際經濟研究院 1981. 9
(38) 第7次 ESCAP統計委員會參加報告(1987. 11. 24～11. 30), 調査統計局
(39) 第12次FAO亞太地域農業統計委員會 會議參加報告書(1988. 8. 10～8. 16), 農林水產部 金泰東 外
(40) 第5次 韓國·日本·中國 및 ASEAN統計局長會議 參席結果報告書(1990. 1. 22～1. 27),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李康雨 外
(41) EC統計局(EUROSTAT) 研修結果報告 1990. 8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金相植
(42) 주요국제기구의 통계활동, 조사통계국 1988
(43) 世界經濟動向主要指標, 韓國開發研究院 1991. 1. 25
(44) 季刊北方地域經濟, 產業研究院 1991. 3
(45) 世界經濟動向, 產業研究院 1991. 9
(46) 韓國經濟圖表, 韓國銀行調査部 1954.
(47) 韓國의 國民所得(1953～63), 韓國銀行調査部 李相浩 1965.
(48) 國民經濟體系의 改正論議, 韓國銀行 1987.
(49) 우리나라의 通貨統計解說, 韓國銀行 1988.
(50) 우리나라의 資金循環, 韓國銀行 1987.
(51) 韓國貿易史, 韓國貿易協會 1972. 7.
(52) 貿易年鑑, 韓國貿易協會 1954.
(53) 韓國의 國際收支, 韓國銀行 1975. 12.
(54) 對外經濟便覽 1989, 經濟企劃院 1989. 8.
(55) 韓國產業의 國際化와 國際分業 韓國開發研究院 1987. 4.
(56) 經濟先進化를 위한 基本構想, 經濟構造調整諮問會議 1988.
(57)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總括報告書) 韓國開發研究院 1985. 9.
(58) 經濟發展과 社會開發, 大韓商工會議所 1979.

X . 刊行物·分類, 資料處理

(1) 明治 40年 第1回統監府統計年報目次 (217種)

(2) 明治 43年 第3回統監府統計年報目次 (399種)

(3) 大正元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目次 (569種)

(4) 大正8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目次 (616種)

(5) 昭和元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目次 (828種)

(6) 昭和7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目次 (850種)

(7) 昭和12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目次 (464種)

(8) 昭和16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目次 (408種)

(9) 1943年 南朝鮮過渡政府朝鮮統計年鑑目次 (380種)

(10) 調査月報(1930～1939), 朝鮮總督府 1930. 5～1939. 12

(11) 韓國統計年鑑 (1952)

4285	創刊號	公報處 統計局	(1954)
4286	제2호	내무부 통계국	(1955)
(1957)			
4290	제3호	〃	(1957)
4291	제4호	〃	
4292	제5호	〃	
4293	제6호	〃	
(1961)			
4294	제7호	〃	

(12) 統計月報 1－9號 公報處 統計局 통계월보 內務部 統計局

(13) 통계월보 經濟企劃院 統計局

(14) 國際統計 1－8號 內務部 統計局

(15) 통계정보 1－5號 內務部 統計局

統計情報 6－7號 經濟企劃院 統計局

(16) 한국은행 조사월보 1958. 1～12호

1959. 1～12호

(17) 植山銀行 調査月報 1949. 1～3호, 6～7호

1950. 1～4호

1952. 6, 7호

1953. 6호

(18)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54. 1, 2호

1955. 4～10호

1956. 11～20호

1957. 21～24호

(19) 産業分類(국세조사용) 1960 내무부 통계국

(20) 職業分類(국세조사용) 1960 내무부 통계국

(21) 新國際標準産業分類「국제통계」4293. 2권 2호 내무부 통계국

(22) 教育統計의 國際的 標準化에 관한 勸告(第10次 유네스코總會)「국제총회」4293. 2권1호 내무부 통계국

(23) 疾病 傷害 및 死因統計分類規程, 官報 4288. 12. 26

(24) 新編貿易統計에 관한 解說「조사월보」1959. 4月 한국은행 조사부

(25) 統計刊行物調査「統計月報」1962. 6號 經濟企劃院

(26) 통계안내서 1978. 經濟企劃院

(27) 장서목록(1982, 1983, 1985), 국립중앙도서관

(28) 藏書目錄, 日本總理府 統計局, 1972

(29) 藏書目錄(著者名索引), 日本總理府 統計局, 1979

(30) 統計界(第2號), 大韓統計協會 1971. 12

(31) 표준통계용어정의(제1집), 경제기획원 1975. 10

(32) 통계용어사전, 한국통계학회편, 자유아카데미 1975. 10

(33) 統計刊行物案內,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9

(34) 統計刊行物案內, 統計廳 1991

(35) 統計刊行物業務便覽,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9. 4

(36) 統計目錄, 調査統計局, 1985, 1988, 1990. 6, 1991. 11

(37) IBM 機械와 資料處理, 통계정보 4294, 2號
(38) 國家社會電算化中長期計劃(案), 電算網調整委員會・韓國電算院 1988. 5
(39) 통계정보시스템(이용법해설), 통계청 1991. 4
(40) 朝鮮銀行月報 1916 各月號, 1940年 各月號
(41) 朝鮮經濟年報 1939年,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42) 朝鮮經濟年報. 朝鮮銀行. 1948.
(43) 朝鮮經濟統計要覽, 조선경제통신사
(44) 統計年報, 京城商工會議所. 1928年, 1941年.
(45) 大韓民國統計月報 1949年 各月號, 公報處統計局
(46) 朝鮮統計年鑑, 南朝鮮過渡政府. 1948.
(47) 調査月報 1949年 3月號, 韓國銀行
(48) 朝鮮統計時報 朝鮮統計協會, 1936. 3月～1939. 10月.
(49) 朝鮮總督府 調査月報 各年·月號
(50) 韓國年鑑, 영남일보사. 1955.
(51) 朝鮮年鑑, 조선통신사. 1948.
(52) 統計年報 韓國統監府 1907, 1910.
(53) 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11, 1912, 1919, 1926, 1930, 1937, 1943.
(54) 朝鮮農會報 朝鮮農會 1908～1942.
(55)「朝鮮農會報」, 朝鮮農會, 1907～1942. 12. 각호
(56)「朝鮮研究文獻目錄(1868～1945)」, 末松保知編,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所屬 東洋文獻センター, 1970.
(57)「朝鮮研究文獻誌(明治·大正篇)」, 櫻井義之, 龍溪書店, 1979.
(58)「統計界」 創刊(1971. 7) 第2號(1971. 12), 第3號(1973. 12) 大韓統計協會
(59)「統計」 第1卷 第1號(1975. 12) 第14卷 第1號(1988. 7) 第14卷 第2號(1988. 12) 第16卷 第2號(1990. 9) 大韓統計協會
(60) 民地關係 機關刊行物 綜合目錄－朝鮮篇－ アジア經濟研究所 1975.
(61) 都市家計報告書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64, 1966, 1970 및 1975.

(62) 農家經濟調査報告 農林部 1963.
(63) 物價年報 經濟企劃院 1969.
(64) 物價綜攬(1945. 8～1949. 4) 朝鮮銀行調査部 1949. 6.
(65) 物價總覽 韓國銀行 1961. 68. 70. 77. 82 및 1987年版

XI. 其 他

(1) 三國史記, 三國遺事
(2) 史記(司馬遷), 漢書(班固), 後漢書(范), 三國志(陣壽), 晋書, 宋史 등
(3) 國譯 韓國誌(露財務部, 190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4) 民族史의 흐름 韓國編輯記者會 1983.
(5) 韓國史大系 三珍社 1975.
(6) 韓國史新論 李基白 1967.
(7) 增補文獻備考 洪鳳漢·朴容大 등 1907(明文堂 1985版)
(8) 韓國古代史探索 郭昌權 1987.
(9) 朝鮮王朝財政史研究, 金玉根 1984.
(10) 經國大典(訂校本)
(11) 講座三國時代史, 李萬烈, 知識産業社 1976.
(12) 高麗時代史, 朴龍雲, 一志社 1988.
(13) 高麗慶源李氏家門의 展開過程, 李萬烈, 韓國學報 第21輯 ; 1980(겨울)
(14) 韓國近代史概論, 國史教材編輯會編, 創文閣 1985.
(15)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鄭奭鍾 一潮閣 1983.
(16) 朝鮮開化史의 諸問題, 李光麟 一潮閣 1986.
(17) 實學研究入門, 歷史學會編 一潮閣 1973.
(18) 李氏朝鮮行政研究 李熙鳳外 高大法律行政論集 1964.
(19) 韓國史講座(Ⅴ)近代篇, 李光麟, 一潮閣 1984.
(20) 韓國社會經濟史研究, 鄭德基, 螢雪出版社 1987.
(21) 大韓帝國官報 1894年 6月～1910年 8月.

(22) 朝鮮總督府官報 1910～1945. 4月.
(23) 美軍政史 Harold Larson外 1945～48.
(24) 美軍政情報報告書(駐韓美軍情報參謀部) 1945～48.
(25) 우리나라 統計의 여명기, 咸萬準「經友」1987. 1月號 經友會
(26) 朝鮮金融事項參考書, 朝鮮總督府 1937年.
(27) 韓國產業經濟十年史 韓國產業銀行 1955. 8.
(28) 北韓法制槪要 法制處, 1991.
(29) 慶支志(正祖 12년 1788, 朴一源), 法制處, 1979.
(30)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大學校 1980.
(31) 奎章閣圖書韓國本圖書解題 V.(史部 2) 서울大學校 1982.
(32) 韓國經濟100年 韓國生產性本部 朴鼎在 1971.
(33) 韓國經濟百年史 經濟評論社 申珏澈編輯 1982.
(34) 韓國經濟史 권병덕 1984.
(35) 韓國經濟論 高承濟 1956.
(36) 韓國經濟論 洪忠植 1965. 3.
(37) 韓國經濟論 李滿基 1984.
(38) 韓國現代史 사계절출판사 프랭크·볼드윈 1982.
(39) 韓國現代史 創作과 批評社 姜萬吉 1987.
(40) 韓國現代史 國史編纂委員會編 1982. 6.
(41) 韓國現代史論 韓國史學會 1987.
(42) 大韓民國史年表(上·下) 國史編纂委員會 1984.
(43) 現代韓國經濟史, 崔龍浩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7. 2.
(44) 韓國現代史, 國史編纂委員會編, 探求堂 1982. 6.
(45) 韓國經濟20年의 回顧와 反省, 大韓商工會議所 1982. 8.
(46) 開發年代의 經濟政策, 經濟企劃院 1982. 12.
(47) 經濟白書 經濟企劃院 1976～'90年版
(48) 韓國財政40年史(II 1968～'87)韓國開發硏究院 1990. 7.
(49) 韓國經濟政策 三十年史·金正濂 1990.

(50) 韓國經濟政策 四十年史 全國經濟人聯合會 1986. 3.
(51) 韓國金融20年史, 大韓金融團 1967.
(52) 韓國銀行10年史, 15年史, 20年史, 25年史, 30年史, 40年史, 韓國銀行
(53) 韓國金融100年 徐光云 創造社 1972.
(54) 朝鮮銀行 40年 金融經濟社 1981.
(55) 韓國年鑑 1964－1970各年度 韓國年鑑編纂會
(56) 經濟年鑑 1955－1960各年度 韓國銀行
(57) 建協四十年史, 大韓建設協會 1987.
(58) 朝興銀行 65年史, 朝興銀行 1962.
(59) 統計學辭典 中山伊知郎 日本經濟新報社 1951.
(60) 統計遍歷私記 森田優三 1980.
(61) 概說日本通史, 古田良一 1942.
(62) 日本歷史概說 川上多助 1944.
(63) 明治維新, 羽仁五郎 1956.
(64) 總理府統計局百年史 資料集成(日本 統計局) 卷1. 總記上
(65) 總理府統計局百年史 資料集成(日本 統計局) 卷2. 人口上

2. 統 計 年 表

1. 解放以前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60만년전~	○ 舊石器時代 : 무리社會	
BC7000경	○ 韓·滿地域에 初期新石器 ; 原始無文土器 ○ 原始氏族社會	
4000경	○ 後期新石器 : 櫛文土器	
	○ 集團意識 原始宗教(天道·神氣觀등)形成	○ 共同體規範, 禁律發生
2500경	○ 初期靑銅器出現	○ 社會分化, 農牧등 經濟生活定着(領域, 豐凶, 分配觀, 象徵·標識·記號出現)
	○ 集團理念(弘益人間등), 統治權威(天符印등)統治機構(神人, 君=酋, 巫師, 伯·主=千등)발생	
	○ 桓雄, 太伯山神壇樹下降監(天孫族 移住)神市時代(天孫·熊·虎族등 氏族聯合) ; 原始人出現	○ 神市·阿斯達의 集團規模 ; 무리 3천
2333	○ 檀君王儉, 立都阿斯達(1500年間 ; 삼국유사, 1028年間 ; 제왕운기), 國號朝鮮, BC2311 平壤城(王儉城)移都	○ 統治機能 ; 風伯·雲師·雨師(天官·將軍), 主命(出納·戶口), 主穀(農牧·財政), 主兵, 主刑, 主病, 主善惡 등 長官(=主)이 360餘事擔當
1300경	○ 王儉, 阿斯達山神이됨, 一說에 末期檀君이 古濊地로가서 扶餘建國(BC1286 ; 東史年表)	
	○ 古朝鮮社會混亂(空位時代, 164年間 : 帝王韻紀)	
	○ 後期靑銅器時代 : 無文土器·支石墓 出現	
800경	○ 韓候奕(혁)의 覇權時代 ; 이무렵부터 中國側 記錄에 韓·貊·追(詩經), 朝鮮(管子), 句驪, 扶餘 및 眞番·沃沮, 高夷·良夷(王會)등 出現	
	○ 初期鐵器時代	
	○ 韓의 進化·分化(主流는 馬韓, 非主流는 眞番→弁·辰韓)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BC320경	○ 中國式「王」號使用 ; 後期鐵器時代	
	○ 對中國접촉활발, 燕攻擊(禮의 만류), 周에 霖파견	
290	○ 燕秦開의 來侵(滿潘汗까지), 燕滅亡(BC 221)	
230경	○ 眞番勢力移動, 王儉城勢力(馬韓系)弱化	○ 衛滿의 千餘人勢力이 農業生産力과 仲介貿易으로 周邊「方數千里」에 「數萬」을 服屬시킴. 官制에 相(大臣), 大夫, 太師, 博士, 將軍, 功曹, 三老統主등
193	○ 衛滿, 政變으로 朝鮮支配, 準王은 金馬로 가서 馬韓의 武康王이 됨	
128	○ 歲君南閭의 對漢交易附和로 漢의 滄海郡設置契機(BC128~126年間)가 됨	○ 歲君南閭의 率衆人口 ; 28萬人
108	○ 朝·漢間 懸案紛爭, 漢使臣의 亂動, 漢軍來侵	
107	○ 朝鮮西方(原眞番地=舊滄海郡地)에 漢四郡設置	○ 樂浪郡 62,812戶, 현도郡 45,006戶, 眞番·臨屯없음
	○ 衛滿朝鮮解體 ; 國內城周邊에 票浪, 東西方에 扶餘, 高句麗, 沃沮와 南方에 辰, 三韓등	○ 濊 : 朝鮮동쪽 2萬戶에 邑君, 三老, 統主, 下戶등 ○ 東沃沮 地方千里, 5千戶에 相使者, 功曹, 주수등
82	○ 眞番·監屯郡廢止 : 2府로 改編	○ 三韓은 辰地方 4천리에 15萬戶, 臣智, 伯長등
59	○ 해모수가 흘승관성(大遼醫州界)에 扶餘聯盟國 ○ 해부루(수군系)가 東海 가섭원에 東扶餘建國	○ 해모수의 從者 100余人 6加(馬加 : 戶口擔當)와 大使등 官職, 부여의 戶數8萬, 領域方可2千里
57	○ 徐耶伐(新羅), 朴赫居世 즉위	○ 辰地方 4천리 72國(100里씩)중 하나
37	○ 卒本扶餘에서 東明(朱蒙), 高句麗建國	○ 方2천리, 3萬戶, 相加, 對盧, 主簿(圖簿담당)등
18	○ 溫祚, 尉禮城에서 百濟建國(BC5, 漢山移都)	
AD 3	○ 高句麗, 國內城으로 천도(尉那岩城 축성)	
9	○ 馬韓, 百濟에게 멸망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5	○ 高句麗, 현도군 고구려현 습취	
30	○ 後漢, 樂浪등 郡縣을 포기하고 候國으로 認定	○「縣國之制」
37	○ 高句麗, 樂浪國습멸	○ AD32新羅6部名稱고치고 17官等級
42	○ 9干의 추대로 金首露王즉위, 6加耶成立	○ 9干은 席僚之長으로 100戶씩 75,000人領率
44	○ 後漢, 樂浪郡을 再設置	
66	○ 百濟와 新羅의 첫戰鬪(蛙山城戰)	○ AD90 新羅, 御史 10名 州·郡廉察
146	○ 高句麗, 요동군西安平공격(낙랑태수처자, 대방령 포살)	○ AD138 新羅, 政事堂 設置
168	○ 高句麗, 後漢의 幽州·幷州공격	○ AD194고구려 진대법시작
205	○ 公孫康, 帶方郡설치	○ 帶方7縣4,900戶(낙랑6현 3,700호, 현도 3현, 3,200호)
242	○ 고구려, 요동서안평공격, 魏관구검, 고구려침범(244)	○ AD249 신라, 南堂(都堂)설치
280	○ 고구려숙신정벌 : 이무렵 백제, 遼西進出(晋平百濟郡)	○ AD260백제 16官等 AD261南堂政治시작
307	○ 新羅, 國號를 鷄林에서 新羅로 함	○ 352, 奈勿王즉위(金氏세습왕권확립)
342	○ 모용황, 고구려침범	
372	○ 고구려, 太學설립 불교수입	○ 373 高句麗, 律令반포
375	○ 백제, 書記지음, 佛教수입(384)	○ 百濟官廳에 點口部(戶口調査), 綢部(財務) 易·曆博士등 둠
427	○ 高句麗, 國都 平壤으로, 갈로맹광장군 龍城점령, 燕王등을 잡아옴(436)	
452	○ 新羅에 불교流入(묵호자) ; 公認은 AD528	
475	○ 백제 國都를 熊津(公州)으로 옮김	
494	○ 扶餘亡 ; 고구려에 흡수	○ 新羅, 郵驛(487), 市場(490)설치 ○ 新羅, 兵部令(최초의 官府)설치(517)
512	○ 신라, 우산국(울릉도)항복시킴	○ 新羅, 律令반포(520)
532	○ 신라, 금관가야합병	○ 高句麗, 籍田制實施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538	○ 百濟, 國都를 사비城(부여)으로 옮김	○ 新羅年號使用(建元元年=536)
545	○ 新羅, 國史편찬	○ 이무렵 신라, 花郎制度 成立
553	○ 新羅, 漢江流域支配, 新州(廣州)설치	
562	○ 新羅, 大加耶合併(가야세력사라짐)	○ 新羅, 各小京에 仕臣을 둠
586	○ 고구려, 國都를 長安城(현평양)으로 천도	
583	○ 신라, 倭의 西邊침공	○ 580, 신라, 調部(납세, 부역담당) 설치
598	○ 고구려, 遼西공격, 隋大軍 고구려내침	○ 651, 新羅執事部 中侍(樞密執政)
631	○ 고구려, 千里長城축성(~646)	任命, 倉部, 理方府등 설치, 理方府格60余條공포(654)
645	○ 唐, 고구려 침범	
660	○ 百濟, 羅·唐에게 사비성 함락	○ 百濟, 5部37郡200余城 760,000戶 (全盛時國都 152,200戶)
668	○ 高句麗, 羅·唐軍에게 평양성 함락	○ 高句麗 5部 76城 696,000호(全盛時國都 210,508戶)
676	○ 安東都護府·熊津都督府를 遼東으로 축출	○ 新羅, 半島內統一, 9州5小京설치 (685)
682	○ 新羅, 國學設置	○ 687, 文武官職級制 실시
699	○ 大祚榮, 계루故地(東弁山)에 震(渤海; 713)建國	○ 713경 발해 국력 地方2천리에 10餘萬戶 ○ 717, 신라, 算學博士를 둠, 天文漏刻博士(749) ○ 727신라, 百姓에게 丁田分給; 이무렵民籍(戶口帳籍)量田制定例化 (民政文書)
732	○ 渤海, 唐의 登州(山東半島)침공	
756	○ 발해, 上京龍泉府로 천도	○ 757, 신라, 官制, 地方制 改編, 律令博士(758)
786	○ 발해, 東京龍原府(玉軍春)로 일시천도	○ 788신라, 讀書出身科(科擧制)실시
820	○ 발해, 5京15府62州(地方5천리); 海東盛國	○ 805신라, 公式會20余條 반포
828	○ 신라, 장보고, 靑海鎭 大使가됨(846)	○ 신라 전성기의 慶州民戶, 178,946戶
892	○ 견훤, 完山(全州)에서 西南都統指揮兵馬로 自立	○ 後百濟建國(AD 900)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894	○ 궁예, 溟州(江陵)에서 將軍으로 自稱	○ 後高句麗建國(松岳에서 ; 901, 904에 國號를 摩震으로 905鐵圓 천도, 911泰封으로 改號 : 調位部(호구, 조세담당)등 官府
918	○ 王建, 諸將臣의 추대로 高麗建國	○ 1991, 고려開城으로 천도 三省, 三司(中樞, 財政), 民官(戶口, 版圖, 貢賦)등 官制, 西京築城
926	○ 滄海멸망	
936	○ 高麗, 後三國統一, 신라(935) 및 후백제(936)멸망	○ 役分田法실시(940)
947	○ 光軍司 30萬 編成	○ 973, 12州牧吏職개정(戶長, 戶正 등)
958	○ 科擧法실시	○ 976, 田柴科制定, 982 中央官制改革(內史 門下省, 御史台省등 995 6部尙倉등)全國을 3京 4都護府 10道로 나눔 4都護 8牧(1018)
992	○ 國子監설치	
993	○ 거란군 내침, 鑄錢주조(996)	
1055	○ 崔冲, 私學을 이르킴	○ 1047, 口分田實施, 1064成籍帳改正
1076	○ 官制 및 兩班田柴科, 祿俸改正	○ 1069量田步數法(田稅)制定 算學職정착
1126	○ 朝鮮國公李資謙亂	○ 戶口調査(計口籍民)慣行定着(兩班은 3年, 平民은 每年實施)
1135	○ 妙淸亂 : 三國史記편찬(1145)	
1170	○ 鄭仲夫亂 重房幕府政治시작	
1196	○ 崔忠獻의 幕府政治(都房, 政房, 敎正都監)	
1231	○ 몽고침입, 江華島(江都)로 移遷	○ 民官의 變遷 : 尙書戶部(995)→版圖司(1275)→戶曹(1372)
1258	○ 崔氏幕府政權붕괴, 王權復舊	
1292	○ 開京천도, 三國遺事(1285), 帝王韻紀(1287)	○ 1301田民辨正司설치
1351	○ 공민왕즉위, 元의 年號폐지(1356)	○ 1347整治都監 諸道의 量田, 戶牌시작(1354)
1388	○ 李成桂, 威化島回軍	○ 1391 科田法 施行, 이무렵 開京 13萬戶
1392	○ 朝鮮建國	○ 武年戶口調査定着, 戶曹에 版籍司 등 둠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394	○ 國都를 漢陽으로 정함, 官制改革	○ 鄭道傳, 朝鮮經國典 撰修
1396	○ 壹岐·對馬島征伐(金士衡)	○ 1398, 戶牌使用, 各道土田改量
1400	○ 議政府制, 六曹官制(1405), 地方8道制(1413)	○ 啓告(報告)制度定着
1419	○ 對馬島征伐(一時慶尙道編入), 集賢殿설치	○ 1426續六典·謄錄, 農事直說편찬
1443	○ 訓民正音制定	○ 田制詳定所등 量田結負法, 田分등 시행(1444)
1469	○ 經國大典完成	○ 1462, 戶口成籍, 五家作統法, 職田法(1466)
1543	○ 白雲洞書院설립	
1568	○ 退溪, 聖學十圖	
1575	○ 栗谷, 聖學輯要, 鄕約, 社倉法定立	
1592	○ 倭軍來侵(壬辰倭亂)	
1600	○ 佛敎, 曹溪宗으로 一元化	○ 1603量田實施, 1608宣惠廳설치, 大同法실시
1631	○ 鄭斗源등 明에서 千里鏡, 自鳴鏡등 도입	○ 1626兵農分離, 1625戶牌事目제정
1636	○ 女眞軍來侵(丙子胡亂)	○ 1646昭顯世子, 天文·產學·地球儀등 수입
1712	○ 白頭山定界碑세움	○ 1690戶籍法強調 1714戶籍事目制定 1720三南量田
1750	○ 均役法실시	
1770	○ 英祖命撰·東國文獻備考(洪鳳漢)	○ 朝鮮後期의 百科辭典 : 官制와 戶口考등
1776	○ 奎章閣설치	
1787	○ 佛페로즈艦隊, 제주도·울릉도 접근(최초의 異樣船)	○ 1789「戶口總數」刊行
1791	○ 卒亥邪獄, 1801辛酉邪獄	○ 1801 5家作統法 再整備
1811	○ 洪景來亂	○ 1808 萬機要覽편찬(池象圭, 徐榮輔)
1832	○ 英, 로드애미스號, 몽금포에서 通商要請	○ 1835 林園經濟志(徐有榘)刊
1840	○ 常民착취금지령	
1847	○ 佛, 세실艦隊來朝. 첫 外交書信	
1860	○ 東學唱導	○ 1862「幾何原本」「推步捷例」(南秉哲)刊
1863	○ 高宗卽位, 大院君섭정, 露 通商要求	○ 1865 大典會通편찬, 備邊司를 議政府에 통합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866	○ 丙寅洋擾, 辛未洋擾(1871)	
1868	○ 書院撤廢	○ 1876 六典條例편찬, 算學正義(南相吉)
1872	○ 日本 對馬島合併에 草梁倭館철폐, 國交斷折함	
1873	○ 高宗親政, 大院君下野	
1875	○ 日 雲揚號領海侵犯 測量	
1876	○ 朝日修好條約	
1880	○ 統理機務衙門설치(統治組織의 첫近代化)	
1882	○ 統理機務衙門을 統理衙門(外務)과 統理機務衙門(內衙門)으로 新設(11月)	○ 內衙門에 理用, 農商등 7個司를 둠
	○ 壬午軍亂(6月)	○ 三軍府, 機務處를 內衙門에 統合(12月)
	○ 朝美通商修好條約(4月)	
1883	○ 太極旗를 國旗로 制定	○ 1884內衙門을 議政府에 統合
	○ 漢城旬報(官報 ; 博文局)발간	○ 1885內衙門을 內務部로 改設(職制, 司憲, 農務등 7局을 둠)
	○ 元山學會, 通辯學校(民族系, 新制學校)설립	
1884	○ 廣印社, 郵政總局, 蠶桑公司설립	
	○ 甲申政變(12月 4日)	○ 14個革新政策(租稅財政은 戶曹總轄로)
1885	○ 漢城週報續刊	○ 萬國政表(博文局)-면적, 수출입등 統計(總計)
	○ 貞洞學校(培材學校) : 基督敎系新制學校	○ 朝鮮政鑑(朴齊炯)刊(1886)
1894	○ 東學亂(1月), 淸日戰爭	
	○ 甲午更張(~1895) 校正廳→軍國機務處설치	○ 開國紀年(開國503年, 高宗31年)
	○ 內閣制 實施	○ 度量衡改正(內務衙門)
	○ 洪範14個條	○ 統計職制定宜, 戶曹를 度支部로 고침
1895	○ 第2次 內政改革	- 議政府記錄局 ; 行政 및 統計事務(6月28日字) 官報局 ; 政令과 統計등 公表
	○ 裁判所法, 管稅司, 徵稅署 및 各部官制公表	
	○ 地方官制公表(5月)	- 8個衙門의 記錄局(外務·度支)및 總務局에 報告課」를 두고 「統計案件」담당
	○ 斷髮令(11月)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895		- 其他 ; 內務에 版籍局(戶口·物産), 農商에 山林局(山林統計 및 地方學院經濟등), 1895. 4. 13, 報告課는 文書課에 統合
1896	○ 建陽年號사용, 太陽曆채택, 皇后弑崩(1月) ○ 俄館播遷(2月)獨立新聞(4月)獨立協會(7月) ○ 內閣制를 議政府에 統合 ○ 全國을 23府 331郡으로 改編(8月)	○ 法規類編(최초의 近代法典)간행 ○ 內部, 戶口調査規則(9.1) 및 同細則(9.3)
1897	○ 年號를 光武 國號를 大韓帝國으로(10月)	○ 光武元年(高宗34年, 開國506年)
1898	○ 獨立協會, 萬民共同會등 議會開設運動展開	○ 量地衙門설치(7月)
1899	○ 大韓帝國國制領布(8月), 京仁線開通	○ 全州등 小作人들 均田要求民亂
1901	○ 新式貨幣條例(金本位 : 100錢=1圓)	○ 平式院설치 度量衡規則公布(1902)
1904	○ 露日戰爭	○ 增補文獻備考편찬(1903~1907)
1905	○ 乙巳 5條約	
1906	○ 日本統監部(→府)設置(2月)	○ 度支部「稅務統計」, 關稅局「韓國外國貿易年表」刊
1907	○ 皇帝, 皇太子에게 讓位 年號를 隆熙로(8月)	○ 度支部「統計年報」統監部「一次統計年報」刊
1908	○ 「少年」創刊(10月)最初의 新劇 「銀世界」公演(11月) ○ 漁業法公布(11月) 東洋拓殖(株)설립(12月)	○ 度支部, 大臣官房에 「統計課」設置(1月) ○ 「農業統計에 關한 件」(農商工部), 內部 大臣官房「民籍課」
1909	○ 安重根, 伊藤博文銃殺(10月), 韓國銀行設立(10月)	○ 民籍法制定
1910	○ 韓日合邦條約發表(8.29) ○ 朝鮮總督府官制公布, 施行(10.1) ; ※總督官房 및 5部(總務, 內務, 度支, 農商工, 司法部)	○ 土地調査事業(3月) ○ 각部의 文書課 또는 總務課·庶務課에서 統計擔當(종전의 報告課, 統計課폐지)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911	○ 漁業令, 山林令, 寺刹令, 教育令 공포 ○ 警務廳, 普通報告例 ○ 成均館폐지(經學院으로)	○ 警務廳, 普通報告例規程公布(1.9) ; 보고례 統計의 시작(6月부터 統治全域에 걸쳐 실시 ; 卽報, 日報, 月報, 半年報, 年報, 特報등, 年間500餘種)
1912	○ 朝鮮民事令, 刑事令公布(3月) 笞刑令실시, 官吏佩劍	○ 朝鮮不動產登記令공포
1914	○ 全國을 12府 218郡으로 廢合 ○ 地稅四割增收, 市街地稅新設	○ 總務局에 統計課 및 監時國勢調査課둠
1915	○ 朝鮮救國恢復團(達城), 新民會, 光復會등 활발화	○ 民籍法改正(3月), 「報告例에 의한 人口統計의 件」(6月) ○ 土地調査完了(1917年 11月)
1919	○ 太皇帝(高宗) 崩(1月), 己未獨立宣言 ○ 上海에서 大韓民國監時政府樹立	○ 朝鮮林野調査令(1918. 5月) ○ 民國元年(檀紀 4252年)
1920	○ 洪範圖(鳳梧洞), 金佐鎭(靑山里), 日軍을 大破	○ 臨時國勢調査課폐지, 臨時戶口調査實施(10月)
1921	○ 國內共產主義運動적극·左右分裂, 朝鮮語學會설립	○ 統計小票規程施行(4月)
1922	○ 朝鮮敎育令공포, 南滿洲獨立軍大韓統義府로 통합(8月) ○ 朝鮮物產奬勵會(兪星濬등)시작	○ 朝鮮戶籍令, 戶口調査規程 公布 ○ 統計課를 調査課로 改稱
1925	○ 朝鮮史編修會설치(6月)	○ 第1回簡易國勢調査實施(10.1)
1926	○ 廢皇帝(純宗)崩(4月), 6.10萬歲	
1929	○ 資源調査法 施行公表, 光州學生事件	○ 總督官房에 臨時國勢調査課 신설
1930	○ 平壤崇實專門등 學生萬歲示威激化	○ 國勢調査實施, 朝鮮商工會議所令공포
1931	○ 9月 日本, 滿洲侵犯(滿洲事變)	
1935	○ 朝鮮語 標準語査定委員會설치	○ 國勢調査實施, 朝鮮農地令公布(1934)
1937	○ 7月 日本, 中國本土侵攻(中·日戰爭勃發)	○ 人口動態調査規則(10.27)
1940	○ 創氏制度施行, 朝鮮·東亞日報 폐간	○ 國勢調査實施, 國民徵用令施行規則공포(1939)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941	○ 日本, 眞珠灣暴擊, 監時政府對日宣戰布告(12月)	○ 農產物供出制(8月)
1942	○ 總督府職制度 : 朝鮮軍事令공포 ○ 朝鮮語學會檢擧事件(10月)	○ 總務局에 文書課, 企劃室, 情報課, 國民總力課, 監察課 및 國勢調査課등
1943	○ 朝鮮徵兵制, 學徒兵制公布(10月), 카이로宣言(11月)	○ 國勢調査課를 調査課로 戶籍確認調査실시
1944	○ 總動員令에 의한 全面徵用실시(2月)	○ 文書課를 總務課로, 資源調査法에 의한 人口調査(5.1)
1945	○ 全學校에 戰時動員令공포(5.12), 포츠담선언(7.26)	○ 總督府職制 變更 ; 官房에 秘書官室, 總務課, 企劃課, 人事課, 情報課, 地方課, 會計課 등(4月) : 企劃課內에 統計官室과 8係(서무, 교양, 부호집계, 편찬, 인구동태, 노동력, 가계)설치

2. 解放以後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945	8.15 日王 無條件降服, 光復 8.24 蘇聯軍, 平壤에 軍政司令部설치 9.9 美軍, 서울에 軍政廳설치(總督府職制승계) 10.28 北朝鮮五道行政局설치 12.27 모스크바 三相會議, 5個年信託統治案, 宋鎭禹피살	軍政廳 官房企劃課內 統計官室
1946	共產黨·北朝鮮贊託宣言(1月 2月), 北朝鮮人民委員會發足(2.8), 北朝鮮土地改革(3.5) 및 共產化 20個政綱發表(3.24) 3月 美軍政, 部處制실시 8月, 北朝鮮, 全產業 國有化, 11月 北朝鮮 소비에트식 總選擧 12月 南朝鮮 監時立法議院 開院	庶務處 企劃課(統計署, 調査研究署등) 衛生統計調査規則(3.13)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947	6月 南朝鮮 過渡政府, 7月 美蘇共委決裂 呂運亨(7月), 張德秀(12月)被殺 10月 北朝鮮, 貨幣改革 11月 UN總會, UN韓國監時委員國파견결의	庶務處統計署(統計官室과 4課 ; 서무, 관리, 인구, 가계), 인구동태조사는 보건후생부로, 노동력조사는 노동부로 國民登錄실시(6月～11月) 美軍政, 敵產農地의 農民拂下法令公布 朝鮮統計年鑑(調査研究署統計課), 朝鮮年鑑(朝鮮通信社) 南朝鮮產業勞動及賃金調査(統計署), 第2回南朝鮮勞動統計調査結果報告(勞動部統計室)
1948	1月 金日成, UN韓委入北反對, 2月 北韓, 朝鮮人民軍創設, 4月 濟州道事態發生 5.10 總選擧, 7.1國號 大韓民國, 7.17憲法公布·政府組織法公布, 7.20 正副統領選擧, 8.1 李範奭 總理, 8.15 政府樹立宣布 : 1院11部4處, 9.1官報 發行, 9.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宣言(9.9) 9.13 美軍政의 行政權 移讓完了, 10.19麗順叛亂, 12.1 國家保安法 公布, 12.10 韓美經濟援助協定(ECA援助), 12.12 UN韓國政府 承認	1948.7.17 公報處 統計局 1室4課(庶務, 企劃, 國勢調査, 人口調査), 人口動態를 統計局으로 移管·實施. 農林部 : 調査統計課, 糧政課, 漁政課 社會部 : 調査指導課, 「勞動統計」 11.4. 公報處 職制制定 12.13. 第1回 總人口調査施行令
1949	1. 9 經濟復興5個年計劃 樹立 3.25 政府機構改革(1次) : 保健部 新設 등 6.21 農地改革法 公布, 6. 29 駐韓美軍 撤收完了, 7.5 地方自治法 公布 8.12 國家公務員法 公布, 12.31 教育法 公布(中·高制) <4.4 NATO條約, 9.7 西獨政府樹立, 10.10 中國樹立 宣言>	1.27 人口調査法 公布, 5.1 第1回 總人口調査, 9.1 戶口調査規程, 12.19 人口動態調査令 公布, 12.21 人口動態調査施行規則, 物價統計改編(加重値 導入, 韓銀)
1950	1.26 韓美防衛經濟援助協定, 2.13 第1次 改憲案(內閣制) 否決, 3.4 經濟安定15原則 發表, 4.6 農地改革 實施, 4.30 第2代國會總選, 6.12 韓銀設立, 6.25 北韓軍 南侵, 6.27 政府 大田으로, 7.7 軍統帥權을 UN軍司令官에게 移讓, 7.16政府 大邱로, 9.15 UN軍 仁川上陸(9.28서울 收復)	4.1 統計局 3課(企劃, 國調, 人調 : 統計官室 및 庶務課 廢止) 人口動態調査 標本抽出調査實施(申告調査는 1949～51年間 中斷), 都市家計調査(統計局, 韓銀 合同實施, 有意標本)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0月 UN韓委 廢止, 韓國復興統一委員團 (UNCURK) 設置>	
1951	1.3 政府 釜山으로, 2.14 서울 再收復, 7.10 休戰會談 시작(開城), <9. 8 桑港對日講和 調印, 日對韓權利請求權 抛棄> <4月 UN 經濟社會理事會內 韓國臨時復興 委員團 (UNKRA) 設置>	1/4부터 基本的 經濟調査實施(韓銀), 貿易年報(財務部), 貿易年鑑(貿協). 3.31 調査月報「動亂特輯臨刊號」(韓銀), 10月 國民所得調査委構成(企劃處, 韓銀)
1952	1.18 第2次 改憲案(大統領直選制·兩院制) 否決, 4.17 第3次 改憲案(內閣制) 提案, 4.25 市邑面 議員選擧, 5.10 道議員 選擧, 5.14 第4次 改憲案(直選制·兩院制) 提出, 5.19 白骨團 등 政治波動, 5.25 서민호 殺人(軍人)事件, 慶南·全南北 全域에 戒嚴令, 5. 24 韓美經濟調整協定締結(韓美合同經濟委設置), 7.4 拔萃改憲案 通過, 8.5 正副統領 直選, 12月初아이크 來韓, 12.15 對UN軍 前渡金支出停止.	1月 最初의 「國民所得推計」(1951分), 3.31 動亂被殺者 및 被拉者中告調査(統計局), 人口動態調査, 年末常住人口調査 實施(53,54年은 中斷) 5.25 保健部 統計報告例공포(保健部) 6.25 內務部 報告例 公布(內務部)
1953	2.15 緊急通貨措置(第1次 貨幣改革 100對1), 7.27 休戰協定調印, 8.8 韓美相互防衛條約 假調印(10.1 本調印), 8.15 政府 서울천도 宣言, 9.24 1954年度 韓國經濟復興計劃發表 11.30 李起鵬 自由黨 最高委員, 10.14 韓美合同經濟委員會 協定(經濟再建 및 政治安定計劃 : UNKRA活動) FOA援助 시작	Rebert Nathan Associates「經濟再建計劃」豫備報告書(54~58年間)建議. 6月 6·25 動亂被害調査 7月「農村實態調査」(農林部·韓銀)
1954	4.3 產業銀行 發足, 5.31 UNKRA協定調印, 6.9 李起鵬 國會議長, 7.28 經濟復興5個年計劃(約29億弗規模) 11.17韓美相互防衛條約 發效, 11.20 媚8軍司令部 日本으로, 11.27 第2次 改憲(3選制, 4拾5入改憲案) 決定	1. 主要企業體實態調査(商工部), 1952年度 「統計年鑑」創刊(統計局), 2.4 네이산報告(韓國再建計劃) 3月. 1953~54年分 國民所得推計發表 4. 「產業總覽」刊 10. 「經濟圖表」刊 시작
1955	1.17 韓美軍援協定書 調印, 1.22 政府組織法改正, 2.7 政府機構改革(第2次) : 總理制 廢止, 復興部, 專賣廳, 海務廳設置, 公報處→公報室, 7.10 經濟復興 5個年計劃(26억불 규모)	2.7 內務部 統計局이 됨(3課 : 企劃, 國調, 人調), 7.7簡易總人口調査規則(內務部令47號), 9.1 簡易總人口調査實施, 年末常任人口調査再續, 鑛業 및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製造業 事業體調査(韓銀), 韓國産業經濟十年史刊(産銀)
1956	1.30 김창룡 特務部隊長 被殺, 2.1 政府機構改編(第3次) : 公報室 放送管理局·外務部 儀典局등 新設, 2月, 農業銀杏法 公布 3.20 復興5個年 計劃 公表, 5.1 農業銀行 發足, 5.15 正副統領 選擧(5.5 申翼熙死亡), 6.18 TV放送 開始(HLKZ), 8.8 市邑面長, 8.13 市道議員 選擧	11月 勞動力調査 試驗調査, 1953－55의 國民所得推計, 生産指數, 貿易統計 등 改編 및 鑛工業體給與額調査, 建設許可統計작성(BOK), 統計法 및 同施行令草案作成
1957	2.14 農業銀行法, 農業協同組合法 公布, 4.7 新聞倫理綱領 採擇, 7.1 UN軍司令部 韓國으로, 9.12 聞慶시멘트工場 竣工, 12.13 貿易法 公布	韓銀의 國民所得推計專擔指定 6.24 內務部 職制改編, 統計局改編 4課(統計基準, 人口統計, 經濟統計, 製表), 勞動力調査施行令(6.24 大統領令 1284 號), 就業 및 失業實態調査(～62年 5月까지)8, 産業生産指數 改編
1958	2.22 新民法 公布(60.1施行), 3.22 外資管理法 및 原子力法 등 公布, 4.1 農業銀行 特殊銀行으로, 3月 産業開發委員會(復興部 內) 設置 3個年計劃案(60～62). 7.17 商工部 技術訓練5個年計劃樹立(1958－62) 11.20 農協中央會 發足, 12.24 國家保安法·改憲案通過	1月 農家經濟調査 改編(BOK), 物價指數 改編, 鑛工業統計 調査實施(韓銀), I－O表試作(産業開發委), 綜合統計報告例集 편찬준비 4月, Rice統計顧問團 來韓(5年契約), 11.4 國勢調査委員會 設置키로(國會議決), GNP 공식추계(한은), 農村物價調査(農銀)
1959	5.9 經濟開發 5個年計劃發表(成長率 5.6%目標) 6.29 OEC(UN經濟調整官室)→USOM으로 改編, 7.14 原子爐 起工. 12月 復興部의 3個年計劃案 閣議議決	2.10 國勢調査委員會規程(大統領令 1449號), 7.10 中央官署 統計擔當官協議會 設置(內務部), 11.25 (社)大韓統計協會 設立. 11.10法院統計規程 公布(大法院)
1960	2.15 조병옥 死亡, 3.15 4代 正副統領選擧, 4.15 經濟開發3個年計劃 修正發表 4.19 學生데모, 4.26 李大統領 下野, 4.27 許政 過渡政府 出帆(首席國務委員→首班), 6.15 第3差改憲案通過 公表(內閣制),	11.3 國勢調査令(國務院令91號), 12.1 人口住宅센서스(國勢調査)實施, 鑛工業統計調査 實施, 家計調査 改編(韓銀), 稅務統計年報(財務部), 12.5 國際統計委員會規程 統計要員敎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7.1 政府機構改革(第4次), 7.29 民·參議員 選擧, 8.12 大統領選出 10.26 市邑面長 選擧, 11.18 第4次 改憲(反民主行爲者處罰遡及立法 可能), 11.29 市道知事選擧	養訓練計劃(統計局) Rand Corporation 招聘 諮問(5個年計劃準備次). 企業經營分析實施(韓銀) 12.31 定例報告例規定公布(統計局)
1961	韓美新經濟協定調印, 3.22 革新系學生데모, 5.5(韓國民族統一聯盟準備委) 南北學生 會談決議, 5.16 軍事革命委員會 設置, 5.19 國家再建最高會議, 5.26 政府機構改革(第5次): 復興部→建設部, 6.9 農漁村 高利債整理法, 6.14 不正蓄財者處理法, 6.22 政府機構 改編(第6次): 公報部 新設등, 7.2 反共法 公布, <7.6 北·蘇軍事同盟, 7.11 北·中共軍事同盟: 相互防衛條約> 7.12 政府機構 改編(第7次): 援護廳 新設등, 7.22 政府機構 改編(第8次): 建設部 廢止, 經濟企劃院 設置,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62~66), 8.22 政府機構改編(製9次): 監察委員 最高會議 直屬으로, 8.24 政府機構改編(第10次), 10.2 政府 機構 改編(第11次): 部署間 業務調整, 12.2 國土建設團 設置法	2.1 農業센서스 實施, 3月「經濟調査月報」(統計月報 改題: 3月 創刊號), 5.29 工產品生產申告制(商工部 調査課), 7.1 農產物 生產業調査(農林部), 7.22 經濟企劃院 統計局으로(內務部에서), 10. 保社部 勞動統計課 11. 統計局 舊廳舍 完工. 技術系 人的資源調査(第1回: 經濟企劃院)
1962	3.16 政治活動淨化法 公布(舊政治人 追放), 3.21 政府機構 改編(第12次): 農林部 改編, 農村進興廳 設置, 3.22 윤보선 大統領 辭任, 朴正熙 權限代行, 5.10 政府機構 改編(第13次): 울산開發計劃本部·援護處設置, 6.10 通貨改革(第2次 平價切下 100환對 10원), 6.18 政府機構 改編(第14次): 經濟企劃院 改編, 建設部 設置, 8.26 政府機構 改編(第15次): 勞動廳, 鐵道廳 新設, 12.17 第5次 改憲(第3共和國 民政後에 實施)	1.15 統計法 公布, 3.10統計法施行令 및 統計委員會規程公布, 3月. 鑛工業標本調査실시(산은), 6.18 調査統計局 機構改編·統計委員會 및 5課(조사 분석, 통계기준, 인구통계, 경제통계, 편수), 4.24 법원통계규칙 공포(법원통계규정 개정) 6月 統計刊行物調査실시(통계국) 8月 經濟活動人口調査實施(勞動力調査中止) 8.21 統計法施行規則 公布, 12.12 統計法改正 I-0表 作成 着手(韓銀: 8月)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963	10.15 5代 大統領選擧, 11.26 國會議員 選擧, 12.14 政府機構改編(第16次) : 經濟企劃院, 財務部, 調達廳등 部處의 所管事項 調整變動, 12.17 新憲法 發效, 民政移讓	2.25 統計法施行令 改正(1次), 人口動態標本調査實施, 3.1 韓國標準産業分類 告示, 3月 農業統計年報初刊(農林部 農業經濟課), 3.20(財)大韓統計協會設立 6.10 就業技術系人的資源調査(統計局), 10.1 國民標準職業分類告示, 10月 鑛工業生産者販賣價格調査(산은) 12.17 調査統計局(外局) : 4課(企劃, 基準, 人口, 經濟) 및 統計委員會, 鑛工業센서스實施(韓銀) 保社部勞動統計課 廢止, 企劃管理室 統計係 및 勞動廳(外廳) 總務課 統計係, 商工部 調査課 廢止, 企劃管理室에서 生産動態調査實施, 12月 統計用語定義集(統計局), 資金循環表作成.(韓銀)
1964	8.14 政府機構(第17次) : 國民運動本部 廢止, 10.31 韓·越協定(國軍派越)	4.2 統計法施行令 改正(2次), 4.16 統計法施行規則 및 광공업센서스 규칙制定, 4.7 韓國標準貿易分類告示, 8.1 韓國行政區域分類告示, 9.29 人口·住宅 센서스시행규칙제정
1965	2.20 韓日基本條約假調印, 3.22 單一變動換率制 採擇, 3.24 越南派兵 1陳到着, 6.22 韓日條約調印(東京), 12.18 韓日條約批准書 交換	1. 統計關係人的資源調査報告書刊, 「農村物價 및 賃料金指數」(農協), 國稅統計年報.(國稅廳)
1966	7.9 韓美行政協定 調印, 7.29 第2次 5個年計劃 發表<8.8 中共의 文化革命 61項目 發表>	1月 賃金 基本調査(勞動廳) 3月 水産廳 調査統計課 5月 統計法施行令 改正(3次) 7.8 통계자료공표협의 규칙공포, 韓國의 簡易生命表刊, 分期別 B.S.I실시(한은), 10. 人口센서스 實施(統計局), 鑛工業센서스실시, 鑛工業生産費調査(산은)
1967	1.9 山林廳설치 1.31 外換銀行설립 2.23 第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經部計劃	1.9 山林廳 調査統計課 설치 및 統計局 職制改正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5.3 6代 大統領選擧(박정희, 윤보선), <6.8 國會議員 總選(7代)>	4.12 統計局 改編 景氣動向指數(統計局) 「地域經濟調査 資料」刊(韓銀), 8.29 중소기업실태조사(企銀 : 一般統計로 승인) 11月 韓銀調査部 1,2部分類
1968	1.21 北韓軍 청와대습격사건 1.26 北韓 東海上에서 프에블로호납치, 주민등록증발급 8.15 政治淨化法 解除 12.5 국민교육헌장 제정공포	商業센서스 實施 2.1 韓國標準分類 2次改正 2.4 統計局 改編(消費, 資料處理 및 統計審議官설치) 4.10 전국 소매물가조사 규칙 및 상업센서스 규칙 제정 4.18 職種別 賃金調査를 指定統計로 승인, 國富調査(11.21字 指定統計), 12.12 농업센서스 시행규칙 제정 Ⅰ-0延長表
1969	9.14 大統領 3選改憲案 京仁高速道開通	1月 産業銀行 산업생산지수편제 인수 3.12 노동실태조사 노동이동조사 임금조사의 규칙제정 10.27 統計法施行令 改正(4次) 12.18통계국 기구개편(생산, 물가과 설치) (統計業務一元化로 각종 조사 引受), 12. 國審調査實施
1970	3.13 水產廳職制 6.27 京釜高速道路 完工 開通(68.2~) 8.26 關稅廳設立 ※ 새마을 事業實施	3.13 KSIC 3次改正 3.27 鑛工業動態調査指定統計로(統計局移管), 建築許可統計를 韓銀에서 建設部로, 8月 한국표준직업분류2차 개정 9.16 統計法施行規則 改正(2次) 農業基本統計調査, 事業體勞動實態調査, 國富統計등 施行 規則 制定 및 統計資料公表協議規則 개정, 10.1 人口住宅센서스, 12.1 農業센서스 實施
1971	4.27 第7代 大統領選擧(박정희, 김대중), 5.25 總選擧, 7.6 第3次 5個年計劃確定, 9.6 國土綜合開發10個年計劃 確定, 10.28 中	2.9 漁業生產高 조사규정제정 5.24 統計局, 改編 및 經濟企劃院內에 經濟調査室 新設, 9.3 1回 統計人 大會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國UN加入, 12.6 國家非常事態 宣言, 12.29 派越軍 歸國 시작	및 學術세미나 開催(統計協會) 11.8 한국표준 무역분류 2차개정, 11.22 農林部調査統計課를 調査 統計官室(局水準)로 改編
1972	1月 제3차 경제개발계획 實施 7.4 平和統一에 관한 南北共同聲明, 8.3 私債凍結令, 10.17 非常戒嚴令(國會解散등 憲法一部機能 停止), 11.21 改憲案 國民投票, 12.23 8代 大統領 選出(統一主體國會議)	2.15 統計局 改編 3.10 경제활동인구실태조사, 10.26 한국표준질병분류 1차개정
1973	6.23 平和統一政策 宣言, 7.3 浦鐵竣工, 8.8 金大中拉致 事件 9.1 UNKURK 自進解體, 9.20 國民福祉年金制度채택(74년부터 실시) 11.14 湖南·南海高速道路全區間開通·年末에 國際石油波動	4月 제7차 광공업센서스실시 5.7 國民營養調査를 一般統計로 承認(每年實施), 8.10 經濟活動人口調査實施, 11.4 統計局의 在庫統計課 신설(9個課)
1974	5.3 企業集中沮止對策發表 8.15 서울地下鐵·首都圈電鐵開通式, 陸英修女史 피격	1日 韓銀通貨金融統計改編, 11 KSCO 제3차 개정, 農水產部農業基本統計 調査를 行政報告에서 標本調査方式으로
1975	2.12 維新憲法改正 國民投票, 2.19 새마을사업종합대책확정, 4.29 駐越韓國大使館(사이공) 철수, 4.30 印支事態로 丁國會議長 美·西獨 訪問, 金鍾泌·지스카르(佛)會談, 日本三木首相과 會談(5.9), 5.13 緊急措置 9號發布, 6.17 民防衛基本法立案 7.6 防衛稅法公布 10.14 嶺東·東海高速道路開通 12.9改閣(崔圭夏 內閣)	8.14 統計局 機構改編(2級 乙類의 統計調査官 資料管理官과 資料管理課 및 地方統計事務所 등 신설) 10.1 인구주택센서스실시 I-O表 작성 12.31 統計法 改正(2次)
1976	6.11 新民黨 金泳三 總裁職辭退 6.16 現代建設 사우디주바일港 건설계약 6.18 第4次 5個年計劃確定, 10.1 半月新都市 建設 發表	1月 관세청 무역분류에 BTN적용, 4.10 인구이동조사를 一般統計로 承認, 5.8 統計法 施行令 5차개정, 7.22 資金循環表를 일반통계로 승인(분기별 작성), 10.15 住居實態調査(일반통계) 승인, 10.30 농업센서스시행규칙 개정·統計局, 修正人口 推計發表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1977	第4次 5個年計劃實施 4.11 美地上軍 철수문제협의, 6.19 古里原子力發電 1號機點火, 7月 부가가치 세제 실시, 9.6 美國 朴東宣 로비事件起訴, 12.20 改閣, 動資部新設(78年 1月 發足)·輸出 100億弗 달성	1.24 SKTC 3차 1.19 糧穀消費量調査를 一般統計로 承認, 어업센서스시행규칙개정, 3.7 社會統計調査를 一般統計로 승인하고 第1回 調査 實施, 운수업통계 제1회 실시 11.3 통계자료공표 협의 제3차 개정, 인구 및 주택센서스규칙개정, 경제활동인구조사규칙 개정, 광공업센서스규칙 개정등
1978	1.18 朴大統領 國產武器(헬기, 장갑차 등) 생산발표, 4.30 領海法(12해리) 公布, 6.14 중소기업진흥공단설립, 6.3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開院, 7.6 9代 大統領選出(朴正熙 12.27 취임), 12.12 10代 國會議員選擧, 12.13 駐韓美軍部 철수	3.18 全國產業體學歷別賃金水準발표. 1977年末 현재의 國富調査 실시, 韓銀「한국의 재정통계」발표, I-O 延長表 작성, 12.22, SKTC 4차개정, 관세청 CCCN 무역분류채택, 「1978~9 人口動態特別調査實施」 7.7 어업기본통계조사규칙제정
1979	4.3 栗山 橫領 事件, 6.18 金泳三 外信클럽에서 金日成 面談提議(10.4 除名), 6.29 카터 및 大統領 來韓, 8.9 YH사건 10.18 釜馬事態, 10.26朴大統領 弑害(11.3 國葬), 11.24 YWCA 위장 결혼식 사건 12.6 崔圭夏 大統領選出(12.21 취임), 12.12 鄭昇和 陸參 總長 체포	재무부「한국의 재정통계」발표 5.25 KSCP 2차개정 「1978~79한국인의 생명표」작성
1980	3.28 제로베이스예산편성방식채택(1981부터) 4.21 舍北勞組事態, 5.17 國保委設立 戒嚴令(5.18), 9.1 全斗煥 大統領 就任, 10.16 醫療保險公社設立 등 保社行政長期計劃, 12.1 KBS TV 컬러방영, 88올림픽 개최 결정.	11. 인구주택센서스, 12.1 농림수산업센서스 실시. I-O表 작성
1981	1.17, 5차계획기간중 총량지표설정, 2.2 韓·美 정상회담, 2.12 敎育稅 신설, 5.18 美 잉여농산물(PL 408) 도입 종결, 6.26 住宅景氣活性化 對策 발표, 8.21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발표, 10.15 정부조직 정비안 발표, 10.17 옥포조선소준공, 11.5 제2제철소건설	3月, 景氣綜合指數, 一般統計로 편제, 3.5 에너지센서스를 一般統計로 승인 제1차센서스 실시, 6.26 총사업체통계조사를 指定統計로 해서 실시, 11.2 통계국 2級 乙類(3級)職을 統計計劃官, 統計管理官 2人으로 함, 통계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계획 확정, 11.2 산림청직제개정	국 1976~2050年間의 人口推計 4.8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직종별 임금조사 시행규칙 등 개정
1982	1.5 夜間通行禁止 全面解除, 1.22 全大統領 統一憲法制定提議(북한 거부), 3.10 데이터통신(주) 창립, 3.18 釜山 美 文化院放火事件, 7.3金融措置(私債陽性化 實名制 등), 8.28 獨立紀念館 建立 準備委發足, 9.9 國産초음속제트전투기시험비행성공	1.1 SKTC 5차개정, 중소기업실태조사를 企協移管, 「1980年 死因統計調査報告書」發刊(최초)
1983	2.6 油類價格引下 1.1 公職者倫理法發效, 6.11 韓銀, 5천원, 만원권 신지폐 발행, 7.1 부분적 금융실명제 실시, 9.1 소련 KAL機 격추, 10.9 全大統領의 西南亞순방중 북한공작원의 버마아웅산묘소폭파사건, 11.7 동아건설 리비아大水路工事 受注	1.1 무주택가구실태조사 시작(2年주기 조사), 人口移動 特別調査 실시, Ⅰ-O 연장표작성, 7.15 국민건강조사를 일반통계로(3년주기) 年末人口調査를 單記式票로 개편, 7.7 勞動生産性統計調査를 指定統計로 10.31 雇傭構造調査를 指定統計로 신설(3년주기로) 10.7 조사통계국 직제개정
1984	1.13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변경(M-R식으로), 3.9 농축수산물의 거래단위표준화, 5.1 서울大公園開園, 5.3 天主敎法王來韓, 9.6 全大統領 訪日	1.1 SKTC 6次改正, 1.26 KSIC 5次改正 4月 鑛工業센서스를 産業센서스로 改稱하고 83年末 基準調査實施, 第2次에너지센서스實施
1985	1.24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발표, 2.8 敎育政策改善策 講究 促求(大統領 : 3.9 교육개혁심의회 발족), 2.12 12代國會議員選擧實施, 4.24 全大統領訪美, 7.6 第6次 經濟社會發展計劃 立案, 9.24 韓國이 參與한 印尼마두라油田 生産개시, 10.18 서울地下鐵 3, 4호선 준공	5.4 통계위원회규정 개정(9次) 11.1 人口住宅센서스 실시, Ⅰ-O表 작성 12.6 어업생산고조사규칙개정
1986	2.4 京仁地域 15個大學生, 서울大에서 시위, 2.11 基督敎界 KBS-TV 시청료 거부운동 시작, 4.5 全大統領 西歐순방, 4.30 全大統領 三黨代表에게 合意改憲要請, 8.23 昌慶宮 重建, 9.10 漢江綜合開發竣工, 9.16 第6次計劃	7.1 第6次 都小賣業센서스 實施(1968시작) 총사업체통계조사 실시, Ⅰ-O 延長表 작성, 常任人口調査의 조사시점을 11月 1日로 변경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確定發表, 9.20 아시안게임, 12.3 한국, 南極條約 加入	
1987	1.1 農水産部를 農林水産部로 1.14 박종철군 고문사망 발표, 기독교계와 在野 및 野黨 등 항의시위 격화, 2.28 평화의 댐 착공, 4.1 專賣公社 發足, 4.13 全大統領 改憲論議留保 特別談話, 5.2 서울大교수 일부 時局宣言, 神父, 牧師, 승려등 시국선언 이어짐, 6.22 全大統領 各界元老와 協議, 6.29 盧泰愚 民正黨 代表 時局 수습 8個項 선언, 7.15 태풍 셀마호 打擊, 10.27 憲法改正 국민투표, 11.29 北韓공작원 KAL 858機 폭파, 12.15 남극과학기지 착공	1.9 主要企業의 設備投資計劃調査를 지정통계조사로 변경(每半期別調査), 1.15 韓國標準貿易分類 第7次 改正, 第3次에너지센서스 실시
1988	2.17 남극 世宗科學基地 준공현판식, 2.25 盧大統領就任, 3.23 西海岸地域開發推進委發足, 7.29 第6次計劃修正, 5.23 韓銀「금융산업개편방안」발표, 7.7 盧大統領「民權自尊·統一繁榮」對北 特別宣言, 9.13 헝거리와 國交合意發表, 9.17 서울올림픽실시(~10.2), 11.25 五共非理國會청문회 시작, 12.5 姜英勳 內閣 構成	1.1 SKTC 8次改正, 관세청의 무역분류에 HS적용, 産業센서스 實施
1989	2.27 부시 美大統領訪韓, 3.26 文益煥 訪北件으로 체포, 4.3 蘇聯商工會議所 서울事務所 開所, 4.27 分唐, 一山地域建設키로, 8.15 임수경 방북으로 체포, 8.30 수도권(남부) 3개 고속도로 착공, 10.10 西海岸開發對象事業確定, 12.8 韓·蘇領事處 設置合意를 發表, 12.31 全斗煥 前大統領 國會 청문회 증언	2月 事業體 賃金 實態調査를 一般統計로 承認(매년 실시키로)
1990	1.1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환경청을 환경처로, 1.22 民正·民主·共和三黨合黨宣言, 5.24 盧大統領訪日, 6.5 盧·고르바쵸프, 샌프란시스코 會談, 9.4 南北總理會談開催, 9.20 北京아시안게임시작(~10.7), 10.1 韓·蘇 外務長官會談에서 外交關係樹立	4.7 統計局 地方統計事務所 11個 및 出張所 5個로 확장 11.1 인구주택총조사실시, 12.1 농업·수산업총조사 실시

年 度	一般史(政治·經濟·社會·文化 등)	統 計 關 係
	合意, 12.11 남북총리 3次會談, 12.13 盧大統領訪蘇(~17)	
1991	1.4 정부기구 개편	1.4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을 統計廳으로 昇格하고 3局 14課 2擔當官 및 11個 地方統計事務所로 擴張함 9.13 統計硏修院設立

여 백

3. 主要統計指標

1. 國土·人口(國土·人口)
2. 金融·財政(通貨量, 貸出金, 金利, 證券, 保險·財政)
3. 產業生產(主要農產物生產, 主要工商品生產, 電力生產)
4. 運輸·通信(道路, 鐵道, 海運·港灣, 通信)
5. 對外去來(國際收支, 交易量, 外資導入)
6. 物價(物價指數, 主要商品價格)
7. 雇傭·賃金(雇傭, 賃金)
8. 國民所得(總量指標, 關聯指標, 產業構造)
9. 資金循環(資金過不足, 關聯指標)
10. 敎育(就學進學率, 學生數, 學校數 讀書·圖書館)
11. 保健(醫療, 身長·體育, 食生活)
12. 住宅環境(住宅, 上水道, 에너지, 電力)

※ 일 러 두 기

1. 統計 全般에 使用되는 記號의 뜻은 다음과 같음

【-】該當事項 없음　　【··】未　　詳

【P】暫定値　　【e】推　　定

【▲】時系列의 非連續(이 記號가 붙은 數字의 경우 그 以後와 以前의 時系列은 直接 比較할 수 없음)

2. 모든 統計는 合計와 細目이 各各 반올림 되었으므로 細目의 合計가 "合計"와 一致하지 않을 때가 있음

여 백

1. 國土·人口

國　　土

年末	國土總面積	農耕地	林　野	其　他	年末	國土總面積	農耕地	林　野	其　他
	Km²	km²	km²	km²		Km²	km²	km²	km²
1899	..	..	..	..	1922	..	..	..	..
1900	..	..	..	..	1923	..	..	..	..
1901	..	..	..	..	1924	..	..	..	..
1902	..	..	..	..	1925	..	..	..	..
1903	..	..	..	..	1926	..	..	..	..
1904	..	..	..	..	1927	..	..	..	..
1905	..	..	..	..	1928	..	..	..	..
1906	..	..	..	..	1929	..	..	..	..
1907	..	..	..	..	1930	..	..	..	..
1908	..	..	..	..	1931	..	..	..	..
1909	..	..	..	..	1932	..	..	..	..
1910	..	..	..	..	1933	..	..	..	..
1911	..	..	..	..	1934	..	..	..	..
1912	..	..	..	..	1935	..	48,774	..	..
1913	..	..	..	..	1936	..	49,008	..	..
1914	..	..	..	..	1937	..	49,025	..	..
1915	..	..	..	..	1938	..	49,168	..	..
1916	..	..	..	..	1939	..	49,176	161,784	..
1917	..	..	..	..	1940	..	48,935	161,382	..
1918	..	..	..	..	1941	..	48,482	161,434	..
1919	..	..	..	..	1942	..	48,095	161,400	..
1920	..	..	..	..	1943	220,813	..	..	..
1921	..	..	..	..	1944	..	..	..	..

國　　土(續)

年末	國土總面積	農耕地	林　野	其　他	年末	國土總面積	農耕地	林　野	其　他
	Km²	km²	km²	km²		Km²	km²	km²	km²
1945	94,229	··	··	··	1968	98,477	23,188	66,308	8,981
1946	94,229	··	··	··	1969	98,477	23,111	66,274	9,092
1947	94,229	··	··	··	1970	98,477	22,975	66,115	9,387
1948	94,229	··	··	··	1971	98,477	22,713	66,115	9,649
1949	98,431	20,535	··	··	1972	98,484	22,423	65,967	10,094
1950	98,431	19,541	··	··	1973	98,758	22,413	65,862	10,483
1951	98,431	19,421	65,154	13,856	1974	98,758	22,384	66,408	9,965
1952	98,431	19,425	65,154	13,852	1975	98,807	22,397	66,354	10,056
1953	98,431	19,395	64,154	14,882	1976	98,799	22,382	66,135	10,282
1954	98,431	19,504	63,437	15,490	1977	98,859	22,312	66,931	10,616
1955	98,431	19,948	66,708	11,775	1978	98,963	22,219	65,783	10,961
1956	98,431	19,919	66,918	11,594	1979	98,966	22,071	65,707	11,189
1957	98,431	19,988	66,532	11,911	1980	98,992	21,958	65,678	11,356
1958	98,431	20,124	66,655	11,652	1981	99,016	21,883	65,629	11,504
1959	98,431	20,162	67,053	11,216	1982	99,022	21,801	65,537	11,684
1960	98,431	20,248	67,009	11,174	1983	99,091	21,666	65,468	11,957
1961	98,431	20,326	67,529	10,576	1984	99,117	21,524	65,396	12,198
1962	98,431	20,627	66,946	10,858	1985	99,143	21,444	65,311	12,388
1963	98,431	20,797	66,946	10,688	1986	99,173	21,410	65,240	12,523
1964	98,431	21,710	66,872	9,849					
1965	98,431	22,564	66,136	9,731					
1966	98,477	22,931	66,125	9,421					
1967	98,477	23,119	66,402	8,956					

<資料> 內務部
農林水產統計年報(農林水產部)
林業統計要覽(山林廳)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1948)
1945년 이전까지는 南北韓 전체임

人　　口

年末	總人口[1]	서울市人口	農家人口	人口密度	年末	總人口[1]	서울市人口	農家人口	人口密度
	1,000名	1,000名	1,000名	名/km²		1,000名	1,000名	1,000名	名/km²
1899	..	..	..	..	1922	17,627	..	..	..
1900	5,603	..	..	..	1923	17,885	..	..	..
1901	..	..	..	..	1924	18,068	..	..	..
1902	..	..	..	..	1925	19,523	..	..	..
1903	..	..	..	..	1926	19,104	303	..	..
1904	5,924	..	..	..	1927	19,138	315	..	..
1905	..	..	..	..	1928	19,190	..	..	..
1906	5,794 (13,023)	..	..	..	1929	19,331	340	..	..
1907	9,782 (13,041)	..	..	..	1930	20,258	..	..	..
1908	(13,071)	..	..	..	1931	20,263	..	..	..
1909	(13,091)	..	..	..	1932	20,560	375	..	..
1910	12,935 (13,313)	..	..	..	1933	20,791	382	..	..
1911	14,056	..	..	..	1934	21,126	395	..	..
1912	14,827	..	..	..	1935	21,899	..	..	..
1913	15,459	..	..	..	1936	22,048	677	..	..
1914	15,930	..	..	..	1937	22,355	706	..	..
1915	16,278	..	..	..	1938	22,634	737	..	..
1916	16,648	..	..	..	1939	22,801	774	..	..
1917	16,969	..	..	..	1940	23,326	935	..	..
1918	17,057	..	..	..	1941	24,704	978	17,093	..
1919	17,150	..	..	..	1942	26,361	1,114	17,447	..
1920	17,264	..	..	..	1943	26,662	..	17,839	..
1921	17,453	..	..	..	1944	25,918	..	17,944	..

註1) 年央推計人口 但, 다음 註記 參照

- 1900～1910 內部調査 韓國戶口表, 특히 1910年은 內部調査 民籍統計表(5月 10日現在)
- 1906～1910 間( )안은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2月末現在)
- 1911年 以後는 각 年度 朝鮮總督府 官報
- 1920年：臨時戶口調査(10月 1日現在)
- 1925年：第1回 簡易國勢調査, 1930, 1935, 1940年 國勢調査(10月1日現在)
- 1944年：資源調査法에의한 人口調査(5月1日現在)
- 1921～1944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人　　口(續)

年末	總人口[1]	서울市人口	農家人口	人口密度	年末	總人口[1]	서울市人口	農家人口	人口密度
	1,000名	1,000名	1,000名	名/Km²		1,000名	1,000名	1,000名	名/Km²
1945	··	901	··	··	1968	30,838	4,335	15,908	313.1
1946	19,369	1,266	14,915	205.5	1969	31,544	4,777	15,588	320.3
1947	19,886	1,647	··	211.0	1970	32,241	5,433	14,432	328.2
1948	20,027	1,708	··	212.5	1971	32,883	5,851	14,712	334.7
1949	20,189	1,628	14,416	205.1	1972	33,505	6,076	14,677	340.2
1950	··	1,693	12,864	··	1973	34,103	6,290	14,645	345.3
1951	··	648	12,779	··	1974	34,692	6,542	13,459	351.0
1952	20,527	716	12,856	208.5	1975	35,281	6,890	13,244	357.1
1953	21,546	757	13,151	218.9	1976	35,849	7,255	12,785	362.8
1954	··	1,243	13,170	··	1977	36,412	7,526	12,309	368.3
1955	20,202	1,575	13,300	208.4	1978	36,969	7,823	11,527	373.3
1956	20,724	1,504	13,445	210.5	1979	37,534	8,114	10,883	379.3
1957	21,321	1,666	13,592	216.6	1980	38,124	8,364	10,827	385.1
1958	21,910	1,756	13,750	222.6	1981	38,723	8,676	9,999	391.1
1959	22,974	2,094	14,126	233.4	1982	39,326	8,916	9,688	397.1
1960	25,012	2,445	14,559	254.1	1983	39,929	9,204	9,475	403.1
1961	25,766	2,577	14,509	261.8	1984	40,513	9,501	9,015	408.7
1962	26,513	2,983	15,097	269.4	1985	41,056	9,639	8,521	414.1
1963	27,262	3,255	15,266	277.0	1986	41,569	9,799	8,180	419.2
1964	27,984	3,424	15,553	284.3					
1965	28,705	3,471	15,812	291.5					
1966	29,436	3,793	15,781	298.9					
1967	30,131	3,969	16,078	306.0					

<資料> 韓國統計年鑑(統計廳)

2. 金融·財政

通　貨　量

年末	貨幣發行額	通　貨[1] M_1	總通貨[1] M_2	M_3[2]	年末	貨幣發行額	通　貨[1] M_1	總通貨[1] M_2	M_3[2]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1899	..	..	..	..	1922	0.099	0.099	0.099	..
1900	..	..	..	..	1923	0.086	0.086	0.086	..
1901	..	..	..	..	1924	0.092	0.092	0.092	..
1902	..	..	..	..	1925	0.094	0.094	0.094	..
1903	..	..	..	..	1926	0.085	0.085	0.085	..
1904	..	..	..	..	1927	0.094	0.094	0.094	..
1905	..	..	..	..	1928	0.104	0.104	0.104	..
1906	..	..	..	..	1929	0.101	0.101	0.101	..
1907	..	..	..	..	1930	0.084	0.084	0.084	..
1908	..	..	..	..	1931	0.077	0.077	0.077	..
1909	..	..	..	..	1932	0.083	0.083	0.083	..
1910	0.015	0.015	0.015	..	1933	0.112	0.112	0.112	..
1911	0.022	0.022	0.022	..	1934	0.137	0.137	0.137	..
1912	0.025	0.025	0.025	..	1935	0.161	0.161	0.161	..
1913	0.021	0.021	0.021	..	1936	0.167	0.167	0.167	..
1914	0.021	0.021	0.021	..	1937	0.184	0.184	0.184	..
1915	0.024	0.024	0.024	..	1938	0.264	0.264	0.264	..
1916	0.032	0.032	0.032	..	1939	0.310	0.310	0.310	..
1917	0.041	0.041	0.041	..	1940	0.443	0.443	0.443	..
1918	0.072	0.072	0.072	..	1941	0.542	0.542	0.542	..
1919	0.111	0.111	0.111	..	1942	0.697	0.697	0.697	..
1920	0.117	0.117	0.117	..	1943	0.942	0.942	0.942	..
1921	0.105	0.105	0.105	..	1944	1.931	1.931	1.931	..

通 貨 量(續)

年末	貨幣發行額	通 貨[1] M_1	總通貨[1] M_2	M_3[2]	年末	貨幣發行額	通 貨[1] M_1	總通貨[1] M_2	M_3[2]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1945	0.01	0.01	0.01	··	1968	95.7	177.9	436.6	··
1946	0.02	0.02	0.03	··	1969	129.9	252.0	704.6	··
1947	0.03	0.1	0.1	··	1970	158.9	307.6	897.8	··
1948	0.04	0.1	0.1	··	1971	186.5	358.0	1,084.9	1,278.0
1949	0.1	0.1	0.1	··	1972	245.2	519.4	1,451.8	1,683.8
1950	0.2	0.3	0.3	··	1973	353.3	730.3	1,980.5	2,391.1
1951	0.6	0.7	0.7	··	1974	454.9	945.7	2,456.5	3,041.1
1952	1.0	1.4	1.5	··	1975	560.9	1,181.7	3,150.0	3,903.3
1953	2.3	3.0	3.3	··	1976	736.3	1,544.0	4,240.8	5,293.7
1954	4.2	5.8	6.2	··	1977	1,034.0	2,172.6	5,874.3	7,515.5
1955	6.2	9.4	10.1	··	1978	1,491.8	2,713.8	7,928.7	10,210.6
1956	7.9	12.1	13.5	··	1979	1,817.5	3,274.5	9,877.8	13,379.3
1957	9.0	14.5	16.0	··	1980	2.038.5	3,807.0	12,534.5	17,810.8
1958	11.6	19.3	21.2	··	1981	2,205.4	3,982.4	15,671.1	23,243.2
1959	13.2	21.0	26.5	··	1982	2,792.9	5,799.3	19,904.2	30,964.6
1960	14.6	▲22.7	▲25.7	··	1983	3.099.4	6,783.4	22,938.1	37,647.7
1961	18.1	35.8	41.3	··	1984	3,392.8	6,820.7	24,705.6	45,204.1
1962	20.7	39.4	51.6	··	1985	3,569.5	7,557.8	28,565.2	54.763.9
1963	21.9	41.9	55.4	··	1986	4,001.6	8,808.9	33,833.1	70,709.8
1964	27.9	48.9	63.6	··					
1965	35.2	65.6	97.1	··					
1966	46.5	85.1	157.0	··					
1967	68.1	123.0	253.8	··					

<資料>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1) 1959년 以前系列은 產業銀行 預受金 包含
2) 1986년 以後系列은 還買條件附債券賣渡 包含

預金銀行 預金·貸出金

年末	總預金[1]	貯蓄性預金	貸出金[1]	金融資金貸出	年末	總預金[1]	貯蓄性預金	貸出金[1]	金融資金貸出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1899	..	..	..	..	1922	0.155	..	0.297	..
1900	..	..	..	..	1923	0.152	..	0.335	..
1901	..	..	..	..	1924	0.161	..	0.344	..
1902	..	..	..	..	1925	0.171	..	0.360	..
1903	..	..	..	..	1926	0.193	..	0.375	..
1904	..	..	..	..	1927	0.200	..	0.386	..
1905	..	..	..	..	1928	0.232	..	0.399	..
1906	..	..	..	..	1929	0.236	..	0.420	..
1907	..	..	..	..	1930	0.217	..	0.458	..
1908	..	..	..	..	1931	0.237	..	0.489	..
1909	..	..	..	..	1932	0.256	..	0.530	..
1910	0.018	..	0.023	..	1933	0.294	..	0.542	..
1911	0.019	..	0.030	..	1934	0.340	..	0.602	..
1912	0.020	..	0.041	..	1935	0.374	..	0.689	..
1913	0.022	..	0.048	..	1936	0.416	..	0.846	..
1914	0.023	..	0.048	..	1937	0.462	..	0.958	..
1915	0.028	..	0.047	..	1938	0.624	..	1.053	..
1916	0.036	..	0.056	..	1939	0.868	..	1.506	..
1917	0.047	..	0.080	..	1940	1.140	..	1.899	..
1918	0.066	..	0.127	..	1941	1.387	..	2.117	..
1919	0.107	..	0.253	..	1942	1.831	..	2.504	..
1920	0.122	..	0.215	..	1943	2.562	..	3.062	..
1921	0.152	..	0.287	..	1944	3.345	..	3.592	..

預金銀行 預金·貸出金(續)

年末	總預金[1]	貯蓄性預金	貸出金[1]	金融資金貸出	年末	總預金[1]	貯蓄性預金	貸出金[1]	金融資金貸出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1945	0.00	··	0.01	··	1968	373.1	255.5	331.2	296.8
1946	0.01	··	0.01	··	1969	619.2	451.5	563.0	510.5
1947	0.02	··	0.03	··	1970	789.7	576.3	722.4	649.6
1948	0.03	··	0.03	··	1971	977.6	708.7	919.5	837.6
1949	0.04	··	0.1	··	1972	1,323.9	911.5	1,198.0	1,102.4
1950	0.1	0.01	0.1	··	1973	1,760.5	1,221.1	1,587.5	1,483.5
1951	0.2	0.01	0.2	··	1974	2,128.7	1,471.8	2,427.8	2,279.8
1952	0.5	0.03	0.6	··	1975	2,812.3	1,943.7	2,905.5	2,713.8
1953	1.1	0.2	1.6	··	1976	3,760.4	2,613.4	3,724.9	3,448.1
1954	2.4	0.4	2.2	··	1977	5,455.9	3,588.2	4,709.0	4,290.7
1955	4.2	0.7	3.8	··	1978	7,765.1	5,132.0	6,609.0	6,019.1
1956	6.7	1.3	7.1	··	1979	9,782.7	6,531.4	8,977.8	8,267.7
1957	7.6	1.3	10.8	··	1980	12,412.9	8,577.0	12,204.4	11,295.2
1958	10.8	1.7	15.7	··	1981	17,034.1	11,499.8	15,955.0	14,763.3
1959	12.4	4.7	18.0	··	1982	21,189.3	13,659.7	20,225.8	18,718.3
1960	17.1	2.8	11.5	10.4	1983	23,907.6	15,672.7	24,150.3	22,210.7
1961	24.7	5.4	32.0	21.9	1984	27,925.1	17,306.6	27,978.9	25,741.7
1962	39.1	12.2	43.2	30.3	1985	31,022.6	20,246.2	33,810.7	31,262.6
1963	39.0	12.8	49.1	34.5	1986	35,925.8	24,591.1	39,098.6	36,156.5
1964	43.1	14.5	53.1	38.1					
1965	78.5	30.6	72.1	56.5					
1966	120.9	70.1	102.7	85.0					
1967	205.9	128.9	178.0	153.0					

<資料>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註1) 1959년 以前 系列은 전 金融機關의 預金 및 貸出

金　　利

年末	預金金利[1]	貸出金利[2]	韓銀再割引率	國公債收益率[3]	年末	預金金利[1]	貸出金利[2]	韓銀再割引率	國公債收益率[3]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1899	..	..	..	..	1922	..	..	..	..
1900	..	..	..	..	1923	..	..	..	..
1901	..	..	..	..	1924	..	..	..	..
1902	..	..	..	..	1925	..	..	..	..
1903	..	..	..	..	1926	..	..	..	..
1904	..	..	..	..	1927	..	..	..	..
1905	..	..	..	..	1928	..	..	..	..
1906	..	..	..	..	1929	..	..	..	..
1907	..	..	..	..	1930	..	..	..	..
1908	..	..	..	..	1931	..	..	..	..
1909	..	..	..	..	1932	..	..	1.5	..
1910	..	..	..	..	1933	5.5	3.1	1.3	..
1911	..	..	..	..	1934	5.5	3.1	1.3	..
1912	..	..	..	..	1935	5.5	3.1	1.3	..
1913	..	..	..	..	1936	4.3	2.2	1.2	..
1914	..	..	..	..	1937	4.3	2.2	1.2	..
1915	..	..	..	..	1938	4.3	2.2	1.2	..
1916	..	..	..	..	1939	4.1	2.2	1.0	..
1917	..	..	..	..	1940	4.1	2.2	1.0	..
1918	..	..	..	..	1941	4.1	2.2	1.0	..
1919	..	..	..	..	1942	3.7	1.8	1.0	..
1920	..	..	..	..	1943	3.7	1.8	1.0	..
1921	..	..	..	..	1944	3.7	1.1	1.0	..

金　　利(續)

年末	預金金利[1]	貸出金利[2]	韓銀再割引率	國公債收益率[3]	年末	預金金利[1]	貸出金利[2]	韓銀再割引率	國公債收益率[3]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年利, %
1945	3.4	··	1.0	··	1968	25.2	25.2	23.0	··
1946	3.2	··	2.0	··	1969	22.8	24.0	22.0	··
1947	3.2	··	1.1	··	1970	22.8	24.0	19.0	··
1948	3.2	··	3.7	··	1971	20.4	22.0	16.0	··
1949	3.5	··	4.4	··	1972	12.0	15.5	11.0	18.9
1950	▲3.8	14.6	5.8	··	1973	12.0	15.5	11.0	16.7
1951	4.8	18.25	5.8	··	1974	15.0	15.5	11.0	21.0
1952	4.8	18.25	5.8	··	1975	15.0	15.5	14.0	21.1
1953	4.8	18.25	6.6	··	1976	16.2	18.0	14.0	19.8
1954	12.0	18.25	6.6	··	1977	14.4	16.0	10.0	20.8
1955	12.0	18.25	6.6	··	1978	18.6	19.0	15.0	21.6
1956	12.0	18.25	6.6	··	1979	18.6	19.0	15.0	25.2
1957	12.0	18.25	6.6	··	1980	19.2	20.0	16.0	28.8
1958	12.0	18.25	6.6	··	1981	16.2	17.0	11.0	23.6
1959	10.0	17.52	7.3	··	1982	8.0	10.0	5.0	17.3
1960	10.0	17.52	10.2	··	1983	10.0	10.0	5.0	13.8
1961	15.0	17.52	10.2	··	1984	10.0	10.0~11.5	5.0	14.3
1962	15.0	15.70	10.2	··	1985	10.0	10.0~11.5	5.0	13.9
1963	15.0	15.70	10.2	··	1986	10.0	10.0~11.5	7.0	▲11.6
1964	15.0	16.00	10.5	··					
1965	26.4	26.00	28.0	··					
1966	26.4	26.00	28.0	··					
1967	26.4	26.00	28.0	··					

<資料>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證券統計年報(韓國證券去來所)

註1) 1950년 以後는 1年 以上 定期預金 金利, 그 以前은 6個月 以上 定期預金 金利

2) 一般業體에 대한 1年以內 一般貸出金利 단, 1945년以前 系列은 普通銀行의 普通貸出金利임

3) 1986년 以後 系列은 國債(複利債 課稅物)의 單純平均 收益率

證　　券

年中	株式去來額	證券去來額	株價指數[1]	會社債發行	年中	株式去來額	證券去來額	株價指數[1]	會社債發行
	億원	億원	1980.1.4=100	億원		億원	億원	1980.1.4=100	億원
1945	..	..	..	..	1968	200	0.3	201.52	..
1946	..	..	..	..	1969	420	4	270.27	..
1947	..	..	..	..	1970	429	42	280.14	..
1948	..	..	..	..	1971	344	111	376.50	..
1949	..	..	..	..	1972	711	102	▲162.14	99
1950	..	..	..	..	1973	1,606	92	308.53	35
1951	..	..	..	..	1974	1,794	45	303.44	279
1952	..	..	..	..	1975	3,339	167	▲79.85	335
1953	..	..	..	..	1976	6,287	438	97.89	863
1954	..	..	..	..	1977	13,753	1,359	113.38	1,765
1955	..	..	..	..	1978	17,415	2,457	143.69	3,263
1956	4	9	..	..	1979	13,278	5,471	120.55	6,246
1957	4	61	..	..	1980	11,340	9,107	108.76	9,637
1958	2	46	..	..	1981	25,342	14,252	126.30	10,361
1959	8	46	..	..	1982	19,735	62,828	122.03	20,932
1960	3	28	..	..	1983	17,526	34,574	121.70	14,265
1961	4	15	..	..	1984	31,180	23,932	131.88	18,041
1962	984	12	196.41	..	1985	36,206	37,789	138.93	31,767
1963	260	17	109.69	..	1986	95,981	32,217	227.78	27,289
1964	270	11	106.92	..					
1965	93	2	96.04	..					
1966	112	1	100.17	..					
1967	249	0.5	144.42	..					

註 1) 1971년까지는 修正株價 平均指數(1963=100),
1972년 以後는 綜合株價指數
(1972~1974 : 1972. 1. 4=100, 1975년 以後 : 1980. 1. 4=100)

保　　險

年中	生命保險		損害保險		年中	生命保險		損害保險	
	受人保險料	支給保險料	元數保險料	元數保險金		受人保險料	支給保險料	元數保險料	元數保險金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1945	..	..	..	..	1968	8,079	3,553	8,444	3,669
1946	..	..	..	..	1969	11,232	5,155	11,443	5,123
1947	..	..	..	..	1970	14,555	7,487	14,300	6,386
1948	..	..	..	..	1971	13,913	7,775	14,742	6,233
1949	..	..	..	..	1972	27,317	13,433	21,857	11,075
1950	..	..	..	..	1973	42,739	20,699	35,137	21,249
1951	..	..	..	..	1974	56,387	22,283	50,421	29,746
1952	..	..	..	..	1975	66,468	29,952	74,298	30,519
1953	..	..	..	..	1976	85,662	42,667	99,098	41,598
1954	..	..	..	..	1977	140,069	60,552	129,602	60,321
1955	2	0.3	198	12	1978	243,649	80,024	202,798	87,453
1956	4	0.6	312	16	1979	479,537	152,550	297,089	167,551
1957	34	2	399	21	1980	603,622	310,468	387,706	284,851
1958	252	22	447	27	1981	922,707	447,547	495,391	305,860
1959	409	61	468	38	1982	1,685,048	618,707	633,373	383,909
1960	383	155	510	33	1983	2,319,027	998,786	765,522	516,261
1961	445	301	466	55	1984	3,084,704	1,472,782	874,019	584,819
1962	1,153	219	601	119	1985	3,987,250	2,489,766	1,016,608	605,090
1963	1,467	487	864	180	1986	5,555,287	3,457,860	1,195,345	680,951
1964	1,640	679	1,288	530					
1965	2,578	854	2,065	633					
1966	3,511	1,404	4,544	1,024					
1967	5,361	2,149	6,114	2,366					

＜자료＞ 保險監督院

財　　政

年末	中央政府[1] 財政規模	租稅收入[2]	租稅負擔率	中央政府[3] 財政收支	年末	中央政府[1] 財政規模	租稅收入[2]	租稅負擔率	中央政府[3] 財政收支
	10億원	10億원	%	10億원		10億원	10億원	%	10億원
1899	..	..	..	..	1922	..	..	..	..
1900	..	..	..	..	1923	..	..	..	..
1901	..	..	..	..	1924	..	..	..	..
1902	..	..	..	..	1925	..	..	..	..
1903	..	..	..	..	1926	..	..	..	..
1904	..	..	..	..	1927	..	..	..	..
1905	..	..	..	..	1928	..	..	..	..
1906	..	..	..	..	1929	..	..	..	..
1907	..	..	..	..	1930	..	..	..	..
1908	..	..	..	..	1931	..	..	..	..
1909	..	..	..	..	1932	..	..	..	..
1910	..	..	..	..	1933	..	..	..	..
1911	..	..	..	..	1934	..	..	..	..
1912	..	..	..	..	1935	..	..	..	..
1913	..	..	..	..	1936	..	..	..	..
1914	..	..	..	..	1937	..	0.428	..	..
1915	..	..	..	..	1938	..	..	..	..
1916	..	..	..	..	1939	..	..	..	..
1917	..	..	..	..	1940	..	..	..	..
1918	..	..	..	..	1941	..	1.055	..	..
1919	..	..	..	..	1942	..	..	..	..
1920	..	..	..	..	1943	..	1,615.5	..	..
1921	..	..	..	..	1944	..	..	..	..

財　　政(續)

年末	中央政府[1] 財政規模	租稅收入[2]	租稅負擔率	中央政府[3] 財政收支	年末	中央政府[1] 財政規模	租稅收入[2]	租稅負擔率	中央政府[3] 財政收支
	10億원	10億원	%	10億원		10億원	10億원	%	10億원
1945	..	..	..	..	1968	262.1	194.3	11.8	−29.8
1946	..	..	..	..	1969	370.5	262.8	12.2	−66.1
1947	..	..	..	..	1970	441.3	334.7	12.1	−51.3
1948	0.03	0.005	..	..	1971	546.3	407.7	12.0	−57.6
1949	0.091	0.014	..	..	1972	701.1	433.4	10.4	−209.1
1950	0.243	0.043	..	..	1973	651.5	521.5	9.7	−87.9
1951	0.618	0.392	..	..	1974	1,018.9	844.7	11.1	−168.0
1952	2.151	0.966	..	..	1975	1,550.2	1,255.5	12.5	−336.5
1953	6.068	2.057	4.3	..	1976	2,142.2	1,914.7	13.9	−157.8
1954	14.239	5.143	7.8	..	1977	2,739.9	2,402.7	13.6	−149.3
1955	28.144	10.938	9.6	..	1978	3,538.7	3,372.3	14.1	−49.9
1956[4]	..	..	..	..	1979	5,053.2	4,401.7	14.3	116.9
1957	35.003	14.590	7.4	..	1980	6,486.1	5,297.7	14.4	−584.2
1958	41.097	14.349	7.0	..	1981	7,907.8	6,577.9	14.6	−1,050.9
1959	40.022	21.596	9.9	..	1982	9,178.9	7,636.4	15.1	−712.6
1960	41.995	24.964	10.2	..	1983	10,180.8	9,220.7	16.3	292.0
1961	57.153	23.199	7.9	..	1984	11,072.1	9,693.8	15.6	663.2
1962	88.4	28.2	7.9	..	1985	12,406.4	11,047.4	15.2	643.9
1963	72.8	31.1	6.2	..	1986	13,796.5	12,622.3	15.0	958.5
1964	75.2	37.4	5.2	..					
1965	93.5	54.6	6.8	..					
1966	140.9	87.6	8.4	−36.9					
1967	180.9	129.2	10.1	−32.4					

<資料>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豫算槪要 參考資料(經濟企劃院) 韓國의 財政統計(財務部)

註1) 1970년 以前은 一般財政, 1971년 以後는 一般會計

2) 國稅, 단, 1944년까지는 세입총계이며 단위 百萬원임

3) 韓國銀行 國庫B/S를 基礎로 한 中央政府 財政收支

4) 1954년 財政法 改正으로 1956 會計年度는 나타나지 않음.(1955會計年度 : 1955. 7. 1 ~1956. 12. 31)

3. 産業生産

主要 農產物 生產量

年中	米 穀	麥 類	서 류	豆 類	年中	米 穀	麥 類	서 류	豆 類
	1,000M/T	1,000M/T	1,000T	1,000M/T		1,000M/T	1,000M/T	1,000T	1,000M/T
1899	..	..	..	..	1922	..	..	..	..
1900	..	..	..	..	1923	15,175	8,057	497	5,855
1901	..	..	..	..	1924	13,219	9,700	475	4,451
1902	..	..	..	..	1925	14,773	10,420	512	5,803
1903	..	..	..	..	1926	15,301	9,591	510	5,569
1904	..	..	..	..	1927	17,299	9,080	548	6,018
1905	..	..	..	..	1928	13,512	8,746	527	4,769
1906	..	..	..	..	1929	13,701	9,388	645	5,013
1907	..	..	..	..	1930	19,181	9,964	675	5,628
1908	..	..	..	..	1931	15,873	10,208	576	5,212
1909	..	..	..	..	1932	16,346	10,619	823	5,525
1910	..	..	..	..	1933	18,193	10,371	724	5,707
1911	..	..	..	..	1934	16,717	11,117	593	4,930
1912	..	..	..	..	1935	17,885	12,311	814	5,577
1913	..	..	..	..	1936	19,411	10,405	930	4,769
1914	..	..	..	..	1937	26,797	14,680	1,053	5,412
1915	..	..	..	..	1938	24,139	11,760	1,005	4,918
1916	..	..	..	..	1939	14,356	13,138	892	2,912
1917	..	..	..	..	1940	21,527	12,505	988	4,215
1918	..	..	..	..	1941	24,886	11,505	1,046	3,822
1919	..	..	..	..	1942	15,688	9,728	603	2,347
1920	..	..	..	..	1943	18,719	8,280	1,067	2,825
1921	..	..	..	..	1944	16,052	12,712	1,304	3,425

主要 農產物 生產量(續)

年中	米 穀	麥 類	서 류[1]	豆 類	年中	米 穀	麥 類	서 류[1]	豆 類
	1,000M/T	1,000M/T	1,000M/T	1,000M/T		1,000M/T	1,000M/T	1,000M/T	1,000M/T
1945	12,836	2,484	1,335	1,011	1968	3,195	2,453	759	288
1946	12,050	4,127	982	1,806	1969	4,090	2,459	778	273
1947	13,850	3,722	1,034	1,000	1970	3,939	2,352	783	277
1948	15,486	3,922	1,133	1,119	1971	3,998	2,197	707	263
1949	14,734	5,068	1,239	1,469	1972	3,957	2,222	674	261
1950	14,607	5,234	1,075	1,026	1973	4,212	1,953	611	283
1951	11,349	3,049	948	958	1974	4,445	1,851	543	368
1952	9,284	4,366	686	1,027	1975	4,669	2,273	740	363
1953	14,136	5,151	1,614	1,179	1976	5,215	1,847	667	352
1954	15,003	6,539	1,321	1,318	1977	6,006	862	595	390
1955	15,515	5,450	1,570	1,235	1978	5,797	1,388	565	355
1956[1]	12,781	5,806	1,312	1,267	1979	5,565	1,556	501	326
1957	▲3,002	▲1,200	▲288	▲173	1980	5,550	906	431	279
1958	3,161	1,411	304	175	1981	5,063	919	1,663	315
1959	3,150	1,666	299	158	1982	5,175	820	1,381	295
1960	3,047	1,668	326	150	1983	5,404	930	1,481	277
1961	3,463	1,801	383	190	1984	5,682	824	1,330	296
1962	3,015	1,688	439	182	1985	5,626	584	1,362	275
1963	3,758	1,181	514	182	1986	5,607	459	1,250	251
1964	3,954	1,859	936	191					
1965	3,501	2,136	1,045	203					
1966	3,919	2,375	972	195					
1967	3,603	2,253	631	235					

<資料>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農林水產部

註 1) 1956년까지의 單位는 1,000石임(1石≒0.144톤)

主要 工產品 生產量

年中	金 鋼	自動車	시멘트	船舶	年中	金 鋼	自動車	시멘트	船舶
	1,000T	臺	1,000M/T	1,000M/T		1,000T	臺	1,000M/T	1,000M/T
1899	..	..	..	..	1922	186	..	..	..
1900	..	..	..	..	1923	243	..	..	..
1901	..	..	..	..	1924	309	..	..	..
1902	..	..	..	..	1925	351	..	..	..
1903	..	..	..	..	1926	351	..	..	..
1904	..	..	..	..	1927	484	..	..	..
1905	..	..	..	..	1928	504	..	..	..
1906	..	..	..	..	1929	552	..	..	..
1907	..	..	..	..	1930	532	..	..	..
1908	..	..	..	..	1931	165	..	..	..
1909	..	..	..	..	1932	151	..	..	..
1910	..	..	..	..	1933	258	..	..	..
1911	..	..	..	..	1934	176	..	..	..
1912	..	..	..	..	1935	228	..	..	..
1913	..	..	..	..	1936	234	..	..	..
1914	..	..	..	..	1937	205	..	..	..
1915	..	..	..	..	1938	768	..	..	..
1916	..	..	..	..	1939	850	..	..	..
1917	..	..	..	..	1940	1,185	..	..	..
1918	..	..	..	..	1941	1,363	..	..	..
1919	..	..	..	..	1942	1,898	..	..	..
1920	..	..	..	..	1943	2,364	..	..	..
1921	..	..	..	..	1944	3,332	..	..	..

主要 工產品 生產量(續)

年中	金 鋼	自動車	시멘트	船舶	年中	金 鋼	自動車	시멘트	船舶
	1,000T	臺	1,000M/T	1,000M/T		1,000T	臺	1,000M/T	1,000M/T
1945	··	··	9	8	1968	383	17,657	3,574	31
1946	0.8	··	11	··	1969	438	30,994	4,865	38
1947	··	··	16	··	1970	504	28,819	5,822	39
1948	0.4	··	17	··	1971	547	23,002	6,872	43
1949	··	··	24	··	1972	608	18,648	6,486	50
1950	0.4	··	12	··	1973	1,240	26,314	8,180	163
1951	0.3	··	9	··	1974	2,274	30,451	8,838	221
1952	0.5	··	36	··	1975	2,534	37,179	10,129	430
1953	0.3	··	44	··	1976	3,511	49,545	11,873	853
1954	0.3	··	62	··	1977	4,346	85,210	14,418	643
1955	0.1	··	56	2	1978	4,969	158,958	15,467	769
1956	0.1	··	47	4	1979	7,610	204,447	16,614	525
1957	17	··	92	4	1980	8,558	123,145	15,573	655
1958	20	··	258	5	1981	10,753	134,284	15,599	1,158
1959	38	··	420	5	1982	11,758	162,590	17,912	1,426
1960	50	··	464	4	1983	11,915	221,019	21,214	1,286
1961	47	··	511	5	1984	13,034	265,361	20,359	2,280
1962	125	1,777	790	5	1985	13,539	378,162	20,498	2,796
1963	137	1,254	778	9	1986	14,555	601,546	23,225	2,715
1964	170	249	1,243	12					
1965	227	141	1,614	14					
1966	223	3,430	1,884	18					
1967	331	6,604	2,441	20					

<資料>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韓國金鋼協會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
韓國洋灰工業協會
韓國造船工業協會

電 力 生 產

年中	發電設備	總發電量[1]	1人當 電力生產量	販賣單價	年中	發電設備	總發電量[1]	1人當 電力生產量	販賣單價
	1,000kW	kWh	kWh/명	원/kWh		1,000kW	GWh	kWh/명	원/kWh
1899	..	..	..	..	1922	..	..	..	..
1900	..	..	..	..	1923	..	..	..	..
1901	..	..	..	..	1924	..	..	..	..
1902	..	..	..	..	1925	..	..	..	..
1903	..	..	..	..	1926	..	..	..	..
1904	..	..	..	..	1927	..	..	..	..
1905	..	..	..	..	1928	..	..	..	..
1906	..	..	..	..	1929	..	..	..	..
1907	..	..	..	..	1930	..	..	..	..
1908	..	..	..	..	1931	..	..	..	..
1909	..	..	..	..	1932	..	167,926	..	..
1910	..	..	..	..	1933	..	189,015	..	..
1911	..	..	..	..	1934	..	206,349	..	..
1912	..	..	..	..	1935	..	1,444,055	..	..
1913	..	..	..	..	1936	..	2,082,512	..	..
1914	..	..	..	..	1937	..	2,339,443	..	..
1915	..	..	..	..	1938	..	2,697,748	..	..
1916	..	..	..	..	1939	..	2,959,810	..	..
1917	..	..	..	..	1940	..	3,845,862	..	..
1918	..	..	..	..	1941	..	4,266,894	..	..
1919	..	..	..	..	1942	..	4,860,165	..	..
1920	..	..	..	..	1943	..	5,691,759	..	..
1921	..	..	..	..	1944	..	5,761,000	..	..

電 力 生 産(續)

年中	發電設備	總發電量[1]	1人當 電力生産量	販賣單價	年中	發電設備	總發電量[1]	1人當 電力生産量	販賣單價
	1,000kW	GWh	kWh/명	원/kWh		1,000kW	GWh	kWh/명	원/kWh
1945	199	711	..	..	1968	1,274	6,026	200	6.0
1946	..	676	35	..	1969	1,636	7,700	250	5.9
1947	..	829	42	..	1970	2,508	9,167	292	6.3
1948	..	694	35	..	1971	2,628	10,540	331	6.4
1949	230	655	32	..	1972	3,872	11,839	366	7.4
1950	..	421	..	..	1973	4,272	14,826	451	7.3
1951	254	337	..	..	1974	4,523	16,835	503	10.6
1952	..	640	31	..	1975	4,720	19,837	572	17.1
1953	..	736	34	..	1976	4,810	23,117	645	19.4
1954	..	899	..	..	1977	5,790	26,587	730	21.8
1955	..	879	44	..	1978	6,916	31,510	852	22.4
1956	..	1,118	54	..	1979	8,033	35,600	948	32.2
1957	..	1,323	62	..	1980	9,391	37,239	977	50.9
1958	..	1,512	69	..	1981	9,835	40,207	1,038	64.3
1959	..	1,686	73	..	1982	10,304	43,122	1,096	69.9
1960	..	1,697	68	..	1983	13,115	48,850	1,223	67.7
1961	367	1,773	70	3.2	1984	14,190	53,808	1,328	67.4
1962	434	1,979	75	3.5	1985	16,137	58,007	1,413	67.9
1963	465	2,236	82	3.3	1986	18,060	64,695	1,556	65.5
1964	597	2,700	96	3.7					
1965	769	3,250	113	4.7					
1966	769	3,886	133	5.4					
1967	917	4,913	166	5.6					

<資料> 韓國電力公社

朝鮮經濟年報(朝鮮銀行)

註 1) 1945년 이전 계열은 남북한 전체 실적임

4. 運輸·通信

道　　路

年末	道路總延長	高速道路延長	道路鋪裝率	自動車保有	年末	道路總延長	高速道路延長	道路鋪裝率	自動車保有
	km	km	%	臺		km	km	%	臺
1945	··	··	··	7,326	1968	35,022	87	6.4	80,951
1946	··	··	··	9,106	1969	37,169	472	8.4	106,138
1947	24,433	··	4.3	13,453	1970	40,244	551	9.6	126,506
1948	··	··	··	14,703	1971	40,635	655	14.2	140,269
1949	··	··	··	15,871	1972	42,868	655	15.8	145,638
1950	25,183	··	2.6	··	1973	43,581	1,013	17.9	165,307
1951	25,213	··	2.3	8,655	1974	44,178	1,013	19.6	177,505
1952	25,997	··	2.3	11,544	1975	44,905	1,142	22.3	193,927
1953	26,033	··	2.3	13,507	1976	45,514	1,142	23.8	218,978
1954	26,276	··	2.4	15,950	1977	45,664	1,225	26.5	275,312
1955	26,629	··	2.4	18,356	1978	45,955	1,225	29.5	384,536
1956	26,756	··	2.6	25,328	1979	46,331	1,225	30.8	494,878
1957	27,169	··	2.7	28,086	1980	46,951	1,225	33.2	527,729
1958	27,169	··	3.0	28,443	1981	50,337	1,245	34.1	571,754
1959	27,169	··	3.5	30,392	1982	53,936	1,245	35.8	646,996
1960	27,169	··	3.7	30,751	1983	54,600	1,245	39.0	785,316
1961	27,169	··	4.1	27,371	1984	51,004	1,421	46.3	948,319
1962	27,169	··	4.7	28,968	1985	52,264	1,415	49.9	1,113,430
1963	28,056	··	5.1	32,199	1986	55,663	1,415	54.2	1,309,434
1964	28,145	··	5.5	35,655					
1965	28,145	··	5.8	39,126					
1966	34,476	··	5.6	48,838					
1967	34,799	··	6.0	60,697					

<資料> 建設部, 交通部

鐵　　道

年中	鐵道總延長	鐵道旅客輸送	鐵道貨物輸送	機關車保有	年中	鐵道總延長	鐵道旅客輸送	鐵道貨物輸送	機關車保有
	Km	1,000명	1,000M/T	臺		Km	1,000명	1,000M/T	臺
1945	··	··		488	1968	5,319	150,969	28,857	367
1946	··	50,375	3,045	548	1969	5,437	154,696	30,643	397
1947	··	54,641	4,838	656	1970	5,500	131,251	31,551	386
1948	··	61,128	5,118	531	1971	5,582	128,759	31,955	432
1949	··	77,422	6,421	621	1972	5,507	137,139	31,547	444
1950	··	··	··	728	1973	5,541	143,009	37,762	480
1951	··	24,071	13,023	626	1974	5,590	168,469	39,708	490
1952	··	44,563	13,452	629	1975	5,619	220,952	42,758	539
1953	··	46,097	12,238	561	1976	5,653	248,699	43,630	523
1954	··	58,174	9,269	514	1977	5,711	301,592	47,631	541
1955	··	57,278	10,368	526	1978	5,788	371,022	49,654	543
1956	4,504	66,293	11,045	528	1979	5,860	423,657	50,879	536
1957	4,519	53,429	12,007	545	1980	6,007	430,733	49,009	545
1958	4,569	70,101	12,094	528	1981	6,045	441,129	48,761	541
1959	4,593	71,524	13,773	534	1982	6,113	443,570	47,437	538
1960	4,584	75,684	14,422	552	1983	6,129	469,423	50,478	539
1961	4,630	88,291	15,393	445	1984	6,168	489,061	53,661	549
1962	4,696	100,555	17,914	375	1985	6,299	503,122	55,346	561
1963	4,730	109,348	19,774	403	1986	6,324	518,956	58,238	571
1964	4,779	118,535	20,311	397					
1965	4,897	107,177	22,377	397					
1966	5,049	138,299	24,064	424					
1967	5,205	151,972	27,440	455					

<資料> 鐵道廳

海 運·港 灣

年中	荷役能力	船舶旅客輸送	船舶貨物輸送[1]	登錄船舶[2]	年中	荷役能力	船舶旅客輸送	船舶貨物輸送[1]	登錄船舶[2]
	1,000M/T	1,000名	1,000M/T	1,000G/T		1,000M/T	1,000名	1,000M/T	1,000G/T
1945	··	··	··	··	1968	··	6,561	19,199	681
1946	··	··	··	··	1969	··	6,089	25,172	857
1947	··	··	··	··	1970	19,507	5,893	29,172	924
1948	··	··	··	102	1971	18,781	6,409	35,521	977
1949	··	··	180	··	1972	23,013	6,308	33,615	1,109
1950	··	··	246	··	1973	27,682	7,306	41,545	1,071
1951	··	··	1,118	··	1974	27,682	6,669	44,656	1,438
1952	··	··	1,823	229	1975	30,021	5,956	46,683	1,566
1953	··	··	2,974	··	1976	34,000	6,057	54,979	2,124
1954	··	··	··	··	1977	41,000	6,791	67,314	2,379
1955	··	··	3,916	··	1978	65,000	7,790	78,670	3,340
1956	··	··	4,307	··	1979	75,000	7,972	91,751	3,931
1957	··	··	4,710	··	1980	82,261	8,621	90,204	4,174
1958	··	··	4,319	326	1981	87,423	9,281	100,861	4,959
1959	··	··	3,086	329	1982	95,512	9,659	106,919	5,650
1960	··	··	3,423	343	1983	100,317	9,034	117,506	6,139
1961	··	··	3,608	369	1984	112,778	9,438	126,434	6,501
1962	··	··	5,189	373	1985	118,413	8,599	134,847	6,662
1963	··	··	5,923	294	1986	150,676	8,800	149,033	6,655
1964	··	5,874	5,761	318					
1965	··	5,513	7,445	370					
1966	14,650	5,920	9,178	470					
1967	··	6,713	13,923	507					

<資料> 海運港灣廳, 交通部

註 1) 入港基準

2) 1967년 부터는 漁船을 除外

通　　信

年中	電話加入者數	100人當 電話普及率	電話自動化率	1人當 郵便物利用	年中	電話加入者數	100人當 電話普及率	電話自動化率	1人當 郵便物利用
	名	臺	%	通/年		名	臺	%	通/年
1945	..	..	..	..	1968	384,514	1.3	72.6	16.8
1946	..	..	..	..	1969	442,452	1.4	74.1	18.3
1947	..	..	..	..	1970	481,207	1.5	73.4	18.1
1948	..	..	..	..	1971	553,327	1.7	71,4	18.2
1949	..	..	..	..	1972	644,888	2.0	72.0	19.0
1950	..	..	..	..	1973	763,214	2.3	69.9	18.6
1951	..	..	..	..	1974	876,702	2.6	72.0	20.3
1952	..	..	..	..	1975	1,058,075	3.1	74.5	20.4
1953	..	..	..	..	1976	1,270,837	3.4	77.7	19.9
1954	..	..	..	..	1977	1,537,239	4.2	80.9	20.8
1955	32,423	0.2	28.3	4.0	1978	1,879,263	5.0	82.8	24.1
1956	38,753	0.2	38.9	4.7	1979	2,292,686	6.3	83.8	27.3
1957	49,652	0.2	38.6	4.8	1980	2,704,504	7.2	84.5	28.7
1958	59,548	0.3	39.9	5.1	1981	3,263,322	8.4	87.1	29.2
1959	72,552	0.3	36.4	5.9	1982	4,079,590	10.4	89.7	27.0
1960	86,604	0.3	39.1	6.7	1983	4,809,897	12.0	92.3	28.3
1961	97,015	0.4	44.7	6.3	1984	5,594,973	13.8	93.7	29.6
1962	127,686	0.5	50.5	7.1	1985	6,517,395	16.0	96.6	31.6
1963	157,327	0.6	52.5	8.4	1986	7,520,699	18.3	98.7	33.2
1964	193,075	0.7	55.9	10.8					
1965	220,635	0.8	60.9	13.4					
1966	277,756	1.0	64.8	14.2					
1967	339,280	1.1	69.6	15.3					

<資料> 韓國電氣通信公社. 遞信部

5. 對 外 去 來

國 際 收 支

年中	經常收支	貿易收支	金 및 外換保有額[1]	對美換率[2]	年中	經常收支	貿易收支	金 및 外換保有額[1]	對美換率[2]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원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원
1945	..	..	..	0.015	1968	-440.3	-835.7	391.0	281.50
1946	..	..	..	0.015	1969	-548.6	-991.7	552.9	304.50
1947	..	..	..	0.05	1970	-622.5	-922.0	609.7	316.70
1948	..	..	..	0.45	1971	-847.5	-1,045.9	568.1	373.20
1949	..	..	..	0.90	1972	-371.2	-573.9	739.7	398.90
1950	23.1	-54.6	26.8	2.50	1973	-308.8	-566.0	1,094.4	397.50
1951	52.8	-113.9	38.0	6.00	1974	-2,022.7	-1,936.8	1,055.7	484.00
1952	6.12	-186.4	82.7	6.00	1975	-1,886.9	-1,671.4	1,550.2	484.00
1953	-67.8	-305.7	108.7	18.00	1976	-313.6	-590.5	2,960.6	484.00
1954	-33.4	-218.2	107.9	18.00	1977	12.3	-476.6	4,306.4	484.00
1955	-36.3	-309.9	96.1	50.00	1978	-1,085.2	-1,780.8	4,937.1	484.00
1956	-23.1	-354.8	98.6	50.00	1979	-4,151.1	-4,395.5	5,708.1	484.00
1957	-2.6	-370.9	115.6	50.00	1980	-5,320.7	-4,384.1	6,571.4	659.00
1958	37.7	-326.4	146.5	50.00	1981	-4,646.0	-3,628.3	6,891.0	700.50
1959	16.4	-253.6	147.3	50.00	1982	-2,649.6	-2,594.4	6,983.7	748.80
1960	13.4	-272.5	157.0	65.00	1983	-1,606.0	-1,763.5	6,909.7	795.50
1961	33.1	-242.2	207.0	130.00	1984	-1,372.6	-1,035.9	7,649.6	827.40
1962	-55.5	-335.3	168.6	130.00	1985	-887.4	-19.0	7,748.6	890.20
1963	-143.3	-410.2	131.5	130.00	1986	4,617.0	4,205.9	7,955.2	861.40
1964	-26.1	-244.9	136.4	256.02					
1965	9.1	-240.3	146.3	272.06					
1966	-103.4	-429.5	245.2	271.46					
1967	-191.9	-574.2	356.6	274.60					

<資料>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國際收支統計(〃)

註 1) 年末 現在基準, 1988년부터는 國內外國換銀行 保有分 除外

註 2) 年月末 現在 韓國銀行 集中基準率, 단 1963년까지는 公定換率, 1964~66년은 韓國銀行 集中賣渡率

交　易　量

年中	輸出	輸入	L/C來到	I/L發給	年中	輸出	輸入	L/C來到	I/L發給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1945	..	..	..	..	1968	455.4	1,462.9	497.1	932.5
1946	..	..	..	..	1969	622.5	1,823.6	682.2	1,063.7
1947	..	..	..	..	1970	835.2	1,984.6	948.1	1,214.3
1948	..	..	..	..	1971	1,067.6	2,394.3	1,273.0	1,496.9
1949	..	..	..	..	1972	1,624.1	2,522.0	1,935.8	1,610.8
1950	..	..	..	..	1973	3,225.0	4,240.3	3,911.8	4,121.1
1951	..	..	..	..	1974	4,460.4	6,851.8	4,391.5	5,960.7
1952	27.7	214.2	..	..	1975	5,081.0	7,274.4	5,437.5	5,622.5
1953	39.6	345.4	..	..	1976	7,715.3	8,773.6	7,957.8	7,381.8
1954	24.2	243.3	..	..	1977	10,046.5	10,810.5	9,527.4	9,895.5
1955	▲18.0	▲341.4	..	..	1978	12,710.6	14,971.9	11,594.8	14,171.5
1956	24.6	386.1	..	..	1979	15,055.5	20,338.6	12,731.7	17,777.2
1957	22.2	442.2	..	..	1980	17,504.9	22,291.7	15,836.4	19,454.1
1958	16.5	378.2	..	..	1981	21,253.8	26,131.4	17,896.1	21,311.0
1959	19.8	303.8	..	..	1982	21,853.4	24,250.8	16,096.1	21,460.5
1960	32.8	343.8	..	..	1983	24,445.1	26,192.2	17,581.7	23,502.0
1961	40.9	316.1	..	..	1984	29,244.9	30,631.4	19,383.9	25,519.3
1962	54.8	421.8	..	..	1985	30,283.1	31,135.7	19,558.2	24,893.2
1963	86.8	560.3	..	..	1986	34,715.5	31,583.9	25,358.9	28,197.4
1964	119.1	404.4	..	..					
1965	175.1	463.4	235.7	..					
1966	250.3	716.4	267.9	..					
1967	320.2	996.2	389.6	..					

〈資料〉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外 資 導 入

年中	援助受入	公共借款導入	商業借款導入	外國人投資	年中	援助受入	公共借款導入	商業借款導入	外國人投資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百萬달러
1945	4.4	..	..	..	1968	120.6	70.2	268.4	19.2
1946	49.5	..	..	..	1969	103.9	213.8	410.6	15.9
1947	175.4	..	..	..	1970	85.1	209.9	366.7	66.1
1948	179.6	..	..	..	1971	64.0	303.4	345.2	42.9
1949	116.5	..	..	..	1972	50.6	324.5	326.4	78.8
1950	58.7	..	..	..	1973	35.1	368.5	344.4	143.3
1951	106.5	..	..	..	1974	41.4	316.7	616.0	124.1
1952	161.3	..	..	..	1975	48.8	482.1	804.5	61.6
1953	194.2	..	..	..	1976	14.4	710.7	842.5	85.5
1954	153.9	..	..	..	1977	8.0	608.0	1,260.0	104.4
1955	236.7	..	..	..	1978	10.6	817.7	1,929.8	100.5
1956	326.7	..	..	..	1979	11.8	1,085.6	1,621.8	126.0
1957	382.9	..	..	..	1980	17.1	1,518.3	1,415.8	96.2
1958	321.3	..	..	..	1981	13.3	1,704.5	1,242.5	105.4
1959	222.2	2.2	..	..	1982	12.5	1,877.3	918.4	100.6
1960	265.1	2.2	..	..	1983	..	1,493.9	973.2	101.4
1961	206.9	1.2	..	..	1984	..	1,424.4	858.4	170.7
1962	200.0	1.8	2.6	0.6	1985	..	1,023.8	964.1	250.3
1963	207.5	40.3	20.5	4.8	1986	..	880.1	1,619.9	477.5
1964	141.0	14.8	13.2	0.7					
1965	134.6	5.0	41.5	5.6					
1966	122.0	73.1	118.7	13.4					
1967	134.5	105.6	124.0	7.6					

〈資料〉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國際收支統計(〃)

6. 物　　價

物 價 指 數

年中	都賣物價指數[1]	消費者物價指數	輸出物價指數	輸入物價指數	年中	都賣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	輸出物價指數	輸入物價指數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899	..	..	..	..	1922	0.5968	..	..	..
1900	..	..	..	..	1923	0.5895	..	..	..
1901	..	..	..	..	1924	0.6342	..	..	..
1902	..	..	..	..	1925	0.6710	..	..	..
1903	..	..	..	..	1926	0.6104	..	..	..
1904	..	..	..	..	1927	0.5711	..	..	..
1905	..	..	..	..	1928	0.5600	..	..	..
1906	..	..	..	..	1929	0.5407	..	..	..
1907	..	..	..	..	1930	0.4716	..	..	..
1908	..	..	..	..	1931	0.3784	..	..	..
1909	..	..	..	..	1932	0.3768	..	..	..
1910	..	..	..	..	1933	0.4177	..	..	..
1911	0.2914	..	..	..	1934	0.4261	..	..	..
1912	0.3069	..	..	..	1935	0.4684	..	..	..
1913	0.3139	..	..	..	1936	0.4974	..	..	..
1914	0.2953	..	..	..	1937	0.5800	..	..	..
1915	0.2787	..	..	..	1938	0.6927	..	..	..
1916	0.3244	..	..	..	1939	0.8122	..	..	..
1917	0.4507	..	..	..	1940	0.8954	..	..	..
1918	0.6140	..	..	..	1941	0.9283	..	..	..
1919	0.7698	..	..	..	1942	0.9728	..	..	..
1920	0.7986	..	..	..	1943	1.0702	..	..	..
1921	0.6007	..	..	..	1944	1.1998	..	..	..

註1) 1935년까지는 1985년 기준지수(1,000,000)에 연결시킨 1910년 7월 기준지수
1936년부터 1945년까지는 1985년 기준지수(1,000,000)에 연결시킨 1936년 기준지수

物 價 指 數(續)

年中	都賣物價指數[1]	消費者物價指數	輸出物價指數	輸入物價指數	年中	都賣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	輸出物價指數	輸入物價指數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85=100
1945	..	..	..	..	1968	12.48	12.08	..	..
1946	0.011	..	..	..	1969	13.32	13.58	..	..
1947	0.020	..	..	..	1970	14.54	15.78	..	..
1948	0.033	..	..	..	1971	15.80	17.86	52.7	34.7
1949	0.045	..	..	..	1972	18.00	19.95	52.0	37.1
1950	..	..	..	..	1973	19.25	20.58	58.5	46.7
1951	..	..	..	..	1974	27.36	25.58	62.6	65.5
1952	0.95	..	..	..	1975	34.61	32.1	61.9	62.9
1953	1.19	..	..	..	1976	38.80	37.0	69.8	64.8
1954	1.53	..	..	..	1977	42.30	40.7	74.4	65.4
1955	2.76	..	..	..	1978	47.25	46.6	84.9	68.3
1956	3.63	..	..	..	1979	56.09	55.1	99.8	86.5
1957	4.22	..	..	..	1980	77.96	70.9	104.4	110.3
1958	3.96	..	..	..	1981	93.86	86.2	107.5	113.0
1959	4.07	..	..	..	1982	98.24	92.3	103.6	107.0
1960	4.50	..	..	..	1983	98.40	95.4	100.6	102.5
1961	5.10	..	..	..	1984	99.12	97.6	102.4	102.8
1962	5.58	..	..	..	1985	100.0	100.0	100.0	100.0
1963	6.73	..	..	..	1986	98.5	102.8	99.6	93.3
1964	9.06	..	..	..					
1965	9.97	8.83	..	..					
1966	10.85	9.84	..	..					
1967	11.54	10.90	..	..					

主 要 商 品

年中	米 穀	煉 炭	揮發油	金	年中	米 穀	煉 炭	揮發油	金
	원/80kg	원/3.6kg	원/ℓ	원/g		원/80kg	원/3.6kg	원/ℓ	원/g
1945	..	..	..	..	1968	4,289	13.35	21.27	718.09
1946	3,648	0.009	0.024	0.254	1969	5,140	14.86	22.74	760.24
1947	6,218	0.003	0.064	0.687	1970	5,784	16.29	▲24.40	745.22
1948	7,250	0.006	0.070	1.402	1971	7,153	18.20	29.96	674.17
1949	9,554	0.008	0.156	2.114	1972	9,884	19.60	38.70	846
1950	..	..	..	..	1973	9,728	20.21	45.37	980
1951	..	..	..	..	1974	11,852	23.98	148.73	1,699
1952	▲465	▲0.135	▲0.750	▲26.760	1975	18,367	32.63	167.28	2,659
1953	484	0.198	0.975	49.897	1976	22,235	34.71	180.36	2,558
1954	▲786	▲0.478	▲2.65	▲87.493	1977	24,196	43.46	176.18	2,874
1955	▲878	▲5.47	▲4.09	▲95.43	1978	28,196	56.32	175.90	4,079
1956	1,403	5.415	3.38	113.45	1979	37,555	70.93	261.17	6,590
1957	1,591	6.43	4.59	128.31	1980	47,663	96.17	489.78	10,388
1958	1,311	4.995	4.59	135.90	1981	59,384	125.72	597.76	10,969
1959	1,157	5.23	5.54	159.92	1982	60,644	143.00	636.34	9,748
1960	1,368	5.29	▲8.15	187.31	1983	61,164	145.00	571.68	11,342
1961	1,687	6.045	17.57	200.83	1984	61,428	145.00	563.60	10,517
1962	1,768	6.205	21.96	198.09	1985	64,842	151.00	563.60	10,012
1963	2,801	6.815	21.80	220.80	1986	71,252	160.28	496.66	11,411
1964	3,470	7.33	27.59	280.97					
1965	3,324	8.70	▲19.20	▲348.45					
1966	3,556	10.13	15.16	399.72					
1967	3,750	12.76	15.16	▲626.23					

註1) 都賣物價基準

7. 雇傭·賃金

雇　　傭

年度	經濟活動人口	就業者數	失業者數	就業率	年度	經濟活動人口	就業者數	失業者數	就業率
	1,000名	1,000名	1,000名	%		1,000名	1,000名	1,000名	%
1945	..	..	..	..	1968	9,647	9,155	492	5.1
1946	..	..	..	..	1969	9,888	9,414	474	4.8
1947	..	..	..	..	1970	10,062	9,617	445	4.4
1948	..	..	..	..	1971	10,407	9,946	461	4.4
1949	..	..	..	..	1972	10,865	10,379	486	4.5
1950	..	..	..	..	1973	11,389	10,942	447	3.9
1951	..	..	..	..	1974	11,900	11,421	479	4.0
1952	..	..	..	..	1975	12,193	11,692	501	4.1
1953	..	..	..	..	1976	12,911	12,412	499	3.9
1954	..	..	..	..	1977	13,316	12,812	504	3.8
1955	..	..	..	..	1978	13,849	13,412	437	3.2
1956	..	..	..	..	1979	14,142	13,602	540	3.8
1957	..	..	..	..	1980	14,431	13,683	748	5.2
1958	..	..	..	..	1981	14,683	14,023	660	4.5
1959	..	..	..	..	1982	15,032	14,379	653	4.4
1960	..	..	..	..	1983	15,118	14,505	613	4.1
1961	..	..	..	..	1984	14,997	14,429	568	3.8
1962	..	..	..	..	1985	15,592	14,970	622	4.0
1963	8,343	7,662	681	8.2	1986	16,116	15,505	611	3.8
1964	8,449	7,799	650	7.7					
1965	8,859	8,206	653	7.4					
1966	9,071	8,423	648	7.1					
1967	9,295	8,717	578	6.2					

〈資料〉 經濟活動人口年報(經濟企劃院)

註1) 1970년 이후는 만15세 이상 인구 기준.
1969년 이전은 만14세 이상 인구 기준

賃　　金[1)]

年度	全産業	製造業[2)]	建設業	金融保險 不動産 및 事業서비스業	年度	全産業	製造業[2)]	建設業	金融保險 不動産 및 事業서비스業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1945	··	··	··	··	1968	··	8,400	··	··
1946	··	··	··	··	1969	··	11,270	··	··
1947	··	··	··	··	1970	17,831	14,301	24,295	37,195
1948	··	··	··	··	1971	20,581	16,611	26,645	44,187
1949	··	··	··	··	1972	24,179	18,923	32,006	52,715
1950	··	··	··	··	1973	26,954	22,330	36,740	61,032
1951	··	··	··	··	1974	35,542	30,209	43,984	73,728
1952	··	··	··	··	1975	46,019	38,378	61,590	96,251
1953	··	··	··	··	1976	62,362	51,685	115,274	122,992
1954	··	··	··	··	1977	82,355	69,168	154,519	152,312
1955	··	··	··	··	1978	111,201	92,907	222,772	206,364
1956	··	··	··	··	1979	142,665	119,915	247,835	246,384
1957	··	2,030	··	··	1980	176,058	146,684	257,697	281,560
1958	··	2,170	··	··	1981	212,477	176,176	319,767	339,664
1959	··	2,350	··	··	1982	245,981	202,117	365,970	387,992
1960	··	2,330	··	··	1983	273,119	226,790	387,082	417,352
1961	··	2,610	··	··	1984	296,907	245,261	380,550	479,600
1962	··	2,780	··	··	1985	324,283	269,652	400,397	519,464
1963	··	3,180	··	··	1986	350,965	294,485	415,676	551,464
1964	··	3,880	··	··					
1965	··	4,600	··	··					
1966	··	5,420	··	··					
1967	··	6,640	··	··					

〈資料〉 每月 勞動統計(勞動部)
　　産業生産年報(經濟企劃院)
註1) 常傭從業員 月當 給與額
　2) 1957~69년은 産業生産年報 資料

8. 國民所得

總 量 指 標

年中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1人當GNP	經濟成長率	年中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1人當GNP	經濟成長率
	百萬달러	百萬달러	달러	%		百萬달러	百萬달러	달러	%
1945	..	..	..	..	1968	5,226	5,153	169	11.3
1946	..	..	..	..	1969	6,625	6,549	210	13.8
1947	..	..	..	..	1970	▲81	▲81	▲252	7.6
1948	..	..	..	..	1971	95	95	289	8.6
1949	..	..	..	..	1972	107	107	319	5.1
1950	..	..	..	..	1973	135	136	396	13.2
1951	..	..	..	..	1974	188	190	542	8.1
1952	..	..	..	..	1975	209	213	594	6.4
1953	1,353	1,336	67	..	1976	287	291	803	13.1
1954	1,452	1,438	70	5.1	1977	368	373	1,012	9.8
1955	1,395	1,378	65	4.5	1978	515	522	1,396	9.8
1956	1,450	1,436	66	1.4	1979	615	625	1,644	7.2
1957	1,666	1,654	74	7.6	1680	605	626	1,592	−3.7
1958	1,875	1,861	80	5.5	1981	668	697	1,734	5.9
1959	1,949	1,936	81	3.8	1982	713	744	1,824	7.2
1960	1,948	1,970	79	1.1	1983	795	822	2,002	12.6
1961	2,103	2,083	82	5.6	1984	870	901	2,158	9.3
1962	2,315	2,294	87	2.2	1985	897	929	2,194	7.0
1963	2,718	2,700	100	9.1	1986	1,028	1,060	2,505	12.9
1964	2,876	2,855	103	9.6					
1965	3,006	2,978	105	5.8					
1966	3,671	3,624	125	12.7					
1967	4,274	4,200	142	6.6					

註) 國民總生産 및 國內總生産 자료의 1970년이전 계열은 단위 億 달러임

關 聯 指 標

年中	總貯蓄率	國內總投資率	輸出入의 對GNP比率	勞動所得分配率	年中	總貯蓄率	國內總投資率	輸出入의 對GNP比率	勞動所得分配率
	%	%	%	%		%	%	%	%
1945	..	..	..	..	1968	18.2	24.9	40.6	37.5
1946	..	..	..	..	1989	21.4	27.9	41.4	38.7
1947	..	..	..	..	1970	▲18.0	▲24.3	▲39.0	▲41.0
1948	..	..	..	..	1971	16.0	24.8	42.5	41.1
1949	..	..	..	..	1972	17.2	21.0	46.1	40.5
1950	..	..	..	..	1973	22.6	25.2	63.2	40.8
1951	..	..	..	..	1974	20.3	31.8	68.2	39.2
1952	..	..	..	..	1975	18.2	28.8	66.1	40.4
1953	13.1	14.7	12.9	25.8	1976	24.3	26.6	65.5	41.9
1954	10.4	11.4	9.5	31.4	1977	27.6	28.3	65.6	44.0
1955	10.3	11.6	12.9	30.1	1978	29.7	32.6	64.7	46.3
1956	8.6	8.0	15.5	28.6	1979	28.4	35.9	64.6	48.8
1957	13.9	14.0	14.3	30.3	1880	23.1	32.0	80.6	51.9
1958	12.8	11.8	13.6	34.1	1981	22.7	29.9	84.9	51.6
1959	10.8	10.4	13.7	38.6	1982	24.2	28.9	78.4	52.7
1960	9.0	10.0	16.8	37.4	1983	27.6	29.2	77.0	54.0
1961	11.7	12.0	21.3	34.5	1984	29.4	30.3	77.5	53.5
1962	11.0	11.8	22.6	36.1	1985	29.1	29.9	73.8	53.2
1963	14.4	17.0	21.3	30.7	1986	32.8	28.9	76.9	51.8
1964	14.0	13.2	20.2	28.1					
1965	13.2	14.1	25.5	31.8					
1966	16.6	20.4	32.2	33.0					
1967	15.4	20.9	36.0	36.7					

産 業 構 造

年中	農林漁業	鑛工業	電氣, 가스, 水道 및 建設業	서비스業	年中	農林漁業	鑛工業	電氣, 가스, 水道 및 建設業	서비스業
	%	%	%	%		%	%	%	%
1945	..	..	..	..	1968	28.7	21.6	6.2	43.5
1946	..	..	..	..	1969	27.9	21.7	7.2	43.2
1947	..	..	..	..	1970	▲26.7	▲22.4	▲6.5	▲44.2
1948	..	..	..	..	1971	27.2	22.5	5.9	44.5
1949	..	..	..	..	1972	26.8	23.5	5.6	44.0
1950	..	..	..	..	1973	25.0	26.2	5.8	42.9
1951	..	..	..	..	1974	24.8	27.1	5.5	42.5
1952	..	..	..	..	1975	25.0	27.5	6.0	41.5
1953	47.3	10.1	2.6	40.0	1976	23.6	28.7	5.9	41.8
1954	39.8	12.7	3.1	44.4	1977	22.4	28.9	7.0	41.6
1955	44.5	12.6	3.6	39.3	1978	20.6	29.4	9.0	40.9
1956	46.9	12.7	3.3	37.1	1979	19.2	29.9	10.2	40.7
1957	45.2	12.7	4.2	37.9	1980	14.9	31.0	10.4	43.7
1957	40.7	14.4	4.1	40.7	1981	15.6	31.3	9.4	43.7
1959	33.8	15.9	4.3	46.0	1982	14.7	30.4	10.0	45.0
1960	36.8	15.9	4.1	43.2	1983	13.6	31.0	10.6	44.8
1961	39.1	15.5	4.4	41.0	1984	12.9	31.8	10.7	44.6
1962	37.0	16.4	4.6	42.1	1985	12.8	31.3	10.5	45.4
1963	43.4	16.3	3.9	36.3	1986	11.5	32.6	10.5	45.7
1964	46.8	17.4	3.7	32.1					
1965	38.0	20.0	4.7	37.2					
1966	34.8	20.5	5.1	39.6					
1967	30.6	21.0	5.3	43.0					

9. 資 金 循 環

資 金 過 不 足

年中	企業部門	個人部門	政府部門	海外部門	年中	企業部門	個人部門	政府部門	海外部門
	10億원	10億원	10億원	10億원		10億원	10億원	10億원	10億원
1945	..	..	..	..	1968	−167.8	36.9	21.0	121.8
1946	..	..	..	..	1969	−200.9	76.4	−20.0	158.2
1947	..	..	..	..	1970	▲−428.2	▲234.8	▲14.2	▲194.9
1948	..	..	..	..	1971	−540.6	340.3	−25.7	290.2
1949	..	..	..	..	1972	−543.6	350.2	−17.0	134.0
1950	..	..	..	..	1973	−1,098.5	914.2	11.3	115.5
1951	..	..	..	..	1974	−1,423.7	515.0	42.5	806.9
1952	..	..	..	..	1975	−1,870.5	905.4	−58.2	972.3
1953	..	..	..	..	1976	−1,713.1	1,210.5	59.5	268.3
1954	..	..	..	..	1977	−2.584.5	2,377.9	7.4	9.5
1955	..	..	..	..	1978	−3,354.8	2,410.9	177.1	676.5
1956	..	..	..	..	1979	−4,855.8	2,120.5	16.5	2,168.2
1957	..	..	..	..	1980	−6,263.1	2,091.0	472.3	3,445.8
1957	..	..	..	..	1981	−7,124.9	3,145.4	157.6	3,431.7
1959	..	..	..	..	1982	−7,005.6	4,711.5	181.3	2,885.7
1960	..	..	..	..	1983	−6,160.5	3,465.9	861.5	1,977.9
1961	..	..	..	..	1984	−7,533.1	4,285.7	1,147.5	1,827.2
1962	..	..	..	..	1985	−7,849.4	5,237.7	907.2	1,515.8
1963	−25.3	7.3	7.4	18.6	1986	−6,820.3	8,739.5	1,293.1	−3,572.5
1964	−19.7	12.4	12.4	5.8					
1965	−42.6	17.6	19.7	−5.7					
1966	−82.2	31.3	7.7	28.1					
1967	−121.4	26.3	21.7	51.9					

＜資料＞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關 聯 指 標

年中	金融關聯比率	個人金融資產蓄積率[1]	企業不足資金對GNP比率	金融關聯資金仲介寄與度[2]	年中	金融機關比率	個人金融資產蓄積率[1]	企業不足資金對GNP比率	金融機關資金仲介寄與度[2]
	—	—	%	%		—	—	%	%
1945	..	..	..	..	1968	1.15	0.46	10.2	47.0
1946	..	..	..	..	1969	1.32	0.55	9.3	50.7
1947	..	..	..	..	1970	▲2.12	▲0.60	▲15.4	▲31.5
1948	..	..	..	..	1971	2.13	0.65	15.8	27.6
1949	..	..	..	..	1972	2.25	0.67	13.0	34.9
1950	..	..	..	..	1973	2.32	0.75	20.4	34.4
1951	..	..	..	..	1974	2.21	0.68	18.7	48.3
1952	..	..	..	..	1975	2.17	0.71	18.5	31.8
1953	..	..	..	..	1976	2.05	0.69	12.3	34.9
1954	..	..	..	..	1977	2.12	0.76	14.5	36.6
1955	..	..	..	..	1978	2.14	0.75	14.0	45.0
1956	..	..	..	..	1979	2.16	0.74	15.8	45.2
1957	..	..	..	..	1980	2.39	0.77	17.0	43.1
1958	..	..	..	..	1981	2.57	0.83	15.6	40.0
1959	..	..	..	..	1982	2.30	0.93	13.4	42.0
1960	..	..	..	..	1983	2.94	0.97	10.0	47.5
1961	..	..	..	..	1984	3.09	1.03	10.7	55.5
1962	..	..	..	..	1985	3.27	1.12	10.1	55.1
1963	0.81	0.28	5.0	43.4	1986	3.33	1.20	7.5	50.6
1964	0.68	0.24	2.8	71.5					
1965	0.76	0.27	5.3	58.6					
1966	0.94	0.29	7.9	39.1					
1967	0.97	0.36	9.5	46.8					

註 1) 個人金融資產/個人可處分所得
2) 金融機關借入/國內非金融部門資金調達

10. 教　　育

就學·進學率

年末	國民學校[1]	中 學 校	高等學校	大 學 校	年末	國民學校	中 學 校	高等學校	大 學 校
	%	%	%	%		%	%	%	%
1945	..	..	..	..	1968	..	58.55	68.58	29.47
1946	..	..	..	..	1969	..	61.77	70.15	26.94
1947	..	..	..	..	1970	102.4	66.78	70.06	28.30
1948	..	..	..	..	1971	..	69.56	69.35	29.05
1949	..	..	..	..	1972	..	71.04	67.18	28.12
1950	..	..	..	..	1973	..	70.72	68.07	26.45
1951	..	..	..	..	1974	..	74.69	67.58	26.45
1952	..	..	..	..	1975	103.2	77.22	74.67	25.08
1953	..	..	..	..	1976	..	79.52	75.48	23.76
1954	..	..	..	..	1977	..	84.53	76.83	21.43
1955	..	..	..	..	1978	..	89.68	79.33	22.03
1956	..	..	..	..	1979	..	93.4	81.0	25.9
1957	..	..	..	..	1980	101.0	95.8	84.5	27.2
1958	..	..	..	..	1981	..	96.5	86.5	35.3
1959	..	..	..	..	1982	..	97.7	86.9	37.7
1960	90.1	..	..	..	1983	..	98.6	89.4	38.3
1961	..	..	..	..	1984	..	98.8	89.7	37.8
1962	..	..	..	..	1985	102.0	99.2	90.7	36.4
1963	..	..	..	..	1986	..	99.4	91.2	36.4
1964	..	..	..	..					
1965	..	54.32	69.11	32.28					
1966	96.6	54.10	67.75	28.25					
1967	..	57.84	70.15	30.80					

〈資料〉 文教統計年報(文教部)

註 1) $\frac{\text{總 國民學生數}}{\text{6~11세 人口}}$

學　生　數

年末	國民學校	中 學 校	高等學校	大學校및大學院	年末	國民學校	中 學 校	高等學校	大學校및大學院
	1,000名	1,000名	1,000名	1,000名		1,000名	1,000名	1,000名	1,000名
1945	..	..	..	..	1968	5,549	1,013	481	129
1946	..	..	..	..	1969	5,623	1,147	530	139
1947	..	..	..	..	1970	5,749	1,319	590	153
1948	..	..	..	..	1971	5,807	1,530	647	163
1949	..	..	..	..	1972	5,776	1,686	730	173
1950	..	..	..	..	1973	5,692	1,832	839	188
1951	..	..	..	..	1974	5,619	1,930	981	205
1952	2,370	303	123	32	1975	5,599	2,027	1,123	223
1953	2,342	324	160	45	1976	5,504	2,117	1,254	245
1954	2,744	421	213	66	1977	5,514	2,196	1,350	269
1955	..	..	..	..	1978	5,604	2,298	1,454	297
1956	2,921	459	275	90	1979	5,641	2,395	1,565	356
1957	3,188	440	276	76	1980	5,658	2,472	1,697	437
1958	3,262	430	268	80	1981	5,586	2,574	1,823	581
1959	3,550	458	263	80	1982	5,465	2,603	1,922	715
1960	3,621	529	264	98	1983	5,257	2,672	2,013	833
1961	3,855	621	279	143	1984	5,041	2,736	2,092	933
1962	4,089	655	324	117	1985	4,857	2,782	2,153	1,000
1963	4,422	666	365	108	1986	4,798	2,766	2,262	1,041
1964	4,726	667	399	116					
1965	4,941	751	427	109					
1966	5,165	822	435	136					
1967	5,383	912	442	129					

〈資料〉 文教統計年報(文教部)

學　校　數

年末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및大學院	年末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및大學院
	個所	個所	個所	個所		個所	個所	個所	個所
1945	2,384	..	155	19	1968	5,601	1,420	840	123
1946	..	..	..	..	1969	5,810	1,463	861	128
1947	..	..	..	..	1970	5,961	1,608	889	135
1948	..	..	..	..	1971	6,058	1,794	898	137
1949	..	..	..	..	1972	6,197	1,866	942	143
1950	..	..	..	..	1973	6,269	1,916	1,015	150
1951	..	..	..	..	1974	6,315	1,935	1,089	152
1952	3,923	609	326	42	1975	6,367	1,967	1,125	154
1953	4,007	621	402	48	1976	6,405	1,977	1,198	157
1954	4,024	803	480	51	1977	6,408	1,987	1,215	160
1955	4,171	949	546	53	1978	6,426	2,012	1,253	164
1956	4,334	999	597	56	1979	6,450	2,056	1,298	184
1957	4,350	1,034	613	55	1980	6,479	2,103	1,355	206
1958	4,474	1,036	621	61	1981	6,517	2,174	1,402	240
1959	4,576	1,013	623	61	1982	6,501	2,213	1,436	266
1960	4,602	1,053	635	52	1983	6,500	2,254	1,494	268
1961	5,264	1,073	647	56	1984	6,528	2,325	1,549	285
1962	5,317	1,122	621	73	1985	6,519	2,371	1,602	301
1963	4,385	1,114	669	75	1986	6,535	2,412	1,627	303
1964	5,004	1,165	701	98					
1965	5,125	1,208	715	107					
1966	5,274	1,251	735	111					
1967	5,418	1,314	781	117					

〈資料〉 教育統計年報(教育部)

讀　　書

年末	圖書發行實績(年中)	圖書館			年末	圖書發行實績(年中)	圖書館		
		公共圖書館數	藏書數	1萬名當藏書數			公共圖書館數	藏書數	1萬名當藏書數
	種	個	卷	卷		種	個	卷	卷
1945	..	..	..	..	1968	2,492	171	1,978,259	641.5
1946	..	..	..	..	1969	2,312	167	2,053,136	650.9
1947	1,028	..	..	..	1970	2,591	194	2,676,115	830.0
1948	1,136	..	..	..	1971	2,917	214	2,767,343	841.6
1949	1,754	..	..	..	1972	4,469	226	3,119,240	931.0
1950	..	..	..	..	1973	7,123	232	3,222,276	944.9
1951	798	..	..	..	1974	7,018	232	3,222,276	928.8
1952	1,391	..	..	..	1975	9,225	259	2,682,074	760.2
1953	1,100	..	..	..	1976	13,424	261	3,460,726	965.4
1954	1,558	..	..	..	1977	14,375	237	4,008,036	1,100.8
1955	1,308	..	..	..	1978	15,149	219	3,988,691	1,078.9
1956	1,434	..	..	..	1979	17,151	277	3,454,889	920.5
1957	1,006	..	..	..	1980	20,985	277	4,265,403	1,118.8
1958	1,281	..	..	..	1981	23,983	269	5,354,911	1,382.9
1959	1,606	..	..	..	1982	29,190	316	5,675,556	1,443.2
1960	1,618	..	..	..	1983	33,321	331	6,489,240	1,625.2
1961	2,290	..	..	..	1984	33,156	344	7,367,375	1,823.0
1962	2,966	..	..	..	1985	37,743	388	9,039,557	2,215.0
1963	3,042	..	..	..	1986	37,411	390	8,403,101	2,040.0
1964	2,750	..	..	..					
1965	3,188	..	..	..					
1966	3,104	..	..	..					
1967	2,216	159	1,733,088	575.2					

〈資料〉 韓國의 社會指標(統計廳)
韓國出版年鑑

11. 保　　健

醫　　療

年末	醫療機關數[1]	病床數[2]	醫療保險受惠率	嬰兒死亡率	年末	醫療機關數[1]	病床數[2]	醫療保險受惠率	嬰兒死亡率
	個	個	%	%		個	個	%	%
1945	..	..	—	..	1968	6,645	15,696	—	5.64
1946	..	..	—	..	1969	6,611	16,270	—	5.45
1947	..	..	—	..	1970	6,981	16,538	—	5.30
1948	..	..	—	..	1971	7,402	17,506	—	5.13
1949	..	..	—	..	1972	7,539	16,373	—	5.00
1950	..	..	—	..	1973	7,744	18,306	—	4.50
1951	..	..	—	..	1974	7,757	19,062	—	4.10
1952	..	..	—	..	1975	7,871	21,242	—	3.80
1953	..	..	—	..	1976	7,978	22,792	—	3.50
1954	..	..	—	..	1977	7,971	26,535	8.8	3.40
1955	..	..	—	..	1978	8,113	28,869	10.5	3.30
1956	..	..	—	..	1979	8,318	33,046	20.8	3.76
1957	..	..	—	..	1980	8,694	38,096	23.9	3.68
1958	..	..	—	..	1981	9,107	40,255	29.5	3.50
1959	..	..	—	..	1982	9,518	44,976	34.4	3.50
1960	..	..	—	..	1983	10,212	59,099	39.0	3.42
1961	..	..	—	..	1984	10,816	68,983	42.0	3.33
1962	6,247	..	—	6.90	1985	11,567	74,367	43.5	3.26
1963	6,469	..	—	6.65	1986	12,355	79,961	46.6	3.18
1964	6,290	..	—	6.41					
1965	6,287	11,413	—	6.18					
1966	6,362	12,891	—	6.00					
1967	6,422	14,948	—	5.82					

〈資料〉 保社統計年報(保健社會部)

註 1) 綜合病院, 病院, 醫院, 齒科病院에 한함

2) 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韓方病院 및 特殊病院에 한함

身 長·體 重[1)]

年度	身長(男)	身長(女)	體重(男)	體重(女)	年度	身長(男)	身長(女)	體重(男)	體重(女)
	cm	cm	kg	kg		cm	cm	kg	kg
1945	··	··	··	··	1968	166.2	157.9	56.2	51.3
1946	··	··	··	··	1969	165.9	157.8	56.4	51.7
1947	··	··	··	··	1970	165.9	156.5	56.6	52.2
1948	··	··	··	··	1971	166.4	157.9	56.7	52.4
1949	··	··	··	··	1972	166.7	158.7	56.9	52.7
1950	··	··	··	··	1973	166.7	157.8	56.8	52.2
1951	··	··	··	··	1974	166.5	157.4	57.0	52.7
1952	··	··	··	··	1975	166.8	156.8	57.5	52.1
1953	··	··	··	··	1976	167.0	157.0	57.8	51.8
1954	··	··	··	··	1977	167.3	156.9	57.8	52.1
1955	··	··	··	··	1978	167.6	157.0	57.9	52.2
1956	··	··	··	··	1979	167.1	156.8	58.3	52.4
1957	··	··	··	··	1980	167.4	157.2	58.5	52.4
1958	··	··	··	··	1981	167.7	157.2	58.3	52.3
1959	··	··	··	··	1982	167.8	157.1	58.4	52.7
1960	··	··	··	··	1983	168.3	157.4	58.7	52.5
1961	··	··	··	··	1984	168.8	157.4	59.4	52.9
1962	··	··	··	··	1985	169.1	157.7	59.8	52.9
1963	··	··	··	··	1986	169.2	157.8	60.5	53.2
1964	··	··	··	··					
1965	163.7	156.9	54.3	51.0					
1966	164.1	158.6	55.2	51.3					
1967	164.2	156.8	55.8	51.0					

〈資料〉 教育統計年報(教育部)

註 1) 17歲 基準

食　生　活

年中	米穀消費量(日平均)		쇠고기消費量	牛乳消費量	年中	米穀消費量(日平均)		쇠고기消費量	牛乳消費量
	農　家	非農家	(日平均)	(年　間)		農　家	非農家	(日平均)	(年　間)
	g	g	g	g		g	g	g	g
1945	..	..	..	..	1968	325.9	424.6	3.2	716
1946	..	..	..	..	1969	300.9	380.5	2.9	1,027
1947	..	..	..	..	1970	337.0	404.0	3.3	1,431
1948	..	..	..	..	1971	322.5	406.8	3.3	1,800
1949	..	..	..	..	1972	343.3	388.3	3.3	2,500
1950	..	..	..	..	1973	348.2	359.3	3.6	3,200
1951	..	..	..	..	1974	335.9	359.6	4.1	4,000
1952	..	..	..	..	1975	354.5	329.0	5.5	4,580
1953	..	..	..	..	1976	348.0	316.0	5.8	5,546
1954	..	..	..	..	1977	370.6	333.3	6.0	6,979
1955	..	..	..	..	1978	399.3	353.7	8.5	8,802
1956	..	..	..	..	1979	410.5	354.2	8.2	10,023
1957	..	..	..	..	1980	412.5	353.7	7.1	10,997
1958	..	..	..	..	1981	403.2	344.4	6.6	14,403
1959	..	..	..	..	1982	424.6	333.5	7.4	15,070
1960	..	..	..	..	1983	438.1	328.7	7.9	18,237
1961	..	..	..	—	1984	448.3	328.2	7.2	20,541
1962	..	..	..	101	1985	449.8	323.3	7.9	23,290
1963	..	..	..	168	1986	452.0	324.2	9.8	27,805
1964	..	..	..	187					
1965	315.2	347.2	..	304					
1966	312.8	359.2	2.8	422					
1967	336.8	396.3	2.9	599					

〈資料〉農林水產部

12. 住宅·環境

住　　宅

年度	住宅數	住宅普及率	住居費支出		年度	住宅數	住宅普及率	住居費支出	
			都市家口	農　家				都市家口	農　家
	1000戶	%	원	원		1000戶	%	원	원
1945	··	··	··	··	1968	4,183	78.7	18,468	6,958
1946	··	··	··	··	1969	4,278	78.1	21,492	7,373
1947	··	··	··	··	1970	4,360	77.8	22,368	8,675
1948	··	··	··	··	1971	4,428	77.8	25,692	10,353
1949	··	··	··	··	1972	4,492	78.2	27,000	17,651
1950	··	··	··	··	1973	4,592	77.4	31,980	22,414
1951	··	··	··	··	1974	4,692	77.3	40,116	32,548
1952	··	··	··	··	1975	4,734	74.4	57,288	42,847
1953	··	··	··	··	1976	5,025	77.4	73,476	57,184
1954	··	··	··	··	1977	5,100	77.2	90,468	76,977
1955	··	··	··	··	1978	5,242	76.8	140,364	114,183
1956	··	··	··	··	1979	5,416	76.5	197,976	136,063
1957	··	··	··	··	1980	5,463	74.5	206,652	143,895
1958	··	··	··	··	1981	5,582	73.7	220,896	167,342
1959	··	··	··	··	1982	5,763	73.1	262,920	207,661
1960	··	··	··	··	1983	5,896	71.8	318,240	306,771
1961	··	··	··	··	1984	6,084	71.6	342,960	314,679
1962	3,624	82.4	··	··	1985	6,107	69.7	373,272	358,612
1963	3,720	82.2	··	2,677	1986	6,303	69.7	420,036	386,493
1964	3,815	81.8	··	3,277					
1965	3,912	81.3	··	3,829					
1966	4,092	80.7	··	4,454					
1967	4,097	79.6	··	5,053					

〈資料〉 建設統計便覽(建設部)
都市家計調査(統計廳)
農家經濟調査(農林水產部)
註 1) 1989－1990년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은 건설부 추정치임

上　水　道

年末	給水人口	上水道普及率	施設容量	1日1人當給水量	年末	給水人口	上水道普及率	施設容量	1日1人當給水量
	1,000名	%	1,000톤/日	ℓ		1,000名	%	1,000톤/日	ℓ
1945	··	··	··	··	1968	8,150	27.0	1,606	128
1946	··	··	··	··	1969	9,184	29.9	1,870	135
1947	3,280	18.4	240	66	1970	10,430	33.2	2,166	158
1948	··	··	··	··	1971	11,600	36.4	2,670	173
1949	··	··	250	54	1972	12,250	37.9	2,803	177
1950	··	··	··	··	1973	12,944	39.3	2,980	179
1951	··	··	··	··	1974	14,089	42.1	3,466	182
1952	··	··	··	··	1975	14,961	43.1	3,842	216
1953	··	··	··	··	1976	17,910	49.9	4,409	220
1954	3,451	··	240	65	1977	18,582	51.0	4,820	228
1955	3,475	16.1	270	71	1978	19,053	51.5	5,286	232
1956	··	··	··	··	1979	19,834	52.8	6,186	235
1957	3,321	15.6	385	87	1980	20,809	54.6	6,756	256
1958	3,325	15.2	436	90	1981	22,088	57.0	7,508	264
1959	3,604	15.7	469	98	1982	23,363	59.4	8,076	270
1960	4,210	16.9	517	99	1983	24,728	61.9	8,386	273
1961	4,400	17.3	600	102	1984	26,211	64.7	9,498	280
1962	4,800	18.3	622	102	1985	27,188	66.2	10,214	282
1963	5,000	18.5	630	104	1986	28,289	68.1	11,505	295
1964	5,200	18.8	660	104					
1965	6,000	21.2	750	106					
1966	6,474	22.2	1,140	110					
1967	7,436	25.2	1,226	110					

〈資料〉 建設統計便覽(建設部)

에 너 지 · 電 力

年中	總에너지 消費量	1人當에너지 消費量	電力消費量	1人當電力 消費量	年中	總에너지 消費量	1人當에너지 消費量	電力消費量	1人當電力 消費量
	1,000TOE[1]	TOE	GWh[2]	1kWh		1,000TOE[1]	TOE	GWh[2]	kWh
1945	..	..	..	..	1968	15,823	0.51	4,850	157
1946	..	..	..	..	1969	17,592	0.56	6,358	202
1947	..	..	..	..	1970	19,678	0.61	7,740	240
1948	..	..	..	..	1971	20,868	0.63	8,884	270
1949	..	..	..	..	1972	21,291	0.64	9,992	298
1950	..	..	..	..	1973	25,010	0.73	12,367	363
1951	..	..	..	..	1974	25,768	0.74	14,048	405
1952	..	..	..	..	1975	27,553	0.78	16,630	471
1953	..	..	..	..	1976	30,193	0.84	19,620	547
1954	..	..	482	..	1977	34,214	0.94	22,833	627
1955	..	..	551	27	1978	38,088	1.03	27,326	739
1956	..	..	651	31	1979	43,241	1.15	31,145	830
1957	..	..	766	36	1980	43,911	1.15	32,724	859
1958	..	..	922	42	1981	45,718	1.18	35,424	915
1959	..	..	1,072	45	1982	45,625	1.16	37,880	963
1960	..	..	1,136	46	1983	49,405	1.24	42,620	1,067
1961	9,747	0.38	1,189	46	1984	53,319	1.32	47,051	1,161
1962	10,346	0.39	1,470	55	1985	55,998	1.36	50,732	1,243
1963	10,930	0.40	1,696	62	1986	61,065	1.47	56,310	1,367
1964	11,487	0.41	2,043	73					
1965	12,013	0.42	2,464	86					
1966	13,057	0.44	3,008	102					
1967	13,943	0.46	3,903	130					

〈資料〉 에너지 統計年報(動力資源部)
韓國電力統計, 1964(韓國電力公社)

註 1) 1TOE=10Kcal
2) 1GWh=1,000kWh

여 백

4. 參 考 圖 表

第 1 章 近代統計 以前史

〈1－1〉 新羅民政文書 …… 639
〈1－2〉 李太祖 戶籍原本 …… 640
〈1－3〉 戶口單子(事例) …… 641
〈1－4〉 經國大典 …… 642
〈1－5〉 漁鱗圖 …… 643

第 2 章 近代統計의 導入과 試練

〈2－1〉 甲午更張時 職制 …… 644
〈2－2〉 官報(光武5年) …… 645
〈2－3〉 官報統計(隆熙2年) …… 646
〈2－4〉 官報統計(隆熙3年) …… 647
〈2－5〉 第一戶籍樣式 …… 648
〈2－6〉 統表樣式 …… 649
〈2－7〉 戶牌樣式 …… 649
〈2－8〉 民籍簿樣式 …… 650
〈2－9〉 土地調査法官報(隆熙4年) …… 651
〈2－10〉 土地調査法施行規則 官報(隆熙4年) …… 652
〈2－11〉 農業統計樣式 官報 …… 653
〈2－12〉 總督府月報規程(1911) …… 655
〈2－13〉 總督府月報規程(1913) …… 656
〈2－14〉 報告例(人口統計) …… 657
〈2－15〉 戶口調査簿記載例 …… 658
〈2－16〉 戶口調査實施簿 …… 659

〈2－17〉 人口調査票 …… 660
〈2－18〉 1944年 人口調査票 …… 661
〈2－19〉 G—2 PERIODIO REPORT …… 662
〈2－20〉 衛生統計規則에 의한 申告書様式 …… 663
〈2－21〉 人口動態調査規則에 의한 申告證明書 …… 664
〈2－22〉 國民登錄様式 ……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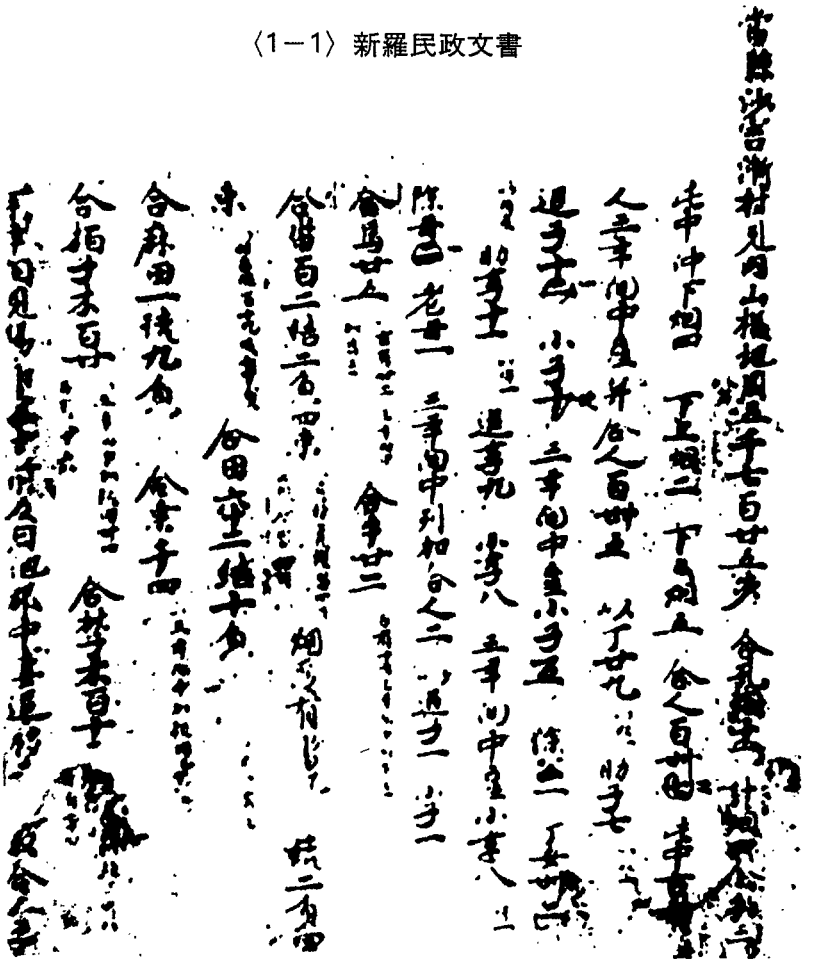
第 3 章 政府樹立과 統計發展의 轉機

〈3－1〉 定例報告規程官報 …… 666

第 4 章 開發時代의 統計發展

〈4－1〉 1949年度 總人口調査票 …… 667
〈4－2〉 機械集計와 集計用카드(1949) …… 669
〈4－3〉 1955年度 總人口調査票 …… 671
〈4－4〉 1960年度 國勢調査票 …… 672
〈4－5〉 1966年度 總人口調査票 …… 673
〈4－6〉 1970年度 人口·住宅센서스調査票 …… 674
〈4－7〉 각종 統計 機械(1960) …… 678
〈4－8〉 1960年度 人口 및 住宅 總調査카드 …… 679
〈4－9〉 IBM 029 穿孔機 …… 680

〈1－1〉新羅民政文書



〈1－2〉 李太祖 戶籍原本

〔刻編者〕

洪武貳拾參年庚午拾貳月　日和寧府戶口柱帳施行

東面德興部

事審奮忠定難匡復奬理佐命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侍中判都評

議使司事吏曹尙瑞寺事領孝思觀事兼入佐上護軍領經筵事和寧府

王開國忠義伯食邑壹千戶食實封參百戶李成桂

威奴婢

……李文莊年肆拾柒本川寧并產所關內隱契年伍印

……範妻□□召史年□本川寧并產所生走只用年□奴所生年伍印

……婢年貳右奴刀金奴仍邑同婢敎丹矣所生順安旀□□□印

……拾柒……召史年肆拾柒本大元并產所生婢加伊年并拾柒伍印

奴□只年……三年玖右奴矣段長孚地光突島□捌……

……奴并所產所生婢□加伊年肆拾陸□百姓韓□并產所生婢冠□□印

……婢外花年拾□□所生婢□□年□□□所生婢水伊年□婢……

……所生奴外金夫介并產所生婢內隱伊矣□奴婢并產□寧化……

……乃婢并產所生奴□□年拾婢余乙述年參拾柒所生奴婢……

……月花年拾壹□奴婢……

〔裏題等〕

右戶口成籍爲乎事叱段洪武貳拾參年捌月初八日 兵馬都節制使出納內洪武貳拾肆年□□都評議使出納內使所申已前京外大小兩班矣戶口三年望遠以成籍一件乙良官上爲遣一件乙良各置是乎矣同戶口內當身戶主矣祖上沙余良同居子息同婢甥姪女婿族派明分開坐記錄齊各邊傳來奴婢宗派及子息所生年歲花名至亦載錄爲齊婢矣奴妻良賤并以施行爲如乎等用良兩班□

……奴婢傳來辨別果婢夫奴妻矣良賤至亦明白爲如乎事是去有乙近年以來戶口之法□

……兩班矣世系置推尋難便爲齊徵爲兩班及各戶奴婢沙余良婢夫奴妻矣良賤未所

……墅良爲賤或以賤從良爲等如靜訟成群爲去等主掌官亦不盡多日辨別難便

爲乎事叱段全亦戶口之法不明所致是良等今后京外行下奪制乙用良今年元叱三年望遠以大小兩班鄕吏等矣戶口成籍乙式爲使內乎矣今年己后無戶口爲在兩班乙良受賤爲良置不許出謝齊屬從公狀是良置許入屬齊戶口不付奴婢現錄爲去等并只屬公爲良如敎喩乃白右副

進實館提擧

代言正順大夫經筵參贊官兼判典客寺事知制敎知工曹事臣李方遠洪武貳拾參年七月初四日

別本由以后如敎事是去有等以

……爵尊……京畿幾……散大小兩班等矣戶口乙成籍向事乙良開城府支只

……沙余良現官□□餘音及本鄕京在所保擧明文乙

……段等乙良各々祖上朝謝政案及明文相考西祖戶口成給爲乎

……女婿及出家子息并以記錄爲齊一件乙良成籍上使爲乎矣奴婢乙

良置奴籍明文相考傳來根原及年歲花名備細載錄爲齊無明文奴婢乙良各頃下施行

爲齊各人等矣久遠明文付玄遠祖上以當身子孫至宗派乙良職名開坐父邊母邊妻邊

世系圖各作戶口后載錄爲乎矣必于明文未納爲良置國史及公及官文載者矣蒙所

共知祖上乙良并以載錄爲遣的實明文無亦祖上本貫人及他人知想不得人等乙良或祖或父或

〈1－3〉戶口單子(事例)

中郎將公 丁酉戶籍

宋嘉熙元年丁酉理宗十三年 高宗二十四年 北部興國里 戶部將同正李喬古名唐柱年五十一丁未生印本無丁未本貫關 父戶長軍尹印本無戶長孝溫 祖副戶長元傑 曾祖仁勇校尉仁德 外祖戶長中尹印本戶長李仲規本慶州 妻閔氏故本譜本作關貫關 父鄕貢進士洪鈞古名孝謙 譜本父進士孝全 祖守戶長世儒 曾祖戶長存壽 外祖文林郎檢校印本無檢校軍器監李琛 譜本字缺譜本無本字 率一男印本只書子字下皆如之 書鵬同正秀山年十九 二男巴只年十三改名秀源 印本子秀海年十三 三男巴只年一改名秀簡 印本子秀簡年二 一女年九

戶部主事公 庚午戶籍

宋咸淳六年庚午度宗六年 元宗十三年 北部興國里 戶尙衣院直長同正李秀海年四十六乙酉生 印本無乙酉本貫關 父郎將喬 祖戶長軍尹孝溫 曾祖副戶長元傑 外祖鄕貢進士閔洪鈞 譜本進士閔孝全本貫關 妻閔氏故本譜本作關貫關 父令史同正 譜本無同正 妹 祖進士子恭 曾祖戶長令儀 外祖尙衣院直長同正 印本無同正金守龜本安康 率一男諫年九 一女召史 印本無召史年七二女召史 印本無召史年六二男體年四

樂浪郡夫人崔氏 癸酉戶籍

元元統元年癸酉 開寧元年 忠肅王後二年 ' 南陪德山里 戶樂浪郡夫人崔氏年六十甲戌生 印本無甲戌 本 譜本作關慶州 父贈匡正 譜本作朝大夫僉議評理判民部主事上護軍行殿中內給事 壎古名謹 祖檢校軍器監仁祖古名奭卿 曾祖檢校 印本無檢校太子太傅白撝古名毅 譜本作挽 外祖朝議大夫國子祭酒實文閣直學士吳克正 譜本古名子由本海州 夫檢校軍器監李謙故本黃關 父戶部主事 譜本尙衣院直長秀海 祖郎將喬 曾祖戶長軍尹 印本右二傍並無戶長開比需書戶長中尹中減軍字之誤邪孝溫 外祖令史同正 印本無同正閔拔本黃關 率一男司醞令同正 印本無同正允焙年三十二 二男司醞令同正 印本無同正允成年二十八 三男司醞令同正 印本無同正允芳年二十四 四男惠根年十九

永州李氏 壬子戶籍

皇明洪武五年壬子 太祖五年 至二十二年 恭愍 北部五冠里戶李氏年六十三庚戌生 印本無庚戌本 譜本作關永州 父承奉郎通禮門祗候解官珣 祖追封 譜本作贈朝議大夫左右衛保勝護軍行檢校護軍 印本無行職均 曾祖追封 譜本作贈朝顯大夫神武衛保勝護軍彥山外祖司醞令 譜本只書同正李承茂本慶州 夫司醞令同正李允芳故本黃關 父檢校軍器監譜 祖直長 譜本只書同正秀海 曾祖郎將同正 印本無同正喬 外祖贈匡靖大夫 印本無贈以下五字僉議評理判民部主事行殿中內給事崔壎古名謹本慶州 率一男檢校郎將琮年四十四 二男學生止年三十八 三男成均進士卓年三十五 四男伍尉乙升年三十三 一女召史 印本無召史年三十 二女召史 印本無召史年二十四

經國大典卷之二

戶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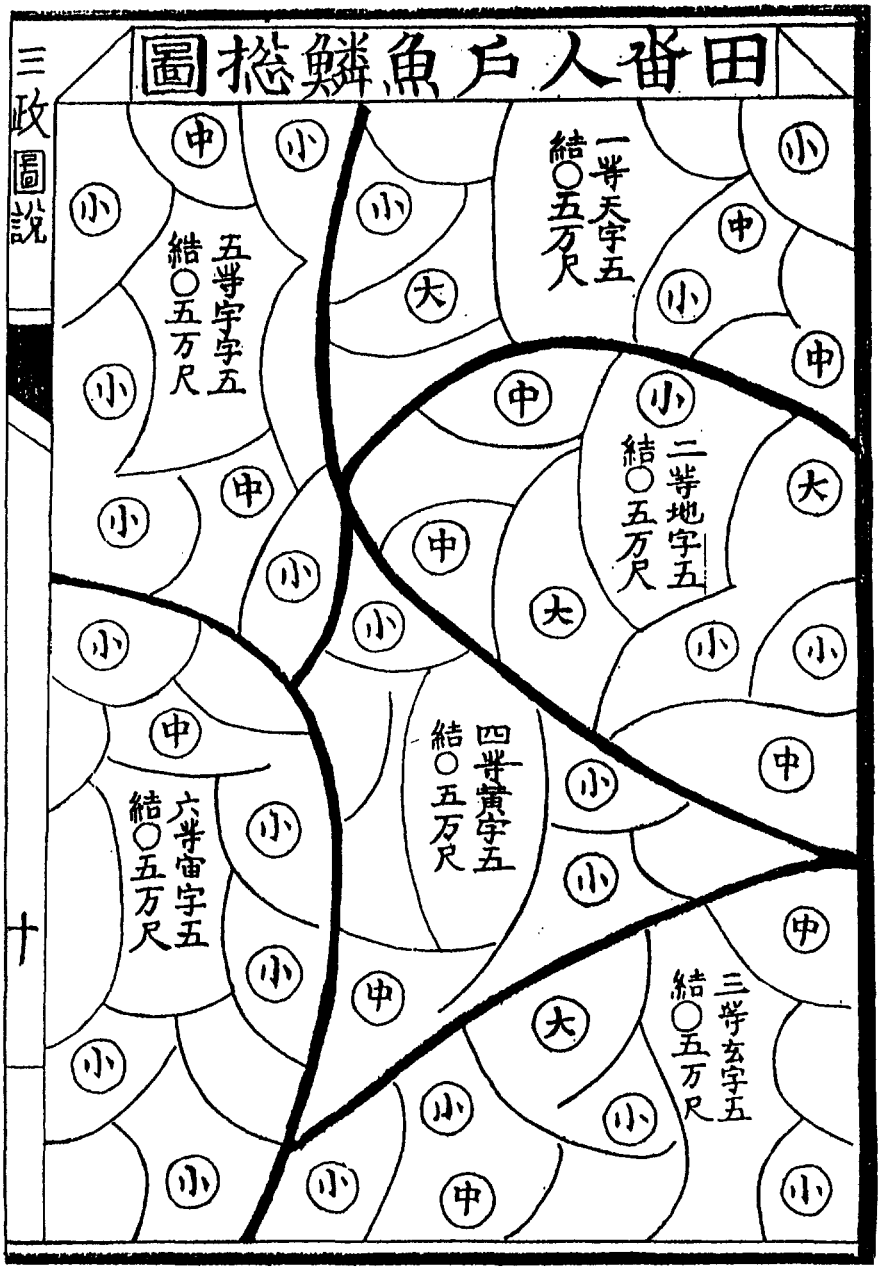
屬衙門內資寺內贍寺司導寺司贍寺軍資監齋用監司宰監豐儲倉廣興倉典艧司平市署司醞署義盈庫長興庫司圃署義賢庫五部

經費 凡經費用橫看及貢案

戶籍 每三年改戶籍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京外以五戶爲一統有統主外則每五統有里正每一面有勸農官地廣戶多則量加則每一坊有管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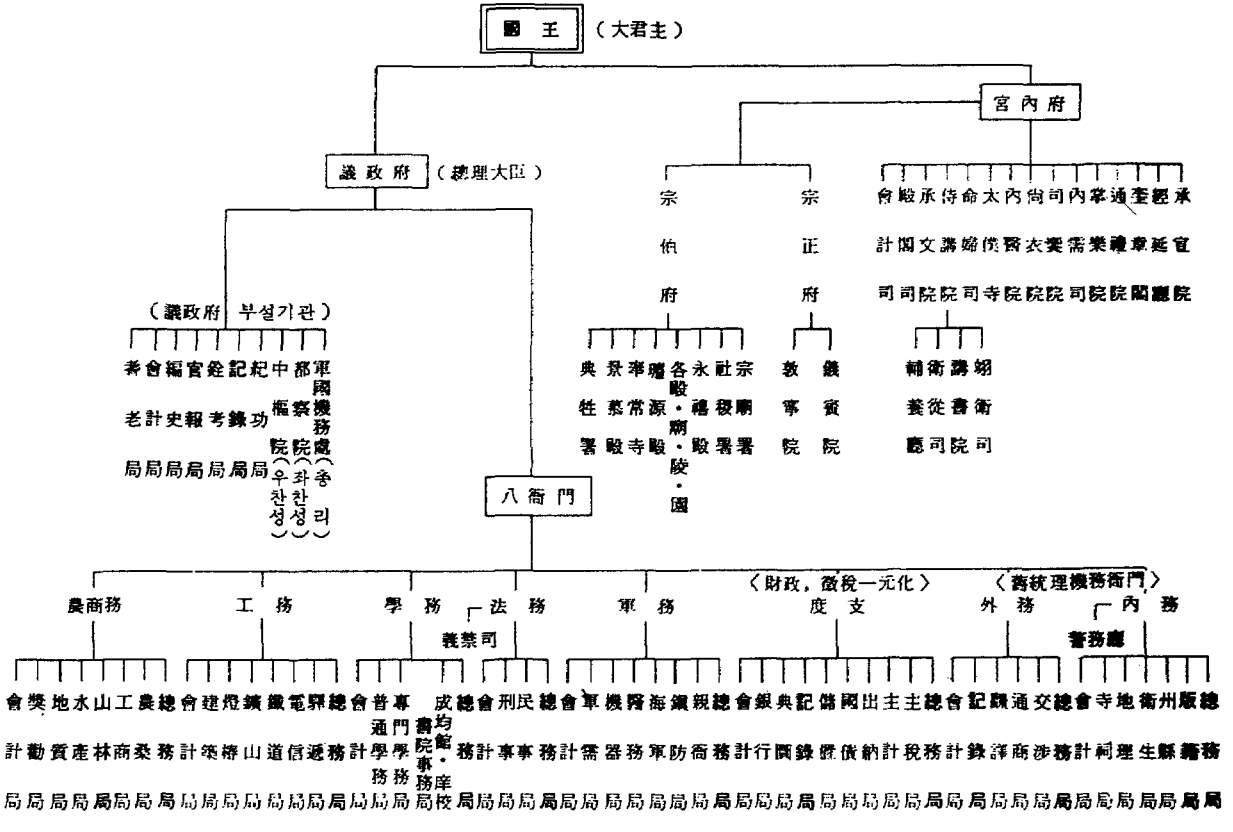
量田 凡田分六等每二十年改量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一等田尺長准周尺四尺八寸七分五釐二等五尺一寸

〈1－5〉 漁鱗圖



註：大, 中, 小는 마을의 크기를 나타냄.

〈2－1〉 甲午更張時 職制


國 王 (大君主)
宮內府
議政府 (總理大臣)
宗伯府
宗正府
會計局 檢查院 (감찰원) 軍務處 (중리)
農商務 工務 學務 法務 軍務 度支 外務 內務
義禁司
書籍館·出版事務
(財政, 徵稅一元化)
(舊統理機務衙門)

第四條 貨幣式樣과品位와量目이左와如홈事

二十本位金圓

式樣은略홈이라量目四錢四分四厘四毛四十六子라무六六六九

合性純金九百分參和銅一百分

經曲尺九分五厘

十本位金圓

式樣은略홈이라量目二錢二分二厘二毛二八子라무二三三三

合性純金九百分參和銅一百分

經曲尺七分

五圓

式樣은略홈이라量目一錢一分一厘一毛一四子라무一六六六

合性純金九百分參和銅一百分

經曲尺五分六厘

半圓

式樣은略홈이라量目三錢五分九厘四毛二十三子라무四七八三

合性純銀八百分參和銅二百分

經曲尺一寸〇二厘

二十錢銀貨

式樣은略홈이라量目一錢四分二厘七毛七五子라무三九一四

合性純銀八百分參和銅二百分

經曲尺七分四厘

五錢白銅貨

式樣은略홈이라量目一錢二分四厘四毛一四子라무六六五四

合性잇기로二百五十分參和銅七百五十分

經曲尺六分八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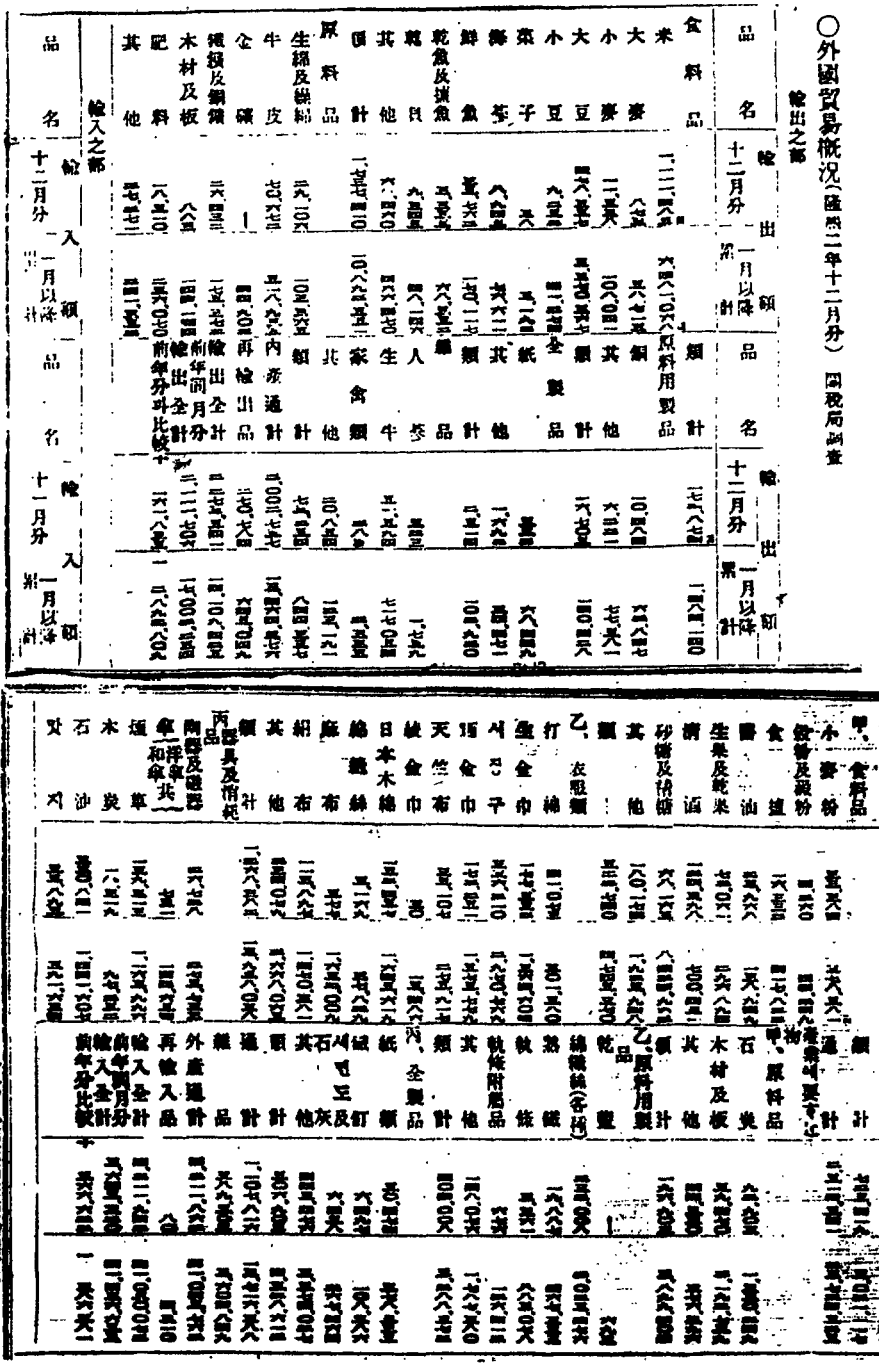
一錢赤銅貨

式樣은略홈이라量目一錢九分〇七八子라무二八〇

合性銅九百八十分錫十分亞鉛十分

經曲尺九分二厘

〈2－3〉 官報統計(隆熙2年)



○外國貿易概況(隆熙二年十二月分) 國稅局調查

輸出之部

品名	輸出額 十二月分	輸出額 一月以降累計	品名	輸出額 十二月分	輸出額 一月以降累計
食料品			小麥		
米			大豆		
小麥			小豆		
大豆			菜子		
小豆			雜穀等		
菜子			鮮魚		
雜穀等			乾魚及鹽魚		
鮮魚			雜貝		
乾魚及鹽魚			其他		
雜貝			計		
其他			原料品		
計			生絲及繭綢		
原料品			牛皮		
生絲及繭綢			金礦		
牛皮			鐵及鋼鐵		
金礦			木材及板		
鐵及鋼鐵			肥料		
木材及板			其他		
肥料					
其他					

輸入之部

品名	輸入額 十二月分	輸入額 一月以降累計	品名	輸入額 十二月分	輸入額 一月以降累計
食料品			銅		
米			其他		
麥			計		
小麥粉			原料用製品		
豆油			生牛		
生菜及乾菜			人參		
清酒			家禽類		
砂糖及精糖			其他		
其他			計		
計			生絲		
乙、衣服類			再輸出品		
綿			輸出全計		
綿金巾			前年同月分輸出全計		
綿絲			前年分斗比較		
綿糸					
綿金巾					
天竺布					
綿絲					
日本木綿					
綿絲					
麻布					
絹布					
其他					
計					
丙、器具及消耗品					
陶器及磁器					
洋傘及傘骨					
木炭					
石油					

官報 第四三〇三号 明治四十三年二月十七日(第三種郵便物認可)

官報

第四千二百九十號　隆熙三年二月二日　火曜

內閣法制局官報課

彙報

○農業

○世界金產額　千八百五十一年以降昨年에至ᄒᆞᆫ世界金産額의消長은左와如ᄒᆞᆫ

年別	産額	年別	産額
千八百五十一年	二、一三、〇〇〇	千八百九十三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五十三年	二、一三、〇〇〇	千八百九十四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五十六年	二、一三、〇〇〇	千八百九十五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六十三年	二、一三、〇〇〇	千八百九十六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六十六年	二、一三、〇〇〇	千八百九十七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七十四年	二、一三、〇〇〇	千八百九十八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七十九年	二、一三、〇〇〇	千八百九十九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八十三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八十五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一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八十七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二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八十八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三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八十九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四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九十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五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九十一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六年	二、六七、〇〇〇
千八百九十二年	二、一三、〇〇〇	千九百七年	二、六七、〇〇〇

觀象

氣壓雨量은메리에도루氣溫은攝氏

○各地氣象　一月二十日

地名	氣壓 午前六時	風向	最高	最低	風向	風力	二十四時間雨量	天氣
京城	七七二、八	(一)一、五	(一)一〇、七		靜穩			晴
仁川	七七一、三	(一)一、六	(一)八、二		北東	軟風	全	
木浦	七七〇、二	(一)三、三	(一)三、九		北	和風	全	
釜山	七七九、三	(一)六、二	(一)三、二		北東	和風	全	
大邱	七七〇、七	(一)五、三	(一)五、七		靜穩		全	
平壤	七七一、五	(一)〇、二	(一)一、五		北	軟風	全	
鎭南浦	七七一、六	(一)〇、三	(一)一、〇		北	軟風	全	
元山	七七一、〇	(一)〇、七	(一)一四、一		靜穩		全	
城津	七七〇、四	(一)〇、七	(一)一五、二		北西	和風	全	

○各地氣象　一月三十一日

地名	氣壓 午前六時	風向	最高	最低	風向	風力	二十四時間雨量	天氣
京城	七七六、一	一、四(一)	一〇、八		靜穩			快晴
仁川	七七九、二	〇、六(一)	七、七		北	軟風	全	
木浦	七七六、八	七、四(一)	五、二		北	和風	一、五	
釜山	七七七、三	八、〇(一)	一、六		北東	軟風	二 全	
大邱	七七八、四	五、八(一)	七、七		靜穩			快晴
平壤	七七八、九	〇、〇(一)	一四、二		東	軟風	雲	
鎭南浦	七七八、四	〇、九(一)	一二、六		北	軟風		快晴

〈2－5〉第一戶籍樣式

戶籍表 第三十九 號

郡陽河道北尙慶

北面 斯鎰里 東上 洞第四統第九戶

戶主	戶主	崔	澕	年五十一	本貫	職業 幼學 農人	前居地	移居月日
同居親屬	父 學生 鎰排	本貫 宋氏 本恩津						
	生父							
	祖 學生 振鶴							
	曾祖 學生 命浣							
	外祖 司譯 徐師幹							

家	己	有	借	宅
	瓦	草	瓦	共合 三間
	間	間	間	
	三間			

現存人口	男 一口	女 一口
共合三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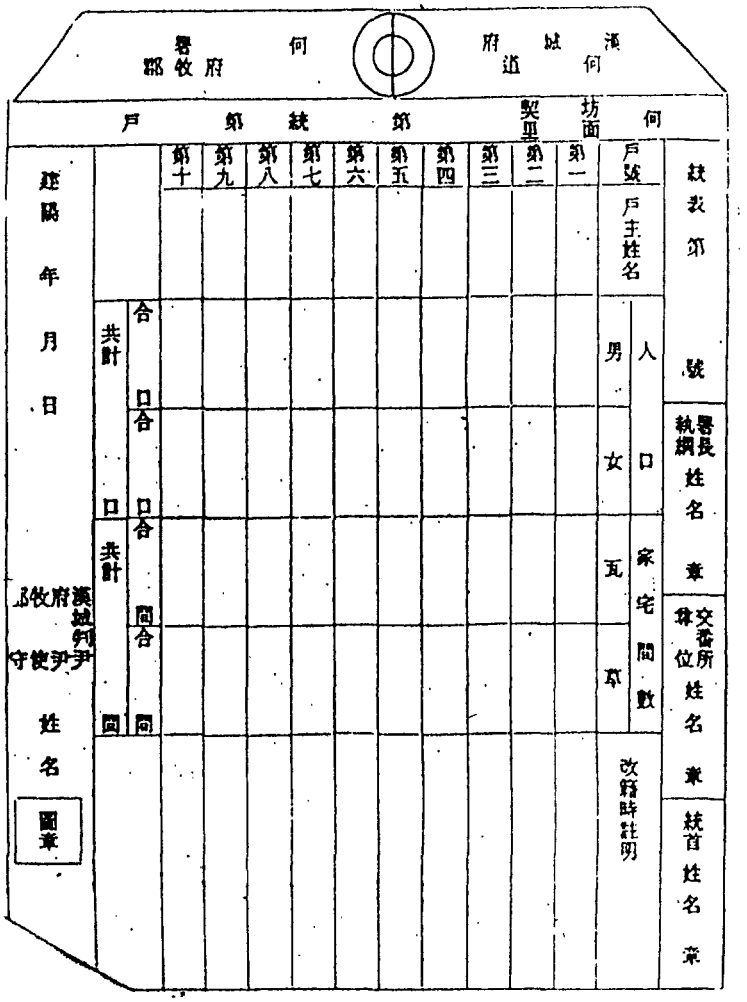
雪口	男 口	女 口
僧屠	男一口	女 口

光武十一年 一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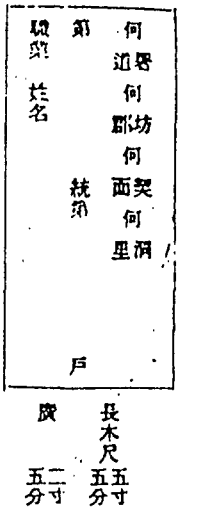
郡守 金容復 圖章

註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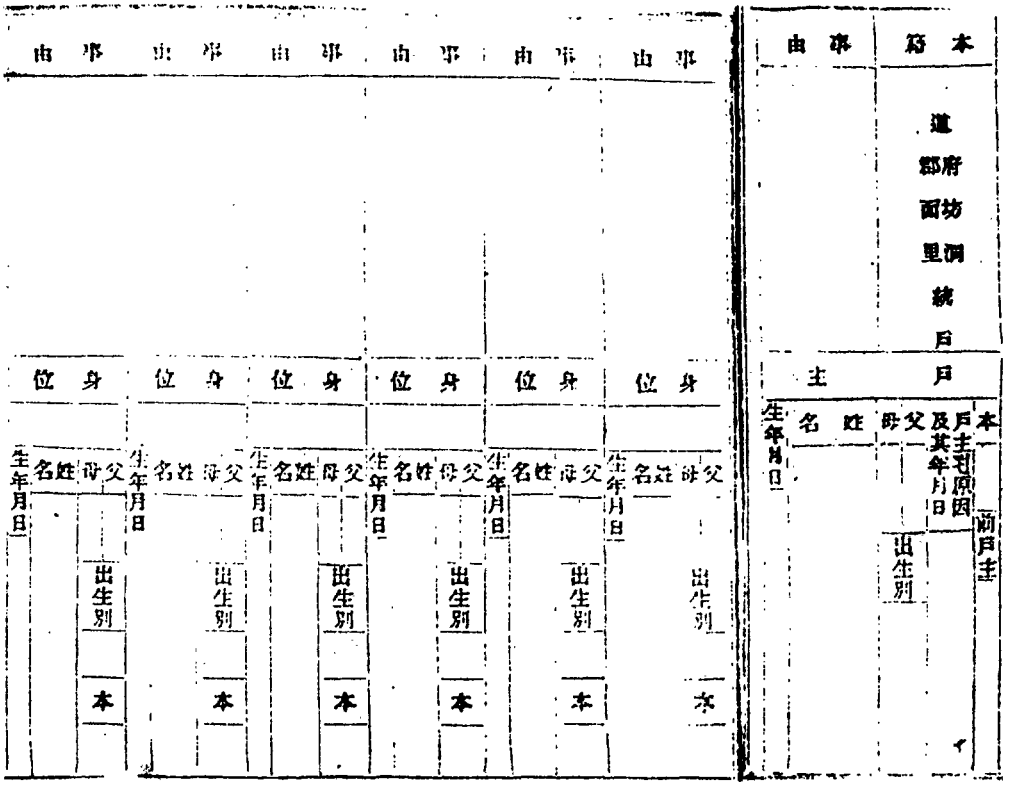
〈2－6〉統表様式



〈2－7〉戶牌様式



〈2－8〉民籍簿樣式


本籍
道府郡坊洞統戶
戶主
本前戶主
戶主된原因及其年月日
姓名
生年月日
父
母
出生別
事由
身位
本
父
母
姓名
生年月日
出生別

法律

欽이土地調査法을裁可ᄒᆞ야玆에頒布케ᄒᆞᄂᆞᆫ라

御名御璽

隆熙四年八月二十三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度支部大臣 高永喜

法律第七號

土地調査法

第一條 土地ᄂᆞᆫ此法律의定ᄒᆞᄂᆞᆫ바에依ᄒᆞ야此를調査ᄒᆞᆷ

第二條 土地ᄂᆞᆫ地目을定ᄒᆞ야地盤을測量ᄒᆞ고一區域마다地番을附ᄒᆞᆷ但第三條第三號에揭ᄒᆞᆫ土地에對ᄒᆞ야ᄂᆞᆫ地番을附치아니ᄒᆞᆷ을得ᄒᆞᆷ

第三條 土地의地目은左에揭ᄒᆞᆫ바에依ᄒᆞᆷ

一 田畓、垈、池沼、林野、雜種地

二 社寺地、墳墓地、公園地、鐵道用地、水道用地

二 道路、河川、溝渠、堤防、城壕、鐵道線路、水道線路

第四條 地盤의測量에用ᄒᆞᄂᆞᆫ尺度及地積의名稱命位ᄂᆞᆫ度量衡法의規定에依ᄒᆞᆷ

第五條 地主ᄂᆞᆫ政府의定ᄒᆞᆫ期間內에其土地를政府에申告ᄒᆞᆯ이可ᄒᆞᆷ

第六條 土地의調査를行ᄒᆞᆷ에當ᄒᆞ야必要로認ᄒᆞᆫ時ᄂᆞᆫ政府ᄂᆞᆫ地主又ᄂᆞᆫ其代理人으로ᄒᆞ야금質地에立會케ᄒᆞᆯ을得ᄒᆞᆷ

第七條 地主及土地의疆界ᄂᆞᆫ地方土地調査委員會에諮問ᄒᆞ야土地調査局總裁가此를査定ᄒᆞᆷ

前項査定ᄒᆞᆫ地主及土地의疆界ᄂᆞᆫ此를公示ᄒᆞᆷ

第八條 土地調査局總裁의査定에對ᄒᆞ야不服이有ᄒᆞᆫ者ᄂᆞᆫ其公示의日로붓터九十日以內에高等土地調査委員會에申立ᄒᆞ야其裁決을求ᄒᆞᆷ을得ᄒᆞᆷ

土地調査局總裁의査定을經ᄒᆞᆫ事項에對ᄒᆞ야ᄂᆞᆫ前項에依ᄒᆞ야裁決을求ᄒᆞᆫ外訴訟을提起ᄒᆞᆷ을得지못ᄒᆞᆷ

第九條 高等土地調査委員會及地方土地調査委員會의組織은勅令으로써此를定ᄒᆞᆷ

第十條 政府ᄂᆞᆫ土地臺帳及地圖를備ᄒᆞ고土地에關ᄒᆞᆫ事項을登錄ᄒᆞᆫ地券을發行ᄒᆞᆷ

第十一條 正當ᄒᆞᆫ事由업시第六條의立會ᄒᆞᆯ아니ᄒᆞᆫ者ᄂᆞᆫ土地調査局總裁의査定에對ᄒᆞ야不服을申立ᄒᆞᆷ을得지못ᄒᆞᆷ

第十二條 正當ᄒᆞᆫ事由업시第五條의申告又ᄂᆞᆫ第六條의立會를아니ᄒᆞᆫ者ᄂᆞᆫ貳拾圓以下의罰金에處ᄒᆞᆷ

第十三條 虛僞의申告를ᄒᆞᆫ者ᄂᆞᆫ百圓以下의罰金에處ᄒᆞᆷ

第十四條 此法律은林野에此를適用치아니ᄒᆞᆷ但他의調査地間에介在ᄒᆞᆫ것은此限에在치아니ᄒᆞᆷ

第十五條 此法律施行에關ᄒᆞ야必要ᄒᆞᆫ規定은度支部大臣이此를定ᄒᆞᆷ

附 則

本法은頒布日로붓터施行ᄒᆞᆷ

部令

度支部令第二十六號

土地調査法施行規則을左와如히定홈

隆熙四年八月二十三日

度支部大臣 高 永 喜

土地調査法施行規則

第一條 土地의面積은坪位에止홈但一區域의面積이坪位에未滿ᄒᆞᆫ것은此限에在치아니홈

第二條 土地調査法第五條의申告ᄂᆞᆫ別紙書式에依ᄒᆞ야地主가此를調製ᄒᆞ야土地調査局에提出ᄒᆞᆷ이可홈

地主에서個項의申告書를提出치아니ᄒᆞᆫ時ᄂᆞᆫ其土地의利害關係人은此에對ᄒᆞ야申告書를提出ᄒᆞᆯ수有홈

申告書提出期間은土地調査局總裁가此를告示홈事

第三條 地主又ᄂᆞᆫ其代理人은其土地四圍의境界에其氏名、地目及字番號를記載ᄒᆞᆫ標杭을建ᄒᆞᆷ이可홈事

第四條 一洞(又ᄂᆞᆫ此에準ᄒᆞᆷ이可ᄒᆞᆫ區域)或은數洞을通ᄒᆞ야二人以上의地主總代를選定ᄒᆞ야土地調査에關ᄒᆞᆫ諸般의事務에當케ᄒᆞᆷ이可홈

第五條 當該官吏ᄂᆞᆫ土地의調査上必要가有ᄒᆞᆫ로認ᄒᆞᆫ時ᄂᆞᆫ土地에關ᄒᆞᆫ書類를所持ᄒᆞᆫ者에對ᄒᆞ야其書類의提出을命ᄒᆞᆯ수有홈

第六條 土地調査局總裁가査定ᄒᆞᆫ地主及土地의境界ᄂᆞᆫ其申告當日의現在에依홈但申告를아니ᄒᆞᆫ土地에在ᄒᆞ야ᄂᆞᆫ其査定當日의現在에依홈

第七條 第二條의申告書提出後地券發行ᄒᆞ기의間에土地賣買、讓與、地目變更其他의事由에依ᄒᆞ야申告書記載의事項에異動을生ᄒᆞᆫ時ᄂᆞᆫ其由ᄒᆞ야다面히此를土地調査局에申告ᄒᆞᆷ이可홈

第八條 高等土地調査委員會의裁決을求코자ᄒᆞᆫ者ᄂᆞᆫ申告에事由를記載ᄒᆞ고證憑書類를添付ᄒᆞ야高等土地調査委員會에提出ᄒᆞᆷ이可홈

第九條 第五條의命令에違反ᄒᆞᆫ者ᄂᆞᆫ貳拾圓以下의罰金에處홈

附則

本令은土地調査法施行日로붓터施行홈

(雜式)

土地申告書 隆熙何年何月何日

地主代理人 住所 氏名 印

土地所在何郡何面何洞

地目	字番號及四標	等級	面積	地數	摘要

農業統計様式改正의件

（隆熙三年十月二十三日農商工部訓令甲第一三號）

漢城府
觀察道

今回一年六月農商工部訓令乙第一九二號農業統計에關호件中其様式을左와如히改正호니自今으로該様式에依호야調査報告호事

農商工部大臣 趙重應

農業統計様式

一 本様式에記載호는度量衡은總히隆熙三年九月法律第二十六號度量衡法에定호바度量衡에依호事

二 混作又는間作等에栽培호作物로作付反別를知키難호者는假量으로計上호事

三 一次作付호者가雨、雪、風、水、旱等災害에因호야收穫이全無호地라도總히作付反別에計上호事

四 單位以下의端數는總히四捨五入호事

五 各表마다其合計數를前年에比호야其增減의分數（歩合）를備考欄에記載호고其增減이甚호者에는其理由를記載호事

六 調査事項中事實이無호者는「一」未詳호者는「未詳」으로記載호事

第一農業者（報告期限 翌年二月）隆熙何年十二月末日現在

府部	本國人口		外國人口		
	何國人口	月數人口	何國人口	月數人口	何國人口 月數人口
何府					
何郡					
何府郡					
合計					

備考

（注意）

一　人口ニ戸主及家族共ニ其数ヲ計上スル事

第二耕地面積（報告期限 五年二月）隆熙何年十二月末日現在

府郡	畓	田	計
何府			
何郡			
何郡			
合計			

備考

（注意）

一　火田及續田等ニ對シテハ其年ニ耕鋤シタル反別ヲ每府郡ニ合計スルモ普通田（正田）ト區別スヘキ事

第三米（報告期限 五年一月）隆熙何年

府郡	作付反別				收穫量				一反歩平均收穫量		
	糯稻	粳稻	陸稻	計	糯米	粳米	陸米	計	糯米	粳米	陸米
何府											
何郡											
何郡											
合計											

備考

（注意）

一　陸稻ニ粳糯ノ區別ヲ不要ス

第四　麥（報告期限 五年九月）隆熙何年

府郡	作付反別				收穫量				一反歩平均收穫量		
	大麥	小麥	裸麥	計	大麥	小麥	裸麥	計	大麥	小麥	裸麥
何府											
何郡											
何郡											
合計											

〈2－12〉 總督府月報規程(1911)

○訓令

朝鮮總督府訓令第四十一號

朝鮮總督府月報ニ關スル規程左ノ通定ム

明治四十四年五月三日　朝鮮總督　子爵　寺内正毅

朝鮮總督府月報ニ關スル規程

第一條　朝鮮總督府月報ハ朝鮮ニ於ケル施政、產業其ノ他各般ノ狀況ヲ報告スル爲毎月二回之ヲ發行ス

朝鮮總督府月報ヲ發行スル時期ニ至リ報告ニ關スルモノハ其ノ時期ニ至リ之ヲ發行スルコトヲ得

第二條　月報ハ總務部文書課ニ於テ編纂ス

第三條　月報ニ揭載スヘキ事項ハ左ノ如シ

一　農業及殖林
二　鑛工業
三　商業
四　水產業
五　貿易
六　運輸及交通
七　理財及金融
八　教育
九　社會衞生
十　衞生
十一　救恤慈善
十二　地方行政
十三　司法
十四　雜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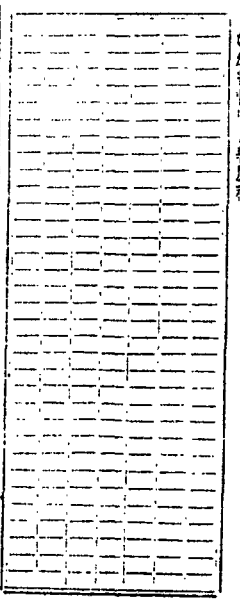
第四條　月報ニ記載スヘキ事項ニ關係ノ各部及所屬官署ニ於テハ之ヲ調査シ、其ノ主任者ヲシテ之ヲ記載セシムヘシ

第五條　材料ヲ蒐集セムカ爲各部及所屬官署（本府ニ在リテハ內務部ニ在リテハ各一名ノ月報報告主任ヲ設ク

（以下略）

（別紙式）

朝鮮總督府月報原稿



〈2－13〉 總督府月報規程(1913)

朝鮮總督府訓令第五十八號

朝鮮總督府月報ニ關スル規程左ノ通改正ス

大正二年十一月二十一日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朝鮮總督府月報ニ關スル規程

第一條　朝鮮ニ於ケル施政其ノ他諸般ノ狀況ヲ周知セシムル爲毎月一日朝鮮總督府月報ヲ發行ス

第二條　月報ハ官房總務局總務課ニ於テ之ヲ編纂ス

第三條　月報ニ揭載スヘキ事項ノ概目左ノ如シ

一　主要記述
二　調査資料
三　編錄
四　敍任及辭令
五　統計
六　判決例
七　法令及通牒

第四條　月報編纂ノ爲編纂委員數人ヲ置ク

委員ハ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ノ高等官ノ中ヨリ之ヲ命ス

第五條　總務課長ハ毎月一回各編纂委員ヲ會シ編纂ニ關スル打合ヲ爲スヘシ

第六條　月報原稿締切期限ハ毎月十五日トス

第七條　月報ハ官房總務局印刷所ニ於テ之ヲ印刷ス

第八條　月報ニハ依賴ニ應シ廣告ヲ揭載スルコトヲ得其ノ料金ハ印刷所長之ヲ定ム

附　則

本令ハ大正三年一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朝鮮總督府官報第三九四號　大正二年十一月二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通牒

官通牒第百七十三號　　政務總監

大正四年六月二日

各道長官
警務總長　宛

今般民籍事務移管ニ付報告例ニ依ル人口統計報告ニ關シテハ大正四年四月ヨリ左記ニ依リ御取計可相成此段及通牒候也

記

第一　道長官報告

年報

一　現住戶口府郡別表(報告例別册第二三四號樣式ニ依ル)

一　三千人以上ノ居住地又ハ著名市街地現住戶口表(同第二三五號樣式ニ依ル)

一　現住內地人本籍地方別表(左記樣式ニ依ル)

一　現住戶口職業別表(報告例別册第二三九號樣式ニ依ル但シ備考ニ左ノ一項ヲ追加スヘシ、家族ノ職業ハ之ニ依リテ生活スヘキ主ナル職業ノ部ニ揭記スヘシ)

一　現住內地人朝鮮人(外國人)出生月別表(報告例別册第二四一號樣式ニ依ル但シ死亡ノ部ヲ削ル)

一　現住朝鮮人結婚年齡別表(報告例別册第二四三號樣式ニ依ル)

第二　警務總長報告

年報

一　死亡者統別表(報告例別册第二四四號樣式ニ依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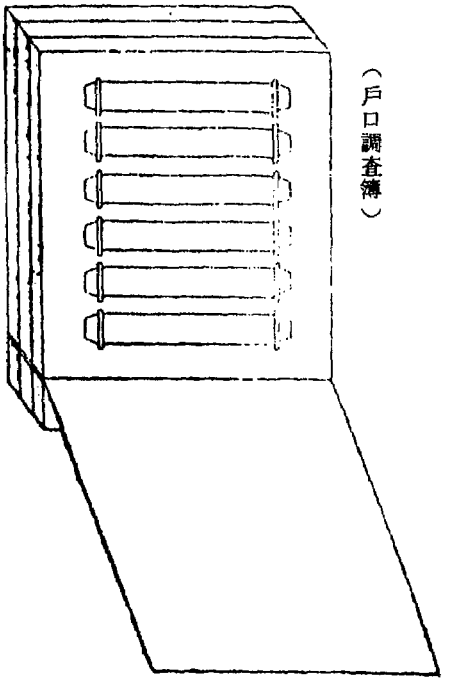
一　死產月別表(左記樣式ニ依ル)

一　結婚離婚及配偶數表(左記樣式ニ依ル)

一　現住內地人結婚年齡別表(報告例別册第二四四號樣式ニ依ル)

備考　報告例別册第八八號、第八九號、第二三四號乃至第二四四號ノ各表ハ自今提出ニ及ハス

〈2－15〉戸口調査簿記載例



（戸口調査簿）

戸主　金昌善　明治三年二月五日生
中樞院參議　正五、勳四、男爵

京城府壽洞百五番地自宅

表面

長男憲周　大正十年三月某日東京明治大學へ入學中
（長男憲周大正五年十月某日家出所在不明）

妻　姐英來　明治五年七月十日生

妻　車貴卿　明治三十年六月九日生

裏面

長男憲　周　明治二十八年五月四日生

長女貞　愛　明治三十年六月八日生
大正　年某種某度

大正　年又天然痘　　長子女　貞　　届

明治三十五年七月五日生

本籍　忠清南道公州郡花山面烏鳴里五番地金在浩長男
高等普通學校生徒　同居人　金　基　燮
大正十年十月五日　早良同居

明治三十五年五月三日生

本籍　全羅南道濟州島南山面西谷里番地不詳
大正九年二月十日　　雇　人　高　貞　吉

明治十五年六月十日生

雇人高貞吉妻
雇　人　魯　昌　順
大正九年四月五日　　届入

明治二十年九月七日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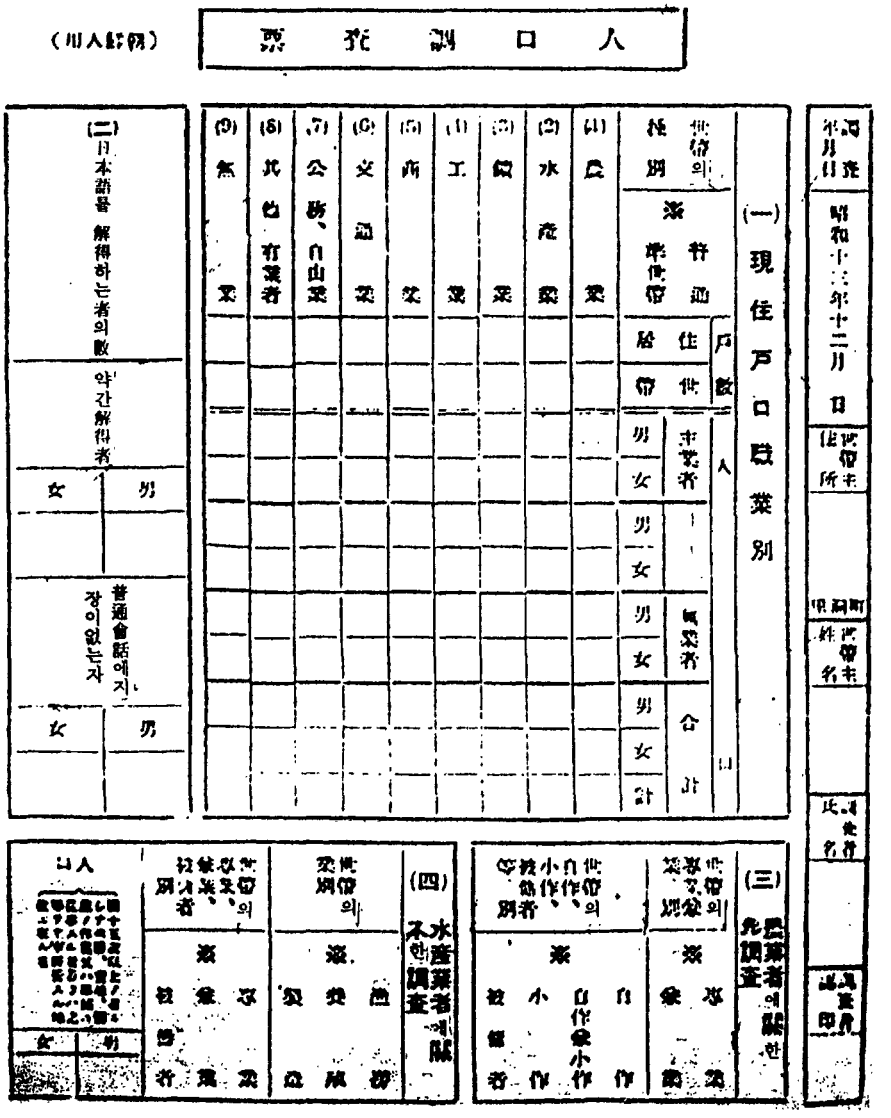
計　内地人　男一　女一
朝鮮人　男三　女六
外國人　男一　女一

〈2－16〉戸口調査實施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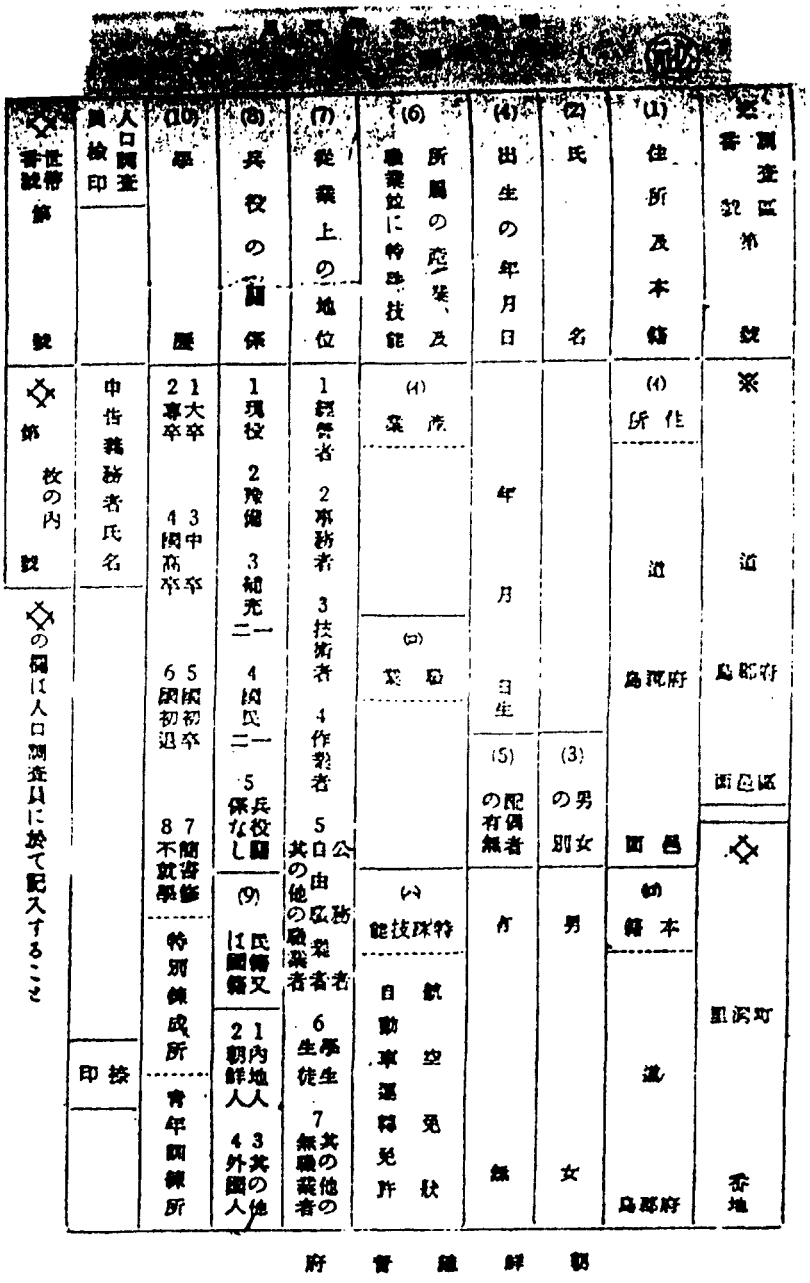
月日	何丁目何番地	調査戸数至る戸主	家族其ノ他 男	家族其ノ他 女	異動事項	
二、三	何町何番地	何某			二男某何年何月何日出生	
同	同 何番地	何某			長女某何年何月何日何町何某長男某へ嫁ス届出何年何月頃ヨリ全戸行方不明	
同	同 何番地	何某	二	一		
日計	同	自何番地至何番地	内地人 朝鮮人 外國人 五戸 二戸	一九〇 一三	一七八	（異動有無ニ不拘五日間調査ヲ要ス戸数人口ハ累計ヲ記入ス）
月計						（記載方法日計ニ準ズ）
累計						（同上）

用紙半紙又ハ紙形

〈2－17〉 人口調査票


人口調査票
(用紙縮小)
調査年月日
昭和十三年十二月一日
世帯主住所
町
世帯主氏名
氏名
調査員印
(一) 現住戸口職業別
世帯の種別
総数
特別世帯
普通世帯
住居
世帯
戸数
人口
主業者
男
女
副業者
男
女
合計
男
女
計
(1) 農業
(2) 水産業
(3) 鉱業
(4) 工業
(5) 商業
(6) 交通業
(7) 公務、自由業
(8) 其他有業者
(9) 無業
(二) 日本語を解得する者の數
約干解得者
男
女
普通會話に支障なき者
男
女
(三) 農業者に關する調査
世帯の種別
總數
自作
自作兼小作
小作
被雇者
世帯の種別
總數
農業
(四) 水産業者に關する調査
世帯の種別
總數
漁撈
製造
被雇者
世帯の種別
總數
漁業
被雇者
人口
男
女

〈2－18〉1944年 人口調査票



⟨2—19⟩ G—2 PERIODIO REPORT

G-2 PERIODIC REPORT

From: 171800/I Oct 46
To : 181800/I Oct 46

No. 359

Headquarters, USAFIK
Seoul, Korea
1000/I 19 October 1946

MAPS: KOREA, 1/250,000
Eastern ASIA, 1/1,000,000

1. OPERATIONAL INTELLIGENCE

None.

2. NON-OPERATIONAL INTELLIGENCE

a. Surrendered and Disarmed - 179,277.

b. Evacuated to JAPAN for Demobilization - 179,277.

c. Held as Military War Criminals - None.

d. Estimated Remaining Enemy Troops - None.

e. Progress of Repatriation Reported -

	This Period	To Date
Japanese Civilians Arriving from N of 38° (N KOREA and MANCHURIA)	0	268,367
Japanese Civilians Evacuated to JAPAN	0	676,296
Other Nationals Evacuated -		
CHINESE	0	1,268
OKINAWANS	0	374
FORMOSANS	0	77
Koreans Arriving from -		
JAPAN	0	20[illegible],364
N of 38°	0	692,470
CHINA	0	57,350
PACIFIC Ocean Areas	0	12,677
FORMOSA	0	3,268
HAWAII	0	2,646
SINGAPORE	0	2,389
RYUKYUS	0	1,506
SIAM	0	1,382
PHILIPPINE Islands	0	1,291
North INDO CHINA	0	1,110
BORNEO	0	1,045
HONG KONG	0	218
AUSTRALIA	0	155
Aboard Uncontrolled Shipping from JAPAN	0	185,156
TOTAL Koreans Returned to the US Zone of Occupation	0	1,871,608

〈2－20〉 衛生統計規則에 의한 申告書樣式

婚 姻 申 告 書

保健所 名 道 名

受理番號 道 第 号 府邑面第 号

1 婚姻場所

道 府郡島 区邑面 洞里 番地

(最一般的에 사용되는 표현 其他所在地의 適合名을 記入할 것)

新 郎

2 新郎姓名
3 本 籍
가) 戶主姓名 ㊞(本人)
나) 戶主와의關係 —
다) 本 籍 地
4 新郎現住所
5 新郎生 年 月 日 6 滿年齡
7 國 籍 8 初再三婚區別
9 出 生 地 道 郡(府)(或은外國)
10 職 業
11 父의姓名 印
12 母의姓名 印

新 婦

13 新婦姓名
14 本 籍
가) 戶主姓名 ㊞(本人)
나) 戶主와의關係
다) 本 籍 地
15 新婦現住所
16 新婦生 年 月 日 17 滿年齡
18 國 籍 19 初再三婚區別
20 出 生 地 道 郡(府)(或은外國)
21 職 業
22 父의姓名 印
23 母의姓名 印

24 普通婚姻인가, 또는사실혼인가의區別

25 婚 姻 年 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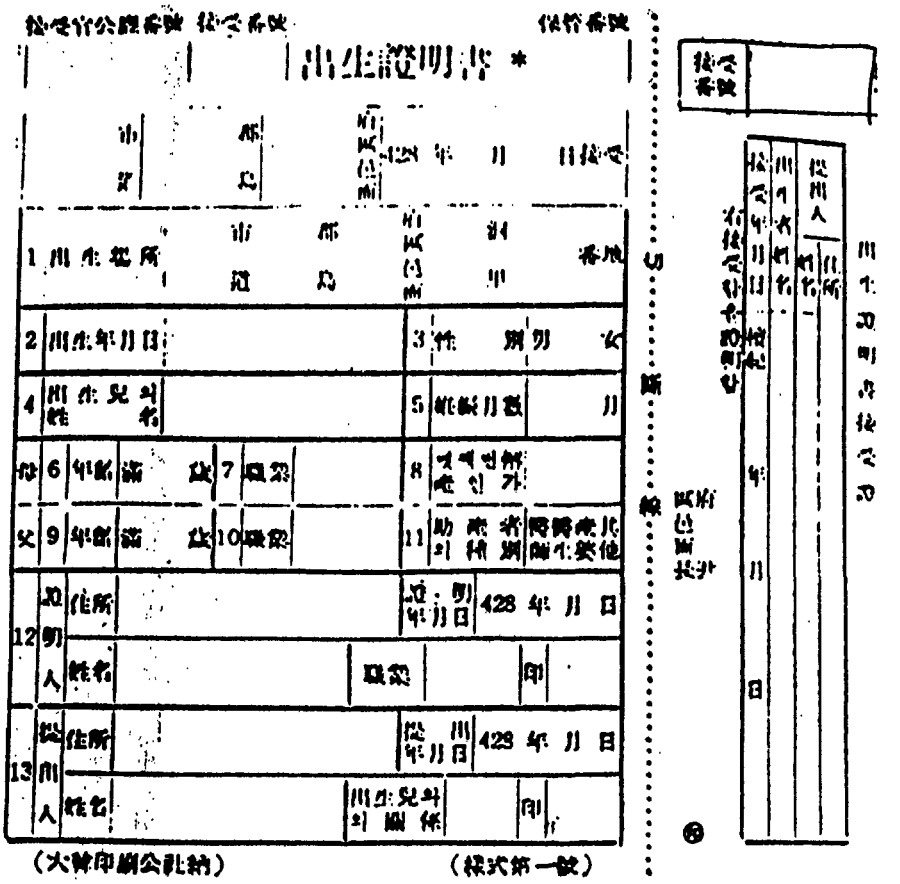
29 婚 姻 證 人

가) 姓 名 印 現 住 所
나) 姓 名 印 現 住 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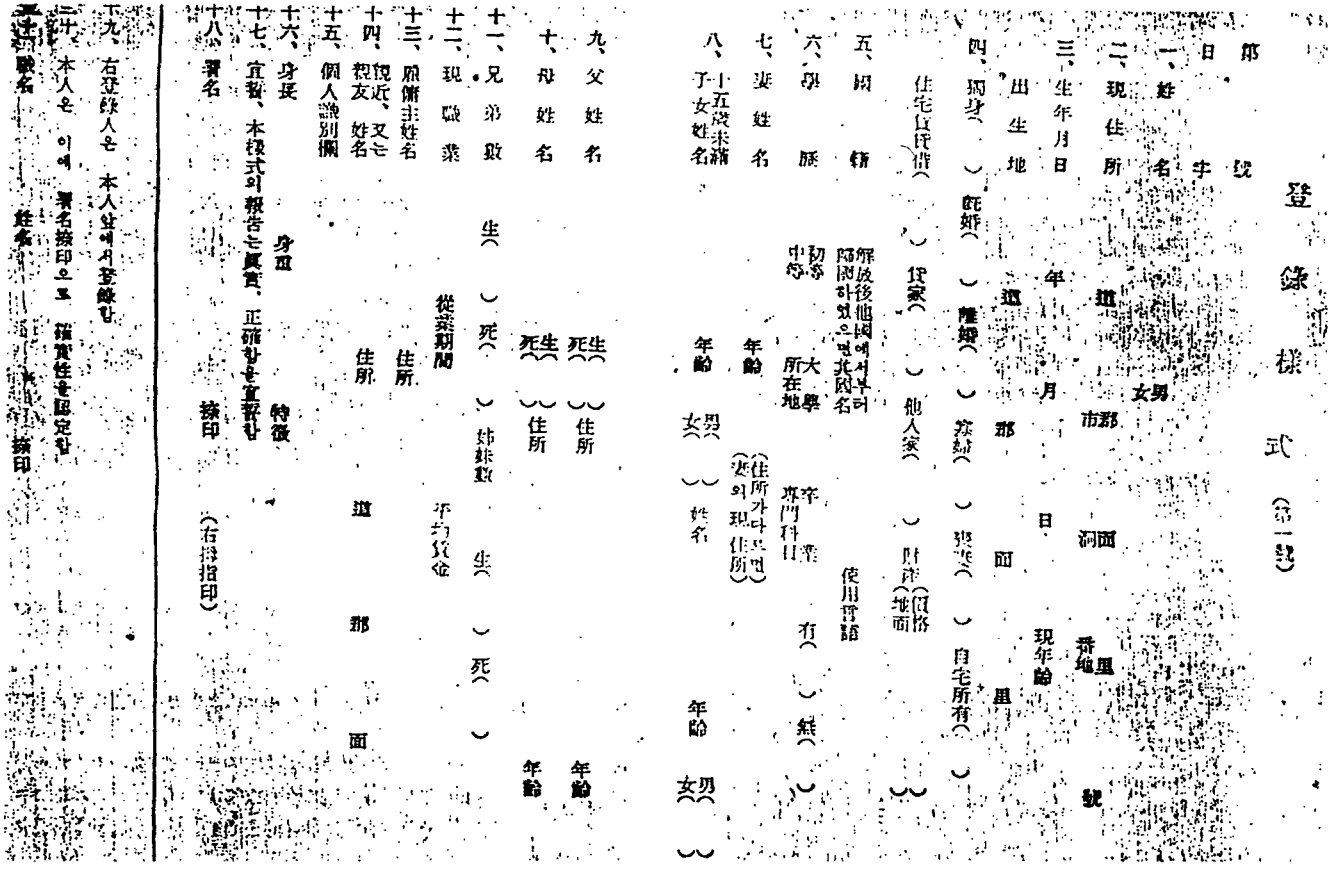
27 證婚者署名 印
洞邑面長證明受理 年 月 日

28 申告者署名 印
現 住 所

〈2－21〉人口動態調査規則에 의한 申告證明書



〈2－22〉 國民登錄樣式



登錄樣式 (第一號)

部 洞 里 號

日 年 月 日 現年齡

一、姓名 男 女

二、現住所 道 郡 面 里

三、生年月日 出生地 道 郡 面 里

四、職業 ( ) 既婚 ( ) 離婚 ( ) 寡婦 ( ) 妻妾 ( ) 自宅所有 ( )

住宅貸借 ( ) 貸家 ( ) 他人家 ( ) 賃貸(價格 地面)

五、國籍 解放後他國에서부터 歸國한 경우는 其國名 使用言語

六、學歷 初等 中等 大學 所在地 卒業 專門科目 有 ( ) 無 ( )

七、妻姓名 年齡 (住所가다른때 妻의現住所)

八、十五歲未滿 子女姓名 年齡 男 ( ) 女 ( ) 姓名 年齡 男 ( ) 女 ( )

九、父姓名 生 ( ) 死 ( ) 住所 年齡

十、母姓名 生 ( ) 死 ( ) 住所 年齡

十一、兄弟姉妹 生 ( ) 死 ( ) 姉妹數 生 ( ) 死 ( )

十二、現職業 從業期間 平均賃金

十三、原籍主姓名 住所

十四、親近、又는 親友 姓名 住所 道 郡 面

十五、個人識別欄

十六、身長 身重 特徵

十七、宣誓、本様式의 報告는 眞實、正確함을 宣誓함

十八、署名 捺印 (右拇指印)

十九、右登錄人은 本人앞에서 登錄함

二十、本人은 이에 署名捺印으로 確實性을 認定함

二十一、證人 姓名 捺印

〈3－1〉 定例報告規程官報



官報

제二千七百五十호(기三)

단기四二九三년十二월三十一일

국무원사무처 발행

목차

●국무원령 국무원령 제一八〇호(一九六〇년 一二월 三一일)

國務院令第一八〇號

定例報告規程

第一條 (目的) 行政各部、處、總(以下本中央管署라한다)에게下級官署

第二條 (報告期限) 報告期日은 다음과같다

一、第一次報告期限 第一次定例報告

二、第二次報告期限 第一次報告機關의報告에依하여作成하

三、第三次報告期限 第二次報告機關의報告에依하여作成하

第三條 (報告期限) 定例報告期日은 다음과같다

法令에特別한規定이있는 경우外에는 第一次報告機關에提出하여야한다

第四條 (災害調査) 災害狀況의調査에있어서 當該調査員은關係區、市、邑、面職員및警察官과合同하여調査하되、서로相互協力이되도록하여야한다

第五條 (災害緊急報告) ①災害나重要또는緊急을要하는것은電信、電話其他迅速한方法으로即時그概況을報告하고 當該事項이詳細히判明된後遲滯없이書面報告를하여야한다

②前項의災害事項의書面報告에있어서最終報告機關에서는그一通을內務部長官에게提出하여綜合統計를期한다

第六條 (報告) 定例報告에는別途의送付文書添付를要하지아니하며 數箇의定例報告에는그中一通을報告하여야한다

第七條 (同前) 所定期限內에報告하지못하거나 또는 記入이不明確하거나 不備한點이있을때에는 그 補正을 命하는 경우에는 그期間內에 補正하여야한다

第八條 (報告事項變更) 各中央管署의長은所管報告例規式을 變更하고자할때에는 內務部長官과協議하여야한다

第九條 (同前) 前回의報告에比하여報告事項에異動이없거나 特히重要하다고認定되지아니하는 事項에는그 事由를 備考에記載하여야한다

第十條 (規程의改廢) 各中央管署의長은所管報告例規式을 新設、變更또는廢止하고자할때에는 內務部長官과協議하여야한다

第十一條 (同前) 本令은 一九四一년 一월 一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令은 一九四一년 一월 一일부터 施行한다

〈4－1〉 1949年度 總人口調査票

大 韓 民 國

檀紀四二八八年九月一日現在

住居總人口調査申告書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一 姓名
										二 續柄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檀紀 月 日生	三 生年月日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四 性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1未婚 2有配偶 3死別 4離別	五 配偶關係
										六 職業 從業者의 職務의 種類
										社會構成의 事業種目
										從業上의 地位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主·家·育·單 公·私·單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1不就學(國文、解、否) 2卒業者(國民、中學、高等、專門、大學) 3在學生(國民、中學、高等、大學)	七 學歷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1失明(單、兩) 2手切斷(單、兩) 3足切斷(單、兩) 4聾唖 5其他	八 本籍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1八·一五以後(北·中·南) 2六·二五以後(日·中·其他外國) 3一·四以後(北·中·南)	九 本人入國別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1京畿 2忠北 3忠南 4全北 5全南 6慶北 7慶南 8江原 9濟州 10特別市 11直轄市 12外國	十 本籍

調査員 物印

家 日本人 外國人 男 女 計

(主各欄을 調査員이 記入함)

十一、住宅·周邊狀況 1自己家屋 2貰家 3社宅·官舍 4貰間 5其他

十二、職業 1專業農家 2兼業農家 3非農家 (農家의 區分)

十一、十二項은 申告義務者 外記入함

申告義務者 姓名 印

(主各欄을 調査員이 記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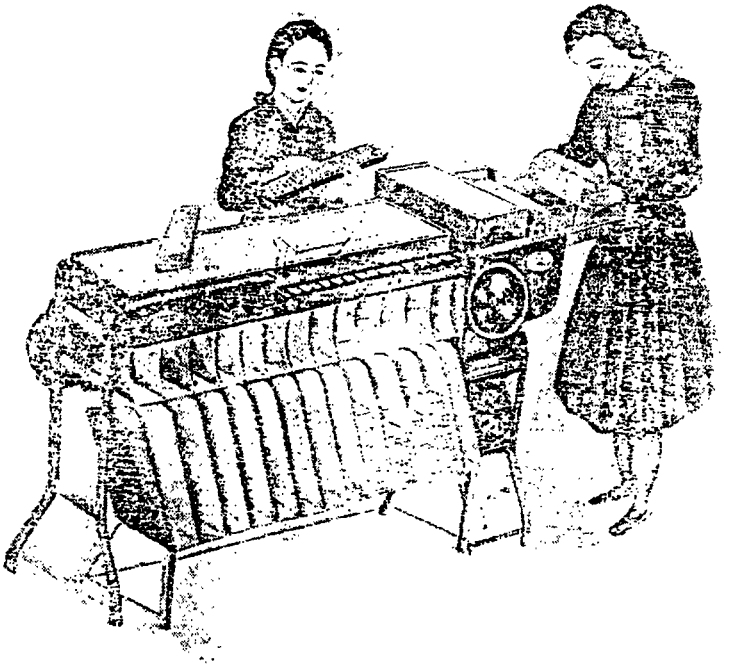
(長·市長·邑·面長이 記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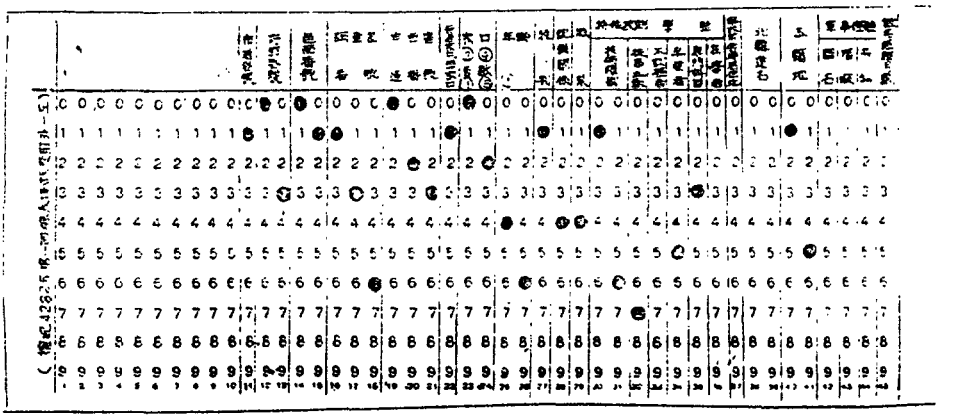
里洞·町·路·通·統·班

(主各欄을 調査員이 記入함)

여 백

〈4－2〉 機械集計와 集計用카드(1949)





여 백

大 韓 民 國

昭和二十九年九月一日現在

簡易國勢調査申告書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一 氏名 二 続柄 三 生年月日 四 性別 五 配偶関係 六 職業 七 世帯主との関係 八 本籍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昭和 年 月 日 男 女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4 3 2 1 死別 離別 別別 未婚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本邦人 2 外国人 男 女 計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未就学(同文、解) 2 学生(同民、中学、高等、専門、大学) 否 3 生徒(同民、中学、高等、大学) 否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失明(単 両) 2 手切断(単 両) 3 足切断(単 両) 4 聾唖 5 其他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1 一八、一五以後 中 2 一八、一五以後 日 3 一四以後 外国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第 区 市 町

十一 住居状況	十二
1 自宅 2 自宅(含む) 3 借家	1 専業農家 2 兼業農家 3 非農家
4 貸間 5 其他	農家の区分

十一、十二項 十五歳以上の就業者 外記入者

申告義務者	印
姓名	

調査員	検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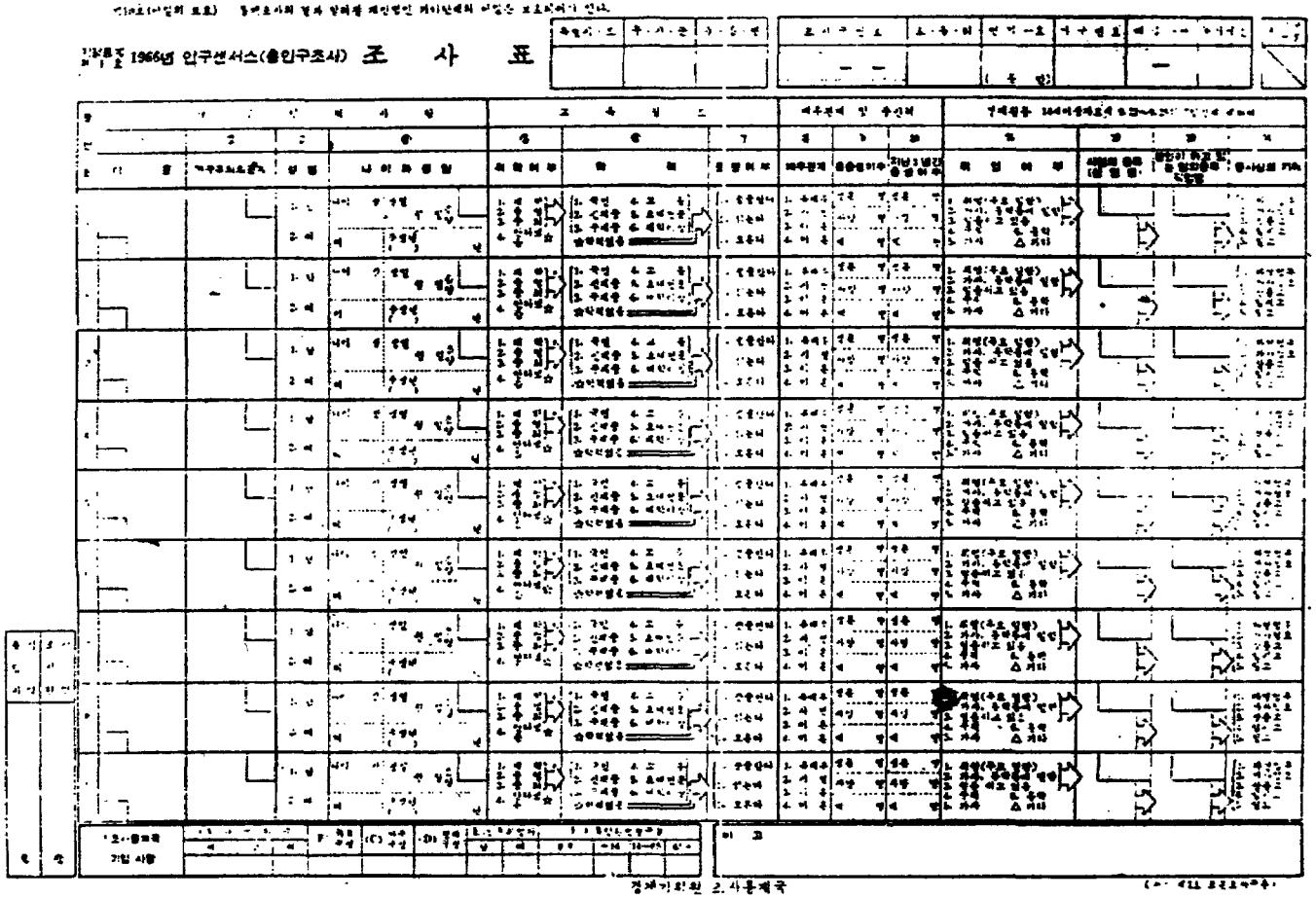
家	国籍	男女別	計
	本邦人	男	
		女	
		計	
	外国人	男	
		女	
		計	

上各欄ニ調査員ノ記入ヲ待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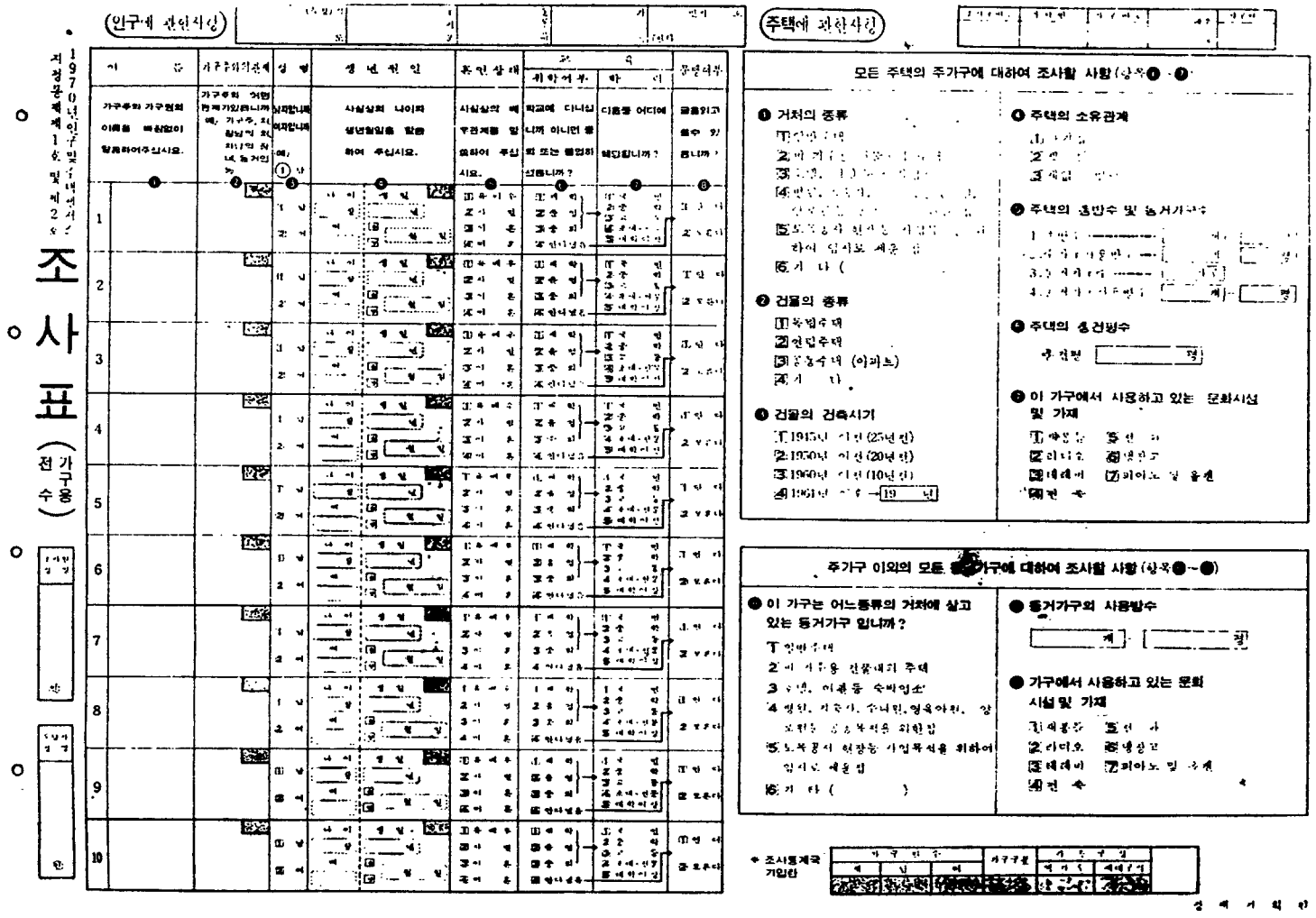
〈4－4〉 1960年度 國勢調査票

대한민국 인구및주택 국세조사표

〈4－5〉 1966年度 總人口調査票



〈4－6〉 1970年度 人口·住宅센서스調査票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조 사 표 (가구용)

○ ○ ○

인구에 관한사항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생 년 월 일	혼인상태	교 육		출생아수	종 교		5 년 전 거 주 지		경 제 활 동 (14세 이상자에 한하여)				출생상의 지위	취업가능
					재학여부	학 력						활동상태	취업여부	산 업	직 업		
1																	
2																	
3																	
4																	
5																	
6																	
7																	
8																	
9																	
10																	

여 백

주택에 관한사항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❶~⓮)

❶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아파트·연립주택이 아닌 주택
3 호텔, 여관,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양육아원, 양로원 등 집단거처시설
5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제공되는 주택
6 기타 (　　)

❷ 건물의 종류
1 단독주택　3 아파트 (아파트)
2 연립주택　4 기　　타

❸ 건물의 건축시기
1 1915년 이전 (25년 이상)　3 1930년대 (10년 이상 25년 미만)
2 1945년 이전 (20년 이상)　4 1961년 이후 →[　　]

❹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가　3 세 없이 빌려주는 집
2 세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총 방 수 ……[　　]개 [　　]칸
2 주거가구 사용방수 ……[　　]개 [　　]칸
3 동거가구수 ……[　　]
4 동거가구 사용방수 ……[　　]개 [　　]칸

❻ 주택의 총건평수
총건평 [　　]

❼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세탁기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텔레비　7 피아노 및 유개
4 선　풍

❽ 주택의 사용목적별 구분 (일반주택)
1 자기 소유주택　2 영업방우 주택

❾ 건물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
1 나　무　4 벽돌 및 돌
2 흙 또는 흙벽돌　5 철근콘크리트
3 시멘트블럭　6 기　타

❿ 건물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1 짚, 억새 등　4 기　와
2 함석 (양철)　5 스라브
3 스레이트　6 기　타

⓫ 주택의 급수시설
1 수　도　3 우　물
2 펌　프　4 없　음

⓬ 주택의 목화시설
1 수　세　2 기　타

⓭ 주택의 변소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　음

⓮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취사연료
1 나　무　4 개스 (프로판개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⓯~⓲)

⓯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 가구입니까 ?
1 일반주택
2 아파트·연립주택이 아닌 주택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양육아원, 양로원등 집단거처시설
5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제공되는
6 기　타

⓰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　　]개 -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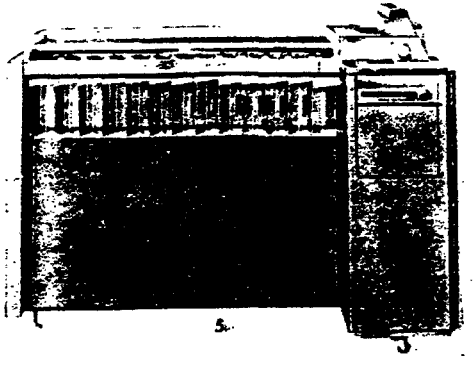
⓱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세탁기　5 전　화
2 라디오　6 냉장고
3 텔레비　7 피아노 및 유개
4 선　풍

⓲ 동거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취사연료
1 나　무　4 개스 (프로판개스)
2 나무, 짚, 기타초목류　5 전　기
3 석　유　6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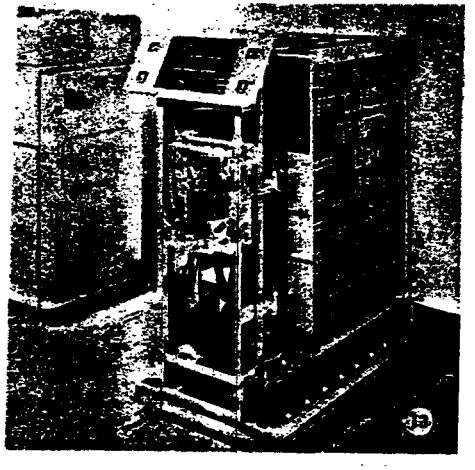
〈4－7〉 각종 統計 機械(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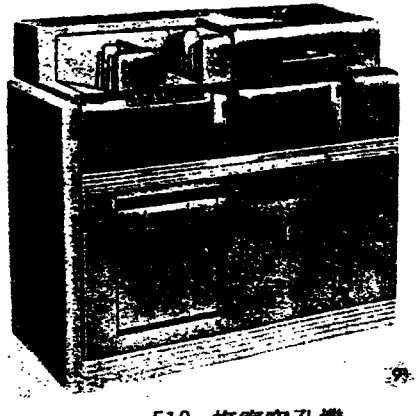


024 穿 孔 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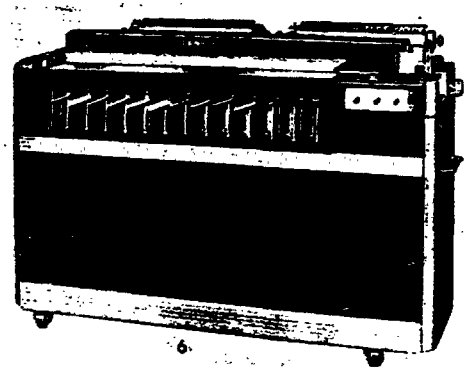


083 分 類 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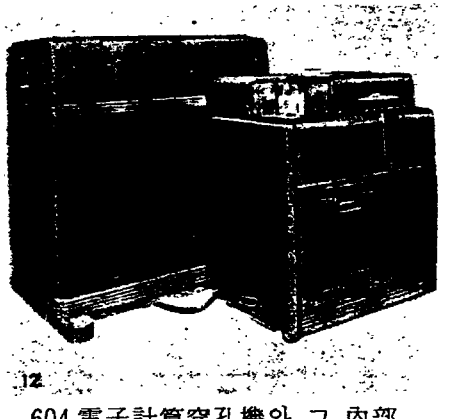




519 複寫穿孔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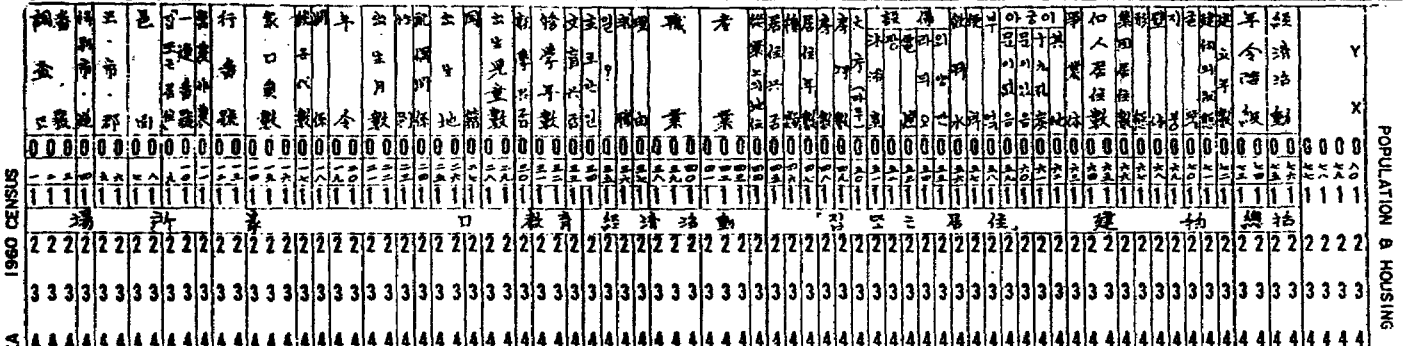


101 電子統計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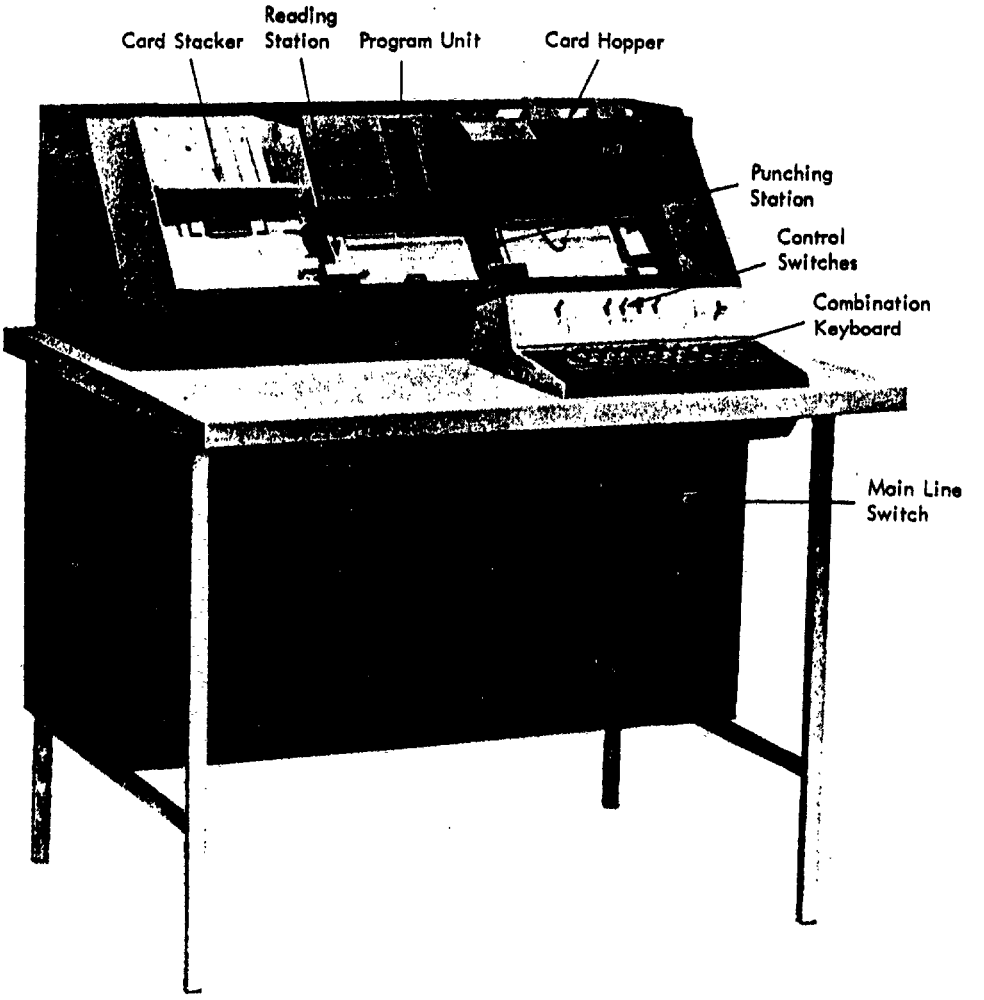


604 電子計算穿孔機와 그 內部

〈4－8〉 1960年度 人口 및 住宅 總調査카드



〈4－9〉 IBM 029 穿孔機



韓國統計發展史(Ⅰ)

發行日 : 1992年 12月 31日

發行處 : 統計廳

發行人 : 閔 泰 亨

서울 江南區 驛三洞 647－15

☎ 222－1823～4

印刷 : 文成印刷株式會社